

동 책자에 실린 내용은 통일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독일 통일 20년 계기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1.1 국가 구조의 변화

정당, 신연방주, 신설 기초자치단체와 수도 이전

통 일 부

CONTENTS

제 1 부

국가 구조의 변화 · 7

정당, 신연방주, 신설 기초자치단체와 수도 이전 /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1. 국가 구조 중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였나? · 8
2. 주(州) 신설 · 19
3. 수도 이전과 의회 및 정부 소재지의 문제 · 23
4. 무엇이 한국의 상황에 유용할 수 있을까? · 24

- 약어색인 · 27
- 참고문헌 · 33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 37

I. 정당 시스템 · 39

- 수록자료 개관 · 40

A. 공산당의 쇠신 : SED(사통당)/PDS(민사당)

- 자료 1 에리히 호네커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 사퇴 (1989.12.3) · 47
- 자료 2 사통당 특별 전당대회 (1989.12.8/9,16/17) · 48
- 자료 3 사통당/민사당 정관 (1989.12.8/9,16/17) · 50
- 자료 4 사통당 특별전당대회(1989.12.8~9, 16~17)에 관한 개인적 회고 (2000) · 52
- 자료 5 사통당/민사당 당 대표회 의장단의 구조와 업무 방식 (1990.4.1) · 53
- 자료 6 사통당의 민사당으로의 당명 변경 (1990.2.1) · 54
- 자료 7 민사당과 동독 사민당의 차이 (1990.2.22) · 55
- 자료 8 민사당 쇠신 회의(1990.9) 준비 (1990.6.8) · 56
- 자료 9 민사당 쇠신 회의(1990.9.8~9)를 위한 강령 (1990.7.9) · 57
- 자료 10 독일 총선 준비를 위한 민사당 당 대표회 결의안 (1990.7.21) · 59
- 자료 11 서독에서의 민사당 주 조직 결성을 위한 전당대회 결의안 (1990.10.13) · 61
- 자료 12 국가안전부(MfS) 문제에 관한 민사당 의장단 선언문 (1991.4.15) · 62

B. 신설 정당

- 자료 13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IFM)의 호소문 (1989.3.11) · 64
- 자료 14 동독 사회민주당(SDP) 건설을 위한 제의 (1989.7.24) · 65
- 자료 15 드레스덴 시 “그룹 20”의 성명서 (1989.11.10) · 66
- 자료 16 “보라빛” 공세의 입장 표명 · 67
- 자료 17 정당 설립을 위한 호소문/신포럼(Neues Forum) (1989.9) · 68
- 자료 18 사통당 당원 전원을 향한 호소문/신포럼 (1989.10.6) · 69
- 자료 19 “동독 사회민주당” 이니셔티브 그룹의 호소문 (1989.9.12) · 70
- 자료 20 “민주주의 지금”의 호소문 (1989.9.12) · 71
- 자료 21 사통당 구 당원과 사통당 당원으로 남아있는 모두를 향한 동독 사회민주당의 호소문 (1989. 말) · 72
- 자료 22 “사회적, 친환경적 연합”을 위한 호소문/민주적 개혁 (1989.10.2) · 73
- 자료 23 “민주적 개혁”의 라이프치히 강령 (1989.12.17) · 74
- 자료 24 인민의회 총선에서부터 기민련(CDU) 합당까지/민주혁신당(DA) (1990.10) · 75
- 자료 25 동독 사회민주당(SDP) 설립강령 (1989.10.7) · 76
- 자료 26 동독 사회민주당 정관 (1989.10.7) · 77
- 자료 27 독일 통일을 위한 동독 사회민주당 대표자 회의 선언문 (1990.1.14) · 78
- 자료 28 독일 사회주의 연합(DSU) (1990.3) · 79
- 자료 29 동독의 녹색당 설립을 위한 이니셔티브 (1989.11.5) · 80
- 자료 30 1990년 선거 연대를 위한 선언문/녹색당 (1990.1.3) · 81
- 자료 31 슈타지 요원 대상 사회 재편입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촉구/녹색당 (1990.1.15) · 82
- 자료 32 맑스주의적 정당 창당 그룹/카네이션 (1989.12.10) · 83
- 자료 33 독립 노조 설립을 위한 발기문 (1989.12.20) · 84
- 자료 34 USPD 설립에 관한 단상 (1990.1) · 85
- 자료 35 KPD 부활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토론문 (1990.2) · 86
- 자료 36 동독 인민의회 의장단 제안서 (1990.2.2) · 87
- 자료 37 좌파 민주주의 총연합을 위한 호소문 (1990.2.5) · 88
- 자료 38 시민 위원회 “노르만넨 거리” (1990.2.9) · 89
- 자료 39 “녹색 동맹” 설립을 위한 호소문 (1989.11) · 90
- 자료 40 신설 정당 및 정치 연합 · 91

CONTENTS

C. 당 합병

- 자료 41 독일기독교민주주의연합(동독) · 93
- 자료 42 기민련(CDU) 강령 · 94
- 자료 43 인민의회에서부터 기민련 합당까지/동독기민당 (1990.10) · 95

II. 정당 자산 · 97

■ 수록자료 개관 · 98

- 자료 44 사통당/민사당 정당 자산 확보를 위한 조치 (1989.12.21) · 105
- 자료 45a-c 건축물, 토지, 주택 등의 사통당 자산 매각 및 소유권 이전 (1990) · 107
- 자료 46a-h 사통당/민사당 기관 전환 (1990) · 109
- 자료 47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1990년 2월 21일 정당법 변경 법안 (1990.5.31) · 112
- 자료 48 민사당 정당 자산 내역 (1990.6.13) · 113
- 자료 49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의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 설립과
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1991.6.14) · 114
- 자료 50 동독 정당 자산에 대한 현 정당과의 합의 (1998.5.28) · 115
- 자료 51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UKPV)의 최종 보고서 (2006.7.5) · 116

III. 주(州) 도입 · 121

■ 수록자료 개관 · 122

- 자료 52 국민 투표를 위한 호소와 제안 (1990.3.22) · 124
- 자료 53 주 재편을 포함한 동독내 주 신설에 관한 법 제안을 위한 결의문 (1990.5.2) · 125
- 자료 54 동독 지역의 지자체 자치행정에 관한 법안 (1990.5.17) · 127
- 자료 55 주 도입법 (1990.7.22) · 129
- 자료 56 인민의회회의 주 신설 결의 · 130
- 자료 57 신연방주 헌법 초안 (1992) · 131
- 자료 58 동독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민주주의 (2001) · 133

IV. 수도 이전 · 135

■ 수록자료 개관 · 136

- 자료 59 수도 이전 관련 베를린-본 논쟁(발취) (1991.6.20) · 140
- 자료 60 수도 조약 (1992.8.25) · 143
- 자료 61 베를린/본 - 법 (1994.4.26) · 144
- 자료 62 본 지역의 보상 조치에 관한 협정 (1994.6.29) · 145
- 자료 63 본 지역을 위한 보상 프로젝트 (1994.6.29) · 146
- 자료 64 수도 재정 지원 조약 (1994.6.30) · 147
- 자료 65 수도 재정 지원 조약의 연계 조약 (2001.3.29) · 148
- 자료 66 2001~2004 연방 수도 문화 재정 지원을 위한 조약 (2001.7.7) · 150
- 자료 67 베를린과 본의 문화 지원에 관한 연방 정부의 보고서 (2002.7.3) · 151
- 자료 68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 재정 지원에 관한 조약 (2003.12.9) · 153
- 자료 69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 재정 지원과
연방 수도의 특별 부담 보상에 관한 조약 (2007.11.30) · 154

제 **1** 부

국가 구조의 변화

정당, 신연방주, 신설 기초자치단체와 수도 이전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 1. 국가 구조 중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였나? 8
- 2. 주(州) 신설 19
- 3. 수도 이전과 의회 및 정부 소재지의 문제 23
- 4. 무엇이 한국의 상황에 유용할 수 있을까? 24

국가 구조의 변화는 매우 느린 속도와 엄청난 비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가 구조에 변화가 일어날 경우, 그 변화는 체제의 다른 부분에도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Karl W. Deutsch)

국가 구조가 계획 없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변하게 될 경우,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란 재정적인 의미에서만 아니며, 한 체제의 구조를 다른 체제로 이전시키는 광범위한 변화를 뜻한다. 정당은 분명 국가 구조를 이루는 근본적인 부분이며,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이하 사통당)은 독일민주공화국(DDR, 이하 동독)이라는 국가를 지탱시키는 지배적 요소였다.

여기서는 아래에 나타난 국가 구조의 세 가지 요소가 다뤄질 예정이다.

- 정당, 특히 사통당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 주정부와 지자체의 변화, 국민들이 국가 구조와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정기구의 새로운 구성
- 국민들의 정체성과 자존감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족적 상징의 측면에서의 수도 이전 문제

1. 국가 구조 중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였나?

1.1 정당

동독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는 일당 독재 국가가 아니었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에서는 하나의 정당이 국가를 지배했고,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과 국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사통당이 민주사회주의당(PDS, 이하 민사당)을 거쳐 “좌파당(Die Linke)”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사통당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거의 극적이라 할 만큼의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과거에 국가를 완전히 지배했던 사통당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된다.

- “자신들의” 국가와 당원 대부분을 잃게 됨.
- 자발적 개혁 시도
-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의 지도적인 위치”에 대한 포기과 같이 자신들의 정체성의 성패가 걸린 자발적 개혁의 고통
- 통일 후 동독 지역에만 집중되었던 당원 구성을 거의 독일 전역으로 확장할 수 있었으며, 동독의 과거 체제와 과거 동독 주민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도록 허용(자료 10: 전독 총선 준비를 위한 민사당 당 대표회 결의안, 자료 12: 국가안전부(MfS) 문제에 관한 민사당 의장단 선언)
- 5개 당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정당 시스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몇몇 주정부 집권에 성공하는 등의 위치 재정립

독일적 특수성을 배제하고라도, 사통당의 이러한 변화는, 동독의 당 수뇌부와 지도층 인사들 대부분이,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개혁과 적응 기간 이후 통일 독일에서 어떻게 다시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에,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

1.2 위성정당 (Blockparteien)

사통당의 지도하에 동독에는 네 개의 정당이 더 존재했다. 그러나 이 정당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행보를 취할 수 없었으며, 지배 정당의 권력 행사에 그 어떤 반대 의견도 제

표 1 | 동독 위성정당 당원 수의 대략적 변화 추이(1949년 ~ 1987년)

| | 1949년 | 1965년 | 1977년 | 1982년 | 1987년 | 1977년~1987년 증가세 |
|--------|----------|---------|---------|---------|---------|-----------------|
| 동독 CDU | 211,200* | 101,000 | 115,000 | 120,000 | 140,000 | 22% |
| LDPD | 184,000 | 65,000 | 74,000 | 82,000 | 106,500 | 44% |
| DBD | 23,300 | 84,000 | 91,000 | 103,000 | 115,000 | 27% |
| NDPD | 35,000 | 79,000 | 84,000 | 91,000 | 110,000 | 31% |
| 합 계 | 422,500 | 329,000 | 364,000 | 396,000 | 471,500 | 30% |

* 1948년 (출처: 사통당의 “동맹 정당”. 동독 위성정당의 오늘, Lapp, Peter Joachim, 1988: *Die "befreundeten Parteien" der SED. DDR-Blockparteien heute*, Köln, S. 143. 사통당-국가: 과거 독재 체제에 관한 새로운 사실, Weber, Jürgen, Hrsg. 1994: *Der SED-Staat: Neues über eine vergangene Diktatur*, München, S. 112)

기하지 못하는 입장이었다.

위성정당 :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이하 동독 기민련)

독일 민주농민당 (Demokratische Bauernpartei Deutschlands, 이하 DBD)

독일 자유민주당 (Liber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이하 LDPD)

독일 민족민주당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이하 NDPD)

1.3 사통당

정당들은 설령 그것이 권위주의적 국가라 할지라도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행위 한다. 사통당 지도부의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았거나,
- 변화의 의미와 시급성,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를 잘못 예측 하였거나,
- 변화에 너무 늦게 대응하였거나,
-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거나,
- 혹은 그들의 대응이 변화를 더욱 가속화 하였다는 것이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가속화된 결정적인 시기는 **1989년 5월 7일에 실시된 지방 의회 선거**였다. 사통당 지도부는 이미 선거 전초전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결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다. 선거와 관련해 동독에서는 당국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했다. 1986년과 비교해 1989년 지방 의회 선거 이전의 청원서 제출 수치는 51% 이상 증가했다. 이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변화를 꾀하겠다는 의지와 정부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극명한 지표였다. 청원서의 내용은 일차적으로 주거와 생필품 공급의 문제였으나, 사통당 지도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 커져가는 불만의 목소리를 감지했어야만 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국가 권력의 감시력이 느슨해진 시기에 구체화 되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불만을 피력하고, 선거 관리

조직과 같은 다양한 분야별 협력의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세졌다.

1989년 초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정보에 따르면 동독 내각은 국민들 사이의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다 - “전화와 같은 통신 수단의 연결이나 신문, 잡지의 구독, 가구 구입 및 자동차 구입 대기 기간 ... 등과 같은 국민들의 청원 내용은 점점 더 다양해져 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국가는 현재로서는 국가 경제상 어떤 해결 방법도 없다고 응답했고, 장기간 지속된 공급 결핍으로 국민 대부분은 그러한 국가의 주장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았다.”¹

1989년 동독 체제의 개혁 필요성과 개혁 무능력은 명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 지도자들은 차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위해 “녹색당 리스트 (Grüne Liste)”를 작성하기로 발표했다. 현 지배 정당에 의한 동독 체제의 개혁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야당 지도자들의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더 이상 체제 자유화가 아닌, 야당 세력의 구성으로 이어졌다. 이를 위해 두 그룹이 만남을 가졌다. 이들 중 한쪽은 동독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측이었고, 다른 한 쪽은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켜야만 한다는 측이었다. 1989년 초 양 측은 협력을 통해 1989년 5월 7일의 지방 의회 선거에 선거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결국 동독 정부의 선거 결과 조작 사실을 밝혀내게 된다.

사통당은 상황을 잘못 평가하였다. 사통당은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입증된 비난에도 대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신들의 법”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통당 측의 이러한 무대응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자료 2: 사통당 특별 전당대회).

- 국민들의 물이해와 저항
- 당 하부 서열 내 불안 확산
- 사통당 내부의 체제 내 개혁 세력의 응집력 강화

1 “1989년 5월 7일 지방 의회 선거 결과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에 관한 지적”, “Hinweise über ausgewählte bedeutsame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n Ergebnissen der Kommunalwahl vom 7. Mai 1989.” BStU, ZA ZAIG 5352. Abgedruckt in Mitter, Armin/Wolle, Stefan, Hrsg., “하지만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시와 상황 보고, 1989년 1월 ~11월. “Ich liebe euch doch alle...” Befehle und Lageberichte des MfS, Januar bis November 1989. Berlin 1990, S. 97f.

-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단호한 진압과 이에 따른 데모와 연대 운동의 확산
- 계속해서 사통당에 충성한 위성정당들의 문제
- 위험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동독을 떠나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 1989년에는 서독으로의 이주 신청 숫자가 극적으로 증가
- 그러나 많은 이들은 동독을 떠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동독 내에서 변화를 꾀해야만 하고, 현실적인 가능성 안에서 그러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오판과 그것이 사통당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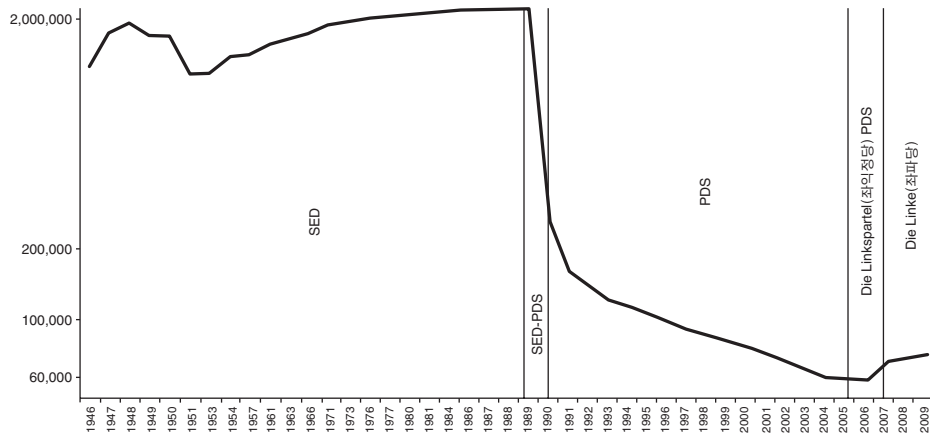
선거 조작과 선거 조작에 대한 사통당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변화에 기여했다.

- 개별적 시민적 용기(Zivilcourage)가 하나로 응집
- 시민 사회(Zivilgesellschaft)로의 지향을 목표로 하는 행위들의 변화가 시작

동독 국민과 사통당 모두는 다원주의적 정당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사통당의 민주주의 개념은 자주적 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가 아닌 자문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국민 대부분은 자유선거에 대해 알지 못했다. 동독에서 열린 자유선거는 1932년 9월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역시 제한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은 야당이란 곧 위협 세력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들에게는 건설적이거나 체제에 내재하고 있던 재야 세력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러한 재야 세력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가는 길이 모두 차단되어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막스 클라인(Max Klein)이 쓴 변혁기의 당의 성격과 당 내부 활동에 대한 당 내부 평가와 성찰에 대한 글은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자료 4: 사통당 특별 전당대회에 대한 개인적 회고).

사통당이 완강한 태도를 바꾸고,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실행에 옮겼을 때는 이미 상황이 견잡을 수 없이 흘러간 후였다. 그레고르 기지(Gregor Gysi)를 당수로 하는 사통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1989년 12월부터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의 지도적인 위치를 포기하였다. 1990년 2월 4일에는 당명을 민주사회주의당(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PDS)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

그림 1 | 1946년부터 2009년까지의 SED/ SED-PDS/ PDS/ Die Linkspartei. PDS/ Die Linke(좌파당) 당원 수 변화 추이



출처: 그래픽 작성자 - 알렉산더 페니히(Alexander Pfennig), 대수 분류법 기준.

자료 제공 - 전독일연구소 (Gesamtdeutsches Institut) (Hrsg.), 1985, 동독 소책자 제 2권 (DDR-Handbuch, Band 2),

Köln; <http://die-linke.de/partei/fakten/mitgliederzahlen>.

SED: 1946~1989, SED-PDS: 1989~1990, PDS: 1990~2005, Die Linkspartei. PDS: 2005~ 2007, Die Linke: 2007~ 현재.

립과 복수정당제를 표방할 것을 공표했다 (자료 3: 사통당/민사당 정관 - 민주사회주의당).

사통당의 발등에는 실로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 사통당의 당원 수는 1989년 10월까지만 해도 230만 명에 달했다.
- 1990년 5월 그 숫자는 4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 당원 95%가 사통당에서 탈당했지만, 민사당에 재입당하지 않았다 (표 참조).
- 당 지도부는 가능한 당 소유의 부동산을 적법하게 팔아 넘기거나, 다른 소유 형태로 전환할 수 있게끔 상황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료 44: 사통당-민사당 정당 재산 확보를 위한 조치; 자료 45 a~c 및 자료 46 a~h)

당으로부터의 제명은 논외로 하더라도, 당원들이 사통당을 대규모 탈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중 가장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순수한 교리”를 추종하는 자들은 당의 새로운 방향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지금까지 이어져 온 동독의 “현실 사회주의” 실천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했다.
- 기회주의자들은 정당 가입의 강제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당원으로서의 신분은 이들의 직업적 미래를 방해할 수 있으며, 당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을 보장하는 대안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 개혁 세력들은 현실에 실망했고, 당이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지를 지켜 본 후, 좀 더 직접적인 정당 정치적 참여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고자 했다.

한스 모드로 (Hans Modrow) 동독 총리는 1990년 2월 초 야당과 함께 “국가적 책임 정부 (Regierung der Nationalen Verantwortung)”를 수립하였다. 이 시기 사통당-민사당은 권력 상실뿐만 아니라, 동독의 몰락 자체, 즉 “그들의” 국가가 종말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기지와 모드로는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동독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고자 했다. 이들은 선거 패배를 예상했지만, 민사당이 갖고 있는 재정적·조직적 우위를 통해 조속히 권력을 환수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전문지식의 부족과 외부지원

너무나도 중요한 변혁기 (1989~90)에 무게중심은 불균등하게 산포되어 있었다. 시민운동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여러 이니셔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지만, 그러한 활동에 필요한 재정이나 조직,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못했다. 위성정당들은 자금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독자적인 정치 업무에는 거의 경험이 없는 상태였다. LDPD는 새로운 선거법의 초안을 작성해, 1989년 12월 초 인민회의와 원탁회의에 제출하였다. (원탁회의는 14 개 정당과 집단의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시민운동의 활동 근거지 역할을 했다.) 장벽 개방 직후(1989년 11월) LDPD의 당원 한 명은 서베를린으

로 가서 전문법률서적을 조달하고, 지인을 통해 오랜 기간 선거부서장을 지낸 베를린 시 정부 내무행정부서의 고위 관료와 접촉하게 된다. 이러한 접촉은 개인적인 성격으로 시작되었으나, 곧 서독의 집권 정당이 참여한 정당 간의 공식 접촉으로 확대된다.

시민운동 역시 정치적 개혁안을 작성하고, 국민 투표의 중요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Basisdemokratie)**의 다양한 형태를 강조하고, 기존 권력과 제도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반감은 동독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에 대한 경험 때문이며, 동시에 법치국가 내에서의 권력 감시를 경험하지 못한데서 생겨난 것이다. 서독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진 동독에서의 사회화로 인해 동독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다원주의와 삼권분립에 대한 내용을 거의 알지 못했다. 동독 국민들이 익숙한 것은 체제에 적응하고 당국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자유공간을 마련하는 것에는 익숙했으나,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조직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시민운동은 조직적 역량이 부족한 동독인들에게 힘에 부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기 총선(1990년 3월 18일)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힘의 불균등한 분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을 갖고 있었던 쪽은 **사통당-민사당**이었다.

1989년 10월 사통당은 다음과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 당원을 주업으로 하는 직원 4만4천 명,
- 매년 15억 동독 마르크에 달하는 수입
- 은행 잔고 62억 동독 마르크 (1989년 12월 31일 기준), 이 중 27.5억 동독 마르크를 사통당 중앙위원회가, 1989년 12월 7일 이후부터는 사통당-민사당 당 수뇌부가 직접 보유,
- 8천 7백만 동독 마르크에 달하는 외화,
- 4억 6천 4백만 동독 마르크에 달하는 동산 및 부동산(사무실, 자동차 등),
- 그 외에도 국가기관 전체와 언론사 일부가 정당의 자산이었다.

1.4 시민운동과 이니셔티브

통일 후 국가적 차원에서의 “과거 동독”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할지

라도, 시민운동을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과도기 기간 동안에는 협회 설립과, 네트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이니셔티브** 결성노력이 상당수 존재했기 때문이다. 몇몇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정당의 창당 및 역사적 정당의 부활, 예: 독립사회민주당(이하; USPD)(자료 34: USPD 설립에 관한 단상)
- 독일공산당(이하; KPD)의 부활 시도(자료 35: KPD 부활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토론문)
- 좌파 민주주의자 연합을 위한 시도(자료 37: 좌파 민주주의자 총연합을 위한 호소문)
- 독립 노조 설립을 위한 발기문(자료 33: 독립 노조 설립을 위한 발기문)
- 동독 영토에 그 어떤 극우주의 조직이나 정당(공화당, Die Republikaner, 독일에서 공화당은 극우조직임, 역자주)도 허락하지 않기 위한 노력(자료 36: 동독 인민의회 의 장단 제안서)
- 카네이션 (Die Nelken)(자료 32: 맑스주의적 정당 창당 준비 그룹/카네이션)
- 국가안전보위부 해체를 감독하기 위한 “노르만넨 거리 시민 위원회”(자료 38: 시민 위원회 “노르만넨 거리”)
- 녹색 동맹(Die Grüne Liga)(자료 39: “녹색 동맹” 설립을 위한 호소문)
- 보랏빛 공세(Lila Offensive) – 여성 운동 지원(자료 16: 보랏빛 공세의 입장표명)
- 드레스덴 그룹 20(Gruppe der 20)와 같이 정당으로 굳지 않고, 초당적 통합을 통해 지속적 활동을 유지하고자 하는 많은 운동들(자료 15: 드레스덴 시 “그룹 20”의 성명서)
-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자료 13: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호소문)

1.5 정당의 재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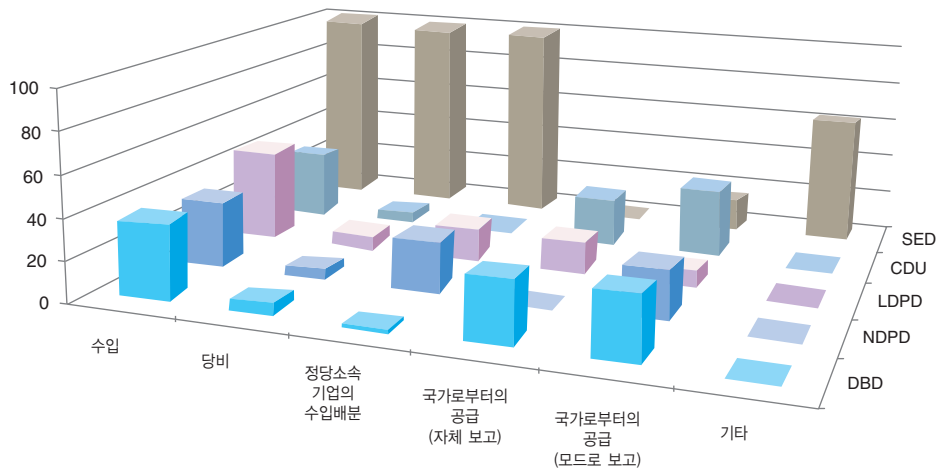
기지와 모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동독의) 정당과 국가 지도부는 동독 붕괴 직전에 해외, 즉 오스트리아에 위장기업을 설립해 엄청난 액수의 자금 이전에 성공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중요한 것은 “Novum”²이라는 무역회사

2 자료 51: 동독 정당과 대형 조직의 자산 감사를 위한 독립 위원회 발간 최종 보고서, C장, II 특수사안 “Novum”, 50~71 페이지 참조

가 오스트리아로 이체한 1억 2천 9백만 유로의 영수증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10년 기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2억 3천만 ~ 2억 4천만 유로에 달하는 금액이다. 수십 년 간 이어진 소송 끝에 이 자금이 사통당의 자산이며, 이제는 독일연방국의 자산에 속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010년 3월까지의 연방최고법원으로부터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독일 측 고소인은 연방통일특수과제청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이다. 담당 기관은 Novum이 이체한 자금은 사통당의 정당 자산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대한 권리는 권리 계승자인 신연방주 지역의 주정부에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 조약에 따르면 이러한 자금은 신연방주 지역의 공공 프로젝트를 위해 투입되어야 한다.

사통당과 위성정당들은 재정 상태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했다. 위성정당들은 재정 공개를 통해 위성 정당들의 사통당 의존성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 2 | 1989년 12월 1일 기준 동독 정당의 재정 공개 (화폐 기준: 백만 동독 마르크)



출처: “쪽지 접기”에서 자유선거로. 1989/90 동독 민주화와 “선거 문제”, Kloth, Hans Michael, 2000, Vom “Zettelfalten” zum freien Wählen. Die Demokratisierung der DDR 1989/90 und die “Wahlfrage”. Berlin: Ch. Links Verlag, S 694. 그래픽 작성: 알렉산더 페니히 (Alexander Pfennig), 사통당의 실제 자산은 그래픽에 나타난 1억 동독 마르크를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

표 2 | 1989년 12월 31일 기준 동독 정당의 재정 공개

| | SED | CDU | LDPD | NPD | DBD |
|------------------------------------|------------------|-----------------|-----------------|-----------------|-----------------|
| 수입 (백만 동독 마르크) | 1,498.8 | 33.2* | 47.0 | 34.0 | 38.8 |
| 당비 | 710.4 (47.5%) | 3.7 (11.2%) | 9.2 (19.5%) | 6.6 (19.4%) | 6.2 (15.9%) |
| 정당 소속 기업의 수익 | 720.3 (48.2%) | 3.9 (11.8%) | 18.8 (39.9%) | 27.1 (79.7%) | 누락 + |
| 국가로부터의 공급 (자체 보고) | - | 25.1 (75.5%) | 18.1 (38.5%) | - ** | 31.8 (81.9%) |
| 국가로부터의 공급 (89년 12월 13일 모드로프 자료) | 19.0 (4.3%) | 35.5 (80.1%) | 18.1 (38.5%) | 27.1 (79.7%) | 31.8 (81.9%) |
| 기타 | 64.1 (4.3%) | 0.5 (1.5%) | 1.0 (2.1%) | 0.3 (1.0%) | 0.4 (1.1%) |

* 1989년 9월 30일자 임시 결산

** NPD는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인상을 지우기 위해, 산업 물가 변동 상쇄액을 정당 소속 기업의 수익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 자금은 국가 예산을 통해 “국가로부터의 공급” 명목으로 지원되었다.

+ DBD는 정당 소속 기업이나 출판사를 보유하지 않았다.

(표 자료 출처: “쪽지 접기”에서 자유선거로, 1989/90 동독 민주화와 “선거 문제”, Kloth, Hans Michael. 2000. Vom “Zettelfalten” zum freien Wählen. Die Demokratisierung der DDR 1989/90 und die “Wahlfrage”. Berlin: Ch. Links Verlag, p. 694.)

사통당과 위성정당들은 야당이 원탁회의에서의 대화 중단을 위협하자, 뒤늦게 재정 상태 공개에 나서게 된다.

표 2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정당들은 엄청난 수입처를 보유하고 있었다. DBD를 제외한 모든 위성정당들은 신문사와 출판사 등 지속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표에 나타난 수치들은 정당들이 직접 제출한 내용이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이 그러하듯 자신들의 재정상태가 취약하게 보여질 수 있는 유리한 회계 방식을 통해 장부가 공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모든 정당들이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시민운동단체들과 비교해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당 재정 조달을 위한 공정한 규정은 새로이 도출되지 못했으며, 1990년 3월

18일에는 인민의회 선출을 위한 동독 최초의 민주적 자유선거가 실시되기는 했으나, 이를 위한 동등한 기회는 제공되지 못했다.

1989년 시민운동단체들은 서독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1990년 동독 내의 변화가 놀라운 수준으로 가속화되고, 선거 승리와 통일의 가능성이 밝아지면서 과거의 위성정당들은 2월부터 서독의 파트너 정당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서독에서 지원 파트너를 찾지 못한 시민운동단체들은 서독 정당들로부터 관심과 지원이 점차 감소하였다.

2. 주(州) 신설

동독은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고, 광역시(Bezirke)와 군(Kreise)으로 구분된 국가였다. 서독의 체제 인수가 임박해지자, 동독 지역을 연방 국가 구조로 개편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이는 신연방주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법 (Kommunalverfassung),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규정 (Gemeindeordnung)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뜻했다 (자료 54: 동독 지역의 지자체 자치행정에 관한 법안). 이에 역사적 근거를 소급 적용해 5개 주가 신설되게 된다. 그러나 주도입법 (자료 55: 주 도입법(Ländereinführungsgesetz))에 나타난 것처럼, 귀속토지 간 상호 교환과 같은 경우가 보여주듯이 주 신설 과정에서는 유연한 대응방식이 적용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지역 귀속 문제에 관해 공청회가 열리는 경우도 있었으나, 공청회를 통해 수립된 의견이 자치단체 의회가 토지 소속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구속력을 갖지는 못했다.

주 신설에 있어 대표적으로 고려된 점은 다음과 같다.

- 상위 조항인 기본법 조항을 기준으로 함.
- “구” 연방주 헌법을 기준으로 함.
- 동독과 과도기에서 긍정적이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새로운 헌법에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 - 예: 임신 기한에 따른 낙태 허용제, 개개인의 권리 (자료 57: 신연방주 헌법 초안, 자료 58: 동독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민주주의)

각각의 신설 주에서 나타난 논의와 헌법 초안들은 그 내용이 상이했으며, 새로운 주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 역시 주 별로 의견이 분분했다. 작센 (Sachsen) 주의 경우 원탁회의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신설 주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내세운 점은 국민 투표를 고려하는 시민 중심적 절차를 시도하는 것이었다(자료 57: 요하네스 룩스 (Johannes Rux) 박사의 신연방주 헌법 초안, 자료 58: 헬무트 볼만 (Hellmut Wollmann) - 동독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민주주의). 이러한 문제에 있어, 서독에서는 나치 시대의 경험으로 인해 국민 투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데 반해, 동독 지역에서는 과도기와 시민운동을 통한 경험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후에 이러한 의견에도 변화가 생겨, 신연방주들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Schleswig-Holstein) 주의 새로운 헌법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국민 투표에 관한 문제는 두 개의 독일 국가가 공존하는 대안과 통일 중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던 다른 운동그룹의 발의에서도 나타난다(자료 52: 국민 투표를 위한 호소와 제안).

2.1 명칭 변경

우리는 주 신설의 문제가 단순히 주 신설에만 그치지 않고, 지명의 변경 문제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칼 마르크스 시(Karl Marx-Stadt)는 켐니츠 시로 명칭이 환원되었으며, 신연방주의 수많은 거리 명 역시 대부분 변경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했으며, 동독 시절의 다양한 기념물들은 문화재 보호물로 지정되었다.

2.2. 지방의회의 변화

동독 최초로 민주주의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된 로타 드 메지에(Lothar de Maiziere) 총리는 선거를 통해 권한이 위임된 위원회를 가능한 많은 분야에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적 전제조건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동독의 근본적인 개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서독과의 통일 협상에 있어서도 민주적 권한의 부여가 가능한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따라 1990년 5월 6일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참여율이 75%에 달한 이 지역의회 선거는 한 마디로 인물선거(Personenwahl)였다고 할 수 있다. 선거 후보로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와 같은 신뢰적 위치나 반체제 운동, 직업적 역량을 통해 유명세를 탄 인물들이었다. 선거 후에 이어진 관직 분배에 있

표 3 | 1990년 5월 6일 동독 지방의회 선거 정당 별 득표율

| | | | |
|----------------|-------|--------------------------------------|-------|
| 기민련 (CDU) | 34.4% | 농민당 (Bauernpartei) | 5.7% |
| 사민당 (SPD) | 21.3% | 독일사회주의연맹 (Deutsche Soziale Union) | 3.4% |
| 민사당 (PDS) | 14.6% | 동맹 90 (Bündnis 90) | 2.4% |
| 자민당 (Liberale) | 6.7% | 기타 | 11.5% |

어서도 비슷한 양상이 일어났다. 기술자로서의 경력을 갖고 있던 사람은 건설분야 시의원으로, 자연 과학 분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환경 문제 담당자로 발령이 났다.

이러한 지방의회 설립 초기에 관직에 적합한 후보자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형태의 행정과 관직에 맞는 역량을 갖춘 인물은 충분하지 않았다. 당국의 의견에 무조건 복종하는 태도는 동독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습관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 지방의회에서도 **원탁회의**는 매우 중요한 포럼으로 기능했다. 원탁회의는 나중에 과거의 참여자들로부터 대부분 별다른 결과물도 없이 끝없는 토론으로 지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의 훈련에 크게 기여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참여자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지방자치단체법에 반영된 시민의 참정권 요구와 시민 결정과 같은 **국민 투표적 요소**의 일부는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기”에 도출된 결과이다.

지역적 편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신설 위원회들이 활동 초기에 겪게 된 공통적 경험은 다음과 같다.

1. 각 분야에 대한 현황조사는 동독의 인프라가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를 명확하고도 광범위하게 보여주었다. 관직에 새로이 부임한 공직자들이 직면하게 된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 지는 종종 극적인 방법을 통해 분명해 졌다.
2. 공통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개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지자체 관청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모두 ‘해당 사안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당면한 시대적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와 같이 정확히 기준을 잡기 어려운 답을 가진 문제들과 씨름해야만 했다.

2.3 자매결연 제도와 파견 공무원

지방의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서독 파트너들을 통한 자문과 지원이 매우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자문과 지원은 분단시기에 진행되었던 것이나 접촉을 통해 이어질 수 있었다. 동독과 서독의 도시 간에는 1986년부터 **자매결연 제도**가 존재했으며, 동독 정부는 초기에는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운용하였다. 특히 **과도기**에는 과거의 이러한 자매결연 제도와 새로이 도입된 자문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통일 후 한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문활동의 필요성과 유익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독은 당시에 주권 국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을 조직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적합한 도구는 서독의 **정치 재단**들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서독의 각 주에 설치된 정치교육센터들 역시 이러한 문제에 앞장섰다. 당시 정치교육센터들과 정치 재단들은 교류 및 방문 프로그램을 재정 지원하고,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며, 새로운 정책들을 시민 교육 정책의 일환에 통합시켰다.

연방 내독관계부의 예산 지원으로 서독의 퇴직 시장 300 명이 동독으로 진출되었으며, 자문관으로 투입되었다. 동독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1주일에서 2주간 서독의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였다. 베를린에도 **코펜닉(Köpenik)** (동 베를린)과 **샬로텐부르크(Charlottenburg)** (서베를린)와 같이 지역구 간의 자매결연이 존재했다. 연방, 주, 지자체를 아울러 총 170만 명의 인력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서독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전문가는 약 3만 5천 명이었으며, 이 중 만 명이 지자체에서 활동했다.

2.4 업무 관할의 변화와 새로운 구조적 문제

동독에서는 행정 분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인력 과잉** 문제가 심각했다. 많은 공직자들이 사통당 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원래 자신에게 정해진 업무 범위 내에서의 일도 거의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대부분의 인력들은 1990년에 해고되었다. 당시만 해도 노동재판소가 크게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의 해고는 비교적 용이하였다.

새로운 구조 개편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법의 수립에 따라 **업무 관장에 변화**가 일어났다. 동독에서 여권제도와 거주지 등록업무는 인민경찰의 관할 하에 있었다. 그러나 구조

개편 후 이는 지자체의 업무로 전환된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기초자치단체 행정 인력의 56%가 감축되었다. 이는 즉 해고를 의미하였다. 1991년까지만 해도 브란덴부르크 주에는 1,479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했다. 사통당의 행정 분할 모토는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중앙에서의 관리가 쉬워지며, 당 간부들을 위한 보직이 많아진다’ 였다. 기초자치단체 개혁 이후에는 과거의 소규모 행정 단위 통합을 통해 421개의 기초자치단체들만이 남게 된다. 이러한 통합은 소속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관청까지의 방문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는 특히 노인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점점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냈다. 주민 한 명이 줄어드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이 매년 400유로 삭감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결국 소비 감소와 세수 부족의 문제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세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 지자체 시설(학교나 유치원)과 서비스(수도 공급 및 하수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거의 동일하게 투입되었다. 이는 독일연방공화국 전역에 해당하는 공통된 문제이지만, 신연방주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3. 수도 이전과 의회 및 정부 소재지의 문제

수도의 문제

본(Bonn)은 처음부터 서독 정부의 임시 소재지로만 여겨졌으며, 통일이 될 경우 베를린이 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늘 존재했다. 소규모 대학도시였던 본은 수도와 의회 소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큰 부담(재정적, 인력적)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1990년 10월 3일 이후 베를린으로의 천도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본 측은 정부 소재지의 이전에 강력히 반발했다. 본 측은 베를린이 수도가 되어야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베를린은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수도로 기능해야 하며, 정부와 의회는 본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료 60: 수도 조약). 이러한 반대 의견은 다양한 근거를 통해 뒷받침 되었으나, 본에서 수도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돈과 권력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다(자료 61: 베를린/본-법, 자료 59: 수도 이전 관련 베를린 - 본 논쟁). 본은 노르트라

인-베스트팔렌(이하 NRW) 주에 위치해 있으며, 연방의회 내 NRW 주 대표들은 의석수 규모에 힘입어 그 영향력이 매우 막강했다. 수도 이전 문제에 있어 NRW 주 소속 의원들은 바이에른 주 소속 의원들과 당파를 초월하여 함께 베를린 천도에 반대했다. 베를린 천도에 대한 논의는 로타 드 메지에 동독 총리가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연방 내무부 장관과의 첫 공식 회동에서 통일 독일의 국가에 양 독일이 지금까지 각각 사용해 온 국가들의 가사를 반영하고, 자신에게는 베를린이 통일 독일의 수도와 정부 소재지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안했을 때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러나 서독 정부 측은 이 제안들 중에서 중심되는 문제를 모른 척 하거나, 그리 중요치 않은 사안으로 평가했다.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에는 베를린보다 더 많은 정부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방부처들은 베를린에는 주 소재지를, 본에는 부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또는 그와 반대로 두는 형식으로 양 도시에 이중의 집무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이 낭비되는 2중 체제로 운영되면서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베를린은 의회와 정부 이전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으며, 국제적인 메트로폴리스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본은 베를린 천도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 일부 부처가 이전한 자리에 대기업과 국제기구가 들어옴으로써 재정적 손해 이상을 보상받게 되었다. 베를린이 수도로서의 위상과 정부 및 의회 소재지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 것은 특히나 동독과 베를린 출신의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였다.

4. 무엇이 한국의 상황에 유용할 수 있을까?

다른 권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권에서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이 자명한 사실들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독일의 평화적 통일은, 다른 나라의 통일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이 결코

아니다.

- 북한의 상황은 동독의 상황과 다르다.
-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보다 희망과 우려가 훨씬 더 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통일 과정을 통해 얻게 된 몇몇 경험들은 한국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거나 혹은 논의하기에 적절할 수도 있다.

수도의 문제

이 문제가 갖는 심리적 측면은 한국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이 통일될 경우 평양이 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나 일부 부처 (예: 인프라 재건부)의 소재지를 개성으로 이전하는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계속해서 한국의 지배적 메트로폴로 남게 될 것이며, 수도와 정부 소재지의 기능을 분담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호주: 캔버라와 시드니, 네덜란드: 헤이그와 암스테르담,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등등 외에도 여러 예를 더 추가시킬 수 있다).

개성이 갖는 가치는 정치 경제적으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일어날 극적인 변화의 영향력을 상징적인 차원에서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통일 후 수십 년 이내에 서울-인천-개성-해주로 구성된 성장 사각지대가 개발되고, 서울-개성 구간 내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 조성될 것이다. 서울과 개성은 가능한 빨리 고속열차와 공항을 통해 연결되게 될 것이다.

자매결연

행정 분야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자매결연과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매우 의미가 컸고,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은 한국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량이나 정서적 이해능력과 더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그 지역 출신의 인물들 혹은 그들의 조상이 해당 지역 출신인 인물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일이다. (연령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최소한 해당 지역과 감정적 끈이 남아있는 인물들을 관직에 포함시키는 일은 중요하다.

이니셔티브, 시민운동단체

1989년과 1990년 동독에서는 수많은 이니셔티브들과 함께 시민운동단체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생겨났다. 독일에서는 사건의 진행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각 운동 주체들이 실질적 적응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고려할 시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였다. 만약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일어날 경우 새로운 집단의 구성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니셔티브들은 신중히 논의되고, 그 의의와 실천 가능성 역시 선입관 없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 참여는 높은 가치를 지녔고, 특히 수십 년 간 그것을 금지당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북한에서 후견을 받는다는 느낌이 생겨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당의 역할 차이

북한의 정당은 동독의 사통당이나 중국의 공산당과 비교해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범주화하기 어려운 북한 체제의 특징은 세습정권과 군의 지배동맹으로 이루어진 체제이다. 북한 사회 전체는 군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통당의 경험이 북한에 얼마만큼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통당/구동독 고위층 간부 일부가 적응과 개혁 과정 이후에 정치적으로 생존하였거나 받아들일만한 다른 직업을 통해 대안을 찾는 일이 가능했다는 점이 북한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던져 줄 수는 있을 것 같다.

■ 약어색인

| | |
|--------|--|
| ABM | 고용창출조치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
| ADN | 공영독일통신사(동독) (Allgemeiner Deutscher Nachrichtendienst) |
| AGCK | 동독 기독교 교회 협의회 (Arbeitsgemeinschaft christlicher Kirchen) |
| AKE | 협동수사 작업단 (Arbeitsgruppe Koordinierte Ermittlungen) |
| AM | 외무부장관 (Außenminister) |
| Anm | 각주 (Anmerkung) |
| ARD | ARD 독일공영방송 (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ARG | 구채무청산법(Altschuldenregelungsgesetz) |
| Az | 문서번호 (Aktenzeichen) |
| BArch | 연방기록보관소 (Bundesarchiv) |
| BARoV | 연방미해결재산문제조정청 (Bu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
| BEK | 동독 개신교회연맹 (Bund der Evangelischen Kirchen) |
| BfA | 연방노동청 (Bundesanstalt für Arbeit) |
| BFD | 자유민주주의동맹 (Bund Freier Demokraten) |
| BK | 연방총리 (Bundeskanzler) |
| BB | 독일연방은행 (Deutsche Bundesbank) |
| BDA | 독일경영자 총연맹 (Bundesvereinigung der Deutschen Arbeitgeberverbände) |
| BGBI | 연방법령관보 (Bundesgesetzblatt) |
| BK Amt | 연방총리실 (Bundeskanzleramt) |
| BM | 연방정부의 부처, 연방장관 (Bundesministerium, Bundesminister) |
| BMA | 연방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
| BMB | 연방 내독관계부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
| BMF | 연방재무부 (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 |
| BMI | 연방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
| BMJ | 연방법무부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
| BMV | 연방교통부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
| BMWi | 연방경제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
| BND | 연방정보부 (Bundesnachrichtendienst) |
| BPA | 연방공보처 (Bundespresseamt/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

| | |
|---------------|---|
| BPräs | 연방대통령 (Bundespräsident) |
| BRat | 연방상원 (Bundesrat) |
| BRD | 독일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BReg | 연방정부 (Bundesregierung) |
| BTag | 연방의회 (Bundestag) |
| BT-Drucksache | 연방의회-인쇄물 (Bundestags-Drucksache) |
| BverfG | 연방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sgericht) |
| BVerfGE |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Bundes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en) |
| BvS | 연방 통일관련 특별업무 관할청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
| BZ | 베를리너 차이통지 (Berliner Zeitung) |
| CdS | 주 총리실 실장/베를린 시장 비서실장 (Chef der Staatskanzlei/Senatskanzlei) |
| CDU | 기독교민주연합(기민련)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
| ChBK | 연방총리실장 (Chef des Bundeskanzleramtes) |
| ČSSR | 체코슬로바키아 (Československo/Česko-Slovensko-Tschechoslowakei) |
| CSU | 기독교사회연합(기사련)(Christlich-Soziale Union in Bayern) |
| D | 독일(Deutschland) |
| DA | 민주혁신당(동독) (Demokratischer Aufbruch) |
| DBD | 독일민주농민당 (Demokratische Bauernpartei Deutschlands) |
| DD | 인쇄본, 복사본 (Durchdruck, Kopie) |
| DDR | 독일민주공화국(구동독)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 DGB | 독일노동조합총연맹 (Deutscher Gewerkschaftsbund) |
| DJ | 민주주의 지금 (Demokratie Jetzt) |
| DLF | 도이칠란트퐁크 (라디오 방송사) (Deutschlandfunk) |
| DM | 독일 마르크 (Deutsche Mark) |
| dpa | 독일 통신사 (Deutsche Presse-Agentur) |
| DS | 독일 라디오방송국 (Deutschlandsender) |
| DSU | 독일사회연합 (Deutsche Soziale Union) |
| DVP | 독일인민경찰(동독) (Deutsche Volkspolizei, DDR) |
| EV | 통일조약 (Einigungsvertrag) |

| | |
|-----------|--|
| F | 프랑스 (Frankreich) |
| FAZ |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차이퉁紙 (일간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
| FDGB | 자유독일노동조합연맹 (Frei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 DDR) |
| FDJ | 자유독일청년단 (Freie Deutsche Jugend) |
| FEDI | “페리엔딘스트“.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여행사 (Feriendienst, 후에 FEDI-Feriendienst GmbH로 바뀜) |
| FR |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紙 (일간지) (Frankfurter Rundschau) |
| FS | 전보 (Fernschreiben) |
| GBI | 법령관보 (Gesetzblatt) |
| GG | 기본법 (Grundgesetz) |
| GKV | 의무 의료보험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 GL | 팀장 (Gruppenleiter) |
| GS | 사무총장 (Generalsekretär) |
| GST | 스포츠기술협회 (Gesellschaft für Sport und Technik) |
| HA | 지휘부 (Hauptabteilung) |
| hs | 수기(手記) (handschriftlich) |
| HVA | 정보 지휘부 (Hauptverwaltung Aufklärung) |
| IG Medien | 연론노조 (Industrie Gewerkschaft Medien) |
| IHK | 상공회의소 (Industrie- und Handelskammer) |
| IFM | 평화와 인권 시민단체 (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
| IM | 비공식 협력자 (Informeller Mitarbeiter) |
| i.V. | 대리 (in Vertretung) |
| JP | “청년 선구자” (Junge Pioniere, DDR) |
| KAAG | 투자신탁회사 (Kapitalanlagegesellschaften) |
| KB | (동독) 문화동맹 (Kulturbund) |
| KfW | 재건신용은행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
| KoKo | 상업조정기구 (Kommerzielle Koordinierung) |
| KPD | 독일공산당 (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
| KPÖ | 오스트리아공산당 (Kommunistische Partei Österreichs) |
| KWG | 신용기관법 (Kreditwesengesetz) |
| LASD | 독일정책 실무작업단장 (Leiter Arbeitsstab Deutschlandpolitik) |
| LDPD | 독일 자유민주당(구동독) |

| | |
|--------------|--|
| | (Liber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DDR) |
| LZB | 주립 중앙은행 (Landeszentralbank) |
| MAH | 동독대외무역부 (Ministerium für Außenhandel) |
| MD | (각 부처의) 국장 (Ministerialdirektor) |
| M/DDR | 동독 마르크 (Mark der DDR) |
| MdA | 동독 노동복지부 (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 MDg | (각 부처의) 실장 (Ministerialdirigent) |
| MDR | 중부독일방송 (Mitteldeutscher Rundfunk) |
| MfAA | 동독 외무부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
| MfS | 동독 국가안전부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
| MP | 총리 (Ministerpräsident) |
| MR | (각 부처의) 참사관 (Ministerialrat) |
| Mrd. | 10억 (Milliarde/Milliarden) |
| NDPD | 독일민족민주당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 NDR | 북부독일방송 (Norddeutscher Rundfunk) |
| NF | 신포럼 (Neues Forum) |
| NfD | 업무용으로만 사용 (Nur für den Dienstgebrauch) |
| NRW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
| OEB | 기관 소속 기업 (Organisationseigener Betrieb) |
| ORB | 동부독일방송 브란덴부르크 (Ostdeutscher Rundfunk Brandenburg) |
| OVG | 최고행정재판소 (Oberverwaltungsgericht) |
| PA | 보도자료 기록 보관소 (Pressearchiv) |
| PartG-DDR | 동독 정당법 (Parteiengesetz der DDR) |
| PDS | 민주사회주의당(민사당)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
| PMO | 동독의 정당 및 대중조직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
| PMO-Vermögen | 동독의 정당 및 대중조직 재산 (Vermögen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
| PVKV | 정당재산위원회규정 (Parteivermögenskommissionsverordnung) |
| RBgm | 시장 (Regierender Bürgermeister) |
| RGW | 동유럽경제상호원조회의 (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COMECON) |

| | |
|---------------|---|
| RIAS | 미국 주둔지역 방송국 (Rundfunk im Amerikanischen Sektor) |
| RiVG | 행정법원 판사 (Richter im Verwaltungsgericht) |
| RL | 부서장 (Referatsleiter) |
| RR | 참사관 (Regierungsrat) |
| RTL | 라디오 텔레비전 룩셈부르크 (TV방송사) (Radioteélévision Luxembourg) |
| SBZ | (전후) 소련점령지구 (Sowjetische Besatzungszone) |
| SDP | 동독 사회민주당(동독 사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in der DDR) |
| SED |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사통당)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
| SEDDiktStiftG |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설립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r 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
| SFB | 베를린 자유방송 (Sender Freies Berlin) |
| SMAD | 주독일 소련군사행정청 (Sowjetische Militäradministration Deutschland) |
| SPD |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 St | 차관 (Staatssekretär) |
| StäV | 상임 대표부 (Ständige Vertretung) |
| StGB | 형법전 (Strafgesetzbuch) |
| SU | 소련 (Sowjetunion) |
| TAS | 신탁관리특수재산 (Treuhand-Abwicklungs-Sondervermögen) |
| THA | 신탁관리청 (Treuhandanstalt) |
| THA/BvS | 신탁관리청/연방통일특수과제청 (Treuhandanstalt/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
| TEUR | 1,000유로 (Tausend Euro) |
| TLG | 신탁토지 유한회사 (Treuhand Liegenschaftsgesellschaft mbH) |
| UdSSR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구소련,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
| UFV | 독립여성협회 (Unabhängiger Frauenverband) |
| UKPV | 당재산검증위원회 (Unabhängige Kommission Parteivermögen) |
| USPD | 독일 독립사회민주당 |

| | |
|-----------|--|
| | (Unabhängige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 |
| VdgB | 농민상호부조연합(동독) (Vereinigung der gegenseitigen Bauernhilfe) |
| VDJ | 동독 기자연맹 (Verband der Journalisten der DDR) |
| VermG | 미해결자산문제 처리법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
| VG | 행정재판소 (Verwaltungsgericht) |
| VL | 좌파연합 (Vereinigte Linke) |
| VOB | 기관 소속 기업연합 (Vereinigung organisationseigener Betriebe) |
| VS | 기밀문서 (Verschlussache) |
| VwGO | 행정재판소 규정 (Verwaltungsgerichtsordnung) |
| WWU | 화폐 · 경제통합/화폐 · 경제 · 사회통합 (Währungs- und Wirtschaftsunion,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
| z.A. | 채용 예정 (zur Anstellung) |
| Zentrag | 중앙 인쇄, 구매, 검열 유한회사 (Zentrale Druckerei- Einkaufs- und Revisions GmbH) |
| ZK d. SED | 독일사회주의통일당(사통당) 중앙위원회 (Zentralkomitee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
| ZPA | 당중앙기록보관소 (Zentrales Parteiarchiv) |
| ZV | 중앙이사회 (Zentralvorstand) |

체제 전환/정당 시스템

- 사통당에서 민사당으로, Ammer, Thomas und Kuppe, Dr. Johannes. 1991. *Von der SED zur PDS*. Bonn: Gesamtdeutsches Institut.
- 쇄신의 어려운 길: 사통당에서 민사당으로; 기록, Behrend, Manfred (Hrsg.). 1991. *Der schwere Weg der Erneuerung: von der SED zur PDS; eine Dokumentation*. Berlin: Dietz.
-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행정 개혁과 행정 정책, Benz, Arthur, Mäding, Heinrich und Seibel, Wolfgang (Hrsg.). 1991. *Verwaltungsreform und Verwaltungspolitik im Prozeß der deutschen Einigung*. Baden-Baden: Nomos.
- 자유 혹은 사회주의? Biskz, Lothar. 1995. *Freiheit oder Sozialismus?* Berlin: Grundsatzkommission der PDS.
- LDPD와 1989/90년의 국가적 위기, Bogisch, Manfred. 2004. *Die LDPD und die Staatskrise 1989/90*. Berlin: Forscher und Diskussionskreis DDR-Geschichte.
- 기회주의정당 - 통일에 반대하는 SPD, Bohl, Friedrich und Kraus, Rudolf. 1990. *Die Wendehals-Partei. SPD gegen die Wiedervereinigung*. Bonn.
- 사통당에서 민사당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변신? Bortfeldt, Heinrich. 1992. *Von der SED zur PDS: Wandlung zur Demokratie?* Berlin: Bouvier.
- SPD 2000. SPD의 현대화, Blessing, Karlheinz (Hrsg.). 1993. *SPD 2000. Die Modernisierung der SPD*. Berlin: Schüren.
- 독일의 엘리트 리크루팅과 편입, Bürklin, Wilhelm und Rebenstorf, Hilke. 1997. *Eliten in Deutschland. Rekrutierung und Integration*. Opladen: Leske und Budrich.
- 독일 통일 3년. 독일이 직면한 위대한 도전과 기회. CDU. 1993. *Drei Jahre Deutsche Einheit. Große Herausforderungen und Chancen für unser Land*. Bonn.
Chiaromonte, Gerardo. 1992. PDSÖ un decollo difficile; travagli e speranye di una transformayione annunciata. Napoli: CUEN.
- 구동독 지역의 정치-행정적 구조의 변화, Derlien, Hans-Ullrich, Köig, Klaus, Renysch, Wolfgang, Seibel, Wolfgang und Wollmann, Hellmut. 1997. *Transformation der politisch-administrativen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Opladen: Lekse und Budrich.
- “새로운 정치 엘리트? 리크루팅과 신연방 5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커리어” Derlien, Hans-Ulrich und Lock, Stefan. 1994. “Eine neue politische Elite? Rekrutierung und Karrieren der Abgeordneten in den fünf neuen Landtagen”.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1-4/1994, S. 61-94.
- 민사당 결산, 연방의회 제 12차 임기 중반 좌파 리스트, Deutschland / Bundestag / PDS, Linke Liste. 1993. *Bilanz der PDS, Linke Liste zur Halbzeit der 12. Legislaturperiode des Bundestages*.

- Bonn.
- 지속성과 변화: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민사당 강령. Dietzel, Horst. 2007. *Kontinuität und Wandel: die Programmatik der PDS von 1990 bis 2007*. Berlin: "Helle Panke".
 - 오스탈기(동독향수) 혹은 좌파적 대안. 민사당을 가로지른 나의 여행, Ditfurth, Christian von. 1998. *Ostalgie oder Linke Alternative: meine Reise durch die PDS*. Köln: Kiepenheuer und Witsch.
 - 통일 이후의 변화, Esser, Hartmut (Hrsg.). 200. *Der Wandel nach der Wende*.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 독일 사회민주주의와 변혁, Faulenbach, Bernd und Potthoff, Heinrich (Hrsg.). 2001. *Die deutsche Sozialdemokratie und die Umwälzung 1989/90*. Berlin: Klartext.
 - 통일. 복지적 건립. 1989/1990년 SPD 지도부 파일의 기록, Fischer, Ilse (Hrsg.). 2009. *Die Einheit. Sozial gestalten. Dokumente aus den Akten der SPD-Führung 1989-1990*. Bonn: Dietz Verlag.
 - 녹색당의 민족과 민주주의. Fleischmann, Peter. 1995. *Nation und Demokratie bei den Grünen*, Berlin.
 - "현실사회주의" 대신 "개혁 사회주의"? 사통당에서 민사당으로, Fraude, Andreas. 1993. *"Reformsozialismus" statt "Realsozialismus"? von der SED zur PDS*. Münster: LIT.
 - 민사당: 구조, 강령, 역사적 관계. Friedrich-Ebert-Stiftung / Landesbüro Brandenburg. 1995. *Die PDS: Strukturen, Programm, Geschichtsverhältnis*. Beiträge einer Tagung am 18. Februar 1995 in Potsdam/Friedrich-Ebert-Stiftung, Landesbüro Brandenburg. Potsdam: Landesbüro Brandenburg der Friedrich-Ebert-Stiftung.
 - 우리는 제 3의 길을 필요로 한다. 민사당의 정체성과 강령. Gysi, Gregor (Hrsg.). 1990. *Wir brauchen einen dritten Weg: Selbstverständnis und Programm der PDS*. Hamburg: Konkret Literatur Verlag.
 - 진보 연단 <베를린>. 철저히 좌파? 민사당의 자기이해에 관한 찬반양론; 강령, 구조, 정책 이해, Hartke, Olaf. 1990. *Podium Progressiv <Berlin>: Konsequent links?: Kontroverses zum Selbstverständnis der PDS; Programmatik, Strukturen, Politikverständnis/Podium Progressiv*. Berlin.
 - 국가 정당 근무 중. 동독 정당과 조직에 대해, 동독 정당 및 대형 조직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로부터. Henkel, Rüdiger. 1994. *Im Dienste der Staatspartei. Über Parteien und ORganisationen der DDR, hrsg. von der Unabhängigen Kommission zur Überprüfung des Vermögens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Baden-Baden: Nomos-Verlags-Gesellschaft
 - 시작에 달렸다. 1989년 동독의 사회민주주의적 새로운 출발. Herzberg, Wolfgang und von zur Mühlen, Patrik (Hrsg.). 1993. *Auf den Anfang kommt es an. Sozialdemokratischer Neubeginn in*

- der DDR 1989. Coburg: Neue Presse.
- 독일을 위한 동맹. Jäger, Wolfgang und Walter, Michael. 1998. *Die Allianz für Deutschland*. Köln: Böhlau.
 - 민주주의 출발, Kammrad, Steffen. 1996. Der Demokratische Aufbruch. Frankfurt/Main: Peter Lang.
 - 동독 지자체의 자치행정 재건, Knemeyer, Franz-Ludwig (Hrsg.). 1991. Aufbau kommunaler Selbstverwaltung in der DDR. Baden-Baden: Nomos.
 - 민사당 - 좌파의 미래? Kopke, Christoph [Red.]: Deutsche Jungdemokraten / Landesverband <Berlin>. 1990. PDS - Perspektiven für die Linke? Berlin.
 - 기회를 사용하였는가? 독일 통일에 관한 정책, Korte, Karl-Rudolf. 1994. *Die Chance genutzt? Die Politik zur Einheit Deutschlands*. Berlin: Campus.
 - 사통당에서 민사당으로, Kuppe, Johannes. 1991. *Von der SED zur PDS*. Bonn.
 - 매진. 위성 정당의 종말. Lapp, Peter Joachim. 1998. *Ausverkauft. Das Ende der Blockparteien*. Berlin: edition ost.
 - 민사당, 신공산주의 당 해부, Moreau, Patrick. 1992. PDS: *Anatomie einer postkommunistischen Partei*. Berlin: Bouvier.
 - 동독 마지막 해의 정당과 정치적 움직임, Musiolek, Berndt und Wuttke, Carola (Hrsg.). 1991. *Parteien und politische Bewegungen im letzten Jahr der DDR*, Berlin: Basisdruck.
 - 민사당, 역사, 조직, 유권자, 경쟁자, Neugebauer, Gero-Stöss, Richard 1999 *Die PDS. Geschichte, Organisation, Wähler, Konkurrenten*. Opladen: Presse Druck.
 - 민사당, 역사, 조직, 유권자, 경쟁자, Neugebauer, Gero 1996. *Die PDS: Geschichte, Organisation, Wähler, Konkurrenten*. Opladen: Leske und Budrich.
 - 민사당과 노조, Neugebauer, Gero. 1996. *PDS und Gewerkschaften*. Bonn: Friedrich-Ebert-Stiftung, Abteilung GPD.
 - 독일 지자체헌법의 발전 경향. 민주화와 지방분권화? Neumann, Maja und Schefold, Dian. 1996. *Entwicklungstendenzen der Kommunalverfassungen in Deutschland. Demokratisierung und Dezentralisierung?* Basel: Birkenhäuser.
 - 체제 이식으로서의 체제 변화?: 중동 유럽의 개혁, Okun, Bernd (Hrsg.). 1992. *Systemtransformation als Systemübertragung?: Umbrüche in Mittel- und Osteuropa*. Leipzig: Leipziger Universitäts-Verlag.
 - 신탁관리청의 입장. 신탁관리청 - 사명, 활동, 결과, 보상, PDS/Linke Liste (Hrsg.). 1994. Blickpunkt Treuhandanstalt. Die THA - Auftrag, Tätigkeit, Folgen, Wiedergutmachung. Eggersdorf: Matthias Kirchner.

- 1989/90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사통당 지도부의 야당 전략. 자발적 폐쇄를 통한 전략적 무력화? Peterson, Fabian. 1998. *Oppositionsstrategie der SPD-Führung im deutschen Einigungsprozess 1989/90. Strategische Ohnmacht durch Selbstblockade?* Hamburg: Dr. Kovac.
- 블록 플류트 - 혹은 무엇? 1948~1990 독일민주농민당 (DBD)의 역사에 대하여, Riechelt, Hans. 1997. *Blockflöten - oder was?: Zur Geschichte der Demokratischen Bauernpartei Deutschlands (DBD) 1948 bis 1990.* Berlin: edition ost.
- 독일 통일로 가는 지나가버린 정치 역, Trömmer, Markus. 2002. *Der vergangene Halt in die Einheit Deutschlands.* Frankfurt/Main: Peter Lang.
- 변화하는 정당들. 동독의 비공산주의 정당들과 정치적 통일, Veen, Hans-Joachim und Wilemann, Peter R. (Hrsg.). 1990 *Parteien im Aufbruch. Nichtkommunistische Parteien und politische Vereinigungen in der DDR.* Melle: Konrad-Adenauer-Stiftung.
- 사통당에서 민사당으로. 강령에 묶인 국가정당에서 경쟁 체제 정당으로? Welzel, Christian. 1992. *Von der SED zur PDS: eine doktrinegebundene Staatspartei auf dem Weg zu einer politischen Partei im Konkurrenzsystem?* Frankfurt am Main: Lang.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 | |
|--------------|-----|
| I. 정당 시스템 | 39 |
| II. 정당 자산 | 97 |
| III. 주(州) 도입 | 121 |
| IV. 수도 이전 | 135 |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I. 정당 시스템

| | |
|-----------|----|
| ■ 수록자료 개관 | 40 |
| - 자료 1~43 | 47 |

수룩자료 개관

사통당/민사당

사통당은 변혁기 이전과 이후에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된다.

동독에서는 1989년 가을부터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1989년 5월 7일에 열린 지방 의회 선거 조작과 사통당 지도부의 개혁 의지 부재에 대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1989년 11월 28일 헬무트 콜(Helmut Kohl) 서독 총리는 연방 의회에서 독일의 연방국가적 통일을 목표로 하는 연방을 형성하기 위한 10개항 계획(Zehn-Punkte-Plan)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통당의 중앙 지도부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통당 지도부는 국민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존경과 신뢰를 잃게 되었다.

이 시기에 사통당에서는 대규모 탈당이 일어났으며, 특별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지역 대표자 회의(Kreisdelegiertenkonferenzen)에서는 과거 사통당, 국가 지도층의 직권 및 권력 남용에 대한 거침없는 논쟁이 진행되었다. 사통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동독 기민련과 LPDP, DBD, NDPD는 “지도당(Führende Partei)”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다. 1989년 12월 1일 인민의회는 동독 헌법 1조에 나타난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맑스-레닌주의 당”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1989년 12월 4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서는 15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으며, 포츠담(Potsdam)과 칼-마르크스 시(캠니츠 시), 할레(Halle), 게라(Gera), 노이브란덴부르크(Neubrandenburg)에서도 수천 명이 시위에 나섰다(자료 2: 사통당 특별 전당대회).

이와 관련해 당 중앙위원회(Zentralkomitee)는 12월 3일에 열린 마지막 회의를 통해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한스 알브레히트(Hans Albrecht), 베르너 크로리코브스키(Werner Krolikowski), 귄터 클라이버(Günther Kleiber), 에리히 밀케(Erich Mielke), 게르하르트 뮐러(Gerhard Müller), 알렉산더 샬크-골로드코브스키(Alexander Schalck-Golodkowski), 호르스트 진더만(Horst Sinermann), 빌리 슈토프(Willi Stoph), 해리 티쉬(Harry Tisch), 헤르베르트 치겐한(Herbert Zigenhahn), 디터 뮐러(Dieter Müller)를 직권 남용과 비리를 이유로 중앙위원회에서 제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호네커를 비롯한 중앙위

원 전원이 사통당의 지도적 지위로부터 사퇴하였다(자료 1: 에리히 호네커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전원 사퇴). 같은 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직후 새로이 선출된 에르푸르트(Erfurt) 지역의 헤르베르트 크로커(Herbert Kroker) 제 1서기를 대표로 하는 특별 실무위원회(Arbeitsausschuss)가 당 지도권 인수와 코앞으로 다가온 특별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구성되었다(자료 2: 사통당 특별 전당대회).

1989년 12월 8, 9일과 16, 17일 베를린에서 열린 특별 전당대회는 당이 스탈린적 체제와 완전히 결별하고, 현대적이며 민주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하는 것을 의미했다. 특별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찬반양론을 일으켰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사통당을 해체하고, 동독에 좌파적 사회주의 정당을 새로이 건설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통당을 쇄신하고 개혁할 것인가? 당 해체에 대한 제안은 다수의 반대에 부딪혔다. 당 서기로는 그레고르 기지가 선출되었으며, 사통당/민사당 정관이 결의되었다. 이는 사통당의 공식적인 종말과 민사당의 창당대회(Inaugural-Parteitag)로 간주되었다(자료 2: 특별 전당대회, 자료 3: 사통당/민사당 정관 - 민주사회주의당, 자료 4: 특별 전당대회에 대한 개인적 회고).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뒤로 한 당 지도부는 1990년 2월 1일 당 수뇌부 의장단의 제안에 따라 “민주사회주의당”으로 당명을 바꾸기로 결의 한다(자료 6: 사통당의 민사당으로의 당명 변경). 정강(政綱) 초안에는 민사당과 사민당(SPD)(동독에서 사민당은 1989년 하반기에 SDP로 창당되었으나 후에 SPD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SPD는 변혁기에 서독과 동독에 각각 존재하였고, 양당은 1990년 9월 26일 합당하였다.-역주)의 차이를 강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PD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데 반해, 민사당은 민주사회주의를 고수한다. 동독 SPD는 서독 SPD와 반대로 자본주의를 비판하지만, 민사당은 그렇지 않다. 민사당은 국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와 거리를 둔다. SPD는 동독의 서독 합병을 뜻하는 즉각적인 경제-화폐 통합을 지지한다. 민사당은 양독의 상호적 접근을 지지한다. SPD의 당 정체성은 민사당에 대한 거부적 태도와 독일 통일에 대한 지지에 기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SPD는 민사당과 객관적으로 대화를 통해 결말을 질수는 없다. 그럼에도 민사당은 SPD와의 건설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 한다(자료 7: 민사당과 동독 SPD의 차이).

1990년 9월에 열린 쇄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당의 쇄신 과정이 결산되었고, 아래의 다섯 개 강령이 제안되었다(자료 8: 민사당 쇄신 회의(1990.9) 준비, 자료 9: 민사당 쇄신 회의(1990.9.8~9)를 위한 강령).

1. 역사 극복: 과거 청산과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 없이는 당 쇄신은 불가능하다. 과거의 배타적 모델 (“진보” vs. “반동”)로부터의 전향이 시급하다. 사통당의 당 형태 (Typus)는 쇄신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 아니었는가? KPD(독일공산당)와 사통당 내에서 카를 리프크네히트 (Karl Liebknecht)와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 이후에 진정한 민주주의적 견해가 존재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전통은 유지되어야 한다. 동독에서 실패한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동독의 유산 중 어떠한 것이 미래 독일에 대물림 되어야 할 것인가? 반대 세력의 영향력 역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2. 강령과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 “민주적 사회주의”란 사통당에 대한 거부를 뜻한다. 현실과 개인, 남녀평등은 민사당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변증법적-물질주의적·자본주의 분석과 자본주의 비판은 필수적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모든 신기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명되었다. 그러나 진보적 원칙이 자본주의만의 특징인 것은 아니다.
3. 당의 민주화: 민사당은 당의 구조와 조직을 변화시키고 민주적으로 당을 세워나가야 한다. 특히 여론은 아래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생겨난 집단들과 직접 민주주의, 투명성, 연대는 중요하다. 다양한 연령 집단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Kreis) 단위 이상 집단의 대표단은 남녀의 비율이 1:1로 구성되어야 한다. 상임 당 기관은 축소되어야 한다.
4. 당원 구조: 민사당의 당원은 35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입당과 탈당의 동기와 요인은 무엇인가? 민사당에는 여성 당원 (대다수가 신입 당원)과 사무직 직원이 더 많으며, 노동자와 간부, 중년의 연령대는 적다.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당의 규모는 작아졌다. 당의 규모는 확장되어야 한다. 입당 최소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당 내 소규모 그룹에게 신입 당원을 입당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5. 통일 독일에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민사당: 화폐·경제·사회 통합을 통해 민사당은 독일 전역에서 활동해야 하며, 서독의 국민들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민사당은 동독의 시민을 대표할 것이다. 민사당의 접근방식은 반자본주의적이어야 하며, 기존 체제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 내야만 한다. 민사당이 (주도적으로) 독일 내의 좌파 정당과 시민 운동, 특히 SPD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 나간다.

1990년 12월 2일 독일 전역에서 실시된 연방의회 총선 준비에서 민사당은 독일 의회로의 진입과 당의 활동 영역을 독일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민사당은 비민주적이며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회 진입 5% 제한규정을 포함하는 선거에 반대하는 한편, 단일 선거구에서 서독과 동독의 좌파 세력들과 연합하여 동서독 좌파 후보들과 함께 선거에 나서는 안(Offene Liste: 독일은 1인2표제 선거로 1표는 지역구 입후보자에게, 다른 1표는 정당에 투표한다. 후자의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후보 리스트에 등재된 후보를 대상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 역주)을 통해 선거전에 돌입할 전략을 세웠다. 이러한 선거 전략은 서독과 동독에서 상반된 선거 결과가 나타날 경우, 동독의 민사당은 Offene Liste로 의회에 진출해 서독의 좌파 세력들을 민사당의 입후보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민사당은 7월 말부터 좌파 리스트(Linke Liste)/PDS (LL/PDS)라는 선거 연합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선거 연합의 성격은 조직의 연합이라기 보다는 인물들의 연합이었으며, 이후 이 선거 연합은 모든 서독 지역에서 LL/PDS라는 이름으로 출마하였다(자료 10: 독일 총선 준비를 위한 민사당 당 대표회 결의안).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10월에 민사당의 첫 번째 전당대회에서는 좌파 리스트/민사당 주(州)연합을 민사당 주연합으로 변경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들이 공동으로 추구한 선거 강령은 “강력한 좌파 야당의 구축”이었다(자료 11: 민사당 서독 내 지방 연합 구성을 위한 민사당 전당대회 결의문).

신생 정당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동독의 정당법은 1990년 2월 21일 인민의회에 의해 결의되었으며, 몇 달 남지 않은 동안의 정당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새로운 내용은 제 3조에 규정된 정당을 구성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정당은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으며, 어떠한 허가도 요하지 않는다.” 사통당의 특수 지위(Sonderstellung)는 제 6조를 통해 폐지되었다. “국가 조직과 기업, 국가기관 등이 지원을 한 정당에 제공하거나, 허용할 경우, 나머지 정당 모두는 그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민주혁신당”(Demokratischer Aufbruch)과 같은 신생 정당들은 당사 확보와 출판사 및 언론사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되었다.

그 외의 규정들은 서독의 정당 법령을 따랐다: 정당은 민주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정

관이 있어야 한다. 정당은 대표위원회를 통해 대표된다. 당의 가장 높은 결정기구는 대의원 회의거나 전당대회이며, 대표위원들을 선출하고 당의 해체를 결정한다. 정당은 자산과 구매 목록에 대한 회계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신생 정당들은 사통당과 위성정당들과 달리 전혀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확정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에서 최초의 자유 총선이 실시되기 전인 1990년 3월 동독에서는 민주주의 지금(Demokratie Jetzt), 민주혁신당, 독일 포럼 당(Deutsche Forumpartei), 독일 사회 연합(Deutsche Soziale Union, 이하 DSU), 녹색당(Grüne Partei), 평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운동(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카네이션(Die Nelken), 신포럼(Neues Forum), 독립 노조(Unabhängige Gewerkschaften), 시민 위원회 노르마넨거리(Bürgerkomitee Normannenstraße)와 같은 수많은 정치 집단들이 생겨났다(자료 40: 신설 정당 및 정치 연합).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사라졌다. USPD나 KPD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자료 34: USPD 설립에 관한 단상, 자료 35: KPD 부활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논의문).

6 개의 야당과 정치 그룹(SDP, 민주혁신당, 신 포럼, 민주주의 지금, 좌파 연합(Vereinigte Linke), 평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운동)은 1990년 3월 18일로 예정된 동독 총선에서 지금까지의 지배 세력을 해체시키기 위해 1990년 1월 3일 연대 90(Bündnis 90)을 구성 한다(자료 30: 1990년 선거연대를 위한 선언문/녹색당). 연대 90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을 지닌 집단은 당원 수가 10만 명이 넘었던 신 포럼으로,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정당이었다. 반대로 민주주의 지금이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운동과 같은 정치 집단은 전국적으로 당원 수가 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파에 불과했다. 연대 90이 공동으로 지향한 강령의 토대는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 이해와 동독에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추구였다. 연대 90은 복지와 환경 문제에도 힘썼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과 성과주의를 강력히 지지했다.

1990년 3월 18일의 총선 선거 연합인 독일을 위한 동맹(Allianz für Deutschland)은 헬무트 콜 서독 총리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1990년 2월 5일 서베를린에서 창립되었다. 독일을 위한 동맹 소속 정당으로는 기민련과 DSU, 민주혁신당이 있었다. 이 선거 연합은 동등한 가치지향(Wertorientierung)을 기반으로 했다. 강령적으로는 기독교적인 인간상을 토대로 사회적 시장경제와 독일 통일을 지향했다. 독일 동맹의 목표는 선거 승리를 통해

동독 정부 구성에 필요한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1990년 9월 민주혁신당은 기민련으로 편입되었다(자료 24: 인민의회 총선에서부터 기민련 합당까지).

기민련은 1945년 6월 26일 소련군 점령지역(SBZ)에서 설립되었다. 1990년 10월 1일과 2일에 기민련은 서독의 자매당인 서독-기민련과 합당했다. 로타 드메지에는 초대 기민련 부대표직을 맡게 되었다(자료 43: 인민의회에서부터 기민련 합당까지).

동독 사회민주당 (SDP)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사회민주당과 독일공산당 (KPD)은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었다.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 중에는 노동자 운동이 분리되어 히틀러가 지지 세력을 넓힐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또다시 반복되고 지속되는 노동자 운동의 분리를 막기 위해 몇몇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양 당의 통합을 위해 노력했다. 독일의 소련 군정은 초기의 유보적인 태도를 곧 중단하고, 1946년 4월 22일 커다란 압력을 가해 베를린의 제독 궁전(Admiralpalast)에서 SPD(사민당)와 KPD의 합당대회를 개최케 한다. 이러한 합당을 통해 사통당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SPD와 KPD는 이후로부터 1989/1990년의 변혁기까지 수십 년에 걸쳐 동독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³

1989년 7월 24일 막데부르크 시(Bezirk Magdeburg) (현재 작센-안할트 주)와 포츠담 시(Bezirk Potsdam)(현재 브란덴부르크 주)의 기독교 신학자인 마르쿠스 메켈(Markus Meckel)과 마르틴 구트차이트(Martin Gutzeit)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동독 사회민주당 의당 발족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 그룹 건설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이 제안은 1989년 8월 26일 발송되어 베를린의 골고다 교회에서 소개되었다. 이 제안은 위로부터의 변화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었다. 사통당의 권력추구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정치적 대안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 건설을 위한 이니셔티브 그룹의 구성이 제안되었다. 국가와 사회의 분리와 국민들의 기본권 수호, 환경 보호와 더불어 이 제안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문제 (법치국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복지 국가와 생태, 연방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 공동 경제, 자유 노조, 종교의 자유, 여성의 평등권,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망명권)와 외교에 관한 문

3 서독에서 KPD는 1965년 8월 헌법 위배 정당으로 금지되었다.

제 (독일의 2 국가 체제, 서독과의 특별 관계, 탈무장화, 군사연합 해체, 공정무역, 독일 내 소수 민족과의 연대)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동독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문서에서도 재확인 된다(자료 14: 동독 사회민주주의당 건설을 위한 제의).

그 사이 발족된 새로운 이니셔티브 그룹들은 1989년 9월 12일 호소문을 작성했다. 이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 건설을 제안하고, 법치국가와 삼권 분립,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연방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 자유 노조를 촉구하였다(자료 19: “동독 사회민주주의당” 이니셔티브 그룹의 호소문). 1989년 10월 7일 슈반테(Schwante) 목사관에서는 동독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베를린과 동독 남부 지방의 50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동독 사회민주주의당의 목표는 점점 심각해져 가는 국가의 불안을 막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민주화를 달성하고, 친환경적 사회민주주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 내기 위해서는 동독의 민주화 그룹과 이니셔티브 집단, 개인들의 협력이 필요했다(자료 25: 동독 사회민주당(SDP) 설립 강령, 자료 26: 동독 사회민주당 정관).

1989년 가을 SDP는 이미 대규모로 사통당을 탈당하였거나, 아직 사통당 당원으로 남아있는 이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했다. 짧은 호소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사통당은 더 이상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사통당에 민주사회주의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SDP에 입당해야 한다(자료 21: 사통당 구 당원과 사통당 당원으로 남아있는 모두를 향한 동독 사회민주당의 호소문). 1989년 10월과 12월 사이에 동독의 여러 도시에서는 SDP의 지역 그룹이 설립되었고 동독의 중앙 원탁회의에서 SDP는 2 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제 1회 대표자 회의(Delegiertenkonferenz)는 SDP의 당명을 앞으로 SPD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는 당의 방향을 서독의 사회민주주의로 선회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케 하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동독 SPD는 서독의 자매 정당을 향해서만 정당의 색깔을 밝힌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그 사이 독일 국가의 통일과 경제와 화폐의 통합에 대한 목표도 지향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동독 SPD는 유럽 이웃 국가들과의 국경선의 변경 불가와 동유럽의 성장 및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자료 27: 독일 통일을 위한 동독 사회민주주의당 대표자 회의 선언문). 1990년 초 동독 SPD는 1990년 3월 18일로 예정된 동독 최초이자 유일했던 자유 총선에 맞춰 기초구역과 광역구역에 지역구를 구성하였다. 1990년 9월 26일 양 독일 사회민주당은 합당하였다.

A. 공산당의 쇠신 : SED(사통당)/PDS(민사당)

자료 1

에리히 호네커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 사퇴 - 제 12차 사통당 중앙위원회 (Zentralkomitee) 결의

1989년 12월 3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사통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 감독위원회 (Zentrale Parteikontrollkommission, ZPKK),
정치국 (Politbüro)

내용

- 특별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군 대표자 회의(Kreisdelegiertenkonferenzen)에서는 과거 사통당과 국가 지도층의 직권 및 권력 남용에 대한 거침없는 논쟁이 진행되었다.
- 이러한 이유와 정치국의 제안, 당 중앙 감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에리히 호네커 (Erich Honecker), 한스 알브레히트 (Hans Albrecht), 베르너 크로리 코브스키 (Werner Krolikowski), 귄터 클라이버 (Günther Kleiber), 에리히 밀케 (Erich Mielke), 게르하르트 뮐러 (Gerhard Müller), 알렉산더 샬크-골로드코브스키 (Alexander Schalck-Golodkowski), 호르스트 진더만 (Horst Sinermann), 빌리 슈토프 (Willi Stoph), 해리 티쉬 (Harry Tisch), 헤르베르트 치겐한 (Herbert Zigenhahn), 디터 뮐러 (Dieter Müller)를 당 중앙위원회에서 제명한다.
- 당 중앙위원회는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의 집단 사퇴를 선언하는 바이다.

출처

제 12차 사통당 중앙위원회 결의.

민주사회주의 문서고 (Archiv Demokratischer Sozialismus)

로자-룩셈부르크 재단 (Rosa-Luxemburg-Stiftung)

자료 2

사통당 특별 전당대회(Außerordentlicher Parteitag)

1989년 12월 8/9일, 16/17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전당대회, 한스 모드로프 총리 (Ministerpräsident Hans Modrow),
특별 실무위원회 (Arbeitsausschuss)

내용

• 특별 전당대회의 출발상황

- 5월 7일에 열린 지방의회 선거 결과 조작과 사통당 지도부의 개혁의지 부재로 인해 1989년 가을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다. 그와 동시에 대규모 동독 탈출이 일어났다.
-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1989년 11월 28일 서독의 헬무트 콜 (Helmut Kohl) 총리는 연방의회에서 독일의 연방국가적 질서를 목표로 하는 연방구조 건설을 위한 10개항 계획(Zehn-Punkte-Plan)을 발표하였다.
- 이 시기에는 대규모 탈당이 일어났으며, 위성정당인 CDU, LPDP, DBD, NDPD는 “지도당 (Führende Partei)과 거리를 취하게 된다. 1989년 12월 1일 인민의회는 동독 헌법 제1조에 나타난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다. 1989년 12월 4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서는 15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으며, 포츠담 (Potsdam)과 칼-마르크스 시 (캠니츠 시), 할레 (Halle), 게라 (Gera), 노이브란덴부르크 (Neubrandenburg)에서도 수 천 명이 시위에 나섰다.
- 12월 3일에는 중앙위원회 전원과 정치국, 중앙위원회 서기국 (ZK-Sekretariat), 총서기(Generalsekretär)가 사퇴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직후 새로이 선출된 에르푸르트(Erfurt) 지역의 헤르베르트 크로커 (Herbert Kroker) 제 1서기를 대표로하는 특별 실무위원회가 당 지도권 인수와 코앞으로 다가온 특별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구성되었다.

자료 2

- 특별 전당대회 결과
 - 회의를 통해 새로운 지도위원회 (Leitungsgremien) 선출이 결정되었으며, 그레고어 기지(Gregor Gysi)가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 당의 해체는 과반수에 의해 거부되었다.
 - 미하엘 슈만 (Michael Schumann)과 디터 클라인 (Dieter Klein) (현대적인 사회주의 당재형성과 신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당의 기여), 볼프강 폴 (Wolfgang Pohl) (정관위원회 보고), 그레고어 기지 (당면한 당의 업무에 대하여)의 발표에 대한 논의 후 새로운 정관이 채택되었다. 이로 인해 1976년 5월에 열린 제 9차 사통당 전당대회에서 결의된 정관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 특별 전당대회는 당이 스탈린적 체제와 완전히 결별하고, 현대적이며 민주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하는 것을 의미했다. 전당대회는 사통당의 형식적인 종말과 민사당의 취임-전당대회 (Inaugural-Parteitag)로 간주되었다.

출처

Lothar Hornburg u.a (Hrsg.), 1999. 1989년 12월 8/9일, 16/17일 베를린에서 열린 자문 회의록 (*Außerordentlicher Parteitag der SED/PDS: Protokoll der Beratung am 8./9. und 16./17. Dezember 1989 in Berlin*), Berlin: Ditzten Verlag.

자료 3

사통당/민사당 정관 - 민주사회주의당

1989년 12월 8/9일, 16/17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좌파당 (Die Linke)/ 당 수뇌부 (Parteivorstand)

내용

정관의 내용은 당 성격에 관한 선언문과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통당-민사당은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당이며, 독일과 전 세계적인 노동운동의 전통과 유산을 기반으로 한다. 사통당-민사당의 이론적 토대는 마르크스주의이다.
- 사통당-민사당의 목표는 동독에 새로운 인간적 민주적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당은 민족주의(Nationalismus), 파시즘(Faschismus), 인종주의(Rassismus), 국수주의(Chauvinismus)의 모든 형태에 대항해 투쟁한다.
- 사통당-민사당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그 외 전 세계 좌파 운동 단체와의 적극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 입당 자격. 18세 이상이며, 강령과 정관을 인정하는 동독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은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에게는 제안 제출과 언론과의 접촉, 선거 및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 민주적 정당 확장. 사통당-민사당의 기본 조직은 당의 토대를 이루며, 당의 가장 중요한 조직 단위이다. 당의 기본 조직들은 결의권과 독립적인 행위권을 갖는다. 이들은 단위 지역의 원칙 (Territorialprinzip) 혹은 생산원칙 (Produktionsprinzip)에 따라 배치될 수 있다. 여성들은 정당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당원 총회 (Mitgliederversammlung)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소집된다. 당 수뇌부들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표자 회의는 당 대표와 당 수뇌부, 중재위원회 (Schiedskommission)를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당 대표와, 부대표, 위원회 장들은 의장단 (Präsidium)의 구성원이다.

자료 3

- 당의 최고 기구. 사통당-민사당의 상임 최고 기구는 전당대회이다. 의결을 위해서는 선출된 대표자의 과반수이상인 참석해야 한다. 전당대회는 강령과 정관을 결정하며, 당의 기본 노선을 정한다.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제출한다.
- 국민의 대표와 사회적 조직. 계파와 당의 대표들은 독립적으로 일한다. 계파 소속원에 대한 강제(Fraktionszwang)는 존재하지 않는다.
- 물질적, 재정적 자원. 대표들은 사통당-민사당의 자산을 관리한다. 당의 재정은 당비와 당 기관의 수입, 기부를 통해 충당된다. 당비는 당원 스스로 결정한다.

출처

노이에 유스티츠 (Neue Justiz) 지 - NJ 1992, S. 147~151

자료 4

사통당 특별전당대회에 관한 개인적 회고

담당자/기관

막스 클라인 (Max Klein)

내용

- 막스 클라인은 민사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출판물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과 측근 동지들을 위해 회고록을 작성했다.
- 1989년 가을 사통당은 권력을 상실하게 되며, 막스 클라인이 정치적으로 신봉했던 것들 대부분은 갑자기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 1988년 동지 당원들의 서독으로의 탈출과 에곤 크렌츠 (Egon Krenz)가 이끈 선거 결과 조작은 당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그의 생각을 무르익게 한다. 막스 클라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 쾨니히스 부스터하우젠 (Königs Wusterhausen)에서는 평당원들이 지식인들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유연비어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난다.
- 쾨니히스 부스터하우젠에서 발표한 그의 연설은 개인적 동기로 인해 당에 남고자 하는 의지와 전당대회를 통해 확신을 갖게 한 현대적인 사회주의당의 개념이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만을 담고 있다.

출처

Klein, Max. 2000. 우토피 크레아티브 지:

특별 전당대회 (Utopie Kreativ: Außerordentlicher Parteitag), S. 130~135

자료 5

사통당/민사당 대표회 의장단의 구조와 업무 방식

1990년 1월 4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사통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 감독위원회 (ZPKK), 정치국

내용

- 사통당-민사당 당 대표 위원회 산하에는 9개의 위원회를 둔다. 새로운 구조가 승인되고 나면 사통당의 구 중앙위원회는 해체된다.
- 사통당-민사당의 당 대표는 그레고어 기지이다.

출처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 31 5/90 민주 사회주의 자료보관소 / 로자-룩셈부르크-재단

자료 6

사통당의 민사당으로의 당명 변경

1990년 2월 1일, 베를린

담당인/기관

당 수뇌부 위원회, 당 수뇌부

내용

당 내의 엄청난 변화에 기인해 당 수뇌부는 당 수뇌부 의장단의 제안에 따라 당명을 “민주사회주의당”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다.

출처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88 11/90, 회의록 11번, 첨부 문서 3번.
민주 사회주의 자료보관소 / 로자-룩셈부르크-재단

자료 7

민사당과 동독 사민당의 차이

1990년 2월 22일, 베를린

담당인/기관

민주사회주의당 (민사당), 서독과 동독의 사회민주주의당

내용

- 사민당은 사회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민사당은 민주사회주의를 고수한다. 서독 사민당은 동독 SPD보다 사회주의와 거리를 덜 둔다.
- 사민당은 실용주의 정당으로 민사당과는 달리 사회 이론과 이데올로기 및 이데올로기 모델을 거부한다.
- 사민당은 노동 운동의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있다. 민사당은 독일과 전 세계적 노동운동, 그리고 반파시즘을 기반으로 한다.
- 동독 사민당은 서독 사민당과 반대로 자본주의를 비판하지만, 민사당은 그렇지 않다. 민사당은 국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 거리를 둔다.
- 민사당은 공익이 지배적인 자산 형태로 남기를 지지하지만, 사민당은 그렇지 않다.
- 사민당은 농업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자산 형태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민사당은 농업 생산 협동조합과 원예 생산 협동조합, 국민 소유의 대농장이 수십만 명의 생존을 위한 토대라고 생각한다. 사민당은 토지의 소유권 불가침성을 찬성하지 않는다.
- 동독 사민당은 서독 사민당으로부터 선거 지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 사민당은 민사당과는 달리 독립적이지 않다.
- 사민당은 동독의 서독 합병을 뜻하는 즉각적인 경제-화폐 연합을 지지한다. 민사당은 독일의 상호적 접근을 지지한다.
- 민사당은 양 독일의 완전한 탈군사화를 지지하지만, 사민당은 그렇지 않다.
- 사민당의 당 정체성은 민사당에 대한 거부적 태도와 독일 통일에 대한 지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민당은 민사당과 객관적인 대결을 벌일 수 없다. 반대로 민사당은 사민당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 한다.

출처 : 민사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1/142, 회의록 14/90 번, 첨부문서 4
민주사회주의 자료보관소 / 로자-룩셈부르크-재단

자료 8

민사당 쉐신 회의(1990. 9) 준비

1990년 6월 8일, 베를린

담당인/기관

민주사회주의당 (민사당)

내용

당 쉐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당의 쉐신 과정이 결산되어야 한다. 당 쉐신 회의는 민사당이 통일된 독일에서 당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당 쉐신 회의는 위원회와 학자, 지지 기반을 통해 준비되어야 한다. 민사당은 국내외의 초청 인사들로부터의 비판 내용을 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다. 다음의 5개 특별실무단의 구성이 제안될 것이다.

1. **역사 극복:** 사회 모델 정립과 사통당의 역할 규명
2. **강령과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 논의 상황은 비판적으로 결산되어야 하며, 통일 자본주의 독일에서의 민주사회주의 실행 가능성이 타진되어야 할 것이다.
3. **당의 민주화:** 현대적인 사회주의당의 새로운 “정형 (Typus)”과 당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문제.
4. **당원 구조:** 당원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5. **통일 독일에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민사당.** 강령과 정치력의 문제. 이 특별실무단은 전 동독 총리였던 한스 모드로프 (Hans Modrow)가 이끈다.

출처

당 수뇌부 위원회 결의안, 8/329, 회의록 31/90번, 첨부문서 4
 민주사회주의 자료보관소 / 로자-룩셈부르크-재단

자료 9

민사당 쇄신 회의(1990.9.8~9)를 위한 강령

1990년 7월 9일, 베를린

담당인/기관

민주사회주의당 (민사당), 독일사회민주당 (사민당)

내용

1. **역사 극복.** 과거 청산과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 없이는 당 쇄신은 불가능하다. 과거의 배타적 모델 (“진보” vs. “보수”)로부터의 전향이 시급하다. 사통당의 당 정형(Typus)은 쇄신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 아니었는가? KPD와 사통당 내에서 카를 리프크네히트 (Karl Liebknecht)와 로자 룩셈부르크 (Rosa Luxemburg) 이후에 진정한 민주주의적 견해가 존재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전통은 유지되어야 한다. 동독에서 실패한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동독의 유산 중 어떠한 것이 미래 독일에 대물림 되어야 할 것인가? 반대 세력의 영향력 역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2. **강령과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 “민주적 사회주의”란 사통당에 대한 거부를 뜻한다. 현실과 개인, 남녀평등은 민사당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변증법적, 물질주의적 자본주의 분석과 자본주의 비판은 필수적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모든 신기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명되었다. 그러나 진보적 원칙이 자본주의만의 특징인 것은 아니다.
3. **당의 민주화.** 민사당은 당의 구조와 조직을 변화하고 민주주의적인 체질을 키워나가야 한다. 특히 여론은 아래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갑작스럽게 생겨난 집단들과 직접 민주주의, 투명성, 연대는 중요하다. 다양한 연령 집단 간의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군 (Kreis) 단위 이상의 집단의 대표단은 남녀의 비율이 1:1로 구성되어야 한다. 상임당 기관은 축소되어야 한다.

자료 9

4. **당원 구조.** 민사당의 당원은 35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입당과 탈당 동기와 요인은 무엇인가? 민사당에는 여성 당원 (대다수가 신입 당원)과 사무직 직원이 많으며, 노동자와 간부, 중년의 연령 대는 적다. 순수하게 따져보면 당의 규모는 작아졌다. 당의 규모는 확장되어야 한다. 입당 최소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당 내 소규모 그룹에 신입 당원을 입당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5. **통일 독일에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민사당.** 화폐, 경제, 사회 연합을 통해 민사당은 독일 전역에서 실무를 수행해야 하며, 서독의 국민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민사당은 동독의 시민들도 대표할 것이다. 민사당의 성향은 반자본주의적이어야 하며, 민사당은 기존 체제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 내야만 한다. 민사당은 좌파 정당들에 대한 태도와 독일 내에서의, 특히 사민당에 대한 움직임을 규정한다.

출처

민주사회주의 자료보관소 / 로자-룩셈부르크-재단

자료 10

독일 총선 준비를 위한 민사당 당 대표회 결의안

1990년 7월 21일, 베를린

담당인/기관

민사당, 독일 연방의회 (Deutscher Bundestag)

내용

- 민사당은 5% 제한규정을 포함한 선거에 반대한다. 이는 비민주적이며,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 민사당은 단일 선거구에서 서독과 동독의 좌파 세력들과 연합해 민사당의 후보 명단에 동서독 좌파 후보들을 포함시키는 안 (Offene Liste: 독일은 1인2표제 선거로 1표는 지역구 입후보자에게, 다른 1표는 정당에 투표한다. 후자의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후보 리스트에 등재된 후보를 대상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 역주)을 통해 선거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독과 동독에서 상반된 선거 결과가 나타날 경우, 동독의 민사당은 Offene Liste로 의회에 진출해, 서독의 좌파 세력들을 민사당의 입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민사당은 선거전에서 서독의 좌파 세력을 지원할 것이다.
- 단일 선거구가 타결될 경우, “좌파 리스트 (Linke Liste)”와 선거 연합을 구성해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1990년 8월 말까지 특별 전당대회를 소집해, 공동 선거 강령과 정관을 결의해야 한다.
- 선거 강령의 토대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민주화, 기회 균등, 친환경화, 남녀평등 (모든 주요 분야에서의 남녀 비율을 포함),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업무 시간 단축, 경제 감독과 관리, 마이너리티의 평등화, 탈군사화 (NATO와 바르샤바 조약의 해체).
- 새로이 문을 열게 될 전(全) 독일 협력 사무소는 서독의 좌파 정당 및 단체들과의 다음과 같은 접촉을 관리한다. 1. 민사당 대표들이 독일 좌파 세력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민사당에 입당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취한다. 3. 서독에 있는 민사당의 연락 사무소와 연락을 취한다. 4. 서독 내 민사당 건설을 지원한다. 5. 문헌 발

자료 10

- 송 시스템을 확장한다. 6. 서독과 서 베를린 좌파 세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 민사당은 전(全) 독일 의회로의 진출과 선거를 통해 좌파/사회주의당/단체를 독일 전역에 구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 민사당은 양 독일의 근로자를 대표하고, 동시에 동독 국민들을 지원하며, 서독의 잠재 유권자들을 확보할 계획이다.

출처

민주사회주의 자료보관소 / 로자-룩셈부르크-재단

자료 11

서독에서의 민사당 주 조직 결성을 위한 전당대회 결의안

1990년 10월 13일, 베를린

담당인/ 기관

민사당

내용

- 좌파 리스트/민사당 지방 연합은 민사당 지방 연합으로서 구성될 수 있다. 그 전에 먼저 좌파 리스트/민사당 지방 연합이 해체되어야 한다. 제12차 독일연방의회 입후보자로 이미 선발된 후보들은 새로운 민사당 지방 연합의 후보 리스트에 의거하여 입후보할 수 있다.
- 지방 연합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선거 강령은 “강력한 좌파 야당의 구축”이다.
- 자문 위원회 (Beirat)는 여러 좌파 세력의 협력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 지방 연합의 대표들은 선거 시작 전까지 당 수뇌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1991년으로 예정된 제 2차 민사당 전당대회는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제 2차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전 독일 회의 (Kongress)가 2회 개최될 예정이다. 서독 지역 연합의 대표들은 정관 위원회 (Statutenkommission)과 기본 강령 위원회 (Grundsatzkommission)의 위원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출처

당 수뇌부 위원회의 결의안, 2/596, 회의록 56/90 번, 첨부문서 4
민주사회주의 자료보관소 / 로자-룩셈부르크-재단

자료 12

국가안전부(MfS) 문제에 관한 민사당 의장단 선언문

1991년 4월 15일, 베를린

담당인/기관

민사당, 민사당 의장단

내용

- 슈타지(MfS) 역사 청산. 민사당은 슈타지 역사 청산이라는 중요한 업무에 그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은 불가능하다. 슈타지 역사 청산은 구동독 체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슈타지에 관한 보도는 종종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정치인들에 대한 주제 역시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슈타지 역사 청산 이외의 문제들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 슈타지 활동 평가. 구동독 체제는 소련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서독의 투쟁 대상이었다. 슈타지 활동에 관한 책임은 구동독 체제의 정치 지도자들의 몫이지, 슈타지 요원들의 몫이 아니다. 슈타지는 결국 무장 저항 없이 해체되었다. 슈타지의 특정 활동들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나, 정당한 활동들도 존재했다. 민사당은 첩보 활동에 반대한다. 구동독 체제의 첩보 활동은 다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심판되어야 한다.
- 비공식 슈타지 요원. 비공식 슈타지 요원들의 활동은 공식 요원들의 활동과 근본적으로 그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슈타지의 모든 활동들은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 사통당과 슈타지. 슈타지의 상임 요원들은 모두 사통당 당원이었다. 슈타지 비공식 요원들은 타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 당이 없었다. 슈타지는 사통당의 결의 내용을 따랐으나, 사통당의 시, 군 단위의 지도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슈타지와 사통당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현재 민사당 당원이 된 과거의 사통당 당원들의 죄는 타 정당 당원들의 죄보다 크지 않다. 민사당에도 스탈린주의의 희생자는 존재한다.
- 구 슈타지 요원들을 위한 엠네스티. 지금까지 민사당은 구 슈타지 요원들을 위한 엠네

자료 12

스티에 대해 그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민사당 구 슈타지 요원들이 동독의 형법을 어겼을 경우 (예: 협박이나 공갈), 엠네스티를 찬성하지 않는다. 연방 독일의 형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허한다. 이는 특히 첩보 활동이 폭력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첩보 활동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 “범죄 조직”으로서의 슈타지. 민사당을 제외한 모든 연방의회 원내교섭단체들은 슈타지를 “범죄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슈타지의 수준을 히틀러 독일의 권력기관과 동등시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슈타지가 저지른 개별 범죄이다. 슈타지 요원들에게는 범죄 행위가 허용되지 않았다.
- 슈타지 문서 처리. 설득력 있는 문서들은 청산될 수 있어야 한다. 슈타지 요원들에 대한 문서는 보관 되어야 하며, 추후에 경우에 따라 폐기되어야 한다. 슈타지 요원들에 대한 문서는 제 3자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당사자들은 문서 인도권을 갖는다. 슈타지 문서들은 국내외 첩보기관에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슈타지 문서의 오용은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 과거 슈타지 요원들의 직업 활동 투입.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과거 슈타지 요원들은 일반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들이 공공 업무에 적합한 지에 관한 여부는 개별적인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 형법상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슈타지 요원들은 차후 직업 활동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슈타지 요원들의 연금 추가 축소는 불허한다.
- 슈타지 역사 추가 청산. 구동독 정부가 슈타지의 잘못에 어떠한 특혜를 주었는지를 조사한다. 국민들은 슈타지 청산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여야 한다. 과거 슈타지 요원들과 희생자들과의 공공 토론은 계속되어야 한다. 구 슈타지 요원들은 슈타지의 과거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슈타지의 과거를 낱알이 공개할 수 있는 구 슈타지 요원들은 민사당에 남을 수 있거나, 입당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책임의식이다. 진실 규명은 서독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시켜 준다. 동독으로 인해 히틀러 독일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 민사당은 구 슈타지 요원들에 대한 선입견에 반대한다.

B. 신설 정당

자료 13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IFM)의 호소문

1989년 3월 11일, 베를린

담당인/기관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IFM)

내용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이하 IFM)는 조직 단체도, 정당도 아니다. IFM는 다음의 내용을 지지한다.

- 평화와 인권 보호
-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권리와 의사 자유의 권리
- 군비 축소와 탈군사화
- 법치국가와 삼권분립
- 사회 구조의 분권화와 자치화

출처

http://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10/30582692_wegmarken_einheit3/index.html

자료 14

동독 사회민주당(SDP) 건설을 위한 제의

1989년 7월 24일, 니던도데레벤 (Niederndodeleben)

담당인/기관

동독 사회민주당,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SED)

내용

- 많은 사람들은 위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의 시급성으로 인해 국민 모두는 스스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 사통당의 지도력은 용납될 수 없다. 동독은 정치적 대안과 정치적 공공성, 민주적 조직 형태를 필요로 한다.
- 사회민주주의당 건립을 위해서는 이니셔티브 집단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 국가와 사회의 구분이 요구된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입장. 법치국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복지 국가와 환경, 연방주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 공동 경제, 자유 노조, 종교의 자유, 여성의 평등권,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자유 언론, 망명법.
- 외교적 입장. 독일의 2 국가 체제, 서독과의 특별 관계, 탈군사회, 군사연합 해제, 공정 무역, 독일 내 소수 민족과의 연대.

출처

사민당 수뇌부, 사민당 수뇌부 회의록,
1989년 9월 18일 회의파일

자료 15

드레스덴 시 “그룹 20”의 성명서

1989년 11월 10일

담당자/기관

그룹 20

내용

그룹 20은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드레스덴 시장에게 전달할 업무를 위임 받았다. 그룹 20은 비폭력 대화와 사회주의 사회를 토대로 하는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 언론 제한 해제
- 의사 표현의 자유
- 평화 시위와 집회의 허가와 보호

자료 16

“보라빛” 공세의 입장 표명
- 활동 계획서 -

담당인/기관

라일락 공세

내용

“보라빛 공세”는 기타 정당과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이다. 보라빛 공세는 독립 여성단체에 속한 자립 여성 이니셔티브이다.

- 여성 이니셔티브 “보라빛 공세”의 목표
 - 남녀평등
- 요구 사항
 - 모든 정치권력 기관의 남녀 비율 동등화
 - 성적 자기결정 (Sexuelle Selbstbestimmung)
 -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여성학 연구 지원

출처

Lila (보라빛 공세) 활동 계획서, 연도 및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제 2차 초안

자료 17

정당 설립을 위한 호소문/신포럼(Neues Forum)

담당자/기관

신포럼

내용

자매동맹인 “신포럼 정당”이 설립되어야 한다.

- 신포럼 정당 설립으로 지방 정부에서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 신포럼은 많은 국민들을 위한 대규모 기반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출처

베를린 로베르트-하베만 자료보관소 (Robert-Havemann-Archiv Berlin)

자료 18

사통당 당원 전원을 향한 호소/신포럼

1989년 10월 6일

담당자/기관

신포럼

내용

2백만 사통당 당원들은 동독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정치적 실체로서, 사회 쇄신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엄청난 전문 지식과 지도 경험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바, 신 포럼은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이다.

출처

신포럼 - 동독 시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자화상, 노조 건설 활동을 위한 자료, 독일노조 연합 (DGB) - 연방 대표, 노조 건설 부서, 장소 및 날짜에 관한 기록 없음

자료 19

“동독 사회민주주의당”
이니셔티브 그룹의 호소문

1989년 9월 12일

담당자/기관

“동독 사회민주주의당” (SDP) 이니셔티브 그룹

내용

“동독 사회민주주의당” 이니셔티브 그룹은 아래의 요구 사항을 포함한 정당 건설을 제안한다.

- 법치국가와 삼권분립
-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 연방주의
- 사회주의 시장경제
- 자유 노조

출처

동독 사민당 - SDP/SPD 당 수뇌부, 21SDPA000002

자료 20

“민주주의 지금”의 호소문

1989년 9월 12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민주주의 지금 (Demokratie Jetzt)

내용

시민운동단체 “민주주의 지금”을 위한 호소문

- 모든 이를 위한 사회적 평등과 자유, 인권을 지지
- 법치국가 지지
- 우리 사회의 다원주의

출처 : 베를린 로베르트-하베만 자료보관소

자료 21

사통당 구 당원과 사통당 당원으로 남아있는 모두를 향한
동독 사민당의 호소문

1989년 말

담당자/기관

동독 사회민주당,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내용

- 사통당은 더 이상 구원이 불가능하다.
- 사통당에 민주사회주의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SDP에 입당해야 한다.

출처

독일 기독교 정보/문서관리소

자료 22

“사회적, 친환경적 연합”을 위한 호소문/민주적 개혁

1989년 10월 2일

담당자/기관

민주주의 출발 (Demokratischer Aufbruch) (DA)

내용

- “민주주의 출발 - 사회, 친환경적” 연합 설립에 관한 제안
- 민주주의 쇄신을 위한 요구 사항
 - 국가와 정당(들)의 분리
 - 자유 여론의 발전과 여론과의 자유로운 접촉
 - 자유로운 의사 형성
 - 산업화 사회를 친환경 사회로 전환

자료 23

“민주적 개혁”의 라이프치히 강령

1989년 12월 17일

담당자/기관

민주주의 출발 (DA)

내용

-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 자유, 평등, 비밀 선거를 통한 대의 정치
 -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리
 - 법치국가
 -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 경제 활성화, 산업화 사회를 친환경 사회로 전환
 - 자산 형태
 - 효율 경제의 증명
 - 무역 관계
- 쇠신된 사회에서의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자유
 - 교육 분야 재정비
 - 언론과 정보 접촉의 자유
 - 종교
- 유럽의 평화 질서 내에서의 독일의 국가적 통일지지

자료 24

인민의회 총선에서부터 기민련(CDU) 합당까지/(민주혁신당, DA)

1990년 10월

담당자/기관

민주주의 출발 (DA)

내용

- 네 명의 민주주의 출발 의원 라이너 에펠만 (Rainer Eppelmann), 브리기타 쾨글러 (Brigitta Kögler), 한스 가이즐러 (Hans Geisler), 클라우스 슈츠 (Klaus Schulz) 튀링엔 지방 정부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내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네 명의 의원은 기민련과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
- 선거 후보 리스트 연합인 “독일 연합 (Deutsche Union)”은 기민련 및 포럼당과 함께 지방의회 선거전에 돌입한다. 전체적인 결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 1990년 6월 30일 중앙위원회는 (Hauptausschuss) 포츠담에서 민주주의 출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주의 출발은 독립 정당으로서는 미래가 없기에, 민주주의 출발을 기민련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 1990년 9월 8일 슈트라우스베르크 (Strausberg)에서 열린 최종회의 후 민주주의 출발의 법률적 존립은 구동독 몰락 3일 전에 끝이 났다. 민주주의 출발에 남아있던 당원 대부분은 기민련에 입당했다.

출처

독일을 위한 연합: 기민련, 민주주의 출발, 독일 사회주의 연합 1989/1990, Jäger, Wolfgang/Walter, Michael. 1998. *Die Allianz für Deutschland: CDU, Demokratischer Aufbruch und die Deutsche Soziale Union 1989/1990*. Köln, Böhlau. S. 144~147

자료 25

동독 사회민주당(SDP)
설립강령

1989년 10월 7일, 슈반테 (Schwante)

담당자/기관

동독 사회민주주의당 (SDP), SDP 설립을 위한 이니셔티브 그룹, 독일민주공화국

내용

- SDP 설립을 위한 이니셔티브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중심의 사회민주주의가 건립되어야 한다.
- 동독의 모든 민주주의 집단과 이니셔티브, 인물들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 점점 심각해져 가는 국가의 불안을 막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민주화가 달성되어야 한다.

출처

언론 보도 AP-085 4 pI. 195 APD3801. 사민당 수뇌부, 의장단 회의파일 02.10-16.10.1989

자료 26

동독 사회민주당 정관

1989년 10월 7일

담당자/기관 : 동독 사회민주주의당

내용

- 기본 원칙. SDP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평등, 환경보호의 의무를 느끼는 모든 이를 하나로 묶는다. 사민당은 인권(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 책임, 자유)을 위해 노력한다.
- 당의 구조. 지역 단위의 총회, 군 단위 이상의 전당대회. 남녀 대표 선출. 동독 지역에서는 30 명의 당원으로 구성된 지역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입당 조건. 정관의 기본 원칙에 동의하며, 18세 이상인(이후 16세로 변경) 자는 모두 당원이 될 수 있다. 당 위원회에 대해서는 감독 위원회가 결정한다.
- 선거. 일반 당원들은 소속 집단의 제 1, 2 대변인과 총무를 지도부 위원으로 선출한다. 당원 모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전당대회. 군 단위 이상부터는 매년 업무 규정을 포함한 전당대회가 열린다. 전당대회는 당 실무의 방향과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결의한다. 전당대회는 재정, 감독, 관리 위원회를 선출한다.
- 재정. SDP는 정당 활동을 위한 재정을 당비와 기부를 통해 마련한다. 당비는 지방 전당대회가 결정한다. 대규모 기부금의 경우 출처를 공개한다.
- 정관의 첨부문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입장. 법치국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최저 생계비 보조, 국가와 사회의 분리, 시민적 권리, 언론의 자유, 연방주의,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자유 노조, 남녀평등, 데이터 자료 보호, 탈군사화, 여행의 자유, 망명법, 국수주의와 인종주의 반대. 외교적 입장. 국제기관의 강화, 군사연합 해제, 독일의 2 국가 체제, 서독과의 특별 관계, 독일 내 소수 민족과의 연대.

출처 : 베를린 로베르트-하베만 자료보관소

자료 27

독일 통일을 위한 동독 사회민주당
대표자 회의 선언문

1990년 1월 14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동독 사회민주당

내용

-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독일 국가의 통일을 지지한다.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목표는 통일 독일이다.
-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적으로 지도된 동독의 정부가 나타날 것이다. 이 정부는 경제공동체와 통화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유럽 이웃국가과의 국경선은 불가침이다.
- 동유럽의 민주화와 성장이 지원되어야 한다.

출처

동독 사민당 당원 명부, SDP/SPD 당 수뇌부, 대표자 회의와 전당대회: 베를린에서 열린 대표자 회의, 12. -14. 01. 1990, 21SDPA000005

자료 28

독일 사회주의 연합 (Deutsche Soziale Union)

1990년 3월

담당자/기관

독일 사회주의 연합

내용

- 설립
 - 1990년 1월 20일 “Goldene Krone” 호텔에서 11개 그룹의 연합을 통해 설립
 - 독일 사회주의 연합 정당은 처음부터 서독의 연합당, 특히 바이에른 주의 CSU의 자매정당으로 규정되었다.
- CSU 측의 대규모 재정 지원
- 인민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 연합 “독일을 위한 동맹”
- 1990년 5월 독일 사회주의 연합은 과거의 위성정당이었던 “민주 농민당 (Demokratische Bauernpartei) (DBD)”과 접촉한다. 그러나 합당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 디스텔 (Diestel)과 에벨링 (Ebeling)을 선두로 간부진을 비롯한 여러 당원들이 독일 사회주의 연합을 탈당했다.

자료 29

동독의 녹색당 설립을 위한 이니셔티브

1989년 11월 5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동독 녹색당

내용

- 동독의 녹색당 설립을 위한 결의안
- 당의 목표:
 - 국가의 지속적 친환경 개편
 - 보편적이며 완전한 무장해제를 통한 영구적인 평화 확보
 - 제한 없는 남녀평등

자료 30

1990년 선거 연대를 위한 선언문/녹색당

1990년 1월 3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토마스 셸 (Thomas Sell), 민주주의 출발

콘라트 바이쓰 (Konrad Weiß), 민주주의 지금

라인하르트 바이쓰훈 (Reinhard Weißhuhn),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

마르틴 구르차이트 (Martin Gurzeit), 사회민주주의 당

베른트 게르케 (Bernd Gehrke), 좌파 연합

내용

민주주의 출발, 민주주의 지금,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 사회민주주의 당, 좌파 연합은 지금까지의 집권 정치 세력을 해체시키기 위해 1990년 5월 6일로 예정된 인민의 회 선거에 공동 출마할 것을 결의한다.

출처

베를린 로베르트-하베만 자료보관소

자료 31

슈타지 요원 대상
사회 재편입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촉구/녹색당

1990년 1월 15일

담당자/기관

녹색당

내용

녹색당은 원탁회의와 동독 정부에 구 슈타지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재편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출처

원탁회의, 제 7차 회의, 5항

자료 32

맑스주의적 정당 창당 그룹/카네이션

1989년 12월 10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카네이션

내용

카네이션은 광범위한 경제 개혁과 사회 개혁을 촉구한다.

- 역사 청산
-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광범위한 국가 감시
- 국민 개개인 모두를 위한 자료 보호의 도입
- 법치국가적 원칙 발표

출처

디 악치온 (Die Aktion) 지, Zeitschrift für Politik, Literatur, Kunst (정치, 문학, 예술 전문 잡지), 60/63호, 1990년 1월, 발행 10주년

자료 33

독립 노조 설립을 위한 발기문

1989년 12월 20일

담당자/기관

독립 노조 이니셔티브

내용

모든 근로자들의 독립 노조 건설 참여를 촉구한다.

- 우리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다.
- 우리는 생산의 목적과 형태에 대한 (영업장에서부터 인민의회에 이르기까지) 의사 결정 참여를 원한다.
- 1990년 1월 15일까지 우리는 대안적인 정관 초안을 제출할 것이다.

출처

베를린 로베르트-하베만 자료 보관소

자료 34

독립사민당(USPD) 설립에 관한 단상

1990년 1월

담당자/기관

독일 독립사민당(USPD)

내용

독립사민당은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을 이어갈 것이다.

- 새로이 창당한 독립사민당은 민주사회주의와 정당과 국가의 즉각적인 분립과 법치주의를 지지한다.
- 정당 강령 - 경제와 보건 및 환경 정책, 사회 정책의 탈중앙화

출처

할레 시 자유, 사회주의 일간지 (Freiheit, Sozialistische Tageszeitung für den Bezirk Halle), 1990년 1월 13일자, 11번 기사

쾨니히스브루헨 차이퉁 (Sächsische Zeitung), 1990년 1월 24일자, 20번 기사 - 발간 45주년, 정치, 경제, 문화 전문 일간지, 출판사: Verlag Sächsische Zeitung

자료 35

독일공산당(KPD)부활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토론문

1990년 2월

담당자/기관

독일공산당 (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내용

우리는 독일공산당 창당자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 평화와 군비축소를 지지한다.
- 2 독일 주권 국가 체제를 지지한다.
- 인간의 개인적 자유와 다양한 의견을 지지한다.
- 국민이 주인인 강력한 산업경제를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개발하는 것을 지지 한다.
- 성과 위주의, 사회적으로 공평한, 친환경적인 사회 구축을 지지한다.
- 공평한 사회 정책을 지지한다.

우리는 동독의 안정과 자유, 민주, 비밀 선거의 방해 없는 준비를 위해 모드로프 (Modrow) 연정 정부를 지지한다.

출처

라우지처 룬트샤우 (Lausitzer Rundschau),

1990년 2월 5일, 30번 기사, 발행 29주년, 독립 일간지

자료 36

동독 인민의회 의장단 제안서

1990년 2월 2일

담당자/기관

동독 인민의회, 제 9차 회기

내용

공화주의당 (Die Republikaner) 당원과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주의와 네오파시즘 세력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와 시민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 인민의회 의장단은 동독 영토 내 공화주의자 당의 활동 금지를 신청한다.
- 이러한 활동 금지 조치는 공화주의자 당 이외의 이름으로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후속 조직 혹은 보완 조직에도 해당된다.

출처

원탁회의, 제 11차 회의, 1990년 2월 5일, 정보 11/2, 인쇄물 64번

자료 37

좌파 민주주의 총연합을 위한 호소문

1990년 2월 5일

담당자/기관

독일공산당 (KPD)

내용

사통당-민사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사통당-민사당은 앞으로의 평화적 사태 진전을 위해 중국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좌파 민주주의 운동단체들은 현재의 격동기에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의회 진출을 위해 투쟁할 수 있을 것이다.

• 목 표

-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평화적이며 비폭력적인 발전
- 인도주의와 관용
- 동독 국가를 최소한 1994년까지 유지

출처

프라이에스 보르트 (Freies Wort) 지, 1990년 2월 5일자, 30번, 남튀링엔 지역의 독립 일간지, 창간 39주년

자료 38

시민 위원회 “노르만넨 거리”

1990년 2월 9일

담당자/기관

시민 위원회 노르만넨슈트라세 (Normannenstraße)

내용

기본 원칙과 목표

- 시민 위원회 노르만넨슈트라세는 동독 정부를 통한 슈타지 해체를 객관적이며 건설적인 감독 활동을 통해 지원하는 감독 조직이다.
- 원칙
- 위원회의 업무 방식

출처

베를린 마티아스-도마슈크 자료보관소 (Matthias-Domaschk-Archiv)

자료 39

“녹색 동맹” 설립을 위한 호소문

1989년 11월

담당자/기관

녹색 동맹 (Grüne Liga)

내용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 행동 연합 설립. 친환경적 국가 개편을 위해 노력하는 기존 그룹과 신설 그룹 모두의 연합을 촉구한다.

출처

할레쎄 레폼차이퉁 (Hallesche Reformzeitung), 신설 민주주의 운동 단체와 정당의 목소리, 1990년 2월 1일, 제 3호

자료 40

신설 정당 및 정치 연합

| 정당, 시민운동단체, 정치 그룹 | 설립 일자 | 1989년 가을/1990년 초 지도 당원 |
|--|--|---|
| 민주주의 지금 / DJ (Demokratie Jetzt) | 1989년 9월 12일 | Hans-Jürgen Fischbek, Ludwig Mehlhorn, Ulrike Poppe, Wolfgang Ullmann, Konrad Weiß |
| 민주주의 출발 / DA (Demokratischer Aufbruch) | 이니셔티브 그룹 설립일: 1989년 6월, 정당 구성일: 1989년 10월 30일, 창립 전당대회: 1989년 12월 16,17일 | Fred Ebeling, Rainer Eppelmann, Brigitta Kögler, Angela Merkel, Erhard Neubert, Günther Nooke, Rudi Pahnke, Edelbert Richter, Wolfgang Schnur, Friedrich Schoriemmer, Christiane Ziller, Herbert Wirzewski |
| 독일 포럼 당 (Deutsche Forumpartei) | 1990년 1월 27일 (창립 전당대회) | Jürgen Schmieder |
| 독일 사회주의 연합 / DSU (Deutsche Soziale Union) | 1990년 1월 20일 | Peter-Michael Distel, Hans-Wilhelm Ebeling, Stefan Sabottka, Hansjoachim Walter |
| 통일 지금 (Einheit Jetzt) | 1990년 2월 25일 | Heiko Kühne |
| 자유 민주주의 정당 / F.D.P (Freie Demokratische Partei) | 1990년 2월 4일 (창립 전당대회) | Bruno Menzel, Jürgen Neubert, Peter Thietz, Werner Wiemann |
| 녹색 당 (Grüne Partei) | 1989년 11월 24일 | Judith Demba, Marianne Dörfler, Friedrich Heilmann, Carlo Jordan, Viktor Liebreuz, Dorit Nessing-Stranz, Mathias Platzeck, Henry G. Schramm, Christine Wieske, Vera Wollenberger |
| 녹색 동맹 (Grüne Liga) | 1990년 2월 3일 (창립 총회) | Gunnar Böhmke, Helmut Geppe, Gisela Henze, Klaus Schlüter |
|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 / IFM (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 1985년 10월 | Werner Fischer, Gerd Poppe, Thomas Rudolph, Wolfgang Templin |
| 카네이션 (Die Nelken) | 1990년 1월 13일 | Rainer Bartscher, Michael Cyollek, Brigitte Kahnwahl |

자료 40

| 정당, 시민운동단체, 정치 그룹 | 설립 일자 | 1989년 가을/1990년 초 지도 당원 |
|--|---|---|
| 신 포럼 / NF (Neues Forum) | 1989년 9월 9일 | Bärbel Bohley, Joachim Gauck, Katja Havemann, Rolf Henrich, Ingrid Köppe, Heiko Lietz, Sebastian Pflugbeil, Jens Reich, Reinhard Schult, Werner Schulz, Hans-Jochen Tschiche |
| 동독사민당/사민당 (SDP/SPD) | 1989년 8월 26일 설립을 위 하 촉구, SDP 설립일: 1989 년 10월 7일, 지방 대표자 회 의에서의 SPD 당명 변경일: 1990년 1월 13일 | Angelika Barbe, Ibrahim Böhme, Helmut Becker, Stefan Finger, Martin Gutzeit, Regine Hildebrandt, Karl-August Kamilli, Markus Meckel, Arndt Noack, Steffen Reiche, Sybille Reider, Walter Romberg, Emil Schnell, Frank Terpe, Wolfgang Thierse |
| 독일 독립사민당 / USPD (Unabhängige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1990년 2월 16일 | Steffen Hultsch |
| 독립 여성 연합 / UFV (Unabhängiger Frauenverband) | 1989년 12월 3일 | Petra Bläss, Tatjana Böhm, Brunhild Friedel, Ines Merkel, Christiane Zachen, Eva Schäfer, Christiane Schindler, Petra Wunderlich |
| 좌파 연합 (Vereinigte Linke) | 1989년 9월 | Jutta Braband, Bernd Gehrke, Thomas Klein, Thomas Krüger, Herbert Millitz, Hans Scherner, Marion, Seelig, Conny Smolny |

출 처

동독 연감 '90. 자료, 정보, 수치, DDR Almanach '90. Daten, Information, Zahlen, Stuttgart, München 1990
피셔 세계 연감. 동독 특별 호. 연대기, 이름, 정당, 선거 결과, 전망, Der Fischer Weltalmanach. Sonderband
DDR. Chronik, Namen, Parteien, Wahlergebnisse, Perspektiven, Frankfurt am Main 1990.

부상하는 정당들. 1990년 3월 18일 인민의회 선거 이전의 동독 반공산주의 정당들과 정치적 연합,
Weilemann, Peter R.; Meyer zu Natrup, Friedhelm B.; Bulla, Marchel; Pfeiler, Wolfgang; Schüller, Ulrich:
Parteien im Aufbruch. Nichtkommunistische Parteien und politische Vereinigungen in der DDR vor der
Volkskammerwahl am 18. März 1990, Melle 1990.

구동독 마지막 해의 정당과 정치 운동, Wutke, Carola; Musiol, Berndt (Hrsg.): Parteien und politische
Bewegungen im letzten Jahr der DDR, Berlin 1991.

우리는 국민이다. 독일 혁명의 전단, 호소문, 글, Schuddekopf, Charles (Hrsg.): Wir sind das Volk.
Flugschriften, Aufrufe, und Texte einer deutschen Revolution, Reinbeck bei Hamburg 1990.

C. 당 합병

자료 41

독일기독교민주주의연합 (동독)

담당자/기관

동독 독일기독교민주주의연합 (기민련)

내용

- 기민련은 1945년 6월 26일 소련 점령 지역 (SBZ)에 설립되었다. 독일의 소련군사 행정부 (이하 SMAD)는 반파시즘 성향의 민주주의 정당들의 소련 점령 지역 내 정당 설립을 승인해 주었다. 이는 베를린에 위치한 정당 중앙 사무소들을 통해 독일의 정당 건설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었다.
- 기민련의 업무는 SMAD에 의해 여러 방식으로 방해를 받았다. 기민련의 내부 행사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는 SMAD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 서독으로 탈출한 소련 점령 지역의 기민련 당원들의 조직인 망명(Exil)-기민련. 이 조직은 서독 기민련으로부터 동독 기민련의 대리 기관으로 간주되었으며, 지방 연합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 1990년에 실시된 인민의회 선거에서 동독 기민련은 민주혁신당(DA), 독일 사회주의 연합(DSU)과 함께 “독일을 위한 동맹”이라는 선거 연합을 구성했다.
- 1990년 10월 1,2일에 동독 기민련은 자매 정당인 서독 기민련과 합당했다. 로타 드 메지에르 (Lothar de Maiziere)는 초대 기민련 부대표직을 맡게 된다.

자료 42

기민련(CDU) 강령

담당자/기관

동독 기민련 (CDU)

내용

- 정치 시스템
 - 사통당의 지배적 역할 해체, 정당과 국가의 엄격한 분리, 사회주의와의 명확한 거리 두기, 법치국가 신봉
- 경제 정책에 관한 입장
 -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 공장 내 노조의 입지 개선
- 내독 문제, 외교 및 안보 정책
 - 자유롭고 통합된 유럽 안에서의 국민들의 자결권을 바탕으로 하는, 연방제 과도기를 거친 독일의 국가적 통일.
 - 독일의 정치적 목표는 당 대표가 연설 끝부분에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인 것은 함께 성장해야한다’, ‘국가 연합 내의 통일’이다.

출처

콘라트-아덴아우어 재단 (Konrad-Adenauer Stiftung) (발간). 1990: 부상하는 정당들. 동독의 반공산주의 정당들과 정치적 통일. *Parteien im Aufbruch. Nichtkommunistische Parteien und politische Vereinigungen in der DDR* Bad Godesberg. S. 20-23

자료 43

인민의회에서부터 기민련 합당까지 - 동독 기민련

1990년 10월

담당자/기관 : 동독 기민련 (CDU)

내용

- 당 수뇌부는 1990년 5월 21일과 28일의 제 6차 회의에서 내용과 조직에 있어 양 당의 합당을 추진하기 위해 자매당과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양 당은 공동 선거 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 양 당의 합당이 결정된 후 의장단과 당 수뇌부의 당원들은 자매당의 해당 회의에 참석하였다. 당 자산 처리에 관한 결정은 일차적으로 연기되었다.
- 서독 기민련과의 합당 추진과 함께 5월부터는 과거의 위성 파트너였던 DBD (독일농민당)와의 합병 회담이 진행되었다. 농민당의 전망 부재로 인해 농민당 의장단은 1990년 4월 17일 잠재 파트너들과의 회담 개시를 결정하였다. 사민당 측은 DBD에 큰 관심을 보였고, 동서독 SDP 당은 DBD의 잠재 유권자 확보에 관심을 보였다. 그 밖에 동독 기민련은 “농촌에서의 신속한 입지 확보”를 위해 DBD의 구조를 이용하고자 했다.
- DBD-CDU 합병 결의에 대한 논거
 - 지금까지의 DBD 당원의 이익을 기민련에서 더욱 개선된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회는 DBD-CDU 합병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 기민련 측이 양당 합병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 동독 농촌 지역에서의 입지 개선
- 1990년 7월 21, 22일 부르크샤이딩엔 (Burgscheidungen)에서는 DBD와 기민련의 당 수뇌부 공동 회의가 열렸다.
- 서독 기민련과의 합병에 관한 결정: 1990년 9월 8일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기민련 지역 연합 (CDU-Kreisverbände)은 베를린 지방 공동 연합으로 연합했다.
- 서독 기민련과 동독 기민련은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1990년 10월 1, 2일에 합당했다.

출처 : 독일을 위한 연합: 기민련, 민주혁신당, 독일 사회주의 연합 1989/1990, Jäger, Wolfgang/Walter, Michael. 1998. *Die Allianz für Deutschland: CDU, Demokratischer Aufbruch und die Deutsche Soziale Union 1989/1990*. Köln, Böhlau. S. 70-95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Ⅱ. 정당 자산

| | |
|------------|-----|
| ■ 수록자료 개관 | 98 |
| - 자료 44~51 | 105 |

수룩자료 개관

1989년 12월 8, 9일과 16, 17일의 특별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사통당은 1989/1990년의 과도기간 동안 정당 자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한다.

정당 자산을 지키고, 사통당/민사당 소유물에 대한 공격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사통당은 1989년 12월 21일 여러 부서와 분야를 통합한 당 대표회 소속 임시 실무단인 “정당 자산 보호(Sicherung des Parteivermögens)”를 창설한다. 이 임시 실무단에는 정당의 재무 관리 부서, 정당 운영 부서, 경제 운영 관리부서, 교통부서, 국가 및 법치 사안 관리부서, 재정-물가관리부의 국가 자산 및 신탁 자산(Treuhandvermögen) 관리부서, 기획 재정부서, 문화부서, 베를린 시 대표부, 대법원, 베를린 국립 공중 사무소, 동독 자산 권리 보호청(Amt für den Rechtsschutz des Vermögens der DDR)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당 자산 보호를 위한 임시 실무단은 1990년 2월까지의 사통당-민사당의 자산을 총 결산해야 했으며, 이에 대한 계획을 1990년 1월 15일까지 수립해야만 했다. 이는 즉, 어떠한 물질적 토대(예: 당 소유 공장 및 사업장, 토지, 당 기관의 시설, 당 소속 학교, 주택, 숙박 시설 등)가 앞으로의 당 업무를 위해 필요한가를 조사하고 계획하는 것을 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 근무 노동자의 권리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 불필요한 생산 시설을 제 3자에게 넘겨야 한다는 제안이 마련되어야 했으며, 정당 자산 보호와 관련된 계획들과 당의 새로운 재정 정책 원안이 1990년 1월 15일까지 보고되어야 했다(자료 44: 사통당/민사당 정당 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

정당 자산 보호를 위한 임시 실무단의 결정 제안과 당 대표회 의장단의 동의에 따라 사통당/민사당의 토지와 건물 일부는 매각되었으며, 일부는 국가 기관에 반환 및 제공되었고, 그 밖에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건강 및 복지 기관에 무료로 기부되거나, 가치 보상 없이 맞교환 되었다. 사통당/민사당 소유 주택과 주말 농장 토지는 일부 당시 사용자들에게 매각 제안되었으며, 현 사용자들이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고자 희망하는 자의 주택과의 맞교환이 주선했었다. 정당의 주요 기관들은 유한책임회사(GmbH), 혹은 기타 기관으로 변경되거나, 국민들의 소유물로 이전되었다(자료 45 a-c: 사통당/민사당 자산 매각 및 소유권 이전, 자료 46 a-h: 사통당/민사당 기관 전환).

이러한 과정에 변화가 일어난 전환점은 1990년 5월 31일에 내려진 동독의 정당과 대중 조직의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이하 UKPV) 구성에 관한 인민의회 결의였다. UKPV의 설립은 한 마디로 사통당/민사당을 비롯한 동독 정당들에 큰 타격이 아니라 할 수 없었다. 동독 시절과 1990년 3월에 열린 동독 최초의 인민의회 자유 총선 이전까지, 사통당(민사당)과 사통당/민사당의 위성정당 및 대중조직들은 엄청난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UKPV의 설립으로 인해 이들은 정치적 경쟁력이 상당 부분 와해될 위험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UKPV의 임무는 동독의 정당 간 정치적 경쟁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1990년 2월 21일에 통과된 정당법 변경 법안으로 인해 20, 20a, 20b 조가 정당법에 추가되었다. 추가된 조항의 주요 내용은 모든 정당과 정당 소속 국내의 대규모 조직의 자산 가치와 그 자산의 신탁 관리에 관한 정부 차원의 보고 위원회 구성이었다. 이 조항은 동독의 정당과 대규모 조직, 기타 법인으로 하여금 보유 자산의 가치를 공개하고, 독립 위원회 대표의 동의 하에서만 보유 자산 내역을 변경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주요 감사 대상은 1989년 10월 7일자 기준, 혹은 그 이후에 동독의 모든 정당 및 대중 조직, 법인의 자산으로 등록된 예치금과 토지, 부동산, 공장, 기업 지분, 판매 수익, 기타 유동자산 등이었다(자료 47: 동독 정당 및 대중 조직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1990년 2월 21일 정당법 변경 법).

이러한 법안을 토대로 게오르그 라이니케(Georg Reinicke)를 대표로 하는 동독 정당 자산 검증 독립 위원회가 1990년 5월 31일 당시의 동독 총리였던 로타 드 메지예에 의해 설립되었다. 동독의 정당들과 조직들은 자산 내역 공개를 권고 받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통당의 부대표 볼프강 폴(Wolfgang Pohl)은 국내외 기자들이 참석한 1990년 6월 13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자산을 공개했다. 이날의 발표에 따르면 1989년 12월 31일 기준 사통당/민사당은 일반 예산 외에 3조 410억 동독 마르크와, 당의 연기금과 게넥스 사(Firma Genex)에 대한 채무, 위성정당에 대한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배정된 5천 5백만 동독 마르크, 유동성 기금 26억 동독 마르크를 보유하고 있었다(자료 48: 민사당 정당 자산 내역).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정당과 대규모 조직 자산의 신탁 관리는 연방 정부가 설치한 UKPV에 위임되었다. 이러한 위임의 법적 토대는 1990년 5월 31일 인민의회에 의해 개정

된 정당 법 (§ 20a, §20b)과 1990년 8월 31일자 통일 조약, 1991년 6월 14일자 연방정부 정당 자산 위원회 법령, 1992년 7월 14일자 자산법이다(자료 49: 동독 정당 및 대중 조직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 설립과 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자료 51: 동독 정당 및 대중 조직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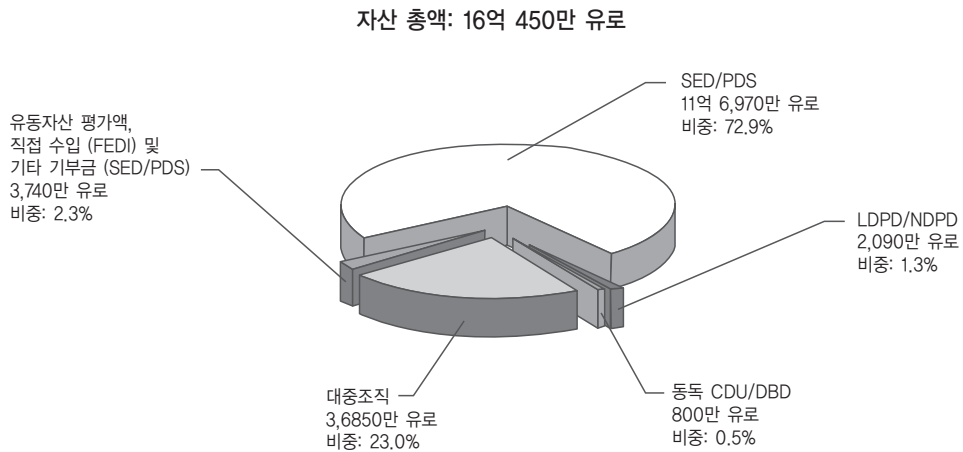
UKPV는 베를린에 위치한 사무국을 통해 관리되었으며, 16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UKPV 베를린 사무국에는 162 개의 공공 분야 일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으로 충당된 인원은 85명에 불과했다. 85명의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는 8~12 명의 직원들만이 UKPV 베를린 사무국에서 근무했다. UKPV는 검찰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UKPV는 기술적인 지시로부터 독립적이었으며, 이러한 독립성으로 인해 UKPV는 국내외 모든 협상 파트너들로부터 인정받았고 협력관계를 창출하였다.

2006년의 조직 해체 이전까지 16년 간의 집중적인 업무 활동을 통해 얻어낸 UKPV의 총 업무 결산은 UKPV의 최종 보고서에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소개되었다(자료 51: 동독 정당 및 대규모 조직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1. UKPV의 신탁 관리를 받은 정당과 조직들은 사통당/민사당, 위성정당(동독 기민련, DBD, LDPD, NDPD), FDGB(자유 독일 노조 연합(Frei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 FDJ(자유 독일 청소년(Freie Deutsche Jugend), 동독 평화회의 회(Friedensrat der DDR)와 같은 정당 소속 대규모 조직이다. (B.I.2. 장. 독립 위원회의 업무 부문)
2. UKPV를 통해 보호되고 관리된 자산(정당 및 조직 자산)의 총액은 16억 450만 유로이다. 아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총 자산의 3/4 가량이 사통당/민사당의 자산이다. 이는 동독에서 사통당의 재정 권력이 어느 수준이었던지를 확인해 주는 증거이다.
3. 정당 자산은 현 정당과의 조정 및 포기 합의와 조사 및 압류를 통해 UKPV의 신탁 관리를 받게 되었다.

기민련은 이미 1990년 11월 15일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 THA)과 UKPV 측에 동독 정당 기민련과 DBD의 자산 가치 모두에 관한 포기 선언을 하였다. 민사당은 사통당/민사당 자산의 물적, 법적 유산과 관련된 UKPV의 모든 결정에 거듭 이의를

그림 3 | 동독 정당 및 대중 조직의 자산(2005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S. 27)

제기하고, 행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1995년에는 형사 재판 소송을 통해 1990년 민사당 정당 본부(Parteizentrale)가 불법으로 사용한 과거 자산에 대한 환원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민사당은 불법으로 사용한 과거 자산을 환원하는 대신, 토지와 예술품 및 귀중품, 영업시설 네 가지를 제외한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자산과, 앞으로 밝혀질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포기할 것을 선언하였다. F.D.P.는 1992년 4월 LDPD와 NDPD의 자산 환원을 신청하였다. 오랜 협상 끝에 UKPV는 1995년 11월 LDPD와 NDPD의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조정 심사를 선언하였다.

검찰의 공권력 투입을 통해 17개 사안에 대해 1992년 민사당 관할 지역과 같이 50개가 넘는 지역에서 조사와 압수가 진행될 수 있었다. 전환기 이전에 해외 혹은 해외를 통해 이전된 정당 및 대중 조직의 자산에 대해 UKPV는 헝가리와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스위스에서 조사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UKPV는 국내 조사와 달리 해외 조사에서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조사 내용의 복잡성 때문이 아닌, 해외 조사가 비교적 늦게 (1998/1999년)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해외 조사가 시

작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증거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은행과 무역회사들의 법정 자료 보관 기간이 대다수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C.I 장. 국내 자산, C.II 장. 해외 자산)

4. 해외 조사 부문에 있어 특수한 사례는 Novum 사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해당 기업이 동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통당 소속 회사인지, 아니면 오스트리아 국민이자 기업의 대표인 루돌피네 슈타인들링 (Rudolfine Steindling) 여사와 해당 기업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스트리아 공산당 소속 회사인지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이었다. 제 1심에서 베를린 행정재판소는 Novum이 사통당 소속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대로 베를린 최고행정재판소는 UKPV가 새로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통해 슈타인들링 여사 측의 변호인단이 소송 사기와 형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서류 조작을 저질렀음을 밝혀냈다. 이를 근거로 베를린 최고행정재판소는 Novum이 사통당 소속 기업이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슈타인들링 여사와 Novum 사의 항소 신청이 2004년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어, 베를린 최고행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취리히에서는 1심을 통해 슈타인들링 여사와 AKB 민간 은행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자를 포함한 총 소송액은 약 2억 3천 7백만 유로에 달한다.

슈타인들링 여사와 Novum 사 측은 베를린 최고행정재판소와 연방행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연방행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출하였다. 헌법 소원에 대한 심리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절차는 아직도 개시가 가능한 상태이다(C.II.장, 특수 사안 “Novum”).

5. 신탁관리청과 통일 특수과제청(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BvS)) 간의 협력은 1992년 7월 23일에 작성된 원칙에 근거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UKPV는 해당 자산을 조사하며, 이 자산은 신탁관리청과 통일 특수과제청에 의해 원칙에 명시된 UKPV와의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관리되며, 구 소유주에게 반환되지 않아도 될 경우, 해당 자산은 법적으로 계획된 목적을 위해 신연방주 지역에 할당되었다. 1994년부터는 신연방주 지역에 할당된 자산은 대부분 통일 조약에 명시된 경제 재건을 위한 목적에 투입되었으며, 1994년 2월 신연방주들과 연방정부 간에 체결된 자산 관리 협약에 따라 신연방주정부에 예산 투입 결정권이

- 위임되었다. (A.장 정당 자산 감사 독립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요약 결산)
6. 동독의 정당과 대중 조직의 압수 자산 중 9억 1천 7백만 유로가 법적으로 결정된 목적을 위해, 6,230만 유로가 행정 비용 및 임금 부문에, 3억 2,820만 유로가 자산의 신탁 관리 해제를 위해, 1억 1,950만 유로가 법적 예비비를 위해 사용되었다(D.장 독립 위원회 활동에 관한 결산 회계). 동독 정당과 대중 조직의 자산 총 결산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개관이 가능하다.

표 4 | 동독 정당 및 대규모 조직 자산 총액에 관한 결산 보고서

| 구동독 정당 및 대중 조직 자산 지출 현황 (2005년 12월 31일 기준) | |
|---|----------------|
| 단위: 백만 유로 | |
| 구동독 정당 및 대중 조직 자산 총액 | 1,604.5 |
| FEDI 수익 정리 및 기타 지출 공제: | |
| - 시장 모델 유동자산 (FEDI) | -31.8 |
| - 지자체 직접 수입으로서의 FEDI 수익 정리 | -3.0 |
| - 기타 지출 (비 FEDI) | -2.6 |
| 통일 특수과제청 수입 (이자 포함) | 1,567.1 |
| 신탁관리청과 통일 특수과제청의 인력 및 전문 비용 (선행된 해명을 근거로) | -23.2 |
| 감정인, 회계사, 컨설턴트, 경영자, 파산 절차 관리인을 위해 현재까지 지급된 인건비 | -28.3 |
| 현재까지 발생한 법률 비용 | -10.0 |
| 현재까지 발생한 입찰 비용 (선행된 해명을 근거로) | -0.8 |
| 차액 I | 1,504.8 |
| 구동독 정당 및 대규모 조직 자산 총액 중 현재까지 완료된 자산 이전 | |
| - 사통당/민사당 연금에서 연방보험청으로 이전 | -144.1 |
| - 정당과 대규모 조직 대상 기부 | -169.7 |
| - Restituare 대상 수익 정리 (FEDI-수익 정리 제외) | -41.7 |
| - 자유 독일 노조 연합 분야 복지 계획 서비스 비용 (FEDI) | -33.5 |
| - 자유 독일 노조 연합 분야: 대출금 상환 | -25.1 |
| - Novum 사를 위한 기부 (세금, 재판 비용) | -14.4 |
| - 커미션, 세금, 보상 판결 비용 및 부동산 및 동산의 관리를 위한 기타 비용 | -77.2 |
| 차액 II | 999.1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 | | |
|----------------------------|-----------|--------------|
| 결정된 목적 사안에 대한 자산 투입 | 단위: 백만 유로 | |
| 1. 문화 지원 | 127.8 | |
| 2. 예술 지원 | 1.7 | |
| 3. 투자 회사 | 25.6 | -379.3 |
| 4. 연구 지원 - 지방 정부 | 35.5 | |
| 5. 연구 지원 - 연방 정부 | 38.3 | |
| 6. 통합 기금 | 124.8 | |
| 7. 문화재 보호 (ARG) | 25.6 | |
| 비 지방정부 투입금 | | |
| 8. 구부채청산기금 (ARG) | 375.8 | -450.8 |
| 9. 재건 재단 (SEDDiktStiftG) | 75.0 | |
| 통일 특수과제청을 통한 FEDI-수익 정리 | | -49.5 |
| 차액 III | | 119.5 |
| 기대 수익 | | 0 |
| 차액 IV | | 119.5 |
| 예비비: | | |
| 1. 소송비 | 75.5 | |
| 2. 재민영화 과정 | 15.2 | -119.5 |
| 3. 소송 및 컨설팅 비용 | 22.4 | |
| 4. 인건비 및 전문 비용 | 1.5 | |
| 5. 기타 | 4.9 | |
| 차액 V | | 0 |

자료 44

사통당/민사당 정당 자산 확보를 위한 조치

1989년 12월 21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사통당 수뇌부, 사통당-민사당 수뇌부 위원회 장,
사통당-민사당 자산 보호를 위한 실무단

내용

1. 특별 전당대회에의 결정에 따라 기존 정당 자산은 보호되어야 하고, 정당 업무를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사통당-민사당의 소유물에 대한 공격은 저지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표를 위해 재무 관리 부서, 정당 운영 부서, 경제 운영 관리부서, 교통 관리 부서, 국가 및 법치 사안 관리부서, 재정-물가관리부의 국가 자산 및 신탁 자산 (Treuhandvermögen) 관리부서, 기획 재정부서, 문화부서, 베를린 시 대표부, 대법원, 베를린 국립 공증 사무소, 동독 자산 권리 보호청 (Amt für den Rechtsschutz des Vermögens der DDR)과 같은 여러 부서와 분야를 통합한 사통당-민사당 수뇌부 소속 임시 실무단을 구성한다.
3. 이 임시 실무단의 중점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임시 실무단은 1990년 2월까지의 사통당/민사당의 자산을 총 결산한다. 이러한 총 결산 보고서에는 사통당/민사당 소유물에 대한 가치와 관련된 명확하며 법적인, 증빙 자료 및 그 발생 내역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정당 소유물의 염가 매각을 막기 위해,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당의 자산 가치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자산 결산 책임자는 재정 관리 및 정당 운영 부장과 사통당-민사당 시 대표단의 회장이다.
 - 당의 변화된 업무와 새로운 구조를 기반으로 1990년 1월 15일까지 당 소속 공장 및 사업장, 토지, 당 기관의 시설, 당 소속 학교, 주택, 숙박 시설 등과 같이 어떠한 물질적 토대가 향후 당 업무를 위해 필요한지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해당 업무의 책

자료 44

임자는 당 수뇌부 위원회장과 시 대표단 회장, 재정 관리 및 정당 운영 부장이다.

- 정당 자산 보호와 관련된 계획들과 당의 새로운 재정 정책 원안은 1990년 1월 15일까지 제안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광고 및 광고주 섭외를 통한 새로운 수입처 발굴을 통해 일간지 언론사의 적자를 줄인다. 정당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관들은 양도 또는 매각한다. 해당 업무의 책임자는 재정 관리 및 정당 운영 부장이다.
- 사통당-민사당 간부진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정당 자산 이용 계획은 1990년 2월 1일까지 수립되어야 한다. 해당 업무의 책임자는 재정 관리 및 정당 운영 부서, 경제 운영 관리부서, 교통 관리부서의 부장들이다.

출처

사통당/민사당 당 수뇌부 결의안. /15 5/89,
 민주사회주의 자료 보관소, 로자-룩셈부르크-재단

자료 45 a-c

건축물, 토지, 주택 등의 사통당 자산 매각 및 소유권 이전

1990년

담당자/기관

당 수뇌부 의장단, 당 자산 보호 실무단 단장 게르트 펠리칸 (Gerd Pelikan)

내용

사통당-민사당의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주말 농장 토지 매각 및 교환에 관한 당 수뇌부 위원회와 시 대표단, 정당 자산 수호를 위한 실무단의 결정 제안은 당 수뇌부 의장단에 의해 승인되었다. 근본적인 제안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당의 건축물과 토지는 일부 매각하거나, 국가 기관에 반환, 혹은 건물과 토지를 매각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건 및 복지 기관에 가치 보상 없이 맞교환하거나, 무료로 기부한다.
-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프랑크푸르트/오더 지역의 군 지도부 (Kreisleitung) 건물은 소비조합 (Konsumgenossenschaft) 시 지도부 (Bezirksvorstand)에 매각한다. 슈메르비츠 (Schmerwitz)의 전투 그룹 (Kampfgruppe) “Ernst Thälmann”의 중앙 학교는 내무부에 인도한다. 당 소속 학교인 “Franz Mehring”은 Griesinger 종합 병원에 무료로 인도하고, 에르푸르트 (Erfurt)의 뮐하우젠 (Mühlhausen) 군 지도부 (Kreisvorstand) 건물은 가치 보상 없이 뮐하우젠 외래 종합병원과 맞교환한다. 로스톡 (Rostock) 시 지도부 (Bezirksvorstand)의 숙박시설은 시 자문단에 인도한다.
- 동산 및 기타 소유물은 새로운 소유자와 법인에 매각 여부를 문의한다. 타자기 및 인쇄 기기들은 당의 정치 업무를 위해 남겨 둔다.
- 사통당-민사당 소유 주택과 주말 농장 토지들은 일부 현 이용자에게 매각 여부를 문의한다. 현 이용자가 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없을 경우, 주택 매입 의사를 갖고 있는 자와의 주택 교환을 알선한다.

자료 45 a-c

- 주택 교환의 대표적인 사례는 카겔 (Kagel) 지역의 “Walter Smolka” 지구에 위치한 79 개의 방갈로이다. 이 중 49 개의 방갈로가 오랜 기간 이 방갈로를 사용해 온 현 이용자에게 매각되고, 나머지 30 개는 시민 이니셔티브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뤼어스텐발데 (Fürstenwalde)군의 주민에 매각될 예정이다.
- 제안된 조치는 지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자료목록

- 자료 45 a. 1990년 1월 25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 ./80 9/90: 사통당/민사당 당 자산에 관한 결정 제안
 - 첨부 문서 1.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및 맞교환에 관한 당 수뇌부 및 시 지도부 위원회의 결정 제안
 - 첨부 문서 2. 구조 실무단의 향후 활동에 관한 결정 제안
- 자료 45 b. 1990년 2월 1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 .94/ 11/90: 주택 및 주말 농장 토지 매각
 - 1990년 2월 1일 회의록 제 11번의 첨부 문서 7번
 - 첨부 문서 1. VOB 기반으로 관리될 정당 소유 주택 및 주말 농장 토지 이용자 목록
- 자료 45 c. 1990년 11월 4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 5./234 22/90: 정당 자산에 관한 민사당 시 지도부의 결정 제안
 - 1990년 4월 11일자 회의록 22번 첨부 문서 4 번.
 - 첨부 문서 1. 정당 자산에 관한 민사당 라이프치히 시 지도부의 제안
 - 첨부 문서 2. 정당 자산에 관한 민사당 할레 시 지도부의 제안
 - 첨부 문서 3. 정당 자산에 관한 민사당 게라 시 지도부의 제안
 - 첨부 문서 4. 데사우 (Dessau), 리브니츠-담가르텐 (Ribnitz-Damgarten), 아이제나흐 (Eisenach), 쏬넨베르크 (Sonnenberg) 군 지도부의 신청
 - 첨부 문서 5. 제목 없음
 - 첨부 문서 6. 제목 없음

출처 : 1990년 초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자료 46 a-h

사통당/민사당 기관 전환

1990년

담당자/기관

당 수뇌부 의장단, 당 자산 보호 실무단, 당 구조 관리 실무단, 시 대표단,
내무 관리 부장, 원탁회의.

내용

당의 중앙 기관들은 유한책임 회사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이하 GmbH)
나 국민의 자산으로 전환된다.

- 정당 자산 보호를 위해 새로이 구성된 GmbH의 사례:
 - 신탁 토지 관리 GmbH (TV-GmbH): 조직 소유의 운영 기반인 토지를 신탁 관리하
고, 이를 통해 당 수뇌부가 토지 관리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 가치 보존 및 수리 GmbH (WI-GmbH): 공장의 건설 및 개발 시설 및 당 수뇌부에
존재하는 시설들을 통신 공학 유지 보수 시설로 통합한다.
 - 베를린 홍보물 출판사 GmbH: 교통 관리 부서 소속인 Pöhnix 인쇄소를 VEB
Interwerbung Berlin, Altberliner 출판사와 통합한다.
- 중앙 기관의 GmbH 전환의 사례
 - Cliff-Hotel Baabe → 독립 GmbH
 - 동독 Panorama 해외 통신사 → GmbH
 - Neues Deutschland 출판사 → “Neues Deutschland” 출판 유한책임 회사
- 기타 기관으로 전환된 중앙 기관의 사례
 - 정당 소속 대학을 민사당의 회의실 및 홍보실로 전환
 - 사회학 아카데미 해체 및 프로젝트 공동체 “사회 연구”, 노동 운동 역사 연구소, 교
육 소통 센터 “진보주의 연단 (Podium progressiv)”, 쾰니첸 공원 도서관의 조성
- 국민 자산으로의 전환 사례: 정당 사무소를 인민의회에 인도

자료 46 a-h

자료목록

• 자료 46 a.

1990년 2월 1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93 11/90:

사통당/민사당 당 자산에 관한 결정 제안

- 1990년 2월 1일자 회의록 제 11번의 첨부 문서 6
- 정당 사무소 (구 제국 은행 건물)에 관한 첨부 문서
- 무 제목 첨부 문서

• 자료 46 b.

1990년 2월 15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132/ 13/90:

민사당 자산 보호를 위한 결정 제안

- 1990년 2월 13일 회의록 제 13번의 첨부 문서 12번
- 바트 엘스터 (Bad Elster) 지역의 구 중앙위원회 소유물이었던 “하우스 암 제 (Haus am See)”에 대한 결정 제안 첨부 문서
- 민사당 시 대표단의 결정 제안 첨부 문서

• 자료 46 c.

1990년 4월 11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235/ 22/90:

벨베데르 호텔 GmbH 리노베이션

• 자료 46 d.

1990년 5월 7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283 24/90

구 정당 소속 대학과 남아 있는 기숙사 학교, 하우스 12 (Haus 12)를 민사당 회의장 및 홍보실로 전환

- 첨부 문서 1. 구 정당 소속 대학 건물을 민사당 홍보실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
- 첨부 문서 2. “정치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센터” (ZBK) 설립을 위한 계획
- 첨부 문서 3. 민사당 수뇌부의 연락정보 사무소 개선을 위한 계획
- 첨부 문서 4. 쾰니첸 공원 도서관 관리를 위한 구조 및 인사 계획

자료 46 a-h

- 첨부 문서 5. 향후 기관 명 변경을 위한 제안
- 첨부 문서 6. 오버바쉴슈트라쎄 (Oberwasserstrasse) 11, 12의 활용
- 첨부 문서 7. 쾰니첸 공원 도서관의 공간 배정 계획 (제안서)

• 자료 46 e.

1990년 6월 11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328 32/90

Neues Deutschland 출판을 GmbH로 전환

- 1990년 6월 11일 회의록 제 32번 첨부 문서 3
- 첨부 문서 1. “Neues Deutschland VerlagsgesellschaftgmbH” 설립 계약서
- 첨부 문서 2. 화폐통합으로 인한 2:1 마르크 교환을 고려한 Neues Deutschland 출판사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금에 관한 요약.
- Neues Deutschland 출판사 임원진, 1990년 5월 21일, 베를린

• 자료 46 f.

1990년 10월 22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628 59/90

정당 지원 재단 확대

1990년 10월 22일 회의록 제 59번, 첨부 문서 7

• 자료 46 f.

1990년 10월 22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628 59/90

사회학 아카데미 해체에 관한 조치 계획; 민사당을 위한 사회학적 잠재력 조성을 위한 제안

- 1990년 10월 22일 회의록 제 59번, 첨부 문서 8

출처

민주사회주의 자료보관소, 로자-룩셈부르크 재단

자료 47

동독 정당 및 대중 조직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1990년 2월 21일 정당법 변경 법안

1990년 5월 31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동독 인민의회, 제 10차 임기, CDU/DA, DSU, Die Liberalen, SPD

내용

인민의회는 아래의 내용을 결의한다.

- 정당법 개정법이 의결된 후에는 20, 20a, 20b 조가 추가될 것이다. 추가된 조항의 주요 내용은 모든 정당과 정당 소속 국내외 대규모 조직의 자산 가치와 그 자산의 신탁 관리에 관한 정부 차원의 보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 인민의회는 지도부에 1990년 6월 30일까지 인민의회 측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독립 위원회를 즉시 구성할 것을 위임한다.
- 주요 감사 대상은 1989년 10월 7일자 기준, 혹은 그 이후에 동독의 모든 정당 및 대규모 조직, 법인의 자산으로 등록된 예치금과 토지, 부동산, 공장, 기업 지분, 판매 수익, 기타 유동 자산이다.
- 본 결의안이 발효되면 동독의 정당과 대규모 조직, 법인들은 보유 자산의 가치를 공개하고, 독립 위원회 대표의 동의 하에서만 그 보유 자산 내역을 변경할 의무를 갖는다.

출처

연방의회-인쇄물 제 51번

자료 48

민사당 정당 자산 내역 / 볼프강 폴(Wolfgang Pohl)

1990년 6월 13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 부대표 볼프강 폴 (Wolfgang Pohl)

내용

볼프강 폴은 자산 문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민회의의 결의를 통해 마련된 자산 리스트를 국내외 기자들이 참석한 1990년 6월 13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 본 계획에 따르면 정당 자산과 관련해 아래의 다섯 개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1. 정당 자산의 정확한 파악
 2. 출처를 법적으로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자산의 인도
 3. 당의 채신을 유지하는 데 모순되는 자산의 인도 및 검증
 4. 당의 이익에 더 이상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없는 자산의 인도
 5. 동독 정당법이 발효된 후에는 영업장과 기관의 자산이 정당법 제 15, 16, 23조의 기준과 부합하는 자가 검증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는 정당의 자산 산정을 위한 기준이 인민회의나 정부를 통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 결정 시에는 위에 명시한 다섯 개 기준과 더불어, 정당 기구와 정당 소속 기관의 상임 직원의 숫자를 당의 채신을 위해 급격히 줄여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1989년 12월 31일 기준, 당은 다음과 같은 재정 자원을 보유했다.
 - 1984년까지 일반 예산 외에 3조 410억 동독 마르크를 보유했다. 이 액수는 1990년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의 이체를 통해 국가 예산 명목으로 재정부에 송금되었다.
 - 그와 더불어 당의 연기금과 게넥스 사 (Firma Genex)에 대한 채무, 위성정당에 대한 공급 등의 명목으로 배정된 5천 5백만 동독 마르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금액은 1990년 3월 1일까지 동독 국가 보험사에 이전되었다.
 - 마지막으로 당은 26억 동독 마르크를 유동성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대부분은 사통당 구 채무 청산을 위해 투입되었다.

출처 : 민사당 홍보자료. 1990년 6월 14일, 당 수뇌부, 민주사회주의 자료 보관소, 로자-룩셈부르크 재단.

자료 49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의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 설립과 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정당자산위원회규정 - PVKV)

1991년 6월 14일, 본

담당자/기관

연방정부

내용

- 1990년 10월에 체결된 통일조약 제 3부, 부문 A, 제 2장, 첨부 문서 II를 토대로 동독 정당법 제 20a와 20b 조는 효력이 지속되며, 동독 정당 자산 검증 독립 위원회의 업무는 연방정부가 수행한다.
- 위원회는 베를린 사무소를 본부로 운영된다.
- 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된다.

출처

BGB1 I S. 1243, 1991년 6월 14일

자료 50

동독 정당 자산에 대한 현 정당과의 합의
(제2차 조사 위원회 보고서 내용 발췌)

1998년 5월 28일

담당자/기관

동독 정당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위원회 (이하 UKPV),
신탁 관리청 (THA), 기민련, 민사당, F.D.P

내용

정당 자산은 현 정당과의 조정 및 포기 합의를 통해 UKPV의 신탁관리를 받게 되었다.

- 기민련은 이미 1990년 11월 15일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 THA)과 UKPV 측에 동독 정당 기민련과 DBD의 자산 가치 모두에 관한 포기 선언을 하였다.
- 민사당은 사통당/민사당 자산의 물적, 법적 유산과 관련된 UKPV의 모든 결정에 거둬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 재판소에 항소를 신청했다. 1995년에는 형사 재판 소송을 통해 1990년 민사당 정당 본부 (Parteizentrale)가 불법으로 사용한 과거 자산에 대한 환원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민사당은 불법으로 사용한 과거 자산을 환원하는 대신, 토지와 예술품 및 귀중품, 영업 시설 네 가지를 제외한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자산과, 앞으로 밝혀질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포기할 것을 선언하였다.
- F.D.P.는 1992년 4월 LDPD와 NDPD의 자산 환원을 신청하였다. 오랜 협상 끝에 UKPV는 1995년 11월 LDPD와 NDPD의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조정 심사를 선언하였다.

출처

제 2차 조사 위원회 보고 내용 발췌, 인쇄물 13/10900, 1998년 5월 28일

자료 51

동독 정당 및 대중 조직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위원회(UKPV)의 최종 보고서

2006년 7월 5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UKPV 대표 크리스타인 폰 함머슈타인 (Christian von Hammerstein), 신탁 관리청 (THA), 통일 특수과제청 (BvS), 독일 연방의회

내용

로타 드 메지에 동독 총리에 의해 1990년 6월 창설된 UKPV는 16년 간의 집중적인 업무를 뒤로하고 2006년에 해체되었다. UKPV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총 업무 결산을 광범위하게 소개하였다.

- UKPV의 법적 토대는 1990년 5월 31일 인민의회에 의해 개정된 정당법(§ 20a, §20b)과 1990년 8월 31일자 통일 조약, 1991년 6월 14일자 연방정부 정당 자산 위원회 법령, 1992년 7월 14일자 자산법이다.
- UKPV의 설립은 한 마디로 사통당/민사당을 비롯한 동독 정당들에 큰 타격이 아니라 할 수 없었다. 동독 시절과 1990년 3월에 열린 동독 최초의 인민의회 자유 총선 이전까지, 사통당(민사당)과 사통당/민사당의 위성정당 및 대규모 조직들은 엄청난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UKPV의 설립으로 인해 이들은 정치적 경쟁력이 상당 부분 와해될 위협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UKPV의 임무는 동독의 정당 간 정치적 경쟁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 UKPV의 신탁 관리를 받은 정당과 조직들은 사통당/민사당, 위성정당(동독 CDU, DBD, LDPD, NDPD), FDGB(자유 독일 노조 연합(Frei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 FDJ(자유 독일 청소년 (Freie Deutsche Jugend), 동독 평화협의회(Friedensrat der DDR)와 같은 정당 소속 대규모 조직이다. [20~22 페이지 참조]
- UKPV를 통해 보호되고, 관리된 자산 (정당 및 조직 자산)의 총액은 16억 450만 유로이

자료 51

다. 총 자산의 3/4 가량이 사통당/민사당의 자산이다. 이는 동독에서 사통당의 재정 권력이 어느 수준이었던지를 확인해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동독 정당들의 자산 비율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 2장. 자산 검증 문제. 27 페이지 참조]

| | | |
|--------------------------------|--------------|--------|
| 사통당/민사당 | 1,169.7 백만유로 | 72.9 % |
| LDPD/NDPD | 20.9 백만 유로 | 1.3 % |
| 동독 CDU/DBD | 8.0 백만 유로 | 0.5 % |
| 대중조직 | 368.5 백만 유로 | 23.0 % |
| 유동자산 평가액 및 직접 수입 (FEDI), 기타 지출 | 37.4 백만 유로 | 2.3 % |

- 정당 자산은 현 정당과의 조정 및 포기 합의 [36~50 페이지 참조], 그리고 조사와 압류를 통해 UKPV의 신탁 관리를 받게 되었다.
- UKPV는 검찰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UKPV는 기술적인 지시로부터 독립적이었으며, 이러한 독립성으로 인해 UKPV는 국내외 모든 협상 파트너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협력관계를 창출하였다. 검찰의 공권력 투입을 통해 17개 사안에 대해 1992년 민사당 관할 지역과 같이 50 개가 넘는 지역에서 조사와 압수가 진행될 수 있었다. 전환기 이전에 해외에서 혹은 해외를 통해 이전된 정당 및 대규모 조직의 자산에 대해 UKPV는 헝가리와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스위스에서 조사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UKPV는 국내 조사와 달리 해외 조사에서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 이유는 조사 내용의 복잡성 때문이 아닌, 해외 조사가 비교적 늦게(1998/1999년)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해외 조사가 시작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증거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5부터 2000년 사이에 은행과 무역회사들의 법정 자료 보관 기간이 대다수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C.II 장. 해외 자산, 55~71 페이지 참조]
- 해외 조사 부문에 있어 특수한 사례는 Novum 사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해당 기업이 동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통당 소속 회사인지, 아니면 오스트리아 국민이자 기업의 대표인 루돌피네 슈타인들링(Rudolfine Steindling) 여사와 해당 기업이 주장하는

자료 51

것처럼 오스트리아 공산당 소속 회사인지에 대한 문제를 둘러싼 사건이었다. 제 1심에서 베를린 행정재판소는 Novum이 사통당 소속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대로 베를린 최고행정재판소는 UKPV가 새로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통해 슈타인들링 여사 측의 변호인단이 소송 사기와 형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서류 조작을 저질렀음을 밝혀냈다. 이를 근거로 베를린 최고행정재판소는 Novum이 사통당 소속 기업이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슈타인들링 여사와 Novum 사의 항소 신청이 2004년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어, 베를린 최고행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취리히에서는 1심을 통해 슈타인들링 여사와 AKB 민간 은행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자를 포함한 총 소송액은 약 2억 3천 7백만 유로에 달한다. 슈타인들링 여사와 Novum 사 측은 베를린 최고행정재판소와, 연방행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연방행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출하였다. 헌법 소원에 대한 심리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절차는 아직도 개시가 가능한 상태이다. [C.II. 장, 특수 사안 “Novum”, 50~52 페이지 참조]

- 징수된 정당 및 대규모 조직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 | |
|--------------------------|------------------|
| 법적으로 규정된 목적에 따른 사용 | 총 917.0 백만 유로 |
| 신연방주 지역의 경제 지원 | 311.1 백만 유로(34%) |
| 지방 정부의 문화, 예술, 문화재 관리/지원 | 155.1 백만 유로(17%) |
| 구채무청산기금 (ARG) | 375.8 백만 유로(41%) |
| 사통당 독재 청산 재단 | 75.0 백만 유로 (8%) |

- 정당 및 대규모 조직 청산 비용: 177.5 백만 유로
- 관리비 및 인건비: 62.3 백만 유로
- 자산의 신탁 관리 해제: 328.2 백만 유로
- 법정 예비비: 199.5 백만 유로
- 신탁관리청과 통일 특수과제청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BvS)) 간의 협력은 1992년 7월 23일에 작성된 원칙에 근거한다. 이 원

자료 51

칙에 따르면 UKPV는 해당 자산을 조사하며, 이 자산은 신탁관리청과 통일 특수과제청에 의해 원칙에 명시된 UKPV와의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관리되며, 구 소유주에게 반환되지 않아도 될 경우, 해당 자산은 법적으로 계획된 목적을 위해 신연방주 지역에 할당되었다. 1994년부터는 신연방주 지역에 할당된 자산은 대부분 통일 조약에 명시된 경제 재건을 위한 목적에 투입되었으며, 1994년 2월 신연방주들과 연방정부 간에 체결된 자산 관리 협약에 따라 신연방주정부에 예산 투입 결정권이 위임되었다. (첨부 문서 2)

첨부 문서

1. 1990년 8월 8일 UKPV 제 8차 회의, 회의록
2. 1994년 2월 11일 신탁관리청과 신연방주 간에 체결된 정당 및 대규모 조직 자산의 공익 사용에 관한 관리 협정
3. 정당 및 조직의 자산 총액에 관한 결산

출처

독일 연방의회. 인쇄물 16/2466, 2006년 8월 24일. 2006년 7월 5일 동독 정당 및 대규모 조직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의 최종보고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Ⅲ. 주(州) 도입

| | |
|------------|-----|
| ■ 수록자료 개관 | 122 |
| - 자료 52~58 | 124 |

수룩자료 개관

1989년 가을에 시작된 혁명으로 양 독일의 통일과 구동독 지역의 신연방주 신설이 요구되었다. 많은 당 대표들은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배 당들에 중요한 결정을 떠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 투표를 제안했다. 국민들은 독일 통일의 가부와 방법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자료 52: 국민 투표를 위한 호소와 제안).

과거의 사통당에 의해 만들어진 시 구역을 해체하고, 민주적으로 합법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기 위해, 모드로(Modrow) 총리는 “행정 개혁 준비와 실행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다. 1990년 5월 17일 동독의 인민의회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헌법(Kommunalverfassung)을 통과시켰다(자료 54: 동독 지역의 지자체 자치행정에 관한 법). 지방자치단체헌법은 기초자치단체법(Gemeindeordnung), 광역자치단체법(Landkreisordnung), 과도기 및 최종 규정의 세 가지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헌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들은 법이 별도의 규정을 내세우지 않는 한, 지역 공동체의 모든 사안을 자기 책임 하에 규정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헌법은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적 참여권을 보장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사안에 대한 시민 제안, 시민 결정, 시민 참정권 요구 도입 등이 그것이다.

구동독 지역의 주 신설에 관해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기본법 제 23조(Art. 23 GG))은 주의 영토를 재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주의 영토를 재편할 때는 “주들은 주의 면적과 능력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기본법 제 29조 1항(Art 29 Abs.1)).”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의 영토는 연방법에 따라 재편되어야 하며, 해당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결정을 통해 그 내용을 승인 받아야 한다.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주의 숫자와 분할이었다. 오랜 논쟁 끝에 1952년 사통당을 통해 해체된 5개 주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수락되었다. 구동독 북부에는 슈베린(Schwerin)을 주도로 하는 메클렌부르크-포르폼머른(Mecklenburg-Vorpommern)주가, 동부에는 포츠담(Potsdam)을 주도로 하는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가, 서부에는 막데부르크(Magdeburg)를 주도로 하는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주가 신설되었다. 남서부에는 에르푸르트(Erfurt)를 주도로 하는 튀링엔(Thüringen)주가, 남동부에는

드레스덴 (Dresden)을 주도로 하는 작센 (Sachsen) 주가 신설되었다.

1990년 7월 22일에 발효된 주 도입법(Ländereinführungsgesetz)은 입법과 행정에 있어서의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할 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자료 55: 주 도입법)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 주권 (Finanzhoheit) 역시 규정되었다. 이는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예산 집행에 있어 독립적이며, 서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뜻한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는 각각 필요한 부문에 지출을 집행한다. 만약 지방 정부가 연방 정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연방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출을 집행한다.

자료 52

국민 투표를 위한 호소와 제안

담당자/기관

이나 데터 (Ina Deter), 서독의 여가수, 위르겐 렌츠 (Jürgen Reents), 서독 녹색당 연방대표, 이나 메르켈 (Ina Merkel), 동독 독립 여성협회, 마리온 제리히 (Marion Seelig), 동독 좌파 연합, 라인하르트 슈트 (Reinhard Schult), 동독 신 포럼

내용

국민들은 독일 통일의 가부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통일 또는 두 개의 독일의 존속에 관한 동독과 서독의 국민 투표를 위한 초안

출처

디 안더레 (Die Andere) 지, 1990년 3월 22일, 제 9호, 풀뿌리 민주주의 이니셔티브 단체를 위한 신문, 발간인: 클라우스 볼프람 (Klaus Wolfram)

자료 53

주 재편을 포함한 동독 내 주 신설에 관한 법 제안을 위한 결의문

1990년 5월 2일

담당자/기관

동독 내각 평의회

내용

동독을 5개 주로 분할한다는 제안을 포함한 동독 내 주 신설을 위한 법 (주 도입법)에 관한 제안은 만장일치로 수락되었다.

- 입법을 위해 입법 위원회를 구성한다.
- 주 소속에 관한 주민 결정 실시
- 예정된 주 신설을 위해 각 시 의회는 자기 책임 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I. 동독 내 주 신설을 위한 법에 관한 원칙 (주 도입 법)

- a) 관할 영역 구분 입법 관할: 독일 국가의 연방적 성격을 보호하고 강조하기 위함. 입법에 관한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할 영역이 목록화 되었다.
- b) 행정 구분: 서독 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지방 정부들은 국가 업무 해결을 위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 c) 지방 정부의 재정적 토대 확보
- d) 지방 정부 차원의 정부 시스템의 법적 토대: 기본법 제 20조, 제 28조: 지방 의회와 지방 정부

II. 주 신설에 관한 제안

- a) 주 신설에 관한 기준과 관점
 - 주민의 고향 및 지역적 연관성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
 - 주민 수, 면적, 경제적 합목적성, 주의 경쟁력
 - 기존 기능적 조직적 관계

자료 53

- b) 주 신설 원칙에 관한 두 가지 방법
 - 1946년 ~ 1952년까지의 주 형식을 근거로
 - 시 영토를 통합

- c) 5개 주 모델: 메클렌부르크
 - 포르폼머른 주, 브란덴부르크 주, 작센
 - 안할트 주, 작센 주, 튀링엔 주

III. 주 설립을 위한 일정 제안: 정부 위원회는 주 설립을 위한 개별 단계의 실행을 위 해 일정을 제안한다.

출처: 동독 내각 평의회

자료 54

동독 지역의 지자체 자치행정에 관한 법안
(지방자치법, Kommunalverfassung)

1990년 5월 17일

담당자/기관

동독 인민의회

내용

- 제 1부: 기초자치단체법
 - 기초자치단체는 지방 자치 단체이다. 본 법이 의미하는 기초자치단체란 군 소속 시와 읍, 구, 자치 시이다.
 - 자치 행정: 기초자치단체들은 법이 별도의 규정을 내세우지 않는 한, 지역 공동체의 모든 사안을 자기 책임 하에 규정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업무 해결을 위한 재정 수단 확보
 -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사안에 대한 시민 제안, 시민 결정, 시민 참정권 요구 도입
 - 기초자치단체의 대표는 시민의 대표이자, 기초자치단체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자치단체의 대표는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사안을 담당한다.
 - 시장: 기초자치단체 대표의 중앙위원회와 기초자치단체 행정의 대표
 - 예산 집행
 - 경제 활동과 참여
 - 감독
- 제 2 부: 광역자치단체법
 -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공공 사안을 규정하고 관리한다. 광역자치단체는 법적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광역자치단체를 초월한 업무를 수행한다.
 - 광역자치단체의 기관: 지방 의회 (Kreistag) 와 주 의회 (Landrat)

자료 54

- 지방 의회: 시민의 대표이자 광역자치단체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
- 위원회: 지방 의회는 업무 해결을 위해 상임 및 임시 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을 결정하고 자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주 의회: 지방 행정과 지방 위원회의 대표
- 지방 경제
- 감독
- 제 3 부: 과도기 및 최종 규정
 - 내각 평의회는 법 실행에 필요한 법 규정을 공포하고, 인민의회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실행을 위한 해당 법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출처

동독 법률 공보 1990 I. 255 페이지, DDR-Sartorius, 구동독 지역을 위한 행정법, C.H.Beck 출판사 (1994년 발행)

자료 55

주 도입법

1990년 7월 22일

담당자/기관

동독 인민회의, 제 10차 임기

내용

- 영토적 분할
§ 1 - 1990년 10월 14일의 법령 발효를 통해 동독에는 5개 주 - 메클렌부르크-포르폼
머른 주, 브란덴부르크 주, 작센-안할트 주, 작센 주, 튀링엔 주 - 가 신설되었다.
- 기본 규정
§ 3 -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입법
- 연방 정부의 법과 행정의 실행
- 행정권에 관한 과도기 규정
-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권
- 자산 승계
§ 21 - 동독 내 주 신설을 통해 시의 자산은 소속 주에 귀속된다.
- 기관 및 인력의 이전
- 과도기 규정 및 최종 규정
- 보충 공보
- 동독 주의 군 (Kreis)

출처

동독 인민회의, 제 10차 임기, 인쇄물 84a 번.

자료 56

인민회의의 주 신설 결의

담당자/기관

동독 인민회의, 제 10차 회기

내용

- 폴커 쉘멜 (Volker Schemmel) (사민당), 헌법 및 행정 개혁 위원회 보고자. 동독 의회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 도입 법 초안을 2/3 과반수로 통과시켜야 했다.
- 논란의 대상이 된 주 국경의 문제: 각 군을 어느 주에 편입시킬 것인가에 관한 의견을 주민 공청회를 통해 수렴.
- 자문을 받을 시간이 부족
- 국민 다수의 의견: 5 개 주 신설
- 지방 의회 선거 - 1990년 10월 14일

출처

http://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10/30582692_wegmarken_einheit2/index.html

자료 57

신연방주 헌법 초안

담당자/기관

요하넥스 룩스 (Johannes Rux) 박사

내용

- 신연방주 별로 논의 상황에 큰 차이가 있다 - 브란덴부르크와 작센-안할트 주의 경우 헌법을 1992년 여름까지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튀링엔 주에서는 아직까지 합의점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 헌법 논의의 중점 내용: 기본 권리와 국가적 목표
 - 지방의 기본 권리는 기본법을 저촉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그러나 기본법에 따라 통과된 주 헌법은 일반적으로 기본법의 기본 권리가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제한된다.
 -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기본 권리 외에 헌법 초안 중 대부분은 일차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어야만 하는 “국가적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 기본 권리들은 방어를 위한 권리만이 아닌, 행동과 참여적 권리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결정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국민 투표적 요소
 - 대부분의 주에서는 국민 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신연방주 헌법의 근본적인 모범이 된 것은 1990년 쉘레스비히-홀슈타인의 헌법이다. 이 헌법은 정치적 의사 형성 중법을 통해 정해져야 할 특정 대상들과, 유권자 2만 명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문제에 관한 국민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 브란덴부르크 주와 작센-안할트 주의 헌법 초안은 우선적으로 법을 통해 좀 더 자세히 결정되어야만 하는 특정 문제들에 관한 국민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 국민 투표적 요소들은 의회와 정부로부터 외면 받는 특정 문제들에 관한 국민 논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자료 57

- 그렇기 때문에 청원권 개혁이 이러한 목적을 훌륭히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대리인을 통한 국민 권리의 실천
- 의회와 정부의 관계
- 학교와 헌법
- 지방 헌법 재판소

출처

노이에 유스티츠 (Neue Justiz) 지 - NJ 1992, S. 147~151

자료 58

동독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민주주의 : 규정의 형태적 변화와 적용 실제

담당자/기관

헬무트 볼만 (Hellmut Wollmann)

내용

볼만의 글은 정치적 제도적 재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요소인 직접 민주주의적 참정권의 도입과 지자체 자치 행정의 추가적인 발전과 신연방주 지역의 지역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고 있다.

- 시민의 참정권 요구, 시민 결정
 - 법적 토대: 1990년 5월 17일 통과된 지방자치단체헌법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시민 제안과 시민의 참정권 요구, 시민 결정이 유효해졌다. 지방자치단체헌법은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서독 편입 이후 통일 조약의 이행 규정에 따라 신연방주 지역에서 계속해서 그 유효성이 지속되었다. 지방자치단체헌법은 새로운 지방법적 기초자치단체법과 광역자치단체법을 통해 해체되었다.
 - 실제 적용: 서독에서 주로 적용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민주주의”에 대한 동독인들의 생각은 서독인들에 비해 여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 자신들에게 부여된 대의적 민주주의 권리를 인지하게 된 지방자치단체 의회 선거 이후부터는 그 선거 참여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동독인들의 생각은 서독인들의 생각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 시장 및 군수 직접 선출
- 투표를 통한 시장 및 군수의 해임: 신연방주들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헌법에 시장 및 군수의 직접 선출 도입과 함께 시민 결정을 통한 시장 및 군수의 해임 조항을 포함시켰다.
- 직접 민주주의적 참정권의 입법적 도입에 있어서는 동독인들이 서독인들보다 앞선다.

자료 58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이는 제도적 변화와 문화적 변화의 긴장 관계를 뜻한다. 즉, 제도적 변화는 권력 관계와 행위자들의 배치가 극단적으로 변화될 경우 신속히 결정되고 입법적으로 확정될 수는 있으나, 새로운 제도적 규정의 현실화나 시행은 그 규정을 “담당”하는 행위자가 언제, 얼마만큼 해당 역할에 대한 기대와, 목표, 계획, 능력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처

델리엔, 한스-울리히 (Derlien, Hans-Ulrich) (발행인) 2001, 동독 재건 10년. 평가. 바덴-바덴 노모스 (Baden-Baden Nomos)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IV. 수도 이전

| | |
|------------|-----|
| ■ 수록자료 개관 | 136 |
| - 자료 59~69 | 140 |

수룩자료 개관

1990년 8월 31일에 체결되고, 1990년 9월 29일에 발효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통일 조약의 제 2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의회와 정부의 소재지는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 결정한다.” 신연방주가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통용 지역으로 편입한 지 3/4 년이 지난 1991년 6월 20일에 일명 수도 문제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연방 의회는 임시 의사당이었던 본의 바셔베르크(Wasserwerk) 건물에서 오전 10시부터 10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총 660표 중 단 18표의 차이로 정부와 의회의 이전이라는 결정을 도출해 냈다. 독일 연방 의회와 독일 의회주의의 운명의 순간으로 묘사되는 당시의 논쟁은 감정적 호소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으며, 투표를 하는 의원들의 태도는 평소와는 달리 당파나 소속 당의 방향에 얽매어 있지 않았다. 연방 의회에서의 논쟁은 격한 감정싸움을 불러일으킨 베를린과 본의 특권과 실수에 관한 여론의 논쟁과 크게 닮아 있었다(자료 59: 수도 이전 관련 베를린 - 본 논쟁).

그로부터 몇 년 간 연방(연방 정부 포함)과 새로운 정부 소재지인 베를린(Berlin), 과거의 정부 소재지였던 본(Bonn) 간에는 끊임없는 협정이 이어졌다. 연방 정부는 연방 의회와 함께 1992년 6월 3일 연방 의회와 연방 정부의 소재지를 베를린으로 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결정으로 1992년 8월 25일에는 연방 정부와 베를린시 정부 간에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 베를린 재건과 독일 연방 의회와 연방 정부 소재지로서의 기능 충족을 위한 연방 정부와 베를린 시 정부 간 협력에 관한 조약”이 연방 총리 헬무트 콜과 베를린 시장 에버하르트 디프겐(Eberhard Diepgen)에 의해 체결된다. 이에 대한 협력을 목적으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해당 위원회의 업무 규정은 베를린 주를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와의 협력도 규정하고 있었다. (자료 60: 수도 조약)

1994년 4월 26일 통과된 “독일 통일 완결을 위한 1991년 6월 20일자 독일 연방 의회의 결의안 실행을 위한 법”(약명: 베를린/본 법)에는 연방 수도 베를린과 연방 시 본 간의 업무 분담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 기능의 핵심 분야(연방 의회와 연방 정부 등)는 베를린에 소재한다. 본에는 다수의 “비전통적인” 정책 분야(교육과 학문, 문화, 연구, 기술, 통신, 환경, 건강, 식품, 농업, 산림, 개발정책) 및 “전통적인” 국방 분야가 들어섰다. 다수의 연방 기관들은 본에 소재지를 두게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재단과

연구소, 협회들이 본으로 소재지를 옮겨 가게 된다. 정부 이전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과 본 지역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약속 받았다. 사실상 독일에는 두 개의 수도가 존재했다. 연방 의회 결의안과 베를린/본 법에 따르면 모든 정부 부처들은 베를린과 본 모두에 소재지를 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1992년 8월 25일 체결된 연방과 베를린 주 간의 조약 규정과 관련해 베를린/본 법은 연방과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로 하여금 연방 수도 베를린의 제 기능을 보장하는 협정을 맺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자료 61: 베를린/본-법)

본은 연방 수도라는 지위를 통해 오랜 기간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연방 수도로서의 지위는 본에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매출,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세수를 가져다주었다. 본과의 작별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 왔으며, 본에 머문 사람들이 남겨지고, 잊혀진다는 느낌을 받게 해서는 아니되었다. 결정이 무르익고, 객관적인 논쟁이 오고 갈 수 있었던 본은 조용하고 차분한 도시로서 독일연방공화국과 전 유럽에 수십 년 간 엄청난 공을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정부와 독일 전체는 본 시와 주변 지역에 감사하고 지원을 할 책임이 있었다. 향후 10년 간, 혹은 필요할 경우 그 이상, 본에는 28억 1천만 마르크의 보상금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러한 보상은 우선적으로 학문, 문화, 개발 정책, 경제 부문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많은 연구소와 전문대학들이 설립되어야 한다. 인프라 개선을 위해 쾰른/본 공항에는 고속철도가 연결될 것이다. 협력을 위해서는 베를린의 사례와 유사한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으로, 이 위원회에는 연방과 본이 소속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와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주, 그리고 본 시, 두 개 군의 대표들이 소속될 예정이다(자료 62: 본 지역의 보상 조치에 관한 협정, 자료 63: 본 지역을 위한 보상 프로젝트).

1994년 6월 30일에 체결된 수도 재정 지원 조약은 베를린/본 법이 1994년 4월 26일에 체결된 조약 두 달 만에 베를린이 연방 수도로서 연방 정부에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10년 간 13억 마르크를 인프라, 문화, 수도로서의 특별 부담을 위해 투입하고, 이와 별도로 연방 정부는 베를린의 교통 프로젝트(지하철 및 도심 터널)에 10억 마르크의 분담금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베를린은 문화 부문을 위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6천만 마르크를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 받으며, 문화 분야를 위해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를 통해 감사국이 설치되었다. (자료 64: 수도 재정 지원 조약) 2001년 3월 29일 연방 정부는 베를린 주 정부에 수도 재정 지원 조약의 연계 조약을 통해 매년 수

도로서 떠안게 되는 특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7천 5백만 마르크를 치안 분야에 추가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자료 65: 수도 재정 지원 조약의 연계 조약).

2001년 7월 7일 연방 정부와 베를린 주 정부는 문화 재정 지원을 위해 수도 재정 지원 조약의 추가 연계 조약을 체결했다. 2001부터 2004년까지 베를린 주 정부는 연방 정부를 통해 문화 시설과 행사를 위해 1억 마르크(5,100만 유로)를 지원 받는다. 국가적 상징성을 띤 베를린의 시설을 위해 연방 정부는 매년 8천만 마르크(4,100만 유로)를 추가로 지원하며, 베를린 주 정부는 문화적 목적을 위해 여러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했다. 수도문화기금은 연방 정부를 통해 매년 2천만 유로를 지원 받으며, 이를 위해 연방 회계 감사원은 감사권을 부여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공동위원회는 예산 사용처를 합의 하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자료 66: 2001~2004 연방 수도 문화 재정 지원을 위한 조약)

연방 정부의 의견에 따르면 일괄 재정 지원 시스템은 지원금을 부분적으로만 보호했기 때문에, 새로이 제정된 엄격한 규정들은 필수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경제적 곤궁에 처했던 베를린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의 조율 없이 지원금을 주 정부 예산 충당에 사용했다. 그랬기 때문에 연방 정부 쪽에서 규정 변경이 제안되었다. 새로운 연방 정부는 1998년 이래 우선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문화국가부로 불리는 문화 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부를 개설해오고 있다. 문화 언론 부문 연방 정부 대표는 연방 총리 직속 특임 장관*이자 본과 베를린에 약 200 명의 직원을 둔 최고 연방 관청장이다. 문화특임장관은 연방 지역개발계획, 건설, 도시 건설부로부터 수도문화기금을 위한 권한을 이양 받는다. 연방 정부는 베를린에서 다양한 문화 시설물의 단독 지원 기관이 되었다. 이로서 연방 정부의 의견은 더 이상 다수결로 거부될 수 없었으며, 지원 기관의 투자 지분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책임을 졌다. 2002년에는 수도문화기금을 통해 100 여 개의 프로젝트들이 지원되었다. 연방 정부는 더 나아가 유네스코-문화유산인 베를린 박물관 섬의 보수 사업을 재정 지원한다. 그 밖에 베를린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1억 3천만 유로 이상이 투자되는 “신연방주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간 연방 시 본에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1999년

* 문화국가장관은 실제로 장관직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문에 문화국가장관은 연방 내각 내에서 투표권이 없다.

부터 연방 정부는 본의 전통 문화 분야 보조금을 70% 지원하고 있다. 본은 매년 문화 부문을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천만 유로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자료 67: 베를린과 본의 문화 지원에 관한 연방 정부의 보고서)

2003년 12월 9일 연방 정부와 베를린 주 정부가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 재정 지원에 관한 조약에 의거하여 연방 정부가 2001년에 합의된 연방 수도 문화 지원을 연계시켜, 해당 지원은 존속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베를린 주 정부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프로이센 문화재 재단의 건설 투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베를린 박물관 섬)를 위한 재정 지원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문화 정책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였다(자료 68: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 재정 지원에 관한 조약).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체결된 협정은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 재정 지원과 연방 수도의 특별 부담 보상에 관한 조약으로, 2007년 11월 30일에 연방 정부와 베를린 주 정부에 의해 체결되었다. 연방 정부는 2004년과 마찬가지로 2007년에도 지속해 온 2001년부터 시작해온 베를린 문화 지원을 두 번이나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는 연방 수도의 도심인 베를린 미테(Mitte) 지역의 운터 덴 린덴(Unter den Linden) 국립 오페라 보수에 2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자료 69: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 재정 지원과 연방 수도의 특별 부담 보상에 관한 조약)

자료 59

수도 이전 관련 베를린-본 논쟁(발췌) : 독일 연방의회 - 제 12차 임기 - 제 34차 회의

1991년 6월 20일, 본 - 개최 시각: 오전 10시

본 찬성 논거

- 독일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자유와 평화의 한 부분이 본과 연관을 맺고 있다. 본은 독일의 이웃 국가들 (중/동 유럽 포함)과의 평화를 상징한다. 연방 수도 본은 더 이상 임시 수도가 아니다. 본은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징하지만, 베를린은 그렇지 않다. 과거 권위적이며 전제적인 국가의 수도였던 베를린은 역사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 수도로서의 베를린의 흡입 효과는 신연방주 지역에도 피해를 줄 것이다. 이미 5만 2천여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베를린에 상주해 있다. 특히나 신연방주 지역의 주민들은 새로운 중앙 집권제를 원치 않는다. 신연방주의 추가적인 재건은 수도 베를린 없이도 이루어져야 하며, 이루어 질 것이다.
- 수도에 관한 19세기적 사고는 연방 독일과 연방 유럽에 적절치 못하다. 대부분의 연방 국가들은 수도로 가장 큰 도시를 정하지 않았다 (예: 미국, 캐나다, 스위스). 도쿄와 마드리드에서도 수도 이전이 고려되고 있다.
- 본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며, 베를린은 새로운 문제들을 떠안게 될 것이다 (주택, 지역개발계획, 인프라).
-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은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은 다른 곳, 특히 신연방주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엄청난 노력과 관심,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에 들어갈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지가 고민되지 않고 있다.
- 베를린의 여러 시장들은 베를린이 수도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관한 문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 통일조약은 베를린이 무조건 정부의 소재지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자료 59

베를린 찬성 논거

- 신빙성: 독일연방공화국은 지난 40년 간 베를린을 수도로 삼아 왔다. 본은 늘 스스로를 베를린의 대리모로 묘사해 왔다. 1949년에 프랑크푸르트는 수도가 되지 않았다. 본이 임시 수도였기 때문이다.
- 정당성: 재정과 경제, 무역, 학문, 기술의 중심은 모두 서독에 있다. 170 개의 연방 기관 중 70 개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주에 위치해 있다. 수도 이전은 베를린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안겨 줄 것이다. 동시에 본에 남고, 베를린으로 옮겨 가는 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본에서 의식적으로 선동되고 있는 걱정들은 근거 없는 내용들이다.
- 연방주의: 16개 주 중 12개 주가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을 찬성했다.
- 재정 문제: 대 베를린 투자는 대 신연방주 투자를 의미한다. 본에서도 투자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1949년 프랑크푸르트보다 본을 수도로 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 것이라는 판단은 착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은, 비용 문제로 독일 통일에 반대했어야만 할 것이다.
- 연대성: 베를린을 상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베를린은 독일에서 통일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도시이다. 본보다 베를린에서 정치인들은 국민과 사회적 문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연방 수도의 문제는 편리를 이유로 본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
- 독일 역사의 어둡고, 가장 어두운 부분은 베를린에서만 쓰여 지지 않았다.
- 베를린은 군사주의와 독재만을 상징하지 않는다. 베를린은 1944년 히틀러에 대항한 전복 시도와 “제 3 제국”의 연합 반대 세력이 결집하고, 1948/49년의 베를린 봉쇄가 극복되고, 1953년 스탈린주의에 대항한 봉기가 일어나고, 1989/90년 변혁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 베를린으로 수도 이전을 결정하는 것은 유럽을 등지는 행위가 아니다.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은 중/동 유럽을 향한 신호가 될 것이다. 베를린은 앞으로 유럽의 심장이 될 것이다.
-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수도로서 베를린은 너무 커서 기능하지 못하는 대도시가 아니다. 독일의 연방주의는 베를린이라는 수도와 관계없이 존속해 왔다. 베를린은 파

자료 59

리나 프랑스와 비교할 수도 없다. 수도로서의 베를린은 다른 독일 도시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한 적이 없다. 독일을 지배하는 프로이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투표 시작 시각: 오후 8시 50분

의장 리타 쥬스무트 (Rita Süßmuth) 박사: 여러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기다리기 힘들겠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개표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곧 개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긴장 되는 순간입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출된 표 660 중 유효표 659. 연방국가 방안 제의 - 인쇄물 12/814 - 본-제의 찬성표 320, 독일 통일 완결 - 인쇄물 12/815-, 베를린-제의 찬성표 337, 기권표 2.

최종 결과. 제출된 표: 660, 연방국가 방안 제의, 본-제의 - 인쇄물 12/814: 320

[이어 본 제의에 투표한 의원들의 이름이 발표된다.]

최종 결과. 제출된 표: 660; 독일 통일 완결 - 베를린-제의 - 인쇄물 12/815: 338

[이어 베를린 제의에 투표한 의원들의 이름이 발표된다.]

(원내교섭단체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베를린 시에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이번 논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것입니다. 지난 며칠간, 몇 주간 결정의 날인 오늘을 위해 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종료합니다(...).

이제 모두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회의 종료 시각: 오후 9시 49분)

자료 60

수도 조약

1992년 8월 25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독일연방공화국/연방 정부, 베를린 주/베를린 시 정부

내용

연방 정부와 베를린 시 정부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합의한다.

- 제 1조 (조약 당사자 간의 협력). 수도 베를린의 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긴밀하고 신뢰 깊은 협력이 합의되었다. 이러한 협력에는 베를린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구가 참작되어야 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수도 기능 지역의 발전과 헌법 기관과 관청의 위치 선정, 주택 공급, 외교 공관, 인프라, 문화 교육 시설, 상호 간의 부동산 제공이다.
- 제 2조 (공동위원회). 협력 조정을 위해 위원과 상임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결정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다. 회의는 실무단, 경우에 따라서는 하부 실무단에 의해 준비된다. 자문단이 구성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뒤따를 수 있다. 공동위원회는 업무 규정과 사무소를 갖는다.
- 제 3조 (브란덴부르크 주와의 협력). 브란덴부르크 주와의 협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자료 61

베를린/본 법

1994년 4월 26일, 본

담당자/기관

독일 연방 의회, 연방 수도 베를린, 연방 시 본, 연방 정부

내용

- 연방 수도 베를린과 연방 시 본 간의 장기적이며 공정한 업무 분담이 보장되어야 한다. 연방 의회와 연방 정부를 비롯한 정부 기능의 핵심 분야는 베를린에 소재한다. 본에는 다음의 정책 분야가 소재 한다 - 교육, 학문, 문화, 연구, 기술, 통신, 환경, 건강, 식품, 농업, 산림, 개발 정책, 국방.
- 수도 이전으로 피해를 입게 될 직원들과 본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문, 문화, 개발 정책, 경제 분야)
- 모든 연방 부처들은 베를린과 본 모두에 소재지를 둔다. 연방 부처들의 직원들은 대부분 본에 남아야 한다.
- 연방과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는 연방 수도 베를린의 제 기능을 보장하는 조약을 체결한다.
- 다수의 연방 기관들은 본으로 이전한다. 여러 재단, 연구소, 협회들 역시도 본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자료 62

본 지역을 위한 보상 조치에 관한 협정

담당자/기관

독일 연방 공화국/연방내무부 (연방),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라인란트-팔츠 주, 본 지역 (본 연방 시, 라인-직 군 (Rhein-Sieg-Kreis), 아르바일러 군 (Kreis Ahrweiler))

내용

- 의회 및 정부 소재지 상실로 인한 결과를 위해 본 지역에는 보상이 계획되어 있다. 특히 학문, 문화, 개발 정책, 경제 분야에 대한 보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개별 조치들이 10년 간 완결되지 않을 경우 협정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 연방 정부는 2004년까지 28억 1천만 마르크를 제공한다. (보상 계획 - 20억 마르크, 교통 부문 5억 마르크, 토지 보상 1억 마르크, 긴급 지원금 2억 1천만 마르크)
- 보상 조치로서 여러 연구소와 전문대학이 설립될 계획이다. 제조업과 산업 분야를 위한 토지 취득과 제조업 및 테크노 파크의 계획과 건설이 지원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쾰른/본 공항에는 고속열차가 연결될 것이다.
- 12 명의 위원 (연방 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2, 라인란트-팔츠 1, 본 시 3, 라인-직 군 2, 아르바일러 군 1)으로 구성된 협력 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결정은 합의를 통해 내려진다. 회의 준비를 위해 실무단,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단이 구성될 것이다. 위원회는 업무 규정 세우고 사무소를 운영한다.

자료 63

본 지역을 위한 보상 프로젝트

1994년 6월 29일, 본

담당자/기관

대학 강사 회의, 독일 민족 학문 재단, 독일 연구 협회, 독일 학문 교류처,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 본 국제 학교, 재건은행, 독일 유스호스텔협회, 독일 철도청, UN

내용

신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래의 지원 프로젝트 리스트는 발췌본이다. 평가. 바덴-바덴 노모스 (Baden-Baden Nomos)

1. **학문과 교육.** 엘리트 연구 센터와 3 개 전문대학 설립. 대학 강사회의, 독일 민족 학문 재단, 독일 연구 협회, 독일 학문 교류처,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 본 국제 학교의 신설 및 확대.
2. **문화.** 박물관, 대학, 재단의 신설, 전환, 확대
3. **본 지역의 경제 구조 전환.** 본/라인-직/아르바일러 지원 협회. 24 개 제조업 지역 (주도 본에 2 개, 노이비트 (Neuwied) 군에 3 개, 아르바일러 군에 7 개, 라인-직 군에 12 개) 조성. 5 개 테크노 센터 조성. 재건은행그룹을 통한 중소기업 투자 지원 (450 개 개별 승인)
4. **관광업.** 2 개 관광 협회 설립. 관광객 센터, 유스호스텔, 고속 철도 건설.
5. **국제기관.** 3 개 UN 국제기관, 본 국제 컨벤션 센터, MBA 학위를 위한 네덜란드 경영 대학원, 세계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 유치.
6. **토지 이전.** 6개 토지. 연방 의회가 자리했던 토지는 기존 건물을 포함해 국제 콩그레스 센터를 위해 무상 제공되었다.
7. **고속 열차 연결.** 쾰른/본 공항 연결.
8. **본 국제 콩그레스 센터 설립을 위한 예비비.** 향후 10년을 위한 자금.
9. **210 개의 추가 조치.** 심사 보고서, 분석, 마케팅, 홍보

자료 64

수도 재정 지원 조약

1994년 6월 30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독일연방공화국 (이하 연방 정부), 베를린 주 (이하 지방 정부)

내용

- 연방 정부는 지방 정부에 독일 연방 의회와 연방 정부의 소재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는 이를 위해 긴밀하고 신뢰 깊게 협력한다.
- 연방 정부는 지방 정부에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인프라와 문화, 특수 부담을 위해 13억 마르크를 지원한다. 지원 예산의 사용처에 관한 내역은 연방 회계 감사원이 감사한다.
- 연방 정부는 10억 마르크를 투입해 교통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지하철, 도심 터널) 이러한 조치는 2002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추가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6천만 마르크를 문화 분야에, 특수 부담 부문에는 6천만 마르크를 일괄 지원한다.
- 문화 분야를 위해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절반씩 참여하는 6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국이 설치될 계획이다. 감사국 결정은 협의를 통해 내려진다. 감사국은 활동 규정을 수립하고 사무소를 운영한다.

자료 65

수도 재정 지원 조약의 연계 조약

조약

독일연방공화국,
 대리인: 연방교통건설주택부 장관
 - 이하 “연방 정부” -

베를린 주,
 대리인: 베를린 시장
 - 이하 “지방 정부” -

는 1994년 6월 30일 체결된 독일연방정부와 베를린 주 간의 조약, 일명 수도 재정 지원 조약 '94에 대한 회의록 기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계 조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연방 정부는 지방 정부의 수도 관련 치안 조치의 일괄 보상을 위해 매년 7500만 마르크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의 치안 분야 특별 부담이 보상되어야 한다. (기본법 제 106조, 8항)

제 2조

기타 수도 관련 조치들은 연방 정부를 통한 특별 임명과 보상을 필요로 한다. 그밖의 내용은 연방 정부와 베를린 지방 정부 간의 “연방 수도의 문화 재정 지원을 위한 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자료 65

제 3조

연 예산은 매년 6월 30일에 지급된다.

제 4조

제 1조에 명시된 연방 정부의 의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예산 계획에 평가된 지출 규모에 맞춰 연 예산을 지급한다.

제 5조

본 조약은 2001년 1월 1일 발효되며,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001년 3월 29일, 베를린

2001년 3월 29일, 베를린

독일연방정부

베를린 지방 정부

헨너 비틀링 (Hnner Wittling)

폴커 케네 (Volker Kähne)

연방교통, 건설, 주택부 장관

베를린 시장

자료 66

2001~2004 연방 수도 문화 재정 지원을 위한 조약

2001년 7월 7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독일연방공화국/문화 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 (이하 연방 정부), 베를린 주/베를린 시장 및 베를린 내무 및 스포츠 의원 (이하 지방 정부)

내용

1994년 6월 30일에 체결된 수도 재정 지원 조약과 연계해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는 문화 재정 지원을 위한 연계 조약을 체결한다. 조약 효력 만료에 대한 양 측의 의사가 없을 경우 해당 조약은 매년 일 년 씩 자동 연장된다.

- 연방 정부는 조약 기간 동안 문화 시설과 행사를 위해 1억 마르크 (5,100만 유로)를 지원한다. 국가적 상징성을 띤 베를린의 시설을 위해 연방 정부는 매년 8천만 마르크 (4,100만 유로)를 추가로 지원한다. 연방은 단독으로 매년 3,600만 마르크 (18,5백만 유로)를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재단, 베를린 축제극장, 세계 문화의 집, 마틴-그로피우스-바우 (Martin-Gropius-Bau)에 지원한다.
- 유대인 박물관 재단과 세계 문화의 집은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지방 정부에서 사용자에게 이전된다.
- 연방 정부는 베를린 축제 극장과 세계 문화의 집의 지방 정부 지분을 양도 받는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는 감독 자문 위원회에 위원을 파견한다.
- 연방 정부는 프로이센 문화재 재단의 건설 투자에 4400만 마르크 (22 백만 유로)를 통해 참여한다.
- 수도 문화 기금은 매년 2천만 유로를 지급받는다. 연방 회계 감사국은 이에 대한 감사권을 부여 받는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는 기금 사용처를 합의 하에 결정한다.

자료 67

베를린과 본의 문화 지원에 관한 연방 정부의 보고서

2002년 7월 3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독일연방공화국/문화 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 연방 지역개발계획, 건설, 도시 건설부 (이하 연방 정부), 베를린 주/베를린 시 정부 (이하 지방 정부), 유네스코, 연방 시 본

내용

- 1994년~2000 수도 조약에 따른 지원.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베를린 지방 정부는 수도문화지원을 위해 4억 2,800만 마르크를 지원 받는다. 이러한 일괄 재정 지원 시스템은 그러나 부분적으로밖에 보호되지 못한다. 그로 인해 지원금은 베를린 지방 정부를 통해 연방 정부와의 조율 없이 지방 예산 충당을 위해 사용된다.
- 1998년 정부 교체. 새로운 연방 정부는 문화 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부를 개설했다. 문화국가장관은 연방 지역개발계획, 건설, 도시 건설부로부터 수도문화기금을 위한 권한을 이양 받는다. 연방 대표는 베를린 시 정부에 투명성과 해명, 증거 자료를 요청했으며, 지금까지의 일괄 지원 시스템을 종료한다. 연방 의회에는 문화 언론 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1~2004 수도문화조약. 연방 정부는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재단, 베를린 축제극장, 세계 문화의 집, 마틴-그로피우스-바우의 단독 지원 기관이 되어, 상임 대표직을 맡게 된다. 이로서 연방 정부의 의견은 더 이상 다수결로 거부될 수 없었으며, 지원 기관의 투자 지분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책임을 졌다.
- 수도문화기금. 본 기금의 연간 재정은 1,020만 유로이다. 그 동안 해당 기금을 통해 연극, 무용, 음악, 오페라 공연, 사진 전시회, 문학 행사 등 100 여 개의 프로젝트가 지원되었다.
- 프로이센 문화재 재단. 연방 정부는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베를린 박물관

자료 67

관 섬의 보수를 재정 지원하고 있다.

- “신연방주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 2001년부터 베를린은 1999년에 시작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1990년부터 1억 3천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베를린에서는 콘서트 하우스를 비롯해 기타 행사장과 시립도서관 등이 개보수 되었으며, 음악 앙상블과 성, 정원들이 지원되었다.
- 연방 시 본의 문화 지원. 1999년부터 연방 정부는 오페라와 연극, 오케스트라, 시립미술관과 같은 전통적인 문화 분야를 위해 본 시의 보조금을 70%까지 부담하고 있다. 2001년 본은 문화 분야를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3천만 유로를 지원 받았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본은 추가로 총 4,450만 유로의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며, 2004년까지 4,500만 유로에 달하는 문화 프로젝트들이 실행될 예정이다.

자료 68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 재정 지원에 관한 조약

2003년 12월 9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독일연방공화국/문화 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 (이하 연방 정부), 베를린 주/베를린 시 학문, 연구, 문화 행정부 (이하 지방 정부)

내용

- 연방 정부는 2001년에 시작된 베를린 유테인 박물관 재단, 베를린 연방문화행사 유한 책임회사, 마틴-그로피우스-바우의 지원을 지속한다.
- 연방 정부는 베를린 지방 정부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프로이센 문화재 재단을 재정 지원한다.
- 연방 정부는 2004년부터 함부르크 역 박물관과 미술 아카데미, 독일 시네마테크 재단을 위해 2,220만 유로를 지원한다.
-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는 문화 정책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자료 69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 재정 지원과 연방 수도의 특별 부담 보상에 관한 조약

2007년 11월 30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독일연방공화국/연방 재정부, 문화 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 (이하 연방 정부), 베를린 주/베를린 시장, 베를린 내무, 스포츠 행정부 (이하 지방 정부)

내용

- 연방 정부는 2001년에 시작되고, 2004년에 연장된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 재단, 베를린 연방문화행사 유한책임회사 (현 베를린 축제극장, 세계 문화의 집), 마틴-그로피우스-바우의 지원을 지속한다.
- 연방 정부는 2004년에 협정을 맺은 대로 프로이센 문화재 재단의 건설 투자를 베를린 지방 정부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재정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 연방 정부는 운터텐린덴 국립 오페라 보수를 위해 2억 유로를 일괄 지원하며, 지방 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4,100만 유로를 지원한다.
- 2004년부터 연방 정부는 미술 아카데미의 지원을 넘겨받아, 2006년부터 미술 아카데미는 연방 정부 직속 기관이 되었다.
- 연방 정부는 치안 조치를 위해 매년 6천만 유로를 지원한다.
- 지하철 U 5 확장에 대한 지원은 존속될 예정이며, 늦어도 2020년 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동 책자에 실린 내용은 통일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독일 통일 20년 계기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1.2 사회적 변화

동-서 분열, 인구 통계 그리고 소비행태

통 일 부

CONTENTS

제 1 부 **사회적 변화 · 159** 동-서 분열, 인구 통계 그리고 소비행태 /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1. 사회적 차이 · 161
 2. 인구 통계적 측면 · 166
 3. 오스탈기(Ostalgie) · 168
 4. 한국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인가? · 169
- 참고문헌 · 173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 177**

- 수록자료 개관 · 178
- I. 생활 · 노동 현황과 평가 · 183
 - 자료 1 동독 이주민 (1990) · 184
 - 자료 2 2050년까지의 연방주의 인구 변동 (2004.8) · 185
 - 자료 3 '새로운' 고령 지역: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신연방주 고령 주민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현실과 입장 (2006) · 186
 - 자료 4 사회보고서 2009: 신연방주 50세 이상 주민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자료와 현실 (2009.11) · 188
 - 자료 5 누가 독일에서 "부자"에 속하는가? 200%선 이상 소득자의 사회경제적 특징 (2000.7) · 190
 - 자료 6 자료보고서 2006: 독일의 물가, 소득 그리고 노동비용 (2006) · 191
 - 자료 7 2007년 각 주 별 건축용 토지의 구매가 (2009) · 192
 - 자료 8 세대 간 관계와 연대협약: 인구 통계적 발전 맥락에서 본 세대 간 조화 (2006) · 193
 - 자료 9 자료보고서 2006: 민주주의와 사회복지국가 (2006) · 195
 - 자료 10 자료보고서 2008: 주관적인 만족도와 가치 지향 (2008) · 197
 - 자료 11 1989년부터 2009년까지 평화적 혁명 이후 20년: 신연방주 주민들의 견해 (2009.7.20) · 198

II. 대응방안과 행동 권고 · 199

자료 12 “인구 통계적 발전”: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가 각 개인과 정치에 주는 과제 (2002,3,28) · 200

자료 13 브란덴부르크 주의 인구 통계상의 변동에 대한 감정서: 브란덴부르크 주 의회의
위탁 감정서 (2007) · 202

자료 14 획득한 시간: 독일의 고령화에 대한 제안 (2009) · 205

자료 15 인구 통계적 변화: 신연방주를 고려한 정책 제안 (2009) · 207

III. 아동과 청소년 · 209

자료 16 구 동독의 아동·청소년 지원의 전환 (2010.7) · 210

자료 17 2004년 독일의 가족과 생활형식 (2004) · 212

자료 18 제 13차 아동·청소년 보고서: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독일 아동·청소년 지원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 (2009) · 213

IV. 소비행태와 동독 제품 · 215

자료 19 브랜드를 통한 통일? 전체 독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2001) · 216

자료 20 동독지역 성공의 비밀: 최상품의 생존 전략 - 경영자가 배울 수 있는 점 (2009) · 218

제 **1** 부

사회적 변화

동-서 분열, 인구 통계 그리고 소비행태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 | |
|-------------------------------|-----|
| 1. 사회적 차이 | 161 |
| 2. 인구 통계적 측면 | 166 |
| 3. 오스탈기(Ostalgie) | 168 |
| 4. 한국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인가? | 169 |

사회는 특정 공간 안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규율하고 조직화하는 공동생활의 총제적인 단일체이다.
 칼 하인즈 힐만(Karl Heinz Hillmann)

사회는 다양한 강도로 개인의 감정과 행동을 끌어내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를 규율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

사회는 그 구성원에게 개인적인 계발 가능성을 제공하고 (교육, 문화 등),
 그 속에서 개인적 관심이 표현되고 동기가 형성되는 공동체의 일부분이다.
 (칼 뵘렛(Carl Böhm), 베르너 얀(Werner Jann), 마리 테레제 융커스(Marie Therese Junkers),
 에바 크론베트(Eva Kronenwett))

사회는 지향하는 방향과 질서를 각인하며, 개인과 집단에게 다양한 발전 기회를 상이한 분야에서 가능하게 하는 구조화된 공동생활체이다. 이러한 관계가 약 1,600만 명의 사람들에게 1990년 10월 거의 하룻밤 사이에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추측했고, 앞으로는 거의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대부분의 서독 사람들은 단지 동독만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자신들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역시 그렇지 않았다.

통일과 이에 따른 독일의 통합을 향한 과정은,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전체 독일에 변화를 가져왔다. 통일 전 서베를린은 서독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도시였으나 통일 후에는 동독의 가장 서방적인 도시가 되었다고 통일 이후 서베를린의 일본-독일 협회 회장이었던 티로 그라프 브록도르프(Thilo Graf Brockdorff)가 언급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변화를 보이는 전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다루게 된다:

- 독일 사회의 분열
- 소득의 격차

- 인구 통계의 변화
- 동독 과거의 일부에 대한 미화 및 낭만주의화, 그에 따른 소비행태의 변화. (자료 5-7 및 19-20)

위의 주제는 대규모의 인구집단과 관련이 있는 분야로, 한편으로는 변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를 막는 힘들이나 관습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관행 내지는 습관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통계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여전히 “구연방주”와 “신연방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¹는 것이 이 두 가지 행동 양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교수 브루노 힐덴브란트(Bruno Hildenbrand) 박사 (예나 대학(Universität Jena))가 작성한 청소년 지원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자료 16)

1. 사회적 차이

1.1 동-서 분열

“인민연대”의 2008년 사회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훌륭한 성과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결함과 정의가 결여된 부분이 있다. 특히 사회적·정신적 통합은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²

형식적 통일이 이루어진지 20년이 지났지만 독일에는 여전히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동-서의 차이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통일이 그러한 격차의 근본 원인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전체 국민의 20%를 차지하는 독일 엘리트 중 단지 5%만이 동독지역 출신이다. 동독 출신 중에는 독일의 (국제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대기업의 총수나 연방정부 각료,

1 역주: 신연방주는 통일과 함께 새로이 연방주에 편입하게 된 동독의 주를 의미하고, 구연방주는 통일 이전부터 연방주에 소속되어 있던 서독의 주를 일컫는다.

2 사회보고서 2008. *사회 개혁과 사회 안전. 2008년 평가와 신연방주 국민의 견해*. 인민 연대. 2쪽.

혹은 전국적인 방송국이나 신문의 편집장이 없다. 신연방주의 엘리트 중 30%만이 현지 출신이다.

- 2010년 여름, 즉 통일된 지 거의 20년이 지난 후 (베를린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18명의 서독지역 출신 **장관**들이 동쪽 연방 주(신연방주) 내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서쪽 연방 주(구연방주) 내각에는 동독지역 출신의 장관은 한 명뿐이었다.
- 서독 지역의 전체 독일인의 3분의 1은 아직 동독지역에 가 본 경험이 없다.
- 2009년에는 **연방군의 장군** 중 199명이 서독지역 출신이었고; 단지 한 명만이 “동독 장군”이었다. 연방군이 외국에 투입된 경우는 위와 다른 비율인데, 3,248명이 서독 지역 출신이고 3,143명이 동독지역 출신이며, 좀 더 하위직과 사병의 경우는 동독 출신의 비율이 더 크다.
- 동독인의 3분의 2는 자신들을 **2등 국민**으로 느끼고 있으며, 동독인의 4분의 3은 서독인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고 느낀다.
- 독일 전체 혼인 중 4%만이 동독인과 서독인 간에 행해졌다.
- 소득 수준(임금, 월급 그리고 연금소득)은 아직 차이가 있다.
-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주민이주가 있었다. (자료 1과 2)
- **실업자**의 수는 동독지역이 더 많고, 영업장의 평균 크기는 동독지역이 서독지역보다 작다. 비율로 보면 동독지역은 서독지역의 두 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실업 상태이며, 직업별 수입은 평균 17% 정도 적다. 생활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9.5% 정도의 격차**를 보인다.
- 동독지역은 서독지역에 비해 저임금분야가 두 배로 많고, **저임금의 수준도** 현저히 낮다.
- (엘리트지위, 우수그룹) 순위에서 서독지역의 **대학**,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와 바이에른(Bayern) 주의 대학이 앞서 있다.
- 동독지역 대학의 인문·사회과학의 **교수**들 중 95%가 서독지역 출신이다.
- 연방헌법재판소의 16명의 **재판관** 중 동독지역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
- **알코올 소비**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Mecklenburg-Vorpommern)이 가장 앞서 있는데, 이 주의 소비가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연방주인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보다 4.5배 많다.

- **교통사고의 건수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Mecklenburg, Vorpommern)이 1위인 데, 그 이유로 교통 전문 학자는 교통과 관련한 개인의 책임 의식 부재를 들고 있다.**

위 분야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신연방주의 낙후성 및 차별대우를 증명하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흔히 다음 두 가지 점이 언급되고 있다.

1. 동독의 전반적인 발전과 1945년 이후 발전 초기, 즉 출발조건부터 이미 구동독지역은 구서독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다.
2. 1990년 이후, 즉 통일 이후의 발전

전환기에는 위와 같은 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이유를 들 수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전환기가 끝났어야 한다. 하지만 1990년에 총체적인 체제 변화가 있었다. 모든 체제에는 그 체제의 엘리트가 지향하는 바가 있고,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후계자를 자기 집단에서 우선적으로 충원한다. 많은 신뢰성 있는 연구들이 예측하는 바로는 성공적인 동화과정은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 세대가 경과된 이후, 시간적으로 약 40년이 지나야 완성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차이들은 연구대상자들의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자기 판단은 항상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기술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사회적인 관계와 정치적 분위기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이 한국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2 남-북 분열

남부 지역과 북부지역 간의 격차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연방주에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동독 시절에도 존재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체 독일지역에서 나타난 상이한 농업구조는 각각 정주 노동활동(소작인, 농부)이나 유동적 직업 활동(보다 넓은 고용의 기회)을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실제 이를 보여주는 많은 지수 중 하나가 혁신능력 지수인데, 이는 특허출원의 숫자로 나타난다.

표 1 | 2005년 연방 주에 따른 주민 100,000명 당 특허 등록

| | |
|--------------------------------------|-----|
|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 120 |
| 바이에른(Bayern) | 110 |
| 헤센(Hessen) | 56 |
|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 55 |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 45 |
| 자알란트(Saarland) | 34 |
| 니더작센(Niedersachsen) | 34 |
| 튀링겐(Türingen) | 30 |
| 슐레스비히-홀스타인(Schleswig-Holstein) | 21 |
| 작센(Sachsen) | 20 |
|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 15 |
|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 12 |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Mecklenburg-Vorpommern) | 11 |

출처: Bohler, Karl Friedrich/Hildenbrand, Bruno. 2006. Nord - Süd. In: Lessenich, Stephan - Nullmeier, Frank, Hrsg.: 독일 - 분열된 사회(Deutschland - eine gespaltene Gesellschaft). Frankfurt/M: Campus Verlag, S. 247.

1.3. 상이한 임금 수준

동서지역의 서로 다른 대우는 소득(임금, 연금)에서 쉽게 볼 수 있다. 2009년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총 임금과 총 월급 수준은 서독지역이 동독지역보다 5분의 1 정도 더 높다. 전체 독일의 평균과 비교할 때 서독지역이 103%이고 동독지역은 82%이었다. 절대 수치는 다음과 같다:

- 서독지역 연간 총 소득 28,500 유로,
- 동독지역 22,700 유로,

그러므로 연간 격차는 5,800 유로이다.

다음과 같은 여러 차이점들이 있다:

- 평균 노동자가 연간 25,300 유로를 버는 가장 가난한 구서독지역 연방주 (슐레스비

히-홀스타인)와 연간소득이 22,800 유로인 구동독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연방주 (작센)간에는 2,500 유로의 격차가 존재한다.

- 물론 구서독지역내의 차이는 더 특징적이다: 함부르크는 32,900 유로로 쉘레스비히-홀스타인보다 7,600 유로 정도 더 많다.

2015년까지 동-서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독지역에서의 임금 상승비율이 서독지역보다 연간 4% 높아져야 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여론 분위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연방 정부의 대답은 모든 것이 경제 발전에 따를 것이라는 것이다. 90년대 초기 구동독지역 임금이 빠르게 회복한 이후에는 임금상승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자료 6)

“좌파당(Die Linke)”과 정치적으로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최소한 독일 전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정 최저임금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특히 저임금분야가 많은 구동독지역의 최저임금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4 연금

통일 후 거의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동독지역의 연금 가치는 서독지역 보다 낮은 88.7% 수준이며, 비판자는 이를 동일한 평생 성과에 대한 상이한 가치평가로 본다. (표 연금수령자의 월 수령액) 이러한 차이는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의 임금격차에서도 발생한다. 그것은 연금의 액수가 비율로 산정이 되기 때문이다. 임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독지역 노동성과에 대한 연금액수를 더 높게 평가하여 동독지역의 평균 수입자가 서독지역의 평균 수입자와 (저임금에 있어서) 동일한 연금 액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연금격차를 줄이는 목표가 달성되면 동일한 성과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은 중지될 것이며, 이는 많은 동독지역의 연금수령자들에게 그들의 요구나 기대가 지금보다 낮아지게 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더 이상 초과 보상은 없게 된다.)

2. 인구 통계적 측면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통일 이후의 발전에 기인한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독일은 더 노화하고 더 가난해지고 있다.

1989/90년 동독의 인구는 1,660만 명 정도였고 2008년 말에 1,303만 명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각 개별 연방주마다 달라서, 주변지역을 포함한 수도 베를린 지역은 인구가 증가한 반면, 농촌지역인 브란덴부르크의 일부 지역은 인구밀도가 매우 낮다. (자료 3)

위의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991년부터 2003년까지는 다음과 같은 인구 이동을 포함, 양 방향으로의 이주가 진행돼 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203만 5천 명의 동독인이 서독지역으로 이주
- 111만 9천 명의 서독인이 대도시를 위주로 동독지역으로 이주

통일과 함께 구동독지역 경제의 붕괴와 탈산업화가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1989년부터 1992년 사이의 짧은 시간 내에 4백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는 다음과 같이 극도로 부정적인 역동성을 가진 발전을 초래했다.

- 실직 → 이주 → 구매력의 상실 → 세금징수액의 감소 → 극단적인 출생률의 감소 → 정부지원 필요의 증가 → 종속성과 희망 부재의 정서
- 2004년에는 동독지역의 국가경비 지출비용인 1,160억 유로 중 8,300만 유로가 서독 지역에 의해 지원되었다. 이러한 종속성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는 하지만,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역동성을 촉진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수 백만의 삶이 한 번에 바뀌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지그버르트 레베르크(Karl-Siegbert Rehberg)는 참으로 독특한 측면을 지적했다. “사람들은 행동 포기라는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이후 출산율, 결혼과 이혼의 전면적인 감소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는 경제위기 대공황이나 혹은 양차 세계대전때 보다도 훨씬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90년에서 1991년까지는 출생율이 40% 정도 감소했고, 다음 해에는 19% 추가 감소했으며,

1993년에는 8% 정도 다시 추가적으로 감소하였다.)”³

역사적으로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중적인 체제전환과정이 있었다.

- 동독의 체제전환, 즉 전 사회의 사유화,
- 피할 수 없는 세계화의 압력에의 순응

사회경제적 발전과 (지역 주민의) 이주과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러 사회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직면했었지만, 구동독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직접적인 큰 충격에 직면하였다. 몇몇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거의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0년 신탁관리청이 4백만 명 이상의 피고용인을 가진 약 8,500개의 영업소를 인수했다. 콤비나트의 해체 이후 12,000개 이상의 회사가 생겨났다. 1994년 말 신탁관리청이 이러한 사유화 작업을 종료했을 때 약 150만 개의 일자리만 남았다. 회사의 3분의 1은 폐쇄되었다.

대기업이 살아남은 경우가 드물었고, 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재산을 매입하여 그 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더 적은 노동력이 고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사례:

어떤 도시가 산업 콤비나트 (약 2,300개의 일자리)를 신탁관리청으로부터 매입한다. 이 회사는 경쟁력이 없어 유지되지 못하고 철거되어 공업단지로 변하게 된다. 19년 뒤에는 40개의 회사가 정착하게 되고 대략 1,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이처럼 고용 인력 절반 이상의 감소는 사람들이 이주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그 중 젊고 능력이 있는 가족의 경우도 자주 이주 할 수밖에 없게 하는데, 이는 결국 인구, 소비, 세금징수액, 어린이 및 학교의 감소 등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3 Rehberg, 상기, 221쪽

3. 오스탈기(Ostalgie)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우 기억력의 감퇴와 함께 과거 사건을 덜 불편했던 것으로 인식하고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심리적인 자기보호의 메카니즘이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그때가 다 나빴던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 동독의 급격한 몰락,
- 황폐화된 동독의 사실상 상황에 대한 정보,
- 방향설정의 부재, 부분적으로는 무기력,
- 실업,
- 명백한 열등감과 감동을 받는다는 느낌,
- 많은 서독 출신 사람들의 거만함, (동독의 역사와 삶에 대한) 지식과 섬세한 배려의 결여,
- 동독의 상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인이 그동안 이룩한 성과도 비판받는다는 느낌

이런 요인들 전부가 구동독에 대한 향수를 가져오고, 이를 곧 “오스탈기(Ostalgie)”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칼-지그버르트 레베르크(Karl-Siegbert Rehberg)는 이러한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급격하게 변하는 역사에 휩쓸리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가치가 변하였다. 일례로 동독의 마지막 시기에 동독 소비품은 갑자기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 서독 물품에 완전히 밀려났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동독 화폐를 서독-마르크로 환전했던 시기가 지나고 난 후, 마법에서 풀리고 ‘황금의 서독’이 자신의 정부를 몰아냄으로써 얻은 것이 없다는 첫 충격이 왔다. 많은 “학식이 있는 구동독 시민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이방인’이

4 역주: 오스탈기(Ostalgie)는 Ost(동쪽)와 Nostalgie(향수)의 뒷부분 talgie를 합성해 만들어 낸 신조어로 구동독 시절의 삶에 대한 향수를 나타낸다.

되었음을 느꼈거나, 혹은 작가 폴커 브라운이 이미 1990년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바와 같이, ‘나는 아직 여기에 있는데, 나의 나라는 서쪽으로 간다.’⁵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실망과 부정적인 경험이 곧 부분적이거나 과거에 대한 왜곡을 가져왔다. 1990년에는 소수의 구동독지역 주민들만이 교육제도, 건강보건제도 그리고 주거상황이 동독이 더 좋았었다고 믿었던 반면 몇 년 후에는 다수가 명백하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통일 이후 일반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자연히 연령과 사회적 출신 그리고 직업 상황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자료 9~11)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에는 아직도 상이한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상이한 어휘 대부분이 정치적 신랄함은 없어지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는 종종 민속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예술적으로 형상화 되었으며 여기서 흥미로운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의 영화(Film)는 서독지역 주민들만 또는 동독지역 주민들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는 예를 들면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사람들이 *굿바이 레닌(Goodbye Lenin)* (2003)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타인의 삶(Das Leben der Anderen)* (2006)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최고영화로 선정되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였다.

4. 한국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인가?

본 프로젝트의 다른 모든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음과 같은 자명한 사실을 강조할 수 있다:

- 평화적 통일을 위해 독일 사례는 그 전체를 통째로 따라야 할 모델은 아니며,
- 북한은 동독의 과거와 동일하지 않으며,
-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예측 보다는 많은 희망과 우려가 있으나,

5 Rehberg, Kart-Siegbert, 2006: “Ost – West”, in: Sessenich, Stephan/Nullmeier, Frank, Hrsg. *Deutschland – eine gesplittene Gesellschaft*. Frankfurt/New York, 221쪽.

- 그럼에도 몇몇 통일과정에서의 경험들은 한국을 위해 논의할 가치가 있거나 심지어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사이의 임금, 월급 그리고 연금의 동화과정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었다는 점과 독일의 인구 통계적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한국과 관련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북한주민의 체류와 고용을 위해 필수적이고 정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규정들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
- 최저임금제는 실현가능한가?
- 위의 규정들은 북쪽에만 적용되어야 하는가 혹은 통일 후 한국 전체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구동독 시절에 대한 향수로 인한 미화 과정과 감독받고 차별받는다느 느낌은 정치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정형화와 일반화는 1990년대 동독지역에서 나쁜 변화와 이것을 초래한 나쁜 사람들은 모두 서쪽에서 왔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토마스 아베(Thomas Ahbe)는 이를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고위공무원과 과도기에 동독지역에 파견된 서독의 중견 관리, 청산인, 기업회생 관리인, 민영화 집행인, 투자자나 자본 소유주, 생산, 영업 그리고 보험 분야의 장, 교관, 교사, 평가자,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자는 대부분 서독인들이다.”⁶

한국에서는, 그것이 언제 가능하든지 간에, 후견이나 이질화되는 감정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서의 정책을 북한을 대표하는 파트너와 공동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독자성과 독립성이 민족의 신성한 자산에 속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서독에서는 체제변혁 과정이 (동독인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동독지역의 실망과 구동독 시절에 대한 향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것은 지금도 그렇다. 한반도의 남북한은 독일과 비교하여 보다 더 심하게 나타날 유사

6 Ahbe, Thomas, 2004. “Die Konstruktion der Ostdeutschen, Diskursive Spannungen, Stereotype und Identitäten seit 1989.”,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Jhg. 54, Bd. 41-42, S. 13.

한 문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향할 가치있는 결합

한국은 북한 사회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선입견 없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남한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남한의 역동성과 북한의 긍정적 연대성이 결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표 2 | 연금 수령자의 월 수령액(유로), 2008

| 연방 주 | 남자 | 여자 |
|--------------------------------------|---------|--------|
|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 1055.39 | 516.05 |
| 바이에른(Bayern) | 983.41 | 496.12 |
| 베를린(Bayern) | 1039.27 | 684.06 |
|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 1035.67 | 677.38 |
| 브레멘(Bremen) | 1044.16 | 507.53 |
| 함부르크(Hamburg) | 1069.70 | 596.02 |
| 헤센(Hessen) | 1051.61 | 493.95 |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Mecklenburg-Vorpommern) | 1000.65 | 652.84 |
| 니더작센(Niedersachsen) | 1024.05 | 459.31 |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 1118.28 | 457.83 |
| 라인란트-팔쯔(Rheinland-Pfalz) | 1013.52 | 429.57 |
| 자알란트(Saarland) | 1119.18 | 390.32 |
| 작센(Sachsen) | 1059.04 | 682.58 |
|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 1031.79 | 649.76 |
| 슐레스비히-홀스타인(Schleswig-Holstein) | 1017.89 | 482.99 |
| 튀링겐(Türingen) | 1030.28 | 669.74 |
| 연방 평균 | 1049.27 | 528.23 |

출처: 독일 연금보험의 지역별 일람, <http://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음영 부분은 동독지역을 의미

그림 1 | 연금수령자(남성)의 월 수령액(유로),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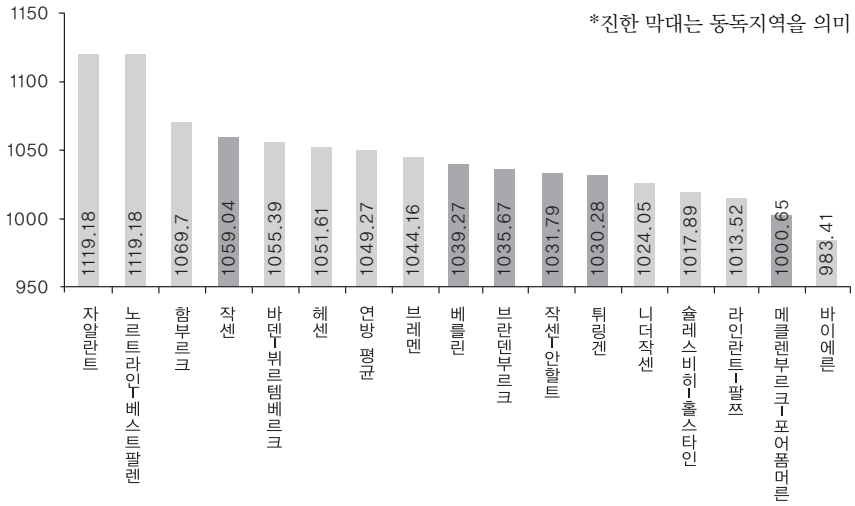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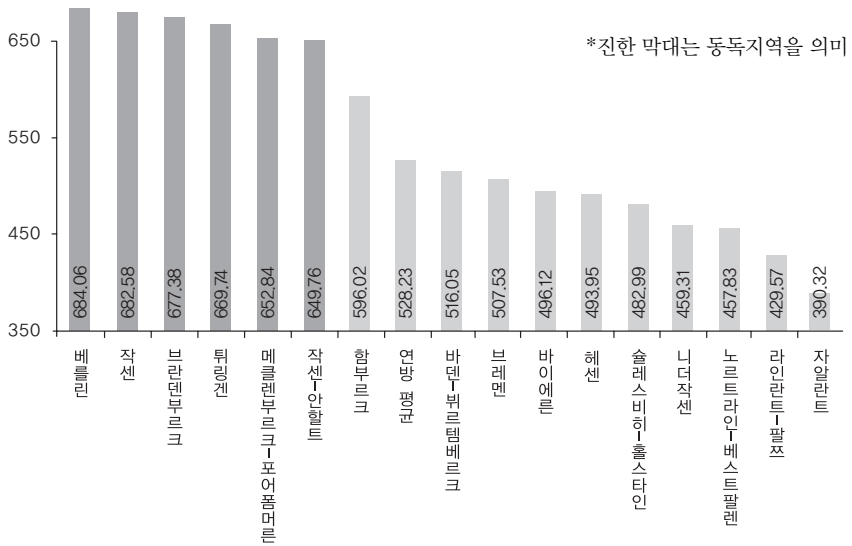


그림 2 | 연금수령자(여성)의 월 수령액(유로), 2008



■ 참고문헌

- 1990년 갑작스런 종말과 “청산” 90er – *Das jähe Ende und die Abwicklung*.
http://www.tvddr.de/geschichte/90er. 9.8.2010.
- 무엇이 독일인을 통일시키고 분열시키는가? 통일 이후의 분위기와 여론, (Amster),
Peter/Weidenfeld, Werner, Hrsg. 1995: *Was eint und was trennt die Deutschen? Stimmungsbilder nach der Vereinigung*. Mainz.
- 이중의 현대사. 독-독 관계 1945-1990 (Bauerkämper), Arnd (Hrsg.). 1998. Doppelte
Zeitgeschichte. *Deutsch-deutsche Beziehungen 1945-1990*. Bonn: Dietz.
- 두려움과 혁신 사이에서. 통일 이후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독일인의 생활감정 (Becker),
Ulrich/Becker, Horst/Rohlnad, Walter. 1992. *Zwischen Angst und Aufbruch. Das Lebensgefühl der Deutschen in Ost und West nach der Wiedervereinigung*. Düsseldorf.
- 우리의 유산. 동독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남아있나? (Bender), Peter. 1992. Unsere Erbschaft.
Was war die DDR – was bleibt von ihr? Hamburg/Zürich.
- 동독 제품. 숨은 존재와 시장 주도 사이에서 (Bethge), Johannes. 2006. Ostmarken. *Zwischen Nischendasein und Marktführerschaft*. Saarbrücken.
- 독일 문제. 왜 통일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게 하는지 (Bisky), Jens. 2005. *Die deutsche Frage. Warum die Einheit unser Land gefährdet*. Berlin.
- “독일어 – 분단된 나라에서의 언어“ (Drosdowski), Günter. 1991. *Deutsch – Sprache in einem geteilten Land*”. Deutsche Akademie für Sprache und Dichtung: Jahrbuch 1991.
- 동독인. 잃어버린 나라의 고객 (Engler), Wolfgang. 1999. *Die Ostdeutschen. Kunde von einem verlorenen Land*. Berlin.
- 성공의 비밀 동독. 최상 상품의 살아남기 전략 – 매니저가 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Errichiello), Oliver und Zschesche, Arnd. 2009. *Erfolgsgeheimnis Ost. Survivalstrategien der besten Marken – und was Manager daraus lernen können*. Wiesbaden: Gabler.
- 자유라는 새 옷 아래 통일이라는 코르셋 (Faber), Christel und Meyer, Traute (Hrsg.). 1992.
Unterm neuen Kleid der Freiheit das Korsett der Einheit. Berlin.
- 튀링겐에서 2012년까지 인구 발전이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분야에 미칠 영향. 청소년국의 업무지
원, 주 사회가족부의 위탁으로 작성 (Fendrich), Sandra/Schillig, Matthias. 2003. *Auswirkungen der Bevölkerungsentwicklung auf die Arbeitsfelder der Kinder- und Jugendhilfe bis zum Jahre 2012 in Thüringen. Eine Arbeitshilfe für die Jugendämter, erstellt im Auftrag des Landesamts für Soziales und Familie, Abteilung 5 – Landesjugendamt Thüringen*. Dortmund: Dortmunder Arbeitsstelle Kinder- und Jugendhilfestatistik.
- 신연방주 주민. 통합 없는 전환 (Gensicke), Thomas. 1998. *Die neuen Bundesbürger. Eine Transformation ohne Integration*. Opladen, Wiesbaden.

- 통일 이후 독일: 최근 과거의 청산 (Glaeßner), Gert-Joachim (Hrsg.), 1996. *Germany after Unification: Coming to Terms with the Recent Past*. Amsterdam, Atlanta: GA: Rodopi.
- 통일로의 길. (Görtmaker), Manfred, 2005. *Der Weg zur Einheit.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Heft 250*. Bonn.
- 미디어로서의 상품. 서독과 동독의 상품소통의 문화사 (Gries), Rainer, 2003. *Produkte als Medien. Kulturgeschichte der Produktkommunikation in der Bundesrepublik und der DDR*. Leipzig.
- 원탁. 국민과 권력. 구동독 마지막 해의 정치문화 (Hahn), André, 1998. *Der Runde Tisch. Das Volk und die Macht. Politisches Kultur im letzten Jahr der DDR*. Berlin
- 구동독과 동독 연방주에서의 시민운동 (Haufe), Gerda und Bruckmeier, Karl (Hrsg.), 1993. *Die Bürgerbewegung in der DDR und in den ostdeutschen Bundesländern*. Opladen.
- 독일에서의 도시발전과 도시정책 (Häußermann), Hartmut/Läppöe, Doeter/Siebel, Walter, 2007. *Stadtentwicklung und Stadtpolitik in Deutschland*. Frankfurt/Main.
- 동독의 과자산업의 역사 (Heinemann), Michael, 2007. *Geschichte der Süßwarenindustrie in der DDR*. Leverkusen.
- 전환 이후의 독일 (Hettlage), Robert/Lenz, Karl (Hrsgl.), 1995. *Deutschland nach der Wende*. München.
- “왜 동독인과 서독인은 서로 빗겨가며 이야기하는가...” 정치와 시대역사 (Klein), Olaf Georg, 2002. “Warum Ost- und Westdeutsche aneinander vorbeireden...” *Politik und Zeitgeschichte* 16,9,2002, S. 3-5.
- 당신들은 우리를 하나도 이해할 수 없다! “왜 동독과 서독은 서로 딴 얘기만 하는가” (Klein), Olaf Georg, 2004. *Ihr könnt uns einfach nicht verstehen! Warum Ost- und Westdeutsche aneinander vorbeireden*. München.
- 동독에서 남아 있는 것 (Kleiner), Franziska (Hrsg.), 2009. *Was von der DDR übrig blieb*. Berlin.
- 동독-혼합체 (Kleiner), Franziska (Hrsg.), 2006. *Das DDR-Sammelsurium*. Berlin.
- 동독제품의 승리 - 독일 통일에 있어서 심성과 제품의 역사 (Lay), Conrad, 2009. *Der Siegeszug der Ostprodukte - Zur Mentalitäts- und Produktgeschichte der deutschen Vereinigung*. <http://www.oeko-net.de/kommune/kommune1-97/tlaz197.html>, 04.08.2010, 9.8.2010
- 독일-연감 1945-1995 (Lehmann), Hans-Georg, 1995. *Deutschland-Chronik, 1945-1995*. Bonn
- 독일 하나의 분열된 사회 (Lessenich), Stephan und Nullmeier, Framl (Hrsg.), 2006. *Deutschland eine gespaltene 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Campus.
- 구동독의 유산으로서의 청소년 지원 (Mannschatz), Eberhard, 1994. *Jugendhilfe als DDR-Nachlass*. Münster: Votum.

- 유토피아와 욕구. 구동독의 소비문화의 역사 (Merkel), Ina. 1999. *Utopie und Bedürfnis. Die Geschichte der Konsumkultur in der DDR*. Köln.
- “통일 독일의 가치와 가치변동” (Meulemann), Heiner. 2002. “*Werte und Werwandel im vereinten Deutschland*” *Politik und Zeitgeschichte* 15.9.2002. S. 13–22.
- 우리의 혁명. 1989/90년의 역사 (Neubert), Erhaft. 2008. *Unsere Revolution. Die Geschichte der Jahre 1989/90*. München.
- 기적 경제. 60년대의 동독 소비문화 (Neue Gesellschaft für bildende Kunst) (Hrsg.), 1996. *Wunderwirtschaft. DDR-Konsumkultur in der 60er Jahren*. Köln.
- 빛의 끝에 있는 터널: 새로운 동독의 정치적 전환에 대한 연구 (Offe), Claus. 1994. *Der Tunnel am Ende des Lichts: Erkundungen der Politischen Transformation im Neuen Osten*. Frankfurt am Main: Campus.
- “뽀뽀 인사”에서 “오씨 증명”으로. 동-서-독일 토론 (Reiher), Ruth und Läger, Rüdiger (Hrsg.). 1996. *Von “Buschzulage” und “Ossinachweis”. Ost-West-Deutsch in der Diskussion*. Berlin.
- 미래로의 돌아가는 길. 동독의 어려운 전환 과정에 대하여 (Reißig), Rolf (Hrsg.). 1993. *Rückweg in die Zukunft. Über den schwierigen Transformationsprozeß in Ostdeutschland*. Frankfurt, New York.
- 아름다운 통일 디자인 (SED). 2008. *Schönes Einheitsdesign*. Köln.
- 여성이 통일의 값을 치르는가? (Süßmuth), Rita und Schubert, H. (Hrsg.). 1992. *Bezahlen die Frauen die Wiedervereinigung?* München.
- 독일 통일의 차원들: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법적 분석 (Shingleton), A. Bradley, Gibbon, Marian J. und Mack, Kathrzyn S. (Hrsg.). 1995. *Dimensions of German Unification: Economic, Social, and Legal Analyses*. Bolder, CO: Westview Press.
- 구동독 광고 대사전 (Tippach-Schneider), Simone. 1998. *Das große Lexikon der DDR-Werbung*. Berlin.
- 대 동독제품 소 사전 (Ulbrich), Reinhard. 1998. *Kleines Lexikon großer Ostprodukte*. Düsseldorf/München.
- 동독의 이주자. 변화의 존재와 교육의 성공 사이에서 (Weiss), Karin/Kindelberer, Hala (Hrsg.) 2006. *Zuwanderer in Ostdeutschland zwischen Transferexistenz und Bildungserfolg*. Freiburg.
- www.verfassungen.de/de/ddr/wahlggesetz90.htm, 9.8.2010.
- 조국의 승리: 독일 통일과 여성의 주변화 (Young), Brigitte. 1999. *Triumph of the Fatherland: German Unification and the Marginalization of Wome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동독의 새로운 연대기 (Zimmerling), Sabine und Zimmerling, Zeno. 1990. *Neue Chronik DDR*. Berlin: Tribüne Verlag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 | |
|-----------------|-----|
| ■ 수록자료 개관 | 178 |
| Ⅰ. 생활·노동 현황과 평가 | 183 |
| Ⅱ. 대응방안과 행동 권고 | 199 |
| Ⅲ. 아동과 청소년 | 209 |
| Ⅳ. 소비행태와 동독 제품 | 215 |

수룩자료 개관

I. 생활·노동 현황과 평가

독일에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주민 이주가 있다. 전환기 이전에도 이주가 있었다는 사실은 동독에서 항구적 출국 허가 신청이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료 1, 동독 이주민)

인구 통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은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다. 동독 지역의 신생아 기대 수명은 통상 구연방주보다 낮았다.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의 국내 이주는 계속될 것이며,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는 동독지역에서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항상 그 전개과정을 인식할 것을 요하며, 이와 함께 지역적인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자료 2, 2050년까지의 연방주의 인구 변동)

군나 빈클러(Gunnar Winkler) 인민연대 (1945년 10월 소련군 점령지역에서 설립된 원조기관) 회장은 신연방주 고령 주민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글을 통해 관련 자료를 많이 제시하였다. 구연방주와 신연방주의 연금수령자의 사회적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볼 때, 독일에서는 향후 여러 해 동안 두 그룹의 “독일 연령층”이 있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자료 3, 군나 빈클러(Gunnar Winkler), ‘새로운’ 고령 지역: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신연방주 고령 주민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현실과 입장)

인민연대가 연 1회 출간하는 연감 중 2009년 보고서는 무엇보다 개인과 가족의 소득에 따라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모든 생활 조사영역 중 주거영역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 준다. (자료 4, 사회보고서 2009: 신연방주 50세 이상 주민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자료와 현실)

독일 통일 이후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소득 또한 계속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동독 지역은 전반적으로 소득의 불균형이 심하지 않고 소득 수준이 낮으며, 양극에 속한 주민의 비율 또한 서독지역보다 낮다. 최근 신연방주에서는 적어도 이전의 양극화 경향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 5, 누가 독일에서 “부자”에 속하는가? 200%선 이상 소득자의 사회경제적 특징)

또한 2006년의 자료보고서에서도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건축용 토지의 구매가격을 보면 2004년 평균 구매가격이 바이에른이 가장 높고, 튀링겐이 가장

났다. 신연방주는 - 베를린을 제외하고는 - 독일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고 모두 평균 이하였다. 소득에 있어서도 비슷했다. 총 월간 소득은 신연방주가 구연방지역보다 27.4% 정도 낮았으며, 동-서 소득 격차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자료 6, 자료보고서 2006: 독일의 물가, 소득 그리고 노동비용)

건축용 토지, 미건축 토지나 그 밖의 토지에 관한 2009년 통계연감 자료를 보면 토지에 대한 상세한 개괄 상황을 볼 수 있으며, 앞서 자료에서 나타난 수치와 그 의미를 증명해 준다.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차량 허가에 관한 자료가 아직도 호환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한다. (자료 7, 2007년 각 주 별 건축용 토지의 구매가)

인구 통계상의 변화로 인해 가족과 사회에 대해 보다 강력한 원조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세대 간의 관계와 연대협약에 대한 자료를 보면 명백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살아감을 통상 도덕적인 합의라는 의미에서 세대 간의 협약이라고 한다. 세대 간의 불평등이 아닌, 모든 세대를 통틀어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현재와 미래의 사회 안정이라는 사회 정책의 주요 문제가 된다. (자료 8, 세대 간 관계와 연대협약. 인구 통계적 발전 맥락에서 본 세대 간 조화)

2006년 자료 보고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민주주의와 국가 형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독일의 민주주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1991년에서 2004년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서독지역과 동독지역간의 차이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독지역의 주민은 동독지역의 주민보다 더 현저히 만족하고 있다. 젊은 연령층이 새로운 민주주의에 동화하고 이 체제에 보다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대다수가 기대했다. 특이하게도 이러한 사회적 효과는 독일 통일 1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볼 수 없다. (자료 9, 자료보고서 2006: 민주주의와 사회국가)

주관적인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2008년 자료 보고서에 동독지역에 관한 다양한 진술들이 있다. 동독지역의 부유한 주민들은 일부 상당한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하위 소득 집단에 속하는 응답자의 만족도는 그 어떤 조사 분야에서도 1990년의 출발 시점 수준조차도 다시 도달하지 못했다.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구동독지역의 대다수가 점점 더 탈 물질주의적인 목적을 우선시하는 반면, 서독지역의 대다수가, 특히 가장 젊은 연령층이 다시 물질적인 가치에 관심을 기울인다. (자료 10, 자료보고서 2008: 주관적인 만족도와 가치 지향)

앞의 자료에 나타난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것 외에도 본 자료가 분명히 시사하는 점은 2004년 이후 사회적 발전이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즉 때로는 사회적 발전이 증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소하기도 하는데 동서 간의 균등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는 정체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불균형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자료 11, 1989년부터 2009년까지 평화적 혁명 20년: 신연방주 주민들의 견해)

II. 대응방안과 행동 권고

이 논문의 제 1 장에서 11개의 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노동 현황과 평가를 보여 주었다면, 제2장에서 4개의 자료에서는 연방이나 연방주 차원에서 제시된 문제점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 내지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의 이주의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보아야 할지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행동 권고를 제시하므로,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 부분은 전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앙케이트위원회(Enquête-Kommission, 연방의회가 설치한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인구 통계적 발전”은 다른 무엇보다 시급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여기에는 이미 기술한 인구의 고령화 상황이외에 여성, 청소년 및 이민자의 역할도 포함된다. (자료 12, 앙케이트-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인구 통계적 발전”: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가 각 개인과 정치에 주는 과제)

인구 통계상의 변동에 대한 감정서는 좀 더 높은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다른 보고서와는 달리 베를린 인구 발전 연구소가 작성한 이 자료는 통상적인 관찰의 지평을 넓히고 브란덴부르크 인구 통계적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다른 나라나 대륙이 인구 감소의 문제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적인 예를 고려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자치 행정적인 학교 교육 혹은 다양한 외래 진료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라프란트의 병원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처했다. 여기서는 각각 개별적인 사례를 다룰 수 없으므로 전체 자료의 숙지와 또는 그 번역을 강력히 권하는 바이다. (자료 13, 브란덴부르크 주의 인구 통계상의 변동에 대한 감정서: 브란덴부르크 주 의회의 위탁 감정서)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독일에서 노령화” 연구팀은 고령자에게 깊은 배려를 할 것을 분명히 권고하면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14, 획득한 시간:

독일의 고령화에 대한 제안

자료 13과 마찬가지로 인구와 발전 베를린연구소가 상세하게 작성한 “정책 제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두 가지 정책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전략과 인구 감소를 수용, 공동체가 이 상황에 적응하려는 “적응” 전략)에 대해 기술한 후 여러 분야를 고려한 연방주들의 인구 통계적 프로젝트를 기술,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연방주 인구 통계부서의 개선 권고안(방안)을 기술하는 표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13과 관련한 제안은 여기서도 반복되었다. (자료 15, 인구 통계적 변화: 신연방주를 고려한 정책 제안)

III. 아동과 청소년

예나 대학의 브루노 힐텐브란트 교수는 청소년 지원 문제에 관한 연구를 했다. 동독에서 청소년 지원은 사회주의가 계속 발전되면 자동 소멸될 수 있는 단순히 “사회주의의 외관상 흠결”로 간주되었다. 동독에서 청소년 지원은 전문적인 능력 면에서는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고 명예직이었다. 1990년에 제정된 새로운 법률은 대학졸업을 통해 얻은 자격을 요구한다. 중요한 점은 해당 당사자가 손쉽게 새로운 제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습득할 수 있어야 (혹은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를 변경하고 “신연방주”를 추가적으로 현대화함으로써 독일 통일이 실현된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간과했던 점은 당사자가 행동하는 곳에는 가능성이 생기고 또 그 가능성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자료 16, 구 동독의 아동·청소년 지원의 전환)

위의 내용들은 다음 5개의 도표를 통해 풍부해지는데, 즉 도표들은 신연방주에 아동수가 적고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독일 지도상으로 분명하게 보여준다. (자료 17, 2004년 독일의 가족과 생활양식, 2004) 제 13차 아동·청소년 보고서에서는 시급한 건강 목표를 연방정부에 제시하며, 이는 다섯 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자료 18, 제 13차 아동·청소년 보고서: 청년 생활환경과 독일 아동·청소년 지원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

IV. 소비행태와 동독 제품

동독 제품은 독일 양 지역에서 일부 놀랄만한 성공의 역사를 썼다. “브랜드를 통한 통일”이라는 연구는 무엇보다 신연방주의 몇몇 브랜드는 더 이상 구동독지역만의 브랜드로 여겨지지 않거나 혹은 구동독지역의 브랜드로 인식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료 19, 브랜

드를 통한 통일? 전체 독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아른트 쾨쉴(Arnd Zschiesche)/올리버 에리히엘로(Oliver Errrichiello)는 연구를 통해 전환기 직후에 이미 전환의 경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독 시대에 서독 제품을 매우 선호했다면, 1990년 이후 구동독지역 제품이 다시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열리는 친동독 박람회와 노스탈기(과거향수)-동독상점이 증명하고 있다. 동독 제품을 다시 선호하게 된 원인으로는 특정 제품의 구매를 통해 구동독지역 경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일종의 자존심이라는 감정을 들 수 있다. (자료 20, 동독 성과의 비밀: 최상품의 생존 전략 - 경영자가 배울 수 있는 점)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I. 생활 · 노동 현황과 평가

■자료 1~11 184

자료 1

동독 이주민

1990

담당자/기관

동독-국민

내용

- 1961년부터 1988년까지 대략 383,000명의 사람이 적법하게 동독을 떠났다. 동일한 시기에 대략 222,000명의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동독을 떠났다.
-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전에, 대략 344,000명의 사람이 동독을 적법하게 떠날 수 있었다. 즉 일 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거의 이전 27년 동안에 이주했던 사람들 만큼 이주했다.

자료 2

2050년까지의 연방주의 인구 변동

2004. 8

담당자/기관

독일 국민

내용

- 출생률: 구서독지역의 출생률은 지난 30년 이래 낮은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구동독지역은 약간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사망률/기대 수명: 독일의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기대 수명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90년대 중반의 신연방주지역 신생아들의 기대 수명은 전반적으로 구연방주보다 낮았다.
- 국내이주: 앞으로도 신연방주에서 구연방주로 이주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이주를 통한 5개 신연방주의 주민 손실: 90만 명)
- 연령구조: 향후 수 십 년 후에는 독일과 그 연방주들의 연령구조는 상당히 변할 것이고, 불과 몇 년 안에 20세 미만이 인구의 5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중간 연령층은 우선 증가할 것이다. 세 번째 연령그룹인 60세 이상의 노령층은 계속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30년에는 거의 모든 연방주에서 최소한 3분의 1의 국민이 이 연령층에 속할 것이며, 여기서 구동독지역 주가 가장 강력하게 증가할 것이다.
- 전체적 경향: 전체적으로 볼 때 전 독일에서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될 것이다. 연방주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시기와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대책 필요성: 위의 변화에 대한 적응은 지금까지는 연방 차원에서 무엇보다 사회보장 체계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이제는 모든 연방주 차원에서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료 3

**‘새로운’ 고령 지역: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신연방주
고령 주민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현실과 입장 -
군나 빈클러(Gunnar Winkler)**

2006

담당자/기관

신연방주 고령주민

내용

- 출발과 변혁 - 연령특정 및 해당연령: 신연방주 주민은 1990년 시작된 상황 전개를 여전히 타당하다고 여기며, 그럼에도 1990년 이전 뿐만 아니라 1990년 이후 통일 과정의 유형, 방법 및 그 달성 성과를 논쟁하고 있다. 구·신연방주의 연금수령자에 대한 비교가 향후 독일에서 지속적으로 두 그룹의 “독일 연령층”이 존재할 것이라는 진술의 근거가 된다.
- 인구 통계적 변화 - 연령과 연령 구조: 동독은 독일 통일로 인해 “젊은” 주민들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은 그 사이 출생율의 감소와 이주의 증가로 인하여 구서독 지역에 비해 더 고령 인구가 많다.
- 경제통합: 독일의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통합의 문제는 상이한 정체성과 사고방식에서 우선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경제 문제의 결과이다.
- 문화통합: 전체적으로 볼 때 신연방주의 문화의 발전은 그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문화의 쇠퇴와도 연결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재정 부족으로 신연방주의 문화 기반시설은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상태임이 증명되었다.
- 새로운 구시대의 가치: 특히 구동독지역의 고령자는 변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지난 수십 년 간의 사회화 영향을 받은 가치구조가 남아있다. 사회 안전, 정의 그리고 자유를

자료 3

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연대와 평등은 그 다음 순위로 인정한다.

- 사회적 · 정치적 통합: 현재까지도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간의 공동성장과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새롭고 다른 사회보장입법, 사회 제도 및 급부 체계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았고 배우거나 활용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 동질성: 생활수준을 동등화하려는 의심의 여지없이 정당한 요청은 구동독지역의 측면에서 보면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다.
- 신연방주에서의 삶: 전반적으로 신연방주의 고령 주민은 다수가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아주 좋거나 좋다고 평가하고 비교적 적은 주민들이 나쁘거나 아주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다.
- 노년기의 경제활동: 신연방주의 고령 주민들에게는 대략 900,000개의 일자리가 부족하며, 조기 은퇴가 확실한 해결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 주거: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는 1990년 이래 계속 높아지고 있다.
- 건강: 1990년 이후 신연방주의 고령 주민들은 먼저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과정을 극복해야 했다.

자료 4

**사회보고서 2009:
신연방주 50세 이상 주민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자료와 현실**

2009.11

담당자/기관

신연방주 50세 이상 주민

내용

1. 만족도: 신연방주의 50세 이상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다.
2. 희망 - 염려: 희망은 특히 자격요건의 달성이나 생업수단의 지위와 관련된 소득에 따른다. 염려는 무엇보다도 실직자, 자녀가 있는 가정 및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가진다.
3. 고용 - 실직: 고용은 항상 그렇듯이 신연방주 주민의 가치 구조에 있어서 높은 의미를 가지며, 50세에서 60세 사이 전체 주민들의 84%가 그들 삶에 있어서 고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한다.
4. 경제상황 - 소득: 전체적으로 신연방주의 50세 이상의 주민들 중 2%가 그들의 경제상황이 아주 좋다, 32%가 좋다, 46%가 부분적으로 좋고/부분적으로 나쁘다, 14%가 나쁘다 그리고 6%가 아주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민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는 명백하게 개인적인 소득과 가족의 소득에 따라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5. 빈곤 - 상태: 2009년 신연방주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간계층의 가계 순소득은 1,063 유로이다. 50세 이상의 주민을 보면, 5%가 절대 빈곤, 8%가 빈곤, 14%가 빈곤위험 단계에 있다.
6. 주거: 주거는 가장 만족도를 보이는 생활분야이다. 2009년 50세 이상 중 79%가 그들의 주거상태에 만족하고, 10%는 부분적으로 만족하며, 4%가 만족하지 않는다 (7%는 답

자료 4

하지 않고 있음).

7. 기본가치: 신연방주의 주민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안전을, 하지만 자유와 정의도 그들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본다. 연대와 평등은 그보다 하위의 의미를 지닌다.
8. 독일 통일 - 동질화: 전체적으로 신연방주의 50세 이상의 주민은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해 긍정적이기 보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낸다: 단지 3%만이 통일이 실현되었고, 10%는 통일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52%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11%는 점점 더 그 차이가 커지며, 17%는 향후 50년 후에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본다.
9. 외국인: 외국인과의 지속적인 공동생활의 경험이 없음에도, 신연방주에서도 외국인이 사회문제의 “원인”이라고 본다.
10. 민주주의 - 주민의 참여: 신연방주의 50세 이상의 다수 주민들은 민주주의에 동의한다.

자료 5

누가 독일에서 “부자”에 속하는가?
200% 선 이상 소득자의 사회경제적 특징

2000.7

담당자/기관

200% 단계 이상 소득자

내용

- 구서독지역 주민을 보면 저소득 가계(50% 이하)와 그리고 상위 소득 범위(200% 이상)에 속하는 비율은 약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중반 이래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 구동독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소득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소득이 낮은 수준에 있으며 소득분배의 양쪽 끝 주변그룹에 속하는 비율도 구서독지역에 있어서 보다 낮다.
- 신연방주의 최근 전개를 보면 이전의 양극화 경향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료 6

자료보고서 2006:
독일의 물가, 소득 그리고 노동비용

2006

담당자/기관

독일 주민

내용

1. 건축용 토지의 구매가: 2004년에 바이에른의 건축용 토지는 일 제곱미터 당 218.48 유로로 가장 높고, 튀링겐이 36.69 유로로 가장 낮은 평균가를 보였다. 독일의 평균가는 103.47유로로 신연방주는 (베를린을 제외하고) 그 어디도 50유로에 미치지 못했다.
2. 소득: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은 2005년 총 평균 소득이 2,263 유로로 구연방지역 보다 27.4% 정도 적다. 동-서-소득격차는 1996년에서 2005년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자료 7

2007년 각 주 별 건축용 토지의 구매가

2009

담당자/기관

구 · 신연방주

내용

건축용 토지의 구매가: 2007년 함부르크의 건축용 토지가 일 제곱미터 당 658.76 유로로 구매가가 가장 높았고, 250.77 유로의 바이에른이 그 뒤를 따른다. 가장 낮은 가격은 작센-안할트의 34.45 유로이고, 튀링겐이 34.75유로로 그 위에 있다. 이외의 신연방주는 50 유로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 이외의 구연방주는 두 군데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리고 그중 몇몇은 현저히 100유로를 넘어선다.

자료 8

세대 간 관계와 연대협약: 인구 통계적 발전 맥락에서 본 세대 간 조화

2006

담당자/기관

독일 전 국민

내용

- 세대 간 협약: 어느 누구도 세대 간 협약을 서명하거나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두의 공동생활을 가능한 한 모두의 필요에 맞도록 조직하기 위해 상호 간 도움과 원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견이 일치한다. 이러한 공동생활은 도덕적인 협의라는 의미에서 광범위한 의미에 있어서 세대 간 협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세대 간에 있어서 나이의 개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란 물리적인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의 제한으로 특징 지워지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기회”도 가지고 있으며, 단조로움과 고립에 의해 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많은 의견을 같이 한다. 사람들은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간의 관계가 공동생활로 형성되고 형성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나이에 대한 개념이 비슷하다는 이러한 사실이 나이의 실질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성은 세대 간에 있어 “세대 간 충돌”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연금에 있어서의 정의와 연금에 대한 기대: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는 세대 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넘어서, 현재와 장래의 사회의 안전이라는 사회정책상의 주요 문제이다. 모든 사회 체제 안에서의 분담금 충당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람들에게 이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는 정책만이 재정조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가족 - 서로 같이 - 서로를 위해 - 서로 반하는 사회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자료 8

세대 간 협약은 가족 관계의 본질적 요소가 되었으며 사회화의 기능과 같은 전통적인 기능을 보충한다. 가족과 그리고 또한 사회적 조함은 나이에 따라 변하는 욕구와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

- 원조와 지원: 전반적으로 가족은 노년기에 들었을 때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된다. 가족 구성원이 부양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모든 연령층이 똑같이 제약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 재정 이동: 재정 이동은 다양한 종류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고액의 금전적 보조로서의 일회적인 원조로 증여나 “신용”, 혹은 다소 규칙적인 재정적 상호 원조를 들 수 있다.
- 사회봉사: 우리 사회의 현실은 무엇보다도 나이가 든 사람이 사회적 이익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양상은 옳지 않으며 젊은 사람들도 나이든 사람들과 똑같이 사회적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자료 9

자료보고서 2006: 민주주의와 사회복지국가

2006

담당자/기관

독일 전 국민

내용

1. 독일 국가 형식의 수용: 2000년에만 해도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구동독지역에서 독일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명백히 구서독지역에 있어서 보다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2005년에는 더 첨예화 되었다. 현재 구동독지역에서 심지어 상대적 다수에 해당하는 41%가 지금 독일의 민주주의 보다 다른 국가의 형태를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2. 독일의 민주주의의 기능에 대한 만족: 독일의 민주주의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1991년에서 2004년까지 전 기간을 통하여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 간의 차이가 거의 그대로 지속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구서독지역 주민은 현저히 구동독지역 주민들에 비해 더 만족하고 있었다.
3. 사회주의에 대한 입장: 신연방주의 주민들의 독일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의 원인 중 하나는 대다수가 독일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과 다른 민주주의 모델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선호하는 모델은 사회적 민주주의라 볼 수 있다.
4. 다양한 주민 집단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 구서독지역에는 다양한 주민집단 간에 독일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입장과 원칙적으로 민주주의를 단지 조금만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의 차이가 있다. 구동독지역에서는 더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 젊은 연령집단이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의 입장에 있고 이 체제에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것이라 대다수가 예상했었다. 특이하게도 이러한 사회화 효과는 통일 15년이 지나도 아

자료 9

- 직 보이지 않고 있다.
5. 사회정책에서의 국가의 역할: 국민 그룹으로 볼 때 서독과 동독에 있어 자영업자들은 사회국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6. 사회급부의 감축 혹은 확대: 2004년 사회급부가 미래에 그대로 있어야 할지, 감축되어야 할지 혹은 확대되어야 할지 질문했을 때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다수가 현 상태 유지에 찬성했다. 이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차이점은 사회급부의 확대 혹은 감축의 양자택일에 있어 나타났다. 구동독지역에서는 42%가 확대에 그리고 단지 10%가 감축에 찬성했고, 반면에 구서독지역에서 이 관계는 거꾸로 26%의 응답자가 사회급부의 감축에 그리고 단지 17%가 확대에 찬성했다.
 7. 사회 정책적 성과에 대한 평가: 2004년에는 구서독지역의 58%가, 그러나 구동독지역에서는 단지 48%가 사회정책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물론 지난 몇 년 간 이 차이는 현저히 더 커졌다. 양쪽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은 구서독지역이 2004년 지난 몇 년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사실에 기인한다.

자료 10

자료보고서 2008: 주관적인 만족도와 가치 지향

2008

담당자/기관

독일 전 국민

내용

삶의 분야에서의 만족:

1. 개인적인 소득과 가족의 소득 이외에도 현 상태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민주주의에 대해 만족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물질적 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낮다.
2. 통일이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양쪽 독일의 만족도에 있어서 그 차이는 계속 존속된다.
3. 구동독지역 주민의 부유한 집단이 부분적으로 더 많이 만족을 할 수 있었던 반면, 낮은 소득의 응답자의 만족도는 지금까지 조사된 어느 분야에서도 초기 1990년의 출발시점 수준조차 다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가치지향, 요구 그리고 기대:

1. 구동독지역에서는 점점 더 후기(자본주의사회의) 물질적인 목적이 우선순위를 가지는 반면, 구서독지역의 대다수는, 특히 젊은 세대가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으로 둔다.
2. 이러한 관찰은 무엇보다도 구서독지역에서 인지되고 있는 부의 손실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기대에서 보면 약간의 분위기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단지 개인적인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는 지난해의 부정적 경향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개인들에 있어 부의 획득이라는 형식의 경제 회복은 아직 감지되지 못하고 있다. 후기물질적인 가치로의 가치 변화의 지속은 이러한 배경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확실하지 않다.

자료 11

1989년부터 2009년까지 평화적 혁명 이후 20년:
신연방주 주민들의 견해

2009. 7.20

담당자/기관

독일 전 국민

내용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회적 발전을 되돌아보면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이한 4 단계를 볼 수 있다:

1. 사회적 만족의 강력한 증가 - 이는 상승하는 희망과 일반적인 삶의 만족, 개인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증가를 의미한다. 1990년에서 1995년 까지 일상의 변화가 체감되는데 기인한다. (동화단계)
2.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상대적인 사회 발전의 안정화와 1995년까지 달성한 수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평가에 따른 빠른 동화에 대한 희망의 하강. (안정화단계)
3. 흥-낙 연정에 의해 시작된 “개혁” (아젠다 2010, 건강, 연금, 고용시장의 개혁) 및 유로화로의 전환으로 2000년에서 2003년 사이 미래에 대한 우려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만족이 빠르게 감소했다. (감퇴시기)
4. 2004년 이래 사회발전이 유동적이어서 각각 조금씩 상승 또는 하강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정체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불균형에 있어 점진적으로 동화해가는 과정이다. (정체기)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II. 대응방안과 행동 권고

■자료 12~15 200

자료 12

“인구 통계적 발전” :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가 각 개인과 정치에 주는 과제
- 앙케이트-위원회의 최종보고서

2002. 3. 28

담당자/기관 : 독일 전 국민

내용

위원회에 대하여: 1992년 10월 16일 앙케이트-위원회(연방의회 조사위원회: 역주)가 정치와 경제 간의 집중적인 대화에서 다른 국민 발전의 분석과 2030년까지의 그에 대한 예상을 보고서로 정리하도록 임무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일자리 제공 분야의 권고 방안:

- 고용의 증가와 실직의 축소
- 청소년 고용 기회의 개선
- 고령층의 고용 기회의 증진
- 교육, 직업교육의 개선; 평생 교육
- 여성의 생업활동에서의 평등
- 직업, 어린이 보호 그리고 부양
- 이민자의 교육과 고용 체계에 있어 통합의 개선

이민과 통합 분야의 권고 방안:

- 사회의 장래성 보전을 위한 이민 조정의 필요성.
- 국내인의 교육과 재교육이 그 밖의 이민보다 우선한다.
- 비판적인 의사표시는 바로 예민한 사회구조를 가진 분야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며 성급히 인종차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 공동생활에 대한 준비로서 관용은 어려서부터 알도록 하고 사회에서 관철되어야 한다.

자료 12

- 이민자 자치단체의 구성과 조직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담당 부서 제도의 확장이 바람직하다.
- 독일로의 이주와 독일 체류는 자유 법치 질서의 헌법의 원칙을 존중하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와 규범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
- 사회적 구조적 통합: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평화로운 공동생활에 기여한다.
- 고용시장: 적법한 체류 외국인 중 생업 종사가 가능한 연령층은 모두 노동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육: 통합을 이루기 위한 열쇠는 교육과 직업교육 전 체제에 있다.
- 문화의 동질성, 사회적 정치적 참여: 이민자 단체는 통합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모국어로 된 교육과 이슬람에 대한 지도 등은 독일에서 양성된 교사들이 제공해야 한다.
- 건강과 보호: 이민자의 특별한 요구가 고려되는 특수 민족적-의학 센터의 확장과 그 전국적인 확산은 바람직하다.
- 사회업무: 현재 청소년과 고령자를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 자문과 외국인 사회업무가 조직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직적 요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유럽 차원의 조화: 탈주민 정책과 이민 정책은 유럽의 차원에서 조화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 제도적 실현; 외국인문제 담당부서는 통합문제의 특임자로서의 기능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적 그리고 직장상의 노후보장: 자산 마련과 같은 방법을 통한 보다 더 확실한 개인적 및 직장별 노후 보장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을 가지고 있는 체제⁷에 있어서는 국가연금 수준뿐만 아니라 전체의 수준도 중요하다. 노후 보장은 미래에 두 가지, 즉 기여금으로 충당되는 직장 퇴직연금과 자산의 보장 형식으로 구성될 것이다.⁸

7 역주: 노후보장이 개인적 차원의 자산 마련과 직장 차원에서의 연금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연금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있는 체제를 의미한다.

8 역주: 저자는 노후 보장이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국가연금 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자산 마련과 직장 차원의 퇴직연금의 두 가지에 중점을 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자료 13

브란덴부르크 주의 인구 통계상의 변동에 대한 감정서:
브란덴부르크 주 의회의 위탁 감정서

2007

담당자/기관

브란덴부르크 주

내용

이 감정서에 있어서는 브란덴부르크의 인구 통계적 상황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관찰하고 있다. 즉 주요 문제를 이끌어 내고, 정부와 행정의 반응을 평가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성장 대신 축소과정: 인구 통계적 발전에 있어 브란덴부르크 주는 앞으로 몇 십 년 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도전을 겪을 것이다. 아동 숫자의 감소, 이전의 90년대의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의 결과, 계속되는 노령화 그리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농촌 지역을 떠나는 높은 이주율은 거의 모든 곳에서 인구 감소를 초래하여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끈다. 학교는 닫게 되고, 마을은 공동화가 되며, 단지는 비어있고 쇠퇴하며, 하수체계와 비상의료 시설도 와해될 것이며 공공 예산의 빛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해결방안: 다른 연방주와 다른 나라의 경험

1. 스웨덴 학교교육의 자치행정
2. 라프란드의 다양한 왜래 진료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병원
3. 디트로이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휴간지 농업
4. 남아프리카의 민간 자연공원
5. 브라질의 친환경적 기여에 상응하는 예산의 분배

자료 13

6. 멕시코의 소단위 자치 지역
7. 오스트리아 인린 교통의 사법적인 조직
8. 에스트란트의 종합통신망의 사용가능성
9. 노르웨이의 전자정부와 전반적인 행정 포탈
10. 브라질의 자치 재정계획에의 참여
11. 스위스의 미래부
12. 작센의 자치 조성기금의 통합
13. 독일 재단을 통한 자유학교의 지원

브란덴부르크의 미래전환을 위한 권고

1. 교육에 대한 대단위 지원
2. 서비스행정의 재구성과 전자행정 시설
3. 미래부 설치
4. 현존하는 조성프로그램을 주 대상자에게 알리고 상호 간에 협력
5. 권리와 의무로서 중앙 집중이 아닌 분산된 시민행정의 도입
6. 소단위 지역 스스로 자신의 장점 모색
7. 조성에 있어서 증거책임의 전환
8. 조성에 있어서 철저한 경쟁을 통한 교부
9. 노동에 대한 새로운 자극의 도입
10. 지역 화폐의 확장
11. 지속적인 에너지의 체제의 도입
12. 지역 식량 체제의 선호
13. 환경체계에의 기여에 대한 고려
14. 토지 이용권의 매입제 도입
15.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통합
16. 재단 설립의 동기 조성

자료 13

17. 모델 지역의 제안의 적극적인 적용

요약: 경제와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한 기준으로써 통합적인 지속 방안을 도입한다. 새로운 방안은 각 지역의 당사자가 찾도록 해야 한다.

지역별 제안: 많은 지역이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용 사례를 여기서 미리 소개할 수 있다.

1. 가치 높은 문화영역의 관광여행 (보수한 역사적인 장소, 음악 페스티벌과 접목한 인근 휴양)
2. 자연-서비스 (자연 관광여행)
3. 전통적인 그리고 재생 에너지-기술
4. 연구와 대학과 직접적인 협력을 하는 혁신적인 중산층
5. 자연 친화적인 농업과 혁신적인 생활 형식
6. 행정 기능에 있어서 그리고/혹은 대학에 있어서 시민 중심
7. 새로 설립할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 행정 수도 (포츠담)
8. 역사 관광여행을 위한 야외 박물관과 흥미 있는 장소로서 역사적인 특별장소

많은 제안들은 지금까지는 문제없다고 여겨지던 관행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령 지역적인 행정관할 같은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 갑자기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관들을 기존 행정 위원회에 부수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러한 지역적 자치행정은 행정행위를 통해서라기보다는 행정 외에 시민, 기업인, 학교, 조합, 생산자, 토지소유자 등 당사자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뤄진다.

자료 14

획득한 시간: 독일의 고령화에 대한 제안
- 아카데미그룹

2009

담당자/기관

독일 전 국민

내용

이 제안은 인구 통계적 발전의 기회와 도전을 다루고 있다. 이는 아카데미 그룹 “독일에서 나이 들기”, 즉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와 실무자 그룹이 작성했다.

개인에 대한 제안:

1. 오랜 동안 형성된 경력과 나이에 대한 관념의 변화.
2. 전체 직업 활동 시기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짧은 교육 시기를 가짐으로써 직업 활동에 들어가기 이전의 교육시기를 보충한다.
3. 장기화되는 직업 활동 동안 다양한 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
4. 점점 길어지는 인생을 위하여 그리고 그 동안의 자신의 건강, 노후 대책 그리고 사회적 시민 참여에 대한 개인의 공동 책임 강화.

기업에 대한 제안:

1. 모든 피고용인들의 자격 요건과 능력 개발에의 지속적인 투자.
2. 업무 조직에서의 다양한 연령집단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고려.
3. 고령자의 고용.
4. 지위의 상승이나 하강과는 별개의 직무 변화 가능성.

자료 14

사회에 대한 제안:

1. 나이에 대한 전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의 극복.
2. 3 단계 인구 구조⁹의 완화.
3. 상반되는 규율을 철폐하고 전해오는 행동 방식의 변화에 대한 자극을 잠정적으로 주어 개인과 기업이 인생단계의 새로운 구조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한다.
4. 세대 간의 협약을 그의 성과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새로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에 따른 노동, 고용 그리고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5. 직업 활동 외에 무엇보다도 시민사회, 자치단체, 가족 안에서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제도적 마련.

9 역주: 전체 인구의 구조가 20세 미만/중년/60세 이상의 고령의 3 단계로 나뉘어 지는 현상

자료 15

인구 통계적 변화: 신연방주를 고려한 정책 제안

2009

담당자/기관

구 · 신연방주

내용

연방 주와 연방 교통 건설과 도시 개발부의 프로젝트 “지역이 미래를 만든다”의 인구 통계적 정책이 그 주제이다: 가능한 한 인구 통계상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동시에 계속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도록 하는 한편, 인구 통계적 추세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적절한 기본적인 생활배려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 “대응” 전략: 인구 통계적 변화는 국가 발전에 대한 하나의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적은 인구의 감소를 저지하고 그리고 고령화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과거의 문제를 겨냥한 것이고, 그리고 현대적인 기본 생활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 프로젝트를 위한 것은 아니다.
- “적응”의 전략: 적응 전략은 인구 통계상 발전의 결과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인식한다. 목적은 공동체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그리고 주어진 여건 하에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기본 생활보장을 충족시키는 사회급부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적응 전략에 기초한다. 현 적응 전략에서 기본 생활배려와 관련된 사고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

신연방주에서 선택된 프로젝트를 보면, 많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는 또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구 통계적인 발전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료 15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인구 통계적 발전의 성공은 새로운 출발점과 전면적인 정책을 전제로 한다. 목적은 양질의 성장과 고용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적 통계의 성공적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배려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중심사상: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활배려를 보장한다.
- 전격적인 현대화의 미래 해결책을 통한 활성화와 역동화 프로젝트. 중심사상: 고유한 가치체제와 고유한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흠결로부터 장점을 만들어 낸다.

부록: 25쪽짜리의 평가를 포함한 연방 주의 현행 인구 통계적 프로젝트를 기술하는 표 1, 연방 주 인구 통계 부서의 개선 제안의 표 2 (조치).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III. 아동과 청소년

■자료 16~18 210

자료 16

구 동독의 아동·청소년 지원의 전환 -
브루노 힐덴브란트(Bruno Hildenbrand)

2010.7

담당자/기관

독일 아동과 청소년, 아동국

내용

- 1990년 이후 통일의 과정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다. 제도들의 전환으로는 현대화를 보충해 가는데 있어 충분하지 않다.
-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은 아동국, 즉 행정자치구역 차원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통괄하는 중앙조직이다. 2001년에서 2008년까지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숫자는 연구 대상지역에서 현저히 감소했으나, 아동·청소년 지원의 사례는 증가했다.
- 1990년 당사자의 참여를 고려하는 새로운 아동·청소년 지원법 (KJHG 및 SGB VIII)이 도입되었으며; 그들은 이제 지원의 선택에 있어서 의사결정 참여권이 있다. 이러한 법률도 이전 1970년대에 시작하고 서방에 널리 보급되었던 사회사업의 전문화 과정의 결과이다. 이러한 발전은 동독에서는 실행되지 않았었고, 따라서 신연방주는 이 법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실행하게 되었다.

동독에서 청소년을 지원하게 되는 원인은 사회주의가 계속 확장되면 자동 소멸될 수 있는 단순히 “사회주의의 외관상 흠결”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동독에서 청소년 지원은 전문적인 능력 면에서는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고 명예직이었다. 1990년에 제정된 새로운 법률은 대학졸업을 통해 얻은 자격을 요구한다.

- 예를 들면 업무자의 전문 자격요건과 재교육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

자료 16

문에 일찌감치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는 자주 실행되지 않았거나 혹은 무시되어 왔다. 이전의 보수적인 인력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교육과정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한다.

-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 본질적인 측면은 지도자급이 젊은 세대로 교체되는 것이다. 구세대는 변화의 주체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교체가 중요하다.

중요한 점은 해당 당사자가 손쉽게 새로운 제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습득할 수 있어야 (혹은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를 변경하고 “신연방주”를 보다 현대화함으로써 독일 통일이 실현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간과했던 점은 당사자가 행동하는 곳에는 가능성이 생기고 또 그 가능성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자료 17

2004년 독일의 가족과 생활형식

2004

담당자/기관

내용

1. 도표, 2004년 3월 가족 당 평균 아동 수: 모든 신연방주는 1.55명, 베를린과 자아란트 1.55명에서 1.62명 이하 그리고 모든 다른 구 연방 주는 1.62명과 그 이상.
2. 도표, 2004년 3월 아이가 있는 부부에 있어서의 1 자녀 부부 비율: 작센이 도표에서 58% 이상으로 이끌어 가고 있고, 그 뒤를 모든 구 연방 주와 자아란트가 (44%에서 47% 이하까지) 따른다. 이 단계의 반대편에는 구연방주의 반이 있다: 44% 이하로 쉐레스비히-홀스타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바덴-뷔르템부르크 그리고 바이에른.
3. 2004년 3월 비 결혼 생활공동체의 무자녀 비율: 뚜렷이 둘로 나뉘어 진다. 신연방주와 베를린이 무자녀 비결혼 생활공동체의 비율이 가장 적고, 구연방주에는 집중적으로 68% 혹은 이상이 된다.
4. 2004년 3월 한부모 비율: 독일의 한부모의 대부분이 베를린에 살고, 다음으로 브레멘과 함부르크가, 그리고 전체 신연방주가 그 뒤를 따른다. 구연방 지역은 이에 상반되는 수치를 보여준다.
5. 2004년 3월 1인 가구 비율: 독일 대부분의 1인 가구는 도시주인 베를린, 브레멘 그리고 함부르크에 있다. 그 다음은 북부 독일에 비율이 균일하게 분배되어 있다. 남부 구연방주인 헤센, 라인란트-팔츠, 바덴-뷔르템베르크 그리고 바이에른에는 독일의 1인 가구가 제일 적다.

자료 18

제 13차 아동·청소년 보고서: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독일 아동·청소년 지원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

2009

담당자/기관

독일의 젊은 연령집단

내용

제 13차 아동·청소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는 연방정부에 그 작업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요한 목표를 설정했다.

1. 아동의 발전을 위한 초기 지원: 자치단체 전 영역을 포괄하고, 널리 계획된 광범위한 기간시설의 설치와 확장. 목표: 아동의 발전을 위한 초기 지원과 유기 사례의 감축
2. 영양과 운동: 운동의 촉진을 위한 제안과 아동 보호시설에서의 무상의 건강한 음식. 목표: 성장기에 있는 이들의 과체중이 증가하지 않는다.
3. 언어/대화: 초기 언어지원, 특히 불리한 생활여건에 있거나 이주민의 배경을 가진 아동의 언어 능력의 상승. 목표: 모든 아동의 95%가 입학 시 적절한 언어능력을 가진다.
4. 학교 관련 건강 촉진: 건강 관련 예방의 정립과 확장
5.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사회 심리적 발전: 사회 심리적 발전의 보다 광범위한 지원. 목표: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이상이 5년 안에 10% 감소한다.

보고서는 이외의 지침과 권고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IV. 소비행태와 동독 제품

■자료 19~20 216

자료 19

브랜드를 통한 통일?
전체 독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2001

담당자/기관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소비자

내용

이 연구의 대상은 일상생활의 브랜드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의 관념, 생각 그리고 소비행태였다. 주요 목적은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의 소비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구동독지역의 제품이 전체 독일 제품의 스펙트럼에 위치하는지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결과

- 일상생활의 브랜드 제품은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 거의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그 “후광”은 구동독지역이 조금 더 강하다. 전통과 질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다.
- 일상생활의 브랜드 제품의 동의어는 무엇보다도 가족 및 가사 관련 제품들로서 “고전적 독일(klassische deutsche)”의 이름을 가장 많이 가진다. 전 국가적으로 볼 때는: 페르질(Persil), 니베아(Nivea), 구동독지역에서는 스페(Spee), 플로레나(Florena)가 잘 알려진 상표이다.
- 브랜드 제품과 관련하여서 소비자 유형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이하다.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구서독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상표회의론자와 무관심한 소비자, 구동독지역에서는 가격에 따르는 소비자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자료 19

- 구서독지역인 둘 중 하나는 동독의 브랜드 제품을 안다고 생각한다. 구동독지역으로부터의 국가적 “텔레비전 브랜드”, 예를 들면 “로트캡헨(Rotkäppchen)”, “라데베르거(Radeberger)”, 스피(Spee)“ 혹은 ”노르트호이저 뉘펠케른(Nordhäuser Doppelkern)“은 최소한 더 많이 알려졌다. 이 브랜드는 구서독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더 이상 절대적 동독 브랜드라고 여기지 않거나 혹은 구동독지역의 상표로 여기지 않는다.
- 구동독지역에서는 강력한 구동독지역 브랜드의 존재가 정선된 제품그룹에 있어 일반적인 시장의 향방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구동독지역에서는, 구서독지역에서보다도, 독일 와인, 세제, 겨자 그리고 식기세척제품의 제품그룹에서 사용되고 있는 브랜드를 현저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료 20

**동독지역 성공의 비밀:
최상품의 생존 전략 - 경영자가 배울 수 있는 점 -
아른트 쨌쎄(Arnd Zschiesche)/
올리버 에리히엘로(Oliver Errrichiello)**

2009

담당자/기관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소비자

내용

1989년 이전에는 동독에서 서독 제품이 40년 간 우월한 질과 신용도에 대한 보증으로 여겨져 왔다면, 그 이후는 구동독지역 제품이 신연방주에서 이 지위를 차지했다. 2002년의 설문에서 신연방주의 103명의 응답자 중 101명이 구서독지역 제품 보다 구동독지역 제품을 더 살 것이라고 답했다. 대부분 거론한 이유는 제품의 특별한 질이었다. 게다가 구동독지역 제품은 솔직함과 같은 개념 하에 분리되었다.

- 친 동쪽(Ost Pro): 친 동쪽은 1991년 이래로 시행되는 박람회이다. 이는 직접적인 변혁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었다. 즉 구동독지역에는 상점의 판매대 위에 구서독지역 상품만이 있었다. 사람들은 하지만 구서독지역 상품이 자신들의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또 자신들의 상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거의 20년 이래로의 이 박람회의 커다란 성과는 이것이 향수로 인한 잠깐의 성과가 아니라 사회적인 기본적 욕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방문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은 연령에 있어 점점 더 젊어지고 있다.
- 노스탈기-동독상점: 노스탈기-동독상점은 몇몇 도시에서 열렸고, 이들은 그 곳의 특별한 구동독지역 제품을 팔았다. 점점 성공함에 따라 이러한 제품이 모든 슈퍼마켓에

자료 20

있게 되면 고객들이 그 때문에 특별상점에 더 이상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점은 다시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는 친 동쪽-박람회와 같이 어떻게든 제품을 팔고자 하는 첫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초기시작의 지원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출처/지역의 노력: 많은 구동독지역 브랜드들이 그들 고향지역을 이용해 광고한다. 출처는 모든 브랜드에 있어서 강력하고 일회적인 특수화의 가능성이다. 의도적으로 고유 의 혹은 고향의 브랜드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있어 많은 구동독지역 사람들은 친근함 외에도 경제적인 이유를 가진다. 즉 일자리의 유지 그리고 이를 통한 구동독지역의 강화가 그것이다.
- 브랜드가 국가를 대체한다면: 동독의 해체 시 동일한 시기에 광범위한 브랜드 제품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정치적인 권력관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과 사람들의 양식과 문화는 이로써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동독지역 성과의 여섯 가지 요소:

1. 정보에 주력하는 행태 : 솔직한 태도를 이상적인 것으로 삼고 많은 구동독지역 브랜드들은 그 포장과 광고에서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브랜드에 대한 정보에 주력하는 행태로 나섰다.
2. 고향관련성: 구동독지역 브랜드는 고향에 대한 고백이며 자존심의 표현이다. 고향에 대한 고백으로서 구매는 계속 경제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연합과 지원의 현실적인 형식일 수도 있는 것이다.
3. 다비드-대-골리앗 원칙: 구동독지역 브랜드의 구매는 독재주의 국가체제의 동독에 대한 진지한 귀환 행위가 아니라, 사회 심리적으로 생산자의 면에서나 소비자의 면에서 자신들의 가치가 집단적으로 상실되는데 대해 맞서고자하는 시도인 것이다. 현명하게 이에 맞서고 “서쪽의 형제들”에게 혹은 대기업에 한방 먹인다는 감정인 것이다.
4. 자기유사성 지속: 자신의 과거의 형태를 완전히 삭제한 그 어떤 구동독지역 브랜드

자료 20

도 살아남지 못했으며, 이는 구서독지역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동독-경제의 붕괴 이후 구동독지역 브랜드는 그들에게 남겨진 요소들을 생각해내려 해야 했다.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구동독지역 브랜드도 살아남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제품의 성공 프로필은 자신의 고유한 유전적 요소를 시간에 맞게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다.

5. 솔직함: 동독의 소비 철학은 구동독지역 성공 브랜드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 즉 많은 사람들이 서독과의 구분에 있어서야 비로소 자신 고유의 정체성을 경험함으로써 집단적 동류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6. 가격: 대부분의 구동독지역 브랜드는 같은 등급의 구서독지역 브랜드에 비교해 볼 때 더 저렴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의 차이는 원료의 품질이 저급하다거나, 단순한 제품이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구동독지역 브랜드는 구서독지역의 경쟁 브랜드보다 더 작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구동독지역 기업들은 술수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악한 조건을 인용해야만 했다.

결론: 오늘날 많은 구동독지역 브랜드가 적절한 가격을 형성하여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최대경쟁자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하지만 구동독지역 기업들이 구서독지역 경쟁자의 가격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 지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결국 유리한 가격이 성공을 확보하는 요소이고 이는 적절히 운용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동 책자에 실린 내용은 통일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독일 통일 20년 계기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1.3 엘리트 변동

정치 및 경제 엘리트

통 일 부

CONTENTS

I. 정치 엘리트 · 225

라스 포겔(Lars Vogel) · 다니엘 게르스텐하우어(Daniel Gerstnhauer)

1. 서문 · 226
 2. 전제 조건: 1989년까지의 동독 엘리트들과 [잠재적] 반엘리트 · 229
 3. 제반 조건: 체제 전환의 진행 · 233
 - 3.1 동독의 서독(BRD) 편입 · 234
 - 3.2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제도 이전 · 236
 4. 동독 엘리트들의 잔류 · 238
 - 4.1 간부진과 사회주의적 지식인층의 잔류 · 238
 - 4.2 1989년 가을부터 통일 시까지: 엘리트 퇴장과 부분적인 신엘리트 총원 · 241
 - 4.3 통일 후 엘리트들의 퇴장 · 248
 - 4.4 비교: 서독의 엘리트 연속성 · 249
 5. 통일 직후의 (정치) 엘리트 – 1990년대 중반까지의 변화상 · 251
 - 5.1 구동독 지역의 신진 엘리트들의 사회 구조적 특징 · 251
 - 5.2 서독으로부터의 엘리트 수입 · 257
 6. 통일 후 20년 – 통합된 엘리트로서의 의회 엘리트? · 260
 - 6.1 구조적 변화상: 출신과 엘리트로 가는 길 · 260
 - 6.2 정치적 입장의 유형: 전 독일적 의회 엘리트로 가는 길목에서 · 274
 7. 한반도 상황을 위한 결론 도출 · 287
- 약어색인 · 292
 - 참고문헌 · 293

II. 경제 엘리트 · 295

베른트 마르텐스(Bernd Martens)

1. 독일의 경제 엘리트 · 296

- 1.1 경제 엘리트에 관한 정의와 기본적 특징 · 296
- 1.2 동독 지역의 경제적 환경 · 292

2. 1989년 사회 변혁기 이전의 상황 · 301

- 2.1 동독에서의 경제 엘리트 · 301
- 2.2 요약 · 308

3. 변혁기의 동독 경제 엘리트 · 309

- 3.1 동독 경제의 붕괴 · 309
- 3.2 동독 출신의 새로운 경제 엘리트를 위한 직업 교육 · 311
- 3.3 통일 후 동독 경제 엘리트들의 경력 변화상 · 316
- 3.4 구동독 지역 경제엘리트들의 고학력 추구 현상 · 319
- 3.5 요약 · 320

4. 변혁 20년 후의 동독의 경제 엘리트 · 320

- 4.1 세대교체의 지연 · 320
- 4.2 동독 경제 엘리트들에게서 나타난 높은 기업지분 소유 비율 · 322
- 4.3 전공이력의 균등화 · 324
- 4.4 동서독 경제 엘리트들의 의견 유형 · 326
- 4.5 결론 · 329

■ 참고문헌 · 330

I. 정치 엘리트

라스 포겔(Lars Vogel)

다니엘 게르스텐하우어(Daniel Gerstenhauer)

| | |
|--|-----|
| 1. 서문 | 226 |
| 2. 전제 조건: 1989년까지의 동독 엘리트들과 [잠재적] 반엘리트 | 229 |
| 3. 제반 조건: 체제 전환의 진행 | 233 |
| 4. 동독 엘리트들의 잔류 | 238 |
| 5. 통일 직후의 (정치) 엘리트 - 1990년대 중반까지의 변화상 | 251 |
| 6. 통일 후 20년 - 통합된 엘리트로서의 의회 엘리트? | 260 |
| 7. 한반도 상황을 위한 결론 도출 | 287 |

1. 서문

1990년 이후 독일의 정치 엘리트들의 발전에 대한 서술과 분석은 특별한 도전을 뜻한다.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은, 어떠한 인물들이 엘리트, 특히 정치 엘리트에 속하는가이다. 이러한 인물군에 소속된 사람들을 분류해 내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본 작업의 토대를 이루는 일명 지위 접근(Positionsansatz)*이다. 지위 접근에 따르면 정치 엘리트란, 정치 시스템 내에서 형식적으로 정의된 지도적인 직위를 맡고 있는 인물을 뜻한다. 이러한 지도적 직위로 인해 이들은 전(全) 사회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에 정기적이며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이루어진 모든 엘리트 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위 접근을 본 연구의 엘리트 분류법으로 선정하고 난 후에도, 자료 수집과 직접적인 현장 접근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남아 있다. 독일의 정치 엘리트들에 관한 사회 구조적 배경과 이력에 관한 기본 정보들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자료들은 산발적으로 수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들에 관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다. 엘리트층에 속한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한 시도는 그들에게 부여된 다양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직위를 보유한 자와 접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접촉에 성공하였다 치더라도, 인터뷰에 임해줄 것을 설득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고자 하는 엘리트들의 의지는 시간적인 제한 때문만이 아닌, 엘리트들이 줄 수 있는 정보에 잠재된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동독(DDR)과 통일 독일의 정치 엘리트의 변화상에 대한 본 연구가 직면한 또 다른 특별한 도전으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어려움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어려움은 공식적인 해석에 따르면 계급이 없는 사회였던 동독에는 엘리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의 정치 엘리트를 분류해내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가 지도층조차도 스스로를 노동자 계급에 속한다고 칭했기 때문이다.

* 지위 접근(Positionsansatz), 엘리트 연구에서 한 사회의 엘리트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1) 명성 접근(Reputationsansatz), 2) 의사결정 과정 접근(Entscheidungsprozessansatz), 3) 지위 접근이 있다. - 역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정 기준, 특히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이하 사통당으로 지칭) 가입 여부와 당에 대한 충성도는 일부 예외가 존재하기는 했으나 사회 전 분야에 있어 결정적인 채용 기준을 의미했다. 때문에 경제, 행정, 언론, 군사 부분의 중앙 간부직을 차지한 사람들은 모두 정치 엘리트로 지칭되어야만 한다.

두 번째 어려움은 과거의 엘리트들이 중앙 간부직에서 은퇴한 후 공중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구동독의 종말 이후 정치국원들의 사례를 제외하면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차후 경력을 추적해 보는 일 역시 다양한 잠재적 잔류 가능성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독일 통일 이후의 광범위한 엘리트 변화상을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사료들과 관점들을 조합한다.

전제 조건, 즉, 동독 엘리트의 구조와 잠재적 반엘리트(Gegenelite)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는 동독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들을 추적할 예정이다. 체제 변혁기와 통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적 관점을 수용할 예정이다: 과거 동독 엘리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며, 이들이 새로운 정치 체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묻는 잔류연구(Verbleibstudie)와 전환기(Wende) 혹은 그 이후에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 동독 출신의 신진 엘리트들의 구성 방식을 추적하기 위한 출신연구(Herkunftsstudie)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자료적 토대는 1990년대 중반에 실시된, 그 방법적 구성과 사례 조사의 규모 면에 있어 경험적으로 보장된 판단을 유일하게 허락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들로, 베를린 동독 생애사 연구(Berliner DDR-Lebensverlaufsstudie), 빌헬름 뷔르크린(Wilhelm Bürklin)의 연구, 1995년의 포츠담 엘리트 연구(POTS DAMER ELITESTUDIE)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엘리트 분야로 세분화되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엘리트에 관한 판단은 일반적인 엘리트 변화에 관한 판단을 통해 일부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전에 밝혀두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득력은 연구 기간을 통일 이후 5년밖에 지나지 않은 1995년까지로 밖에 삼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현재까지 본 연구 이후 엘리트 전체를 아우르는 후속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이러한 연구 기간은 당시의 엘리트 형태의 특징이 과거 동서독 엘리트들의 구조를 특징지은 결정적 요소였는지, 아니면 그것이 체제 변혁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기인하는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했는지를 확인

해 보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관심을 쏟은 문제로는 양 독일의 엘리트들이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동서독 정치 엘리트들이 통일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경력발전과 사회 구조적 특징, 근본적인 정치적 입장, 확신, 정치 결정에 있어 어떠한 정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지이다. 통합된 엘리트의 정치적 필요성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분리된 엘리트들이 정치적 과정에 대한 기본적 동의 없이 지역적 차이의 정치화를 통해 양 지역의 통합을 어렵게 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관찰을 통해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통일 후 20년이 통합된 전 독일적 엘리트를 만들어 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일 직후에 발생한 사건들을 정치 엘리트의 중요한 부분 집단인 국회의원 출신의 엘리트들을 근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볼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자료로는 특별 연구분야 580(Sonderforschungsbereich 580)의 세부 프로젝트 A3인 “체제 변혁기 이후의 의회엘리트

표 1 | 비교 기간별 예나 의원 연구 사례 건수

(단위: 명)

| 예나 의원 연구 | | 1990~94 | 94~98 | 98~02 | 02~06 | 06~10 |
|-----------|-------|---------|-------|-------|-------|-------|
| 서독 의회 엘리트 | 연방 의회 | 550 | 555 | 558 | 526 | 519 |
| | 주 의회 | 1570 | 1586 | 1548 | 1470 | 1253 |
| 동독 의회 엘리트 | 연방 의회 | 149 | 138 | 141 | 102 | 123 |
| | 주 의회 | 670 | 573 | 588 | 591 | 565 |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80/A3

표 2 | 설문조사 기간별 예나 의원 설문조사 사례 건수

(단위: 명)

| 예나 의원 연구 (응답률 %) | | 2003 | 2007 | 2010 |
|------------------|-------|----------|----------|----------|
| 서독 의회 엘리트 | 연방 의회 | 120 (24) | 129 (26) | 119 (24) |
| | 주 의회 | 341 (72) | 304 (67) | 284 (58) |
| 동독 의회 엘리트 | 연방 의회 | 45 (45) | 49 (42) | 51 (44) |
| | 주 의회 | 430 (81) | 402 (75) | 372 (69) |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80/A3. 몇몇 주 의회가 2003년 이후부터는 모든 설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응답한 의회에 관한 내용만이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트(Delegationseliten nach dem Systemumbruch)”의 일환으로 프리드리히-실러(Friedrich-Schiller) 대학에서 진행된 예나 의원연구(JENAER ABGEORDNETENSTUDIE)를 토대로 삼았다. 예나 의원연구는 두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력에 관한 데이터 뱅크에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독일 연방의회 혹은 주의회에서 의원직을 수행한 6,804명 의원들의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특징과 직업 및 정치 이력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어 있다(표 1). 이에 대한 보충 자료로 2003년, 2007년, 2010년에 진행된 예나 의원설문조사(JENAER ABGEORDNETENBEFRAGUNG)에는 표준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재와 과거의 의원들의 근본적인 정치적 입장과 역할인식, 경력계획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어 있다. 특히 예나 의원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진행 차수 때마다 현역 의원의 절반이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는 데 성공해, 총 3,472명의 의회엘리트 인터뷰를 진행한 쾌거를 거뒀다(표 2).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우리가 2010년에 독일의 정치엘리트에 관한 문제에 있어 통합된 전독일적 엘리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디까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다.

2. 전제 조건: 1989년까지의 동독 엘리트들과 [잠재적] 반엘리트

동독의 정치 엘리트와 잠재적 반엘리트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동독의 역사적 시작에서 찾을 수 있다. (동독 정권의 수립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요구와 정체성에 따라 동독은 인사 분야의 극단적인 엘리트 교체를 비롯해, 엘리트 채용의 기반을 당시까지 차별을 당한 사회 집단으로, 특히 노동자 계급으로 확장하는 것을 포함해 국가 전 분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냈다.

소련군 점령지역과 동독에서의 인적 청산과 충원

탈나치화(Entnazifizierung)는 포츠담 조약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나치정권(NS-Regime)과 연관된 대부분의 인물들은 관직에서 면직되었다. 특히 정치, 공공 행정, 경찰, 사법, 군사, 학교 교육 분야에서는 대규모 해고가 이루어 졌다. 반대로 경제와 과학, 문화 부문에서는 해당 전문 인력들이 계속해서 요구되었기 때문에, 숙청 작업은 그

리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엘리트 분야의 완전히 새로운 출발에 관한 계획은 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전설에 불과했다 할 수 있다: 동독에서 탈나치화 작업이 서독에 비해 철저히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과거의 나치당(NSDAP) 당원 중 적지 않은 비율이 사통당의 고위 정당 간부직에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나치 시절의 과거를 가진 당 간부들은 정부와 당에 엄청난 충성심을 보였는데, 이는 비충성적인 태도를 보일 시 이들을 면직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탈나치화 작업은 공식이 된 엘리트 직위를 새로이 채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공석을 채운 자들은 주로 소련에서 교육을 받고, 스탈린의 숙청에서 살아남았던, 혹은 독일에서 나치정권의 박해를 받았거나, 그에 저항한 자로 꼽히는, 정치적으로 신뢰할 만한 과거의 독일공산당(KPD) 간부 출신의 정치 엘리트들이었다. 정치와는 거리가 먼 분야를 비롯해, 일부 경제, 과학 분야 등의 최고위직에 오른 세 번째 주요 집단은 일명 “하위 사회계층” 출신의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새로운 사회주의 엘리트들을 위한 사회적 기반 역시 확대되어야 했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 출신”은 동독 설립 초기에 엘리트 채용에 있어 하나의 보너스를 의미했다.

정치의 우위와 사통당에 대한 충성: 모든 엘리트들은 정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트 지위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폐쇄 메커니즘(Schließungsmechanismen)의 요소들에 의해 방해받게 된다: 그것은 바로 엘리트 선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인 사통당의 지도권(Führungsanspruch)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에 대한 충성심(Parteiloyalität)이었다. 당의 지도적인 역할(führende Rolle)은 법률상(de jure) 1968년부터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미 종전 후부터 사실상(de facto) 소련 점령군의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전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엘리트 직위는 교회를 예외로 하고는 사통당의 추종자들에 의해 채워졌다. 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발 자체도 정치 엘리트들의 손에 의해 독점화되고, 위계질서화 되어, 최종적인 (인사) 결정은 여러 주요 관직을 겸임한 소수의 인물에 의해 내려졌다. 때문에 동독의 실제적인 정치 엘리트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군은 500~600 명 사이의 간부들로 구성된 비교적 소규모 집단이다. 이러한 정치 엘리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부여받은 자들은 사통당 정치국 요원과 각 베치르크 지도부(Bezirk는 한국의 도에 해당하는 광역행정구역이다. 사통당 지

도부는 과거의 주를 없애고 베치르크 체제로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역주) 소속의 사통당 제 1 비서(Erster SED-Sekretär)들이었다(Meyer 1991: 76ff). 정치 엘리트들의 손에 쥐어진 권력 독점과 소수의 최고위직에게만 집중된 인사 결정권은 내려져야 할 그 결정 건수만으로도 정치 엘리트들에게 실질적인 업무 과부하를 유발했다.

사통당의 지도권과 권력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간부정책(Kaderpolitik)으로 불리는, 중앙이 관리하는 엘리트 채용이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승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요구가 제시되었다: 당을 위한 공헌, 당에 대한 충성심 증명, 정치국 결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능력, 과학적 유물론의 이데올로기적 토대 전달을 위한 지식은 사회 전 분야의 간부직 승진을 위한 결정적인 전제조건이었다. 정치의 우위는 당과 대중조직(Massenorganisation), 국가 기관에서의 지위들로 이어지는 엘리트들의 전형적인 경력을 통해서도 잘 나타났다.

노동자 가정 출신의 사회적 배경은 동독 설립 초기만 해도 엘리트 직위로 승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정도로 엄청난 보너스를 의미한 데 반해, 이후 이러한 기준은 너무나 보편화 되어, 당에 대한 충성도 증명 강화를 위해 그 의미가 현격히 축소되고 만다. 60년대부터 목격된 이러한 변화는 관찰자들에 의해 동독 (정치) 엘리트 내에서 일어난 사회적 폐쇄의 특징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폐쇄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간부직 자녀들은 끊임없는 차별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노동자 가정 출신의 사회적 배경은 승진의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alheiser 2009: 274).

동독 엘리트 채용을 위한 형식적인 교육과 전문 지식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최소한 정치 엘리트의 경우 서독과 비슷한 수준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며(Meyer 1991: 134 ff),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대학 졸업장이 주요 채용 기준의 하나였다(Salheiser 2009: 274)는 주장에 대한 몇몇 경험적 증거가 존재한다. 그러나 동독을 비교적 유사한 수준으로 현대화된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동독의 최고위층 간부진들의 평균 교육 수준은 비교적 낮았다는 주장(Welzel 1997: 208) 역시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치 엘리트들의 학위는 주로 정규 대학이 아닌, 당 기구인 아카데미에서 수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동독에서 교육 팽창(Bildungsexpansion) 현상이 일어나, 일명 “사회주의 지식인층(sozialistische Intelligenz)”을 뜻하는 대학 졸업장을 지닌 인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동독은 건국 초기 시절, 교육과 정당 업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사회 하위 계층 출신들을 간부직에 올려놓고자 했는데, 1980년대부터는 바로 이들이 사회 전 분야의 엘리트 지위들을 차단하게 된다. 특히 인사 교체 메커니즘(Ablösungsmecanismen)의 결핍으로 인해 엘리트들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동독 사회에 만연한 관직 겸임의 문제는 젊은층 인사들이 중앙의 주요 관직으로 승진하기 어렵게 만든 또 다른 원인이었다. 때문에 사통당 엘리트 중 32%가 사통당 조직의 또 다른 엘리트 직을 맡았으며, 최고위 간부층의 27%가 사통당 기구의 또 다른 간부직을 수행하였다(Derlien 1997: 340).

“차단된” 세대 (“blockierte” Generation) - 잠재적 반엘리트의 유(무)?

공식적으로는 최고의 학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기회가 차단된 것은 고학력 젊은층의 불만을 초래했다. 동시에 의사나 학자, 혹은 예술가를 주축으로 하는 이러한 인물들은 정치 엘리트들의 끊임없는 간섭과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자신들의 특수한 전문 능력을 자주적으로 펼치는 것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엘리트 관직으로의 승진 가능성이 차단된 이러한 “사회주의적 지식인층”의 인물군은 1989년까지 효과를 발휘했던 억압(Repression) 메커니즘으로 인해 체제 비판자로서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잠재적 반엘리트의 저수지 역할을 했다(Welzel 1997: 234). 그러나 1980년대 환경 보호 단체의 형태로 혹은 교회 수호를 위해 자신들의 관심사를 더욱 분명히 밝히며 대중들의 입장을 대변한 명확한 반체제적 시민운동 단체들은 이러한 평가로부터 예외를 형성했다.

그러나 잠재적 반엘리트들은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적 “하위 엘리트(Sub-Eliten)” 층에 소속된 자, 즉, 실질적인 엘리트 지위로 도약하기 위한 지위에서 차단된 자들 사이에서도 존재했다. 몇몇 저자들은 이들의 정치적 기본 입장을 호네커(Honecker)와 같은 “국가건설세대(Gründergeneration)”와 비교해 훨씬 더 실용주의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바초프(Gorbatschow)의 개혁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대중적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낸 반엘리트층이 형성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 기인한다.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의 퇴진(1989년 10월 18일)과 그에 이어 곧바로 이어진 정치국의 전원 사퇴(1989년 12월 3일)를 통해 우선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젊은 세

대의 강화는 1989년 여름부터 시작된 대규모 탈출 및 데모의 움직임을 통해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를 통해 강제된 최고위 지도층의 엘리트 교체는 하위 엘리트들로 하여금 주요 관직을 차지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반경은 이미 진행된 발전들로 인하여 현저히 줄어들었다.

요약

요약해 보자면, 잠재적 반엘리트 세력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독점적인 간부 정책으로 인해 그들의 높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엘리트 지위에 오를 수 없었던 “사회주의적 지식인 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단된 집단은 사통당과 위성 정당, 반체제 시민운동 단체, 경제, 과학, 문화 부문의 하급 간부직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은 — 1989년까지 순조롭게 기능한 억압 기관으로 인하여 — 구엘리트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반엘리트 세력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러한 반엘리트 세력은 엘리트 직에 오르기 위한 전체적인 기반인 동독 자체가 해체의 위기를 맞은 순간에야 비로소 형성되었다. 때문에 구동독 지역의 체제 전환(Transformation)을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했던 행동력 있는 반엘리트 세력은 체제 전환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9년 가을까지 표면적으로는 체제에 충성하며, 승진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한 차단된 세대는 존재하였다.

3. 제반 조건: 체제 전환의 진행

독일의 재통일은 특별한 전제 하에 진행된 전무후무한 사건을 뜻한다. 양 독일 지역이 같은 민족의 영토라는 사실은 결국 통일로 이끈 과정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럽 통합의 강화를 포함한 기존의 유럽적 관점은 독일 통일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프랑스와 영국의 주요 정치가들에게서 지배적으로 나타난 재통일된 독일에 대한 강한 우려는 새롭게 확대된 독일의 국제기구 가입 의무를 통해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나, 결정적으로 완화될 수 있었다.

3.1 동독의 서독(BRD) 편입

통일: 새로운 헌법을 통한 통일이 아닌 동독의 서독으로의 편입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서독)의 기본법이 양 독일의 통일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방법을 허락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통일은 전 국민이 새로운 - 전 독일적 - 헌법에 대해 투표를 하는 기본법 146조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또 다른 방법은 기본법 23조가 명시하고 있듯, 동독이 서독의 기본법 유효 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이었다. 결국 통일은 동독의 서독으로의 편입 형태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에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한 반대는 통일이 가능했던, 그리고 편입을 통해 그것이 근본적으로 효과적이며 더 낮게 활용될 수 있었던 작은 시간적 창(das kleine Zeitfenster)을 근거로 무마되었고, 무마되고 있다.

늙은 동독 엘리트들: 사건들의 역동성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다

결국 통일이 실현될 수 있었던 사실과 그것이 실현된 방법은 일차적으로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위기 상황에서 혁명을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은 주로 엘리트들이다(Dogen/Higley 1998: 15) - 반대로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변혁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동인만을 제공한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압력은 종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 조건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양 독일의 국제적인 파트너 국가들이 이에 미친 영향력 역시 상당했다. 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 철의 장벽의 흔들림은 전 세계를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눈 기본 질서에 의문을 제기했다. 동독 국민들의 봉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군사적인 진압이 고려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53년 6월 17일 동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고, 경제, 사회, 정치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1988년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Perestroika)은 브레즈네프 독트린(Breschnew-Doktrin)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사회주의 공동체 국가들에 독자적인 노선 추구를 허용하는 시나트라 독트린(Sinatra-Doktrin)으로 대체할 것을 천명하였다.¹ 그러나 이를 통해 고르바초프가 추구한 것은 독일 통일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가 동독에서 일

어난 변화에 있어 바란 것은 “공산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이었다(Ritter 2009: 1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감지되어 시간이 경과된 지금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은 동독의 엘리트들이 그 모든 상황으로 인해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완전히 현실에 압도당한 상태였다. 10월 9일 이후 대규모 이주가 본격화되고, 라이프치히(Leipzig)에서 7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월요 데모(Montagsdemonstration)에 참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경찰과 군이 개입하지 않자, 권력 투쟁이 끝이 났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특히 사통당 지도부는 더 이상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끌려 다니며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동독에서 일어난 체제 붕괴를 묘사할 때는 종종 “내파(Implsion)”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늙은 간부들은 “무계획적으로, 무조직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좌절하여” 행동했다(Edinger 2004: 66). 이러한 상황은 베를린 장벽의 개방을 불러 온 귄터 샤보브스키(Günther Schabowski)의 기자회견과 1989년 11월 에리히 밀케(Erich Mielke)가 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정말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라고 맹세를 한 순간 더욱 분명해 졌다.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만큼은 동독 엘리트들이 시민운동 즉 반체제 인사들을 포함한 변혁을 거의 관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체제 전복을 주도한 인물들조차도 그 동력과 자신들이 발휘한 막강한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Edinger 2004: 66).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장기간 지속되어서는 안 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개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독에는 원탁회의(Runde Tische)가 설치되었고, 동독 정권과 신정당 및 각종 단체의 대표들은 이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동독의 민주화 추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원탁회의는 지자체와 베치르크(Kommunen und Bezirken)에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최고 단위로는 중앙 원탁회의(Zentraler Runde Tisch)가 설치되었다. 언론은 원탁회의의 회의 내용을 집중 보도하였고, 국민들은 이러한 보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를 통해 과거의 구조들은 그 정당성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것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중앙 원탁회의는 동독 최초의 자유 인민회의 선거일을 1990년 5월 6일로 잡았고,

1 해당 독트린의 명칭은 미국의 유명 가수인 프랑크 시나트라 노래 “My Way”를 본 따 선택되었다. 이 노래의 후렴구에는 “나는 내 길을 갔다 (I did it my way)”가 반복된다.

이후 선거일을 1990년 3월 18일로 앞당겼다.

동독의 엘리트 교체: 단기간을 위한 과도기적 해결책에 불과

완만하게 진행된 과거 엘리트들에 대한 권력 박탈은 인민회의 선거 결과로 인해 진정한 엘리트 교체로 거듭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진 세력들이 상당부분 지도권을 장악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이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동독 청산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자명한 사실이었다. 1990년 3월 18일의 인민회의 선거와 관련해 일어난 사건들은 동독 국민들이 신속한 통일을 원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예상과 달리 기민련(CDU)이 이끈 “독일을 위한 동맹(Allianz für Deutschland)”은 엄청난 표차로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로타르 드 메시에(Lothar de Maiziere), (CDU)는 동독의 총리로 선출되었다. 동독 인민회의는 결국 1990년 8월 31일의 회의에서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서독 편입을 결의하였다.

3.2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제도 이전

서독의 기본법 유효 지역으로의 동독 편입으로 인해,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1990년에는 서독의 제도가 구동독 지역에 여러 분야에 이전되게 된다(Ritter 2006: 387).

통일을 신속히 완성하고, 신연방주(neue Länder)의 경제, 정치, 사회적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행정 구조를 신연방주의 정치, 사회, 경제적 사회분야에 신속하게 구축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이러한 노력은 동독에 서독 제도들을 거의 예외 없이 이전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었다. 통일이 최종적으로 결의되고 실행되기도 전에, 동독에서는 가능한 한 순조롭게 체제 전환 과정을 실현시키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종종 과거 구조의 해체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체된 구조들은 흔히 서독의 구조를 통해 대체되었으며, 이는 결국 서독 엘리트의 투입으로 이어졌다. “해당 분야의 교육을 받은 동독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연방주 지역의 간부직은 대부분 서독의 간부진을 통해 채워졌다. 이러한 엘리트 이전 방식은 독일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도출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예외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Bürklin/Hoffmann-Lange 1999: 325)

신연방주 지역의 서독 제도 이전은 분야별로 매우 상이하게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양 시스템의 유사성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대로 실업자 보험은 신연방주에서 새로이 (재) 도입되어야 했다. 의료 부문에 있어서는 서독 제도를 동독에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공급 부문이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개인 병원 개업 의사의 전통이 새로이 재부활되어야 했으며, 서독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신연방주 지역에 그대로 이전되었다.

노조의 구조조정 역시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자유독일노조연맹(Der Freie Deutsche Gewerkschaftsbund, 이하 FDGB)은 1990년 9월이 되어서야 해산되었다. 이를 통해 동독의 개별 노조들은 비교적 신속히 FDGB의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노조연맹(DGB)과 그 개별 노조들은 신연방주 지역에 지소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종결을 통해 과거의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 몇몇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는 신설 개별 노조의 간부들은 서독인들에 의해 채워졌다(Ritter 2009: 82). 그러나 과거 동독 노조 간부들과의 거리 두기에 있어서는 개별 노조 별로 상이한 입장이 취해졌다.

정치 분야의 구조조정은 정당 별로 매우 상이한 흐름을 보였다. 과거 동독의 지도당이었던 사통당은 당명을 사통당/민사당(SED/PDS)으로 변경한 후, 다시 민사당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실제로 민사당의 조직 구조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7년 서독의 WASG(노동 사회 정의를 위한 선거대안)와의 합병 후, 민사당은 DIE LINKE(좌파당)라는 당명을 갖게 되었다.

내부적인 찬반양론 끝에 서독의 CDU(기민련)과 FDP(자민당)는 동독의 자매당을 인수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동독 기민련과 LDPD(동독 자민당)은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사통당의 지도권에서 벗어나, 국가 사회주의가 아닌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Eith 1999: 623). 특히 서독 측의 원조에 의존한 정당들로는 Bündnis90/Die Grünen(동맹90/녹색당)과 동독 SPD(사민당)가 있었다. 변혁기에 신설된 양 정당은 동독에 이미 존재한 구조를 토대로 정당을 구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 동독의 모든 정당들은 서독의 자매 정당과 손을 잡았으며, 그 결과 1990년에는 서독의 지도 하에 전 독일적 정당 시스템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서독의 정당들은 동독 정당과 비교해 훨씬 더 많은 당원 수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

었다(Bürklin/Hoffmann-Lange 1999: 324). 특히 통일은, 당시에 진행된 연방의회(Bundestag) 선거전에서 그 어떤 정당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주제였다. 때문에 “본(Bonn)에 본부를 둔 정당들은 변화된 제반 조건들을 감지하고, (...) 구동독 지역의 선거전에서 점점 더 그 주도권을” 선점해 나갔다(Eith 1999: 625).

이익 단체와 협회 차원에서도 서독의 구조적 특징은 신연방주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동독의 연맹이 서독의 자매 연맹과 합병하는 경우는 해당 분야에 따라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 연맹들과 소속 엘리트들은 신연방주 내에서의 조직 구축을 진두지휘하였다. 동독 내 조직적 구축을 위한 지원금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Kleinfeld 1999: 769).

동독 주(Länder) 역시 (재) 도입되었다. 이러한 주 신설에 있어서도 서독의 주 정부는 의식적으로 동독 지역의 특정 주 정부에 서독 공무원 파견을 포함하는 조직적, 인력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 보자면, 이미 통일 전에 시작된 제도 수출은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엘리트 이동을 수반한 과정이었다. 동시에 서독의 정당과 연맹들은 “이미 1990년 초부터 동독 자매기관들과의 합병을 통해 당시까지만 해도 독립 국가였던 동독에 기반을 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Bürklin/Hoffmann-Lange 1999: 324).

4. 동독 엘리트들의 잔류

과거의 동독 엘리트들을 서술하기 위한 경험적 자료 수집에서 이미 나타난 어려움들은 개별 사례 서술과는 별도로 과거 엘리트들의 잔류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에서는 더 큰 난제로 이어졌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자료와 서술을 토대로 이에 관한 대략적인 그림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그려보도록 하겠다.

4.1 간부진과 사회주의적 지식인층의 잔류

과거 동독 엘리트들의 잔류에 관한 문제를 다룬 몇몇 되지 않는 연구들 중 하나는 1995년에 발표되었으며, 1989년 동독에서 일명 상부 직책을 맡았던 이들의 잔류 문제를 다루

고 있다(Solga 1995). 이러한 인물군에는 중, 고위 지도직(부서장(Abteilungsleiter), 학교장(Schuldirektoren), 상임 당서기(hauptamtliche Parteisekretäre) 종사자들을 비롯해 높은 공식적 교육 수준을 요하는 직업군의 명령 하달권을 갖지 않은 직원들(의사, 학자, 엔지니어)이 속했다. 해당 연구의 조사 대상은 좁은 의미에서의 엘리트란 뜻하는 간부진만이 아닌, “사회주의적 지식인층”을 포함하고 있었다. 해당 자료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교적 낮은 사례 조사 건수(총 1,105 건)가 말해주듯, 임의 표본 추출 조사가 통계적으로 검증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과거의 동독 엘리트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 자료는 하위 엘리트들(하위 엘리트에 관한 개념은 21 페이지를 참조)의 잔류와 그 직업, 그리고 지휘부 내부집단으로 진입하기 전에 주로 거치게 되는 직위의 보직자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빈번한 선택으로서의 은퇴

해당 연구 결과는 우선적으로 국가건설 세대(Gründer- und Aufbaugeneration, 출생연도 1929~1931)의 경우 특히 예외적인 경우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상부 직책에서 퇴직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퇴직은 근로 생활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을 뜻했다(표 3). 또한 국가건설 세대는 과반수 이상이 다수의 지도직을 겸임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직책을 자신들의 조기 승진과 인사 교체 메커니즘의 부

표 3 | 1989년 상위 직급 (OD) 인물 중 1993년에도 상위 직급에 남아 있는 인물 비율

(단위: %)

| | 1993년 상위 직급 잔류 비율 | |
|---------------|---------------------------------|----------------|
| | 1989년 지도직을 수행하지 않았던 고학력 직원 중 | 1989년 지도직 인력 중 |
| 출생 연도 1939~41 | 77 | 41 |
| 출생 연도 1951~53 | 69 | 52 |
| 출생 연도 1959~61 | 77 | 33 |
| 총계 | 74 | 44 |
| 출생 연도 1929~31 | 7 | 12 |

합계= 162 명, 출처: DDR-LV, MPIB-Berlin; Solga 1996: 96.

재에 힘입어 동독 종말 시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장년층에 다다른 중앙 간부진들에게 물질적으로 보장된 퇴직을 약속한 서독(조기) 은퇴 규정의 동독 이전은 동독의 최고위 간부진들을 큰 갈등없이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년층 엘리트들이 퇴직에 저항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은퇴 규정이 사통당 정치국원과 중앙 위원회(Zentralkomitees, ZK) 위원을 비롯한 동독 정부의 최고위 인사들에게도 해당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연구의 자료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간부직과 사통당 충성심은 1989년 이후 경력유지를 어렵게 했지만 완전히 막지는 않았다

1989년에 상층 공무원직을 맡았던 자들은 1993년에도 역시 당시 지위에 걸맞는 직업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수행한 직업의 종류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했다: 지도적인 직위(Leitungsfunktion)를 갖고 있지 않았던 인물의 74%는 1993년에도 상층 공무원(Obere Dienstklasse)이었으며, 지도적인 직위를 갖고 있던 인물 중 1993년에도 상층 공무원인 사람은 44%에 불과했다. 즉, 지도적 직위의 상실은 주로 상층 공무원직에서의 퇴진,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지위 상실을 동반했다. 이와는 별도로, 사통당이나 위성정당의 가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난 동독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1989년 이후 지위 면에 있어 동일한 직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켰다.

요약

졸가(Solga)의 연구 자료를 요약 분석해 보면, 동독에서 간부직을 통해 획득한 경험과 공개적으로 드러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은 상층 공무원직에의 잔류를 방해하는 감점 요소를 뜻한 데 반해, 간부직과 무관한 전문 지식은 지위 상실의 가능성을 감소시켜주는 했으나, 이들 중 약 25%의 지위 상실을 막지는 못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때문에 체제 특성에 따라 획득한 지식의 평가 절하는 정치적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독에서 획득한 기술적 전문지식 역시 제한적으로만 전환될 수 있었다(Solga 1995).

4.2 1989년 가을부터 통일 시까지: 엘리트 퇴장과 부분적인 신엘리트 충원

“1989~1994 구동독 간부 엘리트들의 퇴직과 채용, 순환”에 관한 한스-울리히 데르린(Hans-Ullrich Derlien)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동독의 엘리트 교체는 엘리트의 지속성과 엘리트 순환 관계에 관한 각각 상이한 제반 조건을 제공하는 총 네 시기로 분류될 수 있다. 제1기는 1989년 10월 18일 에리히 호네커의 사임을 기점으로, 제2기는 같은 해 11월 17일 한스 모드로(Hans Modrow)의 취임을 기점으로, 제3기는 1990년 3월 18일의 인민회의 선거를 기점으로, 제4기는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궁중 반란(Palastrevolte)”, 차단된 세대의 약진을 가능케 하다

제1기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1989년 5월 지방자치단체 선거결과에 대한 조작이 증명되고, 외교적으로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 후 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1989년 초까지만 해도 동독의 정세는 안정적인 것으로 비추어졌으며, 동독의 엘리트들 뿐만 아니라, 서독의 관측자들에 의해서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었다. 때문에 동독의 엘리트들은 헝가리 국경 개방으로 거세진 탈출의 물결(exit)과 점차 자각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운동(voice)을 아무런 준비 태세도 없이 맞이해야만 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나타난 무능력은 “억압”과 “계급에 따른 철저한 위계질서화, 동독이 이룩한 업적 강조”의 양극 사이를 오간 정치적 대응전략을 통해 잘 나타났다. 후자의 경우 이미 전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동안, 전통적인 억압 조치는 저항의 새로운 양적 규모로 인해 극에 달하게 된다. “중국식 해결책(chinesische Lösung)”에 대한 포기를 이끌어 낸 1989년 10월 9일의 라이프치히 사건 이후, 에곤 크렌츠(Egon Krenz)가 이끄는 정치국과 사통당 중앙위원회에 소속된 동독의 핵심 엘리트 중 일부는 자기 자신들의 지위를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엘리트 순환을 통해 새로운 행동의 여지를 열어 둘 시점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호네커의 사임(1989년 10월 18일)은 동독의 반대세력(Opposition)과 스스로를 개혁 세력으로 내세운 사통당 내의 차단된 세대를 강화시켰다.

그 후 파도처럼 연이어 쇄도한 사건들은 동독의 권력 구조를 “내파(Implsion)”

(Derlien) 시켰다고 묘사될 법 하다. 노령의 동독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사통당 내 개혁파 세력들마저도 그 이후부터는 외부적 사건과 영향력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한 예로는 장벽 개방으로 인한 정세의 흐름과 서독의 진두지휘 하에 통일을 정치적 중심 테마로 정착시키는 데 성공한 서독 정부의 영향력 강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제 1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화를 통해 점철되어 있었다: 첫 번째 변화는 “체제 순응적인 반엘리트”(Derlien)인 차단된 세대가 엘리트 지위로 상승하고, 당시까지 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구엘리트 세력을 몰아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변화는 여러 간부직을 폐지시켰기 때문에 퇴직한 구엘리트 세력의 자리를 신규 충원을 통해 완전히 메우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이다.

원탁회의의 모드로 정부: 권력의 내파와 광범위한 엘리트 퇴장

엘리트 퇴직은 매우 신속히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1989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10월 18일 이전까지 현직에 있던 793명의 간부 중 57%가 퇴직하였다(표 4). 동독의 중앙집권적이며 위계질서적인 조직 구조에 따라, 엘리트 교체는 1989년 12월 초 전체가 해산된 사통당의 정치국과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수평적으로는 국가 행정 기관과 위성 정당, 정치 외 분야의 엘리트를 대상으로, 수직적으로는 하위 간부진(지방행정구역인 베치르크와 크라이스 수준(Bezirks- und Kreisebene))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예를 들어 1989년 11월 말까지 15 명의 베치르크 제1비서(Ersten Bezirkssekretäre)들이 퇴직하였고, 13명의 제1부서기를 비롯해 142명의 사통당 크라이스 행정부(SED-Kreisleitung) 제1비서들이 교체되었다. 새로이 선출된 사통당(지금까지의 중앙위원회와 동등한) 당 의장단(Parteivorstand) 104 명 중 구중앙위원회 출신 인물은 단 4 명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기술된 해고와 퇴직, 해임들은 모두 사통당 혹은 그 규모가 미약하기는 하나 위성 정당, 대중 조직들의 내부적인 결정이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정당의 지지기반과 상승을 원하는 차단된 세대의 강한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통당의 지도적인 역할에 관한 헌법 조항 삭제(1989년 12월 1일)와 동독 각료회의 의장으로의 한스 모드로 선출(1989년 11월 17일), 중앙 원탁회의 설치와 이후 몇몇 중앙 원탁회의 소속 회원들의 정부로의 흡수(1990년 2월 5일)를 통해 엘리트 교체의 제 2기는 시작되었다. 이전까지 정치적

표 4 | 시기 및 분야별 호네커-엘리트의 퇴직

(단위: 절대 수치)

| 주요 직책 | 1989 | | | | 1990 | | | | | | | 무 | 합계 |
|------------------------|------|-----|-----|-----|------|-----|-----|-----|-----|-------|-----------|-------|-----|
|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10월 | 11월 (연가중) | | |
| 행정부 정치인 | | 2 | 199 | 5 | 9 | | 17 | 11 | | | | 3 | 246 |
| 의회 | | 1 | 4 | | | | 9 | | | | | | 14 |
| 사통당 중앙기구 | | 1 | 11 | 64 | | | | | | | | 1 | 77 |
| 사통당 베치르크기구 | | | | 14 | | | | | | | | | 14 |
| 위성정당 중앙 기구 | | | | | | | | | | | | | |
| 위성정당 베치르크 기구 | | | | 34 | 1 | 1 | | | 1 | | | 13 | 58 |
| 대중조직/ 연맹 중앙 기구 | | | 3 | 1 | | 2 | | | | | 2 | 1 | 12 |
| 대중조직/ 연맹 베치르크 기구 | | | 7 | 34 | | | | | | | | 28 | 73 |
| 슈타지 | | | 38 | 2 | | | 2 | | | | | | 44 |
| 베치르크 의회 대표 | | | 6 | 1 | | | 1 | | 5 | | | 1 | 14 |
| 인민경찰/국가안전부 베치르크 지도부 | | | 2 | 2 | 2 | | | | | | | 22 | 30 |
| 중앙 사법부 | | | 1 | 1 | 1 | | | | | | | 4 | 7 |
| 중앙 국방부 | | | | | | | | | | | | 3 | 5 |
| 중앙 경제부 | | | | | | | 1 | | 131 | | | 6 | 138 |
| 교육 | | | 4 | 4 | | | 2 | 1 | | | 2 | 17 | 32 |
| 언론 | | | | 12 | | | | | | | | 3 | 15 |
| 교회 | | | 1 | | | | 1 | | | | 11 | 1 | 14 |
| 총 퇴직 건수 | | 4 | 279 | 174 | 13 | 3 | 33 | 12 | 137 | 20 | 15 | (103) | 793 |
| 월별 비율 (%) | | 0.5 | 35 | 22 | 1.6 | 0.4 | 4.2 | 1.5 | 17 | 2.5 | 1.9 | 13 | 100 |

출처: Derlien 1997: 342

동기를 우선 기준으로 삼았던 엘리트 선발은 늦어도 12월부터는 대중의 요구와 법률적 기준을 통해 보충되고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교체는 동독의 개혁, 그리고 이후에는 통일 쪽으로 관심을 보인 “체제 비판적인” 시민운동 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새로이 선출

된 모드로 정부 역시 이러한 구엘리트 쇠퇴 과정(Erosionsprozess)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로 인해 1월에는 9 명의 장관이 사퇴하거나 면직 되었다.

원탁회의의 모드로 정부: 직위 감소(소멸), 소수의 신규 엘리트, 놀라울 정도의 연속성

그러나 이러한 엘리트 퇴직은 반엘리트들의 병렬적 진급을 뜻하는 엘리트 순환과 완전히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구엘리트들의 퇴직률이 가장 높았던 달인 1989년 11월에는 구엘리트의 퇴직자 수가 266 명에 달한 데 비해, 새로이 채용된 인물의 수는 단 16 명에 불과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동독 제 41주년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지속되었다.

구엘리트의 퇴직자 수와 새로이 진급한 신진 엘리트 수의 불일치는 한편으로는 상당수의 엘리트 직이 소멸된 것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엘리트 직의 소멸이란 즉, 사통당 정치국과 중앙 위원회, 국방위원회(Nationale Verteidigungsrat)의 해체 및 각 정부 부처의 관료주의 축소를 의미했다. 동시에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적 조직 외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제 분야에서는 이미 통일 전부터 민영화 작업이 추진되었으며, 언론과 노조, 대중 조직들은 중앙 조직에서 독립하거나, 완전히 해체되어, 당시까지의 중앙 감독 조직까지도 소멸하게 된 것이다. 데르린(Derlien)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1989년 10월 18일 이전 453개였던 엘리트 직이 드 메지에 정부에서는 184개로 줄어들었다(Derlien 1997: 338).

그러나 신규 채용 건수가 낮았던 또 다른 이유는 구엘리트들이 상당 부분 잔류한 것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한스 모드로의 취임으로 그 시작이 특징 지어지는 제2기에는 호네커 사퇴(1989년 10월 18일) 이전에 재직하고 있던 엘리트의 60%가 원 직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표 5).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분야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한스 모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축소된, 중앙 사통당 조직 내에는 과거 호네커 시절의 엘리트 중 한 명(16.6%)만이 남아 있던 데 반해, 국가 행정 기관(58명 중 42 명)과 교육 분야(33명 중 23명)의 경우 구엘리트 출신의 잔류 비율이 약 70%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구엘리트 출신 중 자신의 활동 분야만을 바꾼 인물들도 있었다: 이러한 인물들을 엘리트 경력을 지속한 인물 수에 더하면, 한스 모드로 임기 중 구엘리트 출신의 잔류 비율은 69%로 높아지게 된다.

표 5 | 과도기 엘리트 기준 주요 직책별 경력 유형

(단위: 절대 수치 및 %)

| 기간 | 직책 분야 | | 행정 | 의회 | 원탁 회의 | 중앙 SED-PDS | 중앙 위상 정당 | 중앙 당 연맹 | 중앙 내 중조직/연맹 | 차관/정부 부문 | 베치 르크/주 | 교육 | 교회 | 합계 |
|--------------------------|-------|-------|-----|----|-------|------------|----------|---------|-------------|----------|---------|----|----|----|
| | 시간 | 직책 분야 | | | | | | | | | | | | |
| | 250 | 16 | 138 | 4 | 28 | 47 | 15 | 33 | 14 | 545 | | | | |
| 호네커 기간 직책 | 246 | 14 | 77 | 4 | 12 | 44 | 14 | 32 | 14 | 434 | | | | |
| 분야별 주요 직책을 겸한 인물 | 204 | 4 | 76 | | 5 | 41 | 7 | 9 | 1 | 347 | | | | |
| 호네커 이후 직책 변경 | 4 | 1 | 6 | | 2 | 2 | 2 | 2 | | 17 | | | | |
| 그중: 분야 변경 비율 | 200 | 3 | 70 | | 3 | 39 | 7 | 7 | 1 | 330 | | | | |
| 그중: 엘리트 직에서 퇴직 | 60 | 17 | 6 | 12 | 8 | 10 | 7 | 33 | 13 | 199 | | | | |
| 모드로 1기 정권 직책 | 58 | 15 | 4 | 7 | 7 | 9 | 7 | 33 | 13 | 177 | | | | |
| 분야별 주요 직책을 겸한 인물 | 42 | 10 | 1 | 7 | 7 | 3 | 7 | 23 | 13 | 106 | | | | |
| 경력 지속자 | 16 | 5 | 3 | 7 | 7 | 6 | | 10 | | 71 | | | | |
| 신임 | 10 | 4 | 2 | 6 | 7 | 3 | | 9 | | 54 | | | | |
| 그중: 첫 번째 엘리트 직책 | 6 | 1 | 1 | 1 | 4 | 3 | | 1 | | 17 | | | | |
| 그중: 분야 변경자 | 13 | 1 | 1 | 3 | 3 | 1 | | 1 | | 30 | | | | |
| 모드로 1기 정권 | 1 | 8 | 2 | 2 | 3 | 1 | | | | 11 | | | | |
| 그중: 분야 변경 | 8 | 8 | 1 | 1 | 3 | 1 | | | | 19 | | | | |
| 그중: 엘리트 직에서 퇴직 | 12 | 1 | 1 | 1 | 3 | 1 | | | | 179 | | | | |
| 모드로 2기 정권 | 56 | 15 | 5 | 15 | 12 | 11 | 7 | 33 | 13 | 169 | | | | |
| 분야별 주요 직책을 겸한 인물 | 54 | 15 | 3 | 11 | 11 | 8 | 7 | 33 | 13 | 147 | | | | |
| 경력 지속자 | 45 | 14 | 3 | 4 | 7 | 8 | 7 | 33 | 13 | 103 | | | | |
| 그중: 호네커 기간 중 커리어 지속자 | 38 | 10 | 1 | 4 | 7 | 3 | 7 | 24 | 13 | 44 | | | | |
| 그중: 모드로우 1기 정권 중 커리어 지속자 | 7 | 4 | 2 | 4 | 7 | 4 | 4 | 9 | | 22 | | | | |
| 신임 | 9 | 1 | 1 | 7 | 4 | | | | | 11 | | | | |
| 그중: 첫 번째 엘리트 직책 | 2 | 1 | 1 | 6 | 3 | | | | | 11 | | | | |
| 그중: 분야 변경자 | 7 | 1 | 1 | 1 | 1 | | | | | 11 | | | | |
| 모드로우 2기 정권 후 직책 교체 | 50 | 13 | 1 | 3 | 9 | 5 | 7 | 17 | 1 | 110 | | | | |
| 그중: 분야 변경자 | 9 | 3 | 2 | 2 | 6 | 1 | 1 | 17 | 1 | 23 | | | | |
| 그중: 엘리트 직에서 퇴직 | 41 | 10 | 1 | 1 | 3 | 4 | 7 | 17 | 1 | 87 | | | | |
| 드 메지예 기간 직위 | 40 | 10 | 4 | 13 | 7 | 15 | 14 | 16 | 12 | 184 | | | | |
| 분야별 주요 직책을 겸한 인물 | 40 | 9 | 3 | 3 | 3 | 15 | 14 | 16 | 12 | 172 | | | | |
| 커리어 지속자 | 4 | 2 | 2 | 8 | 2 | 3 | 3 | 16 | 12 | 59 | | | | |
| 중: 호네커 기간 중 경력 지속자 | 2 | 2 | 1 | 2 | 1 | 10 | 3 | 13 | 12 | 39 | | | | |
| 중: 모드로 1기 정권 중 경력 지속자 | 2 | 2 | 1 | 2 | 1 | 2 | 1 | 3 | 12 | 11 | | | | |
| 중: 모드로 2기 정권 중 경력 지속자 | 2 | 2 | 6 | 6 | 1 | 2 | | | 3 | 3 | | | | |
| 신임 | 36 | 7 | 1 | 1 | 1 | 5 | 14 | | | 113 | | | | |
| 중: 첫 번째 엘리트 직책 | 30 | 3 | 1 | 1 | 1 | 2 | 13 | | | 90 | | | | |
| 그중: 분야 변경자 | 6 | 4 | 1 | 1 | 3 | 8 | 1 | | | 23 | | | | |

출처: Derlien 1997: 358

인민회의 선거 이후 강화된 엘리트 순환과 체계적인 “탈슈타지화”의 시작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인민회의의 자유 총선과 드 메지에 정부 취임 후 경제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관직에 남아 있는 구엘리트 세력의 해고와 해임이 이루어진 엘리트 교체의 제3기가 시작되었다. 이 기간에는 동독의 구엘리트 세력 중 약 1/3이 관직에서 물러났다(표 4). 이를 통해 구엘리트 세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이 11월과 12월 사이에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모드로 정권 시절에는 구엘리트 세력 중 최소한의 인력만이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를 통해 인민회의의 선거 이후, 그리고 이러한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권력 이양 이후 엘리트로서의 경력을 지속한 구엘리트 출신의 비율은 다시 한 번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당시까지만 해도 엘리트 지위에 진급하지 못했던 인력을 뜻하는 신진 엘리트들(Neulingen)의 비율은 로타 드 메지에 임기 동안 66%를 기록하게 된다. 호네커 실각 전부터 동독 엘리트로 활동한 자들 중 간부직을 차지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제 10차 인민회의의 회기 동안에는 정치 인력의 검증과 경우에 따른 해임을 위한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기 시작했다(인민회의-검증위원회, Volkskammer-Überprüfungsausschuss). 당시까지 사통당 내부적으로 진행된 엘리트 청산은 이를 통해 체계적이며 사법적인 검증을 통해 보완되고, 대체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검증 작업은 행정 인력과 법조인, 학자들에 대한 검증(검사-검증위원회 Staatsanwalt-Prüfungsausschüsse, 판사-선출위원회 Richter-Wahlausschüsse, 대학 명예위원회 Ehrenkommissionen an Universitäten)의 모델을 만들어 냈다(Derlien 1997: 348). 일반적으로 단순한 사통당 가입 여부는 그 어떤 엘리트 분야에서도 면직 기준을 의미하지 않은 데 반해, 구동독에서 주목받는 엘리트 직위에 취임한 사실은 배제 기준을 의미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논란은 국가안전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구어: 슈타지 Stasi)와의 공식 및 비공식 협력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특히 비공식 협력(구어: IM-Spitzel)이 더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고도의 신뢰파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공식 협력행위는 증명해 내기가 어려웠다. 이에 관한 증거 자료 수집은 슈타지 문서 연방 관리청(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구어: 초대 관리청장의 이름을 딴 가옥 관청 Gauck-Behörde)의 설치로 인해 용이해지기는 하였으나, 비공식 활동의 조사 결과 해석에 관한

문제는 종종 논란의 대상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슈타지와 협력은 일부 강요되었거나, 명예를 위태롭게 할 만한 보고서들이 남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 엘리트들에게 있어 슈타지와 협력이나 정치적인 고위직을 통한 동독 정권과의 밀접한 관계는 입후보의 걸림돌 혹은 해당 활동이 이후에 밝혀질 경우 해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1990년 3월 인민회의 총선과 주 의회 및 연방 의회 선거를 위한 입후보자 명단 구성에 있어 정당들은 슈타지 과거가 있는 인물들을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과거에 슈타지 활동을 한 전력은 후보자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 여러 차례 폭로된 것처럼, 정당들은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슈타지 활동 전력이 있는 입후보자들을 완전히 가려내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요약

통일 전까지의 엘리트 변화를 요약해 보면, 엘리트들의 퇴직이 초기에는 사통당의 내부적 개혁 노력과 사통당 내부의 차단된 세대의 승진을 통해 유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까지 사통당에 의해 통제된 위성 정당과 대중 조직, 언론 등의 직책들은 높은 점임률로 인해 공식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공식과 정당(동독 사민당 SDP, 신 포럼 Neues Forum, 민주주의 혁신 Demokratischer Aufbruch 등)과 이익 단체들의 신설로 인해 당시까지 사통당을 통해 독점된 엘리트 구조는 다원화되기 시작했다.

엘리트들의 퇴직은 대부분은 엘리트 직책의 폐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통일 시까지 존속된 엘리트 직책을 맡았던 자들을 고려해 보면, 사통당/민사당의 세력과 이와 연결된 엘리트 연속성은 해체를 앞둔 정권의 인민회의 선거 시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할 수 있다. 1990년 3월부터 권력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서독 정치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통일 조약(Vereinigungsvertrag)의 조연자나 중개자의 형태로 점점 더 커지고 통일의 전망이 커짐에 따라 구엘리트들은 거의 완전히 퇴출되었다.

4.3 통일 후 엘리트들의 퇴장

1990년 10월 3일 통일 후, 동독의 국가 구조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이를 통해 당시까지의 엘리트 직책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면, 608 명에 달하는 구엘리트, 혹은 과도기 기간에 새로이 채용된 엘리트들이 통일 독일에서 어떠한 연결직책(Anschlussposition)에 안착하게 되었을 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보지 않을 수 없다.

표 6 | 1990년 11월 과거 동독 엘리트 및 과도기 엘리트의 잔류

(단위: 절대 수치)

| 1990년 11월 후속 직책 | 호네커 기간의 엘리트 | 모드로 1기 신채용 | 모드로 2기 신채용 | 드 메지에 신채용 | 합계 1989~1990 |
|-----------------|-------------|------------|------------|-----------|--------------|
| 대학: 강사 | 1 | | | | 1 |
| 대학: 교수 | 1 | 2 | | | 3 |
| 대학: 기타 | 1 | | | | 1 |
| 언론 | 4 | | | | 4 |
| 연맹/협회 | 4 | 2 | | | 7 |
| 교회 | 12 | | | 1 | 12 |
| 행정 | 1 | 5 | | 7 | 13 |
| 입법 | 4 | 16 | 5 | 13 | 38 |
| 자유직 | 4 | 2 | | | 6 |
| 비숙련공 | 2 | | | | 2 |
| 일반 직원 | 3 | | | 1 | 4 |
| 관리 직원 | 4 | | | 2 | 6 |
| 실업자 | 2 | 1 | | | 3 |
| 은퇴자 | 132 | 2 | | | 134 |
| 구금 | 4 | | | | 4 |
| 사망 | 4 | | | | 4 |
| 기타 | 1 | | | | 1 |
| 무응답 | 269 | 24 | 6 | 66 | 365 |
| 직책 소유자 합계 | 453 | 54 | 11 | 90 | 608 |

출처: Derlien 1997:361

1989년 10월 18일과 1990년 10월 3일 사이에 퇴직하였거나, 새로이 채용된 동독 엘리트들 중 243 명의 경우 1990년 11월까지 이들이 수행한 직책에 대한 정보가 존재했다(표 6). 그러나 이들 중 절반이 넘는 365 명에 대해서는 잔류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높은 비중은 해당 인물들이 의사 결정과 관련된 고위직에 취임하지 못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의 잔류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큰 문제없이 확인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은 22%(608 명 중 134 명)로, 1990년 11월 은퇴한 구엘리트 집단이다.

사법적 형사 재판에 의해 구금된 구엘리트들의 숫자는 초기에는 매우 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졌다. 그러나 1997년까지 과거의 구동독 엘리트들에게 취해진 27건의 소송은 피고의 연령이 높아 재판 참석이 불가능해 소송이 취하된 경우가 많다.

1990년 11월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장관 혹은 차관으로 활동한 13명의 엘리트들은 엘리트 직을 지속할 수 있었던 집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전체 비율 중 2%에 달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연방의회, 주의회, 유럽의회에서 의원직을 맡은 33 명(5%)은 동독의 하위 엘리트 출신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요약해 보자면, 근본적으로 동독의 구엘리트를 비롯해 체제 전환기에 채용된 엘리트들은 통일 후 엘리트 직에 거의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면, 구동독의 엘리트 교체는 연속성이 아닌 순환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 할 수 있다. 서독의 제도를 신연방주 지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엘리트 직책들은 다른 인물이나 기타 사회 집단을 통해 채워졌다. 이러한 인물들과 이들의 사회적 특징을 다음 장에서 다루어 보기 전에, 서독에서 일어난 엘리트 변화상을 짧게 조명해 보도록 하겠다.

4.4 비교: 서독의 엘리트 연속성

1990년대 초의 여론에서는 서독 기본법 유효 지역으로의 동독 편입이 서독의 정치, 사회 체제에 그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구서독 지역은 모든 것이 그대로 지속되는데, 구동독 지역만이 변화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1990년은 서독에게 있어 분

기점을 의미하지 않았다. 관련 자료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동독 엘리트들의 잔류에 관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과거 서독 엘리트들의 잔류와 그로 인한 엘리트 교체를 연구하고 조사한 연구 자료는 단 한 건도 출판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 독일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광범위한 조사 자료인 1995년의 포츠담 엘리트 연구는 엘리트 변화상의 원인을 1989/90년에 일어난 체제 붕괴에서 찾는 대신, 장기적으로 진행된 변화를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본 공화국(Bonner Republik)”에서 “베를린 공화국(Berliner Republik)”으로의 전환이 단순한 천도(遷都) 이상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서독 지역 엘리트들의 변화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는 여전히 구동독 지역 신진 엘리트들이 서독의 지배적인 유형에 얼마만큼 적응했는가에 대한 문제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각 분야별 엘리트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새로이 임명된 장관과 새로이 선출된 의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1989/90년에 일어난 동독의 체제 붕괴는 구서독 지역에서 구동독 지역에 비견할만한 기관과 조직 내 엘리트 교체를 수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구동독 출신의 연방 장관과 주 장관들의 90%가 1990년의 선거 이후 처음으로 장관직에 취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장관직에 최초로 취임한 동서독 정치인들의 비율인 10%(7명) 중, 동독 출신은 마티아스 플라첵(Matthias Platzeck)과 한스-요아힘 마이어(Hans-Joachim Meyer), 레기네 힐데브란트(Regine Hildebrandt)로 단 세 명뿐이었다. 나머지 장관직은 서독 출신의 정치인들에 의해 채워졌다.

서독에서는 장관직에 최초로 취임한 비율이 58%로, 평균 비율인 47%에 비해 높기는 했지만, 구동독과 비교해 훨씬 낮았다(표 7). 의회 의원들에게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표 8): 통일 직후 구동독 지역 출신의 의원 중 최초로 의원직에 오른 비율이 79%에 달하는 데 비해, 구서독 지역의 경우 31%에 그쳤으며, 이는 1990~2010년의 평균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때문에 정치 엘리트의 일부인 장관과 의원 급에서는 구동독 지역과 비견할만한 엘리트 교체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체제 전환기 초기에는 구서독 지역의 엘리트 채용 형태에 있어 지속성이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체제 전환의 특수한 정황은 거듭 다음과 같이 명확해 진다: 서독 기본법 유효 지역으로의 동독

표 7 | 장관 전원 중 최초로 임명된 장관 비율

(단위: %)

| | 1990~94 | 1994~98 | 1998~2002 | 2002~2006 | 2006~2010 | 2010~2014 | 합계 |
|--------|---------|---------|-----------|-----------|-----------|-----------|------|
| 장관(서독) | 57.7 | 35.8 | 51.0 | 49.2 | 41.7 | 44.1 | 47.4 |
| 장관(동독) | 91.9 | 51.5 | 55.7 | 50.7 | 51.7 | - | 61.9 |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80/A3

표 8 | 의원 전원 중 최초로 임명된 의원 비율

(단위: %)

| | 1990~94 | 1994~98 | 1998~2002 | 2002~2006 | 2006~2010 | 2010~2014 | 합계 |
|--------|---------|---------|-----------|-----------|-----------|-----------|------|
| 의원(서독) | 31.1 | 33.6 | 29.2 | 33.3 | 30.3 | 29.1 | 31.4 |
| 의원(동독) | 79.1 | 40.6 | 32.3 | 35.3 | 35.1 | 23.3 | 49.2 |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80/A3

편입과 제도 이전으로 동독에서는 대부분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지만, 서독의 제도적 시스템은 유지되었으며, 그 연속성을 보장받았다.

5. 통일 직후의 (정치) 엘리트 - 1990년대 중반까지의 변화상

5.1 구동독 지역의 신진 엘리트들의 사회 구조적 특징

동독 엘리트들의 잔류 연구는 과거 정권의 간부진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자신들의 관직에서 퇴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구동독 지역의 정치 엘리트들은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 채워져야만 했다. 엘리트 순환은 민주주의 정권 내에서도 전혀 특별하지 않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상이한 교체 메커니즘들이 언젠가는 간부진을 교체해 주기 때문이다. 때문에 구동독 지역 출신의 신진 엘리트들이 효과적인 교체 메커니즘을

통해, 혹은 동독의 국가 구조가 존속되었을 경우 채용되었을만한 인물들을 통해 채워진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엘리트 채용의 인재 풀(Pool)이 변화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지금부터는 신진 엘리트들이 어떠한 분야와 사회적 집단을 통해 채용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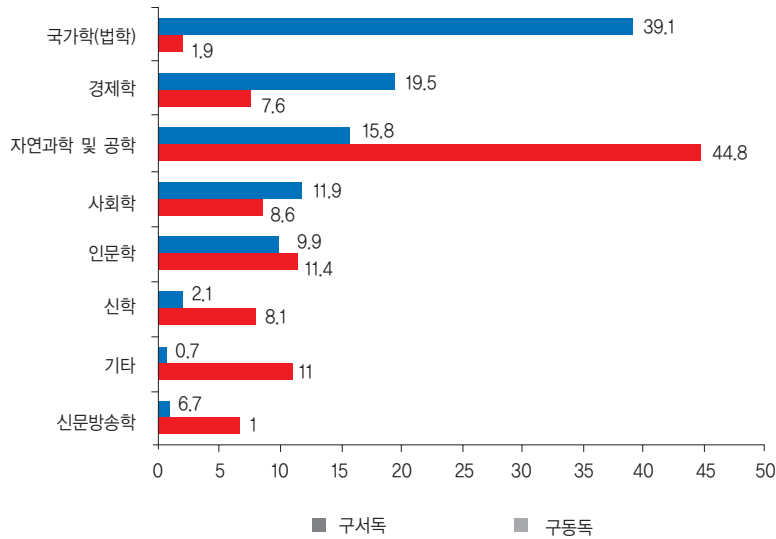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순한 수치는 이러한 문제에 관한 첫 번째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구동독 지역 신진 엘리트들의 평균 연령은 1990년 이후 5년이 지나면서 62세에서 47세로 낮아졌다. 이러한 급격한 평균 연령의 감소는 1920년대 후반에 출생한 구엘리트 세력들의 퇴진을 통해 풀이될 수 있다. 엘리트 내 여성의 비율은 5%에서 30%로 상승했다(Welzel 1997: 208f). 때문에 구동독 지역에서의 엘리트 교체는 세대교체와 현대화를 위한 추진력을 의미했다.

구동독 지역의 신진 엘리트들은 기술 분야의 지식인층이다

대학 졸업자 비율에서 나타나는 교육 수준은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거 동독 엘리트들의 관찰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동독 지역 신진 엘리트들 중 대학 졸업자 비율은 1995년 80%로 구서독 지역 엘리트들의 비율과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동독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 당에 충실했던 대학이나 이데올로기 중심의 전공 분야 역시 구동독 지역 신진 엘리트들의 특징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연과학이나 공학과 같은 체제 중립적 전공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공 지식은 사회적 질서와는 무관하게 전달되고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그래프 1). 때문에 이러한 전공 분야들은 동독에서 우선시 된 정치적 결정의 기준 하에서조차도 고도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활동을 가능케 하는, 정치와 거리가 가장 먼 분야라 할 수 있다. 일반 국민과 비교해 구동독 지역 신진 엘리트들 사이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자들의 비율이 높은 이유 역시, 종교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이데올로기적 도구화와 가장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반대로 한 사회의 제도적 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전공 분야와 그 전문 지식의 가치가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제도 이전 후 얼마나 상실되었는가는 구동독 지역 엘리트들 사이에서 정치학 및 경영학을 전공한 인물들의 비율이 낮아진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동시에 구서독 지역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정치학 및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다. 이러한 전공 분야는 제도적 구조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

그래프 1 | 동서독 엘리트 중 대학 졸업자들의 다양한 전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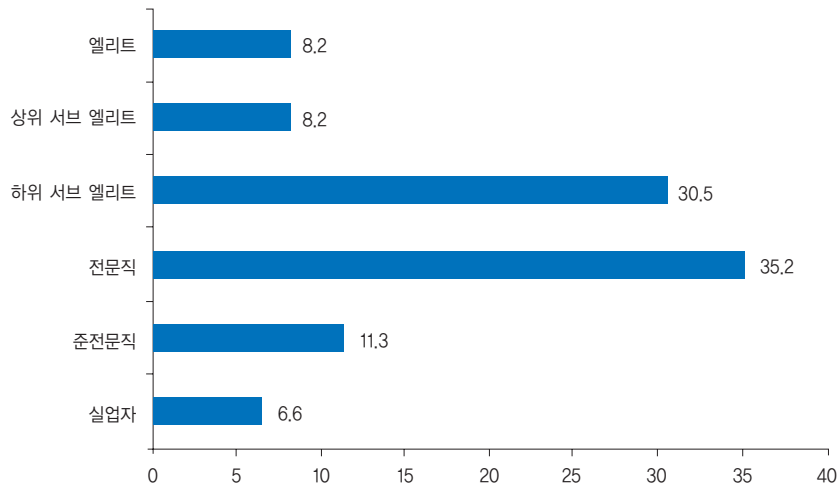
(단위: 1995년, %)



출처: Welzel 1997: 210, 포츠담 엘리트 연구

그래프 2 | 1988년 동독 신진 엘리트들의 직책

(단위: 1995, %)



출처: Welzel 1997: 217, 포츠담 엘리트 연구

표 9 | 1995년 기관 분야 별 동서독 엘리트 분포도

(단위: %)

| | 1988 | 1995 | 1988 | 1995 |
|----------|------|------|------|------|
| 정치 | 12.6 | 17.2 | 3.5 | 60.3 |
| 연맹 | 6.7 | 9.8 | 2 | 7.4 |
| 노조 | 4.4 | 4.3 | 2.3 | 4.4 |
| 언론 | 15.5 | 16.5 | 10.5 | 16.5 |
| 교회 | 1 | 1.2 | 6.3 | 2.2 |
| 과학/의학 | 8.3 | 7.4 | 34.4 | 4.4 |
| 경제 | 15.1 | 12 | 18 | 0.7 |
| 행정 | 23.2 | 22.9 | 3.9 | 4 |
| 사법 | 1.7 | 2 | 0.4 | 0 |
| 군사/무장 기관 | 5.5 | 6.6 | 1.2 | 0 |
| 기타 | 4.8 | 0 | 10.9 | 0 |
| 명예직 | 1.5 | 0 | 6.6 | 0 |
| 분야 변경 비율 | 11 | | 70 | |
| 합계 (명) | 1999 | | 256 | |

출처: Welzel 1997: 213, 포츠담 엘리트 연구

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간부직에 오르기 위해 일반적으로 엘리트 직위에 오르기 전에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직책들을 단계적으로 거쳐야 한다. 동독의 구엘리트 세력들이 엘리트 직에서 퇴직한 후에 맡게 된 직위들을 살펴보면, 퇴직 이후 더 이상 간부직을 맡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간부직에 오르기 이전의 직책들은 동독 출신의 신진 엘리트들이 어떠한 사회적 분야와 위계질서 층에서 채용 되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럼 먼저 분야별로 동독의 신진 엘리트들의 출신을 살펴보도록 하자. 1995년을 기준으로 구동독 지역 신진 엘리트들의 70%가, 1988년에 이들이 엘리트 직책을 맡았었는지와는 무관하게(표 9), 1988년에 활동했던 곳과 다른 분야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분야별 연속성을 통해 특징 지어지는 구서독 지역 엘리트의 경우, 활동 분야를 교

체한 엘리트 비율은 약 10%로 훨씬 낮다. 자료를 통해서는 특별히 어떠한 분야를 통해 동독의 신진 정치 엘리트들이 채용되었는지가 파악되지 않지만, 구동독 지역의 엘리트들은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높은 졸업생 비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1988년 이전까지 대부분 과학이나 의학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활동한 분야는 형식상으로는 경제 분야이지만, 실제 엘리트들이 이러한 경제 분야에서도 세부적으로 도맡은 업무는 엔지니어 직책이었을 뿐, 기업 대표로서의 직책을 수행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동독의 신진 엘리트층은 특히 구동독에서 정치적 결정 기준과 정치적 참여, 그리고 국가의 전횡으로부터 최대한으로 거리를 두고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분야들에서 충원되었다.

구동독 지역의 신진 엘리트 대부분이 동독 하위 엘리트와 전문직 종사자 출신

구동독 지역 신진 엘리트들이 과거에 수행한 직책은 그들이 속한 기관의 분야에 있어서만이 아닌, 위계질서에 따른 직급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직급에 있어서는 최고위직과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높은 직위가 엘리트 직급으로 분류된다. 1995년의 포츠담 엘리트 연구는 크라이스(Kreis) 혹은 소규모 지자체(Kommunal) 차원에서 지도적인 위치(Spitzenposition)를 맡은 인물들을 모두 “상층 하위 엘리트(obere Subelite)”로 분류하였고, 반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예: 부장 Abteilungsleiter) 조직 내부의 부문별 장(Leiter)들을 하층 하위 엘리트(untere Subelite)로 분류하였다. 위계질서에 있어 하층 하위 엘리트 아래에 위치한 직업군으로는 대학 졸업장을 필요로 하나, 관리 직책을 부여받지 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 반대로 위계질서 최하위 두 직급에는 하층 하위 전문직 종사자(Subprofession)들과 실업자들이 속한다(Welzel 1997: 216f).

구동독 지역 신진 엘리트 중 8%만이 이미 1988년에 엘리트지위를 차지했던 데 반해 서독에서는 이 비율이 50%나 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신연방주에서 일어난 거의 완전한 엘리트 교체의 결과를 거듭 부각시켜주고 있다. 1989년 이후 동독 신진 엘리트로 가장 많이 올라선 직급은 하층 하위 엘리트와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 하층 하위 엘리트들은 이미 엘리트 직급으로 오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거친 인물들이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동독이 존속했을 경우 지도적인 위치가 반드시 보장된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은 1988년 국민들 사이에서 거의 인식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상층 하위 엘리트

나 엘리트들이 맡았던 주목받는 지위들보다는 과거의 사통당 정권과 덜 결부된 조직 내부의 관리 직책에 올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능들은 변화된 제도적 조건들 하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관리 경험을 제공하였다.

1988년 국민 중에서 하층 하위 엘리트에 속하는 인물들이 1988년 전문직에 종사한 인물들보다 현저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동독의 신진 엘리트 중 하층 하위 엘리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문직 종사자 비율만큼이나 높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하층 하위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속한 직책을 통해 엘리트 지위로 상승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 진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대부분 엘리트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 활동분야를 바꿔야 했다.

구동독 지역(신연방주)의 신진 정치 엘리트 중에는 동독 반체제 인사가 적다

정당 가입, 그 중에서도 사통당 가입은 하위 엘리트 급에서 지도적인 직책에 오르기 위해 거의 필수적이라 할 만한 요건이었으며,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정당 가입은 흔히 당연시 되었다. 이러한 정황에 따르면 1995년의 구동독 지역 신진 엘리트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동독에서 한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들로 채워졌으며, 이들 중 과반수는 사통당 출신이었다(표 10). 그러나 이들 당원 대부분이 사통당을 비롯한 그 위성정당의 위계질서 내에서 주목받는 직책을 맡지 않았다는 사실이 거듭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사통당을 비롯한 위성정당의 가입 여부는 해당 인물이 과거의 동독 엘리트 세력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1989년 이후 엘리트 지위를 차지하는 데 그리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다(표 11). 1989년 10월 이전 반체제 운동에 가담했던 인물들(“반체제 인사 Oppositionelle”)은 구동독 지역의 신진 엘리트 중 24.2%로서 전체 구동독 주민 중 이들이 차지한 비율로 추정된 0.3%와 비교해 훨씬 더 높았다. 이러한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1995년 구동독 지역의 신진 엘리트들 중 동독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한 반엘리트 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반대로 신연방주의 신진 엘리트들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군은 동독 국민 중 약 78%로 평가될 수 있는 무소속 집단이었다. 동독에서 사람들이 정당에, 특히 사통당에 가입하는 이유가 주로 직업적 승진의 기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구동독 지역의 신진(정치) 엘리트 대부분이 이미 동독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 인물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해 진다.

표 10 | 동독에서의 정치적 소속

(단위: %)

| 비율 | |
|---------|------|
| 사통당 당원 | 28.0 |
| 위성정당 당원 | 17.5 |
| 무소속 | 30.3 |
| 반체제 | 24.2 |
| 합계 (명) | 268 |

출처: Welzel 1997: 219, 포츠담 엘리트 연구; 분류 근거 - 1995년 기준 설문 조사 대상 엘리트들이 진출한 자가 정보

표 11 | 당원 중 지역 단위별 당 직책 수행 비율

(기준: %)

| 비율 | |
|--------------|------|
| DDR 전국 단위 당직 | 2.3 |
| 지역 | 9.0 |
| 군 | 10.5 |
| 마을 | 10.5 |
| 무직 | 67.7 |
| 합계 (명) | 133 |

출처: Welzel 1997: 220, 포츠담 엘리트 연구

5.2 서독으로부터의 엘리트 수입

1990년 3월 18일 인민회의 총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는 통일이라는 주제가 동독의 정치적 발전을 규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그 전부터 서독의 정당과 연합, 이익 단체들은 동독의 자매기관과 합병을 시작해 나갔다. 서독 정당과 조직들의 높은 당원 수와 재정 능력 뿐만 아니라 동독인들이 “서방의 관리방식(westliche Management Methode)에 경험이 없었기”(Hoffmann-Lange 1999: 324) 때문에 서독인들은 합병 과정과 그로부터 생겨난 조직 구조를 지배하였다. 통일과 그로 인해 수반된 서독 제도의 인수에 이어 서독 간부진들의 수입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의 엘리트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전 독일 엘리트 계층에서의 동독주민 부족과 구동독 지역 엘리트

표 12 | 독일 엘리트 중 동서독인 비율

| | 합계 (명) | 구서독 (%) | 구동독 (%) |
|---------|--------|---------|---------|
| 정치 전 분야 | 498 | 67.9 | 32.1 |
| 행정 | 474 | 97.5 | 2.5 |
| 대기업 | 249 | 99.6 | 0.4 |
| 기업 연맹 | 173 | 91.9 | 8.1 |
| 노조 | 97 | 87.6 | 12.4 |
| 대중언론 | 281 | 88.3 | 11.7 |
| 합계 | 2341 | 88.4 | 11.6 |

출처: Hoffmann-Lange 1999: 325, 포츠담 엘리트 연구

표 13 | 1995년 독일 엘리트 중 연방/서독/동독의 활동 지역에 따른 동서독인 비율

| 출신 | 정치 연방의회 | 정치(서) 주의회 | 정치(동) 주의회 | 연방 행정 | (서)지방 행정 | (동)지방 행정 | (서)기타 엘리트 | (동)기타 엘리트 |
|----|---------|-----------|-----------|-------|----------|----------|-----------|-----------|
| 서독 | 77.7 | 98.4 | 13.1 | 98.4 | 100.0 | 87.3 | 98.6 | 46.8 |
| 동독 | 22.3 | 1.6 | 85.9 | 1.6 | 0 | 12.7 | 1.4 | 53.2 |

출처: Hoffmann-Lange 1999: 326, 포츠담 엘리트 연구

계층에서의 높은 구서독 지역 주민 비율.

1989년 전까지 동독에 살았던 인물들 중 엘리트 직책을 맡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표 12). 전 독일 대비 동독 주민들의 비율이 약 21%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비율은 확실히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비율은 엘리트 분야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구동독 지역 출신의 엘리트 비율이 낮은 분야는 대기업과 행정, 사법 분야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 엘리트 중 동독인의 비율은 32.1%로 동독 주민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 낮은 것이 아니라,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비율은 구동독 지역 연방 주들에 지역 엘리트 직책이 과도하게 할당된 데 기인한다.

엘리트 직책을 맡은 이들을 근무지의 지역적 상황에 따라 구분해 보면, 동서독 엘리트들의 불균형은 더욱 분명해진다. 정치 엘리트 직을 차지하고 있는 동독인(신연방주 주민

을 뜻함.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의 동독 또는 동독 주민을 구별해야 하는데 필자는 특별히 이를 구별하여 지칭하고 있지 않음 -역주)의 비율은 전 국가적 차원에서 22.3%로 전 국민 중 동독인의 비율과 유사하며, 더 높기까지 하다(표 13). 상징적으로 중요한 현재의 장관직으로 포커스를 좁혀 살펴보면,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동독 정치 엘리트들이 차지하는 낮은 비율이 명확히 드러난다. 동독인 연방 장관 비율은 단 한번도 13%를 넘어선 적이 없으며, 1990년 이래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 메르켈 총리의 2기 내각에서는 5.9%(1명)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면, 동독 출신 최초의 연방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특별한 예외적 케이스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엘리트 분야에서도 서독 출신의 인물들은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다. 특히 이들이 신연방주 지역의 행정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87.3%에 달한다. 반대로 동독인들이 서독 주(州)의 엘리트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엘리트 채용에 있어서는 명확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서독인은 동독에서도 엘리트 직책으로의 승진이 가능한 데 반해, 동독인의 경우 극히 일부만이 서독 엘리트 직책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국민들이 주로 동독에서 서독 지역으로 이주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서독인들이 신연방주 지역의 엘리트 직을 점령하고 있는 이유는 구동독 지역의 제도를 개혁하거나,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사법 및 조직적 전문 능력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나 군대, 부처 행정, 사법 및 대기업과 같은 분야들에서는 해당 분야에 요구되는 지식은 1989년까지 서독 지역에서만 습득할 수 있었다. 동독 간부진들이 기관별로 특수하게 습득한 전문 지식은 체제 전환으로 인해 대부분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서독 지역에는 동독 지역으로의 발령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근무지 변경은 금전적 개선("보조금 다발, Buschzulage")과 승진을 제공하였다. 때문에 구엘리트 세력의 퇴진을 통해 발생한 엘리트 진공 상태는 "차단된 세대"들을 통해서만이 아닌, 서독에서의 엘리트 이전을 통해서도 채워졌다. 때문에 통일은 -그리고 1990년 3월 이후 그것에 대한 기대는- 동독의 구엘리트 세력과 그들의 전문 능력의 재활용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기타 탈공산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엘리트 단절이 강도 높게 성취될 수 있었다(Welzel 1997: 214).

뿐만 아니라, 직급이 높아질수록 서독 주민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엘리트 분야에 해당되고 있다. 중하위 관리자 급에 있어 서독 엘리트들의 지배는 훨씬 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erlien 1997: 396). 분야별로 특징적인 차이들은 각각의 직무 프로필과 엘리트 선발 메커니즘을 통해 근본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서독인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 분야인 정치 분야에서는 그 어떤 특별한 정치적 연수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적 전문 지식”은 실제적인 근무를 통해(on the job) 습득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치적인 관직을 맡게 되는 과정은 상부의 임명을 통해서가 아닌, 지역적 배경과 그로 인한 지역 시민들과의 친분, 그리고 동독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대표해 주는 것이 선거전의 장점으로 작용하는 일반적인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체제 특수적인 교육과 뚜렷한 진급 규정(행정, 사법, 군사, 경제)이 나타나는 분야들에서는 동독 출신이라는 사실이 하나의 단점을 뜻하는 데 반해, 정치 분야에서 있어서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정치 엘리트 중 서독인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은, 특히 서독인들이 주로 내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혹은 시장과 두 개의 주 총리직(작센과 튀링엔을 의미, 역주)과 같은 매우 주목받고 중심적인 엘리트 직위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결코 수치 그대로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나 이러한 두드러짐은 통일 직후 초기 몇 년간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 “식민지화”라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만들어 내는 원인 중 하나였다. 식민지화라는 개념은 서독이라는 외부 세력에 의해 결정을 당하는 감정을 뜻한다. 이러한 감정은 동독의 주요 엘리트 관직에 포진해 있는 서독인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대기업을 비롯해 일부 중소기업의 자본가와 경영 본부가 서독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식민지화의 감정은 서독인들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의 통합마저 어렵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6. 통일 후 20년 - 통합된 엘리트로서의 의회 엘리트?

6.1 구조적 발전: 출신과 엘리트로 가는 길

1989년 이후의 전 사회의(부분-)엘리트들의 변화상을 대상으로 한 거의 모든 분석 자료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를 포괄하고 있다. 체제 전환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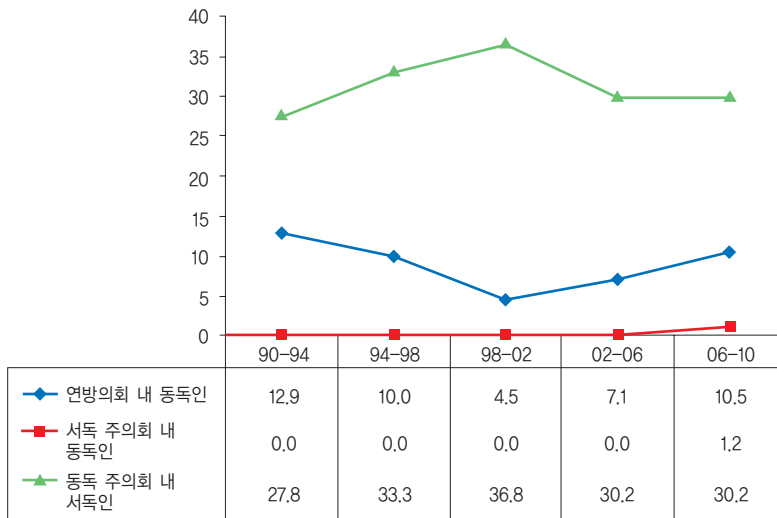
연구와 1990년대 중반에 인식될 수 있었던 유형들이 고착화되었는지, 아니면 사라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기를 포괄하는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한다.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분석은 1990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시기를 포괄하는 정치 엘리트 세부 집단의 발전상을 토대로 할 예정이다: 여기서 뜻하는 정치 엘리트 세부 집단은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와 독일 주 의회(Landesparlamente)의 의원을 뜻한다. 이러한 정치 엘리트 부분 집단은 전체적인 정치 엘리트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부분의 독일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경력을 수행해 나가며, 언젠가는 국회의원직을 맡게 되며, 의원직은 또 다른 엘리트 직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심 토대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항목별로는 연방 및 주 장관에 대한 정보가 추가될 예정이다.

지역 대의제에서 지속되는 높은 불균형

전 독일적으로뿐만 아니라, 구동독 지역의 정치 엘리트 직에서 나타나는 서독인들의 높은 비율과 동독인들의 낮은 비율은 체제 전환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변함

그래프 3 | 장관들의 지역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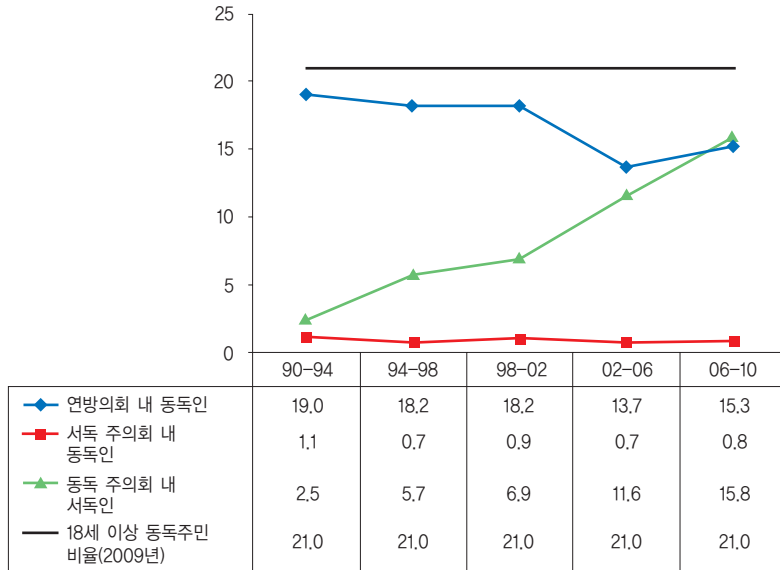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90/A3

그래프 4 | 국회의원들의 지역 이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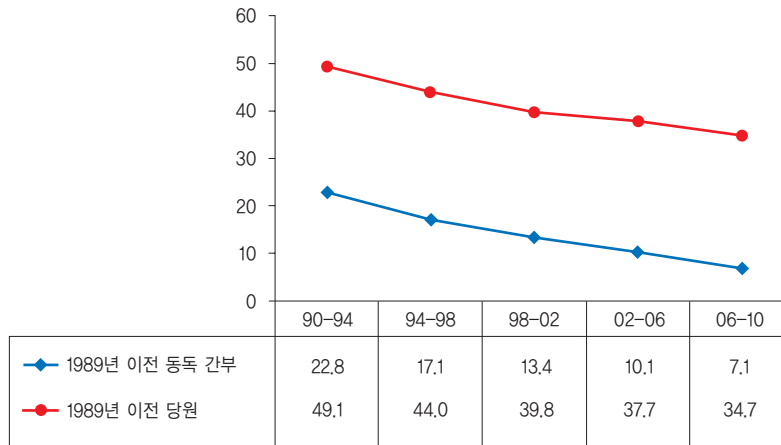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90/A3

없이 유지되고 있다. 동독인들이 연방 내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변함없이 낮은 데 비해, 구동독 지역의 장관 중 약 1/3이 여전히 서독 출신이며, 이러한 수치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반대로 2009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동독 출신의 여성 장관이 서독 지역의 내각에 최초이자 유일하게 임명되었다(그래프 3).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그래프 4). 전 독일 연방 의회에 서조차 동독인들의 비율은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많은 지역구에서 서독 출신의 인물들이 입후보에 성공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동독 지역의 주 의회에서는 서독인들의 비율이 통일 후 2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비율에서도 하나의 정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서독으로부터의 지역적 출신이 점차 동독에서의 정치 경력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서독 지역의 주 의회에서 동독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은 동독 출신이라는 점이 여전히 서독 지역에서의 정치 경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래프 5 | 1989년 이전 동독 내 정당 가입 혹은 정치적 관직/의원직을 수행한 의원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80/A3. 정치적 관직/의원직: 시 평의회, 읍-면 의회, 시의회, 군 평의회, 군 의회, 시장, 지방 평의회, 지방 의회, 지방 의회, 인민 의회, (사통당) 지방 행정부 서기관, 장관 및 차관. 동독 과거 정권의 직책에 속한 최종 기일은 지방 차원의 직책의 경우 1990년 5월, 중앙 차원의 직책의 경우 1990년 3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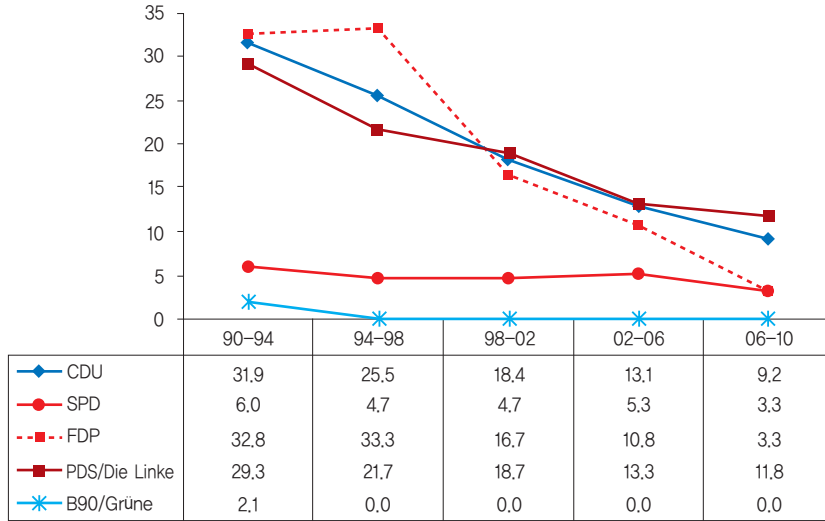
정치적 과거 I: 동독 엘리트 혹은 기타 동독 간부진의 복귀는 없다

1990년대 중반 구동독 지역 엘리트들은 과거 동독에서 엘리트 지위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사통당이나 위성정당의 당원이었으며, 이들 중 꽤 많은 이들이 하층 하위 엘리트 직책을 수행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의회 엘리트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유형을 입증해 주고 있다. 최초의 주 의회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과 최초의 전 독일 연방의회(1990~1994) 의원들의 약 절반은 이미 1989년 이전에 당원이었다(그래프 5). 그러나 이들 중 약 20%만이 동독에서 정치적 관직이나 의원직을 수행하였다.²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독 간부진 대부분은 지역 차원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의

2 이러한 직책들로는 시 평의회(Rat der Stadt), 게마인테 사무소(Gemeindevertretung), 시 의회(Stadtverordnetenversammlung), 크라이스 평의회(Rat des Kreises), 크라이스 의회(Kreisrat), 시장(Bürgermeister), 베치르크 의회(Bezirksverordnetenversammlung), 전국 베치르크 대회(Bezirkstag), 인민회의(Volkskammer), 사통당 베치르크 서기(Bezirkssekretär (SED)), 장관 혹은 차관 등을 꼽을 수 있다. 구동독 과거 정권의 직책에 속한 최종 기일은 지방 차원의 직책의 경우 1990년 5월, 중앙 차원의 직책의 경우 1990년 3월 말이다.

그래프 6 | 1989년 이전 동독에서 정치적 관직/의원직을 수행한 의원

(단위: 정당 별, %)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90/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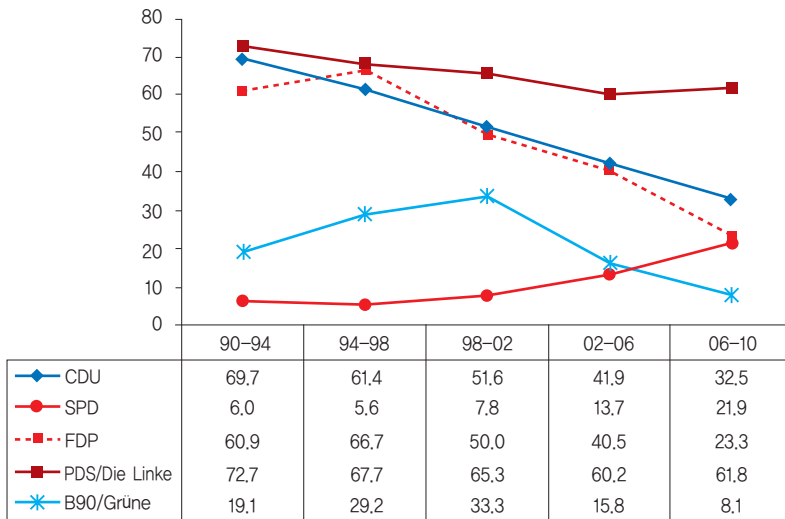
정치 엘리트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독 정권과 연관된 인물의 비율은 의회 회기가 순차적으로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동독에서 정치적 관직이나 의원직을 수행한 사람들은 현재 정치적 의회 엘리트들 중에서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또 다른 이유로는 1989년 이전에 공개적으로 주목받는 간부직을 수행한 인물의 경우, 점차 연령의 문제로 인해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1989년 이전에 정당에 소속된 인물의 비율은 1990년 약 절반에 이르렀던 데 반해, 2010년에는 약 1/3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두 가지 발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독에서 그 어떤 직책도 맡은 경험이 없는 의원들로 구성된 정당들이 의회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정당 간 세력 관계의 어떤 변화도 반영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1989년 이전부터 존재했던 모든 정당(CDU, PDS/DIE LINKE, FDP)들에서는 애초부터 경미했던 구동독 기능 엘리트들의 비중이 또

그래프 7 | 1989년 이전 동독에서 정당에 가입한 의원

(단위: 정당 별, %)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90/A3

다시 줄어드는 현상이 목격되었다(그래프 6). 과거의 국가정당이었던 사통당 역시도 이러한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동독에서 맡았던, 공적으로 두드러진 직책이 선거전에서 단점으로 작용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1989/90년에 비로소 설립된 정당들(SPD, B90/Grüne)의 경우 설립 초기에 과거 사통당 당원들의 입당을 금지한 조항이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독 간부진의 비율이 설립 이후부터 2010년까지 6%를 상회한 적이 없었다.

반대로 1989년 이전에 사통당 혹은 위성정당의 당원이었던 인물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위성정당의 후속 정당들인 동독의 기민련(CDU)과 자민당(FDP) 내에서는 동독 시절에 위성정당에 가입했던 당원의 비율이 1990년 60%가 넘었던 데 비해, 2010년에는 1/3로 줄어들었다. 사통당의 후속 정당인 민사당/좌파당(PDS/DIE LINKE)의 경우 이러한 비율은 경미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도 60%가 넘는 수준이었다. 1989년에야 정당으로 설립된 동독 사민당(SPD)의 경우 구정당 당원의

비율은 1990년대 말 약간의 상승세까지 보였다. 때문에 동독의 의회 엘리트 중 구정당 당원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의회 내에서 기민련 의석수가 많았던 데 기인한다.

정치적 과거 II: 과도기 정치인들의 감소세

구동독 지역의 신진 의회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첫 경험을 동독에서만 아니라, 변혁기에도 쌓을 수 있었다. 특히 1990년 3월의 인민회의 선거와, 5월의 주 의회 선거에서는 상당수의 동독 간부직이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되었다.³ 그에 더해 1989년 가을부터는 모든 정치 분야에서 구정권과 반체제 집단의 대표들이 서로 협상을 진행한 원탁회의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직책들의 새로운 주인들은 과도기 엘리트(Transitionselite)라고도 불린다. 통일로 가는 과도기를 이끌어 낸 주역들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물들이 지역적 차원의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인 과도기 정치인(Transitionsolitiker)으로 이들을 칭하고자 한다. 어찌되었건 간에 과도기 정치인들의 1/4은 정치적 관직이나 의원으로서 이미 동독에서부터 경험을 쌓은 바 있다. 그러나 1989년 가을부터 1990년 10월까지의 기간은 이들 과도기 정치인들의 대부분에게 정치적 책임이 처음으로 부여된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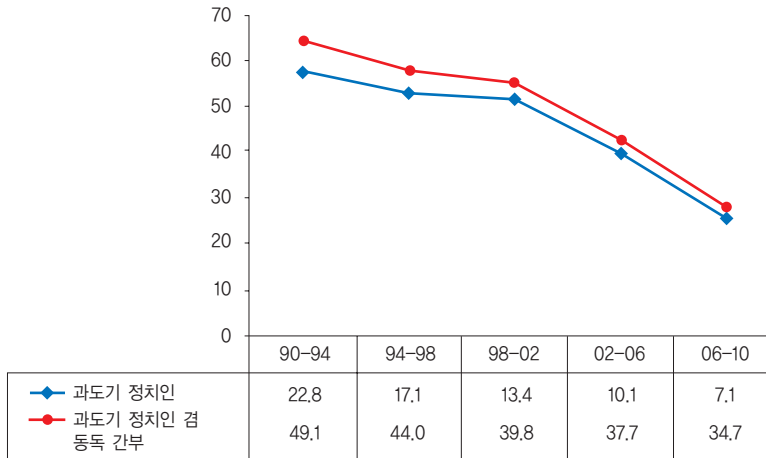
통일 직후 새로이 선출된 구동독 지역 의회 엘리트 중 약 60%가 과도기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8). 의회의 회기가 점차 지나면서 이러한 비율은 일차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머물게 된다. 그러나 2000년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비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게 된다. 이를 통해 1990년대의 구동독 신진 엘리트 중 절반이 체제 변환기에 주로 하위 수준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있어 개별 정당들은 차이가 거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세의 원인은 정당 간 세력 관계의 변화 때문이 아닌, 1990년대 말부터 과도기 정치인들의 비중이 모든 정당들에서 감소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그래프 9).

요약하자면, 동독 간부직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매우 미약하게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로 하위 직책을 수행한 인물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신연방주 엘리트들의 연속성이나 시간적으로 지연된 복귀(통일 이후 재등장)가 나타났다고 전혀 말할 수 없다. 의

3 충원된 직책에 관한 내용은 각주 2 참조. 추가로 원탁회의에서의 협력이 고려되었다.

그래프 8 | 의회엘리트 중 과도기 정치인 및 과도기 정치인 겸 동독 간부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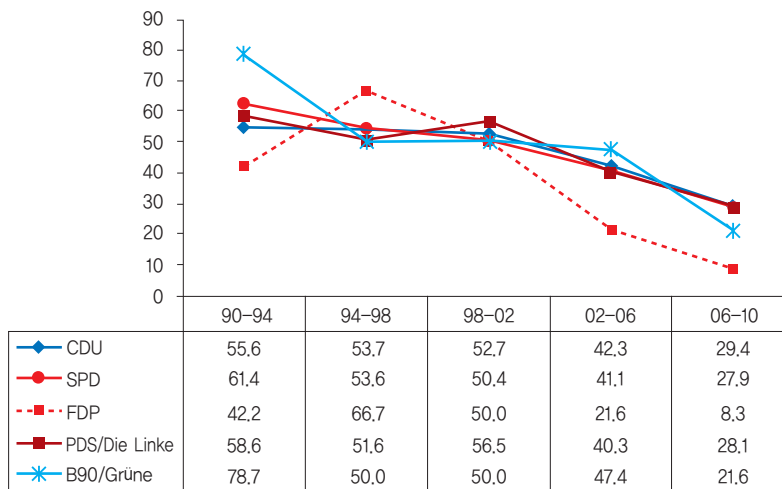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90/A3; 과도기 정치인: 직책에 관한 정보는 그래프 5를 참조, 추가로 원탁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다. 지방 차원의 최종 기일은 1990년 5월 이후, 중앙 차원의 최종 기일은 1990년 3월까지.

그래프 9 | 의원 중 정당 별 과도기 정치인 비율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90/A3

회 엘리트들의 대부분은 오랜 기간 1989/90년의 전환기에 자신들의 첫 정치적 경험을 쌓은 과도기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비율은 첫 번째 의회 회기를 제외하고는 의회 엘리트들의 절반을 상회한 적이 없었다. 서독 정치 체제의 인수에 따라 동독 시절과 체제 전환기 모두에서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들의 전체적인 정치적 경력을 전환기 이후 시작한 인물들 역시 의회 엘리트가 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인물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통일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독일의 의회 엘리트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그래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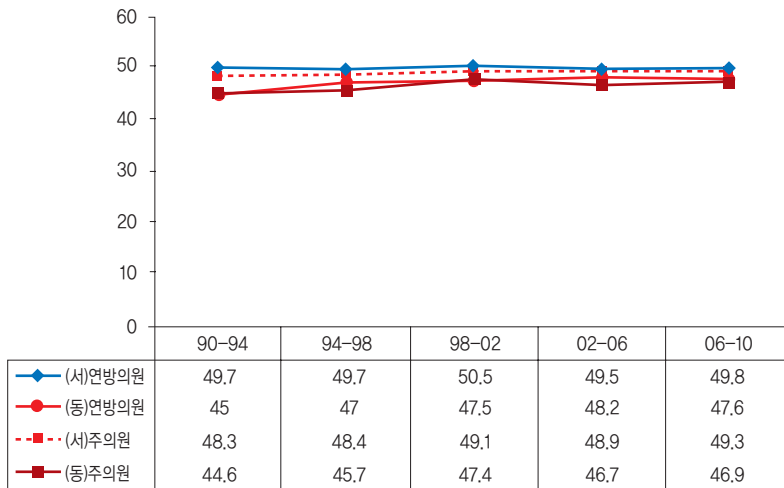
나누어진 출신배경과 의회 엘리트로 가는 유사한 길

통일 이후 지난 20년은 지역적 불균형과 서독인들의 장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는 신연방주 의회 엘리트들을 양성해 냈다. 때문에 동독의 신진 의회 엘리트들이 누구이고, 이들이 서독의 동료들과 차이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떠한 관점에서 차이를 나타내는지, 또한 동서독 의회 엘리트들이 하나의 통합된 엘리트층을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제도적 맥락의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이후의 상론에서는 항상 국가적 수준과 주 의회를 구분하기로 한다. 독일의 연방의회에서는 동서독 의회 엘리트들이 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 반해, 주 의회에서는 서독 출신 엘리트의 유입 사례를 제외하면 동일한 지역 출신의 엘리트들이 일하게 된다. 때문에 전독일적 기관인 연방의회에서는 신속한 평준화 효과가 기대되는 데 반해, 주 의회에서는 경우에 따라 지역적 특색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서독 의회 엘리트들의 평균 연령은 연방의회의 경우 약 50세이며, 주 의회의 경우 약 48세이다. 덧붙이자면, 주 의회의 경우 1990년부터 평균 연령이 약 1세 높아졌다(그래프 10). 통일 직후인 1990년대 초 동독의 의회 엘리트들은 연방의회와 주 의회에서 45세와 44.6세를 기록하여, 서독의 동료들보다 약 4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에는 신진 세력으로서 의회 의원직을 맡게 되었으며, 일부 모험적인 상황 하에 입후보를 하게 된 인물들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독에서와는 달리 당시에는 공천을 받기 위해 의회 입성 전 단계의 정치적 지위에서 장기간 대기하며 정치적 능력을 입증 받아야 하는 전형적인 필수 과정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구동독 지역 의회 엘리트들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기는 했으나,

그래프 10 | 의원의 평균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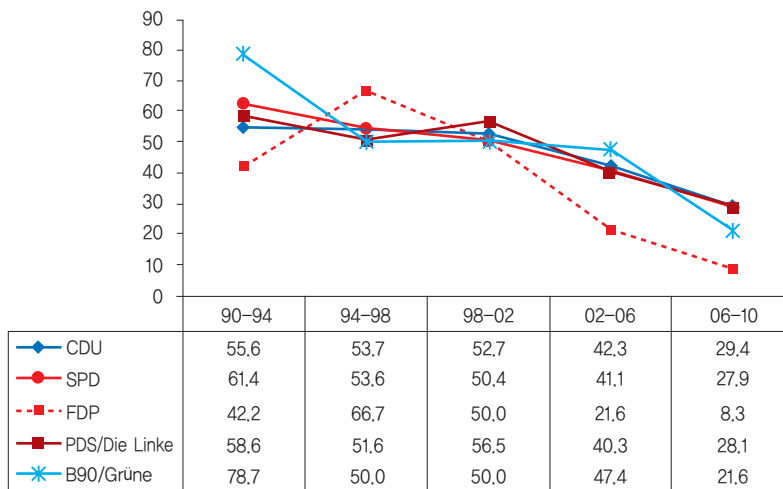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90/A3

그래프 11 | 의원 중 대학 (종합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비율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90/A3

연방의회와 주 의회 모두에서 서독의 평균 연령과 비교해 여전히 2세가 낮다. 이는 동독 지역에서의 의회 진입 대기 기간이 지속적으로 짧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 기간의 차이는 그리 심각하지 않아, 세대나 경험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미 1995년의 포츠담 엘리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동서독 엘리트들의 높은 학력은 전문대학 및 일반 대학의 졸업생 비율을 살펴보면, 의회 엘리트들에게서도 거듭 확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래프 11). 대학 졸업생 비율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 동독의 의회 엘리트들의 공식적 학력은 서독 의회 엘리트들에 비해 높기까지 했다. 연방의회와 주 의회 모두에서 그 방향이 상이하기는 하나, 동서독 의회 엘리트들의 학력은 평준화 되었다: 서독 의회 엘리트들의 학력은 연방의회에서 동독 의회 엘리트들의 수준으로 높아진 반면, 동독 주 의회 의원들의 학력은 낮아져, 서독 주 의회 의원들과 비슷한 수준을 이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서독 의회 엘리트들은 과반수 이상이 높은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쪽 모두 유사한 교육 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통합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유사한 분석적 문제 해결 능력을 획득하였다.

통일 직후 포츠담 엘리트 연구는 동서독 엘리트들의 중요한 차이로 동독 엘리트들 사이에서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의 지식인층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1990년 이후 선발된 의원들의 발전상을 살펴보면,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의 우세는 과도기적 현상을 의미하며, 체제 전환의 상황으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의 전공자들은 이데올로기와의 거리가 먼 전공 분야를 통해 과거의 동독 정권과 거리를 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장을 소지한 의회 엘리트 중 자연과학-공학 분야의 졸업장을 지닌 비율은 1990년 약 60%에서 2010년 약 1/3로 감소한다(표 14). 동 기간 법학을 전공한 자들의 비율은 5%에서 14.7%로 증가하였으며, 경제학을 전공한 자들의 비율은 약 8%에서 12%로, 인문학 및 사회학을 전공한 자들의 비율은 21.6%에서 35.6%로 증가했다. 반대로 서독에서의 전공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의 신진 엘리트들은 점차적으로 서독 지역의 동료들과 유사한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공 분야들은 제도적 구조로 인해 엘리트 지위로 오를 수 있는 이점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동서독의 제도적 구조가 평준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동독의 역사와 체

표 14 | 기간별 의회 엘리트의 대학 전공 분야별 비율

(단위: %)

| | | 90~94 | 94~98 | 98~02 | 02~06 | 06~10 |
|----|---------------|-------|-------|-------|-------|-------|
| 서독 | 신학 | 0.5 | 0.8 | 0.7 | 0.8 | 1.3 |
| | 법학 | 27.3 | 24.8 | 25.2 | 26.0 | 27.5 |
| | 경제학 | 16.6 | 17.2 | 17.7 | 19.7 | 18.7 |
| | 자연과학, 공학, 의학 | 15.1 | 15.1 | 14.0 | 14.3 | 14.1 |
| | 사회 및 인문학, 교육학 | 38.9 | 40.1 | 41.1 | 36.9 | 35.7 |
| | 기타 | 1.6 | 2.1 | 1.3 | 2.3 | 2.6 |
| 동독 | 신학 | 4.2 | 4.5 | 3.7 | 3.6 | 2.5 |
| | 법학 | 5.5 | 5.2 | 7.1 | 8.8 | 14.7 |
| | 경제학 | 7.8 | 9.7 | 9.2 | 11.7 | 12.1 |
| | 자연과학, 공학, 의학 | 59.9 | 52.3 | 46.5 | 38.3 | 33.5 |
| | 사회 및 인문학, 교육학 | 21.6 | 27.8 | 33.2 | 36.8 | 35.6 |
| | 기타 | 1.0 | 0.5 | 0.4 | 0.8 | 1.6 |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80/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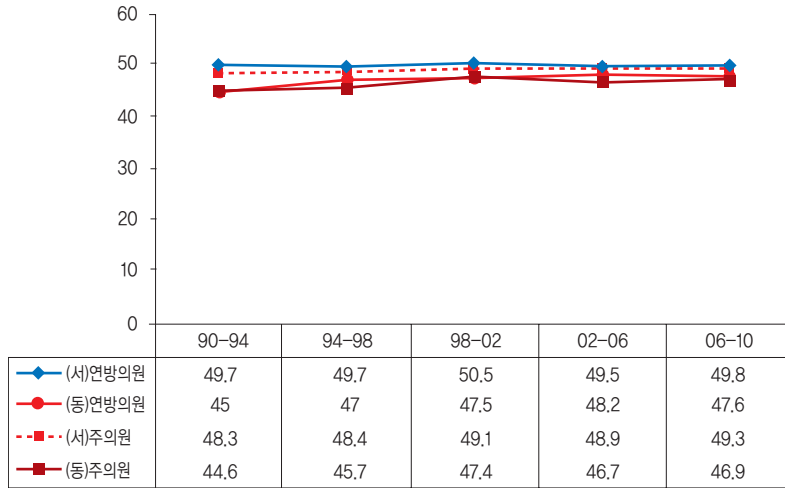
제 전환의 상황이 수반하는 차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구동독지역 의회 엘리트들은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영학이나 법학 분야에서보다는 공학 분야의 지식인층에서 더 빈번히 충원되고 있다. 반면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전공자의 비율에 있어서 동서독의 차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대학 교육은 직업 이력의 차이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상이한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 전략을 불러 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학에서의 전공 분야가 그리 큰 중요성을 띠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줄 계획이다. 중심적인 정치적 입장은 정당 간 경쟁의 논리와 제도적 구조를 통해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치적 입장과 동서독 엘리트들의 정치적 입장 통합에 관한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의회 엘리트로 가는 길을 걸으며 거치게 되는 정치적 경력이라 할 수 있다.

서독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의회 엘리트의 대다수가 정당 내부 간부직을 비롯해 지역 및 지자체 관직이나 대의원직을 장기간에 걸쳐 맡은 후에야 채용되는 경향이 확인되

그래프 12 | 첫 의원직 이전 정당 내부 직책을 경험한 의원 엘리트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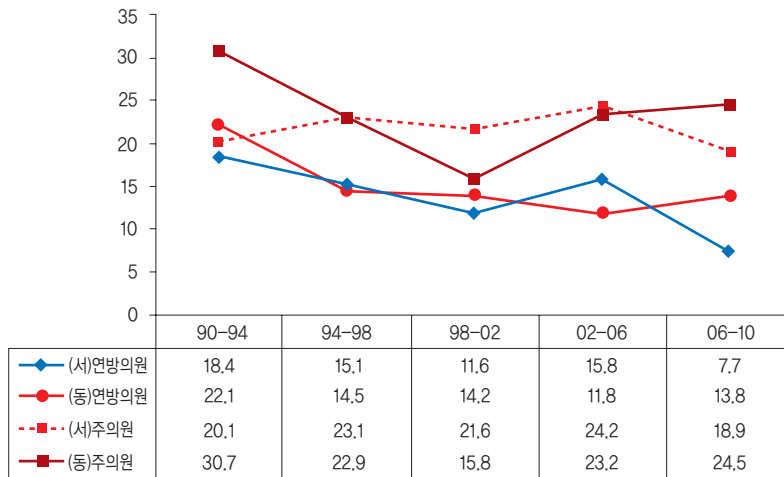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80/A3; 정당 내부 직책: 지역, 군, 지방, 연방 차원의 이사회 혹은 대표직

그래프 13 | 첫 의원직 이전 지방 관직/의원직을 경험한 의원 엘리트 비율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90/A3; 지방 관직/의원직: 시장, 지방의회, 시의회, 군의회.

어 왔다. 이러한 일명 “항소 투어(Ochsentour, 역주: 승진이 힘든 관리의 인생 경로)”는 네트워크 및 커뮤니케이션, 자기 권력 기반의 구축과 정치적 과정과 조직의 흐름에 관한 학습, 이익 집단 간 상이한 이해 조정애 필요한 정치 능력 훈련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유사한 조직과 제도를 통해 함께 걸어간 길은 유사한 문제 인식과 해결 전략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의회 엘리트들의 초당적인 통합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 된다.

동독의 의회 엘리트들은 이러한 유형에 광범위하게 적응하였다. 당 내부 간부진의 비율은 연방의회와 주 의회 모두에서 1990년 약 40%에서 20년 만에 약 60%로 상승했다(그래픽 12). 이로 인해 동서독 지역 모두에서 의회 엘리트들이 주 의회에서 당 내부적으로 사전 경험을 쌓은 비율이 같아졌으며, 연방의회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남아 있을 뿐이다. 지자체나 지역에서 사전 경험⁴을 쌓은 비율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전체 조사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래픽 13).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연방의회의 의회 엘리트들이 일반적으로 지자체 및 지역적 사전 경험을 덜 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있지만, 눈에 띄는 동서독의 차이는 1990년대 초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지방 의회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독 의회 엘리트들은 지자체 및 지역 부문의 직책에서 경험을 덜 쌓고 있어 서독 의회 엘리트들과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 입후보자의 공천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당 내부적 경험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입후보자가 속한 당의 결정이다. 때문에 의회 엘리트로 가는 경력은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유사한 엘리트층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공고화 경향은 이미 언급한, 여타 탈공산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연방 및 주 의회 차원에서 서독의 수준으로 평준화된, 동독의 엘리트 순환 규모에 있어 더욱 분명해 진다(4.4 비교: 서독의 엘리트 연속성 참조). 왜냐면 의회 엘리트들이 선거 때마다 극과 극으로 교체되지 않는 것은 의원 엘리트들의 초당적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4 시간적 비교를 가능케 하기 위해, 통일 후에도 존속하는 지자체와 지역적 직책만을 사전 경험으로 분류했다. 때문에 이러한 직책의 비율은 과도기 정치인들의 비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6.2 정치적 입장의 유형: 전 독일적 의회 엘리트로 가는 길목에서

변혁기와 그 이후에 서독의 정치 엘리트들이 동독 지역으로 가는 경향이 심화되기는 하였지만, 신연방주 지역의 정치 엘리트는 동독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인물들을 통해 우선적으로 채워졌다. 서독에서 온 수많은 엘리트들과 함께 제도와 구조들 역시 과거의 동독으로 수입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면, 서독의 제도적이고 인적인 이중의 영향이 신연방주들의 정치적 현실을 결정적으로 각인했으며 여전히 각인하고 있다는 추정 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독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들만의 “동독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 지역의 의원들은 서독 지역의 동료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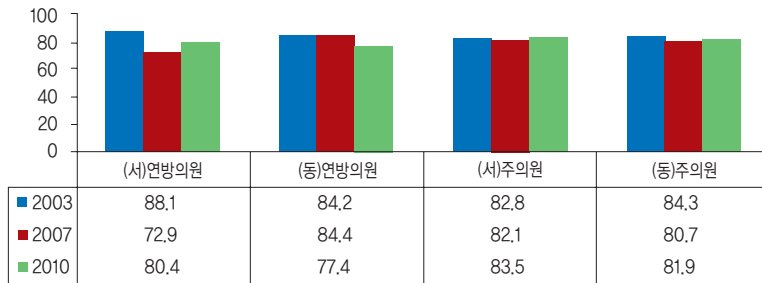
동과 서 모두에서 정치는 하나의 직업이다

독일의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묘사에서 의회 엘리트들이 직업 정치인들의 유형이라는 강한 특징을 가졌다는 언급이 빠지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직업 정치인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의원으로서의 경력을 향해 목표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특정 경력 단계들이다. 이러한 특정 경력 단계로는 의회 입성이라는 목표에 유리한 소속 당에서의 특정 정치적 직책을 꼽을 수 있다.

의원직이 진정한 직업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연방의회 의원들의 대부분이 긍정했다. 이러한 비율은 77~88%를 오가지만, 동서독 의원들 사이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동서독의 유사성은 주 의회의 의원들에게 있어 더욱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주 의회에서는 의원 중 80% 이상이 의원직이 진정한 직업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그래프 14). 이러한 의견은 직업적 활동과 의원직을 겸하는 데 대한 의원들의 태도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동독인 연방의회 의원 대부분은(80~85%) 이를 반대한 데 반해, 이를 찬성하는 자들의 비율은 서독인 연방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다(23~32%). 그러나 동서독 의원들 사이에서 나타난 이러한 의견차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좁혀졌다. 그로 인해 이에 찬성하는 동독 의원들의 비율은 높아지고, 반대로 이에 찬성하는 서독 의원들의 비율은 급격히 낮아졌다. 2010년을 기준으로 그 격차는 3%대로 줄어들게 된다. 2003년부터 2010년 사이에 동독 주 의회 의원들 중 이에 찬성하는 자들의

그래프 14 | 의원직이 하나의 직업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80/A3; 질문문: 다음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관한 평가이다.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당신은 의원직이 하나의 직업이라는 데 매우 동의하는가? 꽤 동의하는가? 별로 동의하지 않는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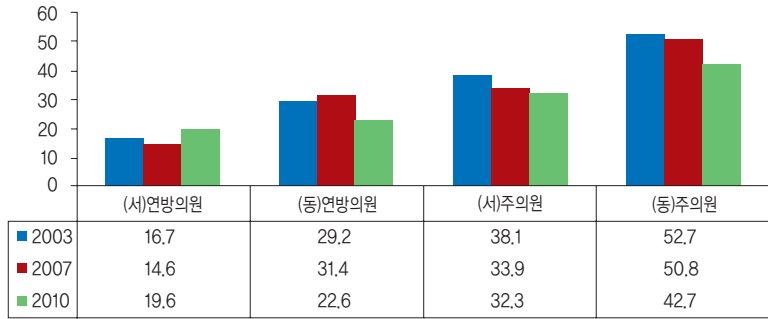
* “꽤 동의하는가?”와 “매우 동의하는가?”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통합되었다.

비율은 38%에서 32%로 줄어들었다. 서독 의원들 중 이에 찬성하는 자들의 비율 변화는 훨씬 더 역동적이었다: 이에 찬성하는 이들의 비율은 52%에서 42%로 감소했다(그래프 15).

의원이 되기 전 이미 정치 분야와 가까운 직업을 가졌던 의원들의 비율은 1990년 이후 동서독 모두에서 증가했다(그래프 16). 정치 분야와 가까운 직업으로는 관청의 정치 담당자나 노조 간부 등을 꼽을 수 있다. 동독 지역에서는 정치적 의회 엘리트 경력의 전문화 경향이 나타났던 것이 분명하다. 의원직에 오르기 전에 정치와 가까운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했다; 연방의회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동독 지역의 주 의회에서 서보다 훨씬 더 높다. 2000년에는 동독 의원들 중 직업 정치인의 비율은 서독 의원들보다 높았다. 이러한 추세는 이후 그 변화의 역동성이 약해지기는 하였으나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의 상이한 강도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의원들의 방향은 동일하다: 실제적으로 의회에서는 첫 번째 의원직 이전에 정치와 가까운 분야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이 늘고 있다. 이는 정치의 직업화라는 경향이 예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래프 15 | 의원이 의원직과 동시에 또 다른 직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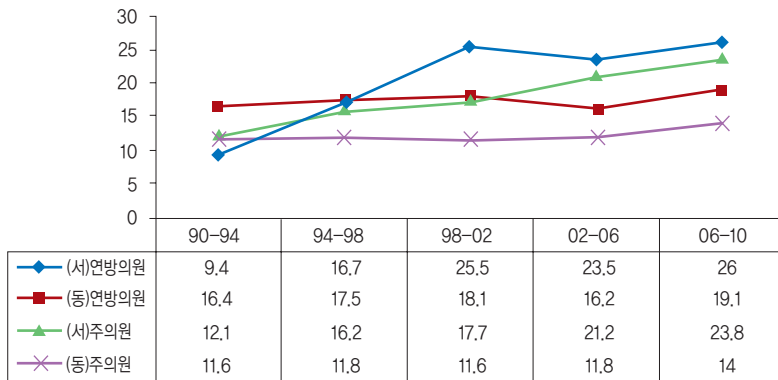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80/A3; 질의문: 다음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관한 평가이다.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당신은 의원이 의원직과 동시에 또 다른 직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매우 동의하는가? 꽤 동의하는가? 별로 동의하지 않는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가?

* “꽤 동의하는가?”와 “매우 동의하는가?”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통합되었다.

그래프 16 | 첫 의원직 이전 정치 분야와 가까운 직업을 가졌던 의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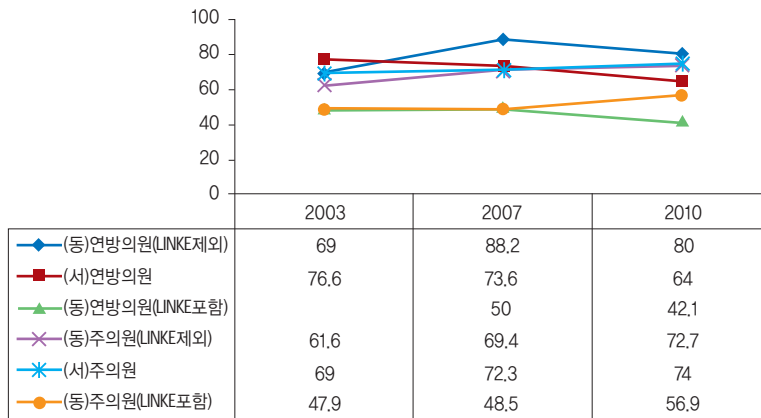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90/A3;

* “정치 분야와 가까운 직업”으로는 관청의 정치 담당자 혹은 노조 간부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래프 17 | 정치적 계급의식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80/A3; 질문문: “다른 당이나 당파에 속한 의원들과도 소속의식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전혀 느끼지 못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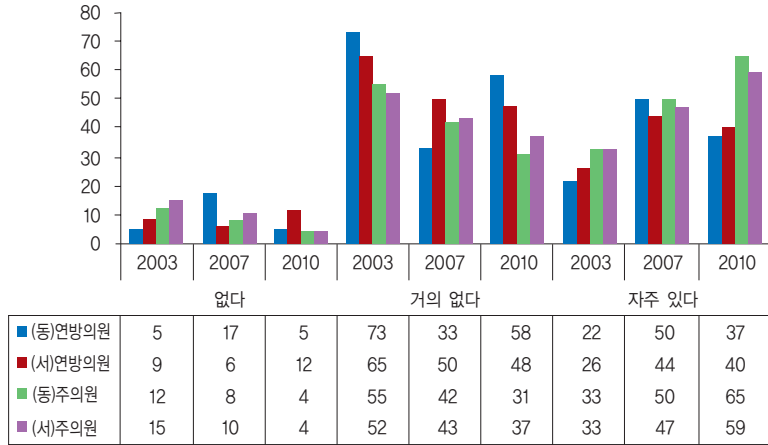
정당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 - 예외로서의 좌파당(die Linke)

자신이 공동의 정치 계급에 속한다는 데 찬성하는 의원들의 비율은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이에 대한 좌파당 소속 의원들의 찬성 비율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동독과 서독 주 의회의 의원들 간에 나타난 유사성이다. 연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관한 찬성률이 엇갈리는 데 반해, 동서독 주 의회 의원들의 찬성률은 구체적인 비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2007년부터 동일한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 최소한 동독 지역의 주 의회에서는 좌파당이 여타 당들의 찬성률에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 좌파당 소속 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자신이 정치 계급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을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17).

의원으로서 특정 계급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의식은 의회 행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당파가 다른 의원들과 비공식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은 소수에 그쳤다 - 이러한 의원들 역시 공동 정치 계급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주 의회 차원에서의 동서독인들의 유사한 발전이 또 다시 눈에 띈다: 2003년부터 전혀 접촉을 하지 않으며, 거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줄어든 반면, 자주 접촉한다는 비율은 증가했다. 반대로 연

그래프 18 | 기타 당파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 빈번도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80/A3; 질문문: “정규 회의 이외에 다른 당파의 의원들과 정치적 조율을 위해 만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주 만나십니까, 아니면 거의 만나지 않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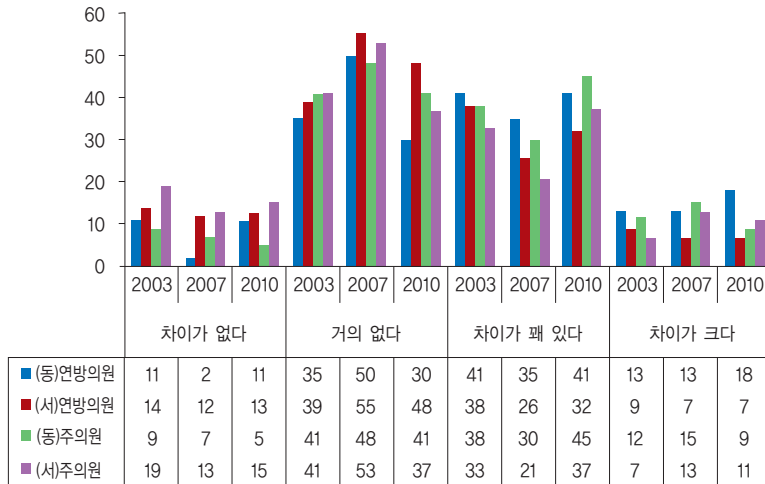
* “자주”와 “매우 자주”는 “자주”로 통합되었다.

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있어서는 변화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동서독 의원들 사이에서는 접촉 빈도에 있어 일치되는 의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은 주로 반대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의 차이는 최소한 그 경향에 있어서만은 균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주 접촉하는 비율은 2007년 동서독 의원들에게 있어 증가하다가, 2010년 다시 감소하였다(그래프 18).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차이점들과 더불어 의원들의 상호 인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의원 모두를 포괄하는 양 의회(연방 의회와 베를린 주 의회)에서는 동서독 동료들 간의 차이가 인식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명확한 경향이 도출되지 않고 있지만, 그 어떤 차이도 인식하지 못하는 층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현재도 그렇다. 약간의 혹은 상당한 차이를 느낀다는 층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0년 더욱 강화되어 “상당한 차이”쪽으로 옮겨 갔다. “큰 차이”를 느낀다는 층은 동독 연방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데 반해, 서독 연방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줄어들고 있다(그래프 19).

그래프 19 | 동서독 의원 간 인식 차이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80/A3; 질문문: “의회 내 구동독 및 구서독 의원을 떠올려 보면, 차이가 크거나 꽤 있습니까, 아니면 동서독 의원 간에서 차이가 거의 혹은 전혀 없습니까?”

* 해당 설문 조사는 연방의회 및 베를린 지방의회를 대상으로만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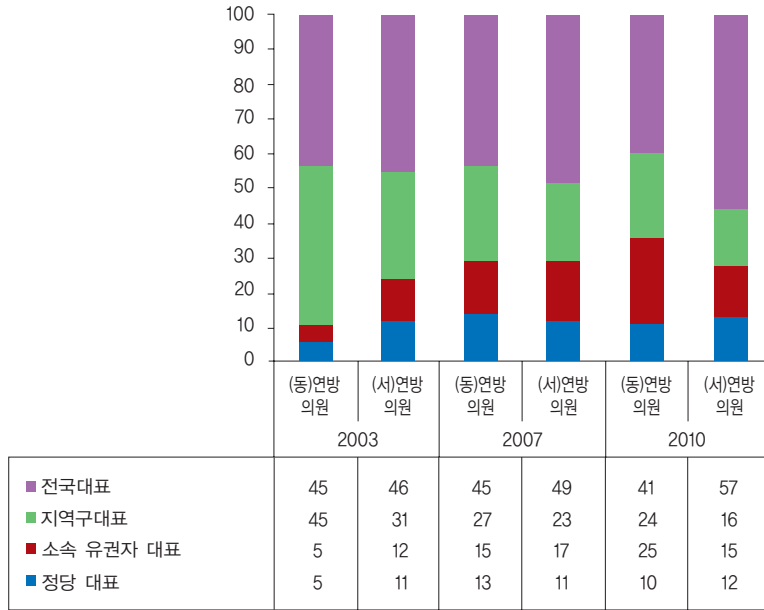
대의제 이해의 접근과 정치 목표에서의 통일성

연방의회 의원들의 대의제에 관한 견해에서 나타나는 차이들은 일부 심각하나, 전체적으로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서독 의원들의 경우 전 국가를 대표한다는 견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동독 의원들의 경우 이러한 견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소속 선거구를 대표한다는 견해에 있어서도 유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정도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동일한 방향에서 그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연방의회 수준에서 동독의 의회 엘리트들에게 소속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서독 의원들의 경우 이러한 역동성은 다소 제어를 받았다. 자신이 소속된 당을 대표하는 것은 동독 의원들보다 서독 의원들에게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래프 20).

주 의회의 경우 이러한 견해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에 관한 견해의 양 비율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독 의원들에게 소속 선거구의 유권자는 더욱

그래프 20 | 연방 의원들의 대표 인식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90/A3; 질문문: “의원으로서 자신의 임무가 소속 당의 대표, 소속 유권자의 대표, 소속 선거구의 대표, 전국 대표 중 어느 것이 가장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해지는데 반해, 서독 의원들에게 소속 정당은 그 중요성이 그리 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전 국가를 대표로 하는 문제는 동서독 의원들 모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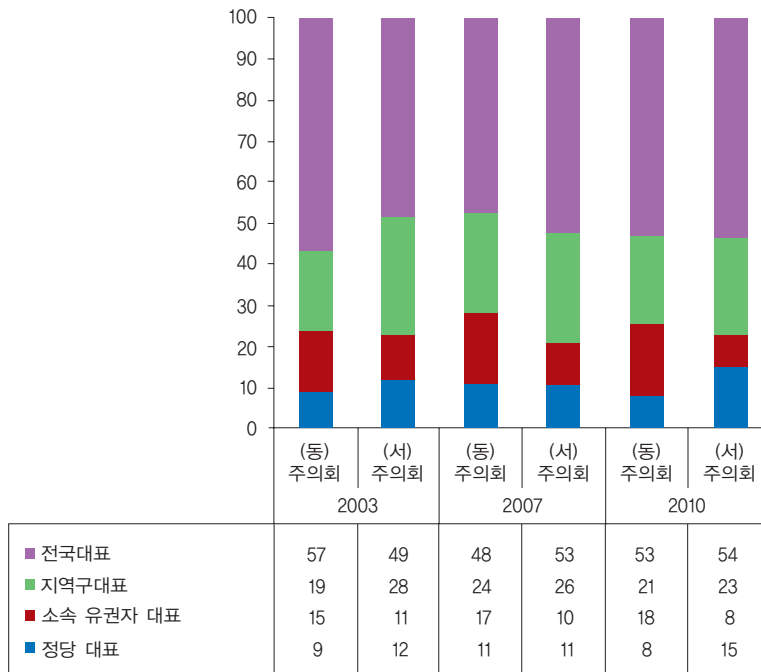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에 관한 평가에 있어 동서독은 연방의회와 주 의회 모두에 있어 거의 동일한 결과와 발전상을 보이고 있다. 강한 역동성과 발전에 있어 눈에 띄는 유사성들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를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라는 추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그래프 22, 23).

의회적 규칙들에 관한 상당한 일치 - 좌파당은 예외

소속 당파에 대한 태도는 동서독 의원들에게 있어 원칙적인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프 21 | 지방 의원들의 대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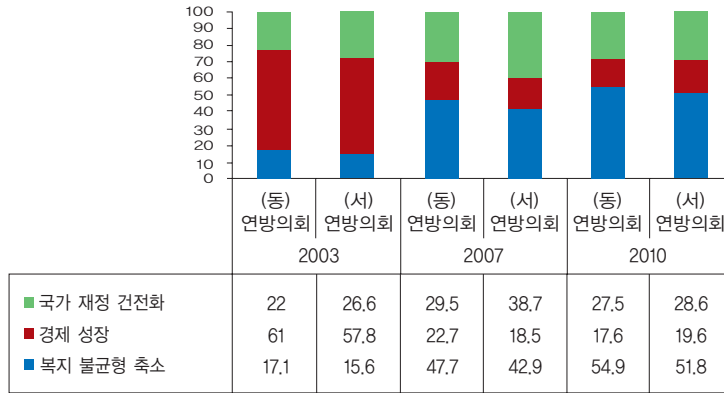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90/A3; 질문문: “의원으로서 자신의 임무가 소속 당의 대표, 소속 유권자의 대표, 소속 선거구의 대표, 전국 대표 중 어느 것이 가장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몇 측면에 있어서만 양 집단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동서독 연방의회 의원들도 당의 규율에 관해 매우 유사한 변화상을 보여왔지만, 2010년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좌파당의 의원들은 당의 규율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그래프 24). 좌파당의 의원들의 이러한 입장은 주 의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좌파당의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주 의회에서도 동서독 의원들의 유사성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그래프 25). 당의 노선에서 이탈한 투표권 행사의 빈도는 미약하나마 감소세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동서독 의원들 모두에게서, 연방 의회와 주 의회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좌파당 의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 동서독의 수준 차가 나타난다. 동독 의원들에게 있어 의회에서의 투표권의 자유는 서독 의원들에 비해 훨씬 더 강하게 나

그래프 22 | 연방 의원들이 꼽는 정치적 우선순위 3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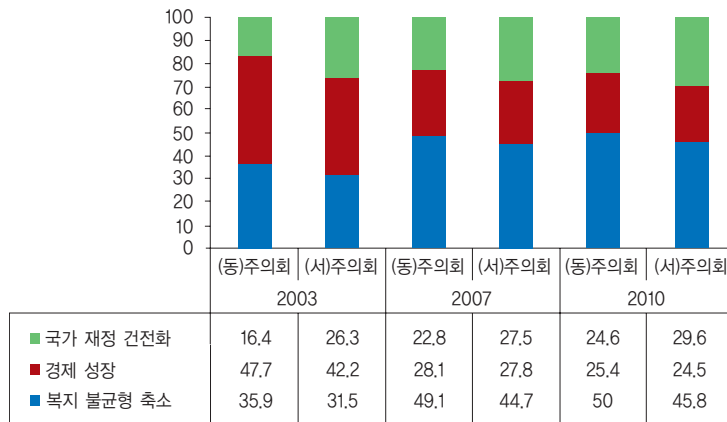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90/A3; 질문문: “국가 재정 건전화와 경제 성장, 복지 불균형 축소 중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를 평가하라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복지 불균형 축소, 경제 성장, 국가 재정 건전화?”

그래프 23 | 주의원들이 꼽는 정치적 우선순위 3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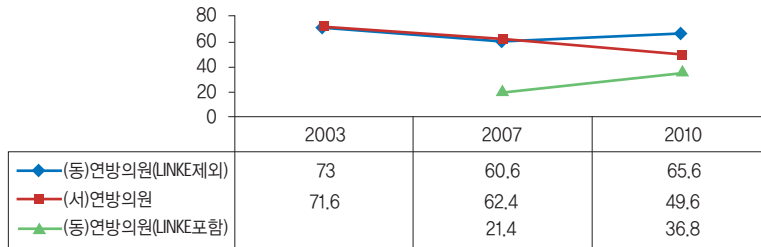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90/A3; 질문문: “국가 재정 건전화와 경제 성장, 복지 불균형 축소 중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를 평가하라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복지 불균형 축소, 경제 성장, 국가 재정 건전화?”

그래프 24 | 연방 의회에서의 당파 노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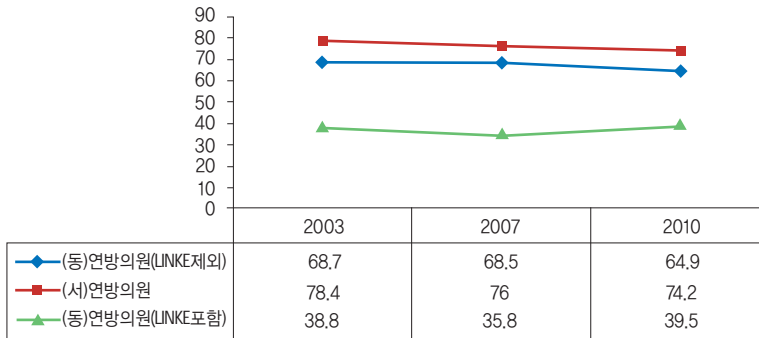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90/A3; 질문문: “중요한 투표의 경우 본인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당파 노선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 “꽤 동의한다” 와 “매우 동의한다”는 통합되었다.

그래프 25 | 주의회 내에서 당파 노선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90/A3; 질문문: “중요한 투표의 경우 본인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당파 노선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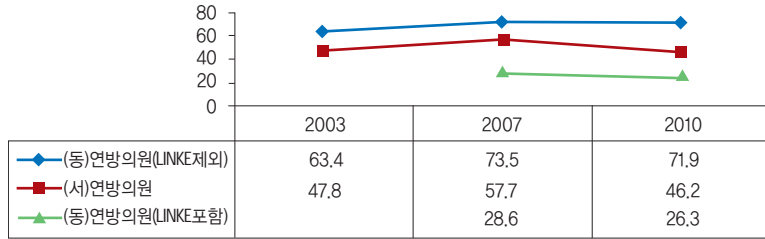
* “꽤 동의한다” 와 “매우 동의한다”는 통합되었다.

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래프 26, 27).

의원직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흥미로운 결과를 나타낸다. 의원직 활동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그 정도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안정적인

그래프 26 | 연방 의원 중 당파 노선에서 벗어난 투표권 행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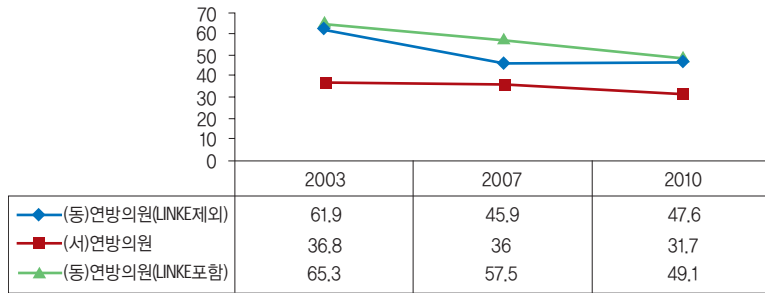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90/A3; 질문문: “당파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투표에서 당파 노선에 반대되는 투표를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프 27 | 지방 의원 중 당파 노선에서 벗어난 투표권 행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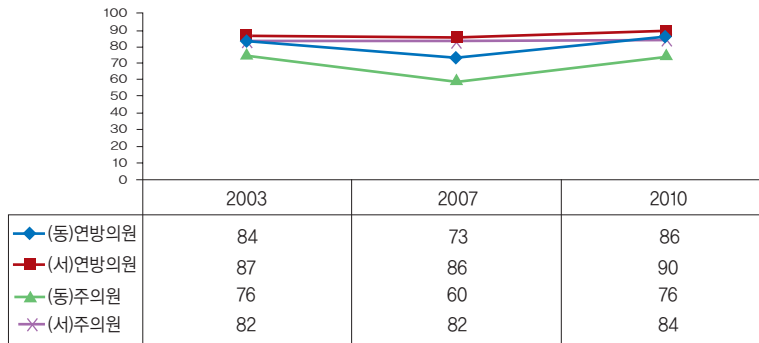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90/A3; 질문문: “당파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투표에서 당파 노선에 반대되는 투표를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로 머물러 있는 데 반해,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의 비율은 그 변화의 폭이 크다. 때문에 2003년에는 동독 의원 20명 중 한 명이 자신의 활동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데 반해, 서독 의원 중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한 자의 비율은 2%에 그쳤다. 2007년 자신의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동독 의원의 비율은 8%로 늘어난 데 반해, 서독 의원들의 비율은 계속해서 2%에 머물렀다. 2010년에는 눈에 띄는 접근이 이루어졌다: 서독 의원들의 불만족 비율은 2%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데 반해, 동독 의원들의 불만족 비율은 3%대로 낮아

그래프 28 | 의원직 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90/A3; 질문문: “일반적인 관점에서 의원직 활동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꽤 만족한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 “꽤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통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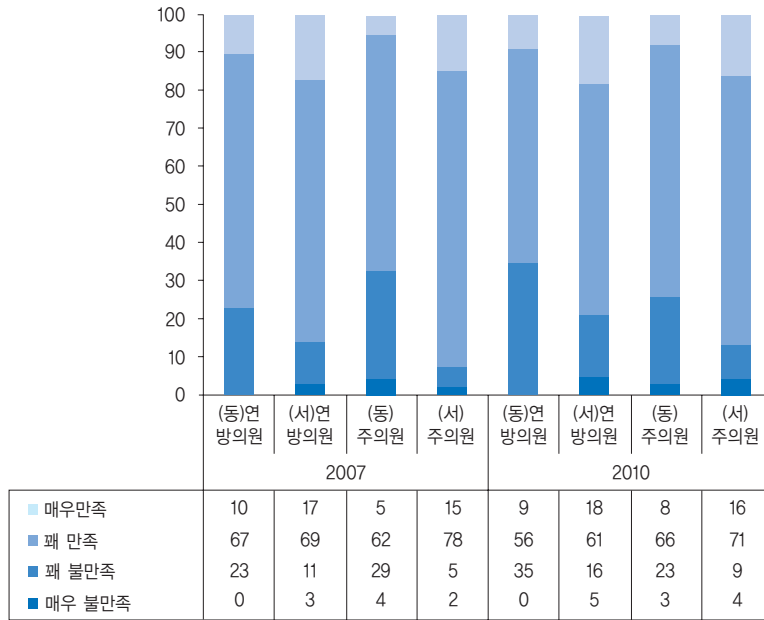
졌다(그래프 28).

민주주의에 대한 동서독의 상이한 만족도

뚜렷한 결론은 독일에서 민주주의가 기능하는 방법에 대한 의원들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을 통해 찾아질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관한 답은 동서독 의원 엘리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몇몇 차이를 드러내 준다. 때문에 2007년과 2010년에 동독 의원들은 독일의 민주주의가 기능하는 방법에 있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독 연방 의회 의원들은 그 어떤 질문에도 “매우 불만족스럽다”라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위에 언급한 동독 의원들의 불만족도는 일부 상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한 의원들의 대부분이 “매우 만족”과 “상당히 만족” 한다는 의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의원들은 서로 접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독의 연방 의회 및 주 의회 의원들은 2007년 이후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늘고 있으며, 반대로 동독의 동료들 중 주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족도가 점차 줄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집단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서독 의원들의 만족도는 연방 의회와 주 의회 모두에서 줄어들고 있다(그

그래프 29 |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80/A3; 질문문: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독일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꽤 만족, 꽤 불만족, 매우 불만족?”

래프 28).

동독 혹은 서독 지역에서 성장한 의원들 간의 이 모든 차이와 그러한 차이가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의회 엘리트들의 상호적 접근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 접근은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독인들과 동독인들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볼 때, 동독에서의 사회화 여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제도적 틀의 영향을 통해 이러한 차이가 약화되고 있다. 이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여전히 완전히 그 당위성을 인정받은 연정 파트너로 간주되지 못하는 사통당의 후속 정당인 좌파당의 불완전한 통합이다. 이는 좌파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 체제에 대한 거리두기를 통해서도 표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적인 다층 구조는 의회 엘리트들의 통합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 의회의 동서독 정치 엘리트들

은 연방 의회의 동료들보다 통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한반도 상황을 위한 결론 도출

동유럽 탈공산주의 국가들에서 동 시기에 일어난 체제 전환 과정을 비롯해, 과거의 남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체제 전환 과정과 비교해 보면, 독일의(정치) 엘리트 전환은 특수 사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독일 사례의 두 가지 결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동독의 민주화 과정이 그 시작과 동시에 통일에 대한 전망과 그 후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통일로 인해 상쇄되고 부분적으로는 축출되기까지 했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특징은 이러한 통일 과정에 있어 양 당사자들이 동등한 눈높이가 아닌, 서독의 주요 제도와 엘리트들이 동독 지역으로 이전된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주도권을 쥐 행위자가 서독이었던 불균형한 관계 속에서 조우했다는 점이다.

독일의 기본적인 정세는 과거에 하나였던 국가들이 수십 년 이상 분단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 한반도의 그것과 닮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반도의 통일이 북한의 민주화 과정을 동반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민주화 혹은 권력의 내파(Machtimplosion)가 통일을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협상이 독일에서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형태의 비대칭적인 상황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독일에서는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위기가 동시에 발생해 동독 엘리트들을 오랜 기간 무력화시켰다.

외부 관찰자들에게 동독의 사례는 북한의 사례와 그 출발 상황이 유사한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동독은 국민들로부터 놀라운 수준의 국가적 안정성과 당위성을 인정 받아왔다.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데는 1989년 여름까지 효과적으로 활동해 온 억압 기구들의 기여가 크다. 반체제 운동을 비롯해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반엘리트 세력의 구성이 이를 통해 크게 저해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통당과 위성정당 내에서 높은 점입울과 고령화로 인해 체제에 충성을 다하며 서열 2위 혹은 하위 엘리트로서의 간부직에 머물러야만 했던 차단된 세대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사통당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던 인물들 역시 차단된 세대에 속했다: 이러한 인물들은 극히 드물게만 고위 간부직에 오를 수 있었으며, 중급 직책에 평생을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반대로 사통당 혹은 위성정당에 가입할 경우 직업적인 신분 상승을 가속화하거나, 그것을 보장 받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 대다수가 그러했듯, 이러한 인물들 중에서 반체제 운동을 감행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체제에 충성한 집단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실제적인 반체제 집단의 비율은 이와 비교해 현저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반엘리트 세력으로 자리 잡지도 않았다.

과거의 동독 엘리트들의 억압 위협이 신뢰를 상실한 순간 지금까지 언급한 거의 모든 집단들이 동독이 변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게 된다. 때문에 동독 민주화 과정의 초기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의 모델에 따라 동독 내 자체적인 개혁을 위로 밀고 올라온 체제 충성적인 차단된 세대와 반체제 인사들 간의 원탁회의에서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내려는 노력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 시기는 구(정치) 엘리트 세력의 대규모 퇴직에도 불구하고 사통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체제 충성적인 차단된 세대의 놀라운 지배로 특징지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현실적인 사건들에 의해 추월당하고 만다: 그 첫 번째 사건은 1989년 11월 9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이고, 그 두 번째 사건은 서독 정부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기회를 인식하고 서독의 주도권 하에 통일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동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후임으로 승진한 사통당 세대들과 반체제 인사들은 엄청난 재량권을 상실하게 된다. 통일을 결정하기 위한 준(準) 국민투표로 여겨진 인민회의 총선 결과 중요한 정치행위는 이제 불가능했다. 때문에 동독의 정치적 과도기 엘리트들은 1990년 12월까지의 더 이상 전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상당부분 규정하는 자신들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 당시 권력은 이미 서독 정치 엘리트들의 손에 넘어갔다. 이들은 인민회의 총선 이후 동독의 신진 과도기 엘리트들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최종적으로 규정해 버렸다. 이러한 인민회의 총선의 결과로 구성된 드 메지에 정권 속에서 당시 엘리트 직으로 승진하게 된 과거의 차단된 사통당 엘리트 세대들을 비롯해 일부 과거 동독 엘리트들의 연속성은 끊기고 만다. 때문에 한국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개혁파로 지칭되는 체제 충성적이며 차단되어 있었던, 그러나 전환기에 엘리트 직을 차지한 세대가 외국의 영향력과 통일에 대한 전망이 없이 그리고 자유선

거 없이도 그들의 개인적인 지배권을 잃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집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통일 이후 정치 엘리트 직위로 올라선 인물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동독의 구엘리트 세력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독의 신진 엘리트들은 반체제 인사층을 통해서도 극히 일부만 충원되었다. 한편 이들이 동독 국민들 중에서 그 존재감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낮은 비율을 차지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반체제 인사들이 엘리트 직책을 차지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었다. 때문에 이후의 정치 엘리트들 중에서 초기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의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신진 엘리트들은 우선적으로 기술-자연과학 혹은 의학 분야의 전문직과 중간 관리직을 통해 채워졌다. 사통당 가입 여부는 그 자체만으로는 엘리트 직을 맡는데 있어 그 어떤 장애물도 의미하지 않았지만, 동독에서 고위 당 직책을 맡았던 과거는 장애물이 되었다. 때문에 동독에서 엘리트 지위로 올라가기 위한 첫 번째 수순을 밟았지만, 그 이상의 지위로 올라가는 것은 더 큰 정치적 참여를 의미하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더 이상의 상승을 거부한 인물, 혹은 엘리트 지위가 공식인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승이 불가능했던 인물들 역시 정치 엘리트로서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반체제 인사와 정치적으로 구속되지 않은 이들, 또한 적어도 외적으로는 체제 충성적이었던 시민들 이외에도 서독에서 수입된 인물들이 동독 신진 엘리트들의 엘리트 풀을 구성하고 있었다. 참고로 동독 정치 엘리트 중 이들의 비중은 기타 엘리트 분야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 그러나 이러한 서독에서 수입된 엘리트들은 종종 영향력이 큰 장관직을 맡았고, 현재 맡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각된 주요 직책으로 인해 동독인들 사이에서 서독인들에 의해 식민지화되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느낌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불리한 경제적 혹은 정치적 조건으로 인해 상당한 유보적 태도와 통합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엘리트 수입과 함께 일어나지 않은 엘리트 수출은 통일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외부로부터 규정 당한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서독으로부터 채워진 엘리트 풀을 통해 동독의 엘리트 세력과 그들의 조직적 전문 지식에 기대지 않고서도 제도적 구조가 구축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 엘리트들에게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지만, 구엘리트 세력에 기댈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은 행정 및 사법 분야를 비롯해 과거 정권에서 주요 관직을 차지했던 이들

중 남은 이들의 엘리트 관직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청산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치와 그 외 분야에서의 구엘리트 세력들의 경력은 거의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기타 탈공산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높은 엘리트 지속성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광범위한 엘리트 순환은 통일에 기인하는 서독이 비축하고 있던 엘리트 공급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직 및 의원을 통해 나타나는 동독 신진 엘리트들의 정치적 참여는 전환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혹은 1990년에 치러진 최초의 주 의회 혹은 연방의회 선거 기간에 시작되었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동독의 구엘리트 세력이 귀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목격된 반면, 과도기 정치가들은 1990년대 말까지 정치 엘리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통일 후 20년이 지난 현재 상당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동독에서의 사회화와 불균형한 통일의 흔적이 일부 인지되는(예: 동서독 엘리트들의 지역적 이동의 차이) 새로운 전독일적 정치 엘리트가 탄생되었다. 이들에게서는 아직까지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는 원칙적인 차이라기보다는 단계적인 차이가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통당의 후속 정당인 민사당 혹은 좌파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좌파당이 정부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비정상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통합의 부족으로 인해 좌파당의 정치 엘리트들의 입장에서는 제도 시스템에 거리를 두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는 이러한 당들의 정부 구성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좁혀지고 있다. 동시에 민사당/좌파당(PDS/Linke)은 1990년대에 동독인들의 민심을 대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정 동독 시민층이 통일 독일의 정치 시스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보자면, 통일 직후에 나타난 심각한 차이들이 그 간극을 줄여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서독 지역의 동일한 제도적 구조는 불균형한 통일로 인해 동독 신진 엘리트들에게 엄청난 적응의 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지만, 엘리트들의 채용 구조나 견해 유형에 있어 전 독일적으로 통합된 정치 엘리트들을 양산해 냈으며, 이를 통해 양 지역의 통합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구동독 지역 특유의 경험과 이해관계, 연방 정치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관점의 대변은 거의 사라졌다. 이는 최근 민사/좌파당이 “동독”의 정당으

로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동독 지역의 소외화가 동과 서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정치화하고, 이를 통해 정당의 입지를 굳혀 나가고자 했던 동독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반작용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처음에 예상할 수 없었다.

때문에 한국이 통일될 경우 정치 엘리트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지역 특수적 이해관계의 대표와 전 한국적 관점을 가진 통합된 엘리트 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약어색인

| | |
|---------------|--|
| B90/Grüne | 동맹90/녹색당(Bündnis90/Die Grünen) |
| CDU | 기독민주연합(기민련)(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
| DIE LINKE | 좌파당(PDS 후속 정당)(Nachfolgepartei der PDS) |
| DDDR-LV | “동독의 이력과 역사적 변화” 프로젝트(Project “Lebensverläufe und historischer Wandel in der DDR”) |
| FDP | 자유민주당(자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
| IM | 국가안전부 비공식 요원(Inoffizieller Mitarbeiter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MfS)) |
| LDPD | 독일 자유민주당(동독)(Liber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DDR)) |
| MPIB-Berlin | 베를린 교육 연구 막스-플랑크-연구소 (Max-Planck-Institut für Bildungsforschung Berlin) |
| PDS/DIE LINKE | 민주사회주의당(민사당)/DIE LINKE(과거 동독 사통당). 언어상의 이유로 “LINKE”로만 일컬음.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DIE LINKE(in Ostdeutschland ehemals SED). Aus sprachlichen Gründen nur “LINKE” genannt.) |
| SDP | (동독) 사회민주당(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DR)) |
| SED |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
| SFB | 580개 특별연구분야(Sonderforschungsbereich 580) |
| SPD |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 STASI | 국가안전부를 뜻하는 구어적 약어(umgangssprachliche Abkürzung für: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
| WASG | 노동 사회 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hlalternative Soziale Gerechtigkeit) |
| ZK der SED | 사통당 중앙 위원회(Zentralkomitee der SED) |

- 이행기의 엘리트. 중부 및 동부유럽의 엘리트연구. Best, Heinrich / Becker, Ulrike(Hrsg.), Elites in Transition, Elite Research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Leske-Budrich: Berlin 1997.
- 독일의 엘리트. 충원과 통합, Bürklin, Willhem und Rebenstorf, Hilke(Hrsg.)(1997): Eliten in Deutschland. Rekrutierung und Integration, Opladen Leske und Budrich.
- 파열과 통합 사이의 엘리트 순환. 동독 기능 엘리트들의 퇴직, 충원과 구성, Derlien, Hans-Ulrich(1997): Elitenzirkulation zwischen Implosion und Integration. Abgang, Rekrutierung und Zusammensetzung ostdeutscher Funktionseleiten 1989-1994, in: Wollmann, Hellmut, u.a.(Hrsg.)(1997): Transformation der politische-administrativen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Leske und Budrich, Opladen, S. 329-417.
- 엘리트, 위기, 정권에 대한 비교분석, Dogan, mattei/Higlez, John(1998): Elites, Crises, and Regiems in Comparative Analysis, in: dies.(Hrsg.): Elites, Crises, and the Origins of Regimes, Lanham/Oxford: Rowman & Litlefield.
- 1949-1989-1999 독일 통일 백서, Eithe, Ulrich(1999): Art. Parteien, in: Weidenfeld, Werner/Korte, Rudolf(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1949-1989-1999(Neuausgabe 1999)(=Schriftenreihe, Bd. 363), Bonn: BPB, S. 617-631.
- 젊은 민주주의 내의 구엘리트? 동독 의원들 사이의 엘리트 순환과 엘리트 재생산, Edinger, Michael(2004): Alte Eliten in einer jungen Demokratie? Elitenzirkulation und Elitenreproduktion unter ostdeutschen Parlamentariern, in: Veen, Hans-Joachim(Hrsg.): Alte Eliten in jungen Demokratien. Wechsel, Wandel und Kontinuität in Mittel- und Osteuropa, S. Böhlau-Verlag, S. 61-92.
- 동서독 의원들의 역할 인식, 정당 응집과 정치적 태도, Edinger, Michael / Vogel, Iars(2005): Role Perceptions, Party Cohesion and Political Attitudes of East and West German Parliamentarians, in: Czech Sociological Review 41(2005) 3, S. 375-399.
- 독일의 사회구조. 통일 결산과 함께 사회발전을 위하여, Geißler, Rainer(2008): Die Sozialstruktur Deutschlands. Zu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mit einer Bilanz zur Wiedervereinigung, 5. Aufl., VS-Verlag, Wiesbaden.
- 1949-1989-1999 독일 통일 백서, Bürklin, Willhem/Hoffmann-Lange, Ursula(1999): Art. Eliten, in: Weidenfeld, Werner/Korte, Rudolf(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1949-1989-1999(Neuausgabe 1999)(= Schriftenreihe, Bd. 363), Bonn: BPB, S. 317-330.
- 1949-1989-1999 독일 통일 백서, Kleinfeld, Ralf: Art. Verbände, in: Weidenfeld,

Werner/Korte, Rudolf(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eheit 1949–1989–1999(Neuausgabe 1999)(= Schriftenreihe, Bd. 363), Bonn: BPB, S. 765–780.

- 호네커 시대의 동독 권력 엘리트, Meyer, Gerd(1991): Die DDR–Machtelite in der Ära Honecker, Tübingen.
- 독일 통일의 代價(대가). 통일과 복지국가의 위기, Ritter, Gerhard A.(2006): Der Preis der deutschen Einheit. Die Wiedervereinigung und die Krise der Sozialstaats, München: C.H.Beck.
- 우리는 국민이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독일 통일의 역사, Ritter, Gerhard A.(2009): Wir sind das Volk! Wir sind ein Volk! Geschichte der deutschen Einigung, München: C.H.Beck.
- 독일 하나의 조국. 통일의 역사, Rödder, Andreas(2010): Deutschland einig Vaterland. Die Geschichte der Wiedervereinigung(Schriftreihe, Bd. 1047), Bonn BPB.
- 정당에 대한 충성, 계획에 따라, 전문적으로? Salheiser, Axel(2009): Parteitreu, plangemäß, professionell?, 1. Aufl. Wiesbaden: VS Verl. für Sozialwissenschaften.
- 동독지역으로의 엘리트 수입: 엘리트 충원에서의 전환유형과 변화, Solga, Heike(1995): Der Elitenimport nach Ostdeutschland: Transformationstypen und Veränderungen in der Elitenrekrutierung, In: Diewald, Martin/Mayer, Karl–Ulrich(Hg.), Zwischenbilanz der Wiedervereinigung, Opladen 1996, S. 89–111
- 동독 엘리트 충원과 사회화 – 민주적 반엘리트 세력의 도약, Welzel, Christian(1997): Rekrutierung und Sozialisation der ostdeutschen Elite – Aufstieg einer demokratischen Gegenelite, in: Bürklin, Wilhelm und Rebenstorf, Hilke(Hrsg.)(1997): Eliten in Deutschland. Rekrutierung und Integration, Opladen Leske und Budrichs, S. 201–238.
- 실험실 동독. 독일 사회학자들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동독의 체제 전환 과정, Weingarz, Stephan(2003): Laboratorium Ostdeutschland. Der ostdeutsche Transformationsprozess als Herausforderung für die deutschen Sozialwissenschaften, LIT–Verlag, Münster, Hamburg, London.

II. 경제엘리트

베른트 마르텐스(Bernd Martens)

| | |
|-------------------------|-----|
| 1. 독일의 경제 엘리트 | 296 |
| 2. 1989년 사회 변혁기 이전의 상황 | 301 |
| 3. 변혁기의 동독 경제 엘리트 | 309 |
| 4. 변혁 20년 후의 동독의 경제 엘리트 | 320 |

1. 독일의 경제 엘리트

1.1 경제 엘리트에 관한 정의와 기본적 특징

누가 엘리트에 속하고 누가 엘리트에 속하지 않는가? 이를 결정하기 위해 사회학에서는 지위접근(Positionsansatz, 엘리트 연구에서 한 사회의 엘리트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1) 명성 접근(Reputationsansatz), 2) 의사결정 과정 접근(Entscheidungsprozessansatz), 3) 지위 접근이 있다. -역주)이 이용된다.

경제 엘리트(Wirtschaftseliten)란 사회체제의 일부인 경제 부문의 정선된 리더들을 뜻한다. 이러한 경제 엘리트에 속하는 자들로는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토대로 기업을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업의 조직 최상위층의 구성원들(대표 이사, 주식회사의 임원, 기업가, 자본가)과 기업단체 혹은 고용주단체의 대표들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경제 시스템의 기능에 필요한 특정한 성과를 제공하는 기능 엘리트로 간주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인물들이 지닌 영향력의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회장은 소규모 회사의 사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녔을 것이라고 간주된다.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지위를 갖고 한 기업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 엘리트 연구에서는 인물 간 비교를 가능케 하기 위해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제 엘리트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제 엘리트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독일에 입지를 둔 직원 5천 명 이상의 대기업 임원과 대표들을 상대로 하는 경험적 설문조사를 실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지위접근 전체적으로 그에 맞게 수집된 경제 기업의 임원에 관한 경험적 자료들 혹은 다른 정보원(情報源)들을 전거로 삼을 것이다.

- 이 글에서 경제 엘리트란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이끌거나, 그러한 기업을 위해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물군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후자의 기준은 구동독(DDR)의 경제 엘리트들에게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부합된다.)

1.2 동독 지역의 경제적 환경

동서독 산업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오늘날 동독지역(Ostdeutschland)의 경제, 특히 산업은 중소기업을 통해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표 1 참조).⁵ 이러한 기업들의 두드러진 비중과 이에 속하는 경제 엘리트들을 서술하기 위해 특히 “산업적 중소기업 (industrieller Mittelstand)”을 살펴보겠다. 산업적 중

표 1 | 근로자 수와 업종을 기준으로 한 2004 사회보험 의무 가입 근로자*
(각 업종 별 총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 (%))

• 동독 지역

| 경제 분야 | 기업 규모 (근로자 수 기준) | | | | | | |
|------------|------------------|-------|-------|--------|---------|---------|---------|
| | 1~4 | 5~9 | 10~49 | 50~199 | 200~249 | 250~499 | 500명 이상 |
| 농림업 | 13.3% | 11.3% | 46.9% | 21.5% | 1.9% | 4.1% | 1.0% |
| 제조업 | 4.6% | 6.2% | 25.4% | 30.7% | 5.1% | 11.4% | 16.6% |
| 기업 대상 서비스업 | 15% | 10.8% | 27.5% | 27.4% | 3.6% | 8.3% | 7.4% |
| 기타 서비스업 | 5.3% | 4.6% | 18.6% | 25.4% | 3.9% | 14.5% | 27.7% |
| 총 | 10.7% | 9.3% | 26.1% | 24.7% | 3.5% | 9.6% | 16.1% |

• 동독 지역

| 경제 분야 | 기업 규모 (근로자 수 기준) | | | | | | |
|------------|------------------|-------|-------|--------|---------|---------|---------|
| | 1~4 | 5~9 | 10~49 | 50~199 | 200~249 | 250~499 | 500명 이상 |
| 농림업 | 35.1% | 19.9% | 33.4% | 9.5% | 0.6% | 0.2% | 1.3% |
| 제조업 | 3% | 3.9% | 15.5% | 21.8% | 4.3% | 13.9% | 37.6% |
| 기업 대상 서비스업 | 12.4% | 9.6% | 26.6% | 26.1% | 3.6% | 8.9% | 12.8% |
| 기타 서비스업 | 8.4% | 6.9% | 21.3% | 24.1% | 4.3% | 12.2% | 22.8% |
| 총 | 9.2% | 8.6% | 22.9% | 22.8% | 3.5% | 10.4% | 22.6% |

* Sozialversicherungspflichtig Beschäftigte, “사회보험 의무 가입 근로”란 부업이나 미니잡(부분취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현재 독일에서 미니잡(부분취업)의 상한선은 월 400 유로의 수입이다.

** 출처: 중소기업 통계 주요 자료 (Eckdaten der Mittelstands-statistik), 만하임 중소기업 연구소 (Institut für Mittelstandsforschung).

소기업이란 상당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제조업 분야의 독립적 기업을 뜻한다. 소수의 직원 수와 매출액이 낮은 소규모 회사들은 산업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산업적 중소기업의 또 다른 특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기업 소유자가 소유자 형태의 오너 직과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직을 겸임
- 일반적으로 오너 가족 내 세대교체를 통해 기업의 존속이 추구되는 가족 중심의 기업 경영

지난 몇 년 간 모순적 경향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서독지역(Westdeutschland)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중소기업의 전통이 매우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이러한 경향이 동독지역에도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4.2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동독지역의 대기업 부재

서독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작은 동독 기업의 규모는 동독 지역에 본사를 둔 산업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직원 수 약 4천 명의 (주) 엔옵틱(Jenoptik AG) 사를 예로 들어 보면 잘 알 수 있다. 직원 수 약 4천 명을 보유한 (주) 엔옵틱 사는 독일에서 가장 큰 산업 기업들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그 순위가 452위에 그치고 만다(독일에서 애용되는 호펜슈테트-기업 데이터 뱅크(Hoppenstedt-Firmendatenbank)의 자료를 기준). 독일의 대기업 전체와 비교할 경우, (주) 엔옵틱 사의 순위는 945위로 떨어진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500개 상위 대기업의 대표들로 구성된 경제 엘리트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동독 출신의 경제 엘리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바로 동독인들이 지금까지 이러한 사회군에 속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

5 유럽 공동체 (Europäische Gemeinschaft)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내려졌다: “최소 기업 (Kleinstunternehmen)”: 직원 수 10 명 이하, 연 매출 (Jahresumsatz) 혹은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 (Jahresbilanzsumme) 2백만 유로 이하; “소기업 (kleine Unternehmen)”: 직원 수 50 명 이하, 연 매출 혹은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 1천만 유로 이하; “중기업 (mittlere Unternehmen)”: 직원 수 250 명 이하, 연 매출 5천만 유로 이하 혹은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 4,300만 유로 이하. 중소기업 (Kleine und mittelgroße Unternehmen)은 일명 KMU 혹은 영문 SME (Small and Middle-sized Enterprises)로 축약되기도 한다.

표 2a | 동서독 경제 엘리트들의 경제계 고위직 임용 비율

| 분야 | 총 | 동독 출신 | 분야 별 동독 출신 비율 |
|------|-----|-------|---------------|
| 경제 | 249 | 1 | 0.4% |
| 경제연맹 | 173 | 14 | 8.1% |
| 합계 | 422 | 15 | 3.6% |

* 1995년 일명 “포츠담 엘리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제 엘리트의 임의 추출조사 자료.

** 출처: 1997 뷔르클린/레벤스토르프 엘리트 조사, Elitenbefragung von Bürklin/Rebenstorf 1997, S. 67.

표 2b | 특정 매출액 이상을 기록하는 한 기업에서 대표직을 수행하는 경제 엘리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의 표본조사의 재구성.

| 기업 유형 | 기업의 수 | 감사회 (Aufsichtsrat) 직위 | 이사회 (Vorstand) 직위 | 직위의 수 |
|--------|-------|--------------------------|-------------------------|-------|
| 초일류 기업 | 14 | 대표 부대표 | 전원 조사 (Vollerhebung) | 109 |
| 대기업 | 132 | 대표 | 대표 부대표 | 360 |
| 주요 기업 | 54 | 무 | 대표 부대표 | 70 |
| 합계 | 200 | | | 539 |

* 1995년 일명 “포츠담 엘리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제 엘리트의 임의 추출조사 자료.

** 출처: 1997 뷔르클린/레벤스토르프 엘리트 조사, Elitenbefragung von Bürklin/Rebenstorf 1997, S. 44.

다. 1995년의 포츠담 엘리트 연구(Potdam Elitenstudie)에 따르면 경제 엘리트(연맹 간부 직 (Funktionäre von Verbänden) 제외)에 속하는 동독인들의 비율은 0.4%(표 2a, 2b)에 그친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시장이 점점 더 서독인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3). 지금까지 서독 기업의 최고 경영자 직에 오른 동독 출신의 임원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

표 3 | 기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직원 수 50~1,000 명 규모의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대표의 출신 지역 분포도.

• 2002년 조사

| 기업 대표들의 출신지역 | 기업 소재지 | | 수 |
|--------------|--------|-------|-----|
| | 서독지역 | 동독지역 | |
| 서독 | 99.0% | 30.5% | 493 |
| 동독 | 1.0% | 69.5% | 255 |
| 수 | 387 | 361 | |

• 2002년 조사

| 기업 대표들의 출신지역 | 기업 소재지 | | 수 |
|--------------|--------|-------|-----|
| | 서독지역 | 동독지역 | |
| 서독 | 97.7% | 35.1% | 297 |
| 동독 | 2.3% | 64.9% | 162 |
| 수 | 217 | 242 | |

* 출처: 2002~2010 580개 특별연구 분야, 파트 프로젝트 A2 기업 조사.

구동독 지역의 경제 엘리트들은 지역적(regional) 및 지방적(lokal) 엘리트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구동독 지역의 지역적 및 지방적 경제 엘리트들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부합하지 않는 매우 편협한 시각이다. 이에 따라 1990년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사하고, 특히 통일된 독일에서 과거 동독의 경제 간부(Wirtschaftskader)들에 관한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 엘리트에 대한 추가적인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⁶ 구동독 지역의 체제전환(Transformation)은 산업 기반의 쇠퇴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제 구조를 촉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엘리트에 관한 추가적인 정의를 살펴 볼 때는 중소기업 대표들(소규모

6 이 글에서 동독과 서독의 인물은 현재 해당 주제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에서 통용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구분 된다: 1990년 6월 30일 (동서독 화폐 통합일) 기준 해당 인물의 거주지

작업장은 제외)에 대한 관찰이 포함될 예정이다.

때문에 동독과 통일 독일에서의 경제 엘리트들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지위 개념이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와 최근의 과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5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직원을 둔 제조업 분야의 기업 대표와 임원에 대한 설문 내용을 주요 연구 자료로 삼을 예정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동서독 “체제 붕괴 이후의 사회적 발전”에 대한 특수연구영역 580(SFB 580)의 틀 내에서 3차례의 설문 기간에 걸쳐 수집되었다. 이를 통해 비교 진술들이 가능해졌다.

설문 조사의 대상이 된 인물군은 기업의 대표라는 지위로 인해 자원에 대한 접근에 있어 특권을 부여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러한 자원의 분배에 대한(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공동 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 엘리트가 아니라 바로 구동독 지역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적 혹은 지방적 경제 엘리트이다.

다음 장에서는 동독의 경제 엘리트에 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다루기 위해 1990년 이후 체제전환기의 변화상을 이어 소개하도록 하겠다.

2. 1989년 사회 변혁기 이전의 상황

2.1 동독에서의 경제 엘리트

동독의 경제는 사통당의 전지전능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정치 우선(Primat der Politik)의 논리로 특징 지어졌다. 이는 상품과 생산 과정에 대한 결정이 당 위원회(Parteigremien)와 국가 계획 위원회(staatliche Plankommissionen)에 의해 내려졌었다는 것을 뜻했다. 전략적인 기업 결정은 언제나 인민소유기업(Volkseigene Betriebe, VEB)이나 콤비나트(Kombinate)의 현장이 아닌, 중앙 기관에서 이루어졌다. 기업 내 근로자들은 근본적으로 관료주의적인 조직에서 계획을 수행하는 단위(planausführende Einheiten)에 불과하였다. 동시에 관리자들도 경제 엘리트로서 규정에 따른 계획의 실행을 담당했다.

때문에 이들은 “샌드위치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들은 계획을 달성하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부 기관에 해명을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제재 수단(Sanktionsmittel)을 부여받지도 못했었기 때문이다. 동독에는 압박 수단으로의 해고를 어렵게 하는 실질적인 고용 보장이 존재했었다. 또한 “근로자”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 제공되는 물질적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권 역시 기업 간부들에게는 거의 부여되지 않았었다.(동독에서 “근로자(Werkstätige)”는 직원을, “간부(Kader)”는 임원을 뜻하는 일반적인 개념이었다.)

동독 기업 간부들의 필수적인 능력인 “카오스-경영”

계획으로 인한 문제 발생은 동독 경제의 일반적인 상태였다. 생산은 광범위한 “카오스-경영(Chaos-Management)”의 도움으로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는 임기응변(Improvisation)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생산을 유지해 내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으로 계획 설정이나 규정을 위반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목표 수치를 매우 낮게 설정해, 경제 계획의 달성을 용이케 하거나(아래 예시 참조),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객사나 부품 공급처, 관청, 당 기관, 타 기업과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만 했다.

경제 계획 달성 전략에 관한 과거 동독 기업 간부와의 인터뷰 인용문. 출처: Schreiber et al. 2002, S. 158.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죠. 우린 1,000 명이면 충분할 일자리를, 1,300 명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는 1,100 명의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시켰죠. 그렇게 하면 일자리 200 개를 절약한 셈이 됩니다. 이런 저런 방식을 통해 12개월 치 임금을 절감해, 이미 계획을 달성하게 된 겁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일을 했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아주 밑바닥부터 그랬다니까요. 안 될 때까지 별의 별 술책들을 다 썼었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경제 사회에서도 그런 술책은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만해도 우린 훨씬 더 정직했습니다. 이걸 제가 X [콤비나트]에서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결과는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기업 간부들은 계획 목표나 계획 수립을 위한 방법을 수호하고 수행하기 위해 공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러한 그들의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규칙성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혼란적인 생산 과정의 이데올로기적 걸치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져 갔다. 이러한 모순은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서서히 파괴했다. 기업 간부와 같은 기능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모범인 가치 엘리트(Werteliten)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⁷ 그에 반해 사회학자 슈테판 호른보스텔(Stefan Hornbostel)의 견해에 따르면,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실용주의 성향의 ‘실력자(Macher)’라고 부를 수 있는 간부 유형이 생겨났다. 이러한 간부 유형은 반체제 성향의 엘리트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으며, 불리한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며, 곧잘 적법성의 경계에서 행동하지만 정치 체제를 문제삼지는 않는 지도자 그룹을 뜻한다”(2000, S. 127).

근로자들과의 관계

기업 간부들은 업무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었다(예를 들어 기업 정보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어, 목표 수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 관리자로서 계획 달성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떠안고 있었던 이들은 물자 조달과 시설 보수를 위한 끊임없는 임기응변과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야만 하는 고충에 시달렸다.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에게 협력하라고 강요할 수 없었다. 종업원들은 그들에 대한 기업 간부들의 “달래기 작업”(Beziehungsarbeit)을 요구하는 상당히 강한 수동적 힘을 소유하고 있었다. 혹은 그러한 힘은 권위주의적인 지도방식을 낳기도 했는데 많은 지배인들이 그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작업장 내에서의 상황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주로 “말놓기 문화(Duz-Kultur)”의 개

7 정치학자인 헤르프리트 뮈클러(Herfried Münkler)의 주장(2000, S. 80f)에 따르면 기능 엘리트와 가치 엘리트의 분리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필수적으로 결여되었던 현대 사회의 특징이다. 만약 이러한 특징이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있었다면, 이는 맑스-레닌주의의 진리 요구(Wahrheitsanspruch)를 문제시하는 것을 뜻했을 것이다. 기능의 실행과 모범적 행동의 분리는 경제 분야와 같은 사회 시스템의 일부에서 한 인물의 능력을 높여준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독일에서는 국가적 경제 엘리트들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감 부족에 대한 여론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 관찰되고 있기도 하다.

님이 사용된다. 동독 기업 내에서 일반적이었던 직원과 상사 간의 말농기 문화는 기업 간 부들이 자주 직면해야 했던 직원들과의 특별하면서도 모순적인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중요시 되는 경영능력의 부족

경영능력(Management-Kompetenz)은 관료주의적 조직 구조 내에서의 임기응변과 행위 능력에 있어 특히나 기업 간부들로부터 기대되지 않았던 특성이었다. 경영능력은 동독 경제에서 필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시장 개척, 소비자 중심의 제품 개발, 혁신 제품의 상품화와 같은 분야에서 중요시 되는 경영능력의 결핍을 불러 오는 결과를 낳는다. 동독 기업 간부들의 경우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의 내부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뛰어났으나,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외부적 시각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독 기업 간부들의 경영능력 부족은 전환기(Wendezeit)에 동독 기업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경영이라는 새로운 능력들이 중요시 되었던 1989년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된다.

기업 간부들의 전공이력

전통적으로 독일의 관리 부문은 늘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왔다. 기술개발 업무와 생산 과정의 안전성 확보는 19세기에 시작된 산업화 과정 이래 독일 경제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규모 주식회사들의 대표직은 전통적으로 법조인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국가적 경제 엘리트계의 이러한 “법조인 독점” 현상은 서독에서 1960~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서독 대기업 대표들의

표 4 | 독일 100대 기업의 이사회 대표들의 학위 유형, 1970년, 1995년, 2004년 자료 조사.

| 연도 | 전공 분야 | | | | | |
|-------------|-------|-----------|-------|---------|-----------|-------|
| | 경영학 | 공학 및 자연과학 | 법학 | 대학 無 진학 | 도제(Lehre) | 박사학위 |
| 1970 (n=84) | 26.2% | 25.0% | 32.1% | 16.7% | 16.7% | 44.0% |
| 1995 (n=86) | 38.4% | 23.2% | 31.4% | 7.0% | 25.6% | 46.5% |
| 2004 (n=88) | 41.0% | 36.4% | 12.5% | 10.2% | 23.9% | 47.7% |

출처: Hartmann 2006, S. 435

표 5 | 동독 경제 간부들의 직위 별 대학 전공 분야

| 전공 분야 | 직위 | | | |
|-----------|-------------------------|---------------------|-------------------------|--------------------------|
| | 대표 (Generaldirektor) | 부서장 (Fachleiter) | 공장장 (Betriebsleiter) | 과장 (Abteilungsleiter) |
| 경제 | 48.2% | 44.3% | 47.4% | 35.5% |
| 공학 및 자연과학 | 53.6% | 46.6% | 47.0% | 55.3% |
| 법학 | 0.9% | 2.3% | 2.4% | 1.8% |
| 인문학 | 3.6% | 9.1% | 3.2% | 4.3% |
| 사회과학 | 39.3% | 4.1% | 3.2% | 1.2% |
| 합계* | 145.5% | 106.4% | 103.2% | 98.1% |

* 복수전공자로 인해 합계가 100%를 넘는 경우가 발생.

** 출처: 1989년 동독 내각 산하 중앙 간부 자료 보관소 자료 (Zentraler Kaderdatenspeicher des Ministerrates der DDR 1989), Salheiser 2009, S. 189

경영학 및 경제학 전공자 비율은 기타 서유럽 국가나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높아지기 시작했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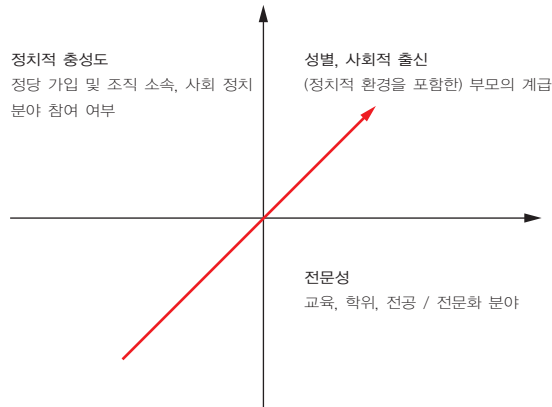
반대로 동독에서는 기술자나 엔지니어들이 기업 콤비나트의 대표직을 맡아왔다. 이를 통해 이들은 동독이 건국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지속된 독일의 전통을 이어왔던 것이다. 1989년까지 동독은 총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엔지니어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업 국가였다. 그러나 콤비나트 대표들 중 경제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이들의 비율은 엔지니어 출신들의 비율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표 5), 콤비나트 내에서의 위계질서가 높아질수록 비공학 계열 출신들의 비중도 높아졌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정치적 충성과 사회적 배경, 학력에 따라 좌우된 커리어

동독 경제 엘리트들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친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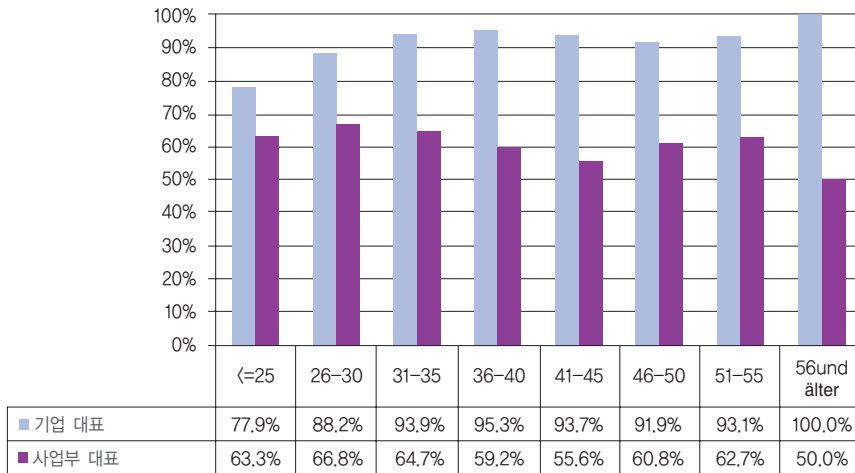
- 정치적 충성(정당 가입, 사회적 활동)
- 사회적 배경(예를 들어 부모의 사회적 위치)
- 전문성(예를 들어 학력의 평가에 반영되어 있는 전문성)

도표 1 | 동독 경제엘리트의 경력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출처: Salheiser, 2009, S.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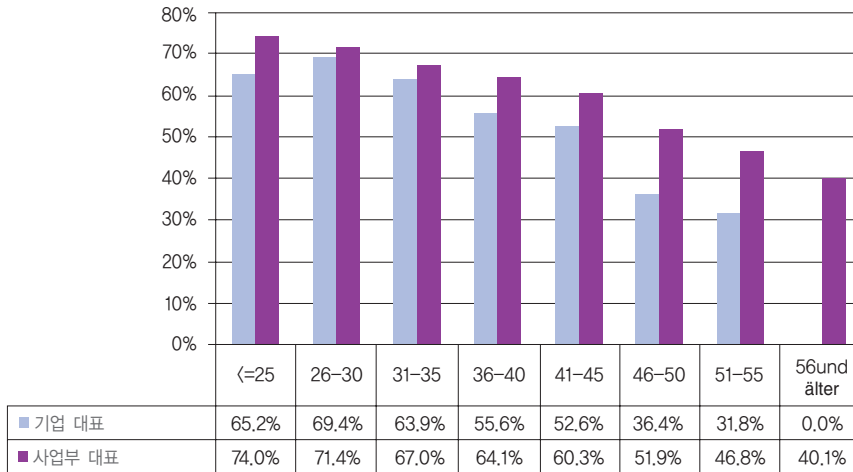
도표 2 |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이하 사통당) 가입률



* 제조업 분야 인민소유기업의 대표 (Betriebsdirektor) 및 사업부 대표 (Fachdirektor) (주 부서장 (Hauptabteilungsleiter))의 연령별 사통당 가입률.

** 출처: 1989년 동독 내각 산하 중앙 간부 자료 보관소 자료, Best 2007, S.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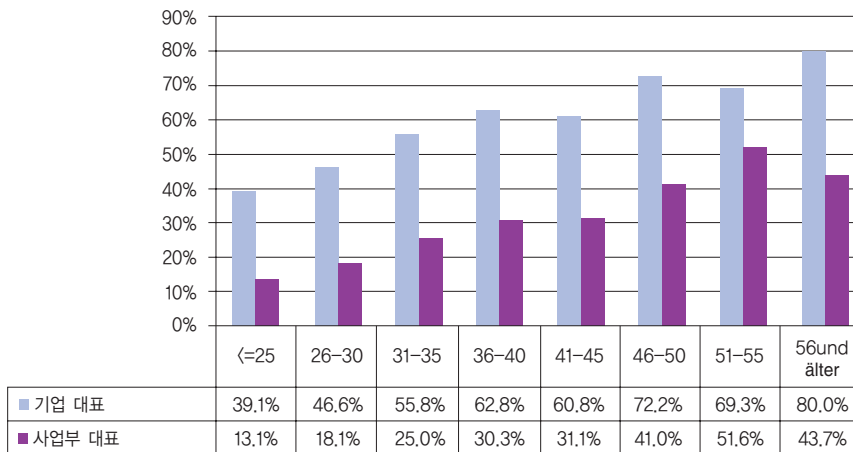
도표 3 | 사회적 배경



* 제조업 분야 인민소유기업의 대표 및 사업부 대표 (주 부서장) 의 연령별 사회적 배경 (부모가 노동자 계급에 속함).

** 출처: 1989년 동독 내각 산하 중앙 간부자료 보관소 자료, Best 2007, S. 32.

도표 4 | 대학 졸업자 비율



* 제조업 분야 인민소유기업의 대표 및 사업부 대표 (주 부서장) 의 연령별 대학 졸업자 비율.

** 출처: 1989년 동독 내각 산하 중앙 간부자료 보관소 자료, Best 2007, S. 34.

동독 사회의 다양한 기능 분야의 간부들을 체계적으로 개척하고, 판단하며, 지원하기 위해(일명 “구동독 내각 평의회 중앙 간부 자료 보관소(Zentralen Kaderdatenspeicher des Ministerrates der DDR)”라 불리는 ZKDS에 의해) 동독에서 수집된 방대한 자료들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지닌 상이한 가치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이 가능해 진다(도표 2-4).

대학에서의 학위를 비롯한 능력적 기준은 동독 기업에서의 최고 경영자 지위에 오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였으나, 공산당(사통당) 가입을 통해 입증되어야 했던 정치적 충성은 그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대로 부모가 노동자층(Arbeiterschaft)에 속한다는 식의 사회적 배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엘리트의 채용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덜해져 갔다. 그대신 70~80년대에는 경제 엘리트들의 사회적 폐쇄성과 자체충원(Selbstrekrutierung)의 경향이 강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9년의 전환기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2.2 요약

동독 경제 엘리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동독의 경제 엘리트들은 업무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기는 했으나, 위계질서적이며, 관료주의적 구조의 구속을 받았다.
- 동독 경제 엘리트들의 관리 업무는 해결될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계획을 체계적으로 무력화시킴으로써만 달성이 가능했던 계획완수에 대한 책임이 막중했다.
- 작업장 내에서는 종종 종업원들에 대한 “관계 업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 반대로 시장 개척, 상품 개발, 체계적인 마케팅과 같이 현대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경영 능력들은 장려되지 않았다.
- 동독의 경제 엘리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조직 내 특정 위계질서 이상부터 사통당 가입을 통해 기록되어야 했던 국가에 대한 충성이 기대되었다. 부서장(Abteilungsleiter)은 사통당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될 수 있었지만, 콤비나트의 대표(Generaldirektor) 직에는 사통당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거의 오를 수 없었다.

- 그러나 높은 수준의 대학 학위는 동독의 기업 간부들이 갖춰야 할 또 다른 전제조건이었다.

3. 변혁기의 동독 경제 엘리트

3.1 동독 경제의 붕괴

계획경제(Planwirtschaft)에서 시장경제(Marktwirtschaft)로의 전환은 많은 기대를 갖고 추진되었으나 곧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초기에는 통일과 동독 경제의 구조조정이 동서독 경제 모두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충족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동서독의 정치적 통합에 이어 동독에서의 경제적 붕괴가 일어나게 된다.

계획경제의 청산과 적응의 위기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로 동서독 산업의 고용 구조는 극적인 경제적 변화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된다(표 6).

표 6 | 사회적 변혁기 전후를 기준으로 조사된 제조업 분야의 기업규모별 기업 및 직원 수

• 기업 분포도

| | | 직원 수 기준 기업 규모 | | | | | | | |
|-------|------|---------------|-------|-------|---------|---------|---------|-----------|--------|
| | | 연도 | 1~19* | 20~99 | 100~199 | 200~499 | 500~999 | 1,000명 이상 | 합계 |
| 동독 지역 | 1987 | | 3.5% | 15.2% | 15.2% | 25.1% | 16.3% | 24.7% | 3,423 |
| | 1992 | | 14.6% | 57.8% | 14.2% | 8.6% | 2.9% | 1.9% | 6,364 |
| | 1994 | | 11.8% | 67.2% | 12.7% | 6.1% | 1.5% | 0.7% | 6,950 |
| 서독 지역 | 1980 | | 12.6% | 59.9% | 12.9% | 9.3% | 3.0% | 2.3% | 48,719 |
| | 1994 | | 11.6% | 60.8% | 13.5% | 9.3% | 2.9% | 1.9% | 43,700 |

• 직원 분포도

| | | 직원 수 기준 기업 규모 | | | | | | | |
|-------|------|---------------|-------|-------|---------|---------|---------|-----------|---------|
| | | 연도 | 1~19* | 20~99 | 100~199 | 200~499 | 500~999 | 1,000명 이상 | 합계(천명) |
| 동독 지역 | 1987 | | 0.1% | 1.0% | 2.4% | 8.6% | 12.2% | 75.7% | 3,230.6 |
| | 1992 | | 1.2% | 19.8% | 14.6% | 18.9% | 14.5% | 31.0% | 878.2 |
| | 1994 | | 1.6% | 33.2% | 19.3% | 21.4% | 11.8% | 12.7% | 634.1 |
| 서독 지역 | 1980 | | 0.8% | 17.3% | 11.4% | 18.1% | 13.2% | 39.2% | 7,717.7 |
| | 1994 | | 0.9% | 19.2% | 13.2% | 20.2% | 14.2% | 32.3% | 6,231.9 |

* 최소기업은 제한적으로만 비교 가능하다. 동독의 통계에서 최소기업의 상한선은 종업원 수 25명이었다.

** 출처: 동독 국가 중앙 통계 관리청 (Staatliche Zentralverwaltung für Statistik der DDR), 연방 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폴만/게르크스 자료, nach Pohlmann/Gergs 1996, S.98.

2년 사이에 대부분의 대기업들은(사라지거나 부도가 나지 않았다면) 중소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통일 후 2년이 지나자 동독지역의 산업 생산성은 1989년 수준의 73%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수치 뒤에는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적응 위기들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는 동독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영향력의 규모 면에 있어 1930년대에 일어난 세계 대공황과 비견할만한 수준의 것이었다.

콤비나트의 종말

1980년대에 대부분의 동독 근로자들은 직원 수 1,000 명 이상의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서독과 비교했을 때 동독은 대기업 내 인력 비중이 약 두 배에 달했다(동독 75.7%, 서독 39.3%).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 THA)은 1990년 중반부터 콤비나트로 합병된 인민소유기업들을 민영화(사유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콤비나트는 우선적으로 개별 기업으로 분해되었다. 이는 생존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을 영업 이익을 내지 못하는 나머지 작업장들로부터 분리해 내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대기업들은 기업 매각을 용이케 하기 위해 종업원 대부분을 해고하는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신탁관리청의 최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방식은 동독 기업의 매각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1994년 자진 해체 시까지 신탁관리청은 2,560억 마르크

(DM) 규모의 부채를 야기하였다. 이는 매각된 각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1,700만 마르크의 적자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수치에는 특히 당시 기업 관리자 시장의 공급 과잉 현상이 반영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독의 기업 간부였던 자가 경영자 매수(Management Buy Out, MBO)를 통해 과거 콤비나트 소속이었던 기업의 소유주가 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신탁관리청은 민영화 정책을 펼침에 있어 서독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선호하였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동독 지역의 새로운 경제 엘리트들을 포함한 동독 지역의 국민들로부터 만장일치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자료 2). 특히 과거의 인민소유기업의 후속 기업들 중에서 규모가 큰 기업들은 신탁관리청의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 서독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손에 넘어갔다.

3.2 동독 출신의 새로운 경제 엘리트를 위한 직업 교육

그러나 서독의 광범위한 “동독 식민지화”라는 인식은 1990년 이후의 경제적 전환(Transformation)의 틀 내에서의 기업 창업을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 일부 인민소유기업의 후속 기업(일명 계열사 분리, Ausgründungen)들을 포함한 창업 기업들은 동독 출신의 경제 엘리트들에 대한 직업 교육에 있어 확실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기업들은 동독 출신의 대표들에 의해 경영되었기 때문이다. 제조업 분야와 직원 수 50~1,000 명 규모의 기업에서 차지하는 동독 출신의 기업 대표 비율은 지난 몇 년간 약 2/3 로 유지되고 있다(표 3).

이러한 수치에 따르면 동독지역 경제 전환이 동독지역 경영계의 식민지화를 불러 올 것이라는 90년대의 우려는 예상했던 만큼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물론 민영화된 대부분의 대규모 기업들에서는 과거의 기업 간부들이 소유주가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엘리트 순환(Elitenzirkulation)이 일어나기는 했다. 반대로 신설 기업에서는 과거의 기업 간부들이 소유주가 되는 엘리트 재생산(Elitenreproduktion) 현상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통용되는 일반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구동독 지역의 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본 소유주는 서독인이나 외국인인 경우가 많다.

콤비나트 엘리트들의 잔류

지금까지 요약한 동독 경제의 변화는 기업 간부들에게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장년층 간부들은 조기 은퇴를 권고 받았다. 2000년 과거 콤비나트 엘리트들(즉, 동독 콤비나트의 지도자급 위치에서 근무한 자)의 잔류에 관해 실시된 연구 자료는 경제적 전환이 이들의 인생 계획과 경력에 있어 일종의 단절을 의미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 하락(soziale Abstiege)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기업 간부들은 통일 후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재사용할 수 있는 일 자리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표직 혹은 임원직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달했다(도표 7,8).

휴직자와 은퇴자의 비율은(즉, 1990년 이후 실업자가 되었거나, 연금 생활자가 된 기업 간부들의 비율) 해당 인물이 동독 경제에서 몸담았던 전문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특히 이러한 비율이 낮은 분야로는 기술 분야 혹은 연구 개발(R&D) 분야

표 7 | 1990년 통일 후 약 10년 간 과거 동독 콤비나트 엘리트들의 직위, 임의 추출 조사 표본 58 건.

| 직위 | 비율 |
|-------------------------|-----|
| 경제 기업 대표 | 36% |
| 경제 기업 관리자급 중 지도적인 직위 | 12% |
| 경제 기업 직원 | 9% |
| 자영업자 | 7% |
| 연맹 대표 | 3% |
| 노동 지원 기업 관리자급 중 지도적인 직위 | 2% |
| 행정 부문 관리자급 중 지도적인 직위 | 2% |
| ABM*-프로젝트 직원 | 2% |
| 실업자 | 2% |
| 조기 은퇴자 / 연금 생활자 | 24% |

* ABM이란 고용지원센터(Agentur für Arbeit)에서 재정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조치를 의미한다. 일자리 창출 조치는 실업자들에게 일반 노동시장 외에서의 (일명 “제 2 노동시장 (Zweiter Arbeitsmarkt)”)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BM은 1990년대 독일 전역에서 활발히 실시되었다.

** 출처: Schreiber et al. 2002, S. 139.

표 8 | 1990년 통일 후 약 10년 간 과거 동독 콤비나트 엘리트들의 전형적인 경력 유형의 비율, 임의 추출 조사 표본 289건.

| 경력변화 | | 비율 |
|----------------------|---|-----|
| 설립자 (Gründer) | 자신의 기업을 설립하고, 그 기업에서 대표로 활동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 엘리트로 분류될 수 있다 | 20% |
| 지속자 (Fortsetzer) | 오너가 따로 있는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 혹은 임원으로서, (조건적으로만) (지역) 경제 엘리트로 분류될 수 있다 | 20% |
| 신분하락자 (Absteiger) | 자신의 엘리트 신분을 잃게 된 자로, 한 기업의 전문 능력을 갖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 17% |
| 잔류자 (Bleiber) | 콤비나트 후속 기업의 최고 경영자 직을 넘겨받아, 콤비나트의 해체와 정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 18% |
| 이직자 (Wechsler) | 다른 엘리트 분야의 최고 경영자 혹은 임원직책으로 이직 (예: 행정 분야의 대표) | 5% |
| 휴직자 (Ausfaller) | 대부분의 직업 이력이 실업으로 접철된 자 | 4% |
| 은퇴자 (Aussteiger) | 곧바로 조기 은퇴 혹은 연금 생활자로 전환 | 16% |

출처: Schreiber et al, 2002, S. 141.

인 것으로 나타났다(도표 9). 그러나 콤비나트의 대표나 부대표들도 대부분의 경우 구동독 지역의 전환된 경제 속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다.

과거의 기업 간부들은 통일 후에도 놀랄만한 수준으로 성공적인 경력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위에 언급한 잔류 연구의 일환으로 이들에게는 개인적인 결산을 내려보라는 요청이 이루어졌다: 이들 중 86%가 스스로를 통일의 승자로 평가하였으며, 36%만이 자신을 통일의 패자로 평가하였다. 이는 즉, “통일 후 자신들의 경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에서 평가한 자들도 이들 중에는 상당 수 존재했음을 뜻한다”(Schreiber et al, 2002, S. 151).

표 9 | 1990년 통일 후 약 10년 간 과거 동독 콤비나트 엘리트들의 관리 분야에 따른 휴직자 및 은퇴자 비율.

| 관리 분야 | 휴직자 및 은퇴자 비율 |
|-----------------------|--------------|
| 연구 개발 (R&D) | 0% |
| 과학 기술 | 5% |
| 자재 관리 | 7% |
| 특정 관리 분야가 없는 대표 및 부대표 | 14% |
| 기술 | 15% |
| 대표 | 16% |
| 데이터 처리 | 17% |
| 생산 |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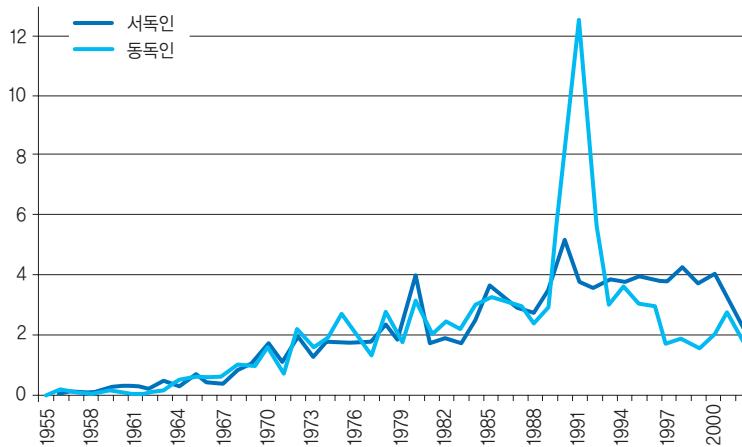
* “휴직자 (Ausfaller)” = 1990년 이후 직업적 운명이 주로 실업으로 점철된 자; “은퇴자 (Aussteiger)” = 연금 생활자.

** 출처: Schreiber et al. 2002, S. 144.

90년대 초 동독지역의 기업 창업자가 될 수 있었던 짧은 기회의 창

특별연구영역 580(Sonderforschungsbereich 580)의 기업 대표 설문에서는 2002년에 직업 이력도 조사되었다. 동독 경제의 개혁상은 90년대 초에 수없이 일어난 직업상의 지위 변화에도 반영되고 있다(도표 5). 동독인 사장과 대표들 중에는 90년대 초 구동독 지역에서 기업 대표직에 올라,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2002년 설문 조사 시점에 수행하고 있던 직책에 머문 기간은 동서독 지역을 비교해 볼 때 극심한 차이가 나타난다(도표 6). 부분적으로 동독인 기업 대표들이 서독인 기업 대표들보다 대표직을 더 오랫동안 수행한 이유는 사내 지분 보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기업 소유주는 외부 경영인보다 회사를 자주 바꾸지 않으며(너무나 빠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소유주가 아닌 경영인이 한 기업에 머무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기업 오너의 경우보다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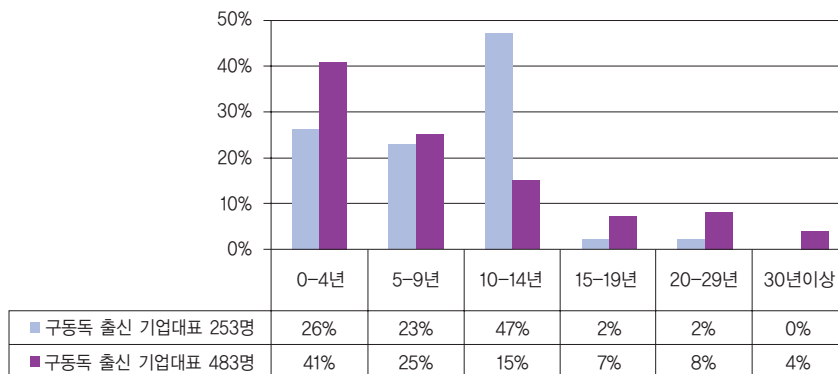
도표 5 | 직원 수 50~1,000 명의 제조업 분야 기업 대표들의 직업적 변화의 시작 연도 분포도



* 설문 시기 2002.

** 출처: 특별연구영역580, 부분 프로젝트 A2의 기업 설문조사, 경력의 변화에 관한 자료, Martens 2005, S. 214.

도표 6 | 2002년 기준 직책 유지 기간



* 직원 수 50~1,000 명의 제조업 분야 기업 대표들의 현 직책 유지 기간, 설문 시기 2002.

** 출처: 특별연구영역580, 부분 프로젝트 A2의 기업 설문조사, 경력의 변화에 관한 자료.

그러나 이러한 기업 소유의 특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동서독 경영인 간에는 한 기업에 머무는 기간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동독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서독인들과 비교해 보면, 동일한 경우의 동독인들은 대부분 90년대 초에 존재한 짧은 기간을 이용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어쩌면 이들은 이러한 기간만 이용할 수 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시장이 분화되고,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들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독인 사장과 기업 대표들의 비교 자료들은 90년대를 통틀어 비교적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동독 경제 엘리트들에게 변혁기(Wendezeit)는 “원점(Stunde Null)”을 의미했다.

이는 경력의 변화나 창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경제의 전환 과정 속에서 과거 기업 간부들이 갖고 있던 노련한 기술(예: “카오스 경영”)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았다. 경제의 토대가 광범위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 과거 기업 내외의 인맥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 기업들은 동독에서 더 이상 자사 제품에 대한 공급 독점권을 갖지 못했다.
- 이는 이러한 제품의 구매자가 이제 선택의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기업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 동시에 기업들은 서로 경쟁을 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쟁은 지역적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의 동독 경제는 1990년 화폐 통합을 통해 세계 시장의 일부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의 기업 간부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정의하고 있었다(자료 3).

3.3 통일 후 동독 경제 엘리트들의 경력 변화상

동독 출신의 지역 경제 엘리트들의 직업 이력을 정확히 관찰해 보면, 이들의 경력은 세 가지 유형으로 압축된다(표 10).

첫 번째 경력 유형에서는 동일한 기업 내에서의 지속적인 고용 기회가 지배적으로 나

표 10 | 동독 지역의 직원 수 50~1,000 명의 제조업 기업 대표의 경력 유형의 특징

| 독립 변수 | 경력 유형 | | | | | | | | | | 표본추출 조사 합계 |
|--------------------------------|---------------------|----------------------|----------------------------|-----------------|------------------|--------------------|--------------------|--------------------|---------------------|--------------------|---------------------|
| | 본문에 요약된 유형 1, 2, 3 | | | 본문에 요약된 유형 4, 5 | | | 본문에 요약된 유형 6, 7 | | | 7: 동일 후 경영자 직책에 변화 | |
| 1: 동일 후에도 동일한 직책 유지 | 2: 동일 기업 내 "동일의 승자" | 3: "조기 기업 교체로 인한 승자" | 4: 90년대 기업 교체로 인한 "동일의 승자" | 5: 기업 이직자 | 6: 동일 기업 내 경영자 직 | 7: 동일 후 경영자 직책에 변화 | 8: 동일 후 경영자 직책에 변화 | 9: 동일 후 경영자 직책에 변화 | 10: 동일 후 경영자 직책에 변화 | | 11: 동일 후 경영자 직책에 변화 |
| 해당 기업 인사연도 (평균치) | 1973 | 1978 | 1984 | 1991 | 1991 | 1988 | 1995 | 1984 | | | |
| 취업활동 시작연도 (평균치) | 1965 | 1968 | 1968 | 1970 | 1968 | 1971 | 1973 | 1969 | | | |
| 연령 (평균치) | 56 | 54 | 53 | 52 | 52 | 50 | 48 | 53 | | | |
| 여성 비율 | - | 2.9% | 21.4% | 3.6% | 10.3% | 14.3% | 5.0% | 7.6% | | | |
| 사장 (Geschäftsführer) | 100.0% | 83.8% | 78.6% | 89.3% | 89.7% | 76.2% | 80.0% | 84.8% | | | |
| 공장장 (Betriebsleiter) | - | 7.4% | 7.1% | 7.1% | 6.9% | 14.3% | 10.0% | 7.6% | | | |
| 총지배인 (Prokuristen) | - | 8.8% | 14.3% | 3.6% | 3.4% | 9.5% | 10.0% | 7.6% | | | |
| 경영간부직으로 해당 기업에 입사하지 않음 (내부 승진) | 82.4% | 82.4% | 78.6% | 14.3% | 27.6% | 61.9% | 45.0% | 59.7% | | | |
| 기술 분야 전공 비율 | 94.1% | 89.7% | 71.4% | 92.9% | 89.7% | 81.0% | 80.0% | 86.3% | | | |
| 경영학 전공 비율 | 17.6% | 17.6% | 42.9% | 21.4% | 20.7% | 28.6% | 30.0% | 24.2% | | | |
| 기업 지분 보유 비율 | 76.5% | 57.4% | 66.7% | 64.3% | 65.5% | 33.3% | 35.0% | 57.6% | | | |
| 기업 지분 회사 설립 | 7.7% | 20.5% | 11.1% | 55.6% | 68.4% | - | 42.9% | 62.8% | | | |
| 획득 방법 매입 | 84.6% | 76.9% | 72.2% | 50.0% | 21.1% | 85.7% | 42.9% | 62.8% | | | |
| 신설 기업 | 11.8% | 28.8% | 34.6% | 81.5% | 63.0% | 38.1% | 52.6% | 42.9% | | | |
| 임의표본추출조사 내 비율 | 8.1% | 32.2% | 13.3% | 13.3% | 13.7% | 10.0% | 9.5% | | | | |

* 설문 조사 시기: 2002, 통계적 분석을 통해 유사 직업 이력의 유형이 산출됨. 본문에는 이력 유형 1, 2, 3, 4, 5, 6, 7이 요약되어 있음.

** 출처: 특별연구영역580, 부분 프로젝트 A2의 기업 설문 2002, 이력 유형의 사진 자료 기록, Martens 2005, S. 221f

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는 콤비나트 기업에서 수행한 직책과 역할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경제 전환기가 시작된 후 최초 몇 년 간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관리자 직급에서 경영자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었다. 이러한 승진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 소유 지분의 매입과 연결되어 있었다. 기업 지분 매입의 경우를 포함해서 동일한 기업 내에서 직업을 유지한 이러한 유형이 절반 이상(53.6%)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성공을 거둔 동독 기업 대표들이 90년대에 누린 지배적인 기회구조(Gelegenheitsstruktur)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직업 이력의 두 번째 유형은 기업이 교체되었거나 혹은 새로이 설립되었을 경우에만 경영진으로의 승진이 근본적으로 가능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앞서 밝힌 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유형에서도 승진은 주로 기업 지분의 매입을 통해 이루어 졌다. 응답자의 1/3 이상은 경영진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이유로(90년대 초의) 기업 교체를 꼽았다(27.0%).

기업에 잔류한 인물군은 평균적으로 위의 두 가지 경력 유형에 속하는 인물군보다 연령이 낮은 “차세대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기업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인물 중 일부는 오랜 기간 동독의 콤비나트 기업에서 근무하였으나, 90년대 초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기업 교체를 완성해야 하는 기회 혹은 그 불가피성을 깨달은 자들이다. 이들이 경영진으로 승진된 시기는 90년대 말, 혹은 그 이후였다. 동독 기업인 응답자 중 약 1/5이 이러한 커리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 기업가들의 경력에서 나타나는 지속성의 특징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동독 기업 간부들 사이에서 목격되는 지속성의 규모는 놀라운 수준이다. 이는 정치 엘리트의 경우와 매우 상반된 상황이다.⁸ 동독 경제 간부들이 계속 동독 지역의 경제계에 남아 활동한 이력을 살펴보면, 이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공률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0년대 초에 존재한 비교적 짧은 기회의 창이

8 샷틀러 (Sattler)와 보이어 (Boyer)는 일반적으로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에서는 동일한 경향이 눈에 띄게 목격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2009, S. 61): “경제계의 최고 경영자들은 정치계에서보다 훨씬 더 느리게 교체되었다 (The change in personnel on the top floors of the economy was much slower than in the field of politics).”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과거 동독의 경제 간부들에게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신탁관리청의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과거 동독의 경제 간부들이 초기에 겪어야만 했던 출발선상의 불리함(Startnachteile)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 엘리트들의 직업적 이력에는 사회적 시스템의 단절을 뛰어넘은 놀라운 지속성이 존재한다.

3.4 구동독 지역 경제 엘리트들의 고학력 추구 현상

동독 경제 엘리트들에게서 나타나는 눈에 띄는 특징은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 방침과 대학 학위를 선호하는 점이었다. 90년대 동독지역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동독 출신의 임원 중 71~89%에 달하는 이들이 엔지니어 혹은 자연과학 분야를 전공한 것을 알 수 있다. 게르크스(Gergs)와 폴만(Pohlmann)은 1999년 “이미 동독에 존재했던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의 (경영진) 지배 현상은 체제전환 과정을 통해 (90년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과거’의 체제로부터 이데올로기에 덜 물든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랬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과거 속에서 축적한 교육 자산을 전환된 사회에서 더욱 쉽게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S. 237).

사회과학적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기술 분야의 전공 이력과 새로운 기업의 조직 모델, 혹은 새로운 동독 경제 엘리트들의 경영 능력 부족 간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조직의 기계적 모델”이 기술 분야의 교육을 받은 동독 경영진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남.
- 제품 개발의 초점을 기술적 실현에 맞추는 경향이 너무 강함.
-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이 너무 약함.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때는 경제적 전환기 동안 새로운 기업들에서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던 특정한 정황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임원들은 글로

별 경쟁 속에서 더 이상 존속 할 수 없었던(예: 섬유 및 의류, 석탄화학, 가전, 세라믹, 전통적 광학 분야) 업종들보다는, 전도유망하고 미래 지향적인 업종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었다”(Schmidt 2005, S. 236). 구동독 지역의 경제 엘리트에 관한 최신 연구들에서는 전공 분야와 경영 능력 간의 연관성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다.

3.5 요약

동독의 과거 기업 간부들은 통일 이후에도 대부분 놀라운 수준의 성공 가도를 달린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곧잘 통일 후에도 동독지역에 새로이 설립된 기업의 대표직을 맡을 수 있었다. 특히 산업적 중소기업에서 활동한(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구동독 지역의 경제 엘리트들을 살펴보면,

- 이들은 주로 자연과학 분야의 학위를 지닌 자들로, 1989년에 이미 콤비나트의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 통일 후 이들의 경력을 통해 나타난 특징으로는 90년대 초 새로이 설립된 기업의 대표로 승진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었던 작은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을 꼽을 수 있다.
- 동시에 이러한 동독 출신의 지역 경제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회사나 업종, 지역을 거의 바꾸지 않는 성향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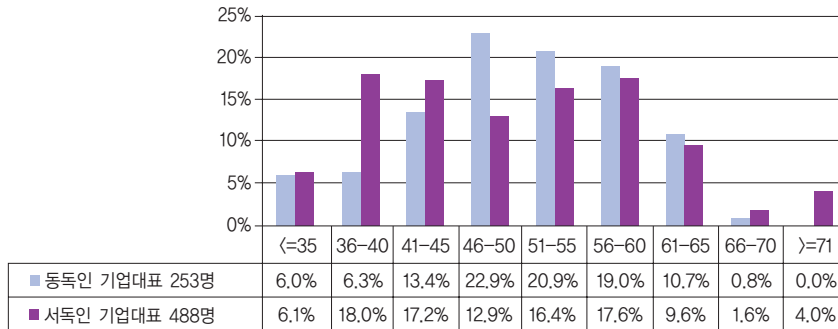
4. 변혁(Wende) 20년 후의 동독의 경제 엘리트

4.1 세대교체의 지연

구조조정과 기업 대표의 세대교체는 별개로 진행

구동독 지역에서는 하나의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다. 기업 대표의 세대교체와 경제 전환으로 인한 경제 기관의 구조조정이 철저히 별개의 문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통일

도표 7 | 2002년 기준 기업 대표들 연령 분포도



* 직원 수 50~1,000 명의 제조업 분야 기업 대표들의 연령 분포도, 설문 시기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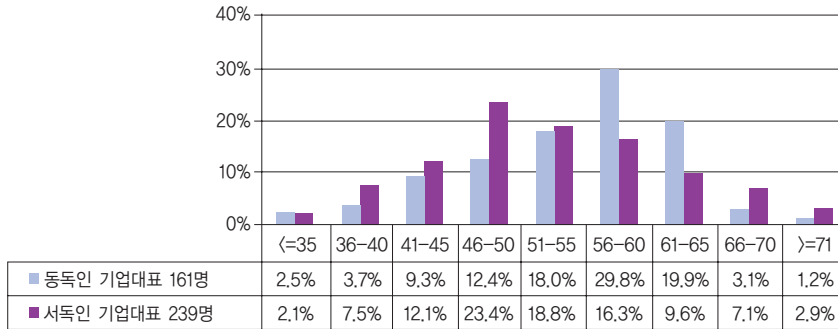
** 출처: 특별연구영역580, 부분 프로젝트 A2의 2002년 기업 설문조사.

과 함께 사회, 경제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단행된 데 비해, 경제적 기능 엘리트 사이에서의 세대교체는 부분적으로 “정지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특정 연령과 특별한 조건 하의 인물들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작은 기회의 창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은 주로 1989년에 약 40세였던 동독 기업 위계질서의 “두 번째 서열”에 속한 이들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은 2002년에 조사된 동독 기업 대표들의 연령 분포도에도 반영되고 있다(도표 7). 2002년 당시 동독 기업 대표직을 맡은 이들의 주 연령대는 45세에서 60세 사이였다. 반대로 서독 비교 집단의 연령 분포도는 훨씬 더 균질하게 나타났다. 8년이 지나자 동독 기업 대표들의 주요 연령대는 더욱 높아졌다(도표 8).

이는 가까운 미래에 구동독 지역 기업 대표들의 세대교체가 대규모로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교체는 향후 수 년 내에 경제 기능 엘리트들의 구성 방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동독 지역의 중소기업 대표 중 다수가 콤비나트 경제에서의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표 11). 여전히 구동독 지역 기업 대표들 중 절반 이상이 동독에서의 경영 이력을 갖고 있다.

도표 8 | 2010년 기준 기업 대표들의 연령 분포도



* 직원 수 50~1,000 명의 제조업 분야 기업 대표들의 연령 분포도, 설문 시기 2010.

** 출처: 특별연구영역580, 부분 프로젝트 A2의 2010년 기업 설문조사

표 11 | 1989년 이전부터 인사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경영 직책을 담당한 기업 대표의 비율

| 설문 연도 | 1989년 이전부터 경영 책임을 맡았던 기업 대표 비율 | |
|-------|--------------------------------|-------|
| | 동독인 | 서독인 |
| 2002 | 79.1% | 72.0% |
| 2005 | 74.8% | 55.7% |
| 2010 | 67.1% | 54.8% |

* 직원 수 50~1,000명의 제조업 분야 기업 대상, 설문 시기 2002, 2005, 2010.

** 출처: 580개 특별연구영역, 부분 프로젝트 A2의 기업 설문조사.

4.2 동독 경제 엘리트들에게서 나타난 높은 기업 지분 소유 비율

신탁관리청에 의한 민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구동독 지역에서는 “경영자 자본주의”가 생겨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자 자본주의란 지역적 연고가 없는 서독 출신의 경영자가 동독지역의 기업에서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예측은 빛나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표 12 | 기업 대표에 의한 기업 지분 소유 여부

| 기업 대표 전체 중 기업 소유주 비율 | |
|----------------------|-----|
| 동독 | 서독 |
| 51.3% | 44% |

* 직원 수 50~1,000 명의 제조업 분야 기업 대상.

** 출처: 특별연구영역580, 부분 프로젝트 A2의 2010 기업 설문조사.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의 구동독 기업 대표의 기업 지분 보유율은 지난 몇 년 간 서독의 비교 집단의 기업 지분 보유율을 넘어 서고 있다(표 12).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간의 차이와 공통점

동독지역에 입지를 둔 동독 기업 대표들의 특징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러한 지분을 매입 혹은 설립을 통해 획득했다는 점이다. 서독지역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하가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들 중 25%는 단일 소유주인 것으로 나타났다(단일 소유주의 비율은 구동독인의 경우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자본을 축적할 가능성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서독지역에서 소유권 획득은 대부분 상속과 증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0년에 기업 양도를 앞두고 있는 기업 대표들 중 1/3 이상이 친족 내 양도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동서독의 차이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 내 세대교체라는 전통적인 형태는 기타 인물 집단 혹은 기타 기업에 기업을 양도하는 것에 비해 지배적인 형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3).

“가족 자본주의적” 구조는 일반적으로 독일 경제에서 여전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⁹ 이러한 구조는 한 사람이 회사 소유와 회사 경영을 동시에 수행하는 소유자-기업가 형태의 회사 소유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뜻한다. 가족 내 기업 승계는 동독 지역 경제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지배적으로 추구되는 기업 존속의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몇 십 년 간 동독 지역에서도 서독 지역과 유사하게 가족 중심의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족 자본주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표 13 | 1989년 이전부터 인사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경영 직책을 담당한 기업 대표의 비율

| 기업 대표의 후계자는... | 기업 대표 | |
|----------------|-------|-------|
| | 동독 출신 | 서독 출신 |
| 친척 | 34.8% | 39.5% |
| 공동 소유자 | 9.2% | 4.6% |
| 고용 중인 관리자 | 13.5% | 6.7% |
| 직원 | 1.4% | 1.0% |
| 외부 관리자 | 2.1% | 4.6% |
| 다른 기업 | 1.4% | 1.5% |
| 계획 중인 기업 이전 건수 | 141 | 195 |

* 직원 수 50~1,000명의 제조업 분야 기업 대상, 설문 시기 2002, 2005, 2010.

** 출처: 580개 특별연구영역, 부분 프로젝트 A2의 기업 설문조사.

4.3 전공이력의 균등화

한 국가의 경영 문화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요소는 최고 경영자 층의 전공이력(Qualifikationsprofil)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서독 경영진의 특징으로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 꼽혔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구서독 지역에서는 경영학과 경제학 분야를 전공한 대표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학 분야를 전공한 기업 대표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서독 지역의 산업적 중소기업 경영진의 기술 및 공학 전공 비율은 52.4%이다.

동독 최고 경영자들의 조사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여전히 공학과 기술 분야를 전공한 인물들의 분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자연과학 및 기술 분야의 졸업 비율은 70~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4).

9 클라인(Klein)의 연구에 따르면 2백만 ~ 1억 마르크(DM)의 매출을 올리는 독일 기업 중 가족 중심의 기업 비중은 70%에 달한다. 가족 중심의 기업들은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일반 기업에 비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가족 중심의 기업들은 일반 기업에 비해 (내수) 매출이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lein 2004, S. 51). 특별연구영역580의 최신 연구 결과들 역시 이러한 수치를 재확인 시켜주고 있다.

표 14 | 기업 대표들의 공학 분야 졸업자 비율

| 설문 연도 | 기업 대표 | |
|-------|-------|-------|
| | 동독 출신 | 서독 출신 |
| 2002 | 71.8% | 41.4% |
| 2005 | 74.1% | 39.3% |
| 2010 | 80.0% | 53.8% |

* 직원 수 50~1,000 명의 제조업 분야 기업 대상, 설문 시기 2002, 2005, 2010.

** 출처: 특별연구영역580, 부분 프로젝트 A2의 기업 설문조사.

표 15 | 동서독 기업의 경영진 중 기술/자연과학 분야 전공자 비율

| 설문 연도 | 기업 소재지 | |
|-------|--------|-------|
| | 동독 지역 | 서독 지역 |
| 2002 | 72.7% | 56.6% |
| 2005 | 67.2% | 49.8% |
| 2010 | 61.7% | 46.6% |

* 직원 수 50~1,000 명의 제조업 분야 기업 대상, 설문 시기 2002, 2005, 2010.

** 출처: 580개 특별연구영역, 부분 프로젝트 A2의 기업 설문조사.

이러한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전공 이력의 변화는 일반적인 경영진에 비해, 특히 동독의 최고 경영자들 사이에서 훨씬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몇 년 간 점점 더 많은 경제학 전공자들이 채용된 데 반해, 동독의 최고 경영자 층에서는 서독과의 동화 과정이 훨씬 더 빨리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의 경영진의 전공 이력 간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표 15).

4.4 동서독 경제 엘리트들의 의견 유형

아래에서는 그 실제적인 예로서 동독과 서독 경제 엘리트들의 의견 유형을 비교하고, 더 나아가 최근의 국민 여론을 접목해 그 비교 내용을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다.

동서독 경제 엘리트들의 사회 정치적 견해 비교

경제적 기능 엘리트들 간의 동서독 차이는 사회 정치적 정향에 있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사회 정치적 정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좁혀질 수 있다.

-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자(soziale Marktwirtschaftler)” – 기업 실무에 있어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익 분배를 우선시 하며, 기업의 행위에 있어 사회적 통합의 측면을 고려하려는 자
- “경쟁적 자본주의자(Konkurrenzkapitalisten)” – 신자유주의적 경제 입장을 대변하고, 경쟁적 자본주의의 수익 최대화 전략이 낳는 사회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자

동서독의 차이는 사회 정치적 방향의 유형에 있어 지배적인 요소이다. 서독의 기업 대표들의 경우 약 2/3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자”인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동독 기업 대

표 16 | 동서독 기업 대표 중 경쟁적 자본주의자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자의 비율

| 설문 연도 | “경쟁적 자본주의자” | |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자” | |
|-------|---------------|---------------|---------------|---------------|
| | 동독 기업대표 비율 | 서독 기업대표 비율 | 동독 기업대표 비율 | 서독 기업대표 비율 |
| 2002 | 61% | 37% | 39% | 63% |
| 2005 | 66% | 38% | 34% | 62% |
| 2010 | 55% | 31% | 45% | 69% |

* 직원 수 50~1,000 명의 제조업 분야 기업 대상, 설문 시기 2002, 2005, 2010.

** 출처: 580개 특별연구영역, 부분 프로젝트 A2의 기업 설문조사, 자가 산출 및 Martens 2007.

표들은 과반수 이상이 “경쟁적 자본주의자”로 분류되었다(표 16). 응답자의 출신 지역은 이러한 의견 유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독 기업인들 중 경쟁적 자본주의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이유는 동독 지역의 낮은 수입을 통해 일부 설명될 수 있다(Martens 2007). 2002~2010년 사이에 진행된 다양한 설문 조사들은 특히 동독인들 중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따라서 경쟁적 자본주의자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

독일 국민과 경제 엘리트 간의 의견 일치와 차이

경제 엘리트와 국민들의 의견 유형에는 어떠한 차이들이 존재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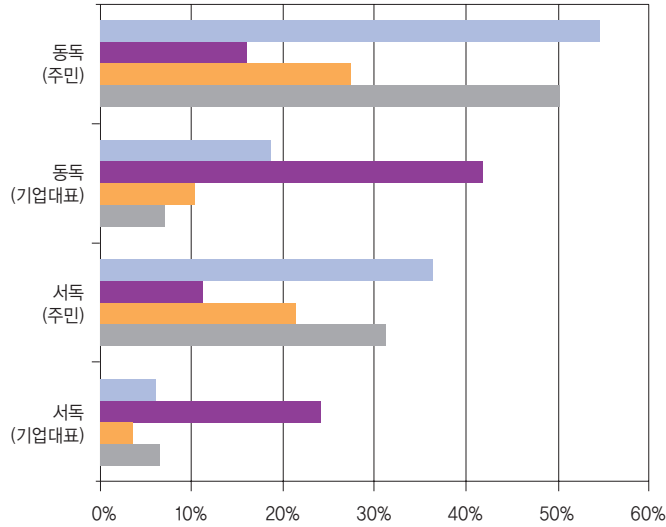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서독 비교에서는 국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구동독 국민 중 약 절반이 부의 재분배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했다. 구서독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서독 국민들의 입장은 국가가 경제에 미치는 그 어떤 영향력에도 반대 의사를 내비친 구서독 경제 엘리트들의 의견과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도표 9).

기업 대표들 간에 나타난 동서독의 차이에는 동서독 주민들의 답변 유형이 반영되어 있다. 기업 대표들 과반수 이상은 부의 재분배에 반대하였으나, 동독 기업 대표들의 반대 의사는 서독 기업 대표들보다 약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동서독 국민들의 의견 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사회적 공평성이 별개의 문제이며, 노조를 불필요한 존재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도 비슷한 답변 양상이 목격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내려 볼 수 있다:

- 한편으로 동서독 비교는 역사적 발전과 개인적 사회화의 장기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동서독 비교는 국가와 시장 경제에서의 기업, 노동자의 이익 대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국민과 경제 엘리트 간의 의견 차이는 상이한 사회적 위치로 인해 유발되는 이익 대립에 기인할 수 있다.

도표 9 | 기업대표 - 주민 비교



| | 동독(국민) | 동독(기업대표) | 서독(국민) | 서독(기업대표) |
|---|--------|----------|--------|----------|
| ■ 국가의 사회 정치적 책임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 | 6.1% | 36.4% | 18.7% | 54.6% |
| ■ 노조는 불필요한 존재다 | 24.2% | 11.2% | 41.9% | 16.0% |
| ■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사회적 공평성이 별개의 문제이다. | 3.5% | 21.3% | 10.3% | 27.4% |
| ■ 국가는 경제를 조정하고 통제해야 한다. | 6.5% | 31.2% | 7.1% | 50.2% |

* 지역 경제 엘리트 (산업적 중소기업의 기업 대표)와 주민들 간의 선별적 의견 유형 비교.

** 출처: 특별연구영역580, 2010 국민 여론조사 Part A 및 580개 특별연구영역, 2010 A2 프로젝트 제 3차 기업 설문 조사.

마지막에 언급한 차이들은 그 영향력이 다른 차이들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주민과 경제 엘리트 간의 의견 사이에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주민과 기업 대표 모두에서 나타난 동서독 간의 차이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서독” 혹은 “동독”에서 장기간 지속된 특징은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영향력이 남아 있다.

4.5 결론

동독 출신의 지역 경제 엘리트들은 여전히 “전환의 오랜 그림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엘리트들에게서는 다음과 같은 지배적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

- 동독에서 처음으로 경영에 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 기술 분야를 전공한 이력이 있다.
- 이들의 사회 정치적 정향은 서독 비교 집단과 비교할 때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동서독 경제 엘리트들의 의견은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크게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동독 지역 기업 대표들의 연령구조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대규모 세대교체가 일어날 것이 확실시 되며, 이는 주로 가업 승계라는 전통적 방식을 통해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세대교체가 기업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특히나 산업적 중소기업 내 새로운 경영 컨셉의 도입(예: 관리 부문의 강화 및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한 노력)과 동독 기업의 변화된 제반 조건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추측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향후 몇 년 간은 동독 기업의 종업원들에 있어서도 상당한 세대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미래의 “이중 세대교체”는 기업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 기업 내 구조조정 가속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자본주의적” 구조의 전통 유지

- 당간부가 경영인으로. 통일 전후 동독 경제 엘리트의 구조적 변화. Best, H., 2007. Cadres into Managers: Structural Change of East German Economic Elites before and after Reunification. In: Lane, D./Lengyel, G./Tholen, J.,(Hrsg.), Restructuring of the Economic Elites after State Socialism. Recruitment, Institutions and Attitudes. Stuttgart, S. 27~44.
- 독일의 엘리트, 충원과 통합, Bürklin, W./ Rebenstorf, H.(Hrsg.), 1997. Eliten in Deutschland. Rekrutierung und Integration. Opladen.
- 통일 전후의 경제 엘리트. 체제전환 과정의 선택, Gergs, H.-J./ Pohlmann, M., 1999. Ökonomische Eliten vor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Die Selektivität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In: Hornbostel, S.(Hrsg.), Sozialistische Eliten. Horizontale und vertikale Differenzierungsmuster in der DDR. Opladen, S. 223~252.
- 엘리트 충원의 시장화? 최고 경영자의 사례, Hartmann, M., 2006. Vermarktlichung der Elitenrekrutierung? Das Beispiel der Topmanager. In: Mönkler, H./ Straßenberger, G./Bohlender, M.,(Hrsg.), Deutschlands Eliten im Wandel. Frankfurt/New York, S. 431~454.
- 생존자와 식민주의자, 신입자들에 대해. 동독 지역의 신규 엘리트, Hornbostel, S., 2000. Von Überlebenden, Kolonisten und Newcomern. Neue und alte Eliten in Ostdeutschland. In: Kursbuch, Nr. 139, 123~136.
- 가족중심 기업. 이론적 경험적 토대. Klein, S., 2004. Familienunternehmen. Theoretische und empirische Grundlagen. Wiesbaden, 2. Auflage.
- 전환의 오랜 그늘. 동독 경제 엘리트들의 경력, Martens B., 2005. Der lange Schatten der Wende. Karrieren ostdeutscher Wirtschaftseliten. In: Historical Social Research, 30, S: 231~237.
- 개종자의 정통고수 - 경제 기능 엘리트들의 의견 유형의 동서독 비교, Martens, B., 2007. Orthodoxie der Proselyten - Einstellungsmuster ökonomischer Funktioneliten im Ost/West-Vergleich. In: Zeitschrift für Soziologie, 36, S. 118~130.
- 가치, 지위, 성취. 엘리트 정의로 인한 사회과학들의 문제에 관하여. Mönkler, H., 2000. Werte, Status, Leistung, Über die Probleme der Sozialwissenschaften mit der Definition von Eliten. In: Kursbuch, Nr. 139, 76~88.
- 정당에 대한 충성, 계획 준수, 전문적? 구동독 산업 간부들의 충원 유형과 경력 발전, Salheiser, A., 2009. Parteitreu, plangemäß, professionell? Rekrutierungsmuster und Karriereverläufe von DDR-Industriekadern. Wiesbaden.

- 서문을 대신하여. 거대 구조, 거대 과정, 거대 비교 – 해석의 틀. Sattler, F./Boyer, C., 2009. In Lieu of an Introduction: Big Structures, Large Processes and Huge Comparisons – A Frame of Interpretation. In: Sattler, F./Boyer, C.,(Hrsg.), European Economic Elites. Between a New Spirit of Capitalism and the Erosion of State Socialism. Berlins, S. 19–70.
- 동독 경영자들의 두 가지 세계, Schmidt, R. 2005. Die zwei Welten der ostdeutschen Manager. In: Historical Social Research, 30, S. 231–237.
- “변혁기”의 엘리트. 동독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연맹 및 콤비나트 간부, Schreiber, E./Meyer, M./Steger, T./Lang, R., 2002. Eliten in “Wechseljahren”. Verbands- und Kombinatführungskräfte im ostdeutschen Transformationsprozess. München/Mehring.
-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경영 엘리트, Pohlmann, M., Gergs, H.-J., 1996. Manageriale Eliten im Transformationsprozeß. In: Pohlmann, M./Schmidt, R.,(Hrsg.), Management in der ostdeutschen Industrie. Opladen, S. 63–98.

동 책자에 실린 내용은 통일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독일 통일 20년 계기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1.4 과거 청산

“국가안전부(슈타지)”가 남긴 문제와
사법적 청산

통 일 부

CONTENTS

제 1 부

과거 청산 · 337

“국가안전부(슈타지)”가 남긴 문제와 사법적 청산 /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1. 동독의 감시기관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 339
2. 과거청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 341
3. 한국에 주는 시사점 · 346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 349

I. 국가안전부(슈타지) · 351

■ 수록자료 개관 · 352

- 자료 1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당중앙문서보관소(Zentrales Parteiarhiv)의 문서 파기 (1997. 1. 4) · 356
- 자료 2 슈타지문서법(Stasi-Unterlagen-Gesetz, StUG)과 슈타지문서관리국(BStU) (2009) · 357
- 자료 3 슈타지문서법 제32조 – 국가안전부 활동의 청산을 위한 슈타지문서 사용에 관한 지침 (2010. 2. 26) · 359
- 자료 4 슈타지문서법 제33조– 절차 관련 지침 (2007. 3. 1) · 360
- 자료 5 슈타지문서법 제32a조– 통보 관련 지침 (2007. 3. 1) · 362
- 자료 6 슈타지문서법 제34조– 언론, 방송, 영화에서의 문서 사용 관련 지침 (2007. 3. 1) · 363

슈타지문서법과 실무를 위한 설명 · 364

- 자료 7 제3장: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제1절: 당사자, 제3자, 국가안전부 직원, 특혜자의 권리 (1993) · 364
- 자료 8 제3장: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제2절: 공공기관 및 비공공기관의 국가안전부 문서 사용 (1993) · 365

- 자료 9 제3장: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제3절: 정치적·역사적 청산을 위한 국가안전부 문서 이용 및 신문과 방송에 의한
국가안전부 문서 이용 (1993) · 367
- 자료 10 로젠홀츠데이터 (2003. 7.) · 368
- 자료 11 슈타지문서관리청(Stasi-Unterlagen Behörde) 조직도 (2009. 3) · 370
- 자료 12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에 대한 안내, 열람 및 반출 신청서 (2009. 3) · 371
- 자료 13 신청서 및 요청서 접수 건 (2009. 3) · 372
- 자료 14 신청서 및 요청서 처리 (2009. 3) · 373
- 자료 15 징역형(刑)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요청서 (2009. 3) · 374
- 자료 16 슈타지문서법(SiUG) 제32조와 제34조에 의거한 신청서 접수와 처리 (2009. 3) · 375
- 자료 17 신청자 유형 - 보고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 (2009. 3) · 376
- 자료 18 주민설문조사의 통계 분석 및 이전 설문조사와의 비교 (2009. 3) · 377
- 자료 19 1945년부터 1990년 독일 통일까지의 연대기 (1945-1990) · 378

II. 사법적 청산 · 379

■ 수록자료 개관 · 380

- 자료 20 법적 기반 · 385
- 자료 21 시효 문제 - 주법무장관회의의 결의사항 (1991. 11. 5-6) · 386
- 자료 22 SED(사통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정지법 (1993. 3. 26) · 387
- 자료 23 공소시효 소멸기간 연장법 (1993. 9. 29) · 388
- 자료 24 동독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 주법무장관회의의 결의사항 (1991. 6. 4-6) · 389
- 자료 25 장벽-국경 초병의 사살행위에 대한 첫 번째 판결 (1992. 1. 20) · 390
- 자료 26 검사의 공소장(요약본) (1992. 11. 30) · 391
- 자료 27 케슬러, 슈트렐레츠, 알브레히트의 헌법소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1996. 10. 24) · 392
- 자료 28 연방재판소의 상고심 판결 - 샤보프스키, 클라이버, 크렌츠 (1999. 11. 8) · 394
- 자료 29 인간 존엄성 침해로 인한 형사소송 중지 - 호네커 사건 (1993. 1. 12) · 395
- 자료 30 사통당 정권과 관련한 1989년 가을 이후의 사법적 청산과 그 한계 · 396
- 자료 31 동독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 사실과 통계 · 398

III. 복권 · 399

■ 수록자료 개관 · 400

- 자료 32 사통당 정권 희생자 분류 · 401
- 자료 33 복권법(Rehabilitierungsgesetz) · 402
- 자료 34 형사복권법(Straf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 (1992. 10. 29) · 403
- 자료 35 행정복권법(Verwaltungs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 (1994. 6. 23) · 404
- 자료 36 직업복권법(Berufliches Rehabilitierungsgesetz) (1994. 6. 23) · 405
- 자료 37 희생자연금(Opferrente) 신청서 · 406
- 자료 38 행정복권법(VwRehaG)에 의거한 무효화, 또는 反법치성 확정 신청서 /
직업복권법(BerRehaG)에 의거한 직업적 복권 신청서 · 407
- 자료 39 상해 피해자 원호금(Beschädigtenversorgung) 신청서 · 408

IV.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독재청산재단) · 409

■ 수록자료 개관 · 410

- 자료 40 앙케이트 위원회(Enquête-Kommission)¹ · 412
- 자료 41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 극복 / 앙케이트 위원회 중간보고서
(1997. 9. 25) · 413
- 자료 42 사통당 독재청산 재단 설립에 관한 법 (1998. 6. 5) · 414
- 자료 43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정관 (2000. 10. 23) · 416
- 자료 44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의 지원 원칙 (2007. 1. 1) · 417
- 자료 45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의 재정 조달 (1998 - 2008) · 418
- 자료 46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의 구조와 사업 분야 (1998 - 2008) · 419
- 자료 47 베를린-호헨쇤하우젠(Berlin-Hohenschönhausen) 기념재단 (1998 - 2008) · 420
- 자료 48 희생자단체 (1998 - 2008) · 421

1 역주: Enquete-Kommission, 연방의회 하원에서 설치한 동독 공산독재 조사위원회.

제 **1** 부

과거 청산

“국가안전부(슈타지)”가 남긴 문제와 사법적 청산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 | | |
|-------------------------------|-----|
| 1. 동독의 감시기관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 339 |
| 2. 과거청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 341 |
| 3. 한국에 주는 시사점 | 346 |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에리히 밀케, 구 동독 국가안전부 장관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운 점은 국가안전부가 구 동독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알게 된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다.

군에서도 정확한 상황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 동독 최고위층의 늙은 정치인들은 정권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 확신할 만큼 고집불통이었던 것 같다.”

베르너 E. 아플라스, 구 동독 군축국방부 차관

요약

동독의 감시시스템이었던 국가안전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약칭은 슈타지)는 이중적 성격을 띠었다.

슈타지는 국가정당의 사적 기관이자, 정부 부처 형태의 국가기관이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기관이었으나, 결국은 주어진 임무, 즉 감시, 국가 안전, 국가 생존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동독에서 일어났던 평화혁명은 시민들 스스로가 행한 해방 운동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재통일은 시민운동에 참가했던 많은 동독 주민들에게 통일이라기보다는 독일 연방으로의 가입에 가까운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국가안전부 소유 문서의 공개는 동독 시민운동가들이 요구한 사항이었으며, 이같은 요구는 특히 서독 정치인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관철되었다. 슈타지 문서에 관한 최초의 법은 동독 말기 최고인민의회(Volkskammer)에서 이미 제정되었다.

과거 청산 작업은 학교와 교육체제에서 전국적으로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많은 슈타지 사무소와 감옥이 박물관이나 기념관으로 전환되었다.

1990년 이후 구 동독에 대한 사법적 청산은 소급 처벌의 금지와 같은 법치주의 원칙을

따랐으나, “승자의 법정”이었다는 정치적인 비난을 면하지는 못하였다.

동독의 국가정당이었던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이하 사통당)의 후속 정당과 그 정치적 추종자들은 동독 체제에 대한 비판은 곧 개인의 평생 업적에 대한 비판이라는 등식을 확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통일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인해 동독을 미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특수한 형태의 향수로서, 흔히 “오스탈기(Ostalgie)²”라 불리운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일방적인 역사관, 경험과 정보부족, 체제전환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과거청산 작업이 어려울 것이다. 한국이 북한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의 과거청산은 한국만의 과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일본도 식민지배 과거를 더욱 철저히 정리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1. 동독의 감시기관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동독의 “국가안전부(슈타지)”는 이중적 성격을 띠었다.

- 국가정당인 사통당의 사적 기관(“당의 칼과 방패”)이자,
- “국가안전부”라는 국가 기관이었다.

슈타지는 대규모, 고비용의 기관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서는 비생산적인 기관이었으며, 결국 주민에 대한 감시와 위협을 통해 국가의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고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

규모

국가안전부에는 1989년 말 정식 직원 약 91,000 명과 비공식 요원(IM) 17만 3천명이 있

2 역주: Ostalgie는 Ost(동쪽, 구 동독을 지칭)와 Nostalgie(노스탈기)를 합성한 단어로, 구 동독 시절에 대한 향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었다.

정찰총국(Abteilung für Spionage, HVA)은 약 1,550명의 서독 주민을 비공식 요원으로 보유하고, 심지어 서독의 최고위층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까지 잘 파악하고 있었다(자료 10).

슈타지는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펠릭스 제르진스키 경비연대³

소총 124,593정

자동권총과 장총 76,592정

탱크와 대공포

강점과 약점

슈타지는 감시 · 위협과 관련하여서는 오랫동안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슈타지의 감시와 위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동독을 떠났다. 이는 다른 원인들(국제적인 고립, 열악한 경제상황)과 더불어 동독의 정신적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슈타지는 구조상의 결함이 있었으나, 동독 주민들이 점점 더 많은 대체 정보출처를 갖게 되고, 이웃국가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동독에서 진행되었던 평화시위의 규모가 슈타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에야 비로소 그 결함이 드러났다. 슈타지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모토 하에 정보수집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지도부에 객관적 분석을 제공하지 못했고, 제공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 자국 주민과 기구들에 대한 의심은 슈타지의 활동 과잉을 초래하였다. 이는 감시 · 억압 기구들의 효능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와 같은 결과는 시위 규모의 확대와 함께 시위 참가자들이 갖게 되는 공포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3 역주: Wachregiment Feliks Dzierzynski는 국가안전부 소속 부대였다.

2. 과거청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전제조건

자기 인민과 국가의 과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꼭 필요하다.

- 학습 능력
- 학습 의지
- (검증가능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과거청산(Vergangenheitsbewältigung)은 독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자국의 과거와 그에 따른 책임을 자기연민이 섞이지 않은 진실한 자세로 인식하고, 그로써 과거시대를 종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과거는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쳐 미래의 발전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므로 “종결시키다/정리하여 마치다”라는 의미에서 “청산”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은 동독의 역사, 특히 국가안전부 활동의 장기적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과거청산과 역사 해석

동독의 평화혁명은 중동부 유럽에서 일어났던 항의·개혁운동의 일부이다. 독일에서는 혁명의 활기를 행정부가 재빨리 이어받았다. 안정과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의 해석도 중요할 것이다.

장벽, 정치적·경제적 침체, 억압시스템/슈타지에 대항하는 혁명이 자유, 개혁, 통일을 위한 혁명으로 바뀌었다.

동독에서 일어났던 혁명적인 움직임과 성과들은 1990년 여름부터 거의 대부분 서독 정치가와 공무원의 손으로 넘어갔고, 그 결과 동독에서는 독일의 통일을 통일이라기보다 가입/편입이라고 보았다.

해방 / 자기 해방

자아의식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사실은 슈타지 권력의 박탈과 슈타지문서의 보관이 주로 동독의 시민운동에 의해 추진되었고 동독 인민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었다는 것이다. 1990년 8월 24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인민회의는 슈타지문서에 관한 첫 번째 법률을 통과시켰다. 요아힘 가욱(Joachim Gauck)은 동독의 마지막 인민회의의 슈타지 해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그는 후에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슈타지문서관리청)” 초대 청장이 되었다. 가욱은 동독 시절을 청산하는데 있어 동독 역사의 정치적, 사법적, 역사적 청산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헬무트 콜(Helmut Kohl) 독일연방총리는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에게 독일 통일의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경제나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40년 동안 스탈린주의로 상처받은 영혼들⁴이라 말했다. 이 발언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 의해 해방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동독의 시민운동권과 절대 다수 주민들은 당시 자신들이 이미 스스로 깨어나 있는 상태였으며, 통일은 자기 해방의 행위였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문서 공개

국가안전부는 수많은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종이를 모두 연결하면 약 178킬로미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1989년 12월부터 시민위원회들은 슈타지문서의 파기를 막기 위해 슈타지 사무소들을 점거하였다(자료 1). 1990년 3월 8일 동독 각료회의(Ministerrat)는 국가안전부 비공식 요원(IM) 109,000명과 관계를 정리하였다.

1990년 1월 15일 시민위원회들은 동베를린에 위치한 슈타지 본부를 점거하였다. 슈타지뿐만 아니라 국가정당이었던 사통당(SED)도 기밀문서를 파기하였다. 현재 과거 슈타지 사무소들과 슈타지 감옥 다수가 박물관과 기념관으로 개조되어 그곳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문서접근권은 아직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문서에 대한 접근을 반대했다. 서독에서는 콜(Kohl) 총리와 쇼이블레(Schäuble) 장관이 기밀문서를 문서보관소

4 Hans Jürgen/Daniel Hofmann, 1998,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München: R. Oldenbourg, S. 1127.

에 폐쇄 보관하거나 심지어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타 드메지에(Lothar de Maizière) 신임 동독 총리는 감시 대상자였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작성된 문서를 보게 될 경우 “살인”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동독의 시민인권운동가들은 자유로운 접근을 주장하였고, 그들의 뜻은 상당 부분 관철되었다.

1991년 12월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이 슈타지문서법을 결의했다(자료 2). 2009년 말까지 200만 명이 넘는 동서독 주민들이 슈타지문서를 열람했다(자료 12). 비공식협력자(IM)들은 문서에 가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신에 관한 문서에서 비공식협력자의 보고와 비방을 발견할 경우 비공식협력자의 실명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실명 고지 신청은 대부분의 경우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복수 행위는 알려진 바가 없다.

3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슈타지문서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쳤다. 가옥관청은 요청된 인물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할 뿐이고, 근로자의 해고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였다.

1991년 연방하원은 동독과 서독 출신 모든 의원에 대해 조사하자는 안을 부결시켰다. 조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밀고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사통당의 다수 주요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2년까지 진행된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에 관한 슈타지문서 관련 소송⁵을 계기로 슈타지문서와 같은 자료의 사용에 대한 규정이 더 정교해졌다. 연구자의 관심보다는 밀고당한 사람의 인격권이 강화되었다.

슈타지문서 처리는 항상 논쟁거리였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주제다. 특히 저명인사의 문서일 경우 그 문서의 내용 자체에 대한 관심, 즉 슈타지가 특정한 인물에 대해 작성한 문서에 대한 지식이 연구자의 관심과 서로 충돌한다.

당사자의 인격권뿐만 아니라 전 슈타지 요원의 인격권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인격권 보호와 청산작업에 대한 공론장의 관심 사이에서 적절하게 조율해야 한다.

논란은 주로 특정 인물의 신원을 알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발생한다. 그런 보도는 시대사적 인물에 대한 관심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언론의 욕심일 수도 있다. 누가 시대사적인 인물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운

5 역주: 독일 행정법원은 헬무트 콜 전 서독 총리에 관한 슈타지문서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문제이다.

판례를 보면 2010년 초부터는 인격권보다는 과거청산에 관한 관심을 더 무게 있게 평가하는 것 같다.

아직까지 슈타지문서 보관 방식과 접근권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조직적 관점에서 보면 독일 연방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방문서보관소 본부는 코블렌츠, 즉 서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과거 동독의 많은 시민인권운동가들은 슈타지문서를 먼 “서쪽”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연방주에 연방문서보관소 지부를 설립하는 것이 수용할 만한 해결책일 수 있겠다. 2010년에는 비르틀러(Birthler) 청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슈타지문서관리청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계기로 기존 규정을 검토, 혹은 개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슈타지문서가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연구와 관련된 정보 가치 이외에 중요한 가치도 하나 있다. 바로 슈타지문서는 수기로 신상정보를 작성한 세계 최대의 문서모음이라는 점이다.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독재청산재단)

두 회기의 독일연방하원 산하 앙케이트위원회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사통당 독재정권 자체와 그것이 독일통일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자료 40).

1998년 6월 독일연방하원은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독재청산재단) 설립을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자료 42). 독재청산재단의 목적은 동독 역사와 관련한 지속적 작업이 촉진되어 과거청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재청산재단의 운영비는 주로 연방 예산에서 지원하며, 재단의 자본은 대부분 독일 연방채에 투자된다.

사법적 청산

“승자의 법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컨대 소급처벌금지(자료 20, 27), 죄형법정주의, 시효소멸기간과 같은 법치주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구 동독에 대한 사법적 청산작업에서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었다(자료 20, 27).

형사소송절차는 대략 다음의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정치국 소송”: 동독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소송(자료 28)
2. “장벽 초병 소송”: 국경 수비병들과 그 상관들에 대한 소송
총 약 280명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고, 그 중 반은 무죄판결을 받았다(자료 25, 27, 29).

약 136명이 자유형⁶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자들은 다음과 같다.

- 동독 당 및 정부 수뇌부 인사 10명
- 고위 군인 42명
- 국경수비대 병사 100명

도주자를 사살한 국경수비대 초병의 형량은 집행유예 6개월 내지 24개월이었고, 명령을 내린 상관의 형량은 이보다 높았다.

1992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사통당불법행위청산법(SED-Unrechtsbereinigungsgesetz)이 제정되었는데, 독재정권 피해자는 이 법을 근거로 하여 부당한 판결의 무효화, 투옥에 대한 보상 및 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며(자료 34), 직업적 및 연금법적 복권이 이루어졌다(자료 35, 36).

통일로 인하여 나치즘 시절 행해졌던 불법행위 및 전쟁포로 보상 문제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았다.

- 동유럽 국가에 살고 있는 나치 희생자에 대한 보상
- 동독과 서독의 보상규정 통일화
- 나치의 박해를 받은 자들에게 지급되었던 동독 명예연금을 연방법에 따라 계속 지급(1992년 보상법)
- 2차 대전 후 동독으로 송환된 전쟁포로에 대한 보상(2007년 귀국전쟁포로보상법). 서독에서와는 달리 동독에서 이들은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했다.

6 역주: Freiheitsstrafe, 독일형법에서는 자유형을 대한민국 헌법에서와 같이 징역과 금고 등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구 동독 고위지도층, 전 슈타지 직원, 기타 인사들은 동독에 대한 사법적 청산작업을 “승자의 법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가 적은 것은 동독이 불법국가(Unrechtsstaat)가 아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거나, “동독의 모든 것이 나뉘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행어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사통당의 후신 정당이나 다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등식을 퍼뜨리는데 성공하였다.

이들은 사통당 권력기구와 동독 정권에 대한 비판은 개인들의 평생 업적에 대한 비판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독일인들 간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동독에 대한 합리적 청산작업을 방해한다. 동독에 대한 비판을 개인 폄하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정당전략적으로는 유익할 것이나, 합리적 토론을 저해한다.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변화, 직업의 변동, 수요 부재, 실업 등과 같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문제들을 개인에 대한 처벌인 듯이 묘사하였고, 많은 경우에 통일을 그 원인으로 치부하였다. 일반적인 불만의식이 동독 시절에 대한 미화와 결합되어 정치적, 정당전략적 논쟁의 도구가 되었다. 구 동독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동독 시절에 대한 미화를 흔히 “오스탈기(Ostalgie)”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동쪽(Ost)”과 “향수(Nostalgie)”가 합성된 말로서, 동독에 대한 특수한 향수를 일컫는다.

3. 한국에 주는 시사점

1989년 이후 독일 상황의 전개과정은 다양한 이유에서 한국 미래에 대한 모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관련 있다.

불법 정권(Unrechtsregime)의 조력자들에 대한 법적 처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투명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심리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통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심리적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 통일이 개인, 특히 삶의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될 사람들의 개인적 실패로 느껴지게 되어서는 안된다.

- 통일은 공동의 미래, 한국의 전통적, 국가적 통일의 재건을 위한 협력이 되어야 한다.
- 한 쪽에서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한국전쟁에서의 패배를 또 다시 경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또 다른 쪽에서는 한국전쟁에서의 뒤늦은 승리로 여겨져서도 안 된다.

북한의 감시체제는 사회에 일정한 경향성을 조성할 수도 있다

늦어도 1990년대 중반 즈음부터 북한은 결핍사회가 되었다. 북한은 언제나 억압적 감시사회였다.

그러한 감시는 다음의 결과를 낳는다.

- 부정적 의미에서의 방향 제시가 이루어진다. 감시는 부분적으로 내면화된다. 즉 사람들에게 부정적 의미의 안전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삶을 맞춘다.
- 사람들은 자유공간을 가져본 경험이 별로 없고, 공포를 느끼지 않는 가운데 자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
- 획일성, 불신, 두려움과 복종이 생기지만, 연대감, 작은 개인적 자유공간 마련을 위한 창의력, 일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기응변 능력도 키워진다.
- 자발성, 두려움 없는 사회 참여, 솔선수범, 창의력, 책임감이 부족하다. 즉 역동적인 사회경제적, 사회정치적 발전이 전혀, 또는 거의 없다.

따라서 감시 기제가 갑자기 없어지면, 적어도 과도기에는, 주민의 대부분에 있어 불안과 방향 상실이 나타난다.

경험의 부족과 체제전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을 민주주의 국가였다고 한다면, 1933년부터의 독일은 명백히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동독에는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적어도 두 세대 지속되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민

주주의를 경험한 세대가 하나도 없다. 광범위한 자율적 결정, 권력분립, 법치주의, 즉 독립적 사법기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법질서와 관련한 경험이 없다. 따라서 전혀 다른 정치체제로의 전환과 체제의 정착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단 사람들의 의식 속에 과거 정권이 무능력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그러한 인식에 걸맞게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또한 과거 정권의 주도세력 다수에게 현실적이고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 관점/식민지 시기

독일 통일을 계기로 동유럽 나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해졌다. 즉 45년 전에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상태의 정상화, 특히 한반도 통일에 의한 정상화는 일본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식민지 시대에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적, 개인적 차원의 보상이 전혀 없었다.

교육과제로서의 과거 청산

과거 청산은 피해자, 학계, 법조계 만이 아닌 학교와 교육시스템에 있어서도 큰 도전과제다. 한국은 이 과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나, 동북아시아 다른 국가들과의 지역적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예컨대 독일-프랑스 청소년교류원, Deutsch-Französisches Jugendwerk) 사례와 폴란드-독일 교과서위원회(Polnisch-deutsche Schulbuchkommission)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 | |
|-------------------|-----|
| I. 국가안전부(슈타지) | 351 |
| II. 사법적 청산 | 379 |
| III. 복권 | 399 |
| IV.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 409 |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I. 국가안전부(슈타지)

| | |
|-----------|-----|
| ■ 수록자료 개관 | 352 |
| - 자료 1~19 | 356 |

수룩자료 개관

반체제그룹들의 시각에서 보면 국가안전부(슈타지)는 비공개 정치, 인권 유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냉소적 태도의 화신이었다. 시위대가 제일 먼저 요구했던 사항들 중 하나가 바로 슈타지의 해체였다.

1989년 11월 에리히 밀케(Erich Mielke)⁷는 처음으로 문서파기를 명령함으로써 문서 형태로 남은 국가안전부의 흔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여러 반체제 시민단체들은 주민들에게 정부의 은폐시도(Süß 1994, 55)를 막기 위한 감시그룹을 결성할 것을 호소하였다.

여러 곳에서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파기되지 않은 슈타지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슈타지의 업무를 종결시켰다.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와 귄터 샤보프스키(Schabowski)⁸의 사무실에 남아있던 자료들은 1990년 2월 말 사통당 당중앙문서보관소(ZPA)로 이관되었다.

통일조약 및 부속합의에는 입법부가 구동독 국가안전부 문서의 보존, 이용, 안전에 관한 광범위하고 최종적인 법률을 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면 국가안전부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 신상정보를 모두 파기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을 것이다.

입법부는 적절하고 조화로운 균형을 찾아야 했다.

- 국민들은 그들이 슈타지의 감시대상이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감시되었는지 알 수 있다.
- 슈타지가 수집하고 보관한 개인 정보가 허가를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못한다.
- 슈타지문서를 토대로 국가안전부의 활동을 공개한다.
- 슈타지문서를 위협방지, 형사소추, 연구에 사용한다.

7 역주: 1957년부터 국가안전부 장관 역임. 1993년 1931년에 있었던 살인과 관련하여 6년의 자유형 판결을 받았다.

8 역주: 사통당 간부. SED 중앙위 정치국원.

1991년 12월 말 슈타지문서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구동독 국가안전부 및 국가안전부의 전신, 또는 후신 기관(Staatsicherheitsdienst)에서 작성된 문서의 조사, 연구, 관리, 사용에 대해 규정한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 국가안전부가 자신의 신상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국가안전부가 개인의 운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2. 국가안전부가 보관한 개인 신상정보 관리방식으로 인하여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3. 국가안전부 활동을 역사적, 정치적, 사법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법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할 경우 이를 공공기관 또는 비공공기관에 제공한다.

1992년 1월 2일 최초로 시민들이 자신에 관한 문서를 열람하였다.

슈타지문서법의 제3장이 이 법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제1절에서는 슈타지문서관리청에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제2절에서는 공공기관 및 비공공기관의 접근권, 제3절에서는 신문, 방송, 영화 등을 통한 정치·역사 청산을 위한 슈타지 문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슈타지문서관리청은 슈타지문서법에 의거하여 명시적인 과거 청산 임무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과거 청산의 임무로 인해 수백만 개인 관련 문서에 대한 접근, 확인과 복권을 위한 노력 지원, 연구 및 미디어를 위한 문서 공개가 가능해졌으며, 슈타지문서관리청 자체적으로 연구, 대외업무 및 교육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슈타지문서관리청 연구원들의 문서 접근권은 부당한 특권이 아니라, 법 규정에 따라 입법기관인 연방하원이 슈타지문서에 부과한 엄격한 금지조건의 틀 안에서 학술적 목적의 연구를 가능하게 해 준 것이다.

따라서 외부 연구자에게도 슈타지문서관리청 연구원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종종 있기는 하나, 외부 연구자의 문서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연구에 중요한 많은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장기적으로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다.

슈타지문서관리청의 교육프로그램은 사통당 독재청산을 위해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행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연방주(州), 기초지자체, 교육담당기관이 독재청산과 관련하여 슈타지문서관리청의 전문지식 지원, 계속교육, 교육자료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한, 슈타지문서관리청은 청산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슈타지문서법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와 같은 공공기관, 자연인 또는 기타 비공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국가안전부 문서에 적용된다.

공공기관과 비공공기관은 슈타지문서법이 허용하고 지시하는 한도 내에서만 문서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슈타지의 피해자, 제3자, 실종자나 사망자의 가족, 슈타지 직원이나 수혜자가 자신에 관한 신상정보문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슈타지문서관리청이 문서의 개인에 관한 정보내용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슈타지문서관리청에 내용이 옳지 않다는 의견이 제출될 경우, 또는 해당 개인이 내용이 바르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별지에 작성하여 해당 문서에 첨부해두어야 한다.

슈타지문서법 제20조에서 제25조까지에 의거한 요청에 따라 일정한 개인에 관한 신상정보가 요청자에게 전달된 경우, 전달 이후 그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실을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 일정한 사실판단을 위해 중요한 정보가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호되어야 할 중대한 타인의 권익이 문서의 사용을 통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집된 정보, 비밀리에 이루어진 정보수집 등 엿탐을 통해 수집된 개인신상정보는 당사자나 제3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사자 또는 제3자에 관한 정보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제21조 1항 1호와 2호⁹가 적용되지 않는다.

9 역주: 슈타지문서법 제21조 1항 1호, 2호

(1) 당사자나 제3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는 공공기관이나 비공공기관에 의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1. 당사자, 실종자 및 사망자의 복권, 포로지원법(1955년 제정된 과거 소련 포로를 위한 법)에 의한 보상, 급여.
 2. 인격권의 보호

검찰이나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문서 사용이 허락될 경우 형사소송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슈타지문서관리청에 통보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슈타지문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를 통하여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검찰 또는 법원의 동의를 얻어 슈타지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슈타지문서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된 문서와 포함되지 않은 문서
- 문서에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룹: 당사자, 제3자, 직원, 특혜자, 밀고자, 시대사적 인물, 정치인, 공직 수행 중이었던 공직자
- 정보 접근권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당사자, 제3자, 직원, 특혜자, 공공기관, 비공공기관, 친척, 가족이나 친인척, “연구자/기관”, “정치적 청산” 관계자/기관, 미디어분야 종사자/회사
- 접근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안내, 고지, 열람, 반출¹⁰

2003년 7월부터는 로젠홀츠데이터¹¹도 청산작업에 사용될 수 있다. 로젠홀츠데이터는 슈타지문서관리청에서 다른 슈타지문서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검색도 가능하다.

슈타지문서를 공개한 이래로 그 성격과 신빙성에 관한 조사도 가능해졌다.

슈타지문서관리청은 EU의 새로운 회원국이 된 동유럽 국가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바, 이들 국가들은 -부분적으로는 최근에야- 슈타지문서관리청의 성공적인 업무를 분명히 전거로 삼아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10 역주: 제8조 1항에 “전자복사본, 필사본 및 기타 복사본”이라고 되어 있음.

11 역주: 로젠홀츠(Rosenholz)데이터란 슈타지 대외정보기관인 정찰총국(HVA)이 가지고 있던 외국(주로 서독) 비공식 요원과 관련된 색인카드형식의 정보자료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해둔 것을 말한다. 로젠홀츠데이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경로를 통해 미국 CIA가 입수했으며, 독일이 이 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한 작전명을 “로젠홀츠”라고 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이 데이터 자체를 “로젠홀츠데이터”라고 부른다.

자료 1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당중앙문서보관소(Zentrales Parteiarchiv, ZPA)의 문서파기

1997. 1. 4

담당자/기관

연방하원

내용

문서파기에 관한 보고서

- 1989년 11월 에리히 밀케(Erich Mielke)는 처음으로 문서파기를 명령함으로써 문서형태로 남은 국가안전부의 흔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 여러 야권 단체들은 주민들에게 정부의 “은폐시도”(Süß 1994, 55)를 막기 위한 감시그룹을 결성할 것을 호소하였다.
- 여러 곳에서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파기되지 않은 슈타지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슈타지의 업무를 종결시켰다.
-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와 귄터 샤보프스키(Schabowski)의 사무실에 남아있던 자료들은 1990년 2월 말 사통당 당중앙문서보관소(ZPA)로 이관되었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Hrsg.) Materialien der Enquete-Kommission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 (13. Wahlperiode des Deutschen Bundestages); acht Bände in 14 Teilbänden –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S. 1293–1295.

자료 2

슈타지문서법(Stasi-Unterlagen-Gesetz, StUG)과 슈타지문서관리청(BStU)

2009

담당자/기관

국가안전부문서관리청(슈타지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

- 슈타지문서관리청은 슈타지문서법에 의거하여 명시적인 청산의 임무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청산의 임무로 인해 수백만 개인 관련 문서에 대한 접근, 확인과 복권을 위한 노력 지원, 연구 및 미디어를 위한 문서 공개가 가능해졌으며, 슈타지문서관리청 자체적으로 연구, 대외업무 및 교육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슈타지문서관리청은 무기한 활동하도록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슈타지문서관리청의 폐지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그 결정이 가져올 법적 결과, 청산정책 관련 결과를 검토하고, 폐지를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 슈타지문서에 일반적인 문서보관법을 서둘러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헌법 상 문제와 정보보호법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청산작업에 중요한 문서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 슈타지문서와 관련하여 상이한 법 규정과 절차가 충돌할 수 있다.
 -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보모음이 해체된다.
 - 여러 문서보관소로 분산될 경우 개인의 문서열람절차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 슈타지문서관리청 연구원들의 문서 접근권은 부당한 특권이 아니라, 법 규정에 따라 입법기관인 연방하원이 슈타지문서에 부과한 엄격한 금지조건의 틀 안에서 학술적 목

자료 2

적의 연구를 가능하게 해 준 것이다.

- 따라서 외부 연구자에게도 슈타지문서관리국 연구원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종종 있기는 하나, 외부 연구자의 문서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 오히려 연구에 중요한 많은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장기적으로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다.
- 슈타지문서관리청 책임 하의 제1관에 국가안전부 연구·기록·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제1관이 핵심적 “범죄의 장소”였다는 역사적인 의미에도 부합할 것이다. 국가안전부 연구·기록·교육센터는 경우에 따라서 슈타지문서관리청이 폐지된 후에도 존립할 수 있도록 구상해야 할 것이다.
- 슈타지문서관리청의 교육프로그램은 사통당 독재청산을 위해 전국적,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행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 연방주(州), 기초지자체, 교육담당기관이 독재청산과 관련하여 슈타지문서관리청의 전문지식 지원, 계속교육, 교육자료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한, 슈타지문서관리청은 청산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슈타지문서관리청은 EU의 새로운 회원국이 된 동유럽 국가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바, 이들 국가들은 슈타지문서관리청의 성공적인 업무를 좋은 사례로 인정하면서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 이런 맥락에서 슈타지문서관리청 폐지는 매우 심각한 여파를 가져올 것이다.

출처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98-105.

자료 3

슈타지문서법 제32조 - 국가안전부 활동의 청산을 위한 슈타지문서 사용에 관한 지침

2010년 2월 26일 기준

담당자/기관

슈타지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

- 슈타지문서법 제32조는 슈타지 활동 청산작업을 위한 슈타지문서 사용을 규정한다.
- 시대사적 인물, 정치인, 공직자의 문서는 그들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인물들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접근권은 연구목적인 경우와 미디어목적인 경우에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판결하였다.
- 모든 개인은 자신에 관한 슈타지문서에 대한 열람요청권이 있다.
- 실종자, 또는 사망자 관련 문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만이 특정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슈타지문서관리청은 연구, 정치교육 관련 기관, 신문, 방송과 영화에서의 역사적·정치적 청산작업을 지원한다. 슈타지의 활동과 구 동독 내지 구소련점령지역의 통치메커니즘과 관련하여서는 적절한 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주제 별로 문서를 제공한다.
- 슈타지문서관리청은 공공기관, 또는 비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회적, 정치적 유명인사가 슈타지와 협력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는지 알려준다.
- 위의 유명인사란 예컨대 각료, 주(州)의회와 연방하원 의원, 차관급, 판사, 스포츠분야 고위인사를 말한다.
- 슈타지문서관리청은 특히 연금 문제, 미해결 재산 문제, 혼장 문제 등과 관련한 요청을 처리한다.
- 슈타지문서관리청은 형사소추, 위협방어, 복권, 보상에 관해서도 특정목적과 관련된 고지를 해준다.

출처 : 슈타지문서법(StUG)

자료 4

슈타지문서법 제33조 – 절차 관련 지침

2007년 3월 1일 기준

담당자/기관

슈타지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

- 슈타지문서관리청은 법에 명시된 임무에 따라 국가안전부의 활동, 구 동독 내지 구소련점령지역의 통치메커니즘 및 나치과거에 관한 연구, 미디어활동(신문, 방송과 영화) 및 정치교육 관련 기관의 역사적·정치적 청산작업을 지원한다.
- 슈타지문서청은 특정한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슈타지문서 열람이나 복사본 반출을 허락한다.
- 문서의 사용 목적은 특정 주제로 한정되어야 하며, 문서 사용은 국가안전부의 활동, 구 동독 내지 구소련점령지역의 통치메커니즘, 나치과거에 관한 역사적·정치적 청산작업에 기여해야 한다.
그 밖에도 문서 사용자들은 연구결과나 미디어자료의 출간, 공개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한다.
- 이는 예를 들어 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기관에서 진행 중인 연구프로젝트 결과를 발간, 게재하는 것이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저서, 학술논문,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학교수업 자료와 정치교육 자료, 라디오 및 TV-프로그램, 신문·잡지 기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 슈타지문서에 대한 접근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슈타지문서관리청은 사용 신청서를 연구 목적인가, 미디어 목적인가에 따라 구분한다.
- 정치교육 관련 기관의 사용 신청은 그 목적과 나중엔 결과가 발표되는 형식에 따라 연구 목적 신청인지, 미디어 목적인지를 구분한다.

자료 4

- 연구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 대학교, 학술기관, 연구소와 같은 확립된 연구기관 및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지명도가 있는 연구자들의 신청서는 특별한 검토 없이 허가한다.
- 일반인도 개인 자격으로 연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연구와 사용목적의 구상, 개요서, 또는 정확한 설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연구 계획의 진지성을 증명해야 한다.
- 신문, 방송 또는 영화를 위한 사용신청서는 관계된 개인, 편집국, 출판사, 제작사가 제출할 수 있다.

출처

슈타지문서법(StUG)

자료 5

슈타지문서법 제32a조 – 통보 관련 지침

2007년 3월 1일 기준

담당자/기관

슈타지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

- 슈타지문서법 제32조 1항 1문 4호¹²에 따라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관련된 자에게 문서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그 문서에 대한 접근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슈타지문서관리청은 슈타지문서법 제32조 1항에 따라 허가 여부를 심의할 때 제기된 이의의 내용을 고려한다.
- 신청 허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부터 문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보호해야 할 이유가 중대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통보에 너무 큰 수고와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슈타지문서법(StUG)

12 역주: 시대사적 인물, 정치인, 공직자.

자료 6

슈타지문서법 제34조
- 언론, 방송, 영화에서의 문서 사용 관련 지침

2007년 3월 1일 기준

담당자/기관

슈타지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

- 신문, 방송, 영화, 이들의 협력사, 기자가 슈타지문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슈타지문서법 제32조와 제33조가 적용된다.
- 독일방송사에 의한 특정 인물관련 정보공개가 그 인물에 대한 기존과는 다른 설명을 낳을 경우, 다른 설명을 기존의 정보에 첨부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정보는 다른 설명과 함께 공개되어야만 한다.

출처

슈타지문서법(StUG)

슈타지문서법과 실무를 위한 설명

자료 7

제3장 :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제1절 당사자, 제3자, 국가안전부 직원, 특혜자의 권리 1993

담당자/기관

슈타지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

실제 업무를 위한 설명을 붙인 슈타지문서법

제1절: 당사자, 제3자, 국가안전부 직원, 특혜자의 권리

- 제12조: 당사자, 제3자, 국가안전부의 직원 및 특혜자를 위한 절차규정
- 제13조: 안내, 열람, 반출에 관한 당사자와 제3자의 권리
- 제14조: 당사자와 제3자에 관한 익명화된 신상정보와 그 해결¹³
- 제15조: 안내, 열람, 반출에 관한 실종자 또는 사망자의 가족/가까운 친척의 권리
- 제16조: 안내, 열람, 반출에 관한 국가안전부 직원의 권리
- 제17조: 안내, 열람, 반출에 관한 특혜자의 권리
- 제18조: 국가안전부에 넘겨진 법원과 검찰 문서에 대한 안내, 열람, 반출에 관한 권리

출처

Geiger, Hansjörg/Klinghardt, Heinz, 1993. Stasi-Unterlagen-Gesetz mit Erläuterungen für die Praxis. Köln: Deutscher Gemeindeverlag, S. 62-84.

¹³ 역주: 2002년 9월 2일자 5차 개정 시 폐지.

자료 8

제3장 :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제2절 공공기관 및 비공공기관의 국가안전부 문서 이용

1993

담당자/기관

슈타지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

실제 업무를 위한 설명을 붙인 슈타지문서법

제2절: 공공기관 및 비공공기관의 국가안전부 문서 사용

- 제19조: 공공기관 및 비공공기관의 문서접근권, 절차규정
- 제20조: 공공기관 및 비공공기관의 당사자 또는 제3자에 관한 신상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문서 사용
- 제21조: 공공기관 및 비공공기관의 당사자 또는 제3자에 관한 신상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사용
- 제22조: 의회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문서 사용
- 제23조: 형사소추와 위협방어를 위한 문서 사용
- 제24조: 국가안전부에 넘겨진 법원과 검찰 문서 사용
- 제25조: 기밀정보업무를 위한 문서 사용
- 제26조: 업무지침과 조직도의 사용
- 제27조: 요청 없이 공공기관에 통지

자료 8

- 제28조: 요청 없이 비공공기관에 통지¹⁴
- 제29조: 사용목적 준수
- 제30조: 문서전달내용에 관한 통보
- 제31조: 관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슈타지문서관리국 결정에 대한 법원의 검토

출처

Geiger, Hansjörg/Klinghardt, Heinz. 1993. Stasi-Unterlagen-Gesetz mit Erläuterungen für die Praxis, Köln: Deutscher Gemeindeverlag, S. 84-131

¹⁴ 역주: 2006년 12월 21자 7차 개정시 폐지.

자료 9

제3장 :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제3절 정치적·역사적 청산을 위한 국가안전부 문서 이용 및
신문과 방송에 의한 국가안전부 문서 이용

1993

담당자/기관

슈타지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

실제 업무를 위한 설명을 붙인 슈타지문서법

제3절: 정치적·역사적 청산을 위한 국가안전부 문서 사용 및 신문과 방송에 의한 국가안
전부 문서 사용

- 제32조: 정치적·역사적 청산을 위한 문서 사용
- 제32a조: 통보
- 제33조: 절차
- 제34조: 신문, 방송, 영화에 의한 문서 사용

출처

Geiger, Hansjörg/Klinghardt, Heinz, 1993, Stasi-Unterlagen-Gesetz mit Erläuterungen für die Praxis, Köln: Deutscher Gemeindeverlag, S. 134-143

자료 10

로젠홀츠데이터¹⁵

2003. 7

담당자/기관

슈타지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

- 로젠홀츠데이터는 국가안전부의 대외정보기관인 정찰총국(HVA)¹⁶이 색인카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국가안전부가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한 한 것으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경로를 거쳐 미국 국가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에 전달되었다.
- 독일 연방정부의 오랜 노력 끝에 미국은 1999년 마이크로필름의 복사본을 CD에 담아 독일에 돌려주기 시작했다.
- 미국에서 입수한 로젠홀츠데이터는 CD 총 381개, 파일 약 350,00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 동독 대외정보기관인 정찰총국(HVA) 직원들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로젠홀츠데이터는 2003년 7월부터 청산작업에 제공되고 있다.
- 로젠홀츠데이터는 인물의 실명을 표시하고 있으며, 출생일, 출생지, 주소, 직업, 슈타지 식별번호와 같은 개인신상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 슈타지문서관리국은 로젠홀츠데이터를 다른 슈타지문서와 마찬가지로 활용하며 검색할 수 있다.
- 그러한 작업을 통해 국가안전부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고 있다.
- 로젠홀츠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이 데이터의 성격과 신빙성에 관한 연구도 가능해졌다.
- 로젠홀츠데이터에 올라있는 사람들의 약 90%는 슈타지문서법에서 말하는 당사자 또는

15 역주: 독일이 이 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한 작전명을 “로젠홀츠”라고 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이 데이터 자체를 “로젠홀츠데이터”라고 부른다.

16 역주: Hauptverwaltung Aufklärung(HVA)은 구 동독 대외정보기관으로 슈타지 산하 정찰총국이었다.

자료 10

제3자이다.

- 로젠홀츠데이터는 3개의 색인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F 16-색인, F 22-색인, 통계 색인이 있다.

출처

Schwan, Heribert/Heindrichs, Helhard. 2005. Das Spinnennetz. Stasi-Agenten im Westen: Die geheimen Akten der Rosenholz-Datei. München: Ventura Publisher im Verlag, S. 55-63

http://www.bstu.bund.de/cln_012/nn_712830/DE/MfS-DDR-Geschichte/Aktenfunde/Rosenholz/rosenholz_node.html_nnn=true

2010년 6월 20일

자료 11

슈타지문서관리청(Stasi-Unterlagen Behörde) 조직도

2009년 3월 기준

담당자/기관

슈타지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

슈타지문서관리청의 조직도

출처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92.

자료 12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에 대한 안내, 열람 및 반출 신청서

2009년 3월

담당자/기관

슈타지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

문서열람 신청서

출처

http://www.bstu.bund.de/cIn_012/nn_715154/DE/Akteneinsicht/Erlaeuterungen-fuer-Privatpersonen/Antragsformular/antragsformular_pdf,templateI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antragsformular_pdf.pdf

2010년 6월 12일

자료 13

신청서 및 요청서 접수 건

2009년 3월 기준

담당자/기관

슈타지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

표 “신청서 및 요청서 접수 건”

출처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131.

자료 14

신청서 및 요청서 처리

2009년 3월 기준

담당자/기관

슈타지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

표 “신청서 및 요청서 처리“

출처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132.

자료 15

징역형(刑)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요청서¹⁷

2009년 3월 기준

담당자/기관

슈타지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

표 “감금형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요청서“

출처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137

17 역주: 구 동독에서 자유 · 법치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이유로 감금형을 당한 자에게 매 감금 월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자료 16

슈타지문서법(StUG) 제32조와 제34조에 의거한 신청서 접수와 처리

2009년 3월 기준

담당자/기관

슈타지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

표 “슈타지문서법(StUG) 제32조와 제34조에 의거한 신청서 접수와 처리“

출처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138.

자료 17

신청자 유형 - 보고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

2009년 3월 기준

담당자/기관

슈타지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

표 “신청자 유형“

출처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139.

자료 18

주민 설문조사의 통계 분석 및 이전 설문조사와의 비교

2009년 3월

담당자/기관

슈타지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

표 “주민 설문조사의 통계 분석 및 이전 설문조사와의 비교”

출처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134.

자료 19

1945년부터 1990년 독일 통일까지의 연대기

1945 - 1990년

담당자/기관

연대기

내용

1945년부터 1990년 독일 통일까지의 연대기

출처

Gieseke, Jens. 2000. Die DDR-Staatssicherheit, Schild und Schwert der Partei.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S. 104-117.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II. 사법적 청산

| | |
|------------|-----|
| ■ 수록자료 개관 | 380 |
| - 자료 20~31 | 385 |

수록자료 개관

여기에 모아놓은 자료는 동독 시절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형사소추 관할 및 인적 구성의 법적 근거, 그리고 수사활동 결과에 관한 자료다.

1. 동독 불법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법적 근거

1990년 10월 3일 이전 동독에서 있었던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동독 불법정권(Unrechtsregime)의 형법적 청산의 정당성과 관련한 기본적인 문제였다. 이 점에 있어 사법부로서는 소급효 금지와 시효가 큰 문제였다.

동독 불법행위 형사소추에 대한 법적 근거는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제8조, 형법시행법(EGStGB)에 신설된 제315조부터 제315c조, 그리고 형법전(StGB) 제2조이다.

통일조약 제8조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형법이 형법시행법(EGStGB) 제315조부터 315c조에 의거하여 구동독지역에도 적용되었다. 따라서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동독에서 행하여졌던 범죄에 대해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형법시행법(EGStGB) 제315조 1항에 의거하여 서독의 법이 동독의 법보다 관대한 경우에만 서독 형법이 적용된다. 해당 범죄가 동독에서 처벌대상이 아니었거나 더 경한 형벌의 대상이라면, 동독의 형법이 계속 유효하다. 그래서 형법시행법(EGStGB) 제315조 1항은 범행 시점에서 유효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법(독일 헌법) 제103조 2항의 소급효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소급효 금지 조항이었다. 그 한 예로서 소위 베를린장벽 총격병 소송에서 피고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다. 국방장관(Minister des Nationalen Verteidigungsrates) 하인츠 케슬러(Heinz Keßler), 국방차관 프리츠 슈트렐레츠(Fritz Streletz), 사통당 줄(Suhl) 지역 지도부(Bezirksleitung Suhl der SED) 제1서기장¹⁸ 한스 알브레히트(Hans Albrecht)는 소급효 금지 조항을 근거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996년 10월 24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다

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기본법 제103조 2항에 의거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기본권에 충실한 민주적 입법자가 제정한 형법에 담겨 있는 특별한 신뢰의 토대를 통해 그 법치주의적 정당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국가 권력자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면서 범죄적 불의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만들어 그것을 가벌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특별한 신뢰의 토대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 기본법 제 103조 2항에 근거한 엄격한 신뢰 보호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의 위헌소송제기가 기각되었고 사통당의 불법행위의 처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통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에 있어 또 다른 장애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공소시효문제였다. 1991년 11월 5일과 6일 실시되었던 주(州)법무장관 회의¹⁹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처음 이뤄졌다. 주법무장관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차례의 발의가 있는 후, 1993년 3월 26일 독일연방하원은 “사통당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법(VerjährungsG)”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해 1949년 10월 11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 정치적인 이유에서 행해지고,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은 사통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 소멸기간은 1993년 9월 29일 제정된 공소시효 소멸기간 연장법(2. VerjährungsG)에 의해 최대 19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1997년 12월 22일 제정된 제3차 공소시효 소멸기간 연장법(3. VerjährungsG)에 의해 다시금 2000년 10월 2일까지 연장되었다.

2. 형사소추 관할과 인적 구성

형사소추권은 범죄행위지 원칙(Tatortprinzip)에 따라 분권화되어 있었으며, 각 연방주

18 역주: 여기의 “도(Bezirk)”는 현재 “주(Land)”와 다르다. 동독은 1952년 과거의 행정단위인 “주(Land)”를 해체하고 새로 14개의 도(Bezirk)를 만들었다. “도지도부(Bezirksleitung)”와 도지도부의 “제1서기장(Erster Sekretär)”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

19 역주: Konferenz der Justizminister- und senatoren, 각 주 법무장관들이 모이는 회의를 말한다. 연방법무장관(Bundesminister für Justiz)도 이 회의에 초대된다. 상호협력을 위한 회의로 일년에 2회 개최된다.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주의 주법무장관은 “Justizsenator”라 부른다.

검찰청의 중점수사부(Schwerpunktabteilung der Staatsanwaltschaft der Bundesländer)(지역범죄 관련), 그리고 베를린주 고등검찰청 정권범죄수사본부(Arbeitsgruppe Regierungskriminalität beim Kammergericht in Berlin, 후에는 베를린주 제2검찰청) 및 연방검찰(특히 첩보사건 관련)로 나뉘어져 있었다.

“정권범죄수사본부”는 1989년 말 동독 검찰이 동독 국가 및 당 지도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시작한 형법 상의 수사절차를 인계받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990년 10월 3일 베를린주 고등검찰청(Berliner Staatsanwaltschaft beim Kammergericht)에 설치되었다. 1991년 6월 4일에서 6일까지 진행된 제62차 주법무장관회의에서는 구 동독의 중앙집권적인 구조 때문에 베를린 검찰 및 법원이 형사소추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고, 정권범죄수사본부는 1991년 5월 17일 연방총리와 각 연방주총리와의 협의사항을 토대로 베를린주 법무부와 조율하여 경험이 풍부한 수사 인력을 최대 60명까지 추가로 파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주법무장관회의에서 정한 추가 인력이 최대 정원 60명까지 이른 것은 1992년 단 한 번이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정권범죄수사본부는 최대 정원수를 채우지 않았다.

정권범죄수사본부는 1994년 10월 1일 독자적 관할권을 갖는 베를린주제2검찰청으로 승격되었다.

3. 결론

동독의 형사법상 주요 고려 대상은 다음과 같았다.

- 국가안전부 소속 직원이 소위 동독의 배신자와 적에 대해 사법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나 그와 관계없이 했던 행위
- 내외부의 정치적 적에 대해 취했던 사법부의 태도
- 과거 동서독 간 국경에서의 무력행위
- 2005년 모든 관련 수사와 재판 절차가 종결되었다. “형사사법과 동독 불법행위 (Strafjustiz und DDR-Unrecht)”라는 연구프로젝트에 의하면 간첩사건소송 외에도 피의자 총 1,731명에 대한 1,201건의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 중 753명에게 벌금형,

또는 자유형이 선고되었다.
선고된 자유형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 범 행 | 자유형 | 총합계 |
|---------------|----------------|-----|
| 국경지대에서의 무력 사용 | 최소 6개월에서 10년이하 | 264 |
| 법 왜곡행위 | 최소 6개월에서 5년이하 | 131 |
| 선거 조작 | 최소 6개월에서 2년이하 | 42 |
| 국가안전부의 범죄 | 최소 6개월에서 2년이하 | 32 |
| 밀고 | 최소 6개월에서 2년이하 | 5 |
| 죄수 학대 | 최소 6개월에서 3년이하 | 13 |
| 직권남용/부패 | 최소 6개월에서 3년이하 | 16 |
| 경제범죄 | 최소 6개월에서 2년이하 | 3 |
| 도핑 | 최소 6개월에서 2년이하 | 17 |
| 합계 | | 523 |

동독 군대 지도부와 정치 지도층을 상대로 한 형사소추에는 2건의 대형 소송이 있었다. 베를린장벽 총격병 재판과 정치국 재판이었다.

베를린장벽 총격병 재판에서는 국방위원회의 수뇌부 인사 6명, 즉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에리히 밀케(Erich Mielke), 빌리 스토프(Willi Stoph), 하인츠 케슬러(Heinz Keßler), 프리츠 슈트렐레츠(Fritz Streletz), 한스 알브레히트(Hans Albrecht)가 베를린주 고등검찰청에 의해 기소되어 이들을 상대로 베를린장벽 총격병 재판이 진행되었다.

호네커, 밀케, 슈토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는 중대한 질병과 건강 상의 이유로 소송무능력을 판정 받아 재판이 중단되었다. 케슬러, 슈트렐레츠, 알브레히트에 대해서는 동서독 간 국경에서 일어난 사살의 범인으로 유죄가 선언되었다. 이들은 각각 7년 6개월, 5년 6개월, 5년의 자유형을 받았다.

정치국 재판에서는 에곤 크렌츠(Egon Krenz), 귄터 샤보프스키(Günter Schabowski), 쿠르트 하거(Kurt Hager), 호르스트 돌루스(Horst Dohlus), 귄터 클라이버(Günther Kleiber), 에리히 뮌켄베르거(Erich Mückenberger)가 동서독 간 국경에서의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제2차 정치국 재판에서는 뮌켄베르거, 하거, 돌

루스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소송무능력을 판정 받아 재판절차가 중단되었다. 나머지 3명은 다음의 형을 선고받았다.

- 에곤 크렌츠에게는 3명에 대한 경합적 살인, 기타 살인 1건으로 6년 6개월의 자유형이 선고되었다.
- 귄터 샤보프스키에게는 3명에 대한 경합적 살인에 대해 3년의 자유형이 선고되었다.
- 귄터 클라이버에게는 3명에 대한 경합적 살인에 대해 3년의 자유형이 선고되었다.

자료 20

법적기반 -
통일조약 제8조, 형법시행법(EGStGB)
제315조-제315c조, 형법(StGB) 제2조

담당자/기관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정부,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연방하원

내용

- 동독 불법행위 형사소추에 대한 법적 근거는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제8조, 형법시행법(EGStGB)에 신설된 제315조부터 제315c조, 그리고 형법전(StGB) 제2조이다.
- 통일조약 제8조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형법이 형법시행법(EGStGB) 제315조부터 315c조에 의거하여 구 동독지역에도 적용되었다. 따라서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동독에서 행하여졌던 범죄에 대해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단, 형법시행법(EGStGB) 제315조 1항에 의거하여 서독의 법이 동독의 법보다 보다 관대한 경우에만 서독 형법이 적용된다. 해당 범죄가 동독에서 처벌대상이 아니었거나 더 경한 형벌의 대상이라면, 동독의 형법이 계속 유효하다. 그래서 형법시행법(EGStGB) 제315조 1항은 범행 시점에서 유효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법(독일 헌법) 제103조 2항의 소급효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출처

BGBI. 1990 II, S. 889. BGBI. I, S. 2288, BGBI. I, S. 3322

자료 21

시효 문제 - 주법무장관회의의 결의사항

1991년 11월 5-6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주법무장관들

내용

- 각주 법무장관들은 형사소추기관에 대하여 전 동독 지도부의 명령 또는 동의 하에 행해졌으며, 법률 규정을 무시하여 소추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펼 것이다.
- 나치의 범죄 시효와 관련하여 마련된 기준이 사통당의 불법행위를 형법적으로 판단하는데 반영될 수 있다.

출처

1991년 11월 5일, 6일 주법무장관 추계 회의 결의사항

자료 22

SED(사통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정지법
(VerjährungsG)

1993년 3월 26일, 본(Bonn)

담당자/기관

독일연방하원, 바이체커(Weizsäcker) 연방대통령,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총리, 로이트호이서-슈나렌베르거(Leuchtheusser-Schnarrenberger) 연방법무장관

내용

이 법에 의해 1949년 10월 11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 정치적인 이유에서 행해지고,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은 사통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가 정지된다.

출처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3, Teil I

자료 23

공소시효 소멸기간 연장법
(2. VerjährungsG)

1993년 9월 29일, 본

담당자/기관

독일연방하원, 바이체커(Weizsäcker) 연방대통령,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총리, 로이트호이서-슈나렌베르거(Leuchtheusser-Schnarrenberger) 연방법무장관

내용

- 1992년 12월 31일 이전 구 동독 지역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한 시효는 형량 단계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이 경과한 이후의 시점에 만료된다.
- 1990년 10월 2일 이전 구 동독 지역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한 시효는 형량 단계에 따라 1995년 12월 31일 경과한 이후의 시점에 만료된다.
- 동독의 법률에 따라 형이 정해지는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시효를 폐지한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51, S. 1657.

자료 24

동독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 주법무장관회의의 결의사항

1991년 6월 4-6일, 베를린

담당자/기관

주법무장관, 연방총리, 각 연방주 총리, 베를린시 법무장관

내용

주법무장관들은 다음을 합의했다:

- 구동독의 중앙집권적인 구조 때문에 베를린주 법무부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적절하다.
- 베를린에 “정권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립하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 1991년 5월 17일 연방총리와 각 연방주 총리들과의 협의사항을 토대로 베를린주 법무부와 조율하여 정권범죄수사본부에 경험이 풍부한 수사인력을 추가충원할 것이며 각 연방주 내무장관들에게 베를린 경찰의 업무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5개 신연방주(州)의 형사소추기관은 베를린 형사소추기관 및 연방검찰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구연방주의 주법무장관들은 이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출처

1991년 제62차 주법무장관회의 결의사항

자료 25

장벽-국경 초병의 사살행위에 대한 첫 번째 판결

1992년 1월 20일, 베를린 주법원

담당자/기관

베를린 주법원

내용

- 총격살인으로 피소된 K., H., Sch., Schm.의 행위는 일차적으로 범죄지와 범죄 시점에 유효했던 동독 형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그 이후에 동독 형법을 대체한 독일연방공화국의 형법에 따라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한다.
- 구 동독 기본법의 총기사용규정은 무효(nichtig)하므로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
- 유효한 사격명령이 없었으며, 총격수가 금지에 대해 착각할만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베를린 장벽에서의 총격살인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과 정의의 원칙에 현저하게 모순되므로, 병사들이 양심을 무마시키는 주입교육을 받았다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 베를린 주법원의 견해이다.
- 베를린 주법원은 피고인 H에게 3년 6개월의 자유형을 선고한다.

출처

Juristen Zeitung(JZ), Jahrgang 1993,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S. 691-696.

자료 26

검찰 공소장(요약본)

1992년 11월 30일 발표

담당자/기관

새프겐(Schaeffgen) 고등검사, 프란츠-헤르만 브뤼너(Franz-Hermann Brüner) 고등검찰청 정권범죄수사본부 고등검사, 헤르비히 그로스만(Herwig Großmann) 고등검사, 베른하르트 얀츠(Bernhard Jahntz) 정권범죄수사본부장, 베를린주법원 배심제재판부

내용

베를린주 고등검찰청은 1961년부터 1989년까지 서베를린으로 탈출 중 총살된 12명에게 베를린 장벽에서 사격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고의적 살인[故殺] 구 동독 군(軍)정책 지도부 6명을 고소한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다.

-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전 사통당 서기장, 국가평의회 의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 에리히 밀케(Erich Mielke), 전 국가안전부 장관, 사통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국방위원회 위원
- 빌리 슈토프(Willi Stoph), 전 사통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각료회의 의장, 국가평의회 부의장, 국방위원회 위원
- 하인츠 케슬러(Heinz Keßler), 전 사통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국방위원회 위원, 국방장관
- 프리츠 슈트렐레츠(Fritz Streletz), 전 국방위원회 서기
- 한스 알브레히트(Hans Albrecht), 전 사통당 줄주(洲)(Bezirk Suhl) 지도부 제1서기장

출처

Peter Richter, 1993, *Kurzer Prozeß: Honecker&Genossen* – ein Staat vor Gericht?, Berlin: Elefantent-Press, S. 145–155

자료 27

**케슬러, 슈트렐레츠, 알브레히트의 헌법소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
사통당 정권의 정권범죄 가벌성**

1996년 10월 24일, 칼스루헤(Karlsruhe)

담당자/기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내용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국방위원회 위원 3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 청구자들은 주법원 판결과 연방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며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비난하였다. 이들은 판결이 기본법 제103조 2항의 소급효 금지조항과 기본법 제 25조의 국가지도부의 면책권 조항을 위배하는 판결이라 주장하였다.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시행법(EGBtGB) 제315조 1항과 형법(StGB) 제1조에 의거하여 동독 법, 특히 동독국경법(DDR-GrenzG) 제27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모든 행위는 행위 시점에 이미 정당화되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이들은 국경 문제에 있어 소련의 영향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행위의 재량권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03조 2항에 의거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기본권에 충실한 민주적 입법자가 제정한 형법에 담겨 있는 특별한 신뢰의 토대를 통해 그 법치주의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국가 권력자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면서 범죄적 불의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만들어 그것을 가벌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특별한 신뢰의 토대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 기본법 제103조 2항에 근거한 엄격한 신뢰 보호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동독 정부 및 헌법상 기관의 고위인사이었던 헌법소원 청구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는 국제법의 일반적 규칙(면책권)에 위배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료 27

청구인들의 면책권이 그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국가의 존립 기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Klaus Marxen/Gerhard Werle(Hrsg.). 2002. *Gewalttaten an der deutsch-deutschen Grenze* Band 2/2, Teilband, Berlin: De Gruyter, S. 609-641

자료 28

연방재판소의 상고심 판결 - 샤보프스키, 클라이버, 크렌츠

1999년 11월 8일, 칼스루헤(Karlsruhe)

담당자/기관

연방재판소(BGH)

내용

- 연방재판소는 1997년 8월 25일 베를린주법원 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로써 주법원의 판결이 유지되었다.
 - 에곤 크렌츠(Egon Krenz)에게는 3명에 대한 경합적 살인, 기타 살인 1건으로 6년 6개월의 자유형이 선고되었다.
 - 귄터 샤보프스키(Günter Schabowski)에게는 3명에 대한 경합적 살인에 대해 3년의 자유형이 선고되었다.
 - 귄터 클라이버(Günter Kleiber)에게는 3명에 대한 경합적 살인에 대해 3년의 자유형이 선고되었다.

출처

Redaktion "Neue Justiz" (Hrsg.), 2001, Der Politbüro-Prozeß: Eine Dokumentation, Baden-Baden: Nomos, S. 509-539

자료 29

인간 존엄성 침해로 인한 형사소송 중지 - 호네커 사건

1993년 1월 12일, 베를린주 헌법재판소

담당자/기관

베를린주 헌법재판소

내용

- 베를린주 헌법재판소는 베를린주 고등법원과 베를린주 지방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에 대해 진행되었던 형사소추 절차를 중단하였고, 체포영장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 베를린주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불치병으로 사망을 앞둔 81세의 헌법소원 청구인을 공판을 위해 감금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 존중의 법칙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출처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1993년 1월 12일

자료 30

사통당 정권과 관련한 1989년 가을 이후²⁰의 사법적 청산과 그 한계

담당자/기관

각 연방주 법무장관, 베른하르트 얀츠(Bernhard Jahntz) 정권범죄수사본부장 겸 제2 베를린주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내용

- “정권범죄수사본부(Arbeitsgruppe Regierungskriminalität)”는 1990년 10월 3일 베를린주 고등검찰청(Berliner Staatsanwaltschaft beim Kammergericht)에 설치되었다.
- 동독 정권과 관련하여 형법적 고찰의 주 대상이 되었던 것은 소위 동독의 배신자에 대하여 사법적 형식의 절차 이전, 또는 그러한 절차와 관계없이 행한 국가안전부 소속 인물들의 행위, 대내외의 정치적 적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과거 내독 국경에서의 무력행위였다.
- 형사소추 업무는 각 연방주 검찰청 중점수사부의 수사관할권(구 동독 주정부 차원의 범죄 담당)과 베를린주 고등검찰청²¹ 및 연방검찰청(주로 첩보사건 관련 담당) 산하 정권범죄수사본부(후에는 제2 베를린주 지방검찰청으로 승격)의 수사관할권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 정권범죄수사본부(Arbeitsgruppe Regierungskriminalität)는 초기에 베를린주 검찰청 소속 검사 7인으로 구성되었다. 연방주법무장관회의에서 정한 최대 60명까지의 추가 인력이 모두 채워졌던 것은 1992년 잠시였고, 그 외의 기간에는 정권범죄수사본부는 최대 정원수를 채우지 않았다.

²⁰ 역주: 베를린 장벽 붕괴 시점.

²¹ 역주: 신연방주의 검찰청들은 구 동독 시절 주(Bezirk)차원의 범죄를 담당했고, 베를린주 검찰청은 베를린주(Bezirk) 차원의 범죄와 동독 중앙정부의 범죄를 모두 담당하였다.

자료 30

- 수사를 위해 경찰에 정권·통일범죄 수사센터(ZERV: Zentrale Ermittlungsstelle für Regierungs- und Vereinigungskriminalität)가 설치되었다.
- 형사소추 과정의 장애 요인은 고령과 질병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소송무능력이었다.
- 베를린 형사소추기관에 접수된 약 23,000건 중 16,503건은 중급(中級)의 정권범죄(특히 슈타지 소속 인물에 의한 도핑, 법 왜곡행위, 무력)였다. 이 중 261건은 기소 처리되었다. 내독 국경지대에서의 무력 사용과 관련된 6,429건 중에서는 112건이 기소 처리되었다.

출처

Bernhard Jahntz, *Die Strafrechtliche Aufarbeitung des SED-Regimes seit dem Herbst 89 und ihre Grenzen*, http://www.fes.de/magdeburg/pdf/d_27_10_5_3.pdf

자료 31

동독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 사실과 통계

담당자/기관 : 법무부, 정권범죄수사본부, 신연방주 검찰청의 중점수사부

내용

- 형사소추에서는 다음의 범죄유형을 구분하였다:
 - 내독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 선거 조작
 - 법 왜곡
 - 밀고
 - 국가안전부의 범죄
 - 체포자 학대
 - 도핑
 - 직권남용 및 부패
 - (기타) 경제범죄
 - 간첩활동
 - 기타
- 2005년 모든 관련 수사와 재판 절차가 종결되었다. “형사사법과 동독 불법행위 (Strafjustiz und DDR-Unrecht)”라는 연구프로젝트에 의하면 간첩사건소송 외에도 피의자 총 1,731명에 대한 1,201건의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 중 753명에게 벌금형, 또는 자유형이 선고되었다.

출처 : Klaus Marxen / Gerhard Werle/ Petra Schäfer (Hrsg.), 2007. *Die Strafverfolgung von DDR-Unrecht: Fakten und Zahlen*. Berlin: Gutendruck,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III. 복권

| | |
|------------|-----|
| ■ 수록자료 개관 | 400 |
| - 자료 32~39 | 401 |

수룩자료 개관

희생자(슈타지 희생자 또는 사통당 희생자)란 동독 시절 슈타지에 의한 정치적 박해를 받아 생명, 건강, 개인적 자유 또는 재산에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국가 통일을 이룩하면서 체결한 통일 조약 제17조는 이러한 희생자의 복권(復權)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양측은 정치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 형사소추 조치나 기타 법치주의와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의 희생자가 된 모든 사람들이 복권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지체 없이 마련한다는 계획을 확인한다. 사통당 불법정권에 의한 희생자의 복권에는 적절한 보상조치도 포함된다.

연방하원은 통일 이후 다음 세 가지의 복권법(復權法)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 **형사복권법(StrRehaG)**: 이 법은 1945년 5월 8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 가입 지역에서 내려진, 자유·법치주의 질서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형사재판 판결의 무효화를 가능하게 한다. 입법부는 2007년 8월 21일 희생자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1945년 5월 8일부터 독일 통일까지 부당하게 감금되었던 희생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감금되었던 이력이 있고, 빈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최대 월 250유로까지 지급된다.
- **행정복권법(VwRehaG)**: 이 법은 가입 지역 내의 불법적인 행정적 결정과 그 결과를 무효화하려는 것이다.
- **직업복권법(BerRehaG)**: 이 법은 정치적 박해의 목적으로 행해진, 직업 및 직업 관련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관련한 복권과 사회적 보상을 규정한다.

상기 세 복권법에서 정의한 혜택의 신청기간은 “제3차 복권법규 개선법”으로 2007년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22 역주: 구 동독을 말함.

자료 32

사통당 정권 희생자 분류

담당자/기관

“사통당 독재의 역사와 잔재 청산” 조사위원회

내용

- 희생자 분류 항목 (법익(法益, Rechtsgut)의 피해)
 - 생명(사형선고, 살해, 강압적인 의료치료 거부 등)
 - 신체와 건강(환경파괴, 도핑, 고의적인 심리적 가해 등)
 - 자유와 인간 존엄성
 - 소유물과 재산
 - 직업에서의 발전
- 희생자 개인의 복권, 보상, 고통 경감을 위한 입법 조치
 - 내독국경 희생자를 위한 수감자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명령
 - 재산손실 희생자를 위한 재산법
 - 추방 이후 동독에 정착한 탈출자와 추방자를 위한 연방원호법 (Bundesversorgungsgesetz)²³

출처

Bericht der 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Drucksache 12/7820, S. 229-233.

²³ 역주: 정식 명칭은 Gesetz über die Versorgung der Opfer des Krieges. 전쟁 희생자와 전쟁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

복권법(Rehabilitierungsgesetz)

담당자/기관

독일연방하원

내용

- 독일연방공화국은 통일 이후 세 개의 복권법을 제정하였다.
 - 형사복권법(StrRehaG) (신청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행정복권법(VwRehaG) (신청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직업복권법(BerRehaG) (신청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복권법 신청기간: 연방하원은 2007년 6월 13일 “제 3차 구 동독 정치적 박해 희생자복권법 규정 개선에 관한 법(Drittes Gesetz zur Verbesserung rehabilitierungsrechtlicher Vorschriften für Opfer der politischen Verfolgung in der ehemaligen DDR)”을 결의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동독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감금된 이력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희생자는 월 250유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세 개의 복권법에서 정의한 혜택의 신청기간은 “제 3차 희생자 복권법 규정 개선에 관한 법”에 의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그 외에도 형사복권법에 추가된 제17a조로써 소위 희생자연금(Opferrente)의 지급 규정도 마련되었다.

출처

<http://de.wikipedia.org/wiki/Rehabilitation>

자료 34

형사복권법(가입 지역(구 동독 지역)에서
反법치적 형사소추를 당한 희생자의 복권과 보상에 관한 법)
(Straf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 – StrRehaG),

1992년 10월 29일 – 최근 개정 2007년 12월 13일

담당자/기관 : 연방하원

내용

- 형사복권법은 1945년 5월 8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 가입 지역에서 내려진, 자유·법치주의 질서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형사재판 판결의 무효화를 가능하게 한다.
- 형사복권법은 형사소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진 법원이나 관청의 결정(예컨대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통해 자의적으로 또는 정치적 박해를 위해 자유를 박탈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유박탈은 수감과 유사한 조건하에서의 생활이나 강제노동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
- 신청서는 모든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사무처에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신청자가 사회복지 차원의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고령이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형사복권을 받으면 사회적 보상급여(특히 감금 기간에 대한 보상금, 감금으로 인하여 건강 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희생자 연금(Opferrente, 또는 Opferpension)과 원호금(Versorgungsleistung))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형사복권을 받으면 무효화된 과거 법원이나 관청의 해당 결정과 관련하여 압수되었던 재산가치를 반환받거나 그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당사자가 당시에 입은 피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하여 연방원호법 적용 하에 원호금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연방법무부

자료 35

행정복권법(가입 지역(구 동독 지역)에서의 反법치적 행정결정 무효화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권) (Verwaltungs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 – VwRehaG)

1994년 6월 23일 – 최근 개정 2009년 6월 25일

담당자/기관 : 연방하원

내용

- 행정복권법은 동독 국가기관이 취한 법치주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 조치를 무효화하거나, 또는 행정 조치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됨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 조치가 건강 상의 피해, 재산가치의 손실, 직업 상의 불이익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피해를 사회적 보상 조치를 통해 완화한다.
- 행정복권법은 특히 연방원호법, 재산법, 직업복권법과 연계되어 있다.
-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보상해야 할 피해가 없는 특정한 경우에는 복권국(復權局)²⁴이 동독 국가 기관이 행한 심각한 불법적 조치의 反법치성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反법치성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反법치적 조치가 정치적 박해를 목적으로 당사자의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 심각한 멸시와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 제1조, 또는 제1a조에 의한 신청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서면으로 담당 복권국에 제출해야 한다.

출처 : 연방법무부

²⁴ 역주: Rehabilitierungsbehörde. 구 동독 지역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안할트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주, 작센 주에 각각 한 곳씩 있으며, 특정 부처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자료 36

직업복권법
(가입 지역에서의 정치적 박해 희생자의 직업적 불이익 해소에 관한 법)
(Berufliches Rehabilitierungsgesetz – BerRehaG)

1994년 6월 23일 – 최근 개정 2007년 8월 21일

담당자/기관

연방하원

내용

- 이 법은 정치적 박해의 목적으로 행해진 직업 및 직업 관련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관련한 복권과 사회적 보상을 규정한다.
- 학생의 신분으로 박해를 당한 자도 복권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보상급여의 종류는 제한되어 있다. 직업복권법의 중점 사항은 연금 관련 불이익의 해소이다.
- 직업복권법은 형사복권법 및 행정복권법과 연계되어 있다.

출처

연방법무부

자료 37

희생자 연금(Opferrente) 신청서

담당자/기관

베를린주 보건복지청

출처

www.berlin.de/lageso/versorgung/antraege/ . 베를린주 보건복지청.

자료 38

행정복권법(VwRehaG)에 의거한 무효화,
또는 反법치성 확정 신청서 /
직업복권법(BerRehaG)에 의거한 직업적 복권 신청서

담당자/기관

베를린주 보건복지청

출처

www.berlin.de/lageso/versorgung/antraege/ . 베를린주 보건복지청.

자료 39

수감자지원법(HHG), 형사복권법(StrRehaG),
 행정복권법(VwRehaG)에 의거한
 상해 피해자 원호금(Beschädigtenversorgung) 신청서

담당자/기관

베를린주 보건복지청. 베를린 원호청

출처

www.berlin.de/lageso/versorgung/antraege 베를린주 보건복지청. 베를린 원호청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IV.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 | |
|------------|-----|
| ■ 수록자료 개관 | 410 |
| - 자료 40~48 | 412 |

수룩자료 개관

동독의 정치체제가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자 사통당 독재의 역사적·정치적 청산과 관련하여 민간, 공공, 학술 부문의 다양한 자발적 작업과 기관, 단체들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연구들을 보완하기 위해 연방하원이 독일의 내적 통일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늘어났다.

연방하원은 1992년 3월 12일 “사통당 독재의 역사와 결과 청산”이라는 명칭의 조사위원회(앙케이트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후 그 후속 위원회인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사통당 독재 결과 극복”이 1998년까지 청산작업을 이어갔다.

청산작업 관련 단체와 희생자단체는 넉넉하지 않은 재정과 불충분한 조직으로 인하여 그들의 중요한 과제를 원하는 범위에서 계속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97년 10월 조사위원회는 중간 보고서를 통해 연방하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청산관련 연방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재단은 연방 직속의 공영 재단으로서 동독 과거 청산을 위한 기존의 자발적 작업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상되었다.

그 후 1998년 6월 5일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설립에 관한 법”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되었다. 법이 발효된 직후 재단이사회(Stiftungsrat)가 구성되어 재단 사업 개시에 필요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임시 정관이 만들어졌고, 명예직으로 일할 5인으로 구성된 회장단(Vorstand)이 선출되어 재단 업무를 맡았다.

1998년 11월 2일 독재청산재단이 업무를 개시하였다. 재단의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민간 문서보관소, 희생자단체, 학계와 정치교육계의 사회적 청산 사업 장려 및 지원
- 문서, 특히 사통당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세력, 재야세력에서 나온 자료와 문서의 안전한 보관, 수집, 기록에 대한 기여
- 정치적 박해 희생자 상담과 돌보기
- 독재정권 청산 관련 국제적 협력 지원

독재청산재단은 설립된 이후 독일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파트너에게 총 2,800만

유로 이상을 지원해주었다. 이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약 1,880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문서 발굴, 전시회 조직 및 개최, 세미나 및 회의, 교육 매체 개발, 희생자단체 업무의 지속, 기념관의 계속적 발전, 전시관 확충 등이 이루어졌다. 독재청산재단은 많은 경우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수많은 자체적 행사와 출판물 통해 기록제 역할을 하였으며, 청산작업에 있어서 서비스 기능도 수행하였다.

자료 40

앙케이트위원회(Enquête-Kommission)

담당자/기관

연방하원

내용

- 독일 연방하원은 의사규칙(Geschäftsordnung) 제56조에 의거하여 “광범위하고 중요한 복합적 사안에 대한 결정을 준비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 동안 사통당 독재정권의 역사와 잔재 청산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순차적으로 2개의 위원회가 있었다.
 - 제12대 연방하원의 조사위원회는 “사통당 독재의 역사와 잔재 청산”이라는 명칭으로 사통당 치하 구 동독의 권력구조와 의사결정 메커니즘, 책임의 문제, 법과 사법 및 경찰, 교회, 재야세력 활동, 1989년 가을의 평화혁명에 관해 연구하였고, “특별한 문제”로서 국가안전부와 “사통당 정권 희생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 그 후 제13대 연방의회 조사위원회는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 극복”이라는 주제 하에 사통당 독재정권 희생자, 공직의 엘리트 교체, 사법적 청산, 교육, 학술, 문화, 문서보관소, 독일 역사 상 두 번의 독재 및 그 희생자들에 대한 순독일적 추모 방식, 중앙·동부·동남 유럽에서의 전제적 독재 청산을 위한 국제협력 전망 등을 다뤘다.
- 구성: 연방하원 의원 및 외부 전문가

출처

Weidenfeld, Werner und Korte, Karl-Rudolf (Hrsg.). 1999.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1949-1989-1990*.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S. 330-342.

자료 41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 극복” /
조사위원회 중간보고서 -
“역사청산과 사통당 독재 결과 청산을 위한
독립적 공공 연방재단 설립”에 관한 중간보고

1997년 9월 25일

담당자/기관

조사위원회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 극복”

내용

- 조사위원회는 관련 연방법을 제정하여 사통당 독재정권의 탄생, 역사, 결과의 종합적인 청산, 민주적 정치문화, 독일의 내적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 공영 연방재단을 설립할 것을 연방하원에 권고한다.
- 재단에 관한 세부사항
 - 재단의 소재지
 - 재원 조달
 - 재단 조직
 - 사업 분야

출처

Materialien der Enquete-Kommission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 S. 60-75.

자료 42

사통당 독재 청산 재단 설립에 관한 법

1998년 6월 5일

담당자/기관

독일연방하원

내용

- 법적 형식: 재단
- 재단의 목적
 - 사통당 독재 청산 분야에서의 타 기관과의 협력, 독일 내 소련 점령지역과 동독 지역에서의 독재정권 발생 원인, 역사 및 결과에 대한 종합적 청산작업에 대한 기여 및 지원.
- 재단 자산
 - 재단은 그 설립 목적(제2조 1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방예산법에 의한 연방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연간 보조금을 받는다. 재단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기타 수입은 재단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 나아가 재단은 제3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독자적 법률행위(Rechtsgeschäft)를 할 수 있다.
- 정관
 - 독재청산재단은 연방내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재단 이사회가 2/3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 정관을 채택한다.
- 재단 조직
 - 재단이사회(Stiftungsrat)
 - 임원회(Vorstand)
 - 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자문위원회(Fachbeiräte)²⁵를 소집할

자료 42

수 있다.

- 감독, 예산, 회계감사, 법률 구제, 관청 간 협조(Amtshilfe)
 - 독재청산재단은 연방내무부의 법적 감독을 받는다.

출처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8 Teil I, Nr. 33.

25 역주: 사회적 과거청산 분야, 문서보관소 분야,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다.

자료 43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정관

2000년 10월 23일

담당자/기관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재단이사회

내용

- 본 정관은 재단이사회가 연방내무부와의 합의 하에 의결되었다.
 - 재단 조직
 - 업무규정
 - 비용

출처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활동보고서(Tätigkeitbericht der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1998-2001.

자료 44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의 지원 원칙

2007년 1월 1일

담당자/기관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내용

- 독재청산재단은 사회단체, 민간 문서보관소, 사통당 독재 희생자단체들, 정치교육 기관, 학계의 독재청산 관련 프로젝트를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원한다.
- 법적 근거: 지원은 독재청산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개별적 프로젝트의 지출을 충족하기 위한 지원금으로서 연방예산법 제44조의 행정규정에 준하여 집행된다.
- 지원 대상
- 지원 조건
- 절차
- 지원금의 종류, 규모, 금액
- 이상의 지원 원칙은 독재청산재단의 기존 임시 지원 원칙을 대체하며 1997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출처

<http://bundesstiftung-aufarbeitung.de/downloads/pdf/2010/foerdergrundsaeetze.pdf>

자료 45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의 재정 조달

1998 - 2008년

담당자/기관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내용

- 독재청산재단의 예산은 대부분 연방예산에서 조달된다.
- 제3자에 의한 지원(예컨대 기부금이나 스폰서링)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활동보고서(Tätigkeitsbericht der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1998-2008

자료 46

사통당 독재청산 재단의 구조와 사업 분야

1998 - 2008년

담당자/기관 :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내용

• 구조

- 재단이사회(Stiftungsrat): 재단 최고의 기구로, 5년마다 선출되며, 재단이사회에는 연방하원, 연방정부, 베를린주 대표자와 과거청산 분야에서 특별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재단이사회 이사장은 마르쿠스 메켈(Markus Meckel) 연방하원 의원이다. 재단이사회는 재단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임원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 임원회(Vorstand): 임원회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며 재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대표는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²⁶이다.
- 세 개의 전문가문위원회(Fachbeiräte): 전문가문위원회는 이사회와 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 사무국(Geschäftsstelle): 사무국은 독재청산재단 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일한다.
 - 국장: 안나 카민스키(Anna Kaminsky) 박사. 정규 직원.
 - 재단 3대 사업 분야
 1. 사회적 청산 I: 사통당 독재정권 희생자의 상담과 보호관리, 기념관.
 2. 사회적 청산 II: 정치교육과 출판.
 3. 사회적 청산 III: 학술 지원, 국제 협력, 독립 문서보관소 지원

출처 :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활동보고서(Tätigkeitbericht der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1998-2001.

26 역주: 신교 목사. 구 동독 마지막 정부 군축·국방장관. 동독 재야인사로 유명함.

자료 47

베를린-호헨쇤하우젠(Berlin-Hohenschönhausen) 기념재단

1998 - 2008년

담당자/기관

베를린-호헨쇤하우젠 기념재단

내용

- 2000년 7월 “베를린-호헨쇤하우젠 기념관”이란 이름으로 베를린에 법적 능력이 있는 공영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
- 기구: 재단이사회(Stiftungsrat)와 자문위원회(Beirat)
- 재정: 베를린주와 독일연방공화국이 조달한다.
- 기념관: 1994년 국가안전부의 중앙구치소 자리에 기념관이 설립되었다. 2000년 7월 이래로 베를린-호헨쇤하우젠 기념재단은 독립 공영재단이다.

출처

<http://www.stiftung-hsh.de/index.php>.

자료 48

희생자단체

1998 - 2008년

담당자/기관

사통당 희생자와 희생자단체를 위한 상담소

출처

http://bundesstiftung-aufarbeitung.de/service_wegweiser/beratungsangebote.php.

동 책자에 실린 내용은 통일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독일 통일 20년 계기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1.5 통일비용과 재정정책

통 일 부

CONTENTS

제 1 부 통일비용과 재정정책 / 알렉산더 피셔(Alexander Fisher) · 427

1. 개요 · 428
 2. 독일 통일 “비용” · 435
 3. 왜 서독에서 동독으로 상당한 이전지출이 필요한가? · 437
 4. 통일 이후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지출이 필요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초반 추산 내용 · 439
 5. 모든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 444
 6. 1990-1995 독일연방정부의 재정 전략 · 449
 7. 독일 통일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한 국가 부채 확대 · 449
 8. 통일 재원을 위한 세금, 수수료, 사회보장분담금 및 기타 분담금 인상 · 455
 9. 긴축정책, 예산 재편,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 461
 10. 독일 통일로 얻은 손실과 이익 · 462
 11. 결론 · 467
- 약어색인 · 471

제 2부 자료 목록(해제) · 477

- 자료 1 통일의 경제적 비용 · 478
- 자료 2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에 관한 개요와 이러한 이전 지출이 경제 발전과 각 주정부 재정 및 지역자치단체 재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 480
- 자료 3 이전 지출의 성과 - 구동독지역 재건 지원과 발전 제약 · 482
- 자료 4 독일의 국내총생산, 소비 및 직업 활동 (1970-2000) · 484
- 자료 5 공공 재정의 재정 수요와 공공 부채 · 485
- 자료 6 독일 통일에 관한 국민경제 관점 · 488
- 자료 7 제 2차 발전 보고서: 구동독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경제연구소 보고 (2003.11) · 490
- 자료 8 독일 통일 - 이전 지출의 문제 · 492
- 자료 9 화폐 전환 이후 독일에서의 화폐 · 494
- 자료 10 재정 정책상의 조치 및 통합 과정-독일 통일 5년에 대한 회고 · 496
- 자료 11 독일 통일의 자원 마련 · 497
- 자료 12 신연방주에 대한 발전지원 · 498
- 자료 13 통일의 비용은 얼마인가? 구동독지역에 대한 이전 지출 성과에 대한 평가 · 499
- 자료 14 10개항 프로그램 · 500
- 자료 15 구동독지역에서 국가 경제 및 기업적 차원에서의 적응단계 진행(요약집) · 502
- 자료 16 재정 정책과 통일 - 10년의 결산 · 503
- 자료 17 공동 경제-화폐 구역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사항 · 505
- 자료 18 지역 간 협력의 지원/보조를 위한 양독 간 공동위의 설립과 업무지침에 관한 협의 · 506
- 자료 19 구동독의 경제 상황에 관하여 · 507

제 1 부

통일비용과 재정정책

알렉산더 피셔(Alexander Fisher)¹

| | |
|--|-----|
| 1. 개요 | 428 |
| 2. 독일 통일 “비용” | 435 |
| 3. 왜 서독에서 동독으로 상당한 이전지출이 필요한가? | 437 |
| 4. 통일 이후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지출이 필요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초반 추산 내용 | 439 |
| 5. 모든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 444 |
| 6. 1990-1995 독일연방정부의 재정 전략 | 449 |
| 7. 독일 통일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한 국가 부채 확대 | 449 |
| 8. 통일 재원을 위한 세금, 수수료, 사회보장분담금 및 기타 분담금 인상 | 455 |
| 9. 긴축정책, 예산 재편,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 461 |
| 10. 독일 통일로 얻은 손실과 이익 | 462 |
| 11. 결론 | 467 |

¹ 알렉산더 피셔 박사는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IW)의 국장을 역임했다. 알렉산더 피셔 박사의 연락처는 alexfisher@gmx.de이다.

1. 개요

독일통일은 세계 제2차 대전 이래 세계 최대의 경제 프로젝트이자 정치적 사건이었다.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양 독일을 위한 통일 조약(the Unification Treaty)²과 소위 “국가 조약(State Treaty)”³ 이라고 부르는 조약에 대해 서독 및 동독 의회의 동의와 비준을 거쳐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동독으로의 이전지출은 이전부터 실시되었지만 1990년 늦봄에는 이전지출이 멈추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전지출의 여부는 화폐, 경제, 사회 분야의 공식적 통합이 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소위 화폐·경제·사회 통합(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WWU)이라고 불리는 조약의 내용이 통일의 모든 경제적, 재정적 부분의 주요 핵심이었다.

서독 정부는 새로 선출된 동독정부⁴에 화폐·경제·사회 통합 없이는 동독에 막대한 이전지출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950-2000년의 동독 GDP 증가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 1에서 볼 수 있듯 1990년 상반기 동안 경제적 압박은 높아져 갔다.

동독(DDR)의 엘리트 정치인들은 1990년 3월 18일 실시된 첫 자유선거에서 권력을 잃었다. 이러한 사실은 동독의 정치 지도자들이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찬성하는 표를 던지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새로 설립된 의회(자유선거로 선출된 동독의 마지막 의회)의 67명의 의원들은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반대표를 던졌다.

화폐·경제·사회 통합을 받아들이고, 1990년 8월 통일 조약에 서명하면서, 동독 사회의 재건을 위한 대규모 이전지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1989년 말 동독의 인구수는 1,660만 명으로 서독 6,270만 명의 26.5%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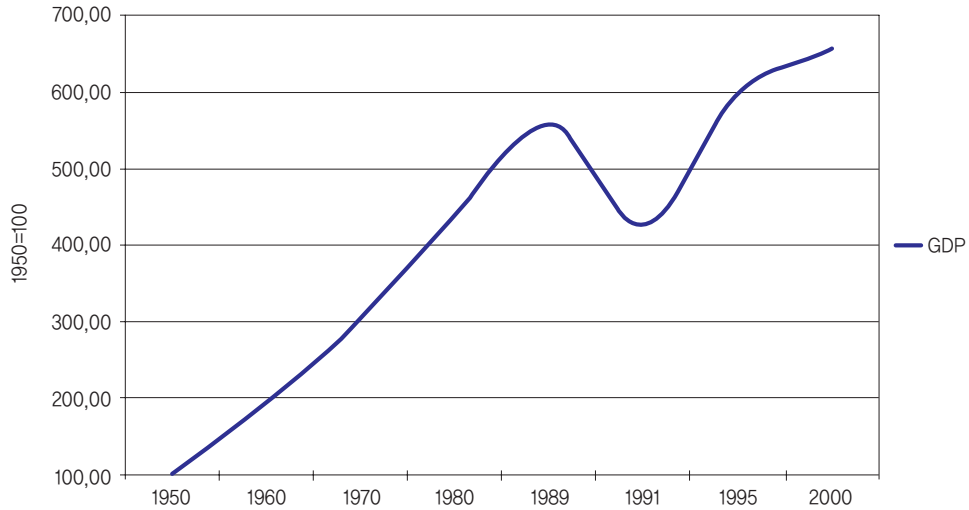
동독화폐인 “동독 마르크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질 생산력과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동독 근로자의 임금이 어느 수준이 되어야 서독과 균형이 맞을지 측정하고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1989년 말 동독 내부의 계산에 의하면 비율은 1:4.7이

2 통일 조약(Einigungsvertrag)은 1990년 8월 31일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auble) 서독 내무장관과 귄터 크라우스(Günther Krause) 동독 국무장관이 동독에 위치한 황태자궁(Kronprinzenpalais)에서 서명하였다.

3 독일어로는 “Staatsvertrag”이라 칭함.

4 기독교민주연합당(CDU, 기민련) 그리고 사회민주당(SPD, 사민당) 등 간의 동독 대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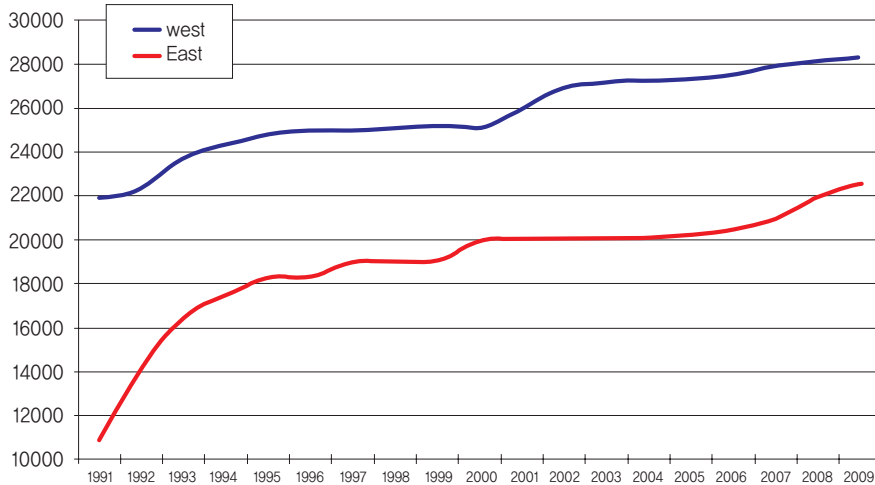
그래프 1 | 1950-2000년 신연방 주의 GDP 발전상황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Office of National Account Germany)

었다. 하지만 이후에 발견된 통계자료에서는 동독의 생산품을 국제 시장에서 거래할 때, 23 서독 마르크를 받으려면 100 동독 마르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성에 비해 월급과 임금에 대한 1:1의 화폐통합이 얼마나 급진적인 생각이었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준다. 균형이 맞으려면 비율은 적어도 1:4.4는 돼야 했다. 암시장의 비율은 1:8, 심지어 1:10까지 했다. 이러한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가 바로 동독 경제가 붕괴된 이유였다(동독과 서독의 근로자당 연평균 월급과 임금의 상승치는 아래 그래프 2를, 동독과 서독의 1인당 GDP 비율은 그래프 3을 참조하라).

【그래프 2】 근로자당 연평균 임금과 월급(유로) - 서독, 동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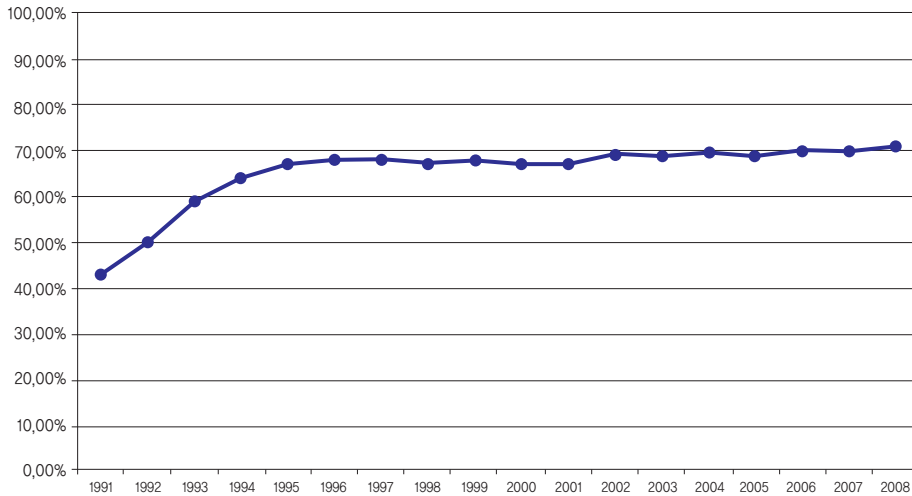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Federal Office of National Account Germany)

따라서 통일에 필요할 것이라 추산한 금액이 완전히 빚나갔다는 것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1990년 화폐·경제·사회 통합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예로, 당시 서독의 야당 지도자였던) 사민당(the Social Democratic Party) 당대표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aine)은 동독을 재건하는데 1,000억 유로(약 150조 원)가 들 것으로 추정했고, 이는 정당과 특히 독일 납세자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와 그의 추종세력⁵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했다.

그 당시 라퐁텐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통일은 점진적으로, 경제적 조정 및 사회 통

5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전 독일 총리는 “원래 하나였던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누구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Jetzt wächst zusammen, was zusammen gehört und wir müssen aufpassen, da ß niemand unter die Rader gerät”) 브란트 총리의 정치적 반대세력은 그의 깊은 생각이 담긴 이 진술을 악용해 유권자가 브란트 총리가 통일에 반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그래프 3 | 1991-2008년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1인당 GDP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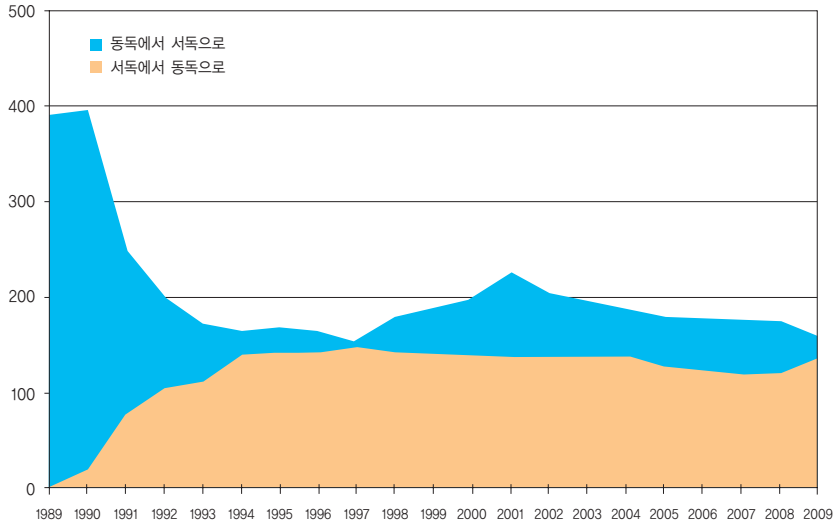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합은 좀 더 느린 속도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를 담은 계획은 1:1 비율로 화폐통합이 발효된 1990년 7월 1일, 헬무트 콜(Helmut Kohl) 전 독일 총리가 서독 의회에서 전설적인 연설을 하면서 묻혀버렸다. 콜 총리는 동독이 곧 번영하게 될 것이라 약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정부가 통일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선언했다. 돌이켜보면, 1990년 여름은 서독이 동독에게 대의민주제에서 표를 얻기 위한 약속이 넘쳐났던 여름이었다. 헬무트 콜 총리가 이끌던 서독정부는 콜 총리 자신이 임기로 있는 동안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1:1 비율의 화폐통합을 약속한 것은 독일중앙은행(Deutsche Bundesbank), 독일 정부에 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언을 하는 기구인 독일 경제자문위원회(Sachverständigenrat zur Beurteil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Lage der Bundesregierung in Deutschland)를 비롯한 각자의 경제적 이론과 논리를 가진 대학의 경제학자들과 독일경제연구소(DIW)와

【그래프 4】 1989-2009년 독일 내 이주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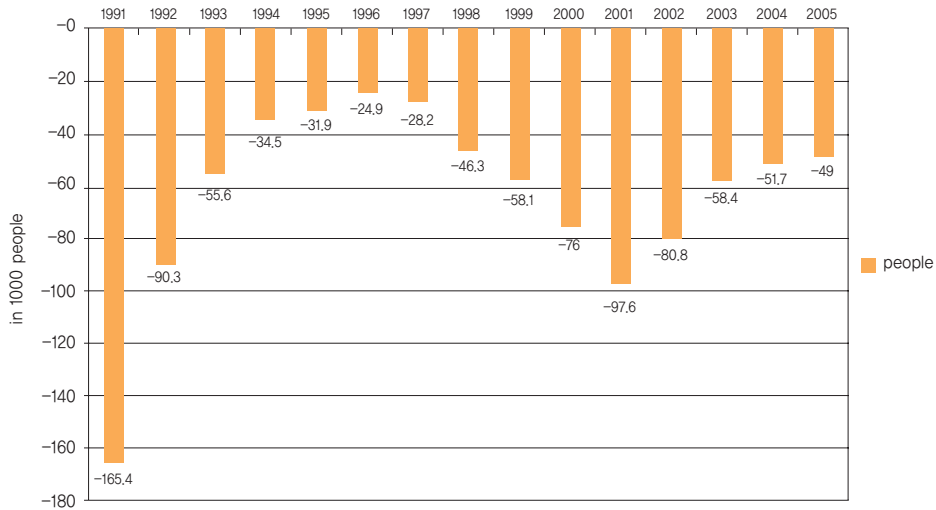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같은 독일의 싱크탱크 등 여러 분야에서 터져 나온 경제적 조언과는 상충되는 결정이었다. 1:1 화폐통합을 통해 동독에서 서독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의 주요부분이 중단되었다고 할지라도, 동독은 특히 젊은 세대의 주요한 부분을 서독에 잃었다. 1989년부터 2009년까지 일어난 독일 내 이주 현황에 대해서는 위의 그래프 4, 5를 참조하라.

20년이 지난 오늘 분명한 사실은 1990년에 정부가 약속한 내용 중 일부분만이 지켜졌다는 것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20년 전과 비교해 훨씬 발전했고, 동독인은 통일 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언젠가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지역 예산을 담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세금을 전혀 올리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부채를 통해서(동독 경제가 경쟁력을 갖췄을 때 빚을 상환하고, 독일 전체 예산에 세수를 올림으로써) 통일에 필요한 자금을

그래프 5 | 1991-2005년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간 이주현황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여전히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로 있다. 특히 2008/09년 경제위기를 겪고 난 후에는, 자본을 자체 조달하고 통일로 얻은 수익에서 부채를 갚는다는 이상적인 생각은 현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독일 통일을 위한 국가 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했고, 주요 연방예산에서 조달한 공채는 다양한 형태의 제2차 그림자 예산으로 투입되어 그동안 늘어난 부채가 얼마인지 거의 추산하기 불가능할 정도였다. 동시에 GDP 대비 부채 비율 때문에 금리는 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채무원리금 상환액의 증가를 가져왔다.

통일 비용을 묻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다. ‘비용’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통일의 경제적 비용은 종종 동독에 대한 공공 지출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통일 비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통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값비

싼 일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이하 “독일 통일 비용” 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또한 통일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세세히 검토 할 것이다. 자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부터 논의해보면, 정부가 매년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만약 통일 과정 초반에는 대출만으로 그리고 소위 독일 통일 기금(Fonds Deutsche Einheit)이라고 불리는 자금으로 통일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곧 이것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동독의 퇴락한 산업으로, 동독 주민 개개인의 호주머니로, 그리고 동독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가능한 한 빨리 자금을 보내야했던 기관들은 다양한 대출 수단을 만들어냈다. 또한 1990년대 초 그러한 대출 수단이 만들어지던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세금 개혁이나 변화가 있었고, 각 정부는 매년 시기가 되면 세금인상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통일 비용과 조달에 대한 2, 3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몇 십억, 심지어 몇 조 유로가 통일비용을 조달하는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통일 독일의 8,020만 국민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혹은 영국 등의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의 국민들보다 훨씬 부유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90년대에 터져 나온 행복한 비명과 함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통일 이후 새로운 황금기를 꿈꾸고 기대하게 만드는 환희의 표현인 “번영의 환경”이라는 말 등에 대해서 잘 판단했어야 했던 것 같다. 위에 언급한 통일 조약(Einigungsvertrag)에는 우리가 잘 판단했어야 했다는 몇몇 증거가 들어있다. 조약에는 독일 민영화를 담당하는 독일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⁶ 혹은 줄여서 “Treuhand”)의 모든 “소득”은 동독으로 전달해 동독 내에서 지난 40년간 동독주민들이 쌓아온 것을 되돌려주자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영화 작업 초기에 예상된 수익은 대략 6,000억 독일 마르크⁷였다. 대규모의 민영화 작업이 마무리 될 무렵 민영화 담당 기관인 독일 신탁관리청은 2,040억 서독 마르크⁸의 적자로 회계장부를 마감했는데, 이는 동독 사회주의 기업과 공기업의 회계장부에

6 동독 국영 부동산의 사유화 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된 기관

7 독일 마르크를 유로와 1:1.96의 비율로 교체했고, 단순화해서 비교해보았을 때 6,000 독일 마르크는 약 3,000억 유로(약 444조 원), 정확히는 3,060억(약 450조 원) 유로이다.

8 약 1,040억 유로(약 152조 원)

익숙한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2. 독일 통일 “비용”

통일 및 국가조약을 기반으로 과거 동독(독일민주공화국)에 속하던 6개 지방 및 주 정부기관⁹이 서독(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법 틀 안으로 합병이 된 후, 동독지역은 독일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정 이전을 신청했다. 이러한 재정 이전은 더 발전된 지역에 비해 뒤떨어진 생활수준을 갖는 지역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독일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이렇게 부를 재분배하는 개념은 “생활 수준의 평등함”¹⁰이라고 불린다. 이는 1990년 10월 3일부터 독일의 더 부유한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으로 대규모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동독 지역은 통일 이후 수년간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고, 대부분의 지역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빈곤한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것은 동독지역의 주를 독일 재정헌법에 귀속시킴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동독의 독일 재정 헌법으로의 귀속을 위한 법적 근거”의 5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아래 그래프 6은 소위 “균등한 재정 정책”¹¹을 통해 정당화된, 동독으로 이전된 유로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 사회의 이런 생각과 헌법은 서독 시민이 동독으로 상당한 액수의 이전과 투자를 하도록 만든 기반이 되었다. 본 장에서는 비용과 동독 지방행정기관과 사회보장기관에 이전된 자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행정적 방법으로 자금이 조달이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아래 “독일 통일의 재정”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¹² 헌법 23조에 따라 1990년 10월 3일 동독을 서독의 재정 헌법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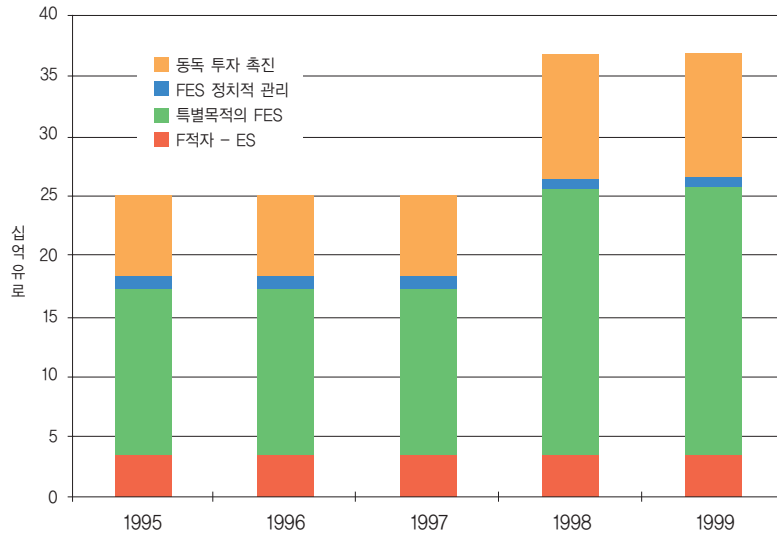
9 해당 주정부는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Anhalt, Sachsen, Berlin-Ost and Thüringen이다.

10 “Gleichwertigkeit der Lebensverhältnisse”

11 Länderfinanzausgleich

12 FRG =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 서독이라고 불렸던 영토

그래프 6 | 1995-1999년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재정균등화정책(FES)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로 흡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왜 서독인들은 동독으로의 막대한 이전지출을 선택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는지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1990년~1994년까지는 독일 통일기금을 통해 동독의 재정을 지원하였고 1995년부터 재정헌법에 통합되었다. 역주). 동독인은 통일 전 수년간 형편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해왔고 이는 동독의 붕괴를 초래했다. 아래 표1은 동독인이 통일이 되기 전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형편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정권이 90년대 초까지 구소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사용한 상황과도 비슷하고, 그 이후로도 자신들이 실제 살고 있는 상황보다 더 부유하는 것을 과시하려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표 1 | 신연방주 및 지방정부의 수입 및 지출

일인당 독일 마르크

| | 주정부 | | | 지방정부 | | |
|-------|------|------|------|------|------|------|
| | 1991 | 1992 | 1993 | 1991 | 1992 | 1993 |
| 세금 등 | 1117 | 1571 | 1692 | 152 | 276 | 357 |
| 기타 수입 | 159 | 310 | 359 | 338 | 696 | 813 |
| 총수입 | 1276 | 1881 | 2051 | 490 | 972 | 1170 |
| 지출 | 5399 | 5852 | 6374 | 2991 | 3915 | 4065 |
| 격차 | 4123 | 3971 | 4323 | 2501 | 2943 | 2895 |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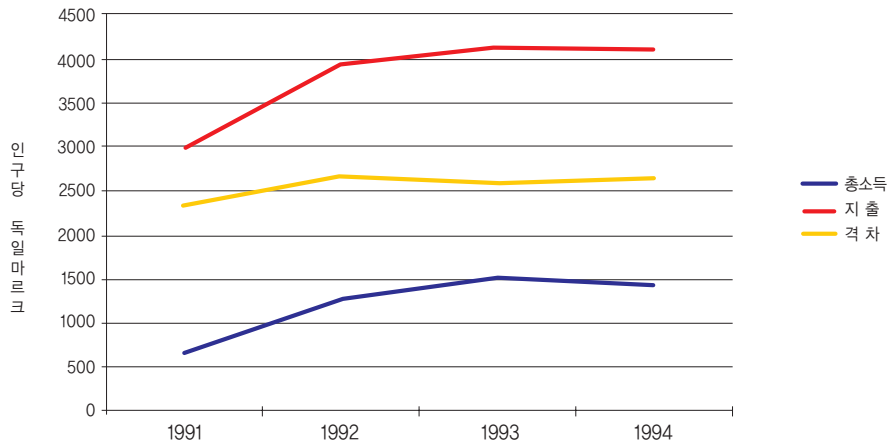
3. 왜 서독에서 동독으로 상당한 이전지출이 필요한가?

그래프 7과 8은 신연방주와 지방정부의 일인당 지출이 일인당 소득을 명백히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격차로 외부의 재원조달이나 너그러운 후원자로부터 일종의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독 납세자, 금리가 빠르게 인상하고 있었던 국제 금융시장, 그리고 다양한 부흥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가 너그러운 후원자가 되었다. 이 내용은 “독일 통일 자금조달”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통일 첫해에 신연방주와 지방정부의 지출과 수입은 막대한 격차를 보였는데, 주정부의 경우 격차가 일인당 약 4,000 독일마르크/2,000유로(약 300만 원)로 총 연간 600억 독일마르크/300억 유로(약 45조 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격차는 2,600 독일마르크/1,300유로(약 190만 원)로 총 연간 390억 독일마르크/145억 유로(약 22조 원)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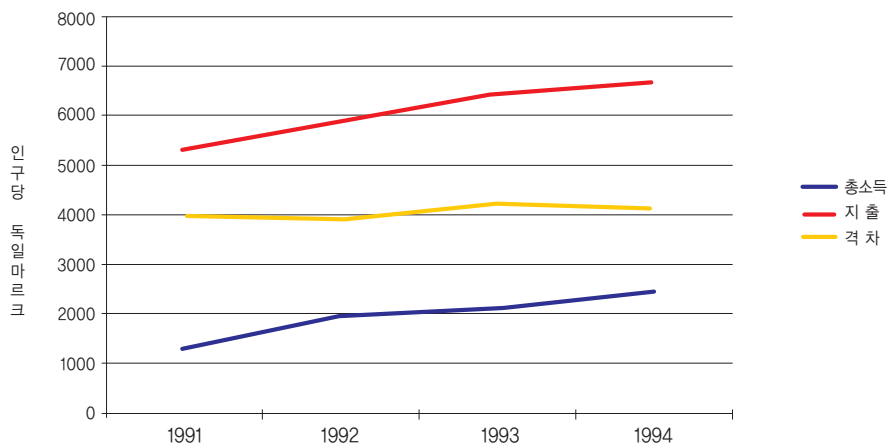
아래 그래프 9는 2000년도의 신연방주와 지방정부의 지출과 수입의 총 격차를 보여준다. 격차는 1994년 일인당 6,600 독일마르크/3,300 유로(약 5백만 원)에서 3,800 독일마르크/1,900 유로(약 280만 원)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금액으로, 이렇게는 절대 지속가능할 수 없다. 아래 그래프 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연방주의 지출과 수입의 격차는 2000년에만도 여전히 막대한 수준인 일인당 3,830독일 마르크를 기록했다.

그래프 7 | 1991-1994년 신연방주 내 지방정부의 소득과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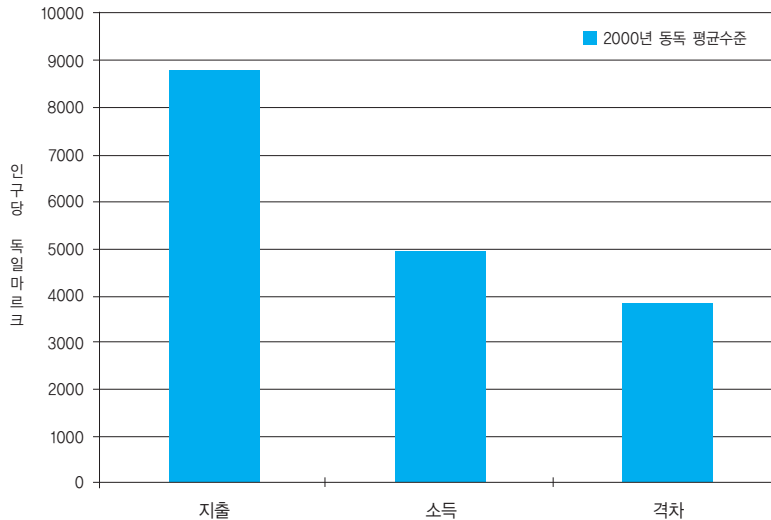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그래프 8 |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그래프 9 | 2000년 신연방주와 지방정부의 지출과 수입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4. 통일 이후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지출이 필요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초반 추산 내용

1990년 봄부터 초여름까지, 모든 경제 기관에서는 화폐·경제·사회 통합이 구동독 지역에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해 상충된 의견을 내놓았다. 독일연방정부가 1949년 화폐 개혁 이후 경험한 것과 유사한 ‘제2의 독일 신화’에 대한 기대부터 신연방주 지역에서 실업자가 수백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다양한 예측이 쏟아져 나왔다.

독일경제연구소(DIW)¹³는 여러 경제 연구소 중 처음으로 동독의 경제발전에 대한 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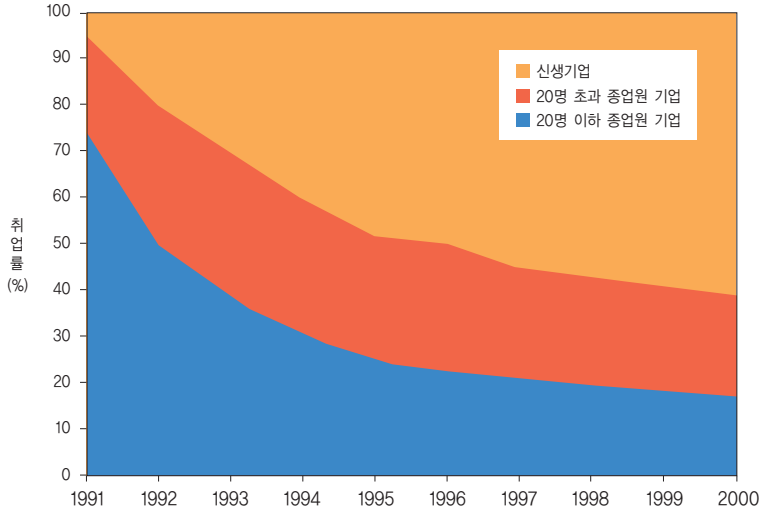
13 DIW = 독일경제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베를린

예측을 실시했다. 독일경제연구소는 임금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추세를 보았을 때 생산량이 급감하지도 않을 것이고, 실업자 수는 최대 백만 정도만 될 것으로 보아 동독 경제가 독일 화폐·경제·사회 통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중기적으로 필요할 이전지출 금액을 연간 500억 마르크/250억 유로(약 37조 원)로 추정했다. 1990년 4월 초 독일의 다섯 개 유력 경제연구소가 공동분석을 실시했을 때에도 초기 재정분담금액과 인프라 건설 비용은 150-200억 마르크/80-100억 유로(약 12조-15조 원)면 충분할 것¹⁴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런 비용은 동독의 새로운 시장 덕에 서독의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늘어나, 그 비용을 대부분 세수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비롯하여 많은 예측이 경제 모델과 예측 면에서 너무나 낙관적이고 잘못된 추산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었다.

비록 보고서에서는 동독 기업의 경쟁적 입지를 유지하도록 임금을 계속 낮게 책정하거나 적어도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지만 중기적으로 세금인상을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주된 문제점은, 생산성의 차이를 감안한 생산성에 따른 거시경제적 임금수준은 1:1로 화폐교환 이후에는 불충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에서 동독의 용역과 제품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당시 모든 서독 경제연구소와 정부기관은 국제경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다. 동독의 생산구조는 대부분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정치구조를 가진 국가의 생산구조였고, 오늘날 북한의 생산구조와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독은 내부적 지향의 결과로 훨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했지만, 북한은 생산량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 만약 이런 국가가 국제적 시장의 경쟁 압력에 한꺼번에 노출이 된다면, 그 국가는 반드시 생산구조를 근본부터 변화시켜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만들기까지는 그 특성상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아래 그래프 10의 취업 비율을 보면 1991년 구동독기업 근로자의 거의 100%가 취업되었던 것이 2000년 신생기업에는 60%가 취업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14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e Lage der Weltwirtschaft und der deutschen Wirtschaft im Frühjahr 1990, in: Wochenbericht of DIW, No. 15/1990.

그래프 10 | 1991년-2000년 동독지역의 기존 기업과 신생기업에서 취업률(%)



출처: 독일연방노동청(German Federal Labor Agency)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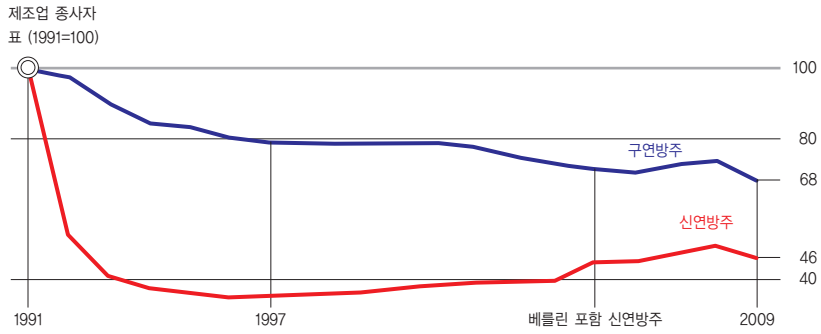
독일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상황은 다음 그래프 11에서 볼 수 있다. 그래프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제조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1991년과 비교해 급감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공식 이천지출 된 금액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통일 3년이 지난 1993년 총 이천지출액은 아래 표 2에서 볼 수 있듯 1,700억 마르크/850억 유로(약 126조 원)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 통일 이후 20년 동안 통일로 인한 이득과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모든 소득에서 비용을 제하여만 할 것이다. 이 내용은 본 보고서 마지막 장의 주제로 통일의 이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총 ‘비용’을 계산할 때는 민간투자가 아닌 공공기관을 통해

15 독일연방노동청(Bundesanstalt fr Arbeit)

그래프 11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표 2 동독으로 이전지출한 금액

10억 독일마르크

| | 1991 | 1992 | 1993 |
|--|-------|-------|------|
| 주정부와 연방정부로 재정이전 | 111.6 | 124.4 | 128 |
| *독일통일기금 | 35 | 36.4 | 35.2 |
| *주정부 프로그램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 12 | 12 | N |
| *통일로 발생한 중앙정부 지출 (순지출 Gemeinschaftswerk 제외) | 50.8 | 59.5 | 74.3 |
| *연방정부 내 부가가치세 영수증 재분배 | 10.8 | 11.5 | 12.5 |
| *연방정부의 이전지출 | 2 | 2.5 | 3 |
| *통일로 발생한 서독의 재정적 손실 | 1 | 2.5 | 3 |
| 사회보험제도로 이전 | 20.5 | 31.8 | 42 |
| *서독에서 동독 실업보험으로 이전 | 20.5 | 31.8 | 40 |
| *서독에서 동독 연금보험으로 이전 | N | N | 2 |
| 총 이전지출액 | 132.1 | 156.2 | 171 |

출처: 독일경제연구소, 베를린

들어온 금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통일로 얻은 이득은 대부분 서독 GDP가 동독의 새로운 시장이라는 기회를 얻게 되어 눈에 띄게 상승했다는 것이고, 이는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독의 재건을 위한 그리고 동독을 절망에서 끌어올리기 위한 비용의 대부분은 공공기관과 사회보험기관을 통해서 투입되었다. 앞의 그래프 6의 독일의 재정헌법에 따른 독일의 재정균등화정책(FES)¹⁶을 통해 고안된 방식을 예로 참조하라. 따라서 단순화해보면 주정부든 당국이든 이러한 이전지출을 할 때 경제적 재정적 노력이 필요한지 추산해내기 위해서 독일 통일에서 동독으로의 공공 이전지출 내역을 계산할 수 있다. 한국이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투자에 사용된 지출이 통일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러한 지출은 경쟁력 있는 신규 자본을 형성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지출은 통일 '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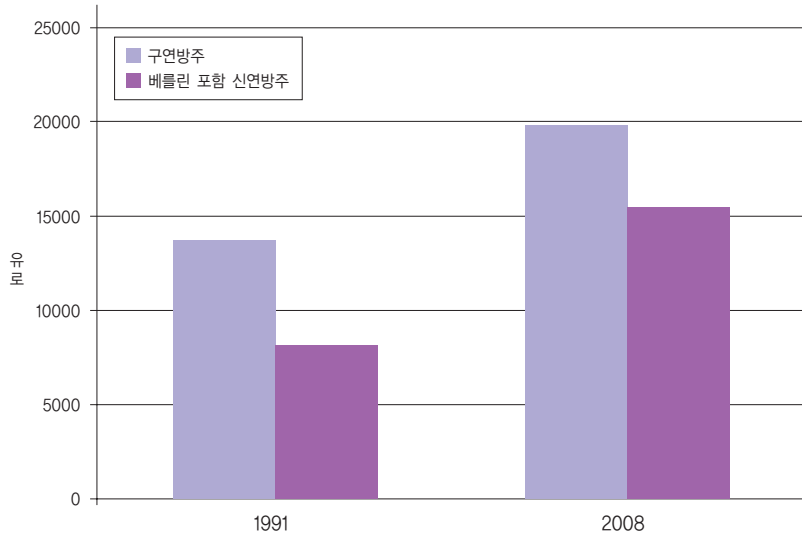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감질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 통일의 총비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지출로 책정한 독일 통일의 대략적인 총비용은 2010년 약 2.1조 유로(약 3,180조 원)였다. 이 비용은 2.4조 유로(약 3,640조 원)를 기록한 2009년 독일 GDP에 달하는 금액이다. 즉 독일인 한 명당 거의 30,000 유로(약 4천5백만 원)를 썼다는 의미이다. 1989년 말부터 동독의 1,660만 주민에게 2.1조 유로¹⁷(약 3,180조 원)를 나눠 준 것은 20년 동안 약 일인당 127,000 유로(약 1억9천만 원)가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되었다는 뜻이다. 혹은 역으로 보았을 때 1989년 6,260만 서독인 개개인이 동독으로 약 35,000 유로(약 5천만 원)씩을 이전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분석적 이유로 통일된 지 20년 후 동독에 보조금으로 주는 비용이 통일 비용에 합산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보다는 지방발전 측면에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전을 했다고 계산해 "독일 통일의 비용"에 합산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1991년과 2008년 사이 동독과 서독의 민간 가구의 가처분소득의 불균형은 그래프 12를 참조하라.

16 German Financial Equalisation Scheme = Landerfinanzausgleich

17 2.1조 유로 = 2조 1000억 유로 = 2,100,000,000,000 유로

그래프 12 | 민간 가구의 가처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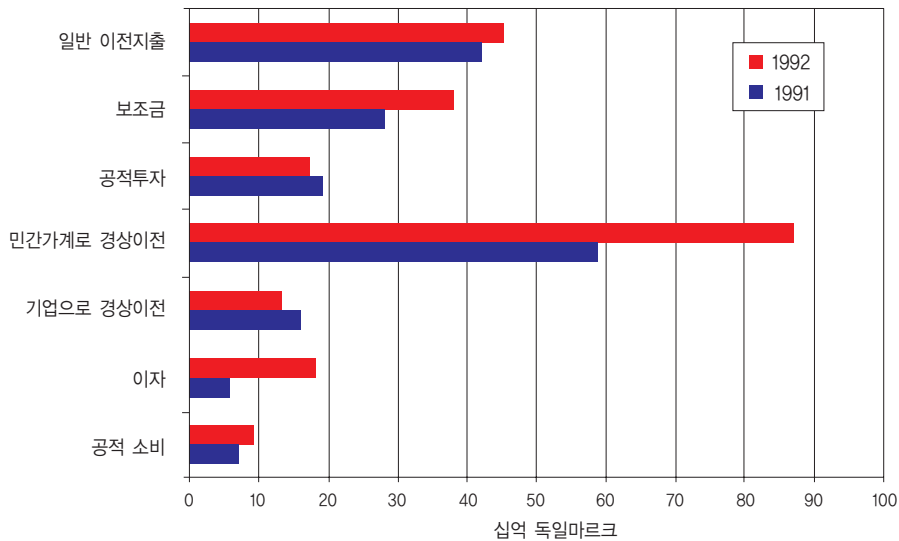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이 논의에 대한 답은 결국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 맥락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시각에서 보면 지역개발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해도 거의 차이가 없다. 궁극적으로 더 부유한 서독 주정부는 독일 재정헌법에 따라 지역별 불균형을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 더 가난한 동독주정부에 지원을 해야만 한다.

5. 모든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아래 표 3과 그래프 13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지출이 일어난 첫해의 상황을 상세히 보여준다. 독일의 방식대로 통일 과정을 조직하고 주도한다면, 1,600만 인구의 피폐된 경제를 재건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래프 13 동독으로의 항목별 공적 이전지출일반 이전지출



출처: 독일경제연구원, 베를린

아래 표3에서 경제개발의 관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동독 GDP 대비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순 이전지출 비율이다. GDP 대 이전지출 비율은 1991년 총 GDP의 53%에 달하는 총 1,422억 독일마르크/710억 유로(약 107조 원)에서 시작해 1992년 1,720억 독일마르크/860억 유로(약 128조 원)로 증가해 동독 GDP를 정확히 50% '사들일 수' 있는 정도였다. 1992년부터의 이전지출은 1998년까지 6.4%가 증가했고, 서독이 이전지출을 통해 조달한 GDP비율은 동독의 총 GDP의 31.1%로 줄어들었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서독의 GDP에서 동독으로 옮긴 결과 GDP 비율은 연간 3.2%씩 하락했다. 이런 속도라면 서독에서 동독으로 모든 이전지출을 줄이는 데는 2000년부터 10년이 걸릴 것이고, 2010년에는 0%의 비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지출의 감소 비율의 감소폭을 보면서 더욱 명확히 알 수 있

표 3 | 신연방정부를 위한 이전지출

독일마르크(10억)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1-1998 |
|-----------------|-------|-------|-------|-------|-------|-------|-------|-------|-----------|
| 지출 | | | | | | | | | |
| 연방 정부 | 74.7 | 89.4 | 114.9 | 114.9 | 135.8 | 139.1 | 131.5 | 132.7 | 933 |
| 주정부/지자체 서독 | 5 | 5.4 | 10.7 | 14.5 | 10.5 | 11.2 | 11.2 | 11.2 | 79.9 |
| 독일통일기금(보조금 없이) | 31 | 24 | 15 | 5 | 0 | 0 | 0 | 0 | 75 |
| 사회보험(순) | 18.7 | 34.2 | 23 | 29.8 | 33.3 | 30.9 | 34.7 | 31.9 | 236.5 |
| 유럽연합 | 4 | 5 | 5 | 6 | 7 | 7 | 7 | 7 | 48 |
| 신탁기관 | 8.8 | 13.7 | 23 | 23.8 | 0 | 0 | 0 | 0 | 69.3 |
| 총 지출 | 142.2 | 171.8 | 191.6 | 194 | 186.5 | 188.3 | 184.4 | 182.8 | 1441.6 |
| 보고: | | | | | | | | | |
| GDP대비 총 이전지출 비율 | 53 | 50 | 46.5 | 40.7 | 35.5 | 34.1 | 32.3 | 31.1 | |

출처: 독일경제연구소, 베를린

는 사실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동독 GDP로의 이전지출은 연간 1.5%만, 다시 말해 3년간 4.4%만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지출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지출 비용을 20년 동안 지켜본 결과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전지출은 동, 서 간에만 이뤄지지 않고 남, 북 간으로도 이뤄지고 있으므로 2010년부터의 이전지출은 지역 간 개발 불균형을 위한 이전지출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보내는 이전지출이 높고, 독일재정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그렇게 지속될 것이다.

정확히 어떤 목적과 어떤 예산을 책정해 서독이 2.1조 유로를 지출했을까? 아래 표 4에서 동서독의 이전지출을 100으로 놓았을 때 어떤 분야로 예산배분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동서독 간 이전지출은 사회복지적 동기에 의한 것이었고, 여전히 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전지출의 31%가 예비비나 미할당이라는 불명확한 예산으로 할당되었다. 최악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지출의 80% 이상이 어떤 특정한 소비의 형태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적 동기에 의한 지출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소비로 정의될 수 있고, 목적이 불분명하게 할당된 예산도 역시 소비되었을 수 있기

표 4 | 목적별 이전지출 총액

(%)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1-1998 |
|---------------|------|------|------|------|------|------|------|------|-----------|
| 사업기반 인프라 지출 | 12.3 | 9.9 | 8.6 | 10 | 13.1 | 13.1 | 13.1 | 12.8 | 11.6 |
| 경제 개발 | 2.5 | 4.8 | 7.6 | 7.5 | 8 | 6.9 | 6.3 | 6.6 | 6.4 |
| 사회복지 정책 위한 지출 | 45.4 | 54 | 54 | 53.8 | 49.4 | 50.3 | 50 | 49.3 | 50.9 |
| 예비비 | 28.1 | 22.4 | 20.1 | 19.5 | 23.8 | 24.3 | 24.9 | 25.6 | 23.4 |
| 미할당 | 11.7 | 9 | 9.6 | 9 | 5.7 | 5.4 | 5.7 | 5.8 | 7.6 |

출처: 독일경제연구소, 베를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를 일으키며 우려가 되고 있는 사항은 어떤 비용이나 이전지출이 특히 “동독인”을 위한 것이고, 반드시 이전지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독일 재정헌법에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은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끝이 없다. 누군가는 통일 없이는 전혀 이전지출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란은 오늘날의 한국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곤할 수 있는 것처럼 서독인들은 언제나 동독에 있는 더 가난한 지역을 위해 자신이 내는 상당한 세금을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어쨌든, 다음 표의 예산은 의심할 여지없이 동독인을 대상으로 한 이전지출로 볼 수 있고, 표 5에 언급된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동독지역에 직접 지출한 금액이 어느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으로의 총 이전지출에 대해 앞서 언급한 내용을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재건 보조금으로 인식할 수 있다.

표 5 | 동독지역의 특정 공공기관으로 총 이전지출한 금액 표

(단위 : 독일 마르크(10억))

| 1991-1998 정부 이전지출 총액 | | | |
|----------------------|------|-------------------|-------|
| 인프라 개발 | | 사회적 지출 | |
| 도로 건물 계획 | 29 | 주택 수당 | 7.2 |
| 대중교통 | 12.8 | BAFÖG | 3.2 |
| 연방 수로 | 3.8 | 아동 수당(매출 손실 포함) | 36.5 |
| 철도 (자산) | 60.1 | 양육 수당 | 6.2 |
| 동독 재건 투자 촉진 | 33.2 | 전쟁 희생자 복지/지원 | 9.6 |
| 문화 인프라 촉진 | 2.3 | 보조금 BA | 87.3 |
| 도시건설 | 4.8 | 실업 수당, ABM | 53.8 |
| 공공지원주택 | 6.2 | 조기퇴직 수당 | 39 |
| 대학 건물 | 5.1 | 사회 보험 | 113.7 |
| 동독 재활시설 보조금 | 2.5 | 기타 | |
| 연방 자산/건물 | 6 | 개인 필수 지출 | 5.5 |
| SDAG Wismut | 5.9 | 탄원 | 31.1 |
| GA 경제-인프라 | 10.5 | 커뮤니티 서비스 | 2.8 |
| GA 농업 인프라 | 2.3 | 연방 보조, 베를린 | 7.3 |
| 기업에 지불 | | 정부 위치 베를린(50%) | 2.5 |
| GA 경제 | 12.9 | 기타 | 42 |
| KfW-/ERP-프로그램(보조금) | 8 | 보증 | 13.7 |
|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 | 6.7 | 지방 정부 할당 | |
| 신탁-승계 기관 | 3.1 | “독일 통일 기금” 보조금 | 47.6 |
| 연구, 기술 | 15.7 | 연방 보조 할당 | 72.7 |
| GA 농업 | 4.9 | 균등한 재정정책을 위한 새 규범 | 68.2 |
| 석유 보조금 | 1.6 | 총 연방 이전지출 | 920.3 |
| 주택대출 금리 보조 | 2.6 | | |
| 철도 (Ifd. 보조금) | 30.4 | | |

출처: 독일 재무부

6. 1990-1995 독일연방정부의 재정 전략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독일이 새로운 국가부채를 통해서만 통일 비용을 조달한다면 독일이 통제 불가능한 부채를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1991년 초 이미 분명해졌다. 독일 GDP 대비 공공 부문 지출 비율의 중요성은 1990년 10월 3일 이후 더욱 더 커졌다. 공공 부문 지출 비율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약 5%씩 증가해 약 1,500억 독일마르크¹⁸를 기록했다. 이는 독일 공공 부문 지출 비율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수십억의 재원을 모두 조달해야만 했다. 독일 주정부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본 장에서 독일 주정부 산하기관이 항상 “재정적 부담은 일시적이고 곧 되갚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며 어떤 재원을 사용해 자금을 확충했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원칙적으로 이 엄청난 일에 필요한 수십억을 조달할 수 있는 3개의 재원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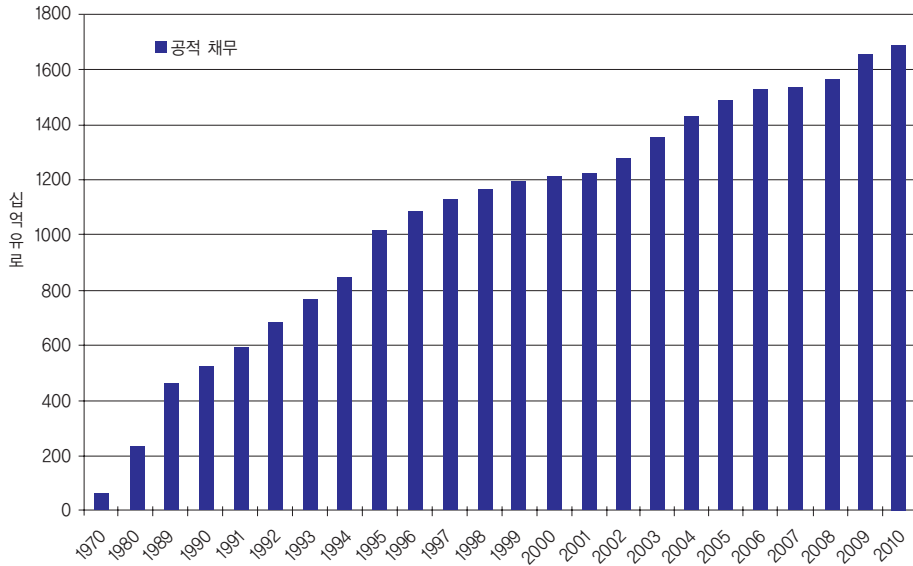
1. 국가 부채 확대
2. 더 인상된 혹은 새로운 세금, 수수료, 기부금 혹은 특별 기부금을 통한 수입 확대
3. 긴축재정, 예산 재편성 및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7. 독일 통일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한 국가 부채 확대

정부는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으로부터 1990년 10월 3일 통일 준비기간 동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1990년 12월 2일 첫 연방 독일정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약속을 했다.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고, 동독 경제는 더 활성화 될 것이고, 곧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모든 공공 당국, 기관, 단체의 공적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심지어 신규공적부채 방법까지 줄지어 개발되었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일 행정부

¹⁸ 유럽부흥개발기금(ERP), 독일통일기금, 부채청산기금(Kreditabwicklungsfonds), 독일신탁청(Treuhand Anstalt), 독일개발은행(KfW, 등)의 다양한 부채를 확대시키는 기관의 부채와는 상관없음.

그래프 14 | 1989-2010년 독일의 공적채무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산하기관의 순 공적채무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4년 동안 4,872억 독일마르크, 다시 말해 독일 GDP대비 20%가량 증가되었고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해왔다. 아래 그래프 14를 참조하라.

사유화 기관 ‘독일신탁청’ 과 국영은행, 개발은행, 공기업 등 다른 많은 공공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위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93년 독일신탁청에서 받은 대출을 포함해 순 공적채무는 1,925억 독일마르크로 1993년 동독 GDP의 6%와 비슷한 수준이다.

독일 내 공적채무의 예상치 못한 증가의 결과로, 공적부채는 1989년 9,164억 독일마르크에서 1995년 2조 615억 독일마르크로 두 배 증가했고, 이는 아래 표 7과 그래프 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 | 공적채무

| 채무자 | 시장 부채 증가함 | | | | 연말 채무 | |
|------------|-----------|-------|-------|------|-------|------|
| | 1989 | 1990 | 1991 | 1992 | 1989 | 1992 |
| 지방행정기관 | 25.8 | 112.2 | 106.8 | 103 | 928.8 | 1346 |
| 총 예산 | | | | | | |
| 연방 정부 | 15.4 | 51.6 | 30.2 | 20.3 | 490.5 | 611 |
| 주정부 | 7.3 | 19.2 | 24.1 | 34.7 | 309.9 | 387 |
| 지방정부 | 2.1 | 4.2 | 15.1 | 16.4 | 121.4 | 157 |
| 특별 예산 | | | | | | |
| ERP 특별 기금 | 1.1 | 2.4 | 6.9 | 8 | 7.1 | 24.5 |
| '독일 통일' 기금 | | 19.8 | 30.7 | 23.8 | | 74.5 |
| 대출 기금 | | 14.9 | -0.2 | -0.3 | | 92 |
| 기타 | 15.7 | 29.8 | 67.5 | 86.6 | | |
| 독일신탁관리청 | | 4.3 | 19.9 | 30.5 | | 107 |
| 독일연방철도 | 1.3 | 4.4 | 7.3 | 13.4 | 44.1 | 56.5 |
| 독일연방체신청 | 2. | 4.8 | 10.3 | 15.4 | 66.2 | 96.5 |
| 연방진흥은행 | 12.4 | 16.3 | 30 | 27.3 | | |

출처: 독일경제연구소, 베를린

따라서 독일 주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989년 40.7%에서 1995년 60%로 증가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존 공적채무뿐만 아니라 기관 스스로 부채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독일통일기금, 독일부채기금(the German Credit Fund)¹⁹, 사유화기관인 신탁청의 2차적인 공적채무도 포함되어 있다. 독일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독일 체신청(the German Post), 독일 철도(German Railway), 독일부흥기금(German Marshall Fund)의 후속 기금인 ERP 기금, 연방진흥은행 등의 2차 공공예산이 있다. 이 모든 기관의 부채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연방 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독일철도의 부채만도 1994년까지 700억 독일마르크에 달했다.

19 독일부채기금 = Kreditabwicklungsfonds sowie Erblastentilgungsfo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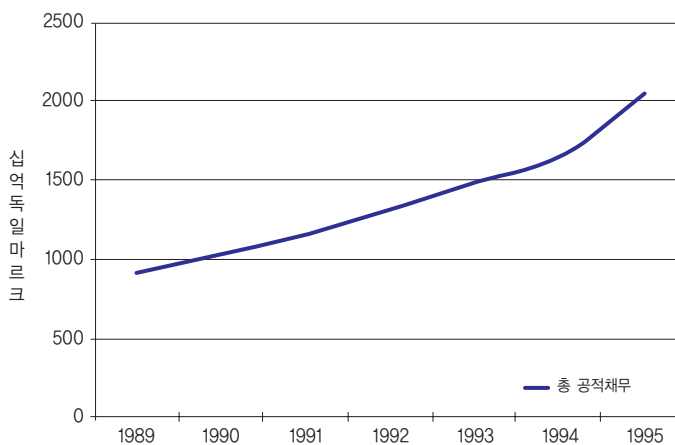
표 7 | 공적채무 전개상황

독일마르크(십억)

|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연방정부 | 490.5 | 542.2 | 586.4 | 606.7 | 670.5 | 738 | 805 |
| 주정부(서독) | 307.6 | 326.4 | 344.6 | 364.7 | 389.5 | 414.5 | 443 |
| 주정부(동독) | . | . | 3.6 | 19.3 | 35.5 | 56.5 | 59 |
| 지방정부(서독) | 111.5 | 114.4 | 119.6 | 126.8 | 137 | 146 | 154 |
| 지방정부(동독) | . | . | 7.6 | 12.2 | 24 | 34.5 | 46 |
| ERP-특별자산 | 6.8 | 9.3 | 16.3 | 24.3 | 34 | 43 | 49.5 |
| 독일통일기금 | | 19.8 | 50.5 | 74.4 | 88 | 92 | 90.5 |
| 부채처분기금 | . | 27.6 | 27.5 | 91.7 | 109 | 121 | 393.5 |
| 총 공적채무 | 916.4 | 1039.7 | 1156.1 | 1320.1 | 1487.5 | 1645.5 | 2040.5 |
| 신탁청 | . | 14 | 39 | 107 | 145 | 230 | . |
| 동독주택산업 | . | 39 | 42 | 47 | 52 | 52 | 21 |
| 총 부채(넓은 의미에서) | 916.4 | 1092.7 | 1237.1 | 1474.1 | 1684.5 | 1927.5 | 2061.5 |

출처: 독일의회

그래프 15 | 독일 공적채무 전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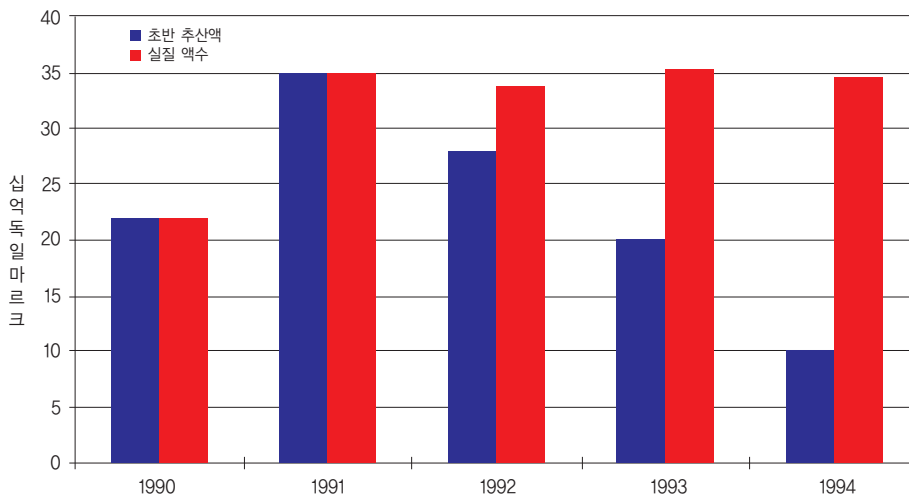


출처: 독일 의회

독일 통일에 뒤이어 신설된 3개의 2차적 예산은 신연방주의 예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채권이다. 독일통일기금의 적법성은 신연방주와 지방정부가 국내 및 국제 대출 시장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독일 재정 헌법에 따른 재분배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신연방주와 지방정부가 현금을 조달하기 위한 통합적 대출 방식을 갖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금의 총 자산인 1,600억 독일 마르크 중 950억 독일 마르크를 국제 대출시장에서 차입하였다. 원래의 추정치는 훨씬 낮았다는 것은 아래 그래프 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독일 통일기금은 아래 그래프 1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기금을 확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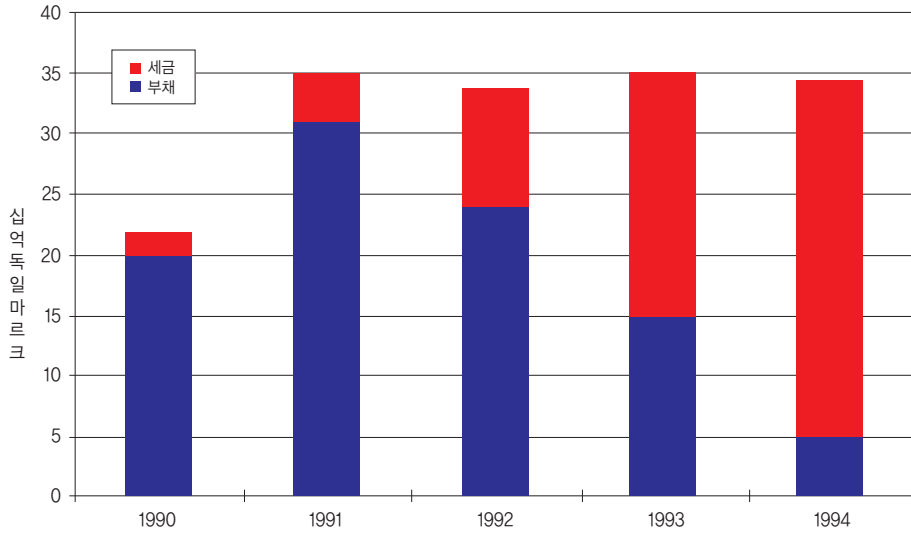
민영 기업의 미지불 부채는 사유화 기관인 독일신탁관리청이, 신연방주와 협동식 주택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는 1995년 연방정부와 모든 주정부가 떠안게 되었다(510억 독

그래프 16 | 1990-1994년 “독일 통일” 기금의 양적 변동상황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그래프 17 | 1990-1994년 “독일 통일” 기금 재정 지원 유형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일마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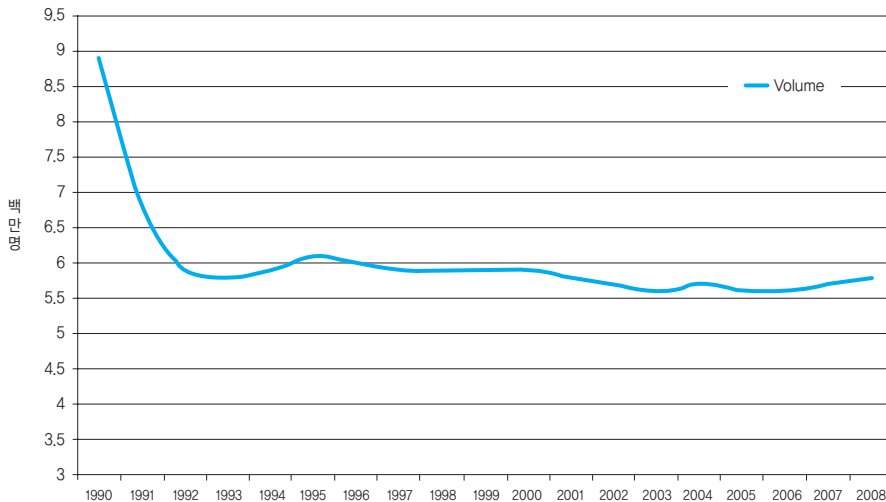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2차적 예산은 민영화 기관인 독일신탁관리청을 통해 생성되었다. 1994년 말 소위 “민중의 부동산” 기금이라고 불렸던 그 기금의 규모는 2,750억 독일마르크였다.

독일 통일 이후로 ERP 특별 기금과 연방정부의 부흥은행의 활동 폭은 상당히 확대되었다. 두 기관의 부채는 350억 독일마르크가 늘어났다.

8. 통일 재원을 위한 세금, 수수료, 사회보장분담금 및 기타 분담금 인상

독일 통일 비용에 관한 장에서 볼 수 있듯, 신규 대출만으로는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는 이전지출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독일 주정부의 총 부채는 통일 후 5년간 두 배로 증가했으며, 세금이나 수수료의 인상 없이 통일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1990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다. 구동독지역으로의 경제적, 사회복지적 이전지출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통일 과정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일종의 투자로서의 대출로 충당한다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가 주

그래프 18 | 1990-2008년 신연방주의 노동인구백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국가통계전담반(Working Group National Account)²⁰

20 Statistisches Bundesamt,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 der Lander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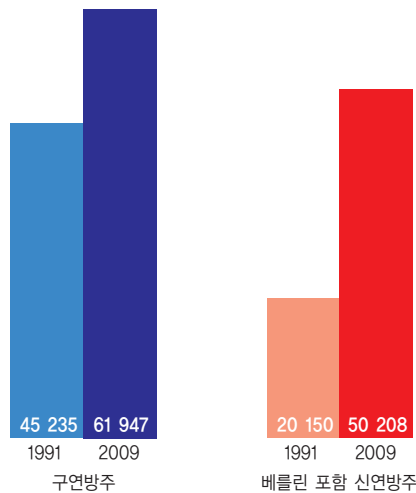
정부의 업무 할당은 줄이면서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예산 이전을 재편성하려는 노력으로도 충분하지 못했다. 1991년부터 독일정부는 점차 세금을 증가시켰으며 분담금은 급격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

세제부담을 늘림과 동시에 동독 주민에 대한 막대한 사회복지적 이전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의 분담금을 높여야만 했다. 1:1의 비율로 화폐통합을 한 이후, 실업률은 치솟았고, 임금 협상가들이 임금을 높이기로 한 이후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동독고용상황에 대한 내용은 위 그래프 18을 참고하라.

화폐비율의 결정만으로도 구동독의 임금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 생산성 이상인 네 배나 치솟았다. 화폐통합 이후의 임금 및 월급 인상 결정은 동독의 이전 생산성 만큼으로나마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마저 없애고 말았다. 이 내용은 위 그래프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절대적 수치의 생산성 불균형은 아래 그래프 19를 참조하라.

그래프 19 | 노동 생산성

근로자당 GDP(유로)



출처 : 독일 연방통계청

1990년, 1991년의 정치적 상황은 세금 인상을 하기에는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었다. 통일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 독일 의회는 독일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련의 세제법에 동의를 한 상태였다. 대규모의 3단계 세제개혁이 1990년 1월 1일 ‘세제개혁법 1990(the Tax Reform Law 1990)’의 이름으로 이미 법으로 통과된 상태였고, 이 법에 따라 납세자들의 소득세 세금부담만도 250억 독일마르크가 줄게 되었다. 세 번의 감세혜택은 총 500억 독일마르크의 세금을 낮춰주도록 고안되었다. 동시에 세제 개혁법이 신연방주에서도 실시되기까지 1991년 1월 1일까지의 시간이 걸렸다. 또한, 독일 의회는 동독 투자에 대한 막대한 감세와 우대정책을 약속했다. 1991년 6월 24일부터 실시된 세금법도 근로자들에게 감세와 세금공제혜택을 가져다주었다.²¹

게다가 독일 주정부는 사업소득세²²와 부동산 혹은 부유세²³도 면제해주었다. 정부는 사업소득세와 부유세의 면제로 생긴 세금결손액을 조달하기 위해 전 베를린분담금, 국경 지역 보조금 및 진흥 보조금을 중단시켰다.

1991년 연례 세금개혁법(Tax Reform Act)²⁴, 1991년 예산법(the Budget Law)²⁵ 그리고 소위 연대가산금법(Solidarity Law)²⁶으로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독일통일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약속은 넘쳐났다. 연방 및 주정부의 소득개선은 통일재원조달을 위한 대출과 부채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 재원으로 발전되었다. 1991년 예산법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는 공기업의 분담금을 올렸다. 예로, 공기업인 독일체신청²⁷ 수입의 연간 분담금을 10% 인상했다. 자세한 내용으로 아래 표를 참조하라.

소위 연대가산금법(Solidaritätsgesetz)이라 불리는 법은 소득세 및 법인세에 7.5%의 세금을 가산함으로써 독일 납세자가 세금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이다. 소득세 및 법인세에 7.5%를 가산한 것에 더해, 독일통일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연대가산금법에 따라 몇몇 세금인상이 진행되었다. 유류세, 천연가스세, 담배세 등의 세금인

21 1991년 6월 26일 Fordergebietsgesetz 그리고 1991년 6월 26일 투자법 (Investitionszulagengesetz)

22 Gewerbesteuer

23 Vermögenssteu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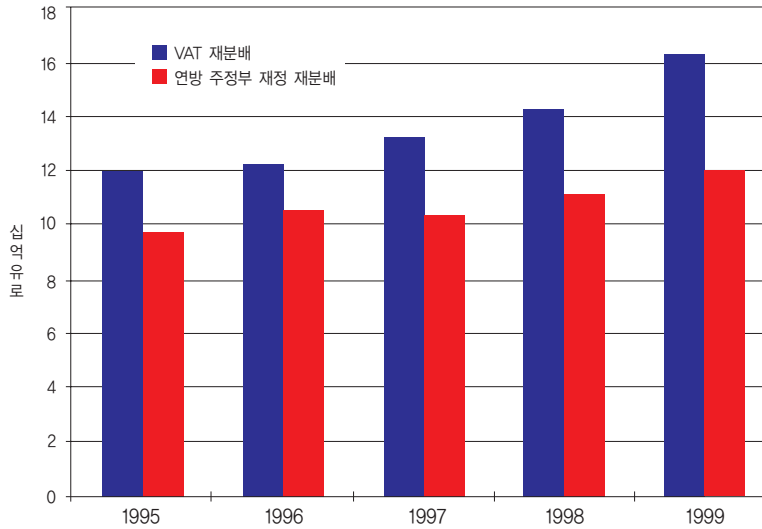
24 Steueränderungsgesetz 1991

25 Haushaltsgesetz 1991

26 Solidaritätsgesetz

27 Deutsche Bundespost

그래프 20 | 1995-1999년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재정 재분배



출처: 독일 재정부 재무보고서(Financial Report of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Finance)

상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세금인상으로 독일정부는 460억 독일마르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통일재원 조달을 위한 세금인상 후에는 부가가치세를 14%에서 15%로 올리는 조치를 단행했다.²⁸ 이런 조치로 얻은 세금 수입은 1993년 1,050억 독일마르크, 1994년 1,290억 독일마르크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위의 그래프 20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수익이 동독에 다시 재분배되었다.

독일 정부가 냉전(the Cold War)으로(냉전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정당화시키긴 했지만, 그 전체 금액은 독일통일기금으로 흘러들어갔고, 부채를 더욱 높이는 대출방식에 대한 압력을 낮췄다. 1993년 1월 1일 일반 부가가치세의 인상 이후, 자산으로

28 Steuerergänzungsgesetz 1992년 2월 25일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걷기 위한 신 세금정책이 개발, 실시되었다. 독일정부는 고정이자 적용세²⁹ 만들었다. 이 세제조치로 얻은 소득도 마찬가지로 독일 통일기금으로 유입되었다.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에 대해 논의가 되어왔는데, 이 새로운 세금의 정당성은 이러한 논의에서 온 것이다.

독일의 주요 세금과 부담금을 바탕으로 하는 독일 주정부의 수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한 모든 조치 이후에는 독일 정부가 세금을 더 이상 올릴 수는 없었다. 반면, 독일 주정부는 통일 이후에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약속받은 동독인들의 높아진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상 최대의 재원이 필요했다. 반면, 동독의 취업률은 1991년과 1992년 대폭 하락해 새롭게 개발된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막대한 이 전지출로만 동독인들의 높아진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반발도 없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고, 동독주민들이 그 지키지 못한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 그저 언젠가는 더 잘 살게 될 거라 믿었다는 것은 두렵기도한 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 정부는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데 온 노력을 다하고 있었고, 신규 국가채무에 대한 금리는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었다.

새로운 세금혁신이 필요했고, 새로운 정당성도 필요했다. 1993년 6월 23일 독일 정부는 의회를 통해 다음의 새로운 세금 인상법을 통과할 수 있었다. 독일은 세금정책에 변화를 줄 때 회계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매해 1월 1일 실행하는데, 1994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작은 규모의 세제정책도 몇 가지 있었다. 1993년 6월 23일의 세금법은 소규모 세금 인상내용과 두 개의 핵심 정책이 포함된 십여 가지의 정책 묶음이었다. 첫째는 보험세 인상 결정이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30억 독일마르크의 세금³⁰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했다. 둘째, 독일 정부는 독일의회를 설득해 연대협약(Solidaritätspakt)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독일 정부는 연간 160억 독일마르크의 세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연대가산금법Ⅱ를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실시해 이전에 연대가산금법을 실시할 때와는 달리 부담스러웠다. 독일 시민은 무기한으로 연대가산금

29 Zinsabschlagssteuergesetz 1992년 11월 9일

30 1993년 6월 23일부터의 연방정부재정 통합에 대한 세금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첨부1을 참고하라.

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일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연대협약의 운영방식은 예전과 같다. 1995년 1월 1일부터 독일의 모든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 추가로 7.5%의 세금을 더 내야만 한다.

연방정부 이외에도, 독일 기초지자체³¹에서도 통일재원에 대한 부담을 지역세 인상과 지자체 수준에서의 수수료와 부담금 인상을 통해 조달했다. 이렇게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주요 원인은 각 지역사회는 독일통일기금의 일부인 주정부 할당액의 40%를 부담해야만 했고, 주정부에서 지자체로의 이전지출이 지속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자의적으로 세금항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해 법인세와 부동산세의 항목을 만들었고, 박물관, 수영장³², 상수도, 폐기물처리, 도서관 등 지역사회 시설 사용요금을 대폭 올렸다.

또한,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강제적 부담금을 전폭적으로, 하지만 점진적으로 증대시켰던 것은 동독 사회보장 시스템으로의 막대한 이전지출의 재원 조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었다. 1989년 독일 연방정부의 공무원은 자기의 소득의 23%를 국가연금제도 및 강제실업보험에 강제 부담금으로 내야만 했다. 1994년까지 이 강제적 추가부담금은 독일에서 얻은 모든 소득의 최고 25.7%까지 증가했다.³³ 1995년 사회보장 부담금은 26.1%로 증가했고, 1996년 하반기에는 모든 임금과 월급의 27.4%까지 올라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독일 통일 이후 7년 동안,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강제적 부담금은 통일 전과 비교해 1/5 수준이 인상되었다. 이렇게 막대하게 증가하는 부담금을 떠안은 건 주로 서독 주민이었고, 이 부담금³⁴은 연금을 받는 동독 주민과 점차 증가하는 동독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이전지출³⁵로 조달 사용되었다. 1990년 통일조약과 국가조약을 통해 동독으로 이전된 독일 연금시스템의 계산법 때문에 동독 주민은 이런 결정에 대해 아무런 위험 부담 없

31 Gemei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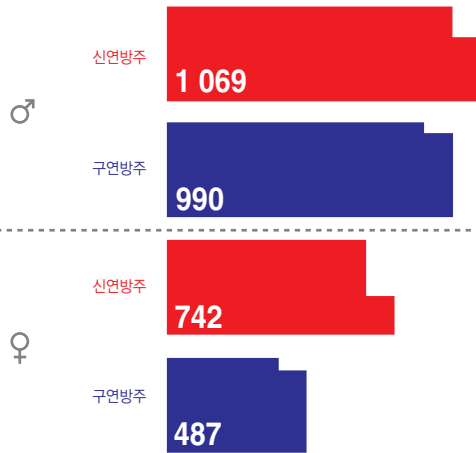
32 베를린 수영장 입장료가 올랐는데 아동은 1 독일마르크 성인은 2 독일마르크에서 아동은 25유로(5 독일마르크), 성인은 4유로(8독일마르크)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4배 이상 상승했다.

33 고소득층에게는 강제적 추가부담금이 사회보장부담금 최고액으로 한정되었다.

34 누구는 이러한 부담금을 세금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는데,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사회보장 시스템은 세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받는다.

35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독일주정부 연금기금과 연방 실업청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약 1,350억 독일마르크를 이전지출했다.

그래프 21 | 연금 수준(2009년 12월 31일 월평균 연금 부담금)



출처 : 독일 연금 보험 데이터

이 측각 서독주민의 연금수준만큼 연금을 올릴 수 있었다. 위 그래프 21을 참조하라.

9. 긴축정책, 예산 재편,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세금 인상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아져 공공재를 살 수 있는 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는 정부가 부채를 많이 지냈다 하더라도 그 사회의 개개인은 이와 관계가 없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예산을 긴축하고, 공공 서비스를 줄이고, 공공재를 민영화 하면 이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느껴지게 된다. 따라서 공공 서비스와 기능을 줄이는 것은 공적부채의 재원을 조달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³⁶ 동독의 붕괴 이후 공공재를 제공하던 기관을 구분하는 데에도 수년이 걸렸다.

물론 통일 이후 공공 서비스에 수많은 작은 변화가 있었다. 재정적 관점에서 세 가지

주요 정책은 독일 주정부의 재정예산을 국가, 주정부, 지자체 수준에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1. 독일 주정부가 독점적으로 소유한 철도를 완전히 개편 (연방정부에게 연간 150억 독일마르크를 절약)
2. 망명신청자 유입 급증 이후 독일 망명법 변경: 망명신청자의 행정적, 시설, 인프라의 비용이 90년대 초 큰 폭으로 확대된 것에 대한 대응 (독일 지자체 수준에서 50억 독일마르크를 절약)
3. 간병인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많은 노령화 사회에서 신 사회보장시스템을 실시(모든 임금과 월급의 1.95%는 독일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유입되어 연간 400억 독일마르크의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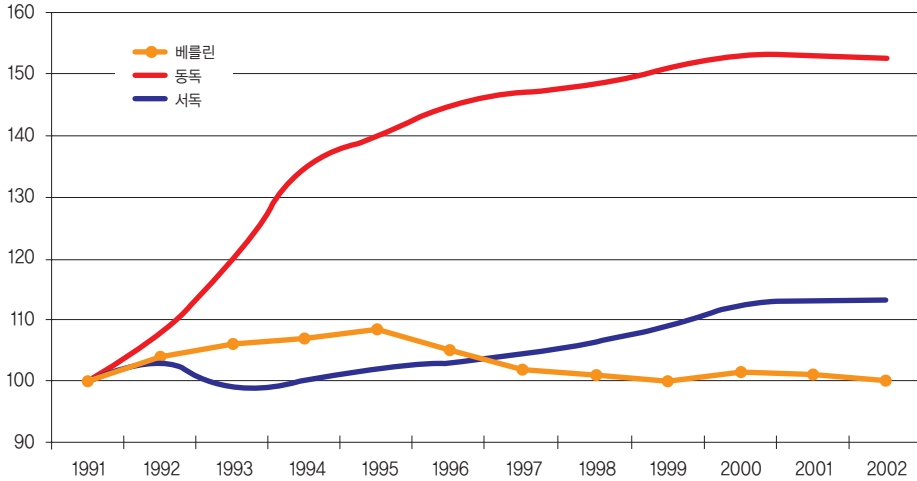
10. 독일 통일로 얻은 손실과 이익

독일 통일의 경제적 이익을 수치로 계산하고 추산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지표의 기준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이 시나리오는 비교분야에서 적어도 10년간의 경제 발전의 전개 상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언제나 반박될 수 있다. 독일경제연구소는 할레(Halle)에 있는 협력 파트너 중 한 곳인 IWH 경제연구소(IWH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가 개발한 시나리오를 선택했고, 이득이 손실보다 많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 계산에는 물론 경제지표로 추산할 수 없는 사실들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독일 통일에 어느 정도의 자본과 노력이 필요한지 그 사실이 분명해지고 난 후에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보고서 처음에 나와 있는 그래프 1에서 볼 수 있듯, 동독 경제는 1:1 비율로 화폐가 통합되던 1990년 붕괴되었다. 그래프 22에서 볼 수 있듯, 동독의 GDP로 추산한 동독의 경제실적은 1991년부터 높

36 긴축재정을 실시한 나라는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 발트제국 뿐만 아니라 재정 위기를 겪었던 멕시코, 아르헨티나, 태국 등이 있다.

그래프 22 | 1991-2002년 베를린의 GDP 발전상황, 동독과 서독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아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서독을 의미하는 선은 1991년과 1992년 짧은 기간동안 호황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장기적 경제침체가 이어져 1992년 중반의 수준까지 이르는데 1996년 중반까지 시간이 걸렸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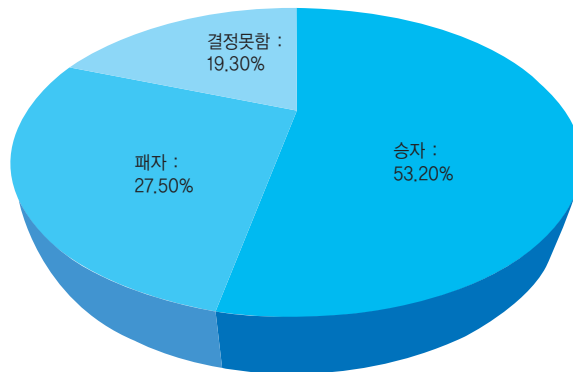
1:1 비율의 화폐통합 이후, 동독 주민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자신의 저축과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화폐통합 이후 2년간, 수백만의 동독시민은 서독주민에게는 당연한 승용차와 그 외에 TV, 비디오카메라, 세탁기 등의 제품들을 구매했다. 화폐통합 때문에, 동독 주민은 이런 제품을 새것이나 중고로 서독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 물론 서독 제품이 경쟁적 국제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품질이 더 좋았음은 물론이었다. 또한, 서독의 제품 공급력과 마케팅 기술도 동독인들이 서독의 제품을 선호하도록 일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인이 서독의 제품을 사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통일 후 동독의 대규모 소비는 서독의 생산 및 고용 상황을 확대시켰다. 동독에 고용된 사람은 1991년과 1992년 큰 폭으로 늘었다. 동독에서 온 이주민은 1990년에서 1992년까지 크게 늘었고, 이 내용은 위 그래프 4와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전혀 나쁜 소식은 아니다. 이 내용은 두 개의 개별경제가 서로 조정기간을 거치고 있고, 법과 헌법을 근간으로 구성된 신생 독일연방공화국이 서독의 6,300만 인구와 동독의 1,700만 인구 대신 거의 8,000만의 통일된 인구를 가진 하나의 경제지역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통일의 정신적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치를 들며 계산할 필요가 없다. 로스톡 대학의 의료심리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Medical Psychology of Rostock University)는 통일 후 10년간 진행한 연구를 발표했다. 동독주민 대부분은 1990년 연방독일 시스템에 가입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자신들을 승자로 보았다. (아래 그래프 23)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한 후 얻었다고 생각되는 이득은 무엇이었을까? 응답자는 여행할 수 있는 자유,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 재산획득, 지적 자유, 포괄적 자유, 자기개발의 가능성, 삶의 질 향상 등을 통일로 얻은 최고의 이득으로 보았다(다음 그래프 24, 25를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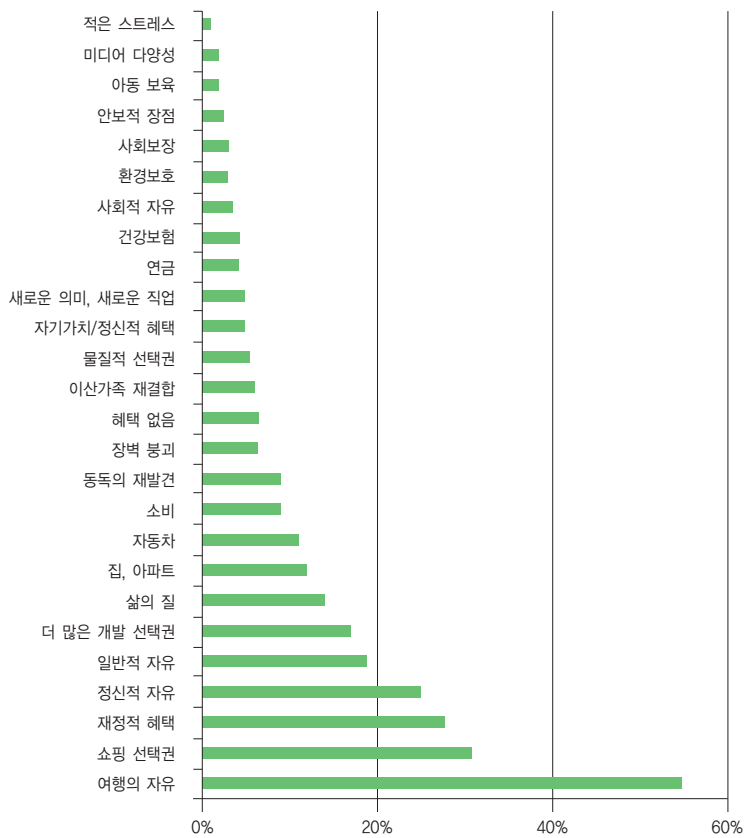
그래프 23



출처: 정신적 관점에서 독일통일의 손실과 이득(2000), (Costs and Gains of the German Unification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2000), Reis, Wiethoff, Meyer-Probst, Esser, Ih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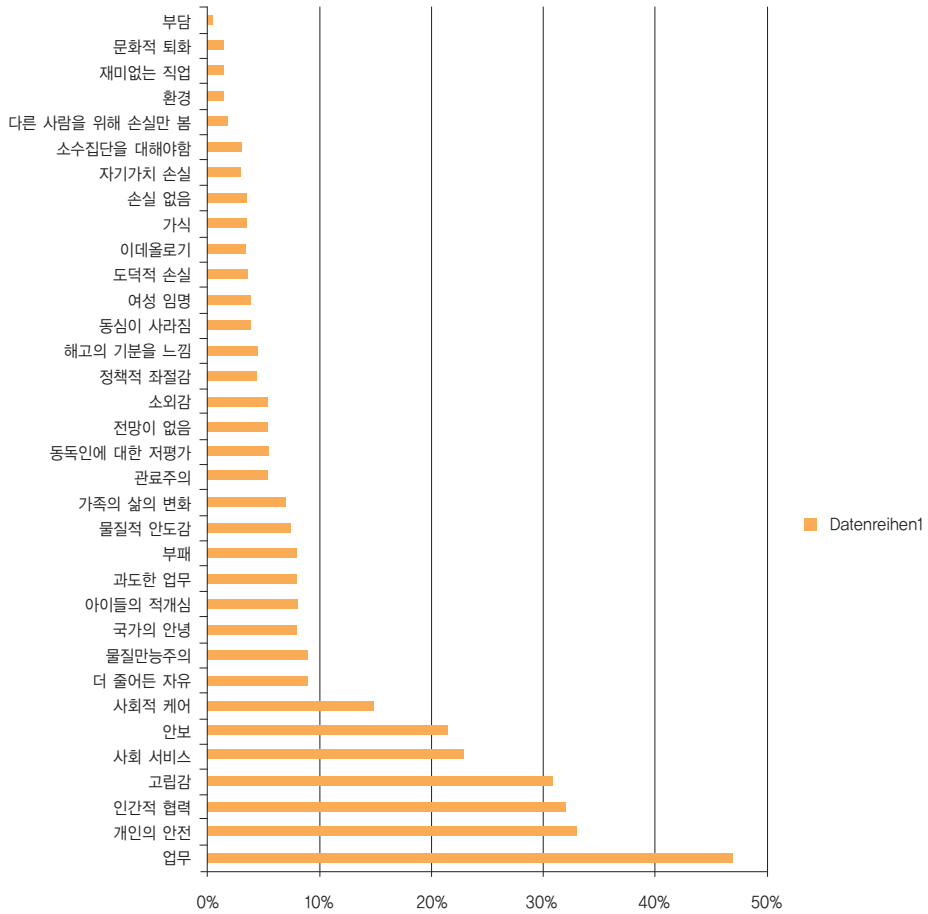
조하라). 직업, 개인의 보장, 사회적 행동, 고립감, 사회적 서비스, 안전(security) 등은 최고의 손실로 꼽혔다. 이러한 내용은 경제적 혹은 재정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프 24



출처: 정신적 관점에서 독일통일의 손실과 이득(2000).

그래프 25



출처: 정신적 관점에서 독일통일의 손실과 이득(2000)

11. 결론

현재까지 2조 1000억 유로, 40년간 사회주의 국가경제였던 동독을 개혁하고 재건하기 위해 서독이 지불, 이전한 대략적 비용이다. 이 엄청난 금액을 보면 동독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았고, 서독은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지출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공식적으로 통일이 된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균형잡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독은 최소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었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물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손실에 가까운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가를 묻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당시 누구도 독일 통일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 그대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습관의 동물이다. 다시 말해, 1989년 후반의 사건들과 1990년 중반 독일 연방 공화국의 법적 우산 아래 독일 통일이 결정되기까지 어느 누구도 정치적 절차가 이처럼 물 흐르듯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 예측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절차가 엉망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독일 내부에는 내전이나 대규모의 사회적 소요조차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를 돌아보면, 어느 누가 예측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값비싼 비용이 들었다 해도 서독과 동독 국민 모두 결과에 대해 불평할 수 없었다.

1990년 당시 독일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는 분명 세금과 부채를 늘리고, 공공 부분의 지출을 재분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 물론 중요한 일을 이루는 데는 사소한 문제들이 따르는 것처럼, 상당한 금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동독은 서독을 따라잡았고, 지금도 여전히 따라잡고 있다. 아래 표 8은 통일 이후 동독이 서독을 따라잡는 과정이 마침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소요될 시간을 추산해 둔 것이다.

경제성과지표를 서독 주민 일인당 GDP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조차도 2020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전부일 것이다. 독일 남쪽의 일부 지역은 북쪽 지역보다 경제적 성과 부문에서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아마 변함없을 것으로, 이는 지역 간의 경쟁력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환영할만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 북쪽의 메클렌부르크

표 8 | 동등한 생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 및 기간

| 기준 | 목표달성을 위한 시기 |
|---------------------------------|-------------|
| 경제성파지표 (일인당 GDP) 90% 이상 | 2020년 이후 |
| 근로임금표의 조화 | 2012년까지 |
| 효과적인 근로소득 90% 이상 | 2020년까지 |
| 사회복지 수준에서의 격차 해소 | 2012년까지 |
| 일인당 민간 가구 소득이 최소 90% | 2020년까지 |
| 실업률이 구연방주 평균이상으로 30%가 넘지 않도록 함 | 2020년까지 |
| 소득세 비율이 최소 구연방주의 평균의 75%가 되도록 함 | 2020년까지 |
| 구연방주보다 빈곤율이 더 높지 않도록 함 | 2020년까지 |
|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시설 등의 동등한 시설 | 2020년 이후 |

출처: DIW 베를린 추산

크-포어폼머른주와 같은 지역을 포르쉐, 메르체데스, 아우디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생활수준으로 높이하고자 할 필요는 없다.

독일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점은 이를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해 추산해 봐야 한다. 이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독일이 통일로 얻은 이점이나 손실이 기준 시나리오보다는 크다는 논의가 있는 이후로, 이런 논의는 곧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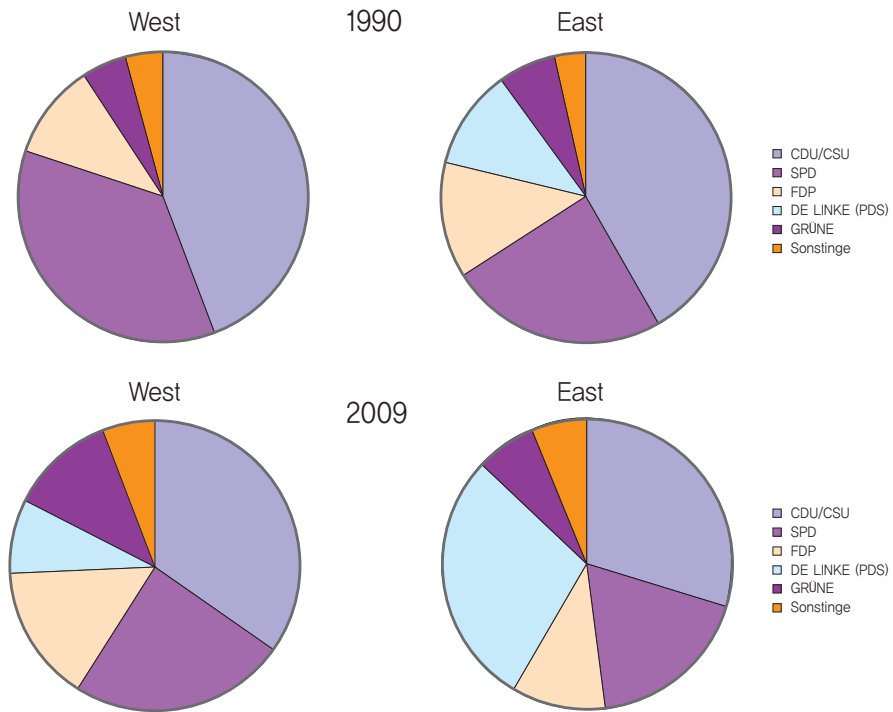
동독(DDR) 중앙 은행에 따르면, 동독의 중앙 통제식 경제는 1987년 이래로 부채에 허덕였거나 파산했다. 그 이듬해부터 1989년까지 동독은 대기업의 공산주의식 지배구조로 회계 장부상의 속임수를 통해 혹은 실질 부채 구조를 숨김으로써 경제를 지속시켰다. 북한도 상황이 이와 비슷할 수 있지만 2년보다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독일보다 비용이 덜 들 것이라는 것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분단 국가가 향후 통일을 결정할 때 독일의 통일에서 교훈을 배울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그래서 중앙집권적 통제경제로 견뎌왔던 국가의 성공적인 재건에 도움을 줄 수 있게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사실은 1990년 첫 선거부터 2009년까지 독일 정부의 권력

구조가 상당히 변화했다는 점이다. 소위 국민정당(Volkspartei)이라 불렀던 독일 기민련(CDU) 그리고 사민당(SPD)에서 좌파당 쪽으로 정치적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프 26 | 하원선거 결과



출처: 독일 의회

표 9 | 하원선거 결과(2차 투표 득점 결과)

(%)

| | 1990 | | 2009 | |
|----------------|------|------|------|------|
| | 서독 | 동독 | 서독 | 동독 |
| CDU/CSU | 44.3 | 41.8 | 34.6 | 29.8 |
| SPD | 35.7 | 24.3 | 24.1 | 17.9 |
| FDP | 10.6 | 12.9 | 15.4 | 10.6 |
| DIE LINKE(PDS) | 0.3 | 11.1 | 8.3 | 28.5 |
| GRÜNE | 4.8 | 6.2 | 11.5 | 6.8 |
| Sonstige(기타) | 4.3 | 3.7 | 5.9 | 6.3 |

출처: 독일 의회

따라서, 통일 과정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국가는 인프라 재건과 사회보장제도에 이전 지출될 막대한 비용과 그 국가의 권력구조에 변화가 수반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분단된 한국이 통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 모두는 통일과 재건의 과정이 적어도 한 세대는 걸릴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하나였던 한 국가는 언젠가 다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 약어색인

| | |
|--------|--|
| ABM | 고용 창출 조치(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
| ABS | 노동촉진, 고용 및 구조변화 |
| AFG | 노동촉진법 |
| AG | 주식회사 |
| AktG | 주식법 |
| ALV | 실업보험 |
| Anm | 각주(Anmerkung) |
| ATLAS | 해당 연방주의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선별된 신탁관리회사 |
| BA | 연방고용청 |
| BAföG | 연방교육지원법 |
| BAG | 연방노동법원 |
| BBT | 튀링겐 보증은행 유한회사 |
| BetrVG | 경영조직법 |
| BEZ | 연방 보충이전금 |
| BF | 직업 향상교육 |
| BGB | 독일 민법전 |
| BGBI | 연방법령관보(Bundesgesetzblatt) |
| BHO | 연방예산법 |
| BIP | 국내총생산 |
| BMF |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 |
| BMFT | 독일 연방 연구기술부 |
| BRD | 독일연방공화국 |
| BSP | 국민총생산 |
| BvS | 연방 통일관련 특수과제청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
| DAG | 독일 사무직 노동조합 |
| DDR | 독일민주공화국(구동독)(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 DIHT | 독일상공회의 |
| DM | 독일마르크(Deutsche Mark) |
| DIW | 독일 경제연구소 |
| DtA | 독일 변제은행 |
| EAGFL | 유럽 농업지도 보증기금 |
| EFRE | 유럽 지역발전기금 |
| EG | 유럽공동체 |

| | |
|------------|--|
| EGKS |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
| EIB | 유럽 투자은행 |
| ERP | 유럽 부흥 계획 |
| ESVG | 유럽 국민 계정 시스템 |
| EVertr. | 통일조약 |
| EWS | 유럽 화폐 시스템 |
| EFRE | 유럽 지역발전기금 |
| ESF | 유럽 사회기금 |
| FAG | 재정조정법 |
| F&E | 연구 및 개발 |
| FKM | 재정력 측정치 |
| FKP | 연방 재정 안정 프로그램 |
| F&U | 항상교육 및 전직교육 |
| GA | 공동과제 |
| GBI | 구동독 법령 관보(Gesetzblatt) |
| GD | 이사회 |
| GDP | 국내총생산 |
| GDR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
| GEMSU | 독일 경제, 화폐, 사회 통합 |
| GG | 기본법 |
| GRV | 법적 연금보험 |
| IAW | 응용 경제 연구소 |
| i.e.S. | 좀 더 좁은 의미로 |
| IFG | 동독 구축을 위한 투자지원법 |
| IfW | 세계 경제연구소 |
| IWF |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 i.w.S. | 좀 더 넓은 의미로 |
| KfW | 재건금융공사 |
| LFA | 주정부 재정 조정 제도 |
| IWH | 할레 경제 문제 연구소 |
| MBI | Mangement-Buy-In |
| Mio. | 백만 단위 |
| MKP | 중산층 금융지원 프로그램 |
| MOE-Länder | 중부 및 동부유럽 국가 |

| | |
|-------|---|
| Mrd. | 십억(Miliarde/Miliarden) |
| MBO | Management-Buy-Out |
|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 OPNV | 공공 근거리 교통수단 |
| RGW | 동유럽경제상호원조회의(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COMECON) |
| RKW | 독일 경제 합리화 기구 |
| SDAG | 소련-독일 주식회사 |
| SKWPG | 저축, 안정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 |
| s.o. | 상기 참조 |
| SoBEZ | 특별 수요를 위한 보충 양여금 |
| THA |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 |
| TOU | 기술 지향적 기업 |
| u.Ä. | 기타 이와 비슷한 것 |
| v.H. | 백분율 |
| VGR | 국민 계정 |

■ 참고문헌

- 미하엘 브란트/베른트 레온하르트/페트라 레온하르트, 1994년. *신연방주에 대한 발전지원금*. - 5. 본: Economica.
Brandt, Michael, Hermann, Bernd und Leonhard, Petra. 1994. *Förderhilfen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5. Bonn: Economica.
- 울리히 부쉬(Busch, Ulrich), 2010년. 할레 경제연구소(발행). *독일 통일의 20년 - 변혁으로부터 유럽 통합에 이르기까지*. 회의자료집. 할레(잘레).
Busch, Ulrich. 2010.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Hrsg.). *20 Jahre Deutsche Einheit - Von der Transformation zur europäischen Integration*. Tagungsband, Halle /Saale.
- 울리 디트리히, 마리온 폰 하겐(발행인), 1991년. *정책 교육에 관한 기고문*. 베르기쉬-글라트바흐.
Dieterich, Uli und von Hagen, Marion (Hrsg.). 1991. *Beiträge zur politischen Bildung*. Bergisch-Gladbach.
- 하이너 플라스벡과 구스타프 A. 호른 공저, 독일 통일 - 한국을 위한 모델? 올더숏: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Flassbeck, Heiner und Horn, Gustav A. 1996. *German Unification - an Example for Korea?*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 게르하르트 헤스케(Heske, Gerhard), 2005년.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동독 내에서의 국내총생산, 소비 및 구직활동*. 쾰른: 역사적 사회연구 센터.
Heske, Gerhard. 2005. *Bruttoinlandsprodukt, Verbrauch und Erwerbstätigkeit in Ostdeutschland 1970-2000*. Köln: Zentrum für Historische Sozialforschung.
- 한스 위르겐 퀴스티스 및 다니엘 호프만, 1998년.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독일 통일 및 독일 정치에 관한 문서*: 독일 연방 내무부. 베를린.
Hofmann, Daniel und Küsters, Hanns Jürgen. 1998.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1989/90: Bundesministerium des Inneren*. Berlin.
- 경기변동 연구소, 2006년. *경제 연구 분기보고서*. 69 회차. 베를린: 등커 운트 훔블로트.
Institut für Konjunkturforschung. 2006. *Vierteljahre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69. Jahrgang. Berlin: Duncker und Humblot.
- 클라우스 카이스베르크, 1996년. *독일 통일을 배경으로 살펴 본 동독 조정 과정의 어려움과 전망 및 원인*과 *결과 - 경험적 분석 및 이론적 분석*. 본: Economica.

- Keysberg, Klaus, 1996. *Ursachen, Auswirkungen und Perspektiven des schwierigen wirtschaftlichen Anpassungsprozesses in Ostdeutschland vor dem Hintergrund der Wiedervereinigung – Eine empirische und theoretische Analyse*. Bonn: Economica.
- 할레 경제연구소(발행), 2010년. 독일 통일 20년 – 변혁으로부터 유럽 통합에 이르기까지. 회의 자료집. 할레/잘레.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Hrsg.), 2010. *20 Jahre Deutsche Einheit – Von der Transformation zur europäischen Integration*. Tagungsband. Halle/Saale.
 - 요아힘 라크니츠, “통일의 비용은 얼마인가? 동독에 대한 이전 지출금 지급의 평가”. 브뤼머호프, 디터 출판사. 2000년. *통일의 유용성과 비용*. 바덴-바덴, Nomos.
Ragnitz, Joachim, “Was kostet die Einheit? Zur Bewertung der Transferleistungen für Ostdeutschland”. In: Brümmerhoff, Dieter (Hrsg.), 2000. *Nutzen und Kosten der Wiedervereinigung*. Baden – Baden: Nomos.
 - 요아힘 라크니츠(발행인), 2001년. 독일 통일의 10년. 독일의 전망. 회의자료집. 특별호 2, 할레/잘레.
Ragnitz, Joachim (Hrsg.), 2001. *Zehn Jahre Deutsche Einheit. Bilanz und Perspektiven*. Tagungsband. Sonderheft 2. Halle/Saale.
 - 테오 바이겔/만프레드 쉘, 1994년. 독일과 세계가 변혁을 맞이한 날. 장벽 붕괴로부터 카프카스 산맥까지. 뮌헨: 퍼런시 바이 브룩만.
Schell, Manfred und Waigel, Theo, 1994. *Tage, die Deutschland und die Welt veränderten. Vom Mauerfall zum Kaukasus*. München: Ferency bei Bruckmann.
 - 게를린데 진, 한스-베르너 진, 1992년. 독일 통일에 관한 국민경제 관점에서의 견해. 뮌헨: Dt. 타셸부흐 출판사.
Sinn, Gerlinde und Sinn, Hans-Werner, 1992. *Kaltstart. Volkswirtschaftliche Aspekte der deutschen Vereinigung*. München: Dt. Taschenbuch Verlag.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 자료 1~19 478

자료 1

통일의 경제적 비용

담당자/기관 :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동독, 신탁관리청

내용

1. 도입

- 통일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거나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서독에서 동독으로 흘러간 공적 자금의 규모는 1993년 기준 1천 7백억 마르크에 달했다.
- 서독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및 국고 세입이 증가했는데, 이는 분단과 관련된 지출 비용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 러시아 서부 집단군(Westgruppe der sowjetischen Truppe) 철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통일 독일의 국방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산출된다.
- 동독에 대한 투자비용을 통일 비용에 포함시켜 정산해서는 안된다.

2.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

2.1 자본 수요에 관한 초기 견적

- 초기에는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필요 자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 동독의 경우 국고 수입은 높은 반면, 국고 지출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2 동독에 대한 서독 공적 자금 지급

- 1993년에만 1천 7백억 마르크의 금액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10억 마르크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매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원되며, 저금리 용자도 제공된다. 동독에 대한 이러한 이전 지출금은 자본시장 및 세수로 감당하도록 한다.
- 이전 지출금을 서독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분단과 관련된 지출 비용이 해소되었고, 동독에서의 경제 수요는 서독 경제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3 각 분야에 따른 자원 분배

- 이전 지출금은 대부분 사회적 영역과 교통 체계 정비에 사용된다.

자료 1

- 서독의 각 주정부에서 분담해야 할 기여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3.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

- 통일 이후 그림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이는 독일 통일 기금(Fonds Deutsche Einheit), 채무 청산 기금(Kreditabwicklungsfonds) 및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으로부터 충당된다.
- 독일 통일 기금은 새로운 재정 배분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는데 사용된다.
- 채무 청산 기금에서는 동독의 부채 및 채무를 인수했다.
- 가장 중요한 그림자 예산은 신탁관리청이 담당하며, 신탁관리청의 최종 대차대조표는(1994년 말 기준) 최소 2천 7백 50억DM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 통일 이후에는 유럽 부흥 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특별 기금 및 개발 촉진 은행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동독 및 서독 국영 철도는 1994년 초 합병되었지만, 예산은 각각 별도로 관리된다.

4. 동독 자본재

- 1989년 동독은 8천억 동독 마르크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물가수준: 1985년). 이는 서독 마르크로 약 3천 1백 90억 마르크에 해당하게 된다(물가수준: 1990년).
- 경제·화폐 및 사회통합(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으로 인해 수많은 공장이 폐쇄되었고, 제조 산업에서의 자본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하지만 고무적인 의견으로는 동독의 자본재가 1천 5백억 마르크에 달하는 동독 투자로 인해 향후 6년 내에 두 배로 증가하게 되고, 아울러 3백 5십만 개의 일자리 가운데 절반 가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출처 : 하이너 플라스벡과 구스타프 A. 호른 공저(Flassbeck, Heiner und Horn, Gustav A.), 1996년. German Unification – an Example for Korea?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p. 189–200

자료 2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에 관한 개요와
이러한 이전 지출이 경제 발전과
각 주정부 재정 및 지역자치단체 재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담당자/기관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지자체

내용

독일 통일이 이룩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서독에서 동독으로 막대한 규모의 이전 지출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의 '생활 여건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심지어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에 대한 저항이 생겨나고 있다.

독일 통일 기금, 제 1차 및 제 2차 연대협약

- 독일 통일 기금(1990년 - 1994년) 이후 후속적으로 제 1차 연대협약(1995년 - 2004년) 및 제 2차 연대협약(2005년부터 현재까지)이 마련되었다.
- 독일 통일 기금을 통해 신연방주 정부는 822억 유로에 달하는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40%의 자금이 구동독지역 지자체를 지원하는데 지급되었다.
- 그 후 제 1차 연대협약에 따라 945억 유로가 추가적으로 동독으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자금은 환경 폐기물 처리, 산업지구 조성 및 거주용 주택 건설 등의 출처로 사용되었다.
-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동독은 제 2차 연대협약을 통해 1,560억 유로 가량의 지원금을 추가로 획득하게 된다.
- 2005년부터 동독의 신연방주는 매년 이에 대한 발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각 주정부 재정 조정 제도

- 1995년 초부터 동독은 서독과의 재정 격차를 더 이상 좁히지 못했다.
-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정부 재정의 수평적 재분배는 그 80% 가량이 동독에

자료 2

해당되었다.

- 아울러 연방정부의 수직적 재분배라 할 수 있는 특별 수요를 위한 보충 양여금 (Sonderbedarfs-Ergänzungszuweisung)을 통해서도 동독의 재정력은 강화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강화된 재정력이 적절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동독의 조세 여건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 복지 정책적 관점에서 야기된 이전 지출

- 사회보험공단 역시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에 기여하고 있다. 모든 신연방주를 비롯하여 브레멘과 쉐레스비히-홀스타인 역시 아직까지 일방적으로 지원만 받고 있는 상태이다.
- 수령 금액 정산에서는 거주지 위치가 아닌 작업장의 위치가 고려된다.

전망

- 서독으로부터의 이전 지출이 없다면, 동독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도 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 동서독 통합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통합에는 보통 10년에서 최대 80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만약 서독으로부터의 이전 지출이 중단된다면, 동독 주민 가운데 거의 절반 가량이 거주지를 떠나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로도 17% 가량의 동독 주민이 동독을 이탈하고 있다.
- 이러한 이전 지출을 통해서 동독으로부터의 공급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독에서의 수요가 강화되는 측면이 강하며, 이러한 수요는 비단 동독 제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 제 2차 연대협약은 2019년을 기점으로 그 시효가 소멸된다.
- 무엇보다 기술 혁신 분야와 수출 관련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현명하다.

출처

토마스 렌크 및 마르티나 쿤체 공저(Lenk, Thomas und Kunze, Martina), 2010년. 할레 경제연구소(발행). 독일 통일의 20년 - 변혁으로부터 유럽 통합에 이르기까지. 회의자료집. 할레(잘레): IWH-특별호, p. 401-416

자료 3

이전 지출의 성과 - 구동독지역 재건 지원과 발전 제약

담당자/기관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내용

동서독 간의 이전 지출 - 통합의 현상

- 중부 유럽 및 동부 유럽의 경우 자본, 전문지식 및 인력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 동독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자금 이전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었다.
- 중부 유럽 및 동부 유럽의 경우와 달리 동독의 경우는 서독의 수준에 상응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 헌법에 의거하여 동독은 자금 이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곧 서독에 대한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 동독 국민 경제의 총자원사용량은 생산과 괴리가 있어 보인다.

재건 보조금으로서의 이전 지출금 지급

- 오직 자금 이전 규모를 점차적으로 축소해 가는 방안 만이 진정한 ‘성장 지향적 업무 과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는 2005년에는 4.7%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96년 이전만 해도 거의 14.6% 수준에 달했다).
- 1990년대에는 특히 건설 부문에 있어 오히려 생산력 과잉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 하지만 동독 주민 1인에 대한 투자 비율은 대부분의 경우 서독 주민에 대한 투자 비율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 자금 이전은 동독 내의 수요와 생산에 도움이 되었고, 2005년도 기준으로 사회 보장금부의 72%를 차지하게 되었다.

자료 3

- 동독 내의 수요에 대비해 볼 때 서독 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에 달했지만, 정작 동독의 자체 생산품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에 불과했다.

문제 해결의 단초

- 동독은 단순히 자금 이전의 대상이 되는 지역 또는 오로지 서독으로부터 수입만 하는 지역으로 머무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판매 시장이자 수출 대상 지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 동독은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생산기지로써 더 많은 장점을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동독에서는 개인 투자의 비중이 빈약하다.
- 이전 지출과 산출 격차 혹은 총자원사용량은, 과잉과 무역수지 불균형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축소되어야 한다.

출처

율리히 부쉬(Busch, Ulrich), 2010년. 할레 경제연구소(발행). 독일 통일의 20년 - 변혁으로부터 유럽 통합에 이르기까지. 회의자료집. 할레(잘레): IWH-특별호, p. 381-395

자료 4

동독의 국내총생산(GDP), 소비 및 직업활동
1970-2000

담당자/기관

게르하르트 헤스케(Gerhard Heske)

내용

도표: GDP 사용, 백만 유로 단위, 95

도표: GDP 사용, 1970 = 100

도표: GDP 사용, 1989 = 100

도표: GDP 사용, 국내 사용에 대한 % 비율

출처

게르하르트 헤스케(Heske, Gerhard), 2005년.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동독 내에서의 국내총생산, 소비 및 구직활동. 쾰른: 역사적 사회연구 센터. p. 259

자료 5

공공 재정의 재정 수요와 공공 부채

담당자/기관

울리 디트리히, 마리온 폰 하겐

내용

본 문서의 작성자인 울리 디트리히와 마리온 폰 하겐은 동독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요약본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통일과 연계된 비용이나 문제는 원래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증대되었고, 경과 과정 역시 원래의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동독의 경제 발전에 대한 오관으로 말미암아 이전 지출금 지급은 예상보다 그 액수가 훨씬 커졌으며,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필요 예산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인프라 구조에 대한 투자가 점점 더 늦춰지고 있는 형국이다.

신연방주에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표에 입각해서 독일 연방정부에서는 '동독지역 재건 공동사업(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을 통과시켰다. 본 사업안에 따라 1991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방 차원에서는 120억 마르크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여 매년 인프라 확충 비용의 명목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 밖에도 추가적으로 본 사업안은 일자리 창출 조치 및 개인의 기업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재원은 연대법에 근거한 세수 확대를 통해 마련된다. 이에 따라 1991년에는 180억 마르크, 그리고 1992년에는 280억 마르크의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인상 조치가 실행되게 된다.

독일 통일 비용 마련과 관련된 특별예산 편성에는 다음과 같은 기금들이 참여하게 된다(하기 지급 금액 단위는 십억 마르크 기준):

자료 5

-
1. '독일 통일' 특별기금: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채무 수용 950억 마르크

 2. 채무 청산 기금
 - 동독의 국내 채무 총액, 278억 마르크
 - 주택 건립 용자는 제외(이 가운데 최대 210억 마르크의 금액을 1991년까지 반환해야 함)
 - 화폐통합기금의 조정 채권으로 인한 채무 350억 마르크
 - 이는 은행 차변자산 및 대변자산에 대한 환율이 서로 상이함으로 인한 것임
 - 동독 신탁관리청의 신용 허가 한도 250억 마르크
 - 구동독 국책은행의 지급불능 경우에 대한 연방의 책무 300억 마르크 이하
 - (베를린 국책은행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약 300억 마르크에 달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이 가운데 240억 마르크가 지불 루블화 형태임.
 - 또한 채권 가운데 일부는 개도국 채권으로 구성됨.
 - 상기 두 가지 경우 모두 가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는 별개로 1991년 약 27억 마르크 규모의 차환 비용이 요구됨.)
 - 동독 해외 채무 비용채무 상황을 위해 기금으로부터 직접 빌린 채무

 3. 동독의 해외 채무, 160억 마르크
 - 외국에 대한 동독 은행 채무로 입증됨

 4. 300억 마르크 수준에 달하는 신탁관리청의 시의회 관련 채무(현황: 1990년 말),
 - 최소 300억-최대 900억 마르크
 - 조사에 따르면 1993년 말까지 신탁관리청의 채무 증가는 900억 마르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 동독 의료보험 채무(운영자금 대출) 120억 마르크

 6. 동독 국가보험공단 상환액(인수 주체인 알리안츠 보험회사에서
인계 받지 않은 대변자산) 60억 마르크

 7. 재산권상의 청구와 관련된 보상기금(여기서는 과거 소유재산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함)

 8. 1994년까지의 소련군 주재비용 및 철수비용에 대한 기여금 120억 마르크
-

자료 5

- | | |
|---|-----------------|
| 9. 주택 건립 용자: 채무 금액의 수준 | 350억 - 550억 마르크 |
| - 이는 독일 신용은행에 대하여 신연방주와 주택건설협회 및 각 지자체가 지고 있는 채무를 뜻함. | |
| 10. 독일 신용은행에 대하여 동독의 인민 소유 기업이 진 채무 | 880억 마르크 |
| 11. 독일 신용은행에 대하여 농업생산조합이 진 채무 | 70억 마르크 |

출처

울리 디트리히, 마리온 폰 하겐(발행인), 1991년, 정책 교육에 관한 기고문, p. 86-94

자료 6

독일 통일에 관한 국민경제 관점

담당자/기관

게를린데 진, 한스-베르너 진

내용

1989년 기준으로 서독에서의 개인 순고정자산의 총합은 5조 8,500억 마르크 수준에 달했다. 이는 총 인구수를 6,230만 명으로 산정했을 때 일인당 자본금액이 93,900마르크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에서도 서독에 준하는 수준의 자본 집중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인구수 1,640만명을 기준으로 1989년 당시의 제반 조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금액이 1억 5,400만 마르크에 달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개인 저축이 개인 투자나 국가 예산적자 및 자본수출에 있어 재정의 큰 축을 담당하는 핵심이었고, 그 액수만 해도 기록적인 수치였다. 하지만 통일이 이룩되자 이러한 개인 저축액은 개인 투자나 특히 급격하게 상승한 국가 예산적자를 메꾸는 재원으로 고스란히 소진됨으로써 자본수출을 위한 재원이 더 이상 남아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자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순자본유입, 즉 자본수입을 감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독일은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대외 순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1990년 당시만 해도 이 금액은 약 5천억 마르크에 달했는데, 이는 동독에서 필요한 개인 자본금액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따라서 동독 경제를 다시 재건하고, 사회복지 체계의 재구성 과정을 견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 정책을 통해 독일이 보유한 대외자본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었다.

동독 경제를 개혁하고 재구축하기 위한 잠재적 자본 수요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자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결국 외환 시장에서는 독일 마르크화에

자료 6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게 되었다. 그 결과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가 급속도로 상승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적자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출처

게를린데 진, 한스-베르너 진 공저, 1992년, 독일 통일에 관한 국민경제 관점에서의 견해, p. 44-51

자료 7

**제 2차 발전 보고서:
구동독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경제연구소 보고**

2003년 11월

담당자/기관

독일 경제연구소(DIW Berlin) / 키일 대학교 부속 세계 경제연구소(IfW)/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경제 문제 연구소(IWH)/유럽 경제연구센터(ZEW)

내용

2.2. 동서독 간의 1인당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비교 연구

본 보고서에서는 동독의 인구발전 상황에 관한 분석이 실려 있다. 공공 예산 분야에 있어서의 전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구발전 상황에 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인구발전 상황이 단순히 지역적 경제성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단순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지자체 간의 재정 균형을 조율하기 위한 재정 수요에 있어서나, 각 주정부 재정 조정 제도에 근거를 둔 재정 지원금 수입 및 연방에 의한 재정의 수직적 재분배 문제 등은 모두 거주 주민 수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있다. 아울러 지출 측면에 있어서도 인구발전 상황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독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민의 수가 약 130만 명 정도 더 늘어나게 되어 총 6,300만 명의 인구를 확보하게 되었다. 반면 동독 지역에서는 1,420만 명 수준을 유지하던 주민 수가 1,370만 명 수준으로 오히려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동독의 총 수입 및 지출 증가율은 부분적으로 주민 일인당 수입 지출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매년 58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주민 1인당 약 415유로의 금액이 특별수요를 위한 보충양여금의 명목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동독 전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2002년도부터는 동독 구축을 위한 투자지원법에 의거하여 약 23억 유로에 달

자료 7

하는 재정 지원금이 해당 목적을 위한 지출 자금으로 편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중한 지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서독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재정 적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재정 적자는 명백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동서독 간의 격차 또한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이미 1998년도만 해도 주민 1인당 채무액이 서독 지역의 경우 4,043 유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동독 지역에서는 주민 1인당 채무액이 4,525 유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독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도 1999년 서독 기준 주민 1인당 채무액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출처

연방 재무부 의뢰로 실시된 연구용역

자료 8

독일 통일 - 이전 지출의 문제

담당자/기관

하이너 플라스벡

내용

동서독이 통일을 이룩한 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지원되었던 이전 지출의 규모가 과거 상당 수준의 금액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현재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 경제에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전 지출의 규모를 가능한 축소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도 이제부터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건전화를 위해서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 및 이와 연계된 연방 정부 지원 금액의 국가 할당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이전 지출의 삭감이 지금까지 노력해 온 모든 상황을 역행 시킬 수도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간과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문건에서는 독일 통일 이전의 상황과 세계 1차 대전 직후 독일이 처했던 상황이 서로 비교되고 있다. 세계 1차 대전의 종결 직후 전승을 거둔 연합국들은 베르사이유 조약을 통해 독일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연합국 측에 지불하도록 결의했다(이 또한 이전 지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전 지출에 합리성을 부여할 수 있는 논리를 찾는 것이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와 베르틸 올린(Bertil Ohlin) 사이에 있었던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다. 케인스의 논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전쟁 배상금 지불 의무를 지고 있는 독일의 국제수지 흑자 규모가 이를 감당할만한 수준이 되었을 때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요지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일이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크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자료 8

이러한 상황이 바로 독일 통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반복되었다. 이는 동독 경제가 서독 마르크화 체제로 이전해 가면서 급격한 경쟁력 손실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서독 기업들이 동독 시장을 완전히 점령해 버릴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서독의 경우 오늘날 까지도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국내총생산 규모와 비교했을 때), 아울러 고용률과 소득 또한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서독 대외무역 흑자 규모를 줄이는 방식을 통해 이전 지출의 규모 또한 삭감해야 한다면, 이는 결국 서독 경제발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 생산, 고용 및 소득 수준에 있어서도 많은 단점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전반적으로 알 수 있듯이 결국 이전 지출, 자본 수출 및 직접 투자 등은 전적으로 돈이 있는 편에서 먼저 선취적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는 자본 수출이 성립되려면 우선 국제수지 흑자가 선행 조건으로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DIW 베를린

자료 9

화폐 전환 이후 독일에서의 화폐

담당자/기관

라인하르트 폴

내용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서독과 계획경제가 주도하는 동독의 화폐가 서로 통합된 것은 유례가 드문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화폐 전환이 최적의 양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반적인 상황을 마련하는 준비는 대단히 어려웠다. 동독과 서독이 서로 합의한 화폐 전환 비율은 안정성, 경쟁력, 예산 및 사회정책을 고려한 모든 요구사항이 일치점을 찾은 일종의 합의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구(舊) 부채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처리규정이거나 동독 고정자산에 대한 주민의 배분비율이 불충분한 수준이었던 점 등은 미처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었다.

이와 반대로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 절하 및 자본시장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감 등은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폐 통합 및 정치 통합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들을 극복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 화폐 관련 변수와 실질적 변수 사이에 성립된 관계가 구조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황은 잠재적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화폐량 정책의 적용을 어렵게 했고, 특히 적절한 화폐량 책정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난관으로 작용했다. 유수의 경제 연구기관들이 진행한 화폐량 책정에 관한 리서치를 통해 연방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해 놓은 화폐량 목표는 그 운신의 폭을 너무 좁게 설정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설정된 목표 범위 내에서 운용되던 화폐량의 변동 양상은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료 9

비록 1991년 및 1992년의 기간 동안에는 서독에서 현격한 속도로 물가인상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이는 팽창적인 화폐 정책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방은행이 이러한 진행 상황을 전담하지 않았던 것이 더 큰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및 1992년 기간 동안 나타난 서독의 임금 인상은 전반적인 비용 상승을 급격하게 불러오게 되었고, 아울러 물가 인상의 압박 역시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결국은 소득의 규모 자체가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과 경기침체의 가능성 또한 더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연방은행에서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경제 상황에 너무 늦게 대응했으며, 충분히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다.

출처

독일 연방은행, DIW 베를린

자료 10

재정 정책상의 조치 및 통합 과정 - 독일 통일 5년에 대한 회고

담당자/기관

디터 베스퍼

내용

독일 연방정부에서 내세운 독일 통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에 있어 엄청난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서독 사회적 격차를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부담비용을 줄이고, 공공 행정의 구축 및 전환, 인프라 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동독 구(舊) 부채의 인수문제 및 산업경제 활성화 지원 등과 같은 도전적인 요구 조건은 오직 제한적으로만 수용될 수 있었다. 특히 초기 몇 년 동안 이와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 근시안적 경향과 일단 무조건 행동에 옮기는 행위주의적인 특성으로 귀결 지을 수 있는데, 이는 동독의 경제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탓이기도 했다. 더구나 연방정부에서는 세금 인상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늦추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오히려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손실 만을 입히고 말았다. 이로 인해 재정 분배 정책 또한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연방 재정안정프로그램이 수립되었고, 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연방주는 재정헌법의 테두리에 포함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세 부담이 커지게 되고, 아울러 국가채무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재정 정책과 관련된 행동 반경은 자연히 극도로 제한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였지만(예를 들어 최저 생계비에 대한 세금 면제조치 등), 그다지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출처 : DIW 베를린

자료 11

독일 통일의 재원 마련

담당자/기관

클라우스 카이스베르크

내용

본 문서는 동독에 대한 이전 지출의 규모 분석과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공공 예산의 재정적 변천에 대한 분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도표 17 및 도표 19는 '독일 통일 기금'의 재정 상태와 채무 청산 기금의 재정 변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도표 20은 상기 언급된 동일 기간 동안 새롭게 편입된 신연방주의 공적 급부의 변화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 도표 21은 국가 활동 백서에서의 국민 계정과 재정 통계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정산 양식은 다양한 관점의 견지에서 볼 때 서로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분석 설명의 목적, 탐구 영역, 산정 시스템, 국가 내부적인 이전 지출 조치, 회계 시점, 투자 및 일반적으로 세금에 준하는 공과금의 제한, 연방은행 소득 및 부양 급부의 수령 등). 이러한 개념상의 차이는 서로 다른 상기 두 가지 정산 양식 사이에서 동독에 대한 이전 지출금 지급의 적정 규모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도표 23에서는 신규 공공 채무의 수준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신규 채무 증가는 결국 총부채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출처

클라우스 카이스베르크, 1996년. 독일 통일을 배경으로 살펴 본 동독 조정 과정의 어려움과 전망 및 원인과 결과 - 경험적 분석 및 이론적 분석. 본: *Economica*, S. V-XII.

자료 12

신연방주에 대한 발전지원
- 목차

담당자/기관

미하엘 브란트/베른트 레온하르트/페트라 레온하르트

내용

신연방주 전체 지역에 대해서는 총 122가지 종류의 발전 기금이 제공된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대다수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발전기금, 연방 지원 프로그램 및 지역 발전기금.

출처

미하엘 브란트/베른트 레온하르트/페트라 레온하르트, 1994년. 신연방주에 대한 발전지원금. -5. , 개정판 확대본, 본: *Economica*, S. V-XII.

자료 13

통일의 비용은 얼마인가?
 구동독지역에 대한
 이전 지출 성과에 대한 평가

담당자/기관

요아힘 라크니츠

내용

- 신연방주에 대한 이전 지출금 지급의 대부분은 연방 차원에서 담당한다(도표 2-1).
-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연방 차원의 총 이전 지출금 지급은(도표 2-3) 연방정부의 지출 가운데 극히 일부 만이 신연방주에 대한 ‘특별 급부’로 고려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이전 지출금 지급에는 특히 동독 재건 투자지원법(IFG Aufbau-Ost)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투자 지원, 동독 입원 요양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금, 산업경제 지원금, 철도 건설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독 신연방주에서도 호불호가 확실한 지원 분야가 존재했는데, 특히 도로 건설(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 철도 건설(39%), 도시 건설(86%), 산업경제 지원(90%) 및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투자 프로그램(91%) 분야를 특히 선호했다.

출처

요아힘 라크니츠, ‘통일의 비용은 얼마인가? 동독에 대한 이전 지출금 지급의 평가’. 브림머호프, 디터 출판사. 2000년. 통일의 유용성과 비용. 바덴-바덴, Nomos, p.15-27.

자료 14

10개항 프로그램

담당자/기관

틸로 자라친

틸로 자라친의 평가 및 내용

1990년 1월 12일 동독 재무부 및 재무부 산하 연구기관 해당 담당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서독 연방 재무부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화폐, 재정 및 세제 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 내용이 동독 방문단에게 전달되었다. 동독 지역에서는 이러한 세금 관리라든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요 세무법 관련 전문지식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동독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서독과 같은 세금 체제로 올바르게 전환하려면, 무엇보다 전문지식을 갖춘 수많은 직원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고, 시장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적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특히 시급한 사안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지속적 개혁 과정에 대한 연관성 있는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연방 재무부에서는 이러한 개혁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화폐통합 문제 또한 함께 다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서독 화폐통합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10가지 항목의 단계적인 화폐통합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1. 가격 및 시장 개혁
2. 재정 및 세금 개혁
3. 대외 무역교류 자유화 및 국가의 독점적 무역활동 폐지
4. 외환의 인위적 제한 폐지 및 화폐 태환성 확보
5. 현실적인 환율 규정의 도입
6. 화폐 및 은행 시스템의 개혁
7. 화폐 공급의 엄격한 관리

자료 14

8. 자본 형성을 위한 유리한 조건 마련
9. 동독 시장에서의 환율 안정화
10. 화폐통합

출처

테오 바이겔/만프레드 쉘, 1994년. 독일과 세계가 변혁을 맞이한 날. 장벽 붕괴로부터 카프카스 산맥까지, p. 174-183

자료 15

구동독지역에서 국가 경제 및 기업적 차원에서의 적응단계 진행(요약집)

담당자/기관 : 독일 경제연구소, 세계 경제연구소, 할레 경제 문제 연구소(IWH)

내용

독일 연방 경제기술부 주관으로 200년 9월 6일 경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본 학술회의의 논점은 동독의 변환과정에 대한 몇 가지 주요 항목을 선택하여, 이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것이었다. 독일 및 외국에서 모인 경제학자들은 신연방주의 경제적 상황에 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앞으로도 동독이 지속적으로 체제 전환하는데 필요한 경제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다. 할레 경제 문제 연구소(IWH)에서는 본 행사의 결과물인 회의록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본 회의록을 통해 행사에서 소개된 선별된 발표문과 토론 기고문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 공공 재정: 동독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가 극히 저조한 수준이었지만, 반면 1인당 지출은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재정적 불균형은 주 간 재정 조정 제도 및 연방에서 지원되는 보충 이전금을 통해 해소될 수 있었다.
- 인프라 구조: 신연방주의 열악한 인프라 기반시설은 특히 교통 및 통신망 구축에 있어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90년대를 거쳐 오면서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었다.
- 노동시장: 신연방주의 실업률은 구연방주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임금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국민소득: 90년대 동독의 생활수준은 물질적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는 서독으로부터의 이전 지출금 지급 덕분이었다.

출처 : 할레 경제연구소(IWH), 2001년. 독일 통일의 10년. 득실와 전망. 회의자료집. 특별호 2, p. 24-33

자료 16

재정 정책과 통일 - 10년의 결산

담당자/기관

슈테판 바흐 및 디터 베스퍼

내용

독일 통일로 말미암아 독일의 재정 정책은 커다란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인프라 기반시설 및 민간경제 자본금의 현대화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생산 및 고용 분야에 있어서의 붕괴현상을 사회 복지적 정책을 통해 그 충격을 해소해야 하였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독일 연방정부는 물론 서독의 각 주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동독 신연방주 정부들을 통상적인 각 주정부 간 재정의 수평적 평준화 시스템에 통합하는 과정은 전반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한 것은 중대한 실수였다. 이로 인해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으며, 아울러 재정 정책상의 행동 반경 또한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 제도적 방향 설정: 연방 차원에서 진행된 재정 안정 프로그램은 중기적 관점에서 동독 지역 공공 예산의 재정 마련을 위한 견고한 밑바탕이 되었다.
- 이전 지출금 지급: 이전 지출은 90년대 중반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 이후로는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로 접어들게 되었다.
- 신연방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변화 상황:
 - 1994년까지 차입금 및 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되었고,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견조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및 각 지자체 간의 재정적 균형
- 인프라 자본

자료 16

- 각 주정부 간 재정 조정 제도: 구연방주의 경우 단순히 재정 부담을 떠맡는 역할로만 국한되지 않고, 통일을 통한 이익을 취하고자 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재정적 평등화와 관련해서 이에 대한 청구권은 누가 어느 정도 덜 받느냐의 문제가 아닌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 조세 정책: 특별 감가상각, 투자 보조금, 이자 및 자본 수익에 대한 새로운 과세 규정, 재산세 폐지 등
- 국가 부채: 공공 예산에 대한 운용 반경이 제한된 것은 통일이 가져온 부담감이라 할 수 있다.

출처

경제 연구 분기보고서, 69회차. H. 2. p. 194-224

자료 17

공동 경제-화폐 구역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사항

담당자/기관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및 다니엘 호프만, 1998년.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독일 통일 및 독일 정치에 관한 문서: 독일 연방 내무부, p. 782

내용

공동 경제-화폐 구역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사항

동독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나 또는 개인 자본이 동독에 흘러들고,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면, 동독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구조변화가 필요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독일 연방정부에서는 동독 정부를 상대로 제안사항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독일 마르크화가 법적 지불수단으로 인정되어 동독 마르크화를 완전히 대체하는 방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독의 사회 시장경제를 동독에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방안이었다(중앙 연방 차원에서 경제 질서를 위한 법적 동화과정).

출처

주무 연방부처: 독일 연방 재정부

자료 18

지역 간 협력의 지원/보조를 위한 양독 간 공동위의 설립과 업무지침에 관한 협의

담당자/기관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및 다니엘 호프만, 1998.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독일 통일 및 독일 정치에 관한 문서: 독일 연방 내무부. p. 901 - 902

내용

지역 간 협력의 지원/보조를 위한 양독 간 공동위원회의 설립과 업무지침에 관한 협의.
 각 주정부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 입각하여 공동 정부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되, 본 위원회는 2개의 대표단으로 구성하고, 최소 분기별로 한 번씩 회동하는 것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발전 시키기 위함이다: 베를린, 뤼베키 부흐트, 엘버레기온, 하르크, 서부 튀링엔/헤센 베르크 란드, 중부 튀링엔/프랑켄 등. 본 사업의 주요 핵심영역은 지역발전, 환경 및 자연보호, 교통 시스템과 방송 시스템, 노동문제 및 사회문제, 그리고 관광 등이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각 주정부를 상대로 권고사항을 전달하고, 여러 가지 협정 초안을 마련토록 한다.

출처

주무 연방부처: 서독 재무부(관할)와 동독 재무부.

자료 19

구동독의 경제 상황에 관하여

담당자/기관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및 다니엘 호프만, 1998년.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독일 통일 및 독일 정치에 관한 문서: 독일 연방 내무부. p. 1458 - 1461

내용

동독의 경제 상황에 관하여

1989년 전기와 대비해 볼 때 1990년 상반기에는 산업 생산성이 약 7%정도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는 동독의 노동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추세가 늘고, 생산된 제품의 판로 또한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데서 기인한 현상이다. 1990년 7월 기준으로 볼 때 실업자 수는 242,000명에 달했고(3% 비율), 파악된 임시 노동자 숫자는 656,000명을 기록했다. 구조적 전환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조치는 다름 아닌 서독의 조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는 서독의 조세 제도가 성과 및 성장 지향적이었기 때문이다(이를 도입하게 되면 동독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순조세 금액이 1천억 마르크 이상 감소되는 효과가 달성된다). 서독 연방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동독의 구조전환 과정을 보조했다(예를 들어 지역 투자 용자제공, 자기자본 조성 지원책 등). 아울러 서독 기업들 또한 동독 기업과의 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상반기 기준 약 2800개의 조인트 벤처). 그동안 동독 기업의 사유화 과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신탁관리청”). 아울러 유럽연합과 동독 사이의 상품교역은 완전히 자유화되었다(1990년 8월 1일부터 농산물 및 관세 통합). 하지만 1990년 하반기 때 동독 국가예산은 350억 마르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출처

주무 연방부처: 독일 연방 경제기술부12. Bibliography

동 책자에 실린 내용은 통일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독일 통일 20년 계기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1.6 신탁관리청(사유화기관)과 구동독지역 재건

통 일 부

CONTENTS

제 1 부

신탁관리청(사유화기관)과 구동독지역 재건 · 513

/ 알렉산더 피셔(Alexander Fisher)

1. 숫자 및 사건별로 정리한 신탁관리청 · 514
2. 도입 : 신탁관리청과 구동독지역 재건 · 518
3. 신탁관리청의 과제 및 활동 · 520
4. 신탁관리청의 창설과정, 법적기반 및 업무 영역 · 521
5. 신탁관리청의 조직과 인력구조 · 526
6. 신탁관리청 행정의 실제 · 531
7. 구동독지역 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 532
8. 신탁관리청의 감독 시스템 · 537
9. 신탁관리청 재원의 재조달 · 541
10. 신탁관리청의 해체 · 542

■ 약어색인 · 545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 551

- | | |
|------|---|
| 자료 1 | 사유화(민영화) 및 인민소유재산 재개편을 위한 법(신탁관리법) (1990.6.17) · 552 |
| 자료 2 | 고용창출조치의 조직적인 준비 및 실행을 위한 제안 (1992.1) · 553 |
| 자료 3 | 호텔 및 휴양시설의 사유화 (1993.11) · 554 |
| 자료 4 | 지방자치화(Kommunalisierung)는 시, 기초지자체(Gemeinde) 그리고 크라이스(Kreis)에 실행능력 부여 (1994.5) · 555 |
| 자료 5 | 사회복지계획을 위한 기본원칙 (1991.6) · 557 |
| 자료 6 | 1954 협정(AO 54)에 근거한 추가연금 관련 기본원칙 (1993.5) · 558 |

- 자료 7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업무 (1991.6) · 559
- 자료 8 신탁관리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안내서 (1992.9) · 560
- 자료 9 기업의 민영화, 경제성과에 대한 책임은 다시 적극적 소유주의 손에 (1993.9) · 561
- 자료 10 신탁-토지의 관리 및 평가 (1992.8) · 563
- 자료 11 신연방주의 과거 인민재산 민영화에 관한 질문과 답변 (1991.6) · 564
- 자료 12 재산가치의 시,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로의 이전에 관한 질문과 답변 (1991.6) · 565
- 자료 13 중소기업을 위한 신탁관리청의 이니셔티브 (1994.9) · 566
- 자료 14 1991년 초까지의 기업정책의 원칙 및 기본방침 (1990.10) · 567
- 자료 15 1991년 초까지 기업정책의 원칙 및 기본방침에 관한 설문지 (1990.10) · 568
- 자료 16 단호한 희생 - 신연방주의 구조전환 과정에서 신탁관리청의 역할 (1990.11) · 569
- 자료 17 각 지역사무소를 위한 임시 기구 안내서 (1990.10) · 570
- 자료 18 신탁관리청의 조직 (1991.1.16) · 571
- 자료 19 동독에서 신탁관리청의 과제, 기능 및 방식 (1990.7) · 572
- 자료 20 신탁관리청 관리회사를 기업 운영진에게 매각(MBO)하기 위한 신탁관리청 지침서 (1991.2) · 573
- 자료 21 1940년 및 그 이전에 출생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한 기본방침 (1994.10) · 574
- 자료 22 기업 자료 조사를 위한 서식 · 575
- 자료 23 신탁관리청의 서명권과 대표권(USVB) (1994.7) · 576
- 자료 24 도표화한 신탁관리청의 인가조건 · 577
- 자료 25 신탁관리청장이 기업구상 마련을 위해 신탁관리대상 기업들에 보낸 서신 (1999.11.26) · 578
- 자료 26 토지와 건물(부동산)을 신탁관리청의 민영화 수행 유한책임회사에 매각하기 위한 기본방침 (1990.11) · 579
- 자료 27 기업 민영화를 위한 기본방침 (1990.11) · 580

제 1 부

신탁관리청(사유화기관)과 구동독지역 재건

알렉산더 피셔(Alexander Fisher)

| | |
|------------------------------|-----|
| 1. 숫자 및 사건별로 정리한 신탁관리청 | 514 |
| 2. 도입 : 신탁관리청과 구동독지역 재건 | 518 |
| 3. 신탁관리청의 과제 및 활동 | 520 |
| 4. 신탁관리청의 창설과정, 법적기반 및 업무 영역 | 521 |
| 5. 신탁관리청의 조직과 인력구조 | 526 |
| 6. 신탁관리청 행정의 실제 | 531 |
| 7. 구동독지역 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 532 |
| 8. 신탁관리청의 감독 시스템 | 537 |
| 9. 신탁관리청 재원의 재조달 | 541 |
| 10. 신탁관리청의 해체 | 542 |

1. 숫자 및 사건별로 정리한 신탁관리청(THA)

숫자로 본 신탁관리청

| | |
|--------------|---------------------------------------|
| 45,000 | 사업장 |
| 8,500 | 인민소유 기업과 콤비나트(Kombinate) |
| 14,600 | 계열사 분리 독립 이후의 기업 수(Betriebseinheiten) |
| 4,100,000 | 1990년 중반 관리 중이던 기업의 근로자 수 |
| 1,240,000 | 1992년 4월 1일 기준 관리 또는 매각된 기업의 근로자 수 |
| 2,952,000 | 근로자의 해고, 72%에 달함. |
| 1,510,000 | 고용보장(Beschäftigungszusage) |
| 30,000 | 소규모 식당 및 소규모 상점, 그중 22,300개 매각 |
| 1,839 | 약국 |
| 390 | 호텔 |
| 2,400,000 ha | 농지 및 임야 |
| 15,102 | 기업, 기업부문, 광산작업장이 사유화 |
| 2,110억 DM | 투자약속 |
| 7,853 | 기업의 사유화 혹은 지자체소유로의 전환 |
| 4,358 | 기업과 기업부문 재사유화 또는 경영자매수(MBO)를 통한 매각 |
| 3,718 | 해체된 기업 또는 기업부문 |
| 85,000 | 사유화과정에서의 계약체결 |
| 33,000 | 1994년 폐쇄 이후 후속 관리를 위한 사유화계약 체결 |
| 6,000억 DM | 1990년 2월 기업현황의 가치평가 |
| 600억 DM | 기업 사유화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
| 3,000억 DM | 민영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
| 2,400억 DM | 1994년 말 신탁관리청 해체 시 총 부채규모 |
| 5% | 동독출신자에게 매각된 경우 |
| 9% | 다국적 투자자에게 매각된 경우 |
| 86% | 서독 투자자에게 매각된 경우 |

| | |
|-------|---------------------|
| 1,400 | 형사법적 고발 건수 |
| 586 | 형사법적 수사 절차 건수 |
| 64 | 법적판결, 추가 7건의 소송 진행중 |
| 180 | 황령으로 인한 형사고발 |
| 6 | 유죄 판결 |
| 1,801 | 경제범죄 건 |
| 357 | 손해 청구 |

사건으로 본 신탁관리청

1990 :

| | |
|--------|--|
| 2월 12일 | “원탁회의” 가 인민재산 보호를 위해 신탁관리를 건의 |
| 3월 15일 | 동독 내각평의회에서 신탁관리청 창설을 의결 |
| 3월 15일 | 동독 출신의 페터 모레트(Peter Moreth)를 제1대 대표로 임명 |
| 4월 1일 | 내각평의회는 신탁관리청의 정관을 결의 |
| 5월 18일 | 제1차 국가조약 서명 |
| 6월 17일 | 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bank)이 동독중앙은행(DDR-Staatsbank)에서 분리 됨. |
| 6월 17일 | 도이체뱅크(Deutsche Bank)와 드레스드너 뱅크(Dresdner Bank)가 구동독중앙은행을 인수함. |
| 6월 27일 | 동독인민회의가 신탁관리법을 의결함. |
| 7월 1일 | 알리안츠보험사(Allianz Versicherung)가 동독의 국가보험 인수 |
| 7월 1일 | 경제, 화폐, 사회통합(Wirtschafts-, Währung-, Sozialunion)의 창설에 관한 국가조약 발효 됨. |
| 7월 15일 | 데틀레프 카르스텐 로베더(Detlev Karsten Rohwedder)가 신탁관리청-감독 심의 위원장에 취임 |
| 8월 20일 |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서명 |
| 8월 20일 | 라이너 마리아 골케(Reiner Maria Gohlke)가 페테 모레트 신탁관리청 |

- 총재와 교체
- 8월 22일 골케 사임, 로베더가 후임자로 임명
 - 8월 29일 서독의 전력콘체른이 전력연합의 70% 인수
 - 9월 13일 옌스 오데발트(Jens Odewald)가 신임 감독심의위원회 위원장 됨
 - 10월 3일 독일 통일, 신탁관리청이 공법기관(Anstalt öffentlichen Rechts, AöR)이 됨.
 - 10월 3일 신탁관리청이 동독 총리 산하에서 연방재무부 산하기관으로 변경
 - 10월 6일 신탁관리청 첫 결산: 7,000 개의 사업체가 이미 유한회사(GmbH) 또는 주식회사(AG)로 전환
 - 10월 10일 동독 상점 사유화 회사(Gesellschaft zur Privatisierung des DDR Handels, 이하 GPH) 창설
 - 10월 15일 메르체데스 벤츠(Mercedes Benz AG)가 루드비히스펠데(Ludwigsfelde) 소재 Ifa(자동차제조 공업협회) 공장을 인수
 - 10월 18일 BASF AG 슈바르츠하이데(Schwarzheide) 소재 화학공장(Synthesewerk) 인수
 - 10월 24일 폴크스바겐(VW)이 모젤(Mosel)지역 공장 건립에 관한 협약 서명
 - 11월 26일 연방의회가 재정위원회 산하에 신탁관리청 위원회 신설
 - 12월 3일 GPH가 8,500개의 상점과 2,500개의 소규모 식당을 사유화 대상으로 공고
 - 12월 13일 헨켈(Henkel)사가 동독의 세제 생산시설을 인수
 - 12월 18일 아담 오펠(Adam Opel AG)사가 아이제나하(Eisenach)에 자동차 공장 건설을 약속
- 1991:**
- 1월 3일 주 총리들의 신탁관리청-감독심의위원회 참여
 - 2월 8일 이때까지 약 500여 개의 기업 또는 사업장이 민영화 됨.
 - 3월 5일 신탁관리청 기업을 위한 280억 DM의 유동자산지원
 - 3월 14일 구동독 지역 재건을 위한 정부, 연방 및 신탁관리청의 협력을 위한 기본 원칙

- 3월 20일 14개의 겐트룸(Gentrum)-물류창고의 사유화 협약 완료
- 3월 22일 신탁관리 기업을 위한 15,000개의 감사심의기구 조사
- 3월 31일 “신속한 민영화, 결단력 있는 회생, 신중한 (폐업)정리”
- 3월 31일 신탁관리청 추산 기업가치 약 6,000억 DM
- 4월 1일 바트부르크 자동차생산 중단
- 4월 13일 신탁관리청 총재, 데틀레프 카르스텐 로베더(Detlev Karsten Rohwedder) 살해됨.
- 4월 15일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독일직원노동조합(DAG)과 신탁관리청 이 사회복지지원계획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 4월 26일 비르기트 브로이엘(Birgitt Breuel) 신임 신탁관리청 총재 취임
- 5월 13일 총리관저에서의 제1차 “루데비히 회의(Ludewig-Runde)”
- 7월 1일 마지막 트라반트 자동차 생산
- 7월 1일 동독 항공회사 “인터플루크(Interflug)” 운행 중단
- 7월 4일 Veba사가 슈베트 석유화학 및 정유회사(Perochemie- und Kraftstoffe AG Schwedt) 인수
- 7월 17일 구동독 지역의 중요 화학산업(Großchemie) 보존을 위한 종합구상
- 7월 30일 고용축진을 위한 기본협정
- 8월 1일 22,300개의 소규모 식당의 민영화 완료
- 9월 17일 1,400명의 동독인 매니저 해고
- 11월 8일 DM 개시 대차대조표: 10개 중 7개 기업 회생가능
- 11월 12일 칼 자이스 오버코헨(Carl Zeiss Oberkochen)이 칼 자이스 예나(Carl Zeiss Jena) 인수

1992:

- 1월 1일 영국 전기회사 BICC가 RWO 그룹 매입
- 3월 10일 MTW 조선 유한회사 브레멘 불칸 그룹(Bremer Vulkan-Gruppe)에 매각
- 3월 10일 노르웨이 Kvaener 그룹이 넵툰-바르노브 조선소 (Neptun-Warnow-Werft)인수

| | |
|--------------|--|
| 3월 17일 | 감독심의 위원회에서 마이크로 전자공학 거점을 보존하기로 협의 |
| 7월 3일 | 1년 최대상한선 300억 DM의 신탁관리 대출법(Treuhantkreditaufnahmegesetz) |
| ... | |
| 1994. 12. 31 | 신탁관리청 2,400억 DM의 손실을 기록한 채 해체 |
| 1995. 01. 01 | 후속기관이 관련 업무를 인계 |
| 1995. 01. 01 | 구부채청산기금(Erblastentilgungsfond)이 신탁관리청의 부채 인수 |

2. 도입 : 신탁관리청과 구동독지역 재건

“신속한 사유화, 결단력 있는 희생, 신중한 폐쇄!”¹

“신탁관리청은 20세기의 가장 큰 사유화 프로그램이었다.”²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한다 : 신탁관리청이 동독 인민재산을 얼마나 낭비했는가 말이다. 동독지역의 정리는 결국 일자리를 정리하는 결과가 되었다.”³

1990년 10월 독일통일과 함께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경제시스템의 융화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동독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이미 1989년 말, 수많은 불확실성의 부담을 안은 채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 4개월 뒤인 1990년 초, 베를린의 신탁관리청(THA)이 당시 아직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의 경제 대부분을 넘겨받았다. 4백만 명의 근로자가 취업중이었던 8,000개 기업의 45,000개 사업장뿐만 아니라 20,000 개의 소규모 식당과 상점, 1,893개의 약국, 390개의 호텔, 수많은 극장들, 에너지

1 Detlev Karsten Rowedder의 신념, 살해당한 신탁관리청 총재

2 Roland Czda 교수

3 2009년 9월 23일자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 Alles muss raus

및 물 공급 부문 전체와 근거리 대중교통회사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신탁관리청의 과제는 우선 거대 “콤비나트”와 인민소유기업들(VEBs)을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한스 모드로(Hans Modrow)가 이끌었던 동독의 마지막 사회주의 정권은 1990년 4월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을 대부분 장부상의 진행과정으로, 법조인과 과거 구동독 재무부 소속 경제전문가들 150명 정도가 서독 자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년 뒤 신탁관리청의 베를린 중앙청과 15개의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이미 4,000여명이었다. 신탁관리청의 업무는 법적 증명과 소유권 이전에 국한되지 않았다.

신탁관리청은 단시간 내에 구동독 지역 재건을 위한 중앙청, 즉 “동독의 6개 연방주 모두에게 강력한 또 하나의 정부(Nebenregierung)”로 발전하였다. 1990년 10월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동독)”에서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편입된 이후, 신탁관리청의 주 임무는, 서독 연방공화국에서 40년 이상 형성된 과정인 사회적 시장 경제를 가능한 단시간에 5개 연방주, 즉 동독의 신연방주(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에 이전하고 그곳에서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구조 이전의 핵심적인 성공요소는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를 완전히 사유화하는 것이라 간주되었다. 이러한 과제는 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1980년대 영국 대처 정부(Thatcher-Regierung) 시절의 대규모 사유화 프로그램의 범주를 한참 넘어선 것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독일경제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 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루츠 호프만(Lutz Hoffmann)은 1993년 독일 신연방주의 경제력은 튀니지, 온두라스 또는 스리랑카의 경제수준밖에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제적 경쟁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만들었던 조선소, 철강, 기계공업 그리고 전기 부문에서의 동독지역 생산시설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정리 작업은 지나치게 무자비하게, 특히 회생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단행되었다. 국제적 경쟁자들로부터 이미 단련된 서독기업들에게 이 과정의 지휘권을 넘겼기에 파국적인 규모의 탈산업화가 일어났다.

루츠 호프만은 산업생산부문의 몰락을 이끈 중추적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신탁관리청이라 생각했다. 신탁관리청은 불행하게도 남아있는 기업부문을 조각내어 신속하게 매각하

는 것에만 집중하였다. 이 정책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감시라는 회색지대에서 이 공공기관의 스캔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보도되고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상, 잘못된 결정 및 이들에 대한 전적으로 부족했던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신탁관리청이 해체된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기밀로 다뤄지고 있다.

3. 신탁관리청의 과제 및 활동

기업분할 조치로 인해 14,600개로 늘어났던 신탁관리청의 관리대상 기업 중 실질적인 인수거래들이 끝났던 1994년 12월에는 65개의 기업만 남아있었다. 다른 기업들은 모두 “매각” 되었거나, 과거의 소유주에게 반환되었거나, 자치단체나 연방주와 연방국가의 행정자산 또는 공공자산으로 편입되었거나 이미 기업이 해체되는 과정에 있었다. 외곽의 숲속의 호수에서부터 도심의 “금싸리기 땅”까지 이어졌던 대규모의 부동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않은 경우 모두 매각되었다.

공법기관으로서 신탁관리청은 제2차대전 후 마셜플랜자금을 집행하기 위해(European Recovery Program) 설립되었던 재건 신용 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과 유사한 자치적인 행정기관이었다. 투자자들과의 협상 및 민영화 결정 과정에서 신탁관리청은 광범위한 권한과 정치경제적 통제권을 행사하였다. 이를 통해 신탁관리청은 서로 대립되는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투자자들과 노동조합, 정당, 의회, 연방 기업연합 감독청, 회계검사원(Rechnungshof)과 유럽 위원회(Europäische Kommission)는 기관전체 또는 개별적인 결정에 영향력을 갖고자 노력했으며, 그들의 이익에 맞게 처분권 및 관리권을 행사하고자 했다.

신탁관리청은 처음부터 거대한 불확실성과 셀 수 없이 많은 법적 책임에 대한 위협을 안고 일을 했다. 이는 과제의 다양성과 모순성의 결과였으며 급속히 변화하는 문제상황들에 의해 보다 첨예화되었다.

초기의 임금 협상자들 간의 최고임금전략과 전통적인 동구권 시장의 손실, 국제사회의 경제위기의 결과로 파생된 신탁관리청 기업들의 영업실적의 부진은 지속적으로 전략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조직이론적 관점에서 신탁관리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주변 환경은 정리되기보다는 소란스러웠으며, 단순하기보다는 복잡하고, 예측가능하기보다는 불확실했다. 이렇다보니 관료주의적인 체제 구상안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지속적이며 활동적인 전략구상의 성공 전망도 좋지 않았다. 결국 남은 것은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가장 잘 재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환경적응이었다. 독일 정부는 1990년 총선거에서 경제적 시스템 이전(移轉)의 신속한 성공에 대한 희망을 퍼트렸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과정이 성공하지 않을 경우, 신탁관리청과 그 산하 기관들이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신탁관리청은 (연방정부에게는) 중요한 부담경감의 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주 정부나 연방정부에게 향하는 실망과 분노를 자신들에게 돌리는 것이었다.

4. 신탁관리청의 창설과정, 법적근거 및 업무 영역

a. 신탁관리청의 창설과정

“동독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의 동독 ‘인민재산’에 대한 지분권을 보장하기 위해”⁴ 신탁관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반체제 시민운동 성향의 ‘자율조직(Selbstorganisation)’이라는 연구모임에서 제기되었다. 1990년 2월 12일 첫 번째 자유선거 이전에 시민운동과 동독의 기성 대중조직들에 의해 구성된, 의회를 대체하는 기능을 한 “원탁회의”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⁵ 1990년 3월 1일 내각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 신탁관리청은 따라서 시민운동, 사회주의 정당들 그리고 대중조직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체되고 있던 동독의 제도적 유산(institutionelles Erbe)이었다. 서독 정부 또한 신탁관리청의 설립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미 많은 서독 기업들이 동독기업에 매입 의사를 밝힌 후이거나, 일부의 경우에는 법적 조건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음에도 자문관련

4 원탁회의를 위한 자료 12/29, 1990년 2월 12일의 12번째 회의

5 1989년 12월 7일부터 1990년 3월 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첫 자유선거를 통한 정부가 설립되기 전까지의 기간

협약 또는 사업관련 협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였다.

자유선거를 통해 형성된 첫 내각은 신탁관리청 설립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신탁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신탁관리청에는 다음의 세 가지 과제가 부여되었다.

- 사업 일부 또는 재산 일부 매각을 통한 사유화
- 기업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
- 회생 불가능한 기업 또는 기업부분의 폐쇄 및 재산 매각

나중에 신탁관리법의 전문만이 그 본래의 의도, 즉 시민들에게 “회생비용을 제한 후 인민소유 재산에 대한 지분권을 문서로 보증”한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주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기대되었던 신탁관리청에 의한 고용효과가 시민운동가들과 원탁회의 관계자들의 눈에도 단지 부차적인 역할만 수행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1990년, 동독경제의 민영화가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방정부 의지에 따르면 통일 비용은 동독의 경제 자산으로 지불해야 하며, 심지어 연방정부의 공적채무 변제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동독 정부는 동독경제의 가치를 그들의 국민경제적인 계산에 근거하여 다소 높은 1조 DM으로 추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이전 정부의 두 번의 대규모 조사 활동에서 이미 오래 전에 남아버린 기계들(이들 중에는 전쟁 때 또는 전쟁 전에 만들어진 기계들까지 일부 있었다)까지 새롭게 가치평가를 하여 콤비나트의 대차대조표를 보기 좋게 위장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서독의 기준에서는 가치가 없었던 오래된 시설들은 전반적으로 그 명목가치는 높았지만, 품질과 자원의 투입규모에 따르면 낮은 가치의 사회적 생산을 산출했다. 그럼에도 동독경제는 가장 부유한 산업국들의 세계순위에서 17위에 올라서 있었다. 그 결과 동독경제는 서독 정부에 통일을 위한 반가운 혼수로 비추어졌다. 하지만 후에 이 기대는 완전히 비현실적이었음이 밝혀졌다.

라이너 골케의 후임이자, 1991년 4월 1일 신원미상의 범인에 의해 뒤셀도르프 자택에서 살해당한 신탁관리청 제2대 총리인 데틀레프 카르스텐 로베더는 1990년 가을 크리스타 루프트(Christa Luft)와의 인터뷰에서 신탁관리청의 총 자산가치를 6,000억 마르크

(DM)로 추산하였다. 하지만 곧 동독의 대부분의 산업시설들이 새로운 경쟁조건 하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1992년 마르크 개시 대차대조표가 제출되자, 필수 매각비용 및 회생비용과 신탁관리 기업들의 가치 사이에 거의 2,500억 마르크의 격차가 있음이 명확해졌고 이 차액은 대부분을 통해서만 메울 수 있었다. 스스로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신탁관리 기업들은 초기 4백만 명 이상의 직원들의 임금을 대부로 지원했다. 임금보조금 지급은 오늘날 적극적인 노동정책의 관례적인 레퍼토리이지만 이것은 규모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거대사건이었다. 그 결과 일부 신탁관리 기업들은 여러 해 동안 직원들의 임금을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 충당해야했다. 신탁관리청이 꺼려했으나 어쩔 수 없었던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수익성이 없는 기업들을 잠재적인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평가, 매각, 회생 또는 폐쇄되도록 지탱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량해고를 가능한 한 피하거나 이것이 불가피할 경우 수용조치를 사회협약으로 보장하라는 신연방주 정부의 강력한 요구도 더해졌다. 초기의 미래전망들을 통해, 왜 신탁관리청이 갖는 노동시장정책에서의 의미와 역할이 국민들에게는 우선 비밀에 붙여졌는지 그리고 고용정책이 1992년 중반부터 신탁관리청 기관내부의 경제구조전환 과제로 여겨졌는지 알 수 있다. 신탁관리 기업과 민영화된 과거의 신탁관리 기업들은 1990년 7월부터 1994년 5월 사이 총 2,952,000명의 근로자를 해고했다. 이는 신탁청 관리대상 기업에 종사하던 총 근로자의 72%가 축소되었음을 의미했다.

b. 법적근거 및 업무 영역

1990년 3월 1일 동독 내각회의는 “국가자산의 신탁 관리업무를 위한 기관(THA, 신탁관리청)” 설립을 결정했다. 모드로 정권의 결정에 따라 신탁관리청은 인민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이익을 관리하도록 했다. 신탁관리청은 경제를 이끄는 기능은 하지 않도록 했다.

“원조-신탁관리청”의 주된 업무는 콤비나트 해체와 후속기업들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 과제는 1990년 6월 우선 작은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다. 드 메지에(Lothar de Maiziere)정권은 1972년 국유화된 대부분의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을 시작했다.

1990년 6월 “원조-신탁관리청”에는 143명의 정규직원이 있었다. 이 자리는 거의 대부

본 과거 동독의 기획부처 또는 재무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1990년 6월 17일 인민회의는 드 메지에 정부가 서독의 연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안한 신탁관리법을 통과시켰다.

1990년 5월 18일 의결된 국가조약과 1990년 8월 20일 서명한 통일조약과 함께, 1990년 6월 17일 통과된 신탁관리법은 협정에 따른 신탁관리청 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신탁관리법의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1항 : “인민소유 재산을 사유화한다. 인민소유 재산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게마인데(Gemeinde, 기초지자체), 시, 크라이스(Kreis, 한국의 군에 해당)와 연방주나 정부를 소유주로 삼아 양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및 서비스에 기여하는 인민소유 재산은 법에 따라 게마인데와 시에 양도하도록 한다.”

제2조 1항 : “신탁관리청은 공법기관이다. 신탁관리청은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인민소유 재산의 사유화 및 개발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제2조 6항 : “신탁관리청은 시장의 요구에 맞게 경제의 구조적응을 장려하고, 특히 회생 가능한 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키며 그들의 민영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신탁관리청은 적절한 기업구조 해체를 통해 시장성 있는 기업을 만들어내고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하도록 한다.”

(제3조) 1항 : “신탁관리청의 수입은 최우선적으로 기업의 구조적응을 위해... 두 번째로는 국가예산 분담금과 신탁관리청의 기본 지출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하도록 한다...”

제5조 2항 : “인민소유 재산의 재고조사 후 ... 경제 구조적응 및 국가예산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동독마크가 서독 마르크로 화폐전환을 한 이후 시기에 예금주들에게 2:1의 비율로 (평가)절하된 액수에 대한 인민소유 재산의 지분권을 인정하는 문서화된 해결방법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8조 1항 : “신탁-주식회사들은 기업 자문회사 및 판매회사의 자문을 통해 은행이나 기타 적합한 기업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업무부문에서 다음 과제들을 사업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탈중앙집권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 사업부문 또는 재산배당 매각을 통한 사유화
- 기업 효율 및 경쟁력 확보
- 회생 불가능한 기업 또는 기업부분의 폐쇄 및 자산 매각

신탁관리청은 1990년 10월 3일 연방정부 산하의 공법기관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동독 총리 산하 기관이었으나, 이후 연방재무부의 전문적이고 법적인 감독을 받게 되었으며, 이들 기관은 경제부와 해당 전문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감독관리를 했다. 연방정부는 관리위원회(Verwaltungsrat)의 위원들(23명, 이 가운데 신연방주 대표가 주별 각 1명씩 포함됨)을 소집했다. 관리위원회는 이사회를 선출하고 업무를 감시하고 지원하였다.

이사회는 신탁관리청 총재, 부총재 그리고 최소한 3명의 신탁관리청 일원으로 구성되었다. 이사회는 신탁관리청의 사업을 추진한다. 베를린의 신탁관리청 본부는 직원이 1,500명 이상인 모든 기업들을 직접 관리했고, 뿐만 아니라 “상점의 민영화를 위한 회사”, 과거 국가안전부의 자산과 정당들의 자산을 관리했다. 근로자 1,500명 미만의 회사들은 15개의 지역 사무소에서 관리했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던 1990년 10월 3일에는 신탁관리청이 아직 업무수행능력이 없었다. 인력과 자원은 아직 부족했다. 1990년 6월부터는 수장을 서독 인사로 대체하라는 정부의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 Hoesch-AG사의 회장이었던 로베더가 1990년 7월 1일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1990년 7월 16일에는 독일 철도청(Deutsche Bahn)의 청장이었던 골케가 총재로 임명되었다. 1990년 8월 16일 골케가 사임한 후 로베더가 신탁관리청 총재직을 위임받게 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재의 Kaufhof AG의 사장 오데발트(J. Odewald)가 맡았다. 통일이후에야 “오래된 인맥관계”로부터의 영향력을 몰아낼 수 있었다. 또한 이제부터 신탁관리청의 지속적인 확대도 시작되었다. 통일 1년 후에는 직원이 3,000명이었으며, 1993년 말에는 4,600명에 달했다.

5. 신탁관리청의 조직과 인력구조

a. 조직도

1990년 6월 신탁관리청 직원은 130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독일 통일의 날인 1990년 10월 3일에는 겨우 379명 이었다. 당시 신규 투입된 220명 대부분의 직원은 당시 해체되고 있었던 동독의 지역행정기구 소속이었다. 이들은 1990년 4월부터 6월 사이 모드로 정부의 기업법에 따라 1972년 이미 몰수했던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을 유한책임회사(Kapitalgesellschaften)로 전환했으며 과거의 소유주에게 반환하였다. 신탁관리청 밖에서 행해진 첫 번째 사유화 물결의 수혜자들은 모두 동독주민들로, 70% 정도는 과거의 자신이 소유했던 회사에서 관리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경제·화폐·사회통합(1990. 7. 1)과 헌법상의 통합(1990. 10. 3) 사이에 있었던 소수의 신규채용 인사 중에는 서독인은 11명밖에 없었으며 이들도 대부분 회사의 중역으로 채용된 경우였다. 신탁관리청은 경제적 통합은 이루어졌으나 정치적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몇 개월 동안 매우 불확실한 유동적 상황 속에 있었다.

화폐통합의 시작으로 8,500여 개의 기업들은 그들의 필요 경영자금을 DM 기준으로 신탁관리청에 임금 지불, 사회보험료, 주문 처리, 투자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신고할 수 있었다.

신탁관리청이 아직 연방정부의 직속기관이 아닌 공동출자기관이었기에 이러한 청구문서에 대한 법적인 조건보다는 기업경영관련 조건들을 심사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와 기업자문가들을 고용하여, 신탁관리 지도위원회를 헌법상의 통합에 근거하여 만들도록 했다. 1차 시기에 청구되었던 경영자금의 41%만이 승인된 것은 그들의 감정평가에 따른 것이었다. 동독 기업의 많은 사장들은 이러한 억제책을 신탁관리청 본부 탓으로 돌렸다.

독일정부는 3개월 넘게, 다른 국가, 하지만 완전히 낯설지는 않은 국가에 그 자금활용에 대한 어떠한 통제와 법적 감독권도 갖지 못한 채 재정을 지원했다. 독일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처음에는 동독의 요구들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입장을 취했었으며, 통일이후에야 비로서 대규모 민영화와 구동독 지역 재건을 위해 나아갈 길을 확정할 수 있었다.

신탁관리청 직원들은 우선 동독의 여러 부처와 기업출신 인사들이었다. 1993년 6월에

는 전체 직원 4,024명 중 69%가 동독 출신이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수행할 과제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자면 1993년 당시 172명의 각 부 부장중 17%만이 이러한 인사층에 속해있었다. 이들 중 4분의 1은 1990년 10월 헌법상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신탁관리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1991년과 1992년에는 이미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직원들 상당수가 신탁관리청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조사를 통해 그들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서독의 부서장급 관리들이 인력망을 통해 우선적으로 채용되었다. 로베더가 공표한 “수장이론(Kopftheorie)”에 따라 신탁관리청은 위에서 아래로 조직되었다. 우선 국장들이 임명되었고, 임명된 국장들은 각부 부장을 또 각 부 부장은 자신과 함께 일할 담당자를 선임하였다. 주요 충원분야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냈다 :

신탁관리청 인력(각부 부장과 담당자)*의 출신지역 :

| | |
|---------------|-------|
| 서독 경제계 인사 | 30.3% |
| 동독 공무원 | 21.2% |
| 서독 공공기관 인사 | 12.1% |
| 동독 경제계 인사 | 5.5% |
| 서독 사회 조직 | 1.8% |
| 동독 사회 조직 | 1.3% |
| 기타, 예 : 신규취업자 | 27.8% |

b. 조직구조

신탁관리청은 다음의 자회사도 가지고 있었다.

- 신탁토지회사(TLG Immobilien)
- BVVG 토지이용 관리회사 베를린(Bodenverwertungs-und-verwaltungs GmbH)
- 동독 상점 사유화 회사(GPH)
- 폐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회사(GVV)

1990년 10월 신탁관리청은 베를린에 동독 상점 사유화 회사(GPH)를 설립했다. 이 자매회사는 도매상부터 간이주점까지 국영 소매점(HO) 중 수천 개의 상점을 사유화했다. 14개의 Centrum-물류창고만 하더라도, 그 규모 때문에 신탁관리본부에서 직접 관리했다. 22,300개 이상의 국영 소매점-승계회사에 속하는 상점과 식당 등의 민영화 작업을 위해 바덴바덴 출신의 기업자문가 볼프강 베른하르트(Wolfgang Bernhardt)를 GPH 감사로, 작센 출신의 스위스계 페터 노이베르트(Peter Neubert)를 사장으로 임명했다. 둘은 상점 콘체른 회생작업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에어푸르트(Erfurt)에 소재한 “폐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유한회사(이하 GVV)”는 1992년 신탁관리청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신연방주의 광산시설을 폐쇄하거나 보존하는 것이었다. GVV는 사업장과 활용 가능한 자산부문을 민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탁관리청의 조직은 첫 해에 계속 바뀌었다. 1990년 6월 17일에 채택된 신탁관리법은 신탁관리 기업들을 유한회사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시기를 두 달 이내라고 내다보았다. 이를 통해 산업적 협력관계가 새롭게 정비되어야 함과 동시에 업무수행의 분권화가 달성되도록 했다. 아마도 이는 서구적 모델을 따르는 기업의 체계적 통합을 이루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차기 감사위 위원장과의 첫 대화를 통해, 이곳에 독립적인 대규모 콘체른이 설립될 수 있으나, 그들이 민영화라는 목표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독일 주식법은 공동결정권과의 결합을 통해 이런 회사들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연방정부도 맞서기 힘들었을 힘을 실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동시에 이 회사들은 소유권자로서의 책임을 전적으로 졌을 것이다. 콘체른기업들은 구동독 지역 전역에 분산되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전문부서와 콤비나트로부터 사회주의적 산업경영 시스템을 지속화 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의 관리위원회 수장이었던 로베더는 이러한 구조의 파급효과를 알고 있었지만, 신탁관리청 청장이었던 라이너 골케는 여전히 민영화를 위해 베치르크(Bezirk, 한국의 도에 해당하는 동독의 광역 행정단위 -역주) 관리위원회에서 정부위임으로부터 출발한 신탁관리청 지역사무소들을 해체하는 데에만 매달렸다. 기업들을 업종별 주식회사에 귀속시킨 뒤에는 지사들이 불필요하리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관리위원회와 청장의 갈등에서 로베더는 결국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탁관리청 지역사무소의 폐쇄작업이 중단되었으며 기업자문가 롤란드 베르거(Roland Berger)에게 기관의 새로운 조직 구성을 위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 과제의 핵심은 수직적이며 지역적인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로베더가 골케를 총재자리에서 몰아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1990년 8월 24일 새로운 기구의 핵심요소들을 발표했다. 넓게 분포되고, 기능별 지역별 구조원칙에 따라 분류된 하부조직을 통해 기존의 결정문제, 협력문제, 감독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후의 신탁관리 사무소들은 이 구상 안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로베더가 장차의 구조정책적인 과제들을 이유로 사무소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로베더의 정치적 책략이 신탁관리청에 재직중인 그 어느 관리자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동독-인민회의에서 그가 행한, 법적으로 규정된 신탁관리-기업들을 포기하고 대신에 사무소들의 강화를 선언한 내용의 연설은 신탁관리청 정책의 구조정책적 요소들과 아직 성립과정에 있는 신연방주와 그것들의 관계를 분명히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가 “지역 및 지방별 경제지원프로그램... 및 산업유치계획의 구상 및 발의”에 신탁관리청이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로베더가 서독 기업들, 특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산업구조변동 및 지역의 경제지원 문제들에서 경험했던 것의 배경 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새롭게 임명된 이사회의 이사장인 로베더의 조직정책적 결정들은 신탁관리청의 차후의 발전을 강하게 각인했다. 1991년 초까지 안정적인 관할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신탁관리청은 라이프치히가(Leipziger Straße)에 있는 구동독-계획위원회 및 구 항공성 청사로의 이전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신탁관리청의 업무는 미결로 남았다. 조직 구조를 공고화 한 후에야, 내적 규범마련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광범위한 조직편람 및 민영화 편람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통일 직후부터 1991년 초까지, 점점 더 많은 서독의 지도층 인사들이 당시 동베를린의 알렉산더광장 인근의 신탁관리청 본부로 몰려들었을 때, “조직적 카오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연출되었다. 사무실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통로에서는 투자자와 우연히 지나치던 신탁관리청 직원과의 구매상담이 이루어졌다.

전화나 팩스는 업무시간 중에는 사용할 수도 없었다. 믿을만한 제대로 된 전화번호부도 없었다. 얼마 되지 않는 회선은 항상 통화중이었다. 서면으로 제출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책임담당자가 불명확하거나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구매희망자, 신탁기업의 사장, 서독의 협회 회장들은 그저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직접 신탁관리청에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신탁관리청의 많은 서독 관리자들은 베를린의 신탁관리청 본사 맞은편 호텔에 방을 임대해 호텔 Bar나 로비에서 업무를 보았다.

독일산업연맹(BDI)은 1990년 2월 이미 베를린의 서쪽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해, 한편으로는 동독 인민회의의 입법과정에 영향력 행사를 꾀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일 산업연맹 회원들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신탁관리청이 법인적 행위자로서 단지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초창기에 그것은 즉흥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볼프강 자이벨(Wolfgang Seibel)은 1990년 여름의 신탁관리청을 일컬어 “법적인 기업조직(신탁관리 주식회사)도 수행능력이 있는 조직본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관리청은 잠재적 조직이다”라고 표현했다.⁶

이러한 개척시기 후, 지역적 지방분권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신탁관리 본부에서 기능분야별 분류는 - 사유화, 회생, 출자, 대리점, 재정, 인적 사회프로그램, 특별재산, 토지 및 재금융 - 매트릭스 조직을 위해 포기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조직이 너무 불투명하고 협력에 어려움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매트릭스 조직이 등장하면서 신탁관리청 전체가 예전에는 수뇌부에서만 관할했던 사유화라는 방향으로 목표에 집중했다. 모든 이사회 임원은 부문별 사업 책임과 업무별 직무책임을 지게 되었다. 단, 인사부와 재무부만은 실질적인 민영화 사업에서 분리되었다.

조직개편의 과정에서 “회생/청산” 이사회 관할이었던 “지역별 및 영역별 구조” 부문이 해체되었다. 이는 용어 표현상의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 조직 구성이 영역별 또는 지방별 경제구조정책이라는 연상 작용을 절대로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부터

6 볼프강 자이벨 : 신탁관리청의 조직상의 발전(Die organisatorische Entwicklung der Trauanhandstalt), Fischer, Wolfram/Hax, Herbert/Schneider, Hans Karl (발행인) : 신탁관리청.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다(Das Unmögliche wagen), 1993년 베를린, 111-147 (114).

는 영역별 및 지역별 관점의 기업관련 신탁업무는 당시 부총재였던 비르기트 브로이엘(Birgit Breuel)이 이끌었던 “지역 사무소”에 배분되었다. 그곳의 직무책임하에 있는 주정부(지역) 차원의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협력의 과제들은 후에 특별한 지역을 관할하는 이사회(Direktorat)로 이전되었다. 부문별 이사회(U-Abteilungen)의 “사유화추진자들(Privatisierern)”과 신탁관리청장 직속부서(P-Abteilungen)의 “분쟁 조정자(Schnittstellenmanagern)들”이 주축이 된 조직형태가 형성되었다. 관련성 높고 유동적인 조직환경에 대한 강한 의존도는 신탁관리청의 내부적 분할을 촉진시켰다. 1991년 1월부터 8월 사이에만 조직단위수가 149개에서 277개로 증가했다.

6. 신탁관리청 행정의 실제

신탁관리법 4조에 의거 관리위원회(Verwaltungsrat)는 이사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사회 의장은 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모든 주요 사업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신탁관리청 이사회에 모든 본질적인 문제, 특히 인민소유 재산의 민영화 및 개발에 관한 모든 본질적인 문제들을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에 의거하여 자문할 뿐만 아니라 신탁관리법 제2조에 의거한 다른 업무에 관해서도 자문을 하도록 하였다. 신탁관리법 법령에서는 어떠한 사업이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와 함께 관리위원회는 신탁관리청의 두 번째 핵심기구이다. 관리위원회는 신탁관리청 청장 또는 이사회 위원들의 임명권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해고하기도 했다. 관리위원회의 과제는 이사회의 업무를 감독, 지원하는 것이다. 관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며 자료를 직접 조사하거나 자료조사를 촉구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해 모든 본질적인 문제들, 특히 인민소유 재산의 사회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민영화 및 활용과 신탁관리법 제2조에 의거한 다른 업무에 대한 자문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사회의 주요 사업들은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관리위원회에는 정보제공권 및 감독권이 부여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관리위원

회는 2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연방정부에 의해 임명되었다.

통일조약 제1조에 언급된 연방주, 특히 신연방주에는 신탁관리청의 관리위원회에서 연방주별로 각 1석이 배당되었다. 신연방주 대표들은 신탁관리청 자문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협력 및 각 연방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관리위원회와의 관계에서 볼 때 신탁관리위원회 이사회에는 신탁관리법, 통일조약 및 이와 관련된 다른 법조항에 의거하여 관리위원회보다 결정적인 역할이 부여되었다.

그것은 다음에서 비롯된다:

- 사업은 전적으로 이사회가 전담한다. 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한 업무 지시 권한은 없다.
- 경영자문위를 통한 이사회는 자문은 민영화 및 이용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로만 제한된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개별 질문에 대한 자문의무는 없다.
- 경영자문위는 특정 사업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사회에 해당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는 없다.

7. 구동독지역 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신탁관리청의 사유화 과제는 그 규모나 복잡성에 비추어 보자면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예컨대 1980년과 1987년 사이 전 세계에서 채 1,000여 건의 사유화도 진행되지 못했으며 모두 안정적인 시장경제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구동독 지역에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단번에 수천 개의 기업이 민영화되었다. 조직구조나 인적, 물질적 자원이 초기에는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의심스러운 사업가에게 기업을 매각하거나, 관리 부족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이상적이지 않은 기업분할이 이루어졌다.

신탁관리청 업무관련 가장 큰 문제는 동독 마르크 대 서독 마르크(D-Mark)의 환율을 1:1로 결정한 점이다. 이 비율은 화폐·경제·사회통합에서 제시한 것이었으며, 이는 당시 기준으로 동독 마르크의 약 400%의 평가 절상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건강한 국민경제

도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낡은 동독경제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현실적인, 즉 동독과 서독의 노동생산성의 격차를 반영한 환율을 적용했다면 동독의 명목 임금과 그에 따른 구동독 지역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엄청나게 낮아졌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소요가 일어날 위험이 발생했을 것이다.

생활수준의 하락은 구동독 지역을 불안정 정국으로 몰고 갔을 것이기에, 정치적으로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 1:1의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동독의 기업들은 수익성을 상실했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곳이 되었다(사라졌다). 이로 인해 신탁관리청에서 관리하던 인민소유 재산이 하루아침에 평가 절하되었다.

동독지역의 경제상황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구매자를 찾지 못했다. 신탁관리청은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서야 거대 콤비나트들을 매각할 수 있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미심쩍은 사업가들의 손에 들어갔다. 기업 매입 과정에 동독 사업가들의 참여가 미미하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 사유화된 일자리 대비 동독인 소유 기업들의 비율은 겨우 6%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 매각 시 명확한 법적 지침을 따르겠다는 것은 신탁관리청의 명확한 기본방침이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사유화가 우연한 상황에 따라 진행되기도 했다. 특히 자신의 기업을 경영자매수(MBO)의 방법으로 인수하고자 한 동독인 기업가들은 특히 이러한 상황을 감지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기업수주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본력이 약한 경영자매수 기업(MBO-Betriebe)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게 되었다.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대기업과 콤비나트를 없애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매우 강해, 기본적인 구조분석도 없이 대기업을 소규모 사업부문으로 분할했다. 하지만 실제로 관련 규정에는 사업 분할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콤비나트를 해체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의 경제적 기반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결국은 남은 기업들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 결과 작은 기업들은 부족한 자본기반과 불충분한 사업시장에도 불구하고 종종 매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연방정부는 당시 및 미래의 경제 가능성을 잘못 예측했다. 특히 이제 와해되기 시작한 동구블록(Ostblock)과의 거대한 경제적 연관성을 지나치게 간과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서독의 상황을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신탁관리청에 대한 정치적 요구(기업과 일자리의 유지, 세계시장에서 효율적인 회생,

신속한 성공, 이익을 창출하는 매각)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탁관리청은 결코 투명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는 사유화 기관은 아니었다. 시간압박에 시달렸던 그들이 직면한 상황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신탁관리청은 연방정부가 신탁관리청에 허용한 광범위한 결정권한을 소속 직원들에게도 부여했었다. 그렇게 해야만 4년이라는 기간 안에 국민경제 전체를 사유화 하는 것이 가능했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은, 사유화 과정에서 복잡한 특별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는데, 이때 지역경제적, 경제구조정책적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다 보니 채산성 없는 신탁기업의 폐쇄가 능률적인 하청기업의 붕괴를 야기하거나 다른 기업들의 사유화 기회를 축소할 위험이 있었다. 경제구조 전환과정에서는 이럴 경우 지역적 연쇄 도산의 위험과 생산거점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연쇄 몰락의 위험을 최소한 1992년 초부터는 신탁관리청 및 주정부들도 인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은 공장 현지에서 먼저 감지되었다. 이 문제는 경영참여근로자 대표협의회(Betriebsräte)와 노동조합들 그리고 주정부들을 통해 신탁관리청으로 전달되었다. 신탁관리청 관리위원회의 노조대표는 연방주 대표와 한 목소리로 특정 기업의 폐쇄는 지역정책적 및 고용정책적 이유 때문만으로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조선소, 철강 및 화학산업 거점 또는 칼리산업 사유화와 같은 가장 중요한 정책적 주요과제들에서조차도 경제구조정책적으로 필요한 구상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오히려 어떠한 희생도 감내한 사유화의 가속화 및 신탁관리청과 노조 및 주정부의 협력으로 설립된 고용협회를 통한 사회적 추가보완으로 이어졌다.

신탁관리청에 밀접히 연계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결정한 사항들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연방주의 경제구조에 엄청나면서도 대부분의 경우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추가적인 경제구조정책의 결과로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수백 개의 후원기금 등 후원정책수단이 조성되었으며, 이들을 통해 단순히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투자지원금, 신탁관리청의 지출 없이 주정부 예산으로 전달되거나 연방의 공공 투자자금 명목으로 활용됨) 매년 4,000억 마르크가 구동독지역으로 흘러들어갔다.

초기에는 이념적 또는 규제정책적 이유로 인하여 세밀한 구상에 따른 지원 조치를 단

념하였다. 연방정부는 신탁관리청이 신속한 사유화를 통해 구동독지역에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50년대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삼은 두 번째 경제 기적을 통일된 독일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후에 여기에는 다른 요소들이 추가되었다 :

- 문제 상황의 복잡성에 상응하는 적합한 구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행 압력은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계속 열심히 일할 것”을 강요했다.
- 정당 간 경쟁 메커니즘은 1990년 선거의 해에 분명히 나쁜 상황을 감추고 좋은 것처럼 포장하도록 만들었다.
- 1990년 단기간의 통일경기는 오랜 기간이 필요한 자립적인 변영에 대한 설익고 잘못된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전환정책의 진행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입 정책을 전략적으로 배제하는 이익집단이 생겨났다. 이러한 구상은 경제침체에 차별 효과를 야기했지만, 서독 기업가들의 이해관계와 유럽공동체(EC)의 반대로 인하여 관철될 수는 없었다.

구연방의 구조정책 및 지역정책은, 그것이 없었다면 독일에서 동독지역과 기타 “위기 지역”의 발전이 불가능했을 것인데, 장기적인 성장기에 일어났으며 따라서 구축효과를 거의 초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적 통일 위기로 인하여 동독지역 재건을 우선시한 것은 불가피하게 서독의 경제적 입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다. 구조정책은 그러한 상호작용에 별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구조정책은 동독지역 구조지원을 통해 어려움 속에 빠졌을 서독 지역을 보상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난관과 정치적 이해집단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었다. 하나는 창조적 파괴라는 슈페터의 메커니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계획경제는 단숨에 사유화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예를 들자면, 킬(Kiel) 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인 호르스트 지버트(Horst Siebert)가 제안한 바와 같이, 기업들에게 즉석에서 공짜로 선물하는 방법을 통해서와 같이 말이다. 이러한 순간적이면서도 완전한 사유화를 통해 기업과 그 생산품의 가격이 즉시 생성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후 자율적인 경제참여자가 이로 인해 드러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필요한 투자를 하고자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안타깝게도 회의적이다.

신탁관리청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만으로는 동독지역의 모든 경제실체를 붕괴시키고 단지 소수의 신규 기업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었다. 보다 생산성 있는 서독의 기업들이 과잉생산에 시달리고, 여러 부문에서의 시장확대가 거의 아무런 추가 투자를 야기하지 않는 동안은 신탁관리기업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적 동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신연방주의 시장은 서독으로부터 추가 투자 없이도 공급될 수 있었으며, 이것은 그 규모가 예상했던 구매 수요의 극히 일부로 수축된 후의 전통적인 동구권 시장에도 해당이 된다. 순수 시장경제 논리로 보자면 이러한 산업적 입지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다.

이로써 두 번째 해결책인 실용주의적 정책만 남았는데, 이는 공적자금 지원과 개인의 결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시장법칙에 들어맞는 정책이었다. 신탁관리청의 많은 사유화계약에는 다년간의 기업손실에 대한 신탁관리청의 인수가 포함되어 있다. 투자자는 이에 대한 상응책으로 투자 및 고용보장을 약속해야 했다.

신탁관리청은 구매자들로부터 총 1,800억 마르크의 개인투자 약속과 140만 개의 일자리 보장을 약속 받았다. 물론 개별 투자자들에게는 이로 인해 새로운 위험요소가 생겨났다, 특히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말이다. 모든 민영화 케이스에서 투자약속 금액에 따라 실패의 위험도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이를 통해 개별 투자자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지역 공급자나 수요자로부터 당장 또는 앞으로의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관리청은 강력한 투자유인을 통해 사유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신탁관리청이 지역정책 및 경제구조정책의 중심 변수를 잘 조정했다 볼 수 있다.

1991년 초부터 유효한 “민영화가 가장 좋은 기업회생 방법이다”라는 원리는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사업 청산을 통해 민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회사 자산을 독립적인 “위탁회사(Management-Gesellschaft)”로 이전시켰다. 이곳에서 신탁관리청에서 파견된 고위급 이사들은 개인 사업가처럼 거래를 할 수 있었다.

8. 신탁관리청의 감독 시스템

신탁관리청의 감독시스템은 나중에 기관 운영에 있어 가장 핵심문제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신탁관리청책 기본원칙인 “개인의 결정에 따른 공적자금지원”은 민주주의적 참여 및 감시 원칙에 위배되었다. 신탁관리청은 신뢰와 비밀엄수에 큰 가치를 두었으며 특히 잠재적 투자자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몇몇 민감한 기관내부의 결정과정에서 이러한 자세를 취했다. 그 정도가 지나쳐서, 해당 기관과 업무를 조사하기 위해 투입한 연방의회 조사위원회의 신탁관리청 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개별적인 민영화 협약에 대한 검열을 거부했다.

이러한 비밀주의는 과오로 지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심스러운 사업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켰다. 신탁관리청 이사회의 입장에서는 비밀 준수를 함으로서 진행 중인 협상의 안정과 타협에 의한 협상결과라는 목적에 기여하고자 했다. 신탁관리청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공론장이 협상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구상이나 마케팅 전략관련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계약서를 공개할 경우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 이행은 민주주의에 근간을 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와 행정관청에 대한 의회의 감시권한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경제적인 통일관리는 행정부와 경제의 과제로 남았다. 재정효과가 있는 계획적 결정에 대한 승인요구와 본(Bonn) 행정부, 특히, 재무부와와의 일상적인 비공식적 협의를 제외하고 보자면, 정부의 두 개 관리(조사)위원회가 특별히 흥미롭다 : 신탁관리청-지도위원회와 소위 “루데비히 모임(Ludewig-Runde)” 이다. 후자는 총리에 의해 동독지역 재건 관련 업무에 위촉된 총리실 실장인 요한네스 루데비히(Johannes Ludewig)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의회의 조사위원회로는 예산위원회 하부위원회인 신탁관리위원회와 연방의회의 신탁관리조사위원회가 있다.

신탁관리청에 있지만 신탁관리청에 편입되지 않은 독립기구로 재무부의 자문기구인 지도위원회는 본부로 들어오는 모든 기업구상안을 검토하고 그 처리에 대해 조언을 했다. 정치적 협력위원회는 “루데비히 모임”을 결성하면서 창설되었다. 1991년 5월 13일 최초로 회의가 열렸고 이후에는 몇 주 또는 가끔은 보다 짧은 간격으로 회의가 열렸으며 회

의는 대부분 베를린 총리관저 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과제는 정부와 연방주 및 신탁관리청의 협력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동 위원회는 “정부, 신연방주와 신탁관리청의 구동독 지역 재건을 위한 협력원칙”을 근간으로 설립되었다. 협약은 정부와 신연방주 및 신탁관리청의 점진인 신탁관리-경제자문위원회와 신탁관리-월요회의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의회는 신탁관리청 감시업무는 연방의회 재무부 산하 하부위원회에 위임되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 비하면 신탁관리청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이는 일반적인 조정장치와 의회 예산권의 동의 거부가 정당한 공법기관인 신탁관리청에게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 직후 상반기에는 위원회의 과반수가 (신탁청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했다. 이는 연맹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의 의원들이 초기에 의회에서 입장표명, 질의, 결의안과 1991년 6월에는 신탁관리법의 새로운 초안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 조직개편, 의회의 보다 철저한 감시, 신탁관리기업의 채무상환 및 회생에 대한 그들의 요구에 대해 위원회는 지지하지 않고자 했는데, 이는 자신들이 법적 입지가 약해, 신탁관리청과의 합의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1992년 7월 3일 제정된 신탁관리자금대출법에 따라 신탁관리청의 대출한도가 회계연도 기준 300억 DM으로 제한되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 1993년과 1994년 예산심의위원회의 인가를 요청했다. 신규채무에 대한 의회의 감시는 아직은 예방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와 동시에 신탁관리청은 위원회 보고를 확대하여, 베를린이나 신연방주의 산업거점지역에서 빈번하게 지역회의를 가졌다. 1993년 3월에는 연방의회 내에 신탁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신탁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물론 이 위원회도 신탁관리청으로부터 실질 운영되는 사업, 계약감시, 회생관련 구상안, 신규 민영화 부문과 지출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또는 요청에 따른 보고를 받았다.

신탁관리청의 업무는 정치적 일반 업무로부터 원칙적 중요 결정을 임시적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이는 협력위원회가 신탁관리청, 총리실 및 신연방주의 틀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는 의회의 감독권 간섭권의 실질적 배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무차원에서는 업무처리 관련 광범위한 간소화가 진행되었고, 이는 신탁관리 업무관련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자회 방법(Basar-Methode)”, “게릴라 같은 관료주의자(Bürokraten als Partisanen)” 또는 “혼돈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Chaos)” 라는

표현을 통해 잘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은 신탁관리청이 민주주의 이론에서 보자면 의구심이 드는 구조라는 의미이다.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한 독립된 행정단위로서, 신탁관리청은 미국 행정부의 독립된 행정부처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신탁관리청은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로 구성된 우호적인 신탁관리 지도위원회가 이끌었다. 반면 미국의 행정시스템과는 달리 독일의 경우 의회의 예방차원의 간섭권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미국에서는 많은 의회 위원회들이 각각 감시 권한과 모든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독일의 행정전통에서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틀 안에 편입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의회나 정부에게 감시권한이 없다.

시장을 통한 신탁관리청의 감시도 실패했다. 시장은 그 본연의 기능을 통해 운영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모든 기업의 사유화가 개별 케이스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상하적인 조정 및 감시는 제한되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탁관리청의 정치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다양한 이유로 신속한 산업화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그랬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탁관리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일정책 비공식네트워크에서 당면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야기된 적응반응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민영화라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신탁관리청은 예측할 수 없는 장애 요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목표는 대부분 이루었다.

자치권과 외부 통제문제에 관해 신탁관리청의 “공적인” 업무소개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거나 화합을 이룬 것으로 묘사했다. “신탁관리의 모든 결정들은 우리나라의 연관된 사회 그룹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신탁관리청 관리위원회는 신연방주의 대표 외에도 노조와 경제계 대표들이 참석하기 때문이다.”⁷ 앞서 언급한 관련 그룹에서 개별적인 갈등에 의해 장기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신속한 사유화에 대한 폭넓고 놀라운 기본 합의를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신탁관리청의 “정책”은 이해조정의 결과이다. 대화나 암묵적 합의, 협상, 협약 또는 계약을 통한 것으로 이는 신탁관리기관 전 부문에서 행해졌다. 종합적으로 살펴보

7 비르기트 브로이엘(Birgit Breuel) : Wirtschaftskurier, 1993년 2월자, 3페이지

면, 수많은 상호 적응 과정들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그 1인이 독일 정부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업무처리과정에 있어 유연한 반응이 없었다면 독일 연방의 체제를 신연방주로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기관들과 그와 함께 전달된 구상들이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정부, 협회, 감사기관, 기업과 수많은 협력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대신했다.⁸

독일정부는 신탁관리청 업무의 복잡성과 유일성 때문에 지도부 인사들의 업무 태만이 있을 경우 해당 직책에서 면직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중대한 업무태만에 대한 면직의 대상 시기는 독일 통일 이후의 예외상황으로만 한정되었고, 신속한 재건을 위한 신탁관리청의 효과적인 내적 검열이라는 의무와 연계되었다. 가벼운 업무태만으로 인한 보직 면직의 처리는 1994년까지 연장하여 적용되었다. 이는 공직자의 권리에 적용되는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당시 야당은 이러한 결정을 비판했다. 야당은 이 안에는 재무부의 감독소홀의 책임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신탁관리청 직원들 개개인이 이를 일종의 면죄부(Persilschein)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신탁관리청의 업무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된 것은 1995년 1월 1일 “연방 통일관련 특수과제청(Budnesra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BVS)”에 편입되고 그들의 과제 중 일부가 다른 후속기관(관련 후속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지주관리회사(Beteiligungsmanagement Gesellschaft), 신탁토지회사(Treuhand Liegenschaft-gesellschaft),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청(Bu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에 이전된 후이다. 이와 함께 남아 있는 과제(협상관리, 추가 3,500개 기업의 해체, 핵발전소 폐쇄, 미해결 재산문제 해결 등)들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가 연방 재정으로 이관되었다.

8 롤란드 차다(Czada, Roland) : “인반적 원리(Üblichkeitsprinzip)”와 상황별 실행압력 : König, Klaus/Schuppert, Gunnar Folke(Hrsg.) 출간 : 재산배분(Vermögenszuordnung)과 신연방주 공공기관의 업무구분, 바덴바덴(Baden-Baden) 1994, 153-174 페이지

9. 신탁관리청 재원의 재조달

동독 경제 사유화는 1994년까지 단지 300억 DM의 수입만을 기록했다. 채무는 신탁관리청에 떠맡겨진 것 만해도 2,500억 마르크였다. 이와 함께 조정이 필요했던 기타 채무들과 함께 1995년 1월 1일 일명 “구부채 청산기금(Erbblastentilgungsfond)”에 4,200억 마르크에 이르는 부채가 떠넘겨졌으며 이는 30년 후에야 청산이 가능한 액수이다.⁹ 신탁관리청은 후속기관에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 민영화에 따른 수입금을 제외한 모든 부문을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이 자금은 대부분 자본시장에서 직접 차용한 것이었다. 은행대출금은 이 중 아주 작은 부분만 차지했다.

1990년 9월 신탁관리청은 신탁기업들의 구부채에 대해 처음으로 청구된 분기 이자를 서독 마르크로 내기 위해 갑작스럽게 25억 마르크를 마련해야 했다. 당시는 아직 동독 시절이었으므로 신탁관리청의 부채를 누가 넘겨받을 것인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서독 은행들도 신탁관리청의 대출금을 제공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이는 당시까지만 해도 서독 정부가 기관의 부채를 인계 받기 전이기 때문이었다. 법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독일정부가 채무자로 드러나자, 신탁관리청은 자금 및 자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를 갖게 되었다. 이로써 부채지원을 위해 우선 독립적인 회전 자금을 통한 지출이 이루어졌다. 즉, 단기 상환 신용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매일매일 만기가 되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을 통해 무엇보다도 비싼 중간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회전 자금을 통한 자금지원 구상과 관련 전산프로그램은 재정 담당 부장인 파울 하드리(Dr. Paul Hadry) 박사가 뮌헨의 독일 에어버스 주식회사(Deutsche Airbus GmbH)에서 갑작스럽게 가지고 왔으며, 이미 10년 전에 개발하여 검증을 거친 것이었다.

나아가 신탁관리청은 최초의 공개 기업어음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곧 이 부문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초기의 광범위한 노력을 통해 1991년에서야 도입된 단기 채권 할인어음 형태인 기업 어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유동성 자금도 1991년 말에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신탁관리

9 연방정부 연차 경제 보고 1993, 15.

청은 금융시장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였으며, 이들의 특수 상황에서는 주식거래법에서 요구하는 3회의 흑자상황을 제시할 수 없었기에 재무제표도 없었다. 프랑크푸르트 유가증권 거래소와의 협상에서는 신탁관리청이 희망했던 예외규정 적용을 이끌어 낼 수 없었다. 1992년 7월 3일 신탁관리대출법이 도입되어, 신탁관리청이 채무자로서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규정하자 재무제표 없이 유가증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신탁관리청은 독일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미래 회사채를 가능한 한 외국의 대형 기관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신탁관리청 재무부서는 국제적인 신용등급기관에 등재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신탁관리청은 최고 신용등급인 AAA를 받았다. 이로써 중장기적인 채권 및 증권 양도를 위한 국내외의 채권유통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신탁관리청 청장인 비르기트 브로이엘(Birgit Breuel)은 1992년 가을 “신탁관리청”을 국제 중요 금융시장에 성공적으로 선보였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며, 신탁관리 사채의 40% 정도를 해외 투자자들이 매입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회사채 및 채권 발행이 연방채권 컨소시엄의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했기에, 신탁관리청 재무부서는 연방 재무부의 모든 관련 기관들뿐만 아니라 연방 은행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신탁관리청의 재무부서는 신탁관리청 내부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높은 독립권을 보장 받았다.

10. 신탁관리청의 해체

1994년 8월 9일의 “신탁관리청 업무청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관리청의 업무는 1994년 말에 끝나게 되었다.

1994년 신탁관리청이 해체된 후 2,400억 마르크의 부채가 남았다. 그 동안 신탁관리 구조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구동독 지역의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았다.

신탁관리청의 활동은 구동독지역에는 더욱 끔찍했는데, 그 이유는 신탁관리청이 독립적인 대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독의 대기업들은 구동독지역의 지사에 연구 개발시설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성공적인 기업회생의 예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신연방주 주민이 이득을 본 것은 없었다. 혜택을 누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으며, 이 중에는 당시의 연방정부도 포함되어 있다. 정치학자인 볼프강 자이벨(Wolfgang Seibel)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신탁관리청은 피뢰침 같은 역할을 했다. 동독 사람들의 실망과 불만은 신탁관리청을 향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었던 정부는 상처 하나 나지 않고 도망갔다. 그리고 1994년 가을 총선에서 콜 총리(Helmut Kohl)가 또 다시 선출 되었다.”

프리드리히 뒤렌마트(Friedrich Dürrenmatt)의 작품 “로물루스 대제(Romulus der Große)”에서 한 등장인물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우리는 파국적인 자본주의와 중대한 파국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 많은 사람들이 신탁관리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몰고 왔다고 한다.

1994년 12월 31일 신탁관리청은 해체되었다. 남아 있던 과제들은 다음의 여러 기관에 이관되었다 :

- 베를린 지주관리회사(BMG)는 기업관련 업무 및 지주를 담당함.
- 베를린 토지이용관리회사(BVVG)는 농업 및 임업관련 문제를 담당함.
- 연방은 신탁토지회사(TLG)를 관리함
- 기타 청산, 재사유화 및 통치권자 관련 업무는 연방 통일관련 특수과제청(BVS)이 담당함.
- 신탁관리청의 대부 및 과거 대부 및 부채청산청구로 인한 부채는 1995년 1월 1일 설립된 구 부채 청산기금으로 이전된다.

신탁관리청이 해체되던 날, 당시 총재였던 비르기트 브로이엘은 긍정적인 결산을 내렸다. “우리가 여기에서 4년 반이라는 시간 만에 경제전체를 전환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고, 또 그 대부분이 경쟁력을 갖추었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이곳에 시장경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경제5현”은 1994년 연차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신탁관리청에 고마워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신안방주의 경제 모습을 그렸을 때, 위기에 시달리거나 끊임없는 금융주사를 통해 겨우 유지되는 국유기업의 모습이 아니라 독립적인 회사들, 안정적인 시장지위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경제학자들도 신탁관리청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했지만, 장기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없는 신속한 사유화를 이루기 위한 다른 대안은 없었을 것이라 보았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에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었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문제점들, 예를 들자면 사유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들은 오늘날 신탁관리청에 대한 대중의 평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신탁관리청이 업무를 보는 동안 시간과 재원이 부족했기에, 곧 인구에 회자된 말이 있었다 :

“다음 통일 때 고려하도록 함”

■ 약어색인

| | |
|------------|--|
| AA | 외무부(독일연방공화국 외무부) |
| ABC Waffen | 원자, 생물 화학무기 |
| ABM | 고용창출 조치 |
| ADN | 공영 독일 통신사 (구동독) |
| AEB | 국영 가치교환은행(ALTALANOS Ertekgorgalmi Bank) |
| AfD | 독일 연맹 |
| AFPN | 농업투자장려프로그램 |
| AGCK | 구동독 기독교 교회협의회 |
| AKE | 협동수사 작업단 |
| ALM | 농산물 시장조절규정 기관 |
| AM | 외무부 장관 |
| Anm | 주식 |
| ARG | 구채무청산법(Altschuldenregelungsgesetz) |
| AugsLeistG | 보상작업법(Ausgleichsleistungsgesetz) |
| Az | 문서 번호 |
| BArch | 연방기록보관소 |
| BARoV | 연방 미해결 재산 문제 조정청 |
| BB | 독일연방은행 |
| BDA | 독일경영자총연맹(Bundesvereinigung der Deutschen Arbeitsgeberverbände) |
| BEK | 구동독 개신교 연맹 |
| BfA | 연방노동청 |
| BFD | 자유민주주의연맹 |
| BGBI | 연방법령관보 |
| BK | 연방총리 |
| BK Amt | 연방총리실 |
| BM | 연방부(Bundesministerium), 연방장관(Bundesminister) |
| BMA | 연방노동부(연방노동복지부) |
| BMB | 연방내독관계부 |
| BMELF | 식량, 농업, 산림을 위한 연방부처 |
| BMF | 연방재무부 |
| BVVG | 베를린토지이용관리회사 |
| BMI | 내무부 |
| BMJ | 연방법무부 |
| BMV | 연방교통부 |

| | |
|---------------|--|
| BMWi | 연방경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
| BND | 연방정보부 |
| BPA | 연방공보처 |
| BPräs | 연방대통령 |
| BRat | 연방상원 |
| BRD | 독일연방공화국 |
| BReg | 연방정부 |
| BTag | 연방하원(연방의회) |
| BT-Drucksache | 연방행정절차법 |
| BverfG | 연방헌법재판소 |
| BVerfGE |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
| BvS | 연방 통일관련 특수과제청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
| BZ | 베를리너 차이퉁(베를린 일간지) |
| CdS | 주 총리실 실장/시장 비서실장 |
| CDU | 기독교민주연합(기민련) |
| ChBK | 연방총리실장 |
| CSU | 기독교사회연합(기사련) |
| CSSF | 룩셈부르크 재정 감독 위원회(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
| C-Waffen | 화학무기 |
| CWC-AG | 중앙교환신용은행 |
| D | 독일 |
| DA | 민주주의의 출발 |
| DBD | 독일민주농민당(Demokratische Bauernpartei Deutschlands) |
| DBV | 독일농민연맹(Deutscher Bauernpartei) |
| DD | 인쇄본(복사본)(Durchdruck(Kopie)) |
| DDR | 독일민주공화국(구동독) |
| DGB | 독일노동조합총연맹 |
| DIHT | 독일 상공회의소 |
| DJ | 민주주의 지금(Demokratie Jetzt) |
| DLF | 도이칠란트퐁크(라디오 방송사)(Deutschlandfunk) |
| DM | 독일 마르크(화폐단위) |
| dpa | 독일통신사 |

| | |
|------|---|
| DSU | 독일사회연합(Deutsche Soziale Union) |
| DVP | 구동독 인민경찰(Deutsche Volkspolizei) |
| EALG | 기준보상 및 조정급부법 |
| e.G. | 등록된 협동조합 |
| EV | 통일조약 |
| F | 프랑스 |
| FAZ |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일간지) |
| FDGB | 독일자유노동조합연맹(구동독) |
| FDJ | 자유독일청년단(구동독) |
| FDP |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자민당) |
| FEDI | “페리엔디스트”, 노조의 OEB 여행사(이후 FEDI 휴가서비스 사) (OEB Reisebüro der Gewerkschaften “Feriendienst”) |
| FR |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일간지) |
| FS | 전보(Fernschreiben) |
| GAK | 농업구조개선 및 해안보호 공동임무 |
| GAP | 공동 농업정책 |
| GBI | 법령 관보(Gesetzblatt) |
| GBL | 농업 공동기업 |
| GG | 기본법(헌법) |
| GKV | 의무 의료보험 |
| GL | 팀장(Gruppenleiter) |
| GS | 사무총장 |
| GST | 스포츠 기술 협회(Gesellschaft für Sport und Technik) |
| HA | 지휘부(Hauptabteilung) |
| hs | 수기(手記)(handschriftlich) |
| HVA | 정보 지휘부(Hauptverwaltung Aufklärung) |
| IAMO | 중앙유럽 및 동유럽 농업개발 기관 |
| IHK | 상공회의소 |
| IFM | 평화와 인권 이니셔티브(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
| IWF | 국제통화기금 |
| i.V. | 대리 |
| JP | 소년소녀단(Junge Pioniere)(구동독) |
| KAAG | 투자신탁회사(Kapitalanlagegesellschaften) |
| KB | 문화동맹(Kulturbund)(구동독) |

| | |
|-----------|---|
| KfW | 재건신용은행 |
| KoKo | 상업조정기구(Kommerzielle Koordinierung) |
| KPD | 독일공산당(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
| KPÖ | 오스트리아 공산당 |
| KSZE | 유럽안보협력회의 |
| KULAP | 문화경관프로그램 |
| KWG | 신용기관법(Kreditwesengesetz) |
| LBG | 브란덴부르크 토지측량 지리학 |
| LASD | 독일정책 실무단 대표 |
| LDPD | 독일자유민주당(구동독)(Liber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 LGT | 리히텐슈타인 글로벌 트러스트 은행 |
| LwAltschG | 농업-구부채법 |
| LwAnpG | 농업적응법 |
| LZB | 주립중앙은행 |
| MAH | 구동독 대외무역부 |
| MD | (각 부처의)국장(Ministerialdirektor) |
| M/DDR | 구동독 마르크 |
| MdA | 구동독 노동사회부 |
| MDg | (각 부처의) 실장(Ministerialdirigent) |
| MELF | 식량, 농업, 산림을 위한 연방부처(구동독) |
| MfAA | 외무부(구동독) |
| MfS | 구동독 국가안전부 |
| MKB | 헝가리 무역은행(Magyar Külkereskedelmi Bank Rt.) |
| MNB | 헝가리 국영은행(Magyar Nemzeti Bank) |
| MP | 총리 |
| MR | (각 부처의)참사관 |
| Mrd. | 십억(단위) |
| NDPD | 독일민족민주당(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 NBL | 신연방주 |
| NF | 신포럼 |
| NfD | 업무용으로만 사용 |
| Novum | 노뎀 무역회사 |
| NRW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
| OEB | 기관 소속 기업 |

| | |
|---------------|--|
| ORVAG | 스위스 조직 관리영업사 |
| OVG | 최고행정재판소 |
| PA | 보도자료 기록 보관소 |
| PartG-DDR | 구동독 정당법 |
| PDS | 민주사회주의당(민사당)(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
| PK | 헝가리 은행(PENZINTEZETI KÖZPONT) |
| PMO | 구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
| PMO-Vermögen | 구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자산 |
| PVKV | 정당자산위원회규정 |
| RBgm | 시장(市長) |
| RGW | 동유럽경제상호원조회의(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COMECON) |
| RiVG | 행정 재판소 판사(Richter im Verwaltungsgericht) |
| RL | 부서장(Referatsleiter) |
| RR | 참사관(Regierungsrat) |
| RTL | 라디오 텔레비전 룩셈부르크(TV방송사) |
| SBZ | 소련 점령구(Sowjetische Besatzungszone) |
| SDP | 구동독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in DDR) |
| SED |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사통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
| SEDDiktStiftG | 사통당 독재 청산을 위한 재단 설립에 관한 법(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r 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
| SFR | 스위스 프랑(화폐단위)(Schweizer Franken) |
| SMAD | 주 동독 소련군 지휘부(Sowjetische Militäradministration Deutschland) |
| SPD |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 St | 차관(Staatssekretär) |
| StäV | 상임 대표부(Ständige Vertretung) |
| StGB | 형법전(Strafgesetzbuch) |
| SU | 소련(Sowjetunion) |
| TAS | 신탁관리청-청산-특별자산(Treuhand-Abwicklungs-Sondervermögen) |
| THA |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 |
| THA/BvS | 신탁관리청/연방통일특수과제청 |
| TEUR | 1,000 유로 |
| TLG | 신탁토지유한회사(Treuhand Liegenschaftsgesellschaft mbH) |
| UdSSR | 소련(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

| | |
|-----------|---|
| UFV | 독립여성연맹(Unabhängiger Frauenverband) |
| UKPV | 독립 당재산 위원회(Unabhängige Kommission Parteivermögen) |
| USPD | 독일 독립사회민주당 (Unabhängige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 |
| VdgB | 농민 상호부조연합(Vereinigung der gegenseitigen Bauernhilfe) |
| VEB | 국영기업 |
| VEG | 국가재산(국유토지) |
| VermG | 미해결 자산 문제 처리법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ermögensgesetz) |
| VG | 행정 재판소(Verwaltungsgericht) |
| VK | 인민회의(Volkskammer) |
| VL | 좌파 연합(Vereinigte Linke) |
| VOB | 기관 소속 기업연합(Vereinigung organisationseigener Betriebe) |
| VS | 기밀문서(Verschlusssache) |
| VwGO | 행정 재판소 규정(Verwaltungsgerichtsordnung) |
| WWU | 화폐 · 경제통합/화폐 · 경제 · 사회통합(Währungs- und Wirtschaftsunion,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
| z. A. | 채용 예정(zur Anstellung) |
| Zentrag | 중앙 인쇄, 구매, 검열 유한회사(Zentrale Druckerei- Einkaufs- und Revisions GmbH) |
| ZK d. SED | 사통당 중앙위원회 (Zentralkomitee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
| ZPA | 당중앙 기록보관소(Zentrales Parteiarchiv) |
| ZV | 중앙 이사회(Zentralvorstand) |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자료 1~27 552

자료 1

사유화(민영화) 및 인민소유재산 재개편을 위한 법(신탁관리법)

1990. 6. 17. 베를린

담당자/기관 : 신탁관리청, 구동독 내각평의회, 신탁관리-주식회사, 국유 콤비나트, 콤비나트 기업, 유한주식회사, 합자회사

내용

자산양도: 국유재산을 사유화하거나 정부에 인도한다. 내각평의회는 관련 책임이 있으며 신탁관리청이 합자회사들의 소유주가 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신탁관리청의 위치과 역할: 신탁관리청은 공법기관이다. 신탁관리청은 매년 경제계획을 작성한다.

신탁관리청의 이사회: 이사회는 내각평의회에 보고한다.

감독심의위원회: 감독심의위원회는 이사회를 감시하고 지원한다.

수익과 수익운용: 수익은 기업의 구조 적응을 위한 목적이나 국가예산으로 활용된다. 국민에게도 배분하도록 한다.

연말 결산과 정세보고: 이사회는 감독조사위원회에 연말 결산과 정세보고서를 제출한다.

신탁관리-주식회사 : 신탁관리청은 즉시 신탁관리-주식회사를 설립 한다.

신탁관리 주식회사의 역할: 신탁관리-주식회사는 자문기업에 조언을 구하고 사유화를 진행하며, 경쟁력을 확보 하고, 기업을 폐쇄한다.

경제단위의 합자회사로의 전환:

- 국가소유의 콤비나트는 1990년 7월 1일까지 주식회사, 콤비나트 기업, 합자회사/ 유한 책임 주식회사로 전환한다.
- 신탁관리청은 유한 책임 주식회사의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한다.
- 합자회사들은 상업등기부에 등재하도록 한다.
- 합자회사들은 1990년 10월 31일까지 신탁관리청에 조합계약/정관, 전환일 기준 종결 대차 대조표와 개시 대차 대조표, 모든 권한 및 의무에 대한 입안, 채권과 채무, 설립보고 및 정세보고, 토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료 2

고용창출조치의 조직적인 준비 및 실행을 위한 제안

1992. 1, 베를린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 고용창출조치(ABM)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것으로 일자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창출되지 않거나, 나중에야 창출 가능하며 재정지원이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 질 경우 보조금 또는 대부 지원을 통해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 신탁관리청은 조직적 준비와 현장에서의 고용창출조치 실행(조치의 틀 안에서 그리고 담당자의 권한 내에서)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는 각각의 담당자의 과제이다.
 - 최소한의 요구사항
 - 1) 고용창출조치의 구분: 제1기 구조적 준비와 제2기 실행
 - 2) 구조적 준비과정에서의 과제: 고용창출조치 제안, 고용창출조치-지원계획과 고용창출조치-계획
 - 3) 실행과정에서의 과제: 고용창출조치-감시, 고용창출조치-자금지출보고서, 고용창출조치-기록

출처 : 신탁관리청

자료 3

호텔 및 휴양시설의 사유화

1993년 11월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1990년에는 생산시설 외에도 수많은 호텔과 요식 및 숙박업관련 시설들이 신탁관리청의 재산이 되거나 신탁관리 대상으로 넘어갔다. 신탁관리청에 부여된 과제에 의하면 이 시설들도 생산력 있는 민간경제 구조로 전환시켜야 했다.

- 관광산업: 중간규모의 경제구조를 활성화시키기에 적합함.
- 신탁관리청이 사유화 대상으로 삼은 시설현황
 - 외국인을 위한 국제호텔 : 35채
 - 관광호텔 : 35채
 - 과거 국영기업(HO) 소속의 호텔
 - 노조의 휴가서비스 공용시설(FEDI-시설)
 - 회사소유 리조트
 - 특별자산으로서 휴가 및 휴양시설
- 숙박 및 관광산업부문을 사유화 할 경우 최소한 10억 DM의 총수입이 기대됨. 특히 산업기반시설이 약한 지역들(예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주나 튀링엔(Thüringen) 숲 지역)의 경우 이를 통한 수입증가로 지역 경제력이 강화될 것임.

출처 : 신탁관리청

자료 4

지방자치화(Kommunalisierung)는 시,
기초지자체(Gemeinde, 읍, 면, 동에 해당)
그리고 크라이스(Kreis, 군에 해당)에 실행능력을 부여함,

1994년 5월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국유재산의 공유화는 사유화 외에 신탁관리청에 부여된 주요과제이다.

- 지역별 자치행정의 복구는 이미 통일 직전 인민회의가 신탁관리법과 행정자치구역 자산법(Kommunalvermögensgesetz)을 통해 달성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이다.
- 통일 후에는 1991년 3월 21일 제정된 국유재산귀속법(이하 VZOG)이 공유화를 위한 법적 근간이 되었다.
- VZOG의 관할권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상임재무부의 부장들은 이미 예전에(구동독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였던 대상(학교, 도로, 광장, 시청 등)의 귀속을 관할한다. 또 다른 관할권은 신탁관리청의 총재가 국영기업(VEB), 국유지(VEG)와 농업 생산 협동 조합(LPG) 등의 소유였던 재산상의 귀속을 담당한다.
- VZOG의 집행을 위해, 신탁관리청은 공유재산을 위한 내부 이사회를 설립했으며, 이는 상환자산 및 행정자산과 재무행정의 지역 귀속을 관장한다.
- 업무추진과정에서 이사회는 공유재산, 예를 들자면 구 Interflug GmbH와 체육 및 기술 협회(GST)의 비행장을 경기용 비행기 비행장으로 그리고 과거 소년단원들을 위한 청소년 야영장들을 어린이 놀이 센터로 지역에 환원했다. 이사회는 나아가 지역 사회가 요구한 대상을 기업에서 분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든 사유화 과정의 뒤에

자료 4

서 참여하고 있었다.

- 공유재산 이사회가 연방주에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별 자체부서와 특별담당(식수 및 하수처리장, 쓰레기집하장, 경기용 비행기 비행장 등)을 통해서이다.
- 공유화 과정에서 지역단체는 계속해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려야한다. 예를 들자면 과거의 식수 및 하수처리장의 개선이나 대중여객수송(ÖPNV)의 구조 개편 등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3년 이상의 활동기간 동안 공유재산 이사회는 거의 50,000건을 처리했다. 이는 신탁관리청에서 처리해야하는 케이스의 4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신탁관리청에 제출되는 청구규모와 처리상황은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에 도식화하여 수록했다.

자료 5

사회복지계획을 위한 기본원칙

1991년 6월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신탁관리청은 1991년 4월 13일 독일노조, 독일 사무직근로자 노동조합과 공동 성명서에 서명하였다.

- 성명서를 작성한 이유: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고 많은 기업의 안정화를 위해
- 독립 재정으로 운영되는 사회지원계획을 위한 주요사항
 - 사회지원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관리청의 목적 기부금을 부담하지 않고자 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사회지원계획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협상할 수 있다.
 - 회사법상의 제한적 동의는 사회지원계획이 공동 성명서에서 명시한 규정에 상응한다고 판단될 경우 신탁관리청이 승인한다.
- 목적기부금 신청

출처 : 신탁관리청

자료 6

1954 협정(AO 54)에 근거한
추가연금 관련 기본원칙

1993년 5월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 모든 경영진과 감사기관에 서신을 보냄. 이는 주요 국유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및 근로자의 추가연금을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것으로 1954년 3월 협정에 따름.
- 지금까지 AO 54에 근거하여 연금지급 의무가 있었던 기업들은 법적여건과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협정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고, 연금지급을 중단했다. 이는 그 대상자인 근로자 즉, 연금수혜자의 상황별로 상이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신탁관리청은 철강노조, 화학노조와 광산 및 에너지 노조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신탁관리청은 기업들이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목적기부금 형태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 목적기부금 신청

출처 : 신탁관리청

자료 7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업무

1991년 6월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사회적 시장 경제의 직업 정보 표시 도표

- 총재
- 제1사업영역: 중공업/시설설비제조, 공구제작기계제조 및 특수기계
- 제2사업영역: 광학, 그릇 제조, 정밀기계공학 및 자동차
- 제3사업영역: 농업 및 임업, 식료품 및 기호품, 무역회사
- 제4사업영역: 전자기술과 서비스 등
- 제5사업영역: 철/철강 생산, 신탁토지회사 등
- 제6사업영역: 공유재산, 에너지경제 및 섬유 산업 등
- 인적영역: 신탁관리청 직원, 노동시장 및 복지 관련 등
- 금융: 금융계획/경제계획, 기업 자금지원 및 회계업무 등

출처 : 신탁관리청

자료 8

신탁관리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안내서

1992년 9월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안내서는 3부분으로 구성됨:

- 과정안내
- 조사표(4종류의 서식)
- 투자계획 지원을 위한 점검표

조사표는 다음의 4가지 서식으로 구성됨:

- I. 기업 상황
- II. 자금 조달
- III. 투자프로그램 개관
- IV. 투자계획

본 안내서는 첨부문서들의 작성을 돕고 신탁관리청을 통한 투자계획의 지원가능성 여부를 가능한 통일된 방법으로 산출하기 위함이다.

신탁관리청의 관련 부문을 통한 투자계획의 신속한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계획이 가능한 통일된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출처 : 신탁관리청

자료 9

기업의 민영화, 경제성과에 대한 책임은
다시 적극적 소유주의 손에

1993년 9월

담당자/기관 : 신탁관리청

내용

- I. 잘못된 이념적 결정을 대신하는 새로운 시작
- II. 반환, “있는 그대로”
- III. 재산법은 성과를 높임
- IV. 연방주관청과 신탁관리청의 업무분담
- V. 실용적인 재사유화
- VI. 대안은?
- VII. 현장보고

1972년 2월 9일 구동독 내각평의회 결정에 따라, 모든 산업시설과 건설기업들 및 산업적 생산을 하는 수공업부문의 생산 협동조합은 국가재산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구동독의 중산층은 몰락했다.

정치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이러한 이념에 의한 국유화는 잘못된 결정이었다. 구동독의 개혁도 1989년 가을, 1972년 진행된 국유화를 취소하고 이를 반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시정의 가장 큰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모드로 정권이 1990년 3월 7일 통과시킨 기업법은 재사유화의 첫 물꼬를 텃었다. 1990년 9월 말까지 3,000여 개의 기업반환조치가 이어졌다.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과 함께 새로운 재산법도 효력을 발하게 되었다. 이로써 기업반환은 새로운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게 되었다.

자료 9

통일조약과 함께 효력을 발한 재산법은 기업반환과 관련하여 모르도프 정권의 법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1933년부터 1945년 사이와 1949년 이후 불법적으로 몰수된 기업에 해당함
- 기업 전반(모든 차변자산, 부채 및 계약 등)을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함.
- 기업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이를 상쇄하는 배상을 하며, 회생 가능한 기업의 경우 악화된 수익상황에 대한 배상을 한다.

재산법은 법적으로 과거의 기업법보다 부당한 몰수에 대한 배상 수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었다. 재산법은 1990년 3월 7일 제정 이후 회사를 돌려받은 수혜자들이 반환조치에 대해 재산법에 의거하여 조사 및 적응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미해결 재산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한 주정부 관청과 신탁관리청간의 업무분담:

- 주정부 관청은 법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기업반환요구의 정당성에 대해 결정할 의무가 있다.
- 신탁관리청은 반환 청구권자와 반환에 대한 합의된 규정의 협의를 담당한다.
- 주정부 관청은 도출한 협의에 대한 승인을 하며, 이 승인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는 상업등기와 토지등기부에 등재되기 위한 법적근거를 형성한다.
- 주정부 관청은 기본적으로 합의적 조정의 틀에서 일반적으로 조정 가능함에도 합의적 조정을 도출하지 못했을 경우의 모든 문제를 담당한다.
- 신탁관리청은 이러한 주정부관청의 결정에 대해, 신탁관리청의 기준에 따라 법적상황에 위배된다고 여길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신탁관리청은 상환대상 기업의 구매희망자가, 생산력 있는 기업구상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우선과정을 도입 및 실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기업 상환 인수자가 구매희망자와 동일한 가치의 사업구장과 비슷한 규모의 높은 투자 조치에 동의한다면 기업 상환 수혜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출처 : 신탁관리청

자료 10

신탁-토지의 관리 및 평가

1992. 8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 I. 토지의 매각을 위한 최소기준
- II. 신탁토지회사(TLG-규정)를 통한 신탁-토지 관리 및 평가 기구

“토지 매각을 위한 최소기준”과 “신탁토지회사를 통한 신탁-토지 관리 및 평가”라는 규정을 통해 신탁관리청 이사회는 기업사유화가 끝나가는 징후가 보임에도, 토지 개발 규모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판단을 했다.

실질적인 담당 부문과 그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이 규정이 바로 구속력 있는 원칙이자 작업 지침서이다.

최소기준은 1992년 6월 9일 제정된 신탁토지회사(이하 TLG)규정의 보완조치이며 기본적으로 모든 신탁-토지 개발과정이 통일성 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1991년 9월 10일의 신탁관리청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TLG-규정이 통과되었다. 이는 기관의 신탁-토지의 개발 및 관리를 통제한다.

이 개정판은 신탁관리회사-규정의 규범가치에 국한되며 현재 필수적인 적응과 변화에 대해 고려했다.

출처 : 신탁관리청

자료 11

신연방주의 과거 인민재산 민영화에 관한 질문과 답변

1991년 6월

담당자/기관 : 신탁관리청

내용

- I. 사유화에 관한 질문과 답변
- II. 지원금
- III. 지원금의 근거 및 담당자

신탁관리청의 목표는 국가계획경제를 가능한 빨리 청산하고 사업적으로 적극적인 새 소유주를 찾는 것이다.

신탁관리청의 임무는 특히, 사유화, 회생 또는 폐쇄를 통해 과거 국유기업들과 시설들이 신연방주의 산업, 중소기업, 서비스업과 상점들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경제구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신탁관리청은 정부, 주정부, 지역 및 행정구역과 긴밀히 협력하거나 대외 무역부, 대사관 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나 수공업자회의소 같은 경제 관련 협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이 과제를 수행했다.

임무수행을 위해 신탁관리청은 본부의 기업그룹 외에도 15개 사무소에서 상점사유화회사(GPH) 같은 자매기관을 설립했다. 1991년 3월 가장 마지막으로 신탁토지회사가 설립되었고, 그들의 과제는 신탁관리 부동산을 투자자들에게 선보이는 것이었다.

“신연방주의 과거 국유재산 사유화에 관한 Q & A”를 통해 신탁관리청은 구매희망자들에게 사유화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주고자 했다.

출처 : 신탁관리청

자료 12

재산가치의 시,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로의
이전에 관한 질문과 답변

1991년 6월

담당자/기관 : 신탁관리청

내용

- I. 신탁관리청과 공유재산 또는 토지와 관계는?
- II. 신탁관리청 관리하의 재산과 정부의 신탁재산 중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 III. 1991년 3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어떤 완화조치가 내려졌는가?
- IV. 과거의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 V. 신탁관리청의 결정 범위
- VI. 용수관리와 에너지 공급

공유화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

- 이 질문들은 신탁관리청이 법인의 입장에서 했던 수많은 질문들의 일람표에 근거한 것이다.
- 답변을 위해서는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과 공유재산 이전을 위한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형태를 선택했다. 그러한 이유로 텍스트에 관련 법조항이나 규정의 숫자를 괄호에 넣어 표기했다.

출처 : 신탁관리청

약어 표기법

- THA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
- TLG 신탁토지회사(Treuhand Liegenschaftsgesellschaft mbH)
- GPH 상점사유화회사(Gesellschaft zur Privatisierung des Handels)

자료 13

중소기업을 위한 신탁관리청의 이니셔티브

1994년 9월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중소기업 신탁관리-이니셔티브를 통해 과거 소유주와 구동독 정부가 몰수되었던 기업의 재사유화 및 경영자 매수(MBO)나 기업경영권 매입(MBI)의 방법을 통해 새 기업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소기업 자본 출자자가 기업 또는 기업 부문을 매입하도록 촉구하여, 중앙통제의 계획경제에서 사회 시장경제로의 구조전환 과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출처 : 신탁관리청, 1994년 9월

자료 14

1991년 초까지의 기업정책의 원칙 및 기본방침

1990년 10월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기본방침은 부동산을 신탁관리청의 사유화 주식회사에 매각하기 위한 조치들을 보여준다. 이 조치들은 기업의 사유화를 위해 적용되는 모든 조치들을 보완한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조항은 재산관련 미해결 문제에 관한 법령 제3조 5항이며, 신탁관리청은 이 조항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확인하여, 예전 소유주가 소유권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

출처 : 1990-1994 기록문서

자료 15

1991년 초까지 기업정책의 원칙 및 기본방침에 관한 설문지

1990년 10월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기업의 경영학적 특징에 대한 설문지

출처 : 1990-1994 기록문서

자료 16

단호한 희생-신연방주의 구조전환 과정에서
신탁관리청의 역할
(내부 자료)

1990년 11월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사유화는 가장 최선의 희생이다”라는 기본 방침이 적용된다. 10,000여개 이상의 국유기업들이 4개월 안에 주식회사나 유한책임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1991년에는 280억 DM의 보증대출금을 준비했다(이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260억 DM이다). 기업희생의 틀 안에서 기업구상, 기업구조전환구상 및 자금조달 계획을 평가한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구부채(1,000억 DM 이상임)와 사회적 부담이다. 1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보존되었다.

출처 : 신탁관리청, 1992년 5월

자료 17

각 지역사무소를 위한 임시 기구 안내서

1990년 10월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Die Deutsche Warentreuhand 주식회사는 1990년 10월 4일 전 지사의 재고조사를 실시했다. 더불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각 사무소에 부여했던 전권을 즉시 박탈했다. 이는 담당 기업의 사유화와 회생을 최고의 지식과 양심에 맞게, 특히 신탁관리법 제1조 항, 제2조 1항과 6항에 의거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탁관리청과 각 지역 사무소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향후 지역 사무소가 신탁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출처

신탁관리청, 사무소의 이사들(Vorstand der Nideralssungen), 1990년 10월 4일, *Vorläufige Organisationsanweisung an alles Niederlassungen*, Berlin

자료 18

신탁관리청의 조직

1991년 1월 16일 현재의 조직. 베를린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신탁관리청은 총재 산하 지역사무소/연방주문제 담당, 인사 및 재정 등과 같은 5개의 사업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각의 사업영역은 분야가 유사한, 즉 동종의 산업부문끼리 (예를 들자면 화학, 목재/지류, 섬유) 통합되어 운영된다. 각각의 사업부문은 사유화, 기업재정지원 및 운영 참여와 같은 맥락에서 사업적 책임을 진다. 또한 수뇌부로부터 기본 방침, 규정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능적 책임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출처

신탁관리청, Christoph Urban. 1991년 1월 16일, *Treuhandanstalt, Organisation vom Stand 16. Januar 1991*, Berlin

자료 19

구동독에서 신탁관리청의 과제, 기능 및 기능방식.

1990년 7월, 뮌헨

담당자/기관

롤란드 베르거(Roland Berger)

내용

국유기업의 사유화 또는 회생 및 사유화 되지 않은 기업에서 나온 국유재산의 개발을 위해 신탁관리는 다양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

1. 다양한 조직 구조의 신탁관리청

- 기능적 구조: 재정, 사유화, 조정, 공공업무, 인사/행정 또는 이사회 부문으로 분할
- 양서원리: 홍보문제, 기본방침 문제/전략부문, 이사회 사무국 및 4~7명의 이사와 총재의 지휘를 받는 재정, 사유화, 조정 부문으로 분류

2. 신탁관리 주식회사의 구조

- 전략 지주회사로서의 기구: 사유화, 개발, 재구조화, 조정, 재정, 인사/행정 이사회로 분류, 각 이사회 대표 1인
- 재정 지주회사로서의 기구: 재정, 사유화/개발 및 참여와 조정 이사회로 분류, 각 이사회 대표 1인

출처

라이너 베르거 & 파트너 주식회사(Rainer Berger & Partner GmbH), 1990년 7월. *Aufgaben, Funktion und Funktionsweise der Trunhandanstalt in der DDR*. München.

자료 20

신탁관리청 관리회사를 기업 운영진에게
매각(MBO)하기 위한 신탁관리청 지침서

1991년 2월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 신탁관리청의 사업정책에 따르면 합자회사를 현 운영진에게 매각하거나(경영자 매수, MBO) 외부 경영자에게 기업을 판매하는(기업 경영권 매입, MBI) 것은 사유화과정에서 바라는 대체방안이다.
- MBO/MBI 과정에서는 기업전체가 아닌 일부, 독립적으로 운영가능한 부서 또는 기업 부문을 전체 기업에서 분리하여 매각 할 수 있다.
- MBO/MBI-매입자와의 협상 시, 이 문서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적정한 기업의 크기, MBO/MBI-계획, 검토 및 기록, 구매가격의 전달 및 자금 조달 및 신탁관리청을 통한 지원 방법 및 형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출처

신탁관리청 1990-1994 기록문서, 2권, 362 ~ 369 페이지

자료 21

1940년 및 그 이전에 출생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한 기본방침

1994년 10월

담당자/기관 : 신탁관리청

내용

- 신탁관리청의 인사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형성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고령 근로자의 특별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신탁관리청은 노조와 함께 고령 근로자들이 사회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은퇴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특별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본 기본방침은 특히, 적용범위, 관할권, 자금마련, 및 기타 보상/목적기부금, 고용관계 취소협약, 과세수입 및 보상금액, 신청서 작성과 같은 다른 새로운 계약서 신청을 하지 않고 신탁관리기업(THU)에서의 제외 등을 다루고 있다.
- 규정에 의하면 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1941년 1월 1일 이전 출생했으며 1974년 7월 1일부터 최소 5년간 일을 중단한 기간 없이, 신탁관리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지속했어야 한다. 더불어 1994년 10월 31일까지 기업과의 고용관계 취소 협약을 체결했어야 한다.
- 이런 조건을 갖춘 근로자는 신탁관리청이 연방주별로 지정한 담당자로부터, 노동강도가 세지 않은 일자리나 지원 자금을 제공받게 된다. 이 경우 제안된 일자리를 수락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근로자가 제안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 담당자는 고용관계 해고통지를 할 권리가 있다.
- 근로자는 신탁기업에서 퇴사한 첫 달에 마지막 3개월간의 평균 순임금의 80%에 해당하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출처 : 신탁관리청

자료 22

기업 자료 조사를 위한 서식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기업 자료 및 사업자 코드 열람을 위한 서식 첨부됨.

출처

신탁관리청 1990-1994 기록문서, 2권, 546 ~ 554 페이지

자료 23

신탁관리청의 서명권과 대표권(USVB)

1994년 7월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아래 첨부된 기본원칙을 통해 신탁관리청의 결정권의 정당성과 대외적 대표권을 규정한다.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 규정된 일반적 및 실질적 거래들의 승인 등과 같은 내적 정당성 행사
- 실질적인 공정성에 대한 검토 및 공인
- 숫자 안내
- 문서교환 시 서명에 관한 규정
- 대표권 행사(대리권)
- 관인의 활용

출처 : 신탁관리청

자료 24

도표화한 신탁관리청의 인가조건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신탁관리청의 사업거래 및 계약 인가(승인)을 위한 필요 동의 규정을 개괄적으로 부여준다.

출처 : 신탁관리청

자료 25

신탁관리청장이 기업구상안 마련을 위해
신탁관리대상 기업들에 보낸 서신

1990년 11월 26일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신탁관리청장이 기업구상안 마련을 위해 1990년 11월 26일 신탁관리대상 기업들에 보낸 서신

출처 : 신탁관리청

자료 26

토지와 건물(부동산)을 신탁관리청의
민영화 수행 유한책임회사에 매각하기
위한 기본방침

1990년 11월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이 기본방침은 기업 사유화를 위한 방침을 보완한다. 관리자들은 신탁관리청의 합자회사들이 사유화 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특별재산 중 부동산의 사유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문에는 기존의 특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출처 : 신탁관리청

자료 27

기업 민영화를 위한 기본방침

1990년 11월

담당자/기관

신탁관리청

내용

이 기본방침은 기업 사유화를 위한 규정들을 구체화하여 보여준다. 본 기본방침에서는 사유화와 비사유화가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각 사무소와 베를린 신탁관리청 본부의 관할권이 구분된다. 여기에는 구매자를 찾는 법과 입찰절차에 관한 세부사항들과 이미 진행된 매각절차에 관한 세부사항들이 설명되어 있다. 본 기본방침은 사유화 과정을 담당하는 행정부처를 위한 세분화된 작업지침서이다.

출처 : 신탁관리청

동 책자에 실린 내용은 통일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독일 통일 20년 계기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1.7 언론통합

통일로 인해 변화된 몇 가지 조건

통 일 부

CONTENTS

제 1 부 언론통합 · 585 통일로 인해 변화된 몇 가지 조건 /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1. 과도기 · 586
 2. 미디어 분야에서의 발전 단계 · 588
 3. 동독에서의 미디어수와 통제 방식 · 595
 4. 결론 · 598
 5.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 600
- 약어색인 · 602
 - 참고문헌 · 607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 611

- 자료 1 동독인민회의 미디어법 입법위원회의 결정문(발체) (1990.1.9) · 612
- 자료 2 미디어조정위원회(Medienkontrollrat) (1990.7) · 613
- 자료 3 통일조약 제36조 - 방송 (1990) · 614
- 자료 4 미디어 및 미디어법의 발전 (1945-1996) · 615
- 자료 5 동독 일간지 · 616
- 자료 6 동독 미디어 · 617
- 자료 7 동독 미디어정책 연표(1989-1990) · 618
- 자료 8 “통일”로 인한 동독 미디어의 변화 · 619
- 자료 9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紙와 베를리너 차이퉁(Berliner Zeitung)紙를 통해서 본 장벽 붕괴에서부터 구동독 지역 최초의 주의회 선거에 이르기까지 독일 통일의 해에 있었던 구동독 미디어의 변화 (1992) · 621

- 자료 10 변창하는 나라 대신 메마른 사막: 작센-안할트주에 초점을 맞춰서 본 1989년 이후 동독 신문 부문의 변화 (2005.3) · 622
- 자료 11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언론발전에 관한 보고서 (2000.7.10) · 624
- 자료 12 “2009, 2010 구동독 지역 최대 지역신문” (2009-2010) · 626
- 자료 13 1989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 신문 (1989) · 627
- 자료 14 베를리너 차이통紙 편집장들과의 인터뷰 기록 (2010.8.5) · 629
- 자료 15 노이에스 도이칠란트紙 편집규약안 (1990.6.13) · 631
- 자료 16 노이에스 도이칠란트紙의 우베 칼베(Uwe Kalbe)와 라인하르트 프리케(Reinhard Fricke)와의 인터뷰 기록 (2010.8.5) · 632
- 자료 17 노이에스 도이칠란트紙 구독자의 정당선호도 (%) (1991-2002) · 633
- 자료 18 디터 바이리히(Dieter Weirich, 1989-2001 도이체 벨레 방송국 사장) 교수와의 인터뷰 기록 (2010.06.14) · 635
- 자료 19 동독 미디어의 변천 관련 문서 (1989-1990) · 638

제 **1** 부

언론통합

통일로 인해 변화된 몇 가지 조건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 | |
|------------------------------------|-----|
| 1. 과도기 | 586 |
| 2. 미디어 분야에서의 발전 단계 | 588 |
| 3. 동독에서의 미디어수와 통제 방식 | 595 |
| 4. 결론 | 598 |
| 5.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 600 |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어떤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국가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1989년 11월 2일자 오스트제-차이퉁紙 독자편지에서 발췌)

독일의 상황은 한국과는 전혀 달랐다. 1950년대부터 서베를린에 소재하던 RIAS 방송국(미국 점령지역 방송국)은 호프(바이에른 북부)에 위치한 강력한 방송 출력시설을 통해 동독 남부에 방송을 내보냈다. 동독은 수십 년 동안 서독의 방송 수신을 방해하고, 서독 TV 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나 설치에 반대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수신을 중단시키려 노력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동독 인구의 80%는 정기적으로 서독 미디어를 청취하고 시청했다. 동독 국민들은 동독 상황에 관한 정보도 서독 미디어를 통해서 입수했다. 동독 지도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맞추어 대응하였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공지 사항은 절대로 “서독 방송”의 주요 뉴스 시간에는 발표하지 않았다.

1. 과도기

동독의 과도기 및 변혁기(1989-1990)에는 다른 문제영역들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부문 또한 적어도 7개의 상이한 단계를 거쳐야 했다.

1.1. 미결정 상태

지도부 가운데 나이든 이들은 현실감 상실로 인해 개혁에 대해 논의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련의 노동조합신문 “트루드”紙는 1989년 10월 22일자 신문에 동독 지도부는 동독의 현실을 보여줄 “창도 문도 없는 장벽”을 구축했다고 적었다. 지도부 가운데에서도 주요 지도층은 상황을 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지만, 인적·본질적 결정을 내리기를 망설였다. 다른 이들은 단순히 시간을 벌려 했으며 전술적 기획만 짜느라 바빴다. 젊고 보다 능력 있는 간부들은 동독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및 동구권 국가들(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고려하며 개혁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를 위한 계획도 고안했다.

1.2. 미비한 개혁준비

인적, 내용적 변화가 일어났다. 불안감을 느낀 지도층은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과 과잉 반응을 보였고 이는 종종 역효과를 낳았다.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단체, 시민운동, 정치단체 등이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이들은 결코 체제의 틀을 깨려 하지는 않았다. 계산 상 조심스럽게 기다려보기 위해 그러는 이들이 있었던 반면, 어떤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처럼 행동했다. 후자의 경우, 개혁과 민주화를 이루되 사회주의 동독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3. 가속화

역동성은 높아지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바람은 절실해지고 상황은 점점 빠른 속도로 변해갔다. 다수의 생각, 제안, 계획 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널리 퍼졌으며 그러면서 점점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1.4. 장기적 효과가 없었던 개혁

1990년 초부터 늦은 여름까지 몇몇 제안들이 현실화되었으며 다수의 개혁을 이행하게 되었다.

1.5. 목표로서의 통일

1990년 여름(화폐통합, 이주현상의 지속)부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을 이루는 일이 가능하며 그것도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며, 상황이 거의 매일 매일 변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근본적인 논의를 하거나 신중하게 계획을 세울 시간이 부족했고, 모든 조치는 대개 새로운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반응일 뿐이었다.

1.6. 양 체제의 종합 대신 서독 체제의 시스템 이전

과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었다. 이를테면 새로운 헌법을 통해서 개혁된 동독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부문과 서독에서 이미 가치가 입증된 부문을 종합하여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호간의 체제 조정 대신에 체제 이전이 이루어졌다. 동독이 서독에 편입하게 된 것이다.

1.7. 실망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변화에 대해 압박을 느끼며 때로는 기뻐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비로서 놓쳐버린 기회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는 실망과 좌절을 가져왔다. 실망을 자아내고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요인으로서는 사람들의 비교 척도를 꼽을 수 있다. 구 동독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이룰테면 폴란드 국민들과 비교하는 대신에 서독 국민들과 비교함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것이다.

2. 미디어 분야에서의 발전 단계

당시 사건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보다 세밀하게 단계를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본고에 언급한 단계에 주요 단계는 모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자료 7). 미디어에 대한 통제가 부분적으로 없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동독 미디어에 대한 SED(사회주의통일당)¹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이미 1989년 9월부터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당에 의한 검열 또는 자체검열이 상시 시행되었다. SED의 당기관지였던 “노이에스도이칠란트”紙에 실릴 기사는 대개 15명의 감수를 거친 후 원작성자의 이름으로 나갔다.

1989년 10월 동독 기자협회는 시대에 뒤쳐진 사고방식과 업무방식을 신속히 극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야만 사회주의를 부흥시키고 동독이라는 “공동의 집”을 지켜내는 일을

1 역주: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이하 사통당으로 표기: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소련이 독일의 소련군 점령 지구 내 독일 사회민주당과 독일 공산당을 강제로 통합하여 동베를린에서 1946년에 창설된 정당으로, 1989까지 존재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민주사회당(이하 민사당으로 표기: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PDS)로 개편되었다가, ‘슈뢰더의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며 독일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으로 표기)을 탈당한 오스카 라퐁텐 등과 함께 연합해 공산주의 계열의 좌파당으로 통합되었다.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모든 작업들은 다음의 사안들을 위한 경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시사성
- 높은 정보가치
- 솔직한 정보
- 이해성
- 입증된 사실 내용
- 언어 능력
- 문체의 다양성

정부 대변인직이 신설되고 새로운 당지도부(크렌츠², 샤보브스키³) 또한 변화에 찬성했다. 이 단계에서는 개혁과 공유성(“모두의 업무는”... “공동의 집인 동독”)에 대한 호소가 중심을 이루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주어진 체제의 틀 내에서의 개혁이었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혼란스런 감정의 단계는 곧 조심스러운 구체화의 단계로 이어졌다. 1989년 11월 초 기민당 기자들은 미디어법 초안(자료 19, p. 124f)을 제시했으며, 동독 언론의 자유를 위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시했다.

-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원에 대한 접근 허용
- 여론의 다원주의 촉진
- 기자들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
- 의견다양성을 위한 정부로부터의 물질적, 재정적 전제조건

2 역주: 에곤 크렌츠(Egon Krenz, 1937년 3월 19일 ~) 1989년 10월 18일 에리히 호네커가 실각한 뒤 사통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되었다. 취임연설에서 전환(Wende)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곧 그가 사용한 의도를 넘어 사통당 지배의 붕괴와 평화혁명을 지칭하는 시대적 개념으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는 변화의 압력에 밀려 1989년 12월 3일 사통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들 모두와 함께 퇴진하였고 12월 6일에는 Staatsrat(북한의 비서국과 같은 당의 최고위 의사결정기관)의 의장직도 내놓았다.

3 역주: 귄터 샤보브스키(Günter Schabowski, 1929년 1월 4일~) 사통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으로서 언론담당이었다.

- 독자의 관심에 부응하는 발행부수 보장

다음 단계는 여러 가지 제안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일이었다. 이는 **내용** 뿐만 아니라 **조직적 변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1989년 12월에는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학을 위한 독립적인 학술협회의 구성이 촉구되었다(자료 19, p. 131f). 같은 달 말에는 여러 직업 연맹의 공동 제안으로 “자유” 개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다.

-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합치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정보를 얻을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예술과 학문의 자유, 미디어의 자유.
- 미디어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의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 미디어는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자료 19, p. 133f)

상기 제안은 1989년 12월에 발표된 “민주혁신당”(Demokratischer Aufbruch)의 “라이프치히 강령(Leipziger Programm)”⁴⁾의 한 구절과 흡사하다. 이 프로그램에는 미디어와 관련해서 “공공을 위하여, 검열에 반대하고,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추구한다”라고 적혀 있다.

앞서 언급한 **가속화** 단계는 모든 부문으로 퍼져나갔다. 이는 **정보량의 증가**를 가져왔고 정보량 증가는 계획이나 제안에 영향을 미쳤다. 즉, 지식의 증가로 인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1990년 1월 중순 동독의 우편통신부는 조만간 서독의 신문 및 잡지가 이용가능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원탁회의(Runde Tisch)”⁵⁾는 국영 ADN 통신사에 대한 사통당의 통제를 저지했다. 하지만 보다 자유로워진 방송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의 정치노선에 충실한 기자들이 미디어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한동안 사통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자 1990년 1월 드레스덴-미테(중앙) 지역 교구의 신부 46명이 공개 항의서를 통해 사통당/

4 역주: 1989년 12월 17일 창립된 민주혁신당(Demokratischer Aufbruch)의 강령

5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의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결성된 정당과 단체들은 정치권력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정권을 통제하게 되었다. 이 ‘원탁회의’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동독의 새로운 정치체도의 수립을 논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동독의 정치권력은 정부와 ‘원탁회의’의 이원체제로 변화되었다.

민사당 당원들을 매스미디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원들이 미디어를 일방적인 선거전에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시민운동에 있어서 서독 미디어는 매우 중시되었다.

귄터 샤보브스키(Günter Schabowski)는 한 인터뷰에서 개혁에 대한 요구 증가, 권력 유지를 위한 공개적, 비공개적 노력 등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한 바가 있다. “우리가 물러난 후 모드로(Modrow)⁷ 측근들은 그 자리에 남아 3월 선거 때까지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국가안전부(Stasi)와 연계되었던 인물들로 연정을 구성할 생각이었다[...]. 이들 후진적인 세력들은 미디어 정책에 있어서 당에 충성하는 인물들을 교묘하게 배치함으로써 당의 지도권 포기에 의한 상실을 만회하려 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다원화된 동독에 사회주의 사상을 수호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암암리에 연계된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3월 선거 결과로 인해 실패했다. 어쩌면 이들이 계획했던 네트워크의 일부는 그 후에도 존재했을 수도 있다.”⁸

가속화는 더 이상 단순히 시간적 요인에 그치지 않았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으로 퍼져 보다 광범위해졌다. 인쇄미디어 부문의 변화는 라디오와 TV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0년 1월 12일 “라디오프로그램에서의 기회 균등”이라는 주제로 약 20명의 다양한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원탁회의”가 열렸으며, 1990년 1월 말(25,26일)에는 동독기자협회 임시회의가 열렸다.기자협회 대의원들은 약 9,100명의 회원들을 대표했다. 회의 성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법과 인도주의적 이상을 토대로 여론, 진실, 양심에 대해서만 의무를 갖는다. 우리는 우리의 업무를 통해서 정치 논쟁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사회에서의 민주적 의사표현 및 의사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는 1989년 가을까지 동독의 모든 미디어들을 지배했던 모든 형태의 간섭과 진실의 왜곡 및 침묵을 거부한다.” (자료 19, p. 149)

6 독일 민주사회당

7 한스 모드로(Hans Modrow, 1928년 1월 27일~), 독일의 정치가, 1989년 11월 13일 동독 총리로 취임

8 Holzweißig, Gunter, (2008): Wandel der DDR-Medien durch die “Wende.” (“통일”로 인한 동독 미디어의 변화) In: Casper-Hehne, Hiltraud/Schweiger, Irmy, Hrsg.: Deutschland und die “Wende” in Literatur, Sprache und Medien. Interkulturelle und kulturkontrastive Perspektiven, Göttingen: Univerersitätsverlag, S. 151f.

당시 동독의 분위기로서는 상기 구절이 나온 것은 당연했다. 그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따른 것이다.

- 통제 및 억압 장치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했다.
- 논의 내용이 체제 안에서의 개혁안과 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안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그동안 자주 시도했던 것처럼 금지된 것의 경계를 찾고 이를 시험하려 들지 않았다. 이를 초월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이제는 필요하고 가능한 것의 경계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것의 경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 자발성과 자기책임이 크게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 분위기는 아래와 같은 중요하고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특히,

-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실험을 하도록 자극한다.
- 자기해방과 자기확인의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 간섭에 민감해지게 만든다.

상기 구절에는 이미 “간섭”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외부에 의해) 비판을 받으며 자기해방에 의해 극복된 사통당의 간섭은 곧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적용되어갈 서독 미디어 기업들의 지배와는 다른 성격이었다. 하지만 심리적 효과는 비슷하다. 자기해방이라는 용감한 행위 다음에는 대개 외부인들이 이익을 취하는 경제 부문에서의 외부에 의한 결정이 이어진다. 개별 경우가 모두 상이할 것이고, 이로 인한 정치적 상황은 많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이러한 측면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장기적 효과가 없었던 개혁” 단계에는 이미 그 시행이 이미 예상되었던 바 였거나 아니면 이미 확정된 것이어서 그 성격상 단지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던 변동사항들이 해당된다.

- 에곤 크렌츠(Egon Krenz)는 새로운 미디어법을 예고했지만, 이는 지연되었다(자료 4). “원탁회의”의 태스크포스 “미디어”의 야당 위원들은 1990년 2월 5일 “의사표현, 정보 및 미디어 자유의 보장”에 관한 인민회의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이루는데 성공했다. 이 결정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고 검열이 금지되었다. 1990년 2월 13일에는 정당 대표와 미디어단체 대표 그리고 민주적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미디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자료 2).
- 많은 사람들은 개혁의 임시적 성격을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이미 이러한 변화들이 초래할 결과까지도 예측했을 수도 있다. 미디어조정위원회는 1990년 3월 말 “선 안정과 재조직, 그리고 이원시스템“ (서독에서 실행하고있는 것과 같은)으로 넘어갈 것을 제안했다. 조정위원회의 마지막회의는 1990년 9월 19일에 열렸다.
- 1990년 3월, 동독의 라디오방송은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강조하는 새로운 규정을 갖게 되었고, 비슷한 규정들이 TV에도 적용되었다. 그밖에 다른 변화들도 주목을 끈다. “동독 TV(Fernsehen der DDR)”가 “독일 TV 방송(Deutscher Fernsehfunk)”으로 바뀌는 등 명칭을 바꿈으로써 “단기 개혁” 단계에서 “목표는 통일” 단계로 넘어가는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는 “동독의 소리(Stimme der DDR)”에서도 비슷했다. “동독의 소리”는 1990년 2월부터 1926년부터 1971년까지 불리웠던 것처럼 “독일방송(Deutschlandsender)”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다.(1990년 5월부터는 “문화 독일방송(Deutschlandsender Kultur)”, 1994년부터는 “베를린 독일라디오(DeutschlandRadio Berlin)”, 2005년부터는 “문화 독일방송(Deutschlandsender Kultur)”이라 불림). 신문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꿨다.

시스템의 변화는 1990년 여름에서야 확실시되었고 실망의 단계는 그 후에 나타났지만, 아래와 같은 부정적 결과는 이미 예측할 수 있거나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 경쟁의 압박이 빠르게 증가했고, 동독 신문들은 엄청난 재정문제를 겪었다. 이들의 발행부수는 일부 급격히 감소했다 (표1 참조). 동독 체신국에 따르면 1990년 2-3월에 인쇄미디어는 약 360만 명의 구독자를 잃었다고 한다. 1990년 7월에는 군사잡지

표 1 | 인쇄미디어의 발행부수 및 구독취소율 (1990년 8/9월)

| 신문명 | 구독수 | 구독취소 |
|-------------------------------|---------|------|
| 베를리너 차이퉁(Berliner Zeitung) | 333,500 | |
| 융게 벨트(Junge Welt) | 283,700 | -85% |
|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 | 234,600 | -80% |
| 슈포르트예코(Sportecho) | 83,500 | -68% |
| 란트블라트(Landblatt) | 52,600 | -66% |
| 모르겐(Morgen) | 51,800 | -23% |

“아르메룬트샤우(Armeerundschau)”가 발행을 중단했다.

- 1990년 3월부터는 서독 신문사들이 자체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했다. 4월에는 동독의 신문사들의 유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서독 신문사들이 기존 법 규정을 위반하며 자체적인 유통시스템을 동독에 구축한다고 불만이 제기되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말 가운데 “우리는 식민화되고 있다.”는 말로 최고조에 달한 이들의 불만을 엿볼 수 있다.
- 1990년 3월 30일에는 미디어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중단되면서 곧바로 재정문제가 발생했다.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게 된 서독 미디어의 경쟁 또한 동독 신문사들에게 있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였다. 블록정당⁹의 신문들은 살아남지 못했다. 신탁관리청¹⁰은 1991년 5월 중순에 이미 모든 사통당 지역신문사를 서독의 대형신문사에 매각했다. 신문사 간의 과격한 퇴출 및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신문 및 신문사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자료 9).

구독수 부문에서는 이와 같은 과도기에서 전통적인 지역신문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프라이에 프레세(Freie Presse, 켐니츠 지역)

603,200 부

9 역주: 사회주의 국가에서 집권 공산당과 함께 집권 블록에 속하는 정당

10 역주: 1990년 7월 1일 동독 내 콤비나트의 분할 및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 | |
|--|-----------|
| 미텔도이체 차이퉁(Mitteldeutsche Zeitung, 중부 독일) | 528,000 부 |
| 작시쾨 차이퉁(Sächsische Zeitung, 작센지역) | 523,000 부 |

3. 동독에서의 미디어수와 통제 방식

앞서 1989-1990년의 상황 전개과정은 살펴봤고, 이제는 과도기 이전의 동독 미디어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디어(인쇄미디어, 라디오, TV)는 동독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통제되었다. 사통당이 주제를 선정했고, 국영통신사인 ADN이 외신을 독점했다. 당기관지였던 “노이에스 도이 칠란트(Neues Deutschland)” 紙¹¹는 중앙위원회(Zentralkomitee)¹²의 서기장 산하에 있었으며, 지역신문들도 중앙위원회와 SED의 관할 지역지도부 산하에 있었다. 미디어부문의 교육 방식 또한 당의 노선이 준수되는 것을 보장해주었다. 기자들의 3분의 2가 “붉은 수도원(Rotes Kloster)”이라는 별명을 가진 라이프치히 칼 마르크스 대학(Karl-Marx-Universität Leipzig)¹³에서 언론학을 공부했다.(자료 8).

표 2 | 동독의 신문, 공고문, 잡지 (1988년 기준)

| | |
|----------|-------|
| 전체 언론출판물 | 1,812 |
| 일간지 | 39 |
| 사통당의 사보 | 667 |
| 잡지 | 508 |
| 중앙 소식지 | 176 |
| 지역 소식지 | 354 |
| 지역신문 | 4 |
| 주간지 및 잡지 | 34 |

11 역주: 구동독 내 최대 일간지

12 역주: 사통당의 최고결정기구

내용적 감시 외에도 당은 종이 공급의 통제를 통한 또 다른 조정도구를 가지고 있었다. 39개 일간지의 발행부수는 970만 부였으며, 이는 국가 지원을 통해 구매자와 구독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었다. 이들 39개 일간지 가운데 16개가 사통당에 의해 발행되었다. 물론, 블록정당들도 자체 신문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통당 지역신문들이 전체 발행부수의 80%를 차지했다. 압도적인 독점이 아닐 수 없다(자료 13).

인쇄미디어와 마찬가지로 라디오와 TV 역시 국영으로 운영되었으며 사통당의 통제 하에 있었다. 당에 의한 통제와 내용의 규제로 인해 동독의 미디어는 단조로웠으며 소비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동독의 라디오 및 TV방송국의 해체는 통일조약에 규정되어 있었다. 기존의 정치적 통제가 중단된 후 1990년 9월 연방제가 도입되고 이어서 주(州)차원의 지역방송국이 설립되었다.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 일어났다. 1990년 8월 31일에 체결된 통일독일의 방송협약에 관한 통일조약은 이원 방송시스템¹⁴의 틀을 마련했다.

1998년 1월 이래로 독일에는 10개의 주 차원의 공영 방송국(라디오와 TV)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4개 방송국이 구동독 방송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표 3 | 구동독 지역을 포함하는 주방송국 (1998년 1월 이후)

| 방송사 | 주요 방송지역 |
|--------------------|--------------------------------------|
| 북부독일방송(NDR) | 함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
| 중부독일방송(MDR) |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 |
| 동부독일방송 브란덴부르크(ORB) | 브란덴부르크 |
| 자유베를린방송(SFB) | 베를린 |

13 역주: 독일 작센주 라이프치히에 있는 국립 종합대학. 분단 시절 “라이프치히 카를 마르크스 대학”으로 교명이 바뀌었다가 통일 이후 “라이프치히 대학교(Universität Leipzig)”라는 원래의 교명을 되찾았다.

14 역주: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공존하는 이원시스템

표 4 | 서독 신문사에 의해 인수된 신문사들

| 장소 | 신문명 | 발행부수 | 신문사명 |
|--------------------------------|--|---------|---|
| 켄니츠 (Chemnitz) | 프라이에 프레세 (Freie Presse) | 607,000 | Medien Union Ludwigshafen |
| 콧부스 (Cottbus) | 라우지처 룬드샤우 (Lausitzer Raundschau) | 215,000 | Saarbrücker Zeitung |
| 드레스덴(Dresden) | 썬시제 차이퉁 (Sächsische Zeitung) | 527,000 | Rheinische Post/ Westdeutsche Zeitung |
| 에어프르트(Erfurt) | 튀링기제 알게마이네 (Thüringische Allgemeine) | 370,000 | Westdeutsche Allgemeine Zeitung |
| 프랑크푸르트/오데르 (Frankfurt/Oder) | 매рки세 오데르차이퉁 (Märkische Oderzeitung) | 185,000 | Südwest Presse Ulm |
| 게라 (Gera) | 오스트튀링기제 나흐리히텐 (Ostthüringische Nachrichten) | 207,000 | Westdeutsche Allgemeine Zeitung |
| 할레 (Halle) | 미텔도이체 차이퉁 (Mitteldeutsche Zeitung) | 530,000 | DuMont |
| 막데부르크 (Magdeburg) | 폴크스슈티메 (Volksstimme) | 440,000 | Bauer Verlag |
| 노이브란덴부르크 (Neubrandenburg) | 노르트쿠리어 (Nordkurier) | 185,000 | Kieler Nachrichten/ Augusburger Allgemeine/ Schwäbische Zeitung |
| 포츠담 (Potsdam) | 매рки세 알게마이네 (Märkische Allgemeine) | 280,000 | Frankfurter Allgemeine |
| 로슈톡(Rostock) | 오스트제 차이퉁 (Ostsee Zeitung) | 284,000 | Lübecker Nachrichten |
| 슈베린(Schwerin) | 폴크스차이퉁 (Volkszeitung) | 190,000 | Burda GmbH |
| 줄 (Suhl) | 프라이에스 보르트 (Freies Wort) | 160,000 | Cobourger Neue Presse |

4. 결론

통일을 이룬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디어와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 1989-1990년의 과도기는 불안정의 시기였고, 그 이후는 새로운 실험, 희망, 변혁의 시대였는데, 그 즉흥성과 다양성을 감안할 때 흥미로운 미디어의 시대였음이 틀림없다.
- 구독자수의 급격한 감소, 새로운 유통시스템 및 광고로의 전환 그리고 서독 신문사들의 지배는 재정문제, 경쟁의 압박, 실업 등을 초래했다. 물론, 구동독에서 활동했던 기자들이 오늘날의 언론의 자유를 높이 평가하고는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가 초래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해고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1990년 6월 말 동독 임시 방송국장은 1,400명이 해고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동독 방송국은 1990년 후반기에 필요한 예산에서 3,110만 마르크가 부족했던 것이다.
- 1990년대 중반 이후에야 비로소 상황은 안정되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사통당의 옛 지역신문들이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소유주 교체, 내용 및 인적 변화(법적 지위, 경영 및 편집국 인력 교체), 발행부수 감소 등의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신문은 신연방주에서 여전히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동독에서의 시장점유율에 상응하는 기록이었다. 미디어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은 장기적인 성격을 갖는다. 동독이 붕괴된 지가 20년이 지났어도 사람들은 이전과 비슷한 독서 습관과 지역적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역신문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자료 12).
- 서독의 신문과 잡지들은 신연방주에서는 거의 판매수를 기록하지 못한다. 신연방주에서의 판매율은 전체 발행부수의 5%에 불과하다. 이는 가격, 디자인, 문체, 핵심내용 등에 따른 것이다.
- 언론부문에서는 동서간에 큰 차이를 드러내며 대언론사가 지배하고 있다.
- 독일에서 좌파당(과거 PDS)은 유일하게 “신독일(neues Deutschland)”이라는 일간지와 함께 자신들 소유의 신문을 발간하는 유일한 정당이다.

- 라디오와 TV는 잘 적응된 편이지만 점점 더 많이 개별 방송사업자의 경쟁에 노출되고 있으며 (과거 서독에서 그러했듯이),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쟁과도 싸워야 한다.

“사장” 직은 서독출신이 차지한다.

- 라디오건 TV건 어떤 독일의 공공 방송국에서도 동독출신의 사장을 찾을 수 없으며, 그것은 중부독일 방송(MDR)도 마찬가지이다.
- 어떤 전국지의 편집장도 동독출신은 없다. 거의 전적으로 동독에서만 읽히는 신문들 (베를린너 차이퉁, 베를린너 쿠리에레, 수퍼일루 등)도 편집장 자리는 서독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표 5 | 1989-1990년 이래로 동독 지역 미디어의 변화

| 문제영역 | 행위자 | 해결전략 | 결과 |
|-------------|--|--|--|
| 구조조정 민영화 | 신탁관리청 동독 정부 주정부 주방송국 정당 미디어기업 | 매각, 폐쇄, 새로운 언론법, 구조조정 신설 규모 축소 합병 편집국의 인력 교체 | 구독자 감소, 발행부수 감소, 재정문제, 해고, 간섭, 타인에 의한 결정 |
| | | 내용적으로 새롭게 하되 지역적 특색 유지 | 집중화, 서독의 대형신문사 및 이들 인력의 시장 지배 |
| | | 기술의 현대화 (윤전기 ¹⁵ , 통신제도) 새로운 유통시스템 새로운 협력형태 광고제도 구축 광고캠페인 | 다양성 상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고수하려는경향, 즉 지역신문에서 지역적 지배의 유지.서독미디어의 동독 보급이 적었으며 거꾸로도 마찬가지. 높은 비용, 현대화로 인한 해고 증가 기존 직원들은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서독 출신 인력과 고문의 지배 |

15 인쇄기 중에서 판이 원통 모양으로 장착되고, 이 원통형으로 가압해서 피인쇄체에 인쇄하는 방식의 기계

5.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다른 문제 영역들과서와 마찬가지로 미디어와 관련해서도 독일에서의 상황으로부터 한국과의 직접적인 유용성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북한은 미디어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통제 시스템의 국가이다. 중국에서 대부분 밀수되는 라디오를 제외하고는 인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매우 미비하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완전히 딴 세상에서 사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는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원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으며, 자국과 해외에 관한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도부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정치적 결론을 내리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통일 후에는 사진기자나 다른 전문기자들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미디어세계에서 직업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는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부분의 기술 장비에도 해당된다.

과도기에는 공영미디어와 사설미디어 사이에 균형을 찾는 어려운 과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 세계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반응은 현실적으로 추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미디어의 공급 과잉에 대한 경험이 없다.
- 흥미를 유발하는 머리기사에 대한 경험이 없다.
- 남쪽에서 번창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
- 그동안 뉴스 및 뉴스의 신뢰성을 선별할 기준이 거의 없었다.
- 신문, 라디오, TV 등을 구매할 여력이 있을지, 누구에게 있을지 등의 재정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할 것이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미디어 부문에서의 직업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이다.

동독에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미디어는 선전, 정보, 위장정보, 통제의 도구이다. 1990-1991년에는 동독의 미디어 부문(제작 및 유통)은 세심한 배려없이 빠른 속

도로 서독의 신문사로 넘어갔다. 독자적인 개혁 시도와 새로운 실험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 대부분의 신설된 신문들 또한 오래 존속하지 못했다.

북한 인민들의 정보에 대한 욕구와 미디어에 대한 신뢰 또는 불신과 관련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하지만 초기의 호기심이 지나고 나면, 갑작스러운 미디어의 홍수가 부정적 결과와 거부반응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문에서도 심리적 측면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도기단계가 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해방의 감정을 갖게되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심리적 측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 약어색인

| | |
|--------|--|
| ABM | 고용창출조치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
| ADN | 공영독일통신사(동독) (Allgemeiner Deutscher Nachrichtendienst) |
| AGCK | 동독 기독교 교회 협의회 (Arbeitsgemeinschaft christlicher Kirchen) |
| AKE | 협동수사 작업단 (Arbeitsgruppe Koordinierte Ermittlungen) |
| AM | 외무부장관 (Außenminister) |
| Anm | 각주 (Anmerkung) |
| ARD | ARD 독일공영방송 (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ARG | 구채무청산법(Altschuldenregelungsgesetz) |
| Az | 문서번호 (Aktenzeichen) |
| BArch | 연방기록보관소 (Bundesarchiv) |
| BARoV | 연방미해결재산문제조정청(Bu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
| BEK | 동독 개신교회연맹 (Bund der Evangelischen Kirchen) |
| BfA | 연방노동청 (Bundesanstalt für Arbeit) |
| BFD | 자유민주주의동맹 (Bund Freier Demokraten) |
| BK | 연방총리 (Bundeskanzler) |
| BB | 독일연방은행 (Deutsche Bundesbank) |
| BDA | 독일경영자 총연맹 (Bundesvereinigung der Deutschen Arbeitgeberverbände) |
| BGBI | 연방법령관보 (Bundesgesetzblatt) |
| BK Amt | 연방총리실 (Bundeskanzleramt) |
| BM | 연방정부의 부처, 연방장관 (Bundesministerium, Bundesminister) |
| BMA | 연방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
| BMB | 연방 내독관계부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
| BMF | 연방재무부 (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 |
| BMI | 연방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
| BMJ | 연방법무부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
| BMV | 연방교통부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
| BMWi | 연방경제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
| BND | 연방정보부 (Bundesnachrichtendienst) |
| BPA | 연방공보처(Bundespresseamt/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
| BPräs | 연방대통령 (Bundespräsident) |
| BRat | 연방상원 (Bundesrat) |
| BRD | 독일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 |
|---------------|--|
| BReg | 연방정부 (Bundesregierung) |
| BTag | 연방의회 (Bundestag) |
| BT-Drucksache | 연방의회-인쇄물 (Bundestags-Drucksache) |
| BverfG | 연방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sgericht) |
| BVerfGE |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Bundes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en) |
| BvS | 연방 통일관련 특별업무 관할청(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
| BZ | 베를리너 차이통紙 (Berliner Zeitung) |
| CdS | 주 총리실 실장/베를린 시장 비서실장(Chef der Staatskanzlei/Senatskanzlei) |
| CDU | 기독교민주연합(기민련)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
| ChBK | 연방총리실장 (Chef des Bundeskanzleramtes) |
| ČSSR | 체코슬로바키아 (Československo/Česko-Slovensko-Tschechoslowakei) |
| CSU | 기독교사회연합(기사련) (Christlich-Soziale Union in Bayern) |
| D | 독일(Deutschland) |
| DA | 민주혁신당(동독) (Demokratischer Aufbruch) |
| DBD | 독일민주농민당 (Demokratische Bauernpartei Deutschlands) |
| DD | 인쇄본, 복사본 (Durchdruck, Kopie) |
| DDR | 독일민주공화국(구동독)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 DGB | 독일노동조합총연맹 (Deutscher Gewerkschaftsbund) |
| DJ | 민주주의 지금 (Demokratie Jetzt) |
| DLF | 도이칠란트퐁크 (라디오 방송사) (Deutschlandfunk) |
| DM | 독일 마르크 (Deutsche Mark) |
| dpa | 독일 통신사 (Deutsche Presse-Agentur) |
| DS | 독일 라디오방송국 (Deutschlandsender) |
| DSU | 독일사회연합 (Deutsche Soziale Union) |
| DVP | 독일인민경찰(동독) (Deutsche Volkspolizei, DDR) |
| EV | 통일조약 (Einigungsvertrag) |
| F | 프랑스 (Frankreich) |
| FAZ |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차이통紙 (일간지)(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
| FDGB | 자유독일노동조합연맹 (Frei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 DDR) |
| FDJ | 자유독일청년단 (Freie Deutsche Jugend) |
| FEDI | “페리엔디스트”.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여행사(Ferendienst, 후에 FEDI-Ferendienst GmbH로 바뀜) |
| FR |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紙 (일간지) (Frankfurter Rundschau) |

| | |
|-----------|--|
| FS | 전보 (Fernschreiben) |
| GBI | 법령관보 (Gesetzblatt) |
| GG | 기본법 (Grundgesetz) |
| GKV | 의무 의료보험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 GL | 팀장 (Gruppenleiter) |
| GS | 사무총장 (Generalsekretär) |
| GST | 스포츠기술협회 (Gesellschaft für Sport und Technik) |
| HA | 지휘부 (Hauptabteilung) |
| hs | 수기(手記) (handschriftlich) |
| HVA | 정보 지휘부 (Hauptverwaltung Aufklärung) |
| IG Medien | 언론노조 (Industrie Gewerkschaft Medien) |
| IHK | 상공회의소 (Industrie- und Handelskammer) |
| IFM | 평화와 인권 시민단체 (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
| IM | 비공식 협력자 (Informeller Mitarbeiter) |
| i.V. | 대리 (in Vertretung) |
| JP | “청년 선구자” (Junge Pioniere, DDR) |
| KAAG | 투자신탁회사 (Kapitalanlagegesellschaften) |
| KB | (동독) 문화동맹 (Kulturbund) |
| KfW | 재건신용은행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
| KoKo | 상업조정기구 (Kommerzielle Koordinierung) |
| KPD | 독일공산당 (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
| KPÖ | 오스트리아공산당 (Kommunistische Partei Österreichs) |
| KWG | 신용기관법 (Kreditwesengesetz) |
| LASD | 독일정책 실무작업단장 (Leiter Arbeitsstab Deutschlandpolitik) |
| LDPD | 독일 자유민주당(구동독) (Liber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DDR) |
| LZB | 주립 중앙은행 (Landeszentralbank) |
| MAH | 동독대외무역부 (Ministerium für Außenhandel) |
| MD | (각 부처의) 국장 (Ministerialdirektor) |
| M/DDR | 동독 마르크 (Mark der DDR) |
| MdA | 동독 노동복지부 (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 MDg | (각 부처의) 실장 (Ministerialdirigent) |
| MDR | 중부독일방송 (Mitteldeutscher Rundfunk) |
| MfAA | 동독 외무부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
| MfS | 동독 국가안전부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

| | |
|---------------|---|
| MP | 총리 (Ministerpräsident) |
| MR | (각 부처의) 참사관 (Ministerialrat) |
| Mrd. | 10억 (Milliarde/Milliarden) |
| NDPD | 독일민족민주당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 NDR | 북부독일방송 (Norddeutscher Rundfunk) |
| NF | 신포럼 (Neues Forum) |
| NfD | 업무용으로만 사용 (Nur für den Dienstgebrauch) |
| NRW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
| OEB | 기관 소속 영업장 (Organisationseigener Betrieb) |
| ORB | 동부독일방송 브란덴부르크 (Ostdeutscher Rundfunk Brandenburg) |
| OVG | 최고행정재판소 (Oberverwaltungsgericht) |
| PA | 보도자료 기록 보관소 (Pressearchiv) |
| PartG-DDR | 동독 정당법 (Parteiengesetz der DDR) |
| PDS | 민주사회주의당(민사당)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
| PMO | 동독의 정당 및 대중조직(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
| PMO-Vermögen | 동독의 정당 및 대중조직 재산(Vermögen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
| PVKV | 정당재산위원회규정 (Parteivermögenskommissionsverordnung) |
| RBgm | 시장 (Regierender Bürgermeister) |
| RGW | 동유럽경제상호원조회의 (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COMECON) |
| RIAS | 미국 주둔지역 방송국 (Rundfunk im Amerikanischen Sektor) |
| RiVG | 행정법원 판사 (Richter im Verwaltungsgericht) |
| RL | 부서장 (Referatsleiter) |
| RR | 참사관 (Regierungsrat) |
| RTL | 라디오 텔레비전 룩셈부르크 (TV방송사)(Radiotélévision Luxembourg) |
| SBZ | (전후) 소련점령지구 (Sowjetische Besatzungszone) |
| SDP | 동독 사회민주당(동독 사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in der DDR) |
| SED |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사통당)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
| SEDDiktStiftG |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설립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r 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
| SFB | 베를린 자유방송 (Sender Freies Berlin) |
| SMAD | 주독일 소련군사행정청 (Sowjetische Militäradministration Deutschland) |
| SPD |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 St | 차관 (Staatssekretär) |

| | |
|-----------|---|
| Stäv | 상임 대표부 (Ständige Vertretung) |
| StGB | 형법전 (Strafgesetzbuch) |
| SU | 소련 (Sowjetunion) |
| TAS | 신탁관리특수재산 (Treuhand –Abwicklungs –Sondervermögen) |
| THA | 신탁관리청 (Treuhandanstalt) |
| THA/BvS | 신탁관리청/연방통일특수과제청 (Treuhandanstalt/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
| TEUR | 1,000유로 (Tausend Euro) |
| TLG | 신탁토지 유한회사 (Treuhand Liegenschaftsgesellschaft mbH) |
| UdSSR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구소련,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
| UFV | 독립여성협회 (Unabhängiger Frauenverband) |
| UKPV | 당재산검증위원회 (Unabhängige Kommission Parteivermögen) |
| USPD | 독일 독립사회민주당 (Unabhängige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 |
| VdgB | 농민상호부조연합(동독) (Vereinigung der gegenseitigen Bauernhilfe) |
| VDJ | 동독 기자연맹 (Verband der Journalisten der DDR) |
| VermG | 미해결자산문제 처리법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
| VG | 행정재판소 (Verwaltungsgericht) |
| VL | 좌파연합 (Vereinigte Linke) |
| VOB | 조직 소속 기업연합 (Vereinigung organisationseigener Betriebe) |
| VS | 기밀문서 (Verschlusssache) |
| VwGO | 행정재판소 규정 (Verwaltungsgerichtsordnung) |
| WWU | 화폐 · 경제통합/화폐 · 경제 · 사회통합 (Währungs– und Wirtschaftsunion,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
| z.A. | 채용 예정 (zur Anstellung) |
| Zentrag | 중앙 인쇄, 구매, 검열 유한회사(Zentrale Druckerei – Einkaufs– und Revisions GmbH) |
| ZK d. SED | 독일사회주의통일당(사통당) 중앙위원회 (Zentralkomitee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
| ZPA | 당중앙기록보관소 (Zentrales Parteiarchiv) |
| ZV | 중앙이사회 (Zentralvorstand) |

■ 참고문헌

- Arbeitsgemeinschaft Jugendliteratur und Medien der GEW. 2001. *Beiträge Jugendliteratur und Medien*(청소년문학과 미디어). 12. Beiheft 2001. Weinheim: Juventa Verlag.
- Barck, Simone/Lokatis, Siegfried (Hrsg.). 2003. *Fenster zur Welt. Eine Geschichte des DDR-Verlags* (세계를 향한 창. 동독 출판사 이야기). Volk und Welt Berlin.
- Bauer, Helmut G. und Ory, Stephan (Hrsg.). 1996. *Inhalt gestalten, Technik nutzen. Beiträge zur Medienentwicklung im vereinten Deutschland*(내용 구축하기, 기술 활용하기 통일 독일 미디어 발전에 관한 논문). Berlin: Vistas Verlag.
- Beck, Tilmann. 1992. *Die Veränderung in den früheren DDR-Medien im Jahr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anhand des Neuen Deutschlands und der Berliner Zeitung vom Fall der Berliner Mauer bis zu den ersten Landtagswahlen in der ehemaligen DDR*(노이에스 도이칠란트 紙와 베를리너 차이퉁紙를 통해 본 베를린 장벽 붕괴에서부터 구동독 최초의 주의회선거에 이르기까지 통일의 해에 나타난 구동독 미디어의 변화). Freiburg/Breisgau. (Examensarbeit)
- Bohn, Rainer, Hickenthier, Knut und Müller, Eggo (Hrsg.). 1992. *Die Mauer-Show*(장벽쇼). Berlin: Rainer Bohn Verlag.
- Bomas, Wiebke. 2005. *Der Duale Rundfunk*(이원방송제도). *Arbeitspapiere des Instituts für Rundfunkökonomie an der Universität zu Köln, Heft 206*. Köln.
- Brockmeyer, Dieter und Eichholz, Erling (Hrsg.). 1999. *Die Digitale Wende. Der K(ri)ampf um das deutsche Fernsehen*(디지털적 변화. 독일 TV를 둘러싼 투쟁). Hamburg: Infodienst Verlag.
- Casper-Hehne, Hiltraud und Schweiger, Arny (Hrsg.). 2008. *Deutschland und die "Wende" in Literatur, Sprache und Medien*(독일과 문학, 언어, 미디어 속 "통일"). Göttingen: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 Chill, Hanni und Meyn, Hermann. 1999. *Öffentlich-rechtliche Rundfunkanstalten*(공영 방송사).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Heft 260*. Bonn.
- Claus, Werner(Hrsg.) 1991. *Medien-Wende, Wende-Medien*(미디어-통일, 통일-미디어). Berlin: Vistas Verlag.
- Deutsches Rundfunkarchiv. <http://1989.dra.de/themendossiers/politik.html>. 09.08.2010.
- *Fernsehen in Europa: Regulierung, Politik und Unabhängigkeit Deutschland*(유럽의 TV: 규제, 정책, 독립). http://www.eumap.org/topics/media/television_europe/national/germany/media_ger2.pdf. 09.08.2010.
- Flaskamp, Reiner. 1999. *Die Landesmedienanstalten als erfolgreich scheiternde Organisation? Kontroll- und politische Funktion der Rundfunkaufsicht in Deutschland* (성공적으로 실패하는 기관으로서의 주(州)방송시설? 독일 방송감독의 통제 및 정치적 기능). http://www.ub.uni-konstanz.de/v13/volltexte/1999/144//pdf/144_1.pdf
- Gilliar, Beate. 1996. *The rhetoric of (re)unification: constructing identity through East and West German*

- newspapers*. (통일의 수사, 동서독 신문을 통한 정체성의 구성) New York: Peter Lang.
- Herbst, Maral. 2002. *Demokratie und Maulkorb. Der deutsche Rundfunk in Berlin zwischen Staatsgründung und Mauerbau*(민주주의와 입마개. 국가 설립과 장벽 구축 사이의 베를린 독 일방송). Berlin: Vistas Verlag.
 - Hoff, Peter und Wiedemann, Dieter (Hrsg.). 1991. *Medien der Ex-DDR in der Wende*(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 미디어). Berlin: Vistas Verlag.
 - Höhne, Günter. 2007. Das große Lexikon: (대 사전) DDR-Design. Köln.
 - Holzweissig, Günter. 1989. *Massenmedien in der DDR*(동독의 매스미디어). Berlin.
 - Klausurtagung der Medienkommission. 2002. *Risiken und Chancen nach dem neuen Mediengesetz. Digitalisierung, Lokalfunk, Bürgermedien*(새로운 미디어법 이후의 위험과 기회. 디지털화, 지역방송. 시민미디어). <http://www.lfm-nrw.de/downloads/redehahn-09112002.pdf>. 09.08.2010.
 -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2000. *Unterrichtung durch die Landesregierung. Bericht über die Entwicklung des Pressewesens in Mecklenburg-Vorpommern*(주정부의 보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언론발전에 관한 보고서).
 - Links, Christoph. 2009. *Das Schicksal der DDR-Verlage. Die Privatisierung und ihre Konsequenzen*(동독 신문사들의 운명. 민영화와 그 결과). Berlin.
 - Lokatis, Siegfried. 2005. *Die Auflösung des Buchhandels- und Verlagssystems der DDR im deutschen Vereinigungsprozess*(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독의 출판 및 유통시스템의 해체). *Vortrag im Rahmen der Internationalen Konferenz "Buchmarkt- und Verlagsintegration zwischen Ost- und West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Lehren aus Deutschland"*. FU Berlin, 20.10.2005.
 - Medienpolitische Begriffe. <http://www.mdr.de/nachrichten/1214561-hintergrund-1214598.html>. 09.08.2010.
 - Mey, Stefan. 2005. *Öde Wüste statt blühender Landschaft. Die Transformation der DDR-Zeitungslandschaft nach '89 mit besonderem Fokus auf die Situation in Sachsen-Anhalt*(번창하는 나라 대신 메마른 사막. 작센-안할트에 초점을 맞춰서 본 1989년 이후 동독 신문 부문의 변화). Halle-Wittenberg. <http://stefanmey.files.wordpress.com/2010/03/transformation-der-ddr-zeitungslandschaft.pdf>. 19.08.2010
 - Müller, Holger. 2001. *Entwicklung des Rundfunkwesens. Historische Bezüge*(방송제도의 발전. 역사적 관계). Bempflingen.
 - Noelle-Neumann, Elisabeth, Schulz, Winfried und Wilke, Jürgen (Hrsg.). 2002. *Fischer Lexikon. Publizistik, Massenkommunikation*(퓌셔 백과사전. 언론학, 매스컴). Frankfurt/Main.
 - *Presse in der DDR. Auflagen, Journalisten, Zensur*(동독의 언론. 발행부수, 기자, 검열).

- <http://www.mdr.de/damals/lexikon/1601457>.09.08.2010.
- Rademacher, Thorsten. 2001. *Kurze Einführung in die Fernsehgeschichte*(간략한 TV 역사 소개). Siegen: <http://www.medienstudent.de/studi/tvgesch.htm>.09.08.2010.
 - Riedel, Heide (Hrsg.). 1994. *Mit uns zieht die neue Zeit. 40 Jahre DDR-Medien*(우리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동독 미디어 40년). Berlin: Vistas Verlag.
 - Rumland, Marie-Kristin. 1993. *Veränderungen im Verlagswesen und Buchhandel der ehemaligen DDR 1989-1991*(1989-1991 구동독 출판계 및 서적출판의 변화). Wiesbaden.
 - *Rundfunk in Deutschland nach 1945*(1945년 이후 독일의 방송). <http://www.epochs.de/rundfunk.php>.09.08.2010.
 - *Rundfunkrecht in Deutschland: Einführung*(독일의 방송법 소개). <http://www.jura.uni.sb.de/BIJUS/rundfunk>.09.08.2010.
 - Schulz, Winfried. 2003. *Mediatisierung der Politik oder Politisierung der Medien?*(정치 매스컴화 또는 미디어의 정치화?) http://www.okwi.wiso.uni-erlangen.de/pdf_dateien_Mainz_2003.pdf.09.08.2010.
 - Schulz, Winfried. 2004. *Medialisierung. Eine medientheoretische Rekonstruktion des Begriffs*(매스컴화 개념의 미디어이론적 재구성). http://www.okwi.wiso.uni-erlangen.de/pdf_dateien/DGPuK_Medialisierung_end.pdf.09.08.2010.
 - Spielhagen Edith (Hrsg.). 1993. *So durften wir glauben zu kämpfen. Erfahrungen mit DDR-Medien*(그렇게 해서 우리는 투쟁해야 한다고 믿을 수 있었다. 동독 미디어의 경험). Berlin: Vistas Verlag.
 - *Tageszeitungen der DDR*(동독 일간지). http://de.wikipedia.org/wiki/Tageszeitungen_der_DDR.09.08.2010.
 - Tippach-Schneider, Simone. 1998. *Das große Lexikon der DDR-Werbung*(동독 광고의 대백과사전). Berlin.
 - Volkskammer der DDR. 1990. *Beschluss der Volkskammer über die Gewährleistung der Meinungs-, Informations-, und Medienfreiheit*(의사표현, 정보, 미디어의 자유 보장에 관한 인민회의의 결정). Berlin.
 - Wende, Waltraut. 2004. *Kultur - Medien - Literatur. Literaturwissenschaft als Medienkulturwissenschaft*(문화 - 미디어 - 문학. 미디어문화학으로서의 문학). Würzburg: Königshausen und Neumann.
 - Wolfert, Jutta. 2004. *Theatertexte zwischen Medien und Revolution 1989-1996*(1989-1996 미디어와 혁명 사이의 연극대본). Berlin: Alexander Verlag.
 - *Zeit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eit 1989*(1989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의 신문). <http://www.lancs.ac.uk/staff/smithb1/text207/vorlesung/wende.htm>.09.08.2010.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자료 1~19 612

자료 1

동독인민회의 미디어법 입법위원회의 결정문(발췌)

(기준: 1990.01.09.)

담당자/기관 : 동독 인민회의 의원/인민회의 결정

내용

- 새로운 미디어법을 제정하는데 실패하자 인민회의는 원탁회의의 권유로 의사표현, 정보, 언론의 자유 보장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 이 결정문은 미디어법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되고,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강조되었으며, 이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예술의 자유를 포함시켰다. 그 밖에도 특정 의견에 대해 반박하거나 다른 의견을 표명할 권리도 나타나 있다. 또한, 동독 미디어에 대한 그 어떠한 검열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는 국민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각료회의¹⁶는 모든 미디어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임무를 갖는다. 사통당의 당기관지인 노이에스 도이칠란트紙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항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상기 결정문의 이행을 위해 원탁회의의 제안에 따라 인민회의¹⁷는 미디어조정위원회 (Medienkontrollrat)¹⁸를 구성했다. 라디오 및 TV 방송국장, ADN¹⁹ 통신사장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업체 대표들이 미디어조정위원회에 대해 보고의무를 가졌다.
- 법무부의 주도 하에 미디어법 제정안을 완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정안에 대한 결정은 헌법 제정 후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출처 : <http://www.ddr89.de/ddr89/texte/medien.html> 2010.06.08.

16 역주: 동독 최고행정기관

17 역주: 동독 의회(1949.10.07.-1990.10.02.)

18 역주: 미디어의 자유 보장을 위해 인민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 기구

19 역주: 동독의 국영통신사

자료 2

미디어조정위원회(Medienkontrollrnt)

1990년 7월

담당자/기관

안드레아스 & 하이케 그라프(Andereas und Heike Graf)의 기사

내용

- “미디어 통일”에 관한 문서집에서 안드레아스와 하이케 그라프는 동독 내각에서 설치한 미디어조정위원회를 “미디어정책의 시끄러운 전쟁 속의 견고한 섬”으로 표현한다. 변혁과 새로운 시도의 시기이면서도 여전히 사통당의 영향력이 큰 시기에서 미디어조정위원회는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
- 동독에는 미디어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헌법에 언급된 자유는 실질적으로 거의 보장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의 불신도 높았지만 기대감 또한 높았다. 미디어에 관한 인민회의의 결정과 미디어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동독의 모든 정치단체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미디어 관련 결정이 몇몇 틈새를 보였기 때문이라도 이와 같은 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것이었다. 많은 이들은 통제위원회가 모두가 함께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는 공개 논의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했다.
- 신속하고 중대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기에서 미디어조정위원회의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었다. 집필자들은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미 국가와 당정책, 집단이기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국가와의 거리감을 보여준 전문적인 위원회가 탄생했다.”(p.15)

출처

Claus, Werner (Hrsg.) 1991. *Medien-Wende, Wende-Medien, Dokumentation des Wandels im DDR-Journalismus Oktober '89- Oktober '90*(미디어-통일, 통일-미디어, 1989.10.-1990.10. 동독 언론계의 변화에 관한 기록), Berlin: Vistas Verlag, S. 7-15

자료 3

통일조약 제36조

-방송

1990년

담당자/기관

통일조약

내용

- 통일조약 제36조는 동독 라디오방송과 독일 TV방송에 관한 문제들을 규정한다.
- 통일조약의 상기 구절은 후에 이루어지는 신연방주 방송시설의 구조조정, 즉, 동독 미디어의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제 구조로의 편승을 위한 틀을 마련한다. 관할 영역과 재정문제도 규정되어 있다.

출처

<http://www.buzer.de/gesetz/2318/a32516.htm> 2010.07.26.

자료 4

미디어 및 미디어법의 발전

(1945-1996)

담당자/기관 : 스토얀 무타프치브(Syoyan Mutafchiev), 자를란트 대학 철학과

내용

- 1945년 5월 8일의 무조건 항복 이후 미디어에 대한 재량권은 전적으로 연합국들에게 있었다. 이들은 전혀 새로운 방송 질서를 세웠으며 신설 신문에 면허를 발급해주었다.
- 연합국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까닭에 각각의 점령 지구별로 상이한 방송시설이 생겨났다.
- 서구 연합국들은 독일에서 미디어가 또 다시 민주주의에 반하는 도구로 이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 연합국들은 계획적인 재교육을 통해 독일 국민들을 민주주의로 전향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3제국”에서와 같은 미디어의 획일화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소련이 점령한 지역의 목표는 인민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구축이었으며, 미디어는 이에 크게 기여했다.
- 전후시대 서구에서는 새로운 방송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국가로부터의 독립성과 다원주의였다.
- 방송은 특정 정치나 경제 집단 또는 다른 집단이익을 선호해서는 안 되었다. 방송 통제는 사회의 주요 단체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되었다.
-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사회에 대한 방송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국가의 과도한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이원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지리적으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제적 질서를 따랐다.

출처 : <http://server02.is.uni-nyu.de/seminare/mediengesetze/geschichte.htv> 2010.08.19.

자료 5

동독 일간지

담당자/기관

동독 신문 39개

내용

- 동독 일간지를 나열한 표 (신문명, 발행처, 보급지역, 발행년도 제시)
- 사통당의 당기관지였던 “노이에스 도이칠란트”紙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사통당은 14개 지구 및 동베를린에서도 지역신문을 발행했다. 이들 신문은 각각 상이한 지방면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총 218개 지구를 포괄했다.
- 인민회의를 구성하는 5개 블록정당들은 각각 전국 규모의 신문을 한 개씩 발행했다. 그 밖에도 소르비아 소수민족 정치단체²⁰가 자체적인 일간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출처

http://de.wikipedia.org/wiki/Tageszeitungen_der_DDR 2010.08.02.

²⁰ 도모비나(Domowina)라 불리며 독일 거주 소르브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소르브어와 스르브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자료 6

동독 미디어

담당자/기관

위르겐 빌케(Jürgen Wilke)

내용

- 이 글은 언론학과 매스컴에 관한 핸드북의 일부로서 동독 미디어의 7개의 영역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잘 정돈되고 설득력 있는 글이다.

1. 동독 미디어의 기초
2. 언론
3. 방송
4. 통신
5. 영화
6. 통일과정(Wende)에서 통일(Einheit)에 이르기까지
7. 변화 그 후

출처

Noelle-Neumann, Elisabeth, Schulz, Winfried und Wilke, Jürgen (Hrsg.). 2002. *Fischer Lexikon. Publizistik, Massenkommunikation* (푸셔 백과사전. 언론학, 매스컴). Frankfurt/Main.

자료 7

동독 미디어정책 연표

1989-1990년

담당자/기관

요아힘 뉘테(Joachim Nölte)

내용

- 1989년 10월부터 1990년 10월까지 1년 동안의 동독 미디어정책 관련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중요한 사건들을 큰 틀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 글은 간결하면서도 내용이 풍부하며 참고서적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당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신문의 독자편지들을 삽입함으로써 더 신빙성을 높여준다.
- 선정 및 비평: 요아힘 뉘테(Joachim Nölte)

출처

Claus, Werner (Hrsg.) 1991. *Medien-Wende, Wende-Medien. Dokumentation des Wandels im DDR-Journalismus Oktober 89- Oktober 90*(미디어-통일, 통일-미디어. 1989.10. -1990.10. 동독 언론계의 변화에 관한 기록), Berlin: Vistas Verlag, S. 17-115

자료 8

“통일”로 인한 동독 미디어의 변화

담당자/기관

군터 홀츠바이씨히(Gunter Holzweißig), 클라인마흐노브(Kleinmachnow)

내용

- 레닌규정²¹: 소련점령지구였던 동독에서의 매스미디어의 도입 및 발전은 소련 점령 당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1989년까지 스탈린식 미디어정책²²을 지향했다. 사통당은 소련을 본보기로 삼아 미디어를 “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간주했다.
- 사통당 미디어 독점의 종결: 1989년 10월 19일 중앙위원회 선동부장 하인츠 겐겔(Heinz Geggel)²³은 사통당 선동활동에서 미디어 및 의사표현의 독점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비록 편집장들에게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보장해주는 “편집장원칙”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편집장들은 사통당 당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결국 “큰집(Großes Haus)²⁴”의 지시를 편집부에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 사통당의 미디어조정시스템²⁵ (p.145의 그림 참조)
- 언론계의 변혁: 1989년 가을에는 동독 미디어들이 사통당 선동활동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문제가 있었던 조사에 대해 뒤늦은 사과가 잇따랐다.
- 편집장들 사이에서는 존속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면서 언론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사이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된 사통당 당소조²⁶지도부의 라디오 및 TV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21 레닌은 언론 그 자체를 혁명의 수단이자 주체로 규정했다.

22 레닌의 계승자인 스탈린은 혁명수단이었던 언론매체를 강력한 통치수단으로 이용했다.

23 사통당 중앙위원회 선동부장으로 동독 미디어가 당 노선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그의 업무였다.

24 사통당 당사를 가리킴.

25 당서기장이 선동부를 거쳐 언론청과 정치국 선동위원회를 통해 각각의 미디어를 조정하는 시스템

26 조직활동의 최소단위

자료 8

출처

Holzweissig, Gunter: Wandel der DDR-Medien durch die “Wende”: in Casper-Hehne, Hiltrau/Schweiger, Imry (Hr.). 2008. Deutschland und die “Wende” in Literatur, Sprache und Medien: Interkulturelle und kulturkonstrative Perspektiven(독일과 문학, 언어, 미디어 속 “통일”: 문화간 및 문화비교의 관점). Göttingen: Universitätsverlag.

자료 9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紙와
베를리너 차이퉁(Berliner Zeitung)紙를 통해서 본
장벽 붕괴에서부터 구동독 지역 최초의 주의회 선거에 이르기까지
독일 통일의 해에 있었던 구동독 미디어의 변화

1992년

담당자/기관 : 티만 베크(Tilmann Beck)/브라이스가우 소재 프라이부르크 알베르트 루드
비히 대학 철학과 석사논문

내용

- 이 논문은 1989년 가을부터 1990년 10월까지의 기간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기간 동안 동독은 변화와 개혁의 단계를 겪었다. 즉, 화폐통합과 통일에 따른 시스템 이전이 이루어졌다. 동독 신문들은 구조조정을 해야 했으며 커다란 재정손실을 입었고 1990년 초기부터 등장한 대형 서독 신문사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 이 석사논문은 장벽 붕괴 이전 동독의 미디어 부문을 다룬다. 특히, 노이에스 도이칠란트紙와 베를리너 차이퉁紙라는 두 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두 신문의 편집장들과의 인터뷰가 문서로 활용되었다. 주요내용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과 신문과 관련 종사자들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외부 결정요인들이다. 논문에서는 기사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 동독 신문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과 급격히 높아지는 서독 대형 신문사들의 영향력 사이의 긴장관계는 그루너+야르(Gruner+Jahr)²⁷ 출판사가 동독 또는 신연방주를 대상으로 펼친 전략을 통해 그려진다.

출처 : 1992년 제출된 석사논문 사본

27 함부르크에 소재하는 유럽 최대 출판사

자료 10

번창하는 나라 대신 메마른 사막:
작센-안할트주에 초점을 맞춰서 본
1989년 이후 동독 신문 부문의 변화

2005년 3월

담당자/기관

슈테판 마이(Stefan Mey), 할레-비템베르크 마틴 루터 대학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내용

- “작센-안할트주에 초점을 맞춰서 본 1989년 이후 동독 신문 부문의 변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 자료
- 저자는 통일 후에는 “번창하는 나라”가 생길 것이라고 약속한 콜 총리²⁸를 인용하며, 이처럼 희망찬 약속의 실재를 동독의 미디어 발전을 통해 조사한다. 이 때, 특히 작센-안할트주 신문들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관심 대상은 1989년 가을에 있었던 자유롭고 다양한 언론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점과 내용의 획일화가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답을 찾는 일이다. 먼저, 두몽 샤유베르크(DuMont Schauberg)²⁹와 바우어(Bauer)³⁰, 두 대형 출판사의 행보를 살펴본다. 재산관계, 발행부수와 편집자의 권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동독 신문 부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통해 1990년의 사건들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그러면서 저자는 당시 신문의 발행 규모를 강조한다. “동독은 인구 1천명 당 1일 신문발행부수로 계산할 때 세계에서 인구 대비 신문발행수가 가장 높았다. (동독은 인구 1천 명에 발행부수가 583부인데 반해 서독은 340부에 불과했다.)”
- 통일과정(1989-1990)에서는 많은 신문들이 새로 생겨났다. 1990년 1월에서 3월까지 50개의 새로운 주간지와 일간지가 생겨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대개 주간지를 발행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서독 신문사들의 경쟁 압박과 재정 등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자료 10

인해 살아남지 못했다. 신문의 다양성은 금방 사라졌고, 급격하게 집중화 현상이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정치, 신탁관리, 대형 출판사 등의 원인들의 복합적인 작용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초기의 희망과 기대 가운데 절반은 이루어지고 절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신연방주의 언론은 자유로워졌지만 다양해지지는 못한 것이다.

출처

2005년 3월 제출된 세미나 자료 사본

28 1982-1998 독일 총리

29 쾰른 소재 독일 출판사

30 1875년에 설립된 함부르크 소재 출판사

자료 11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언론발전에 관한 보고서

2000년 7월 10일

담당자/기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내무부

내용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을 비롯한 전체 신연방주 내 언론시장의 발전은 전국적으로 퍼지는 신문 부문의 집중화 현상과 동일한 전개 양상을 보였다.

- 통일 후 1997년, 독일에는 전국 규모의 신문이 6개밖에 없었다. 바로 “프랑크푸르터 알 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紙, “벨트(Welt)” 紙, “도이체 타게스포 스트(Deutsche Tagespost)” 紙, “타츠(taz)” 紙, “노이에 도이칠란트(Neue Deutschland)” 紙, “용게 벨트(Junge Welt)” 紙 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사의 수는 1993년과 1997년 사이에 3.4% 감소했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자체 제작 출판물”의 수는 1.5% 감소했다. 이는 언론의 집중화를 초래했다.
- 신연방주에서는 집중화 현상이 신탁관리청의 지원을 받았다. 동독 기업의 민영화 정책 혹은 이들의 매각정책을 통해서 신탁관리청은 동독 15개 지역에서 사통당 신문으로 발행되었던 모든 지역신문들을 1991년 5월 15일까지 서독 신문사에 매각했다. 이로써 사통당으로 인해 만들어진 독점적 시장구조는 서독 대형신문사들에게 넘어갔다. 지역신문들은 신연방주에서 총 9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함으로써 동독 시절보다도 점유율이 높다.
-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 신설된 수많은 신문들은 대규모 지역신문(총발행부수 - 1989년: 550만부, 1997: 360만부)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1990년에는 총 54개 서독신문사들이 동독 지역에 70개 이상의 지역신문을 신설했지만, 이들 신설 신문 가운데 1997년까지 존속한 신문은 10개뿐이었다. 이들 10개 신문은 구지역신문과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자료 11

- 동독의 전국 규모의 신문 7개 가운데에는 2개만이 통일 과정에서 살아남았다. 오늘날 이들 2개의 신문의 보급지역은 거의 동베를린에 국한되어 있다. 구블록정당의 14개 지역신문 가운데에는 5개만이 1997년까지 살아남았다.
- 신연방주로서는 당연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구지역신문의 과도한 점유율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이브란덴부르크(Neubrandenburg), 로스토크(Rostock), 슈베린(Schwerin)의 사통당 신문인 “노르트쿠리어(Nordkurier)”紙, “오스트제차이퉁(Ostseezeitung)”紙, “슈베리너 폴크스차이퉁(Schweriner Volkszeitung)”紙는 모두 서독 대형 신문사의 소유가 되었다. 이를테면, 노이브란덴부르크 “노르트쿠리어”의 주식은 아우스부르크 신문출판사(Presse- und Druckverlag GmbH Augsburg)와 슈베비셰 출판사(Schwäbischer Verlag), “킬러 나흐리히텐(Kieler Nachrichten)”에서 각각 33%씩 차지하고 있다. 이들 신문은 각각 수많은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 언론집중화로 인해 언론 및 의사표현의 다양성이 위협을 받는다.

출처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3차 입법부 임기, 인쇄물 3/1418, 2000.07.10.

자료 12

“2009, 2010 구동독지역 최대 지역신문”

2009-2010년

담당자/기관

내용

-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구조조정(민영화, 재정문제, 인적 변화) 이후 이어진 견실화 단계에서는 지역신문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까지의 전개 상황을 보면, 독서 습관은 강한 지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신문들은 충실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고, 보급지역 또한 주로 구동독 지역인 것이다.

자료 13

1989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 신문

1989년

담당자/기관

1989년 이전 동독 언론

내용

- 동독에는 언론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헌법 제9조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1968년에는 새로운 헌법이 의결되었으며 이 헌법 제27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동독 국민은 누구나 이 헌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개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그 어떤 고용관계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이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언론, 라디오, TV의 자유는 보장된다.”
- 동독에서는 정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국영통신사인 ADN 통신이 동독의 정치 보도 전체를 책임지고 있었다. ADN 통신 직원들은 당을 대변하는 정보를 보도하고 사통당 정책을 관철할 의무가 있었다.
- 동독에는 11,000여 명의 기자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엄격한 교육과정을 거쳐야 했다. 대학 졸업은 필수요건이었으며, 졸업 후에도 3년 간의 교육과정이 이어지고 그 후에도 편집국에서 1년 동안 실습과정을 거쳐야 했다.
- 대학에서는 물론 기초언론학도 배웠지만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 민방위 등도 필수 과목에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자들이 당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사통당에 가입해야 했던 것은 아니다.
- 11,000여 명의 기자 가운데 많은 이들이 현재 연령상의 이유나 과거에 슈타지를 위해 일했던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해고되었다. 특히 1990년과 1992년 사이에는 급격한

자료 13

구독자수 감소와 신문의 폐간으로 인해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

- 크리스토프 디크만(Christoph Dieckmann)이나 유타 보이그트(Jutta Voigt)와 같은 동독 기자들은 공산주의를 탈피한 독일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다. 동독 출신의 싱어송 라이터 볼프 비어만(Wolf Biermann)³¹은 “변하는 자만이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lancs.ac.uk/staff/smithb1/text207/vorlesung/wende.htm> 2010.07.25.

31 1936년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동독을 조국으로 선택해 이주했으나, 동독 체제를 맹렬히 비난하는 시와 노래 때문에 1976년 서독으로 추방당함. 서독에 와서도 사회주의자로서의 신념을 지키며 서독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 풍자함.

자료 14

베를리너 차이퉁紙 편집장들과의 인터뷰 기록

2010년 8월 5일

일시 : 2010년 8월 5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 2시 15분

장소 : 베를리너 차이퉁紙 편집국, 카를-립크네히트-슈트라세, 베를린-미테

참가자 : 안냐 라이히(Anja Reich, 베를리너 차이퉁), 페터 리즈베크(Peter Riesbeck, 베를리너 차이퉁), 최해원, 리하르트 페니히(Richard Pfennig).

안냐 라이히(Anja Reich)는 동독에서, 즉, 1990년까지 베를리너 차이퉁紙에서 인턴생활을 했다. 그녀는 잡지 담당이었다.

페터 리즈베크(Peter Riesbeck, 1968년 팔츠 출생)는 1997년부터 베를리너 차이퉁紙에서 일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정치부장을 맡고 있다.

베를리너 차이퉁紙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 통일 후 동독 출신 기자들의 대부분이 이 신문에서 활동을 했다.
- 해고된 사람은 없다. 단, 몇몇 나이가 많은 이들은 퇴직금을 받고 은퇴했다.
- 슈타지 관련 조사가 시행되었다.
- 슈타지 과거가 있는 몇몇 기자들은 자발적으로 나갔다.
- 슈타지 과거가 있는 몇몇 기자들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남았으며, 이와 같은 사안들을 다루고 권고를 해주는 윤리위원회가 있었다.
- 1990년 통일 직후 동독 기자들을 위한 특별교육은 없었다.
- 통일 후인 1990년 가을 정도부터 사통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지시나 검열이 중단되었다.
- 동독 기자들은 통일을 해방으로 여겼다. 통일로 인해 미디어의 자유가 보장되고 당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14

- 서독 기자들은 구조조정에서 특혜를 받았다.
- 동독과 서독 기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컸지만, 극복할 수 없는 대립은 없었다.
- 베를리너 차이통紙의 대부분의 독자들은 구동독 지역에 거주한다.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보급지역의 확장은 실패했다.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베를리너 차이통紙가 장벽 붕괴 기념일 등에 발행한 기념호를 나누어줬다. 이 기념호에는 발행부수 수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공식자료는 구할 수 없다고 한다.

- 리즈베크는 통일 시점 당시 베를리너 차이통紙에 있지 않았다.
- 리즈베크는 한국이 통일을 이룰 경우,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에 대해 조언을 했다.
 - 북한 지도부는 남한 인력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 그렇다고 지도부 산하 지역 엘리트들을 모두 교체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이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북한 기자들을 위한 향상 및 계속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들 교육은 특히 정치, 역사, 경제 부문을 다루어야 한다.
 - 추천서적: 삼권분립에 관한 텍스트,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리바이어던”), 로크, 존 롤스 등.

자료 15

노이에스 도이칠란트紙 편집규약안

1990년 6월 13일

담당자/기관

규약안 작성자, 편집국총회/“노이에스 도이칠란트”紙

내용

- 사통당의 당기관지였던 “노이에스 도이칠란트”紙 직원 몇 명이 편집국 총회에 새로운 편집 규약안을 제시했다. 이 규약안은 신문의 “내적 언론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신문이 당기관지이며 사회주의적 일간지임을 선언한 전문에 이어 편집국 업무의 기본원칙과 개별 단체 및 개인의 업무 내역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테면, 편집국 조직, 편집국장, 부서장 회의, 편집국 총회 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규약안은 특히 자기책임과 독립성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윤리에 어긋날 경우, 업무를 거절할 수 있는 편집장의 권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규약안의 준수 여부는 비밀리에 선출되고 부서장 회의에 속하지 않는 이들로 구성된 명예위원회에서 감시하게 되어 있다. 규약안은 편집국 총회의 결정에 의해 발효되며, 이를 위해서는 편집장들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 규약안은 독일 통일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정적이었던 시대에 등장한 흥미로운 자료이다. 사통당의 당기관지였던 신문이 타협을 시도한 것이다. 즉, 자력으로 개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되, 새로운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포기할 수 없는 민주적 사회주의의 기본원칙들을 보존하는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출처

규약안 사본 및 작성자들의 첨서

자료 16

노이에스 도이칠란트紙의 우베 칼베(Uwe Kalbe)와 라인하르트 프리케(Reinhard Fricke)와의 인터뷰 기록

2010년 8월 5일

노이에 도이칠란트(ND)紙는 유례없는 발전을 거듭했다. 수십 년 간 동독 사통당의 당기 관지로 활동한 이 신문은 90% 이상의 구독자를 잃은 후 독일 유일의 정당 기관지로 거듭났다. 바로 “좌파당(Die Linke)”의 당기관지가 된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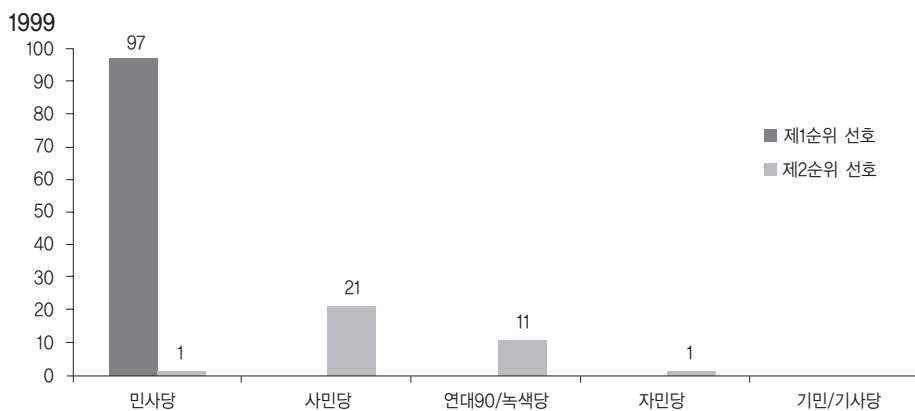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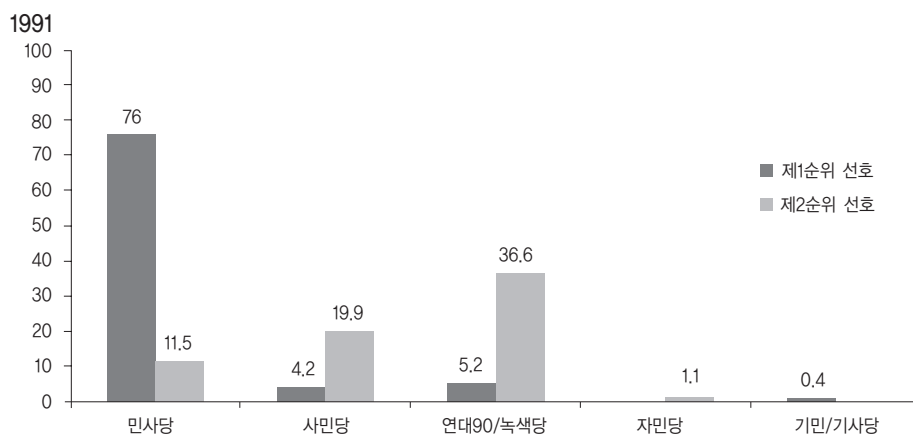
통일 이전에는 엄격한 검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에는 이미 변화가 감지되었고, 곧 더 이상 사통당 중앙위원회의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 통일은 어쩔 수 없는 변화를 초래했다. 그것은 정치적 변혁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상황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편집국 지도부가 교체되고, 직원들을 위한 교육이 시행되었으며, 특히 경제부에서 해고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과학부”과 “대외정책부”는 아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었다. 통일 이전에 약 500명이었던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D)紙 직원수는 오늘날에는 100명에도 못 미친다. 대다수의 직원들은 1991/1992년에 신문사를 떠나거나 해고되었다.

2010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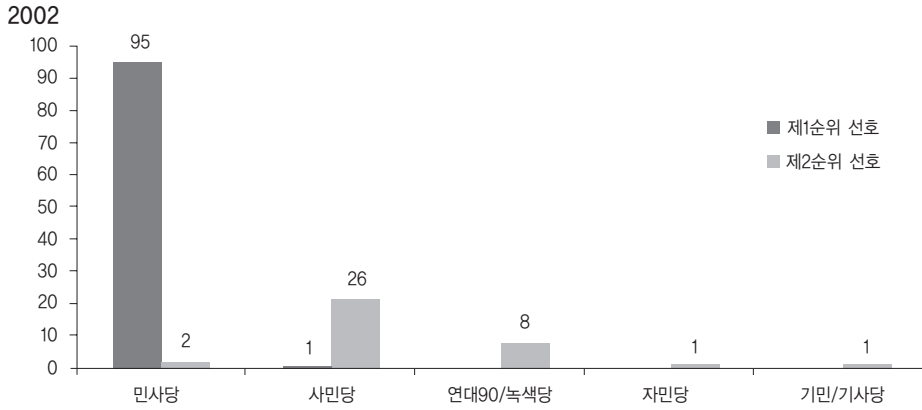
- 경영은 서독 출신들이 담당한다.
- 노이에스 도이칠란트紙로서는 광고수익을 얻는 것이 어렵다.
- 15명의 편집장 중 절반만이 서독 출신이다.
- 견해 차이는 존재하지만, 심각한 대립은 없다.
- 편집부의 연령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서독 출신의 젊은 사람들을 데려왔다.
- 독자수가 줄어들지만 구동독 지역의 “충실한” 독자층 덕분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 현재 독자수는 약 3,000-4,000명이며, 자를란트에서는 구독자 수가 24명에 불과하다.
- 독자층의 평균연령은 68세이다.
- 대부분의 입사 지원자들은 정치적으로 좌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자료 17

“새로운 독일(노이에스 도이칠란트)”
구독자의 정당 선호(%)



자료 17



출처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위임에 의한 구독자 설문조사; 그래픽은 알렉산더 페니히 작성

자료 18

디터 바이리히(Dieter Weirich, 1989-2001 도이체 벨레 방송국 사장) 교수와의 인터뷰 기록

2010년 6월 14일, 베를린

참가자

박수진, 최혜원, 최혜진, 알렉산더 페니히(Alexander Pfennig)

주제 관련 자료

동독 방송을 제거하는 일은 “청산”이라는 모토 하에 이루어졌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코블렌츠 소재 연방기록보관소(Bundesarchiv)의 자료들과 독일 공영방송 ARD의 기록보관소(방송기록보관소)의 자료들이 있다. 특히, ARD 기록보관소는 동독 문서들을 보유하고 있다. 본 소재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또한 관련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신연방주 방송을 담당하던 루돌프 헤리버트 뮐펜츨(Rudolf Heribert Mühlfenzl)은 2000년에 사망했다. [뮐펜츨은 1990년 10월 15일 통일조약 제36조에 따라 신연방주 방송담당자로 선출되었다. 그의 업무는 동독의 TV와 라디오방송을 청산하는 일이었다. 그의 활동은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그는 인기 있는 방송까지도 중단시킨 인물로 인식되었다. 신연방주 방송담당자로서 그가 이룬 가장 큰 성과는 아마도 중부독일방송(MDR)을 신설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관계(Patenschaften)”가 생겨났으며, 협력관계는 대체로 최초의 전독 총선 결과에 따라 맺어졌다. 즉,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브란덴부르크를 지원하고, 헤센은 튀링엔을,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바이에른은 작센을 지원했다. 대개는 행정 기술적인 분야를 지원했지만, 서독의 모든 잘못된 점들도 넘어오게 되었다. 서독에는 작은 연방주들도 모두 자체적인 방송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자를란트조차 자체방송을 가지고 있다. 중부독일방송(MDR)을 설치함으로써 그와 같은 일은 방지할 수 있었다. 처음

자료 18

에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또한 중부독일방송에 포함될 예정이었다.(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에서는 현재 북부독일방송이 보급되고 있다.) 동부독일방송 브란덴부르크(Ostdeutsche Rundfunk Brandenburg)와 베를린자유방송(Sender Freier Berlin)은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으로 합쳐졌다. 전반적으로 동독 지역의 구조조정은 “연착륙”이었다. 독일방송(Deutschlandfunk)은 임무를 완료함으로써 해체되었고, 부분적으로는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의 소유가 되었다. 미국주둔지역방송국(서베를린)인 RIAS는 일부는 도이체 벨레의 소유가 되고, 일부는 해체되고 일부는 민영화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특별수당을 주며 서독 전문가들을 활용했다. 이들은 동독에서의 업무에 대해 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다.³² 서독에서는 그 때나 지금이나 합병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재정상의 이유로도 합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변할 것이다. 방송법(주방송법)은 서독의 법이 넘어왔지만, 본래는 영국에서 들어온 것이었다.

사례 : 동독방송(DDR-Rundfunk)

동독방송은 6,000명의 직원을 보유했으며, 이 가운데 300명은 운전기사였다. 그것은 보도를 위해 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기 소유의 차량이 없었기 때문이다. 동독방송국장은 통일 후 보험판매원으로 일했으며, 다른 직원들은 퇴직했다. 슈타지의 비정규 요원이었던 한 젊은 비서는 해고를 당했다. 당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노동시장의 상황은 오늘날보다는 훨씬 유리했다. 디터 바이리히(Dieter Weirich)는 불편한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 상대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다. 서독 노조들은 즉각적인 임금조정을 요구했다. 바이리히는 당시 자금이 충분하지 않고 동독의 생활비가 더 낮다는 이유로 5년 간의 과도기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동독 직원들은 노조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이해해 주었고, 이 분쟁은 정치적

³² 동독에는 주회계검사원이 없었다. 주회계검사원을 새로 만들 때에도 서독 전문가들이 이용되었다. 당시에는 서독 인들만이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보다 당시에는 동독인에 비해 서독인들의 위상이 높았다.

자료 18

차원으로까지 번지지 않았다. 바이리히는 동독 직원들이 그들의 과거 때문에 특혜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동독 직원들 자신들도 이를 원하지 않았다.

사례 : RBI 방송(베를린 국제 라디오, Radio Berlin International)

RBI는 비교적 중요하지는 않았다. 소련의 해외방송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통일조약 협상 초기 때 이미 RBI는 직원수가 크게 줄었다. **RBI는 방송이 존속할 것이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1990년 10월 2일 이후 RBI는 동독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방송을 중단했다.) RBI에서는 법률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보다 수월했다. 동독은 우수한 아프리카어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당 가입 여부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통일 이후에는 주로 젊은 **어학전문가(총 24명)**들이 고용되었다. 그것은 나이든 많은 어학전문가들은 이미 통일 이전부터 도이체 벨레에서 활동했기 때문이었다. RBI 방송국 몇 개는 통일 이후에 **전송량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었다. RBI는 독일에서만 방송을 했으며, 해외에는 방송국을 보유하지 않았다.

자료 19

동독 미디어의 변천 관련 문서

1989-1990년

담당자/기관 : 요아힘 뉘테(Joachim Nölte)

내용

- 문서 1: 1989년 10월 19일에 있었던 동독 기자연맹 의장단회의에 관한 보도자료
- 문서 2: 1989년 10월 24일자 동독 영화 및 TV제작사연맹 이사회의 공식발표
- 문서 3: 1989년 10월 21일자 동독방송 내 사통당 기본조직 당활동반의 성명서
- 문서 4: 1989년 11월 6일자 기민련(CDU) 기자들의 미디어법 초안 제시
- 문서 5: 1989년 11월 8일 제10차 사통당 중앙위 회의에서의 에곤 크렌츠(Egon Krenz)의 연설문 발췌
- 문서 6: 1989년 11월 10일 제10차 사통당 중앙위 회의에서의 귄터 샤보브스키(Günter Schabowski)의 연설문 발췌
- 문서 7: 1989년 11월 14일 제9차 당간부회 회의 관련 독일민주노동당(DBD) 간부회의 논평 발췌
- 문서 8: 1989년 11월 16일자 제 16차 동독 기자연맹(VDJ) 베를린 지구간부회 회의에서의 결정문
- 문서 9: 1989년 11월 25일자 현재와 미래에 관한 기민당(CDU)의 입장표명보고서 발췌
- 문서 10: 1989년 12월 5일자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학을 위한 독립적인 학술협회 구성을 위한 성명서
- 문서 11: 1989년 12월 17일 사통당 임시정당대회에서의 그레고어 귀지(Gregor Gysi)의 연설문 발췌

자료 19

- 문서 12: 미디어법 관련 의견
1989년 12월 20일자 직업연맹들의 공동 제안
- 문서 13: 1989년 12월 21자 동독 TV 및 동독 라디오에 관한 결정문
- 문서 14: 1990년 1월 13일자 변화하는 사통당/PDS의 재산 관련 당간부회의 결정문
- 문서 15: 1990년 1월 16일자 클라우스 볼프(Klaus Wolf) 장관의 기자회견에 관한 보도자
료 발췌
- 문서 16: 1990년 1월 17일자 요아힘 헤어만(Joachim Herrmann)에 대한 동독 인민회의 조
사위원회의 청문회 녹취기록 발췌
- 문서 17: 1990년 1월 23일자 국영미디어의 기회균등 관련 동독 정부공보부의 발표
- 문서 18: 1990년 1월 25일/26일자 동독 기자연맹 특별위원회의 성명서
- 문서 19: 1990년 2월 5일자 의사표현, 정보, 미디어 자유 보장 관련 인민회의의 결정문
- 문서 20: 1990년 2월 15일자 언론출판물 등록에 관한 규정
- 문서 21: 1990년 2월 22일-25일 라이프치히 정당대회에서 결정된 사민당(SPD) 기본강령
발췌
- 문서 22: 1990년 3월 9일 동독 방송 편집부장회의 회칙
- 문서 23: 1990년 3월 15일 동독 방송의 임시규약
- 문서 24: 1990년 3월 15일자 독일 TV방송의 기본규정 관련 동독 각료회의의 결정문
- 문서 25: 1990년 3월 28일자 동독 정부에 대한 미디어조정위원회의 성명서
- 문서 26: 1990년 3월 17일자 기민당(CDU) 강령 발췌

자료 19

- 문서 27: 1990년4월 26일자 동독 신문잡지출판연맹의 요구안 발취
- 문서 28: 고트프리트 뮐러(Gottfried Müller, CDU) 미디어정책부장관과의 인터뷰
- 문서 29: “동독 언론출판물 유통에 관한 규정”발취
- 문서 30: 1990년 여름에 제시된 라디오 및 TV 관련 연방법 적용을 위한 법안의 전문
- 문서 31: 1990년 9월 13일 동독 인민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의 전문
- 문서 32: 통일조약 제36조
- 문서 33: 1990년 9월 20일자 베를리너 차이퉁紙 논평
- 문서 34: 마지막 동독 언론 통계
출처:1990년 9월 12일자 베를리너 차이퉁紙
- 문서 35: 베를린, 1990년 7월 22일자 “존탁(Sonntag)”紙에 실린 “새로운 시대에서의 경협”에 관한 언론인들과의 인터뷰
- 토마스 라인카우프(Thomas Leinkauf). 베를리너 차이퉁紙.
울리케 부흐만(Ulrike Buchmann). 베를리너 알게마인紙.
홀데-바바라 울리히(Holde-Barbar Ulrich). 여성주간지 “너를 위해(Für Dich)”.
하이너 노스케(Heiner Noske). DS 문화채널(DS Kulturkanal)방송.
게오르크 랑거베크(Georg Langerbeck). 11 99(ELF 99) 방송.

출처

Claus, Werner(Hrsg.) 1991. *Medien-Wende, Wende-Medien, Dokumentation des Wandels im DDR-Journalismus Oktober 89- Oktober 90(미디어-통일, 통일-미디어, 1989.10.-1990.10. 동독 언론계의 변화에 관한 기록)*, Berlin: Vistas Verlag, S. 120-135, S. 142-171, S. 181-185, S. 221-226

동 책자에 실린 내용은 통일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독일 통일 20년 계기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1.8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독일 통일과정에서 유럽공동체의 역할

CONTENTS

제 1 부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 645 독일 통일과정에 있어서 유럽공동체의 역할 / 우리 브뤼크너(Uli Brückner)

1. 유럽공동체는 왜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가? · 646
 2. 유럽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이며, 유럽공동체의 제도적 시스템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 649
 3. 유럽공동체는 독일 통일의 단계(4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가? · 651
 4. 한국을 위해서는 어떤 유용성을 찾아 볼 수 있는가? · 660
- 약어색인 · 663
 - 참고문헌 · 664

제 2 부 자료 목록*

- 자료 1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 - 1957년 내독 무역 및 이와 관련된 질문사항에 관한 문서
- 자료 2 유럽공동체 의장직에 대한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의 비망록 (1989.12.16)
- 자료 3 한스-디트리히 겐셔의 회고록: 1989년 11월 통일 문제에 관한 부분 발췌
- 자료 4 정치적 대화를 위한 콜 총리와 마조비에츠키와의 회동:
유럽 차원의 만남/9개의 협약 및 프로토콜/보상 문제에 관한 합의 결렬 (1989.11.10)
- 자료 5 동독 출신의 EU 집행위원? (1989.10.30)
- 자료 6 프랑수아 미테랑의 정치 일지에서 발췌-독일과 프랑스에 관하여(파트 I)
- 자료 7 프랑수아 미테랑의 정치 일지에서 발췌-독일과 프랑스에 관하여(파트 II)
- 자료 8 슈트라스부르크 유럽이사회 의장국 결론 발췌본 (1989.12.8)
- 자료 9 슈트라스부르크 유럽이사회 - 그 성공과 이중적 의미 (1989)
- 자료 10 독일 통일 및 유럽의 책임에 관한 파리에서의 연설/헬무트 콜 (1990)
- 자료 11 유럽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독일의 조건 (1990)
- 자료 12 독일로 인한 프랑스의 우려 (1990.3.30)

- 자료 13 그 여자는 좀처럼 굴복하지 않는다 (1990.4.6)
- 자료 14 뒷문을 통해서 (1990.4.23)
- 자료 15 헬무트 콜의 정치 일지에서 발췌 (1990.4.28)
- 자료 16 호르스트 텔칙의 정치 일지에서 발췌 (1990.4.28)
- 자료 17 한스-디트리히 겐서: 회고록: 구동독의 유럽공동체 편입 가능성에 관한 부분 발췌
- 자료 18 볼프강 쇼이블레 정치록에서 발췌 (1990.4.28)
- 자료 19 더블린 랑데부 (1990)
- 자료 20 유럽이사회 주제로 더블린에서 개최된 특별 국가정상회담 (1990.4.28)
- 자료 21 더블린 유럽이사회 특별 회담에 관한 독일 연방정부의 발표문 (1990.5.11)
- 자료 22 더블린 유럽이사회 특별 회담에 관한 독일 연방정부의 발표문 (1990.5.10)
- 자료 23 동독의 유럽공동체 편입에 관한 찰스 호이의 연설 (1990.5.16)
- 자료 24 1990년 4월 28일 및 29일 양일 간 더블린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 특별 회담의 결론에 관한 결의문/유럽의회 (1990.5.17)
- 자료 25 독일 통일이 유럽공동체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유럽의회 (1990)
- 자료 26 유럽에 대한 기회인가 또는 핸디캡인가? (1990)
- 자료 27 통합된 유럽 속의 통합된 독일 - 1990년 6월 5일 유럽에서의 연설/헬무트 콜
- 자료 28 독일 통일에 대한 유럽공동체위원회의 견해 (1990)
- 자료 29 드 메지제가 오래된 고랑 위에 다리를 놓다 (1990.6.27)
- 자료 30 나는 독일의 통일을 원했다./헬무트 콜
- 자료 31 독일 통일이 유럽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문/유럽의회 (1990.7.17)
- 자료 32 유럽공동체와 독일의 통일, 제 1-3권./유럽공동체 위원회
- 자료 33 제 11차 회기, 독일 연방정부의 보고, 인쇄물 11/7770/독일 연방주의 (1990.9.3)
- 자료 34 유럽의 독일 - 기준된 책임 (1990.10.3)
- 자료 35 세계 각국 정부에 대한 연방총리의 메시지 (1990.10.5)
- 자료 36 양쪽의 통일 (1990.10.3)
- 자료 37 기쁨은 런던과 파리에 마음의 아픔을 남긴다 (1990.10.4)
- 자료 38 헬무트 콜의 정부 발표문 (1990.10.4)
- 자료 39 독일 통일이 유럽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990)

CONTENTS

독일통일 20년 계기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 자료 40 제 11차 회기, CDU/CSU, SPD 및 FDP 원내 교섭단체의 제의안
- 유럽공동체와 독일의 통일, 인쇄물 11/8391/독일 연방의회 (1990.10.30)
- 자료 41 구 동독을 유럽공동체에 통합 시키기 위해 필요한 임시적 조치 (1990.12.4)
- 자료 42 유럽연합법/ 유럽연합조약 제 48조에 관한 논평 (1999.10.14)
- 자료 43 유럽공동체 위원회에서 “동독 문제”를 다루다 (1990)
- 자료 44 구 동독을 유럽연합에 통합시키는 문제의 어려움 (1993)
- 자료 45 독일 연방의회 제 231차 회의, 유럽정책에 관한 의회 토론 (1994.5.27)
- 자료 46 들로르 백서 - 동독, 협상 테이블의 13번째 자리 (1995)
- 자료 47 T-132/96 및 T-143/96의 연결 판례의 제 1심 법원 판결에 관한 언론 보도, 작센주, 폭스바겐 주식회사 및 폭스바겐 작센 유한회사/위원회 (1999.12.15)
- 자료 48 판례 C-301/96의 법원 판결, 독일/위원회/유럽법원 (2003.9.30)
- 자료 49 연방 법령의 현대화 작업을 위한 연방의회 및 연방상원 위원회, 기본법 제 104a조 4항의 보안을 위한 제안 및 혼합재정 해체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방법에 따른 지역발전용 재정지원 (2004.11.24)
- 자료 50 동독은 어떻게 잡음없이 유럽연합에 끼어들었는가 (2010.10.1)

* 자료에 대한 해제 없음.

제 1 부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서 유럽공동체의 역할

우리 브뤼크너(Uli Brückner)

1. 유럽공동체는 왜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가? 646
2. 유럽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이며, 유럽공동체의 제도적 시스템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649
3. 유럽공동체는 독일 통일의 단계(4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가? 651
4. 한국을 위해서는 어떤 유용성을 찾아 볼 수 있는가? 660

1. 유럽공동체는 왜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가?

1989년 11월 이후 독일 통일의 진행 과정은 단순한 독일 국내의 정치적 사안이 아니었으며, 2+4 회담에서 극명히 드러났듯이 독일과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을 맺었던 전승국들 사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 있어 유럽적인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독일 통일 과정이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을 포괄하는 변혁의 물결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특수한 관점에서 볼 때 독일 연방공화국이 유럽공동체 회원국이라는 지위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법적, 경제적 및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유럽공동체는 그 자체로 대단히 특별한 성격으로 조직된 기관으로서 연방국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지만, 단순한 국제기구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이상의 측면이 존재하고 있었다. 창설 당시에나 다섯 번에 걸친 조약 변경 및 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할 때도 항상 이 거대한 정치적 프로젝트의 향방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비록 그 정치적 최종 목적에 관해서는 확실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유럽공동체는 국가가 아니며, 각 회원국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협약의 주체로서 유럽공동체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표명되었다. 그 후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공동체는 ‘유럽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유럽공동체의 가치 또한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기본 철학에는 변함이 없었다. 유럽연합은 각각 독자적 주권을 가진 국가들의 공동체로서 독일 통일의 진행 과정에 있어 어떠한 법인체로서의 성격을 갖지도 않았고, 또한 이를 지원할 예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일련의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아울러 다양한 방식으로 독일 통합과정에 있어 이를 지원하는 안정화 기구이자, 대내적 및 대외적 정책을 추구하는 촉매 기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독일이 유럽 내에서 확실히 자리매김 하고,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의문점도 제기되지 않은 형태로 독일 통일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다른 주변 국가들 또한 이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세기에 있었던 양대 세계대전에서 독일제국주의의 희생이 되었던 경험이 있는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대단히 중요했

다. 왜냐하면 독일은 국토의 규모나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인 잠재력과 과거의 경력으로 인해 유럽 대륙의 세력 균형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력 안배가 불균등하고, 서로 간의 이익 격차가 상이한 수많은 사안이 산재된 상황에서는 항상 장시간 지속되는 폭력적인 갈등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경험이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일련의 국가수반 및 정부대표들은 독일 통일에 대한 정치적 영향 평가에 있어 이러한 우려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몸소 체험했던 연배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정치적 책무와 관련해서 이들은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을 공개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에 머무르지는 않았다. 관련 원본 문서를 읽어보면, 정상외교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정치적 핵심 인물들의 중심된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사실 이러한 사안들은 기타 다른 요인들로 인하여 쉽게 간과되는 것들이다. 특히 유럽공동체의 제도적 구조를 갖추거나, 절차 진행의 수용, 규칙 제정 및 유럽 다자주의 원칙의 실제적인 경험등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이 잘 드러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유럽연합의) 사상과 제도는 통일과정의 성패, 진행방향, 진행속도 및 성공과정 등에 있어 이해 당사국 만큼이나 중요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독일 통일의 과정이란 결국 각국 정부대표 및 국가수반들의 협상의 결과물이자, 정치적 지도력 및 관리력, 아울러 외교적 수완의 산물로서 설명될 수 있다(이에 대한 자료로서 여러 유럽 정치인이 쓴 정치 회고록을 참고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진행방향 설정에 관한 결의안 확정 및 실행이나 조율과정에서 비롯된 물질적 부담의 적절한 분배, 그리고 다수의 기술적, 복합적 개별 사안의 처리 등은 주요 정치인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비정례 회담 및 합의를 통해 대부분 해결되었지만, 이와 더불어 유럽공동체라는 하나의 제도적 틀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기 사안들을 별다른 잡음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던 측면이 크다. 아울러 동독을 어떤 시점에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유럽공동체에 통합시킬 지에 관한 사안들도 결국 이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단순히 유럽공동체라는 국제적인 조직에 동독이 가입한다는 형식적 절차의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독의 가입은 유럽공동체라는 조직 내의 정치적, 경

제적 힘의 배분 관계에 있어 변화를 의미하는 사안이었다. 동독의 가입은 한편으로는 동독 자체적으로 조정 과정에 대한 엄청난 요구조건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 내의 주민들과 기업들에 있어서는 물질적 및 비물질적 지원과 새로운 기회를 약속하는 것이기도 했다.

물론 동독의 유럽공동체 편입이 성공할 것인지에 관해 시간이 지나 뒤돌아본다면 모든 것이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고, 유럽공동체로의 편입 이외에 다른 적절한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르벡(1990년) 및 비버(1991년)의 학술적 분석을 살펴 보면, 동독의 유럽공동체 가입은 정치적 및 법적 측면에서 확정되지 않은 미해결 문제였다. 여기에 유럽공동체의 실행부라 할 수 있는 유럽위원회는 해법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해야만 했다.

마이어(1993년, 35페이지 이하)는 당시 유럽위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몇 가지 고려사항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독일의 통일이 유럽통합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 결코 부당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역내시장 통합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1985년부터 유럽공동체 역내시장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공동체 12개 회원국들은 1992년까지 상품, 용역, 인력 및 자본시장에 있어 유럽 회원국 간의 완전한 자유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를 위해 약 300여 개의 유럽공동체 법률조항이 결의되어 각국 내부적으로 발효되었고, 특히 각 회원국 간의 모든 물리적 국경이 철폐되어야 했다).

둘째: 독일 통일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거대 독일 시장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나머지 11개 회원국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경제 및 화폐 통합과 향후 정치적 통합을 위한 정부회의 결과에 따라 유럽공동체라는 조직에 있어 유럽위원회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해야 하는데, 특히 동독의 유럽공동체 편입 진행과정을 통하여 유럽위원회의 효용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유럽공동체의 권한은 점차적으로 더욱 확대되어 가는 반면, 정작 이러한 권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오직 제한적으로만 확보될 수 있는 모순점과 관련해서, 그리고 관료주의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주요 사안이 지체되고 있는데 대한 일반 대중들의 불만 확대로 인해 유럽위원회에 있어서는 동독 통합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완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유럽위원회에서 유럽공동체 계획을 실질적으로 진두 지휘하고 주관한다는 인상을 피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유럽위원회가 설립된 것이고, 이는 당연히 유럽위원회에서 주관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아울러 두 번째 사안은 이미 진행 초기부터 독일 통일 지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규정이었다. 하지만 이는 오늘날까지도 아직 모든 회원국들의 이익관계와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유럽공동체의 대의적인 목표, 즉 “유럽 국민들의 일치단결을 점점 더 강화”하려는 목표와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안은 일련의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관련되는 측면이 있다. 즉 유럽 정책의 효율성, 효용성 및 정당성 등과 같은 문제와 직결된다.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자기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동독의 유럽공동체 편입을 가능한 잡음 없이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유럽위원회는 일차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2. 유럽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이며, 유럽공동체의 제도적 시스템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1980년대 말 이미 당시 유럽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크 들로르의 말을 빌어 알 수 있듯이 유럽 역내시장 통합이 완성되면, 각 회원국의 경제 및 사회정책 결의사항의 약 80% 가량이 유럽적인 차원에 입각하여 진행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통합된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반영 수치는 아직까지 각 나라 별로 상이하며, 일부 국가의 경우 명백히 80%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틸러 보고서, 2008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경제 및 화폐 통합의 큰 테두리 안에서 각 회원국의 국민경제 관계가 점점 더 밀착되고 있다는 원론적인 논지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화도 없다. 195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유럽 통합 계획은 유럽 국민들 사이의 보다 긴밀한 통합을 통해 대단히 안정된 지역공동체를 창설하려는 시도로 여겨진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를 통해 유럽 회원국들 상호 간의 자발적인 통합관계가 형성되고,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며, 실질적인 다자주의 원칙이 정립됨으로써 각국

의 평화, 복지 및 안보에 기여하게 된다. 유럽 회원국들의 관계가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는 구조로 형성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 이해관계를 정의함에 있어 점차적으로 자국의 이익에만 국한되던 관점에서 이웃 국가의 이익까지를 고려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아울러 상호 간에 건설적이고,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며, 상호 연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통합의 장점이 상실되고, 오히려 각국에 피해만 불러오게 될 것이다. 유럽 통합의 진행과정을 통해 민족주의 또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유럽공동체 창시자들은 이러한 민족주의를 20세기 두 차례에 걸쳐 발발되었던 세계 대전의 원흉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입각하여 마치 연방주의 시스템에서와 같이 각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들(이러한 기관으로는 유럽이사회/유럽 각료이사회 등이 있음)과 유럽 전체의 공동복지를 추구하는 기관들(이러한 기관으로는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등이 있음) 사이의 업무 분배 및 권력 균형을 조율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각 회원국 개별 이익과 유럽적인 차원에서의 이익 상충이 상쇄되고, 합의가 도출될 수 있어야 했다.

개별 조직 간의 이러한 역할 분담 및 자기 이해는 독일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각각의 위치에 걸맞은 형태로 대단히 명확하게 표출될 수 있었다.

유럽이사회의 경우 유럽공동체의 정책 기초를 마련하는 정부 간 권력 협의기구로서 각 회원국 정부수반 및 유럽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본 유럽이사회는 분기별로 정례 소집되지만, 필요한 경우라면 비정례 회의 형식으로 회동되기도 한다. 독일 통일의 경우 1990년 4월 더블린 정상회담을 통해 분명한 결의안이 마련되었다(1990년 4월 더블린 정상회담 자료 참고).

유럽위원회는 유럽공동체의 집행부로서 보통 유럽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안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유럽공동체 협약의 수호자로서 유럽공동체의 ‘철학’을 대변하며(1990년 4월 회보 참고), 1990년 8월에는 독일 통일의 결과가 유럽 통합과정에 미치게 될 총체적 영향을 분석해서 소개하기도 했으며, 아울러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개개 사안별 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보고 서류 KOM (90) 400 참고).

유럽의회의 경우 유럽공동체 설립협약 제 1차 개정 및 1986년 체결된 단일 유럽 의정

서를 통해 이미 어느 정도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받고 있으며, 유럽 통합의 초기 10년과 비교해 볼 때 의회의 기능 및 권한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아울러 1979년에 있었던 제 1차 유럽의회 직접선거는 유럽의회 역할의 높아진 위상을 명백히 표명한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지속적인 협약 개정을 통해서 유럽의회의 중요성은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유럽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은 대부분의 각 개별 회원국 의회가 갖는 자국에서의 영향력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제한된 수준으로 머물렀다. 유럽의회에서는 1990년 봄에 독일 통일에 관한 상세한 입장 표명을 제시하게 된다.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는 유럽의회에서 딱히 이렇다 할만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학술 분야에 있어 독일 통일이 가져 올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어느 정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유럽위원회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본 토대로 활용될 수 있었다(유럽의회 문서 참고: 영향력 연구).

3. 유럽공동체는 독일 통일의 단계(4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가?

독일 통합 과정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역할 관계는 시기적으로 볼 때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 a. 특수 역할 및 정치적 개입의 자제: 분단된 독일 상황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관계
- b. 관찰 및 의견 수립: 1989년 가을을 기점으로 유럽공동체 및 유럽 회원국들의 태도
- c. 제도적 혁신과 유연한 대처: 1990년 아직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독일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관계
- d. 요구와 실현: 1990년 통일 독일의 유럽연합 편입 및 오늘날까지의 상황

이러한 시기적 4단계를 하나 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특수 역할 및 정치적 개입의 자제: 분단된 독일 상황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관계

서독은 유럽 철강 및 석탄공동체(EGKS) 설립 회원국가이자, 그 후속으로 등장한 유럽 경제공동체(EWG) 및 유럽 원자력공동체(EAG)에 모두 참여한 회원국으로서 향후 독일이 통일을 이룩할 경우에 대비한 가입 옵션을 프로토콜의 형태로 명백하게 명시하였다. 하지만 본 프로토콜에서는 동서독 간의 내부 교역에 대한 조건 규정을 오직 한 페이지 만을 할애해서 규정하고 있다(동서독 교역에 관한 프로토콜 문서 참고).

앞서 언급한 3가지 유럽공동체의 책임 권한은 그 기능적 측면에서 제한된 상태였고, 유럽공동체라는 이름은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통합을 위한 방편이라는 특성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 원래의 유럽공동체는 초기부터 정치적 성격을 띤 프로젝트였다. 유럽공동체가 지닌 이러한 정치적 특성은 특히 전후 냉전시대의 긴장 관계 속에서 명확히 설명될 수 있다.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이 표방한 사상적, 내용적 설립 기초를 살펴보면, 모든 회원국들이 서구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가치를 표방하고, 이를 목표로 함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표현하자면 유럽 공동체는 결국 서방 국가들의 결합에 대한 고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공동체의 일련의 구축 및 확장 과정은 미국에 의해 크게 지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유럽공동체의 정치적 영향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고, 재원의 측면에서나 권한의 측면에서 모두 그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유럽공동체와 관련된 정계 수반들은 정치적 행위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욕심이 없었다. 유럽 경제공동체 협약 제 49조에서는 동구권에 대한 지원을 분명히 하고, 이를 독려하는 조항이 있었으므로, 유럽 국가라면 누구든지 유럽공동체를 상대로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냉전 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유럽공동체는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외교적 입장에 관해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였다. 이는 독일 분단 문제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제적으로 유럽공동체와 동서독 양국의 실무적 관계는 프로토콜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상품 교역으로 제한되었다. 유럽공동체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독일 통일 문제에 있어 적극적 참여자로서는 거의 개입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초기 단계는 유럽공동체의 설립과 평화적인 혁명이 시작되는

사이의 시기로 이해된다. 이 시기 동안 유럽공동체는 비록 독일 통일이라는 큰 목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호의적 입장을 견지하며 동의하긴 했지만, 유럽공동체 자체적으로 정치적 입지가 제한되어 있었고, 독일 통일이라는 사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가 다양했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고, 독일 통일 사안을 독일 스스로에게 맡겨둘 수 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2) 관찰 및 의견 수립: 1989년 가을을 기점으로 유럽공동체 및 유럽 회원국들의 태도

독일문제에 있어 정치적으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브뤼셀, 슈트라스부르크 및 룩셈부르크에 소재해 있던 유럽공동체 각 기관들은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동독의 정세 변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 발생의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세워 놓은 계획이 전무했으며, 아울러 독일 통일에 대한 유럽공동체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도 수립되지 않았다. 비록 제도화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심화되어 있던 상태였고, 절차 진행의 관찰에 있어서도 초국가적 결정 시스템의 특성이 구비되어 있기는 했지만, 외교정책이 회원국들의 핵심능력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럽공동체가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구속력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이며, 누가 이러한 업무 절차를 주도해야 하는지에 관한 제도화된 절차 또한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독일 통일과 같이 대단히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여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전적인 정상 외교주의 스타일의 임시방편적 대처 방안만이 가능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상 외교를 통해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방대한 양의 정보와 상호 의사소통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1989년 가을을 기점으로 두 번째 시기는 관찰 및 의견 수립의 시기로 정의될 수 있으며, 당시 유럽공동체 지도부와 각 회원국은 독일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수동적으로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아울러 어떠한 외교적 기본조건의 틀속에서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목표와 전술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 기간 유보 상태를 유지했다.

3) 제도적 혁신과 유연한 대처: 1990년 아직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독일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관계

그런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데, 이 시기 동안 유럽공동체는 제도적 혁신 과정을 거치면서 독일에서의 변화 상황과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에 실용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게 된다. 과거 유럽공동체 결정 시스템이 대단히 느리고, 유연하지 못하며,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비판 받았던 때와 비교해 볼 때, 독일 통일이 가져온 도전에 대처하면서 보여준 유럽공동체의 결정 시스템은 유럽공동체 관리 행정 능력이 빛을 발한 의미 깊은 순간으로 평할 수 있다. 이 때 이룩한 탁월한 성과로서 1990년 5월 투입된 독일 통일 실무팀의 투입을 꼽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본 실무팀을 지휘한 것은 당시 유럽위원회 위원장 대리였던 네덜란드 출신의 카를로 트로얀이었다. 마이어의 보고서(1993:51)에 따르면 본 실무팀의 업무과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동독의 상황과 특수한 문제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에 소속된 다양한 각 전 문부서의 업무를 조율
- 과도기적 조치에 요구되는 꼭 필요한 시행안들을 제안하는 작업

본 실무팀에는 유럽위원회에 소속된 총 23개 사무국의 모든 고위급 관료가 참여했다. 실무팀이 업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독일 통일이 적어도 1991년 전에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곧 실무팀이 업무를 즉시 완수해야 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게 된다.

“유럽공동체 역사상 유례 없이 힘든 업무과제”(마이어 보고서 1992:52)를 수행하면서 본 실무팀은 4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무려 3권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독일 통일이 유럽공동체에 가져 올 영향이 포괄적인 관점에서 분석되었고,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안이 제시되었다. 본 대책안은 유럽 법률의 모든 조항을 구동독 지역에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아울러 본 대책안에는 유럽공동체 역내 시장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경과규정에 대한 제안 및 특히 농업시장 규정과 공동 무역정책에 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유럽공동체 산하 유럽위원회의 서류를 참조: 유럽공동체와 독일 통일, 보고 서류 KOM(90) 400, 1990년 8월 21일

자 최종보고 서류, 제 I-III권, 브뤼셀, 1990년).

근본적으로 모든 사료들에 드러나있듯이, 서독 연방정부는 독일 통일의 기회를 단순히 독일 내정 사안으로서만 고려하거나 취급하지 않았다. 국제적인 차원(특히 2+4 회담과 당시 서독 총리였던 헬무트 콜의 개별 회담 및 방문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인데)에서와 유럽적인 차원에서 유럽공동체 산하 기관들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 흐름을 마련하며, 아울러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을 통해 통일된 독일은 감당해야 할 의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널리 알리게 되었다. 이는 곧 서유럽 연합에의 귀속을 의미하며, 하나된 유럽으로의 통합과 독자적 길을 가지 않겠다는 포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설립된 유럽연합을 존중하여 유럽공동체의 제도 체계에서 전반적으로 표명되고 있는 다자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을 표명하는 것을 뜻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1991년 체결되어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었는데, 특히 독일은 이러한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더불어 유럽 통합과정을 심화하는 절차에 있어 앞장서서 이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추진과정 중에서도 독일이 다자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한 것은 상징적이고 함축된 의미를 내포한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독일 마르크화에 대한 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 마르크화는 과거 나치 관련 역사로 인해 전후 독일이 자국을 뚜렷하게 강조하는 상징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으로 하여금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해 독일적인 자부심과 정체성을 집약한 상징으로 여길 수 있도록 작용하고 있다.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체결된 단일 유럽 통화 도입에 관한 계획 및 경제, 화폐통합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통해 독일은 단순히 자국의 통화만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독일 마르크화는 독일 통합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독일 마르크화가 들어오면, 우리는 여기 남아 있다. 만약 독일 마르크화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으러 나갈 것이다.”라는 동독 데모대의 구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독일 마르크화는 단순히 경제 및 정치 통합의 속도와 목표에 대한 동독 주민 기대를 나타내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동독 경제의 생존 문제에 대한 진심 어린 경고가 담겨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독과 서독의 복지수준 격차가 심해지자 이에 대한 반동으로 다수의 젊은 세대와 고급 인력은 동독을 빠져나가게 되었고, 그 결과 동독 지역에서는 경제

적, 사회적 문제를 비롯하여 장기적으로는 인구 통계상의 문제까지를 포함한 사회 체제의 전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게 되었다.

독일 마르크화에 대한 포기를 종종 독일 통일을 동의해 주었던 유럽 협력국가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대가라고 보는 시각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1989년 4월에 제출된 들로스 백서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 그리고 이 들로스 백서는 다시금 1988년 6월 하노버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 회의에서 체결된 독일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본 회의는 유럽공동체 의장직을 담당하고 있던 독일이 주재한 것이다. 즉, 이는 서독 연방정부가 독일 통일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부터 이미 유럽 공동의 단일 통화 도입을 자기 이익에 입각하여 먼저 시도했음을 시사해 준다.

유럽 단일 통화를 도입함에 있어 당시 서독 연방정부는 이를 단순히 유럽 역내시장의 설립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유럽의 정치통합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치통합을 통해 유럽공동체는 특별한 목적에 입각한 기능 연합으로부터 탈피해 일종의 운명공동체 성격을 지니게 될 수 있게 된다.

4) 요구와 실현: 1990년 통일 독일의 유럽연합 편입 및 오늘날까지의 상황

동서독 내부의 발전상황과 보조를 맞추어 유럽 통합의 과정을 지속해 나간 것은 하나 된 유럽을 위한 통합이라는 독일의 신념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기본 조건이 되었다. 이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정치적, 경제적 통합과 더불어 함께 규정되어 있는 유럽공동체의 심화 문제에 해당될 뿐 아니라, 서부 유럽의 자유무역연합 EFTA에 속한 국가들의 향후 유럽연합 편입 및 심지어 철의 장막에 갇혀 있던 동부 유럽의 공산권 경제 협력 회의에 속한 국가들의 미래의 유럽통합 편입을 포괄하는 사안이다. 국경의 붕괴 그리고 독일과 동구 주변 국가들 사이의 복지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경을 뛰어넘는 기업 활동과 협력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특히 접경 지역에 있어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국민 개개인이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야기된 부의 재분배 문제에 있어 스스로를 승리자 혹은 패배자로 여기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이러한 변혁이 국경의 붕괴 및 유럽 통합 프로젝트와 직결된 사항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나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유럽연합에 대한 동의 혹은 거부의 문제는 통합과

정에 대한 평가와 상호 관련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독 지역이 유럽공동체에 신속하고, 비교적 별 문제 없이 완만하게 통합된 이후에도 독일 통일의 여파는 오늘날까지 독일과 유럽연합 양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시스템에서 서구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탈바꿈 과정은 유럽공동체 재원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되었고 법적으로 뒷받침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특별 예외로 인정되거나 경과규정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혁을 위한 실제 재정 지원은 동서독 간의 자본 이전 과정을 통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원래 유럽연합 예산의 총액은 법적으로 유럽연합 역내 총국민소득의 1.24%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 아울러 지출 항목 또한 자유롭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7년 단위의 재정 예산계획을 통해 전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유럽연합은 재정 자원이 충분치도 않을 뿐더러 유럽연합의 정치적 위임 권한이나 예산 정책상 자금 운영의 폭을 고려해 보아도 독일 통일에 대한 재정 지원과 같은 대형 사안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처지이다. 재정 정책은 결국 각 개별 회원국가에 속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 논쟁보다 더 중요했던 점은 다른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유럽공동체 재원을 구동독 지역을 위해 재분배하는 것에 대한 이해심을 보일만한 여력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이와는 정 반대로 독일 연방정부는 이제 독일의 유럽공동체 회원국으로서의 지위가 보다 중대해졌으므로 순기여국(Nettozahlerposition)의 입지를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라는 다른 회원국들의 지나친 기대에 대하여 방어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특히 1993년 에딘버그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이 에딘버그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대로 유럽공동체 예산을 국민총생산(GNP)의 1.24%로 제한하는 것은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이 결의되었다.

비록 동독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재정 지원은 한계가 있었지만, 동독의 국민경제 상황은 비교적 유리한 입지에 놓여 있었다. 변혁기를 맞이한 중부 유럽 혹은 동부 유럽 가운데 그 어떠한 나라도 동독의 경우처럼 서독과 같은 ‘든든한’ 형제국을 가진 나라가 없었다. 서독은 막대한 규모의 동서독 간 자본 이전을 통해 동독의 전환 과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다. 아울러 새로 편입

된 동독 주민의 경우 유럽연합 주민이라는 정치적 장점 이외에도 유럽 역내 시장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주권이 보장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는 브뤼셀 회담에서 경과 기간 및 예외 규정의 합의를 통해 동독의 기업 및 취약 분야에 공적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특별 예외 규정이 없었더라면 극히 제한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유럽공동체 경쟁법과의 마찰이 생기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동독의 입장에서는 동독 경제가 독일 통일의 신속한 처리속도나 사유화 및 화폐통합의 선별된 진행과정, 그리고 경제적 한계선의 부재로 말미암아 독일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유럽 역내 시장에 있어 갑작스러운 재화 공급 쇼크에 노출되게 되었다. 이는 동독 지역에서 오히려 대규모적인 탈산업화 현상을 불러오게 되었다. 만약 동독과 기타 이웃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비교해 본다면, 자본주의로의 전환 과정을 위한 기본적 전제 조건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독일의 특별한 상황에서만 기인했던 것이 아니며, 오히려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향후 동독의 발전과정에 더 의미 깊게 작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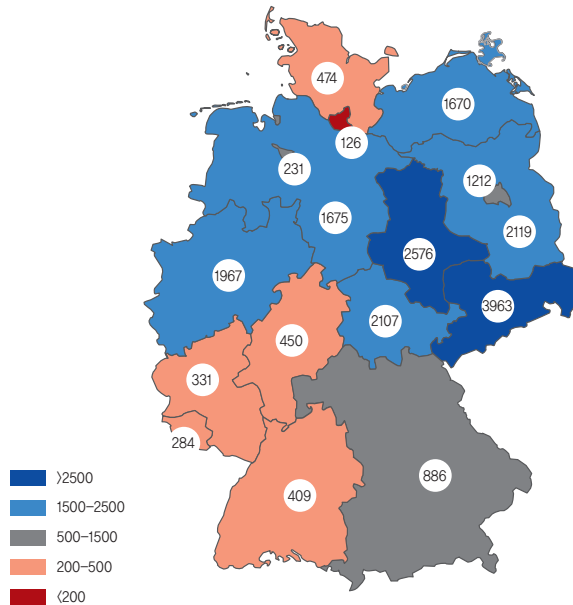
중부 유럽 및 동부 유럽의 체제 전환 국가들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독일 전역을 포함한 유로화 사용지역에서 1999년부터 유로화가 장부상 통화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이다. 2002년부터는 실제 지폐와 동전이 통용되었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 가입 후보 국가들의 경우 자체 통화를 사용하고 있고, 통화 정책상으로도 공식적인 주권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유럽연합의 동방 확장 정책을 통해 독일의 신연방주 및 구연방주에 대한 기본 전제조건에 다시금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새로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 역시 바로 인접한 국가들이었다. 신규 회원국들의 경우 기존 회원국들에 비해 부의 수준이 명백히 뒤쳐진 상태였고, 이로 인해 유럽연합 기금에서 지원되는 빠듯한 액수의 자본 이전을 놓고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금은 주로 농업분야, 지역 보조금 및 사회구조 정책 지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 최대의 순기여국(net contributor)으로서 1990년대에는 매년 최소 90억 유로, 최대 130억 유로에 달하는 기금을 공동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지원된 금액을 놓고 볼 때 이는 명백히 동독에 대한 자본 이전의 형태로 다시 흘러 들어오는 금액을 훨씬 초과한 수치였다(비교: 그레취만 보고서 1998:33 참고, 도표 5). 그러자 이러한

그림 1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독일에 대한 유럽연합 구조지원금이 각 연방주에 분배된 현황

(금액 단위는 십억 유로임)



출처: 유럽 2010년, 프랑크 피프라트 출판 - 유럽의회, 독일 정보사무소 브로셔, 총 108페이지, 베를린, 2010년, 93 페이지

[http://www.europarl.de/view/de/Service/Publikationen/Europa 2010.html](http://www.europarl.de/view/de/Service/Publikationen/Europa%202010.html)

현황의 공정성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논쟁의 중점은 순기여의 입장에만 집중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즉 독일 경제는 수출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이를 통한 대외 무역 흑자의 3분의 2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교역을 통해 달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동독으로 흘러간 자본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다시 배분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다음의 그림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유럽연합 재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신연방주의 공공 지출을 위한 재정 마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재원이 유럽연합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 정도의 규모로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목적에 합당하게 각각 해당 연방주로 흘러갈 수 있었을 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

아있다. 이는 유럽연합에서는 독일의 경우와는 다른 분배 규정 및 분배 논리에 입각하여 자본 분배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복지 수준의 격차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로 인해 유럽연합 역내 시장 내에서의 인구 이동이 통제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유럽연합 역내 시장에서는 물리적 국경이 없고, 상품, 용역, 자본 및 노동시장의 완전화 자유화가 보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전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하여 7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요구했고, 이는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동독에서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노동력 수용능력을 상회할 수 있는 노동력 유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아울러 외국 이주 노동자를 성공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사회적 전제조건과 관련해서도 독일의 경우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점점 더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로 인하여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 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다. 하지만 외국인 이주 제한 정책은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므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브뤼셀 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켰다. 2011년 봄이 되어서야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신규 회원국 출신의 외국인 이주 노동력에 대한 유예기간이 비로소 끝나게 된다.

4. 한국을 위해서는 어떤 유용성을 찾아 볼 수 있는가?

한국은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조직의 회원국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럽과 같이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나 또는 공동체 회원국 및 각 개별 회원국의 이익 관계를 고려하고 존중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치적 필요조건이나 법적 측면에서의 조정 요구가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국가적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으므로, 공동체에서 지원되는 물질적, 기술적, 정치적 지원 대책을 제공받지도 못한다.

이러한 핵심적인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조적 유사성 및 비교 가능한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통일이란 한 나라 또는 두 나라 사이 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적 차원 및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독일 통일이 성공한 것은 이를 독일 내정 사안으로 규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연관 지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소한 다른 유럽 이웃 국가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유럽공동체 제도 시스템의 채널을 통해 통일 방안을 모색하려는 방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 충돌을 인식하고, 이를 완화 및 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유럽 차원에서 동독으로의 재정적 자본 이동을 실행한 것은 비록 그 절대적인 액수로는 대단히 적은 수준이었지만, 대내외적으로 이러한 자본 이동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절대로 과소평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럽공동체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아닌 국가적 규율을 확립해주는 주체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고,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나 지자체 차원에서 유럽연합이 재정을 지원한 인프라 설립 대책은 긍정적인 효과와 인식을 불러 오게 되었다. 하지만 유럽 차원에서 진행된 모든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유럽연합 후보국가 및 이웃 국가들에서는 독일 통일로 인해 자신들이 희생을 본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독의 유럽공동체 편입이 거의 별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예를 근거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도 포괄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물론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 동독은 다른 체제 전환 국가들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서독에서 통용되는 모든 규정이 거의 그대로 동독으로 확대되어 도입되었던 것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굳이 찾을 필요도 없었고, 동독의 특성에 대해 깊이 고찰할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는 시간과 체제 전환 비용을 절감시키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처리 방식은 대부분의 경우 동독의 체제 전환 결과가 유럽연합의 법 규정에 부합되게 하는 장점을 또한 제공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진행 방식에서 국민의 의견이 배제되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는 국민이 이러한 절차의 진행에 직접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서유럽의 규정을 비교적 무리 없이 도입하게 되는 경우나 유럽연합법을 적용하기에 다

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 및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규정이나 유예 기간은 시간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차후의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제 전환 과정을 정치적 또는 행정적 관점에서가 아닌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통일이란 자본의 거대한 재분배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규모의 재분배는 오직 전쟁을 통해서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핵심 조약 문서에서 어떠한 점에 합의를 이룰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향후 분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이 미리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사회적, 지역적, 각 사회분야별, 경제적 및 환경적 영역에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적용된다. 독일의 경우 단순히 통일조약만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1990년 8월 유럽위원회의 대책안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차이점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는 유럽공동체에 필적할만한 초국가적 입법 결의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한국의 조건이 다르다고는 해도 통일협약의 규정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느냐에 따라 향후의 모든 상황 변화가 결정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 약어색인

| | |
|------|-------------------|
| DDR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구 동독) |
| DIW | 독일 경제연구소 |
| ECU | 유럽통합화폐 |
| EFTA | 유럽자유무역지역 |
| EG | 유럽공동체 |
| EGKS | 유럽석탄철강공동체 |
| EP | 유럽의회 |
| EU | 유럽연합 |
| EWG | 유럽경제공동체 |
| TFGU | 독일통일 전담 팀 |
| RGW | 상호경제협력위원회 |
| WWU | 경제 화폐통합 |

■ 참고문헌

- 롤란트 비버, 1991년, 동독의 유럽공동체 편입을 위한 절차 진행의 문제점.
참고: 베아테 콜러-코흐(편집인), 유럽공동체의 동독 확장 - 구 동독의 유럽공동체 편입.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p. 57-66
Bieber, Roland. 1991. Probleme des Verfahrens zur Einbeziehung der DDR in die EG.
- 클라우스 그레취만, 1998년. 유럽공동체 예산의 자발적 개혁 및 실수령액, 유럽의회 연구 보고서, 예산 100 작업문서 시리즈. 룩셈부르크, http://www.uni-mannheim.de/edz/pdf/dg4/BUDG100_DE.pdf
이는 유럽예산의 구조, 분배효과 및 예산부담 조정을 위한 정치적 개혁 가능성을 연구한 많은 분석 보고서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이의 개정에는 만장일치 원칙이 요구되므로, 논의의 진행이나 문제가 되는 항목의 실제적인 변화는 거의 없는 편이었다.
Gretschmann, Klaus. 1998. *Eigenmittelreform und Nettopositionen des EU-Haushalts, Studie für das Europäische Parlament, Arbeitsdokument Serie Haushalt-100.*
- 볼프강 하이젠베르크, 1992년. 유럽적인 관점에서 살펴 본 독일의 통일.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본 연구 보고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 I장에서는 독일 통일에 기여했던 중요한 공식 협상을 다루고 있다. 제 II장에서는 유럽 내에서의 정치적 기본조건 변화내용을 조명한다. 제 III장에서는 독일 통일이 가져 온 경제적 문제 및 인구구성 상의 문제점을 논의한다. 이어서 제 IV장에서는 독일 통일로 야기되는 유럽 통합을 위한 몇 가지 특별한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Heisenber, Wolfgang. 1992.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in europäischer Perspektive.* Baden - Baden: Nomos
- 구스타브 A. 혼 외(外) (편집인), 2000년. 이중적인 화폐통합: 경제 통합 과정에 있어서의 독일과 유럽 - 회고와 비교. 베를린, 독일 경제연구소(DIW)
Horn, Gustav A. et al. (Hrsg). 2000. *Die doppelte Währungsunion: Deutschland und Europa im wirtschaftlichen Integrationsprozess.* Ein Rückblick und ein Vergleich. Berlin;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DIW)
- 루돌프 흐르벡, 1990년. 독일의 통일과 유럽공동체로의 통합 - 문제 및 그 해결책에 대한 제안, 『독일의 (재)통일 과정』, 슈투트가르트, 콜함머 출판사, p. 131-146.
본 발표문은 저자가 1990년 4월 6일 및 7일 양일간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발표문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본 발표문의 출판 작업을 위해 해당 발표원고에 대한 내용의 첨삭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 본 발표문에서는 1990년 5월 초의 상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데, 이는 시기적으로 더블린 정상회담의 개최 이후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Hrbek, Rudolf, 1990.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und die Integration in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 Probleme und Lösungsvorschläge. In: (*Wieder-*) *Vereinigungsprozeß in Deutschland*. Stuttgart Kohlhammer, p. 131–146

- 베이테 콜러-코흐 (편집인), 1991년. 유럽공동체의 동독 확장 – 구 동독의 유럽공동체 편입. 바덴-바덴, 노모스 출판사.
다음과 같은 기고문 모음집 – 베이테 콜러-코흐: 구 동독의 유럽공동체 통합 정책, 페터-크리스티안 뮐러 그라프: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 – 법적 관점 및 법률 정책적 관점에 있어, 롤란트 비버: 동독의 유럽공동체 편입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베른트 힐처: 동독의 관점에서 살펴본 동독의 유럽공동체 통합 문제점과 전망, 클라우스 베르너: 독일 연방공화국 및 유럽공동체로의 귀속 과정에 있어 구 동독의 경제적 적응의 문제점, 베른하르트 자이델: 경제적 도전과제로서의 동독의 독일 연방공화국 및 유럽공동체로의 편입.
Kohler-Koch, Beate (Hrsg), 1991. *Die Osterweiterung Der EG: Die Einbeziehung der ehemaligen DDR in die Gemeinschaft*. Baden-Baden: Nomos.
- 폴커 마인하르트, 2000년. 사회적 보장 영역에 있어 균형을 맞추어가는 과정 –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의 10년. 구스타프 A. 혼 외(外) (편집인), 2000년. 『이중적인 화폐통합: 경제 통합 과정에 있어서의 독일과 유럽 – 고찰 및 비교』, 베를린, 독일 경제연구소(DIW)
Mernhardt, Volker, 2000. Der Prozess Der Angleichung im Bereich der sozialen Sicherung – 10 Jahre nach der Einführung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 카르스텐 마이어, 1993년. 유럽공동체로의 동독 편입. 쾰른, 경제와 정치 출판사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시점으로부터 독일 통일의 시점까지를 중심으로 살펴 본 동독의 유럽공동체로의 편입 과정.
Meyer, Carsten, 1993. *Die Eingliederung der DDR in die EG*. Köln: Verl. Wissenschaft und Politik
- 아네테 엘리자베스 뢰러, 2008년. 신화와 방법: 80% 신화 이면의 독일 연방의회 입법과정의 유럽화 수준 측정. 『의회문제를 위한 잡지』, 제 39호 1권, p. 3–17.
Töller, Annette Elisabeth, 2008. Mythen und Methoden: Zur Messung der Europäisierung der Gesetzgeb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jenseits des 80%-Mythos,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39. Jg., Nr. 1, p. 3–17

- 베르너 바이덴펠트 외(외) (편집인), 1991년. 이중의 통합: 유럽 및 더욱 커진 독일. 귀터스로, 베르텔스만 재단.

다음과 같은 기고문 모음집 - 베르너 바이덴펠트: 전 유럽적 차원에서 바라본 독일 통일, 크리스티네 홀레쇼프스키: 독일 통일에 대한 유럽공동체 내부적인 동의 과정, 엘마 브록: 유럽 의회 및 독일 통일, 프리츠 프란츠마이어, 디터 슈마허 공저: 독일 통일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관점, 위르겐 클로제: 유럽공동체 내에서의 구 동독의 경제적 통합

Werner Weidenfeld u.a. (Hrsg), 1991. *Die doppelte Integration: Europa und das größere Deutschland*. Gütersloh: Bertelsmann Stiftung

- 독일 통일 20년 계기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발행처 : 통일부 통일정책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TEL 02-2100-5772, FAX 02-2100-5779
발행일 : 2011년 4월

표지디자인 | 편집디자인 | 인쇄

사회복지법인 **나누리**



중증장애인생산품인증체 보건복지부인증 2008.8.6
TEL 02-2269-8412~4, FAX 02-2265-0864

